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SIXTH EDITION

2014

교 회 헌 법

미국장로교

제 6 판

2014 년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Sixth Edition
(2014 Reprint)**

**Includes all amendments approved up to and including
the 42nd General Assembly, in Houston, Texas
July 17-19, 2014**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Distributed by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1700 North Brown Road, Suite 102
Lawrenceville, Georgia 30043-8143
1-800-283-1357**

교회 헌법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제 6 판

2014년 6월 17-19일,
텍사스 주 휴스턴 시에서 개최되었던
제 42차 총회가 인준한 모든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미국장로교 총회 행정위원회
서기 사무실

보급처
미국장로교 제자사역에위원회

1700 North Brown Road, Suite 102
Lawrenceville, Georgia 30043-8143
1-800-283-1357

PUBLISHER'S INTRODUCTION TO THE 2014 REPRINT OF THE SIXTH EDITION

Amendment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the current year are indicated in *The Book of Church Order (BCO)* by a bullet in the margin beside the line where the change was made. In subsequent *BCO* reprints, marginal bullets for previous years are deleted. See the following page for a listing of changes in the *BCO*,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RAO)*, the Operating Manual for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JC), and the Corporate Bylaws.

The Stated Clerk will appreciate receiving notice of any corrections needed to this reprint of the Sixth Edition.

Editorial Note:

For a chronological history of changes to the BCO, RAO, and SJCM from 1990 to the present, see the list following the title page of the BCO. For a topical (chapter by chapter) listing of BCO changes, go to <http://www.pcahistory.org/bco/>.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for the work and mission of the Church. It may not be republish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Publication of any commentary or other reference work must include written permission for use of text from this document.

Copyright 2014 ©
by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ll rights reserved

2014년 제 6 판의 재인쇄에 붙이는 출판부 서론

금년 총회에서 채택된 수정안은 *교회헌법 (헌법)* 쪽 여백 변경된 줄 곁에 점으로 표시 되었습니다(역자 주: 한글역에는 빠져있고 밑줄로 대치됨). 후속되는 *헌법* 재인쇄 시, 전년도 여백의 점들은 삭제 되었습니다. *헌법*, *총회운영세칙 (총운세)*, *상임법사위원회 운영지침서 (상법위지침)*, *법인총관의 변경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총회 서기는 제 6 판의 재인쇄에 필요로 하는 어떤 정정안에 대한 통보도 감사함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1990년부터 지금까지 *헌법*, *총운세* 및 *상법위지침*에 가해진 변경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보려면, *헌법* 제목이 있는 쪽 다음에 나오는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각 장 별로) *헌법* 변경의 주제별 목록을 보려면, <http://www.pcahistory.org/bco/>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출판의 의도는 교단의 사역과 선교를 위한 것이다. 출판국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재출판 될 수 없다. 어떤 주해나 다른 참고용 출판물도 반드시 이 문서의 본문 사용을 위한 서면 허락을 포함시켜야 한다

Copyright 2014©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 사무실
모든 권권 소유

NOTE: The following *Book of Church Order (BCO)* amendments (which include changes to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 [RAO]*,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JC] Manual and Corporate Bylaws) were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 1990 – *BCO* 14-1.14; 19-10; 30-1,3; 34-7,8; 36-4,5; 37-1,2,3,7,8; 42-6; 45-1,4,5; 46-5
- 1991 – *BCO* 14-1.11; 14-1.12; 14-2; 15-2
- 1992 – *BCO* 10-3; 42-11; 43-3; 43-7
- 1993 – *BCO* 14-1.15; 15-4; 24-5
- 1994 – *BCO* 15-1; 21-4.d; 24-1; 37-9; *RAO* 4-3; 4-6; 5-1; 13-1; 13-6; 13-13.c.6; 13-14.d; 14-9.c; Corporate Bylaws Article VI, p. R-39 an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pp. R-29-31
- 1995 – *BCO* 13-10; 14-1.12; 32-18; *RAO* 15-3 and Corporate Bylaws Article IV,4 and VII,1
- 1996 – *BCO* 35-14; 42-5; 42-6; *RAO* 14 and Corporate Bylaws Article VI,5
- 1997 – *BCO* Preface II, 15-1, 15-4, 15-5, 19-1, 19-6, 38-4, 39-3, 46-2, 46-5
- 1998 – *BCO* 13-6; 15-5c; 38-3; *RAO* 14-7; Corporate Bylaws Article VI,5
- 1999 – *BCO* 13-5; 13-12; 20-2; 32-6; 33-2; 33-3; 34-4; *RAO* 4-18 [editorial changes to 15-3 and 16-3]; SJC Manual 6.2d; 8.3b; 19.10c; and 19.11 [editorial changes to 11.9a.2 and 18.7b]
- 2000 – *BCO* 13-12; 15-1; 24-1; 38-1; 43-5
- 2001 – *BCO* 14-1.12; Appendix B; Appendix H; *RAO* 4-5, 9-6, 15-2; Corporate Bylaws Article VI,1; VI,4; VI,5
- 2002 – *BCO* 12-5.e, 13-1, 14-1.12, 32-3, 32-4, 32-18, 35-7, 43-1, Appendix I; *RAO* 4-2, 4-3, 4-8, 4-9, 5-1, 6-4, 7-5.c, 13-1; SJC Manual 13.8.c.5, 6, 16, 18, 19-22 renumbered; Corporate Bylaws Article V,E; V,F; V,G; Article VI,1; VI,5
- 2003 – *BCO* 14-1.12b.4, 21-4, 21-5.6; *RAO* 13-1.6, 13-2, 13-5d, 13-6.e, 13-6.f.j renumbered; 14-3.e.5, 14-8; SJC Manual 13.10, 14.7, 15.7, 19.8.j, 19.8.k, 20.12, 21.2.f; Corporate Bylaws Article VI,1
- 2004 – *BCO* 58-5; SJC Manual 3.1, 11.7b, 12.3.b 2005 – *BCO* 24-3; 24-5; 24-6-9 relettered; 24-9 (now 24-10) 2006 – *BCO* 15-4; 24-1.b; 40-5; *RAO* 2006 revised edition 2007 – *RAO* 4-11; 11-1; 14-8.d; 19-2; SJC Manual 21-3
- 2008 – *BCO* 12-1, 12-2; *RAO* 14-6.k; 14-9.e, g; 14-9.f relettered; 15-8.c, e; 15-8.f-g relettered. [Editorial note added *RAO* 14-6.d and 15-6.i; editorial changes SJC 10.5; 11.6; 16.2; 17.2.(d); 18.1.(a); 21.5; 22.1]]
- 2009 – 21-4 (editorial numeration); 59-1, 6; *RAO* 14-9.h (3); 15-8.g (3); 19-4.d; SJC Manual 3.2; 8.4 (a), (b); 11.10; 11.11; 13.10; 14.7; 15.7; 16; 19.6; 19.7 (a), (c); 20.6
- 2010 – No *BCO* changes; no *RAO* changes; SJC Manual new Section 2 added with renumbering there- after; 3.1; Sections 6 & 7 deleted; Section 17 moved to replace original 11:8; 13.8; 14.2; 15.2; 19.5
- 2011 – *BCO* 5-2; 5-3; 5-4; 5-8; 5-9; 5-10; 5-11; add new 5-5 & renumber as needed; 9-7; 13-6; 15-2; 37-7; *RAO* 16-3.e.5; SJC Manual 10.7.a; 12.10; 13.7; 14.7; 17.8.k; 18.2.
- 2012 – *BCO* 19-11; *RAO* 5-4; 8-3; 10-8; 11-5; 12-1; 14-6.h; 15-1; OMSJC 8.1.a, b; 8.4; 18:12; 18:13
- 2013 – *BCO* 19-2; 20-3; 24-2; 25-4; 42-4; 43-2; 43-3; Appendix J added; *RAO* 8-5.b; 10-9 added; 16-10.a; OMSJC 3.7; 9.1; 10.7

참조: 하기의 (총회운영세칙 [총운세], 상임법사위원회지침 [상법위])과 법인정관에 추가된 변경 내용을 포함하는) 교회헌법 (헌법) 수정안은 아래 총회 연도에 채택되었다:

- 1990 년 - 헌법 14-1.14; 19-10; 30-1,3; 34-7,8; 36-4,5; 37-1,2,3,7,8; 42-6; 45-1,4,5; 46-5
- 1991 년 - 헌법 14-1.11; 14-1.12; 14-2; 15-2
- 1992 년 - 헌법 10-3; 42-11; 43-3; 43-7
- 1993 년 - 헌법 14-1.15; 15-4; 24-5
- 1994 년 - 헌법 15-1; 21-4 ㄹ; 24-1; 37-9; 총운세 4-3; 4-6; 5-1; 13-1; 13-6; 13-13 ㄷ. 6; 13-14 ㄹ; 14-9 ㄷ; 법인 정관 VI, R-39 쪽과 법인 설립 인가서, R-29-31 쪽.
- 1995 년 - 헌법 13-10; 14-1.12; 32-18; 총운세 15-3 과 법인 정관 IV,4 와 VII,1
- 1996 년 - 헌법 35-14; 42-5; 42-6; 총운세 14 와 법인 정관 VI,5
- 1997 년 - 헌법 서문 II, 15-1, 15-4, 15-5, 19-1, 19-6, 38-4, 39-3, 46-2, 46-5
- 1998 년 - 헌법 13-6; 15-5 ㄷ; 38-3; 총운세 14-7; 법인 정관 VI, 5
- 1999 년 - 헌법 13-5; 13-12; 20-2; 32-6; 33-2; 33-3; 34-4; 총운세 4-18 [편집 수정 15-3 과 16-3]; 상법위 지침서 6.2 ㄹ; 8.3 ㄴ; 19.10 ㄷ; 및 19.11 [편집 수정 11.9 (ㄱ) (2) 와 18.7 (ㄴ)]
- 2000 년 - 헌법 13-12; 15-1; 24-1; 38-1; 43-5
- 2001 년 - 헌법 14-1.12; 부록 나, 부록 아; 총운세 4-5, 9-6, 15-2; 법인 정관 VI,1, VI, 4 와 VI, 5
- 2002 년 - 헌법 12-5 ㄱ, 13-1, 14-1.12, 32-3, 32-4, 32-18, 35-7, 43-1, 부록 자; 총운세 4-2, 4-3, 4-8, 4-9, 5-1, 6-4, 7-5 ㄷ, 13-1; 상법위 지침 13.8 ㄷ.5, 6, 16, 18, 19-22 번호 다시 매김; 법인 정관 V,마; V,바; 정관 V,사; VI,1; VI,5
- 2003 년 - 헌법 14-1.12 ㄴ.4, 21-4, 21-5,6; 총운세 13-1.6, 13-2, 13-5 ㄹ, 13-6 ㄱ, 13-6 ㄷ-ㄷ 번호 다시 매김; 14-3.ㄱ.5, 14-8; 상법위 지침 13.10, 14.7, 15.7, 19.8.츠, 19.8.ㅋ, 20.12, 21.2.ㅁ; 법인 정관 VI,1
- 2004 년 - 헌법 58-5; 상법위 지침 3.1, 11.7 ㄴ, 12.3 ㄴ
- 2005 년 - 헌법 24-3; 24-5; 24-6-9 문장 다시 씌; 24-9 (현재 24-10)
- 2006 년 - 헌법 15-4; 24-1.ㄴ; 40-5; 총운세 2006 수정판
- 2007 년 - 총운세 4-11; 11-1; 14-8.ㄹ; 19-2; 상법위 지침 21-3
- 2008 년 - 헌법 12-1, 12-2; 총운세 14-6.ㅋ; 14-9.ㄱ, ㅅ; 14-9.ㅁ 문장 다시 씌; 15-8.ㄷ, ㄱ; 15-8.ㅁ-ㅅ 문장 다시 씌. [편집자 주 추가 총운세 14-6.ㄹ과 15-6.ㅈ; 편집자 수정 상법위 10.5; 11.6; 16.2; 17.2.(ㄹ); 18.1.(ㄱ); 21.5; 22.1]
- 2009 년 - 21-4 (편집자 번호 매김); 59-1, 6; 총운세 14-9.ㅇ(3); 15-8.ㅅ(3); 19-4.ㄹ; 상법위 지침 3.2; 8.4.(ㄱ), (ㄴ); 11.10; 11.11; 13.10; 14.7; 15.7; 16; 19.6; 19.7 (ㄱ), (ㄷ); 20.6
- 2010 년 - 헌법 변경 없음; 총운세 변경 없음; 상법위 지침에 2 항 새로 추가하고 그 후부터 번호 다시 매김; 3.1; 6 과 7 항 삭제; 17 항은 원래의 11.8; 13.8; 14.2; 15.2; 19.5 를 대치하도록 옮김.
- 2011 년 - 헌법 5-2; 5-3; 5-4; 5-8; 5-9; 5-10; 5-11; 5-5 를 새로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번호 다시 매김; 9-7; 13-6; 15-2; 37-7; 총운세 16-3.ㄱ.5; 상법위 지침 10.7.ㄱ; 13.7; 14.7; 17.8.ㅋ; 18.2
- 2012 년 - 헌법 19-11; 총운세 5-4; 8-3; 10-8; 11-5; 12-1; 14-6.ㅇ; 15-1; 상법위 지침 8.1.ㄱ, ㄴ; 8.4; 18.12; 18.13
- 2013 년 - 헌법 19-2; 20-3; 24-2; 25-4; 42-4; 43-3; 43-3; 부록 차; 총운세 8-5.b; 10-9; 16-10.a; 상법위 지침 3.7; 9.1; 10.7.

2014 – BCO 34-8; 37-6; 43-10; [editorial corrections: BCO 13-6; 39-3]; RAO 16-3.e.6; 16-3.e.7, 8 (renumbered); 16-6.c.1; [editorial corrections: RAO 11-5; 11-8]; [OMSJC editorial corrections: 18.11; 18.12.b.(4)]; References to Committee on Christian Education and Publications (CEP) changed to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CDM) – BCO 14-1.12; RAO 4-2; 5-1.b.1); 6-1; 14-1.2

May the Lord, the King and Head of the Church, bless and honor these efforts to make clearer our form of governance.

L. Roy Taylor
Stated Clerk of General Assembly

2014 - 헌법 34-8; 37-6; 43-10; [편집 수정: 헌법 13-6; 39-3]; 총운세 16-3.ㄱ.6; 16-3.ㄱ.7, 8 (번호 다시 매김); 16-6.ㄷ.1; [편집 수정: 총운세 11-5; 11-8]; [편집 수정: 상법위 지침서 18.11; 18.12.ㄴ.(4)]; 기독교교육 및 출판 위원회(CEP)에 관한 언급들은 제자 사역 위원회(CDM)에 관한 언급들로 변경되어야한다 -헌법 14-1.12; 총운세 4-2; 5-1.ㄴ.1); 6-1; 14-1.2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께서 우리의 정치 형태를 더욱 더 분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L. 로이 테일러
총회 서기

CONTENTS

PREFACE

- I. The King and Head of the Church
- II. Preliminary Principles
- III. The Constitution Defined

PART I -- FORM OF GOVERNMENT

CHAPTER 1	The Doctrine of Church Government
CHAPTER 2	The Visible Church Defined
CHAPTER 3	The Nature and Extent of Church Power
CHAPTER 4	The Particular Church
CHAPTER 5	The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hurch
CHAPTER 6	Church Members
CHAPTER 7	Church Officers - General Classification
CHAPTER 8	The Elder
CHAPTER 9	The Deacon
CHAPTER 10	Church Courts in General
CHAPTER 11	Jurisdiction of Church Courts
CHAPTER 12	The Church Session
CHAPTER 13	The Presbytery
CHAPTER 14	The General Assembly
CHAPTER 15	Ecclesiastical Commissions
CHAPTER 16	Church Orders - The Doctrine of Vocation
CHAPTER 17	Doctrine of Ordination
CHAPTER 18	Candidates for the Gospel Ministry

목 차

서문

- I.교회의 왕과 머리
- II. 기본 원리
- III.헌법의 정의

제 1 부 교 회 정 치

제 1 장	교회 정치 원리
제 2 장	가시적 교회의 정의
제 3 장	교회 권한의 본질과 범위
제 4 장	조직 교회
제 5 장	조직 교회 구성
제 6 장	교인
제 7 장	교회의 직원 - 일반적인 분류
제 8 장	장로
제 9 장	집사
제 10 장	교회 치리회 총론
제 11 장	치리회의 관할권
제 12 장	당회
제 13 장	노회
제 14 장	총회
제 15 장	교회의 전권위원회
제 16 장	교회의 직분 - 소명론
제 17 장	임직론
제 18 장	목사 후보생

CHAPTER 19	The Licensure of Candidates for the Gospel Ministry and Internship
CHAPTER 20	The Election of Pastors
CHAPTER 21	The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Ministers
CHAPTER 22	The Pastoral Relations
CHAPTER 23	The Dissolution of the Pastoral Relation
CHAPTER 24	Election,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Ruling Elders and Deacons
CHAPTER 25	Congregational Meetings
CHAPTER 26	Amending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PART II -- THE RULES OF DISCIPLINE

CHAPTER 27	Discipline - Its Nature, Subjects and Ends
CHAPTER 28	Discipline of Non-communing Members
CHAPTER 29	Offenses
CHAPTER 30	Church Censures
CHAPTER 31	The Parties in Cases of Process
CHAPTER 32	General Provisions Applicable to all Cases of Process
CHAPTER 33	Special Rules Pertaining to Process Before Sessions
CHAPTER 34	Special Rules Pertaining to Process Against a Minister (Teaching Elder)
CHAPTER 35	Evidence
CHAPTER 36	The Infliction of Church Censures
CHAPTER 37	The Removal of Censure
CHAPTER 38	Cases Without Process
CHAPTER 39	Modes in Which the Proceedings of Lower Courts Come Under the Supervision of Higher Courts

제 19 장	인허와 인턴십
제 20 장	담임목사의 선출
제 21 장	목사의 안수와 위임
제 22 장	목회적 관계
제 23 장	목회적 관계 해소와 은퇴절차
제 24 장	치리장로와 집사의 선출, 안수 및 임직
제 25 장	공동의회
제 26 장	교단 헌법의 개정

제 2 부 권 징 조 례

제 27 장	권징 - 그 본질과 대상과 목적
제 28 장	비수찬교인에 대한 권징
제 29 장	범죄
제 30 장	교회의 책벌들
제 31 장	재판 소송 당사자
제 32 장	모든 재판과정에 대한 일반규정
제 33 장	당회 재판과정에 대한 특별규정
제 34 장	목사(강도장로) 재판소송과정에 대한 특별규정
제 35 장	증거
제 36 장	시벌
제 37 장	해벌
제 38 장	재판을 하지 않는 소송건
제 39 장	하위 치리회의 재판절차가 상회의 감독을 받게 되는 형태

CHAPTER 40	General Review and Control
CHAPTER 41	References
CHAPTER 42	Appeals
CHAPTER 43	Complaints
CHAPTER 44	Vacated
CHAPTER 45	Dissents, Protests and Objections
CHAPTER 46	Jurisdiction

PART III -- THE DIRECTORY FOR THE WORSHIP OF GOD

CHAPTER 47	The Principles and Elements of Public Worship
CHAPTER 48	The Sanctification of the Lord's Day
CHAPTER 49	The Ordering of Public Worship
CHAPTER 50	The Public Reading of the Holy Scripture
CHAPTER 51	The Singing of Psalms and Hymns
CHAPTER 52	Public Prayer
CHAPTER 53	The Preaching of the Word
CHAPTER 54	The Worship of God by Offerings
CHAPTER 55	Confessing the Faith
CHAPTER 56	The Administration of Baptism (The Baptism of Infants and Children)
CHAPTER 57	The Admission of Persons to Sealing Ordinances
CHAPTER 58	The Administration of the Lord's Supper
CHAPTER 59	The Solemnization of Marriage
CHAPTER 60	The Visitation of the Sick
CHAPTER 61	The Burial of the Dead

제 40 장	일반적 검토와 통제
제 41 장	문의
제 42 장	상소
제 43 장	소원
제 44 장	삭제
제 45 장	이의와 항의 및 반대
제 46 장	관할구역

제 3 부 예 배 모 범

제 47 장	공예배의 원리와 기초
제 48 장	주일 성수
제 49 장	공예배에서의 질서
제 50 장	성경봉독
제 51 장	찬송
제 52 장	공기도
제 53 장	말씀선포
제 54 장	헌금으로 예배함
제 55 장	신양고백
제 56 장	세례식과 유아 및 어린이 세례
제 57 장	입교 예식
제 58 장	성찬 예식
제 59 장	결혼 예식
제 50 장	병자의 심방
제 61 장	장례식

OPTIONAL FORMS FOR PARTICULAR SITUATIONS

[NOTE: The following documents are for information.
They are not part of the Constitution of the PCA.]

Appendix A Marriage Service

Appendix B A Second Marriage Service

Appendix C A Funeral Service

Appendix D A Child's Funeral

Appendix E Service at the Grave

Appendix F The Dedication of a Church Building

Appendix G Suggested Forms for Use in Discipline

- I. Charge and Specifications
- II. Citation of Accused
- III. Citation of Witness
- IV. Notice of Intention to Appeal
- V. Appeal
- VI. Complaint

Appendix H Suggested Procedures for Presbytery Judicial
Commissions Acting as Appellate Courts

Appendix I Biblical Conflict Resolution

Appendix J Sample Form for Terms of Call

INDEX TO *BCO*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MANUAL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RPORATE BYLAWS

NAPARC AGREEMENTS

제 62 장

금식일과 감사일

제 63 장

신자의 가정생활

특별 예배 및 참고 양식

[주의: 다음의 자료들은 참고용이며, 미국장로교 헌법의
부분이 아닙니다.]

부록 (가) 결혼 예배

부록 (나) 재혼 예배

부록 (다) 장례 예배

부록 (라) 어린이 장례 예배

부록 (마) 하관 예배

부록 (바) 헌당 예배

부록 (사) 권징시 사용할 양식 제안

- I. 고소장과 설명서
- II. 피고인 소환장
- III. 증인 소환장
- IV. 상소 의지 통고서
- V. 상소장
- VI. 소원장

부록 (아) 노회 법사 위원회가 상소
처리회로서의 조치를 위한 절차 제안

부록 (자) 성경적 갈등 해소

부록 (차) 청빙서 양식 견본

헌법 색인

총회 운영 세칙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지침서

법인 등록 인가서

교단 정관

네이팍 (NAPARC) 협정서

PREFACE TO THE BOOK OF CHURCH ORDER

I. THE KING AND HEAD OF THE CHURCH

Jesus Christ, upon whose shoulders the government rests, whose name is called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of the increase of whose government and peace there shall be no end; who sits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upon His kingdom to order it and to establish it with judgment and justice from henceforth, even forever (Isaiah 9:6-7); having all power given unto Him in heaven and in earth by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t Him at His own right hand, far above all principality and power, and might, and dominion, and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is world, but also in that which is to come, and has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to be the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that filleth all in all (Ephesians 1:20-23); He, being ascended up far above all heavens, that He might fill all things, received gifts for His Church, and gave all offices necessary for the edification of His Church and the perfecting of His saints (Ephesians 4:10-13).

Jesus, the Mediator, the sole Priest, Prophet, King, Saviour, and Head of the Church, contains in Himself, by way of eminency, all the offices in His Church, and has many of their names attributed to Him in the Scriptures. He is Apostle, Teacher, Pastor, Minister, Bishop and the only Lawgiver in Zion.

It belongs to His Majesty from His throne of glory to rule and teach the Church through His Word and Spirit by the ministry of men; thus mediately exercising His own authority and enforcing His own laws, unto the edification and establishment of His Kingdom.

Christ, as King, has given to His Church officers, oracles and ordinances; and especially has He ordained therein His system of doctrine, government, discipline and worship, all of which are either expressly set down in Scripture, or by good and necessary inference may be deduced therefrom; and to which things He commands that nothing be added, and that from them naught be taken away.

Since the ascension of Jesus Christ to heaven, He is present with the Church by His Word and Spirit, and the benefits of all His offices are effectually applied by the Holy Ghost.

교회 헌법 서문

I. 교회의 왕과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 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사 9:6-7).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아버지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자기의 우편에 앉히시고, 그 분을 높이시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0-23); 그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은사들을 받으셔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직분을 주셨다 (엡 4:10-13).

예수는 중보자, 유일한 제사장, 선지자, 왕, 구세주,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존귀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을 자신 안에 두시며, 성경에는 그에게 돌려진 많은 직분들의 이름이 있다. 그는 사도요, 선생이요, 목자요, 목사요, 감독시며, 시온에서 율법을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 사람들의 사역을 수단으로 그의 영광의 보좌에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것은 그의 엄위에 속한다;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그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며 그 자신의 법을 강화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립하신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그의 교회의 직원들에게 말씀과 예식을 주셨다; 그는 특별히 교리, 다스림, 권징, 예배에 대한 그의 체제를 교회 안에 명하셨는데, 그 모든 체제는 성경에 명백히 나타났거나, 아니면 건전하고 필요한 추론으로 성경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아무 것도 가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때부터, 그는 그 분의 말씀과 영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직분의 혜택은 성령에 의해서 유효하게 적용된다.

II. PRELIMINARY PRINCIPLES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n setting forth the form of government founded upon and agreeable to the Word of God, reiterates the following great principles which have governed the formation of the plan:

1. God alone is Lord of the conscience and has left it free from any doctrines or commandments of men (a) which are in any respect contrary to the Word of God, or (b) which, in regard to matters of faith and worship, are not governed by the Word of God. Therefore, the rights of private judgment in all matters that respect religion are universal and inalienable. No religious constitution should be supported by the civil power further than may be necessary for protection and security equal and common to all others.
2. In perfect consistency with the above principle, every Christian Church, or union or association of particular churches, is entitled to declare the terms of admission into its communion and the qualifications of its ministers and members, as well as the whole system of its internal government which Christ has appointed.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it may, notwithstanding, err in making the terms of communion either too lax or too narrow; yet even in this case, it does not infringe upon the liberty or the rights of others, but only makes an improper use of its own.
3. Our blessed Saviour, for the edification of the visible Church, which is His body, has appointed officers not only to preach the Gospel and administer the Sacraments, but also to exercise discipline for the preservation both of truth and duty. It is incumbent upon these officers and upon the whole Church in whose name they act, to censure or cast out the erroneous and scandalous, observing in all cases the rules contained in the Word of God.
4. Godliness is founded on truth. A test of truth is its power to promote holiness according to our Saviour's rule, "By their fruits ye shall know them" (Matthew 7:20). No opinion can be more pernicious or more absurd than that which brings truth and falsehood upon the same level.

On the contrary, there is an inseparable connection between faith and practice, truth and duty. Otherwise it would be of no consequence either to discover truth or to embrace it.

II. 기본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헌법을 설정함에 있어서, 미국장로교는 헌법 구상을 지배하고 있는 대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재천명한다.

1.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ㄱ)어떤 점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ㄴ)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나 계명으로 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각자에게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며 양도될 수 없다. 어느 종교의 헌법도 필요에 따라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 동등하게 또 공통되게 베푸는 국가 정권의 보호와 안전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2. 상기 원리와 완전히 일치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회, 혹은 특정 교회들의 연합체, 혹은 협회체는 성례식에 참여할 조건, 교역자와 회원의 자격을 선언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교단의 내적 치리체제 전체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교회가 제반 조건을 너무 완만하게 혹은 너무 편협하게 만드는 과오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다른 교회들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의 권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3. 복되신 우리 구주께서 자신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성례를 집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정을 실시하게 하셨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규례를 따라, 잘못된 것들과 악행 하는 자들을 견책하거나 축출하는 일은 직분자들과 그 교회 이름 아래 생활하는 전체 교회의 의무이다.
4. 경건의 토대는 진리이다. 진리의 기준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 7:30) 하신 우리 구주의 규례대로 성결을 촉진 시키는 능력에 있다. 진리와 허위를 같은 수준에 두는 견해 보다 유해하고 불합리한 것은 없다.

반면에 신앙과 행위, 진리와 본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나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PREFACE

5. While, under the conviction of the above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make effective provision that all who are admitted as teachers be sound in the faith, there are truths and forms with respect to which men of good character and principles may differ. In all these it is the duty both of private Christians and societies to exercise mutual forbearance toward each other.
6. Though the character,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church officers are laid down in the Holy Scriptures, as well as the proper method of officer investiture, the power to elect persons to the exercise of authority in any particular society resides in that society.
7. All church power, whether exercised by the body in general, or by representation, is only ministerial and declarative since the Holy Scriptures are the only rule of faith and practice. No church judicatory may make laws to bind the conscience. All church courts may err through human frailty, yet it rests upon them to uphold the laws of Scripture though this obligation be lodged with fallible men.
8. Since ecclesiastical discipline must be purely moral or spiritual in its object, and not attended with any civil effects, it can derive no force whatever, but from its own justice, the approbation of an impartial public, and the countenance and blessing of the great Head of the Church.

If the preceding scriptural principles be steadfastly adhered to, the vigor and strictness of government and discipline, applied with pastoral prudence and Christian love, will contribute to the glory and well-being of the Church.

III. THE CONSTITUTION DEFINED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which is subject to and subordinate to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 inerrant Word Of God, consists of its doctrinal standards set forth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ogether with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and the *Book of Church Order*, comprising the Form of Government, the Rules of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for Worship; all as adopted by the Church.

서 문

5. 상기 원리의 확신하에, 교사로 인정된 자들은 모두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효과적인 조항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지만, 훌륭한 성품과 원리를 가진 사람들도 진리와 [그 진리를 나타내는] 형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서 상호 관대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개인 신자와 단체 모두의 의무이다.
6. 비록 직원 임직에 적합한 방법뿐만 아니라, 교회 직원의 품성, 자격과 권한은 성경 속에 명시되어 있지만, 어느 특정 단체 내에서 권위를 행사할 인물을 선출하는 권한은 그 단체에 속해 있다.
7. 교회의 모든 권한은, 그것을 교회 전체가 행사하든지 아니면 대표자들이 행사하든지 간에,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사역적이고 선언적이다. 교회의 어떤 재판국도 양심을 속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인간의 약점 때문에 교회의 모든 처리회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의무가 비록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져있을지라도 성경의 법도를 준수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8. 교회의 권징은 그 목적에 있어서 순수하게 도덕적이거나 영적이어야 하며 어떤 민사상의 효력도 따라서는 안 되므로, 다른 어떤 힘에 의한 것도 아닌, 그 자체의 정의와 편견 없는 대중의 찬동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의 후원과 축복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만일 상기의 성경적 원리들이 확고히 준수된다면, 목자의 사리 분별과 기독교적 사랑으로 적용된 처리와 권징의 구속력과 엄격함은 교회의 영광과 안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III. 헌법의 정의

미국장로교회 헌법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지배를 받고 중속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설정된 교리적 기준과 일치하고,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으로 구성된다; 모든 것은 교회에 의해서 채택된 대로이다.

PART I

FORM OF GOVERNMENT

CHAPTER 1

The Doctrine of Church Government.

1-1. The scriptural form of church government, which is representative or presbyterian, is comprehended under five heads: a. The Church; b. Its members; c. Its officers; d. Its courts; e. Its orders.

1-2. The Church which the Lord Jesus Christ has erected in this world for the gathering and perfecting of the saints is His visible kingdom of grace, and is one and the same in all ages.

1-3. The members of this visible Church catholic are all those persons in every nation,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who make profession of thei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promise submission to His laws.

1-4. The officers of the Church, by whom all its powers are administered, are,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eaching and ruling elders and deacons.

1-5. Ecclesiastical jurisdiction is not a several, but a joint power, to be exercised by presbyters in courts. These courts may have jurisdiction over one or many churches, but they sustain such mutual relations as to realize the idea of the unity of the Church.

1-6. The ordination of officers is ordinarily by a court, except in the case of ordination by a presbytery's evangelist (see *BCO* 8-6).

1-7. This scriptural doctrine of Presbytery is necessary to the perfection of the order of the visible Church, but is not essential to its existence.

제 1 부

교회 정치

제 1 장.

교회 정치 원리

1-1. 교회 정치의 성경적 형태는 대표제도 혹은 장로제도이며,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ㄱ. 교회; ㄴ. 교인; ㄷ. 교회 직원; ㄹ. 교회 치리회; ㅁ. 교회 규례.

1-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모아 온전케 하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는 그의 가시적 은혜의 나라이며, 또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이며 동일하다.

1-3. 이 가시적인 보편적 교회의 교인들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의 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다.

1-4. 교회의 모든 권한을 집행하는 교회의 직원들은, 성경에 의거하여, 강도장로와 치리장로와 집사들이다.

1-5. 교회의 관할권은 개별적인 권한이 아니라, 치리회들의 장로들에 의해 행사되는 공동의 권한이다. 이 치리회들은 한 지교회나 다수의 지교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들은 상호 관계를 유지하여 교회의 통일성을 실현한다.

1-6. 직원의 안수는, 노회가 [허락한] 전도 목사가 안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치리회에 의한다(*교회헌법* 8-6 참조).

1-7. 장로회의 이 성경적 교리는 가시적 교회의 질서를 온전케 하는데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CHAPTER 2

The Visible Church Defined

2-1. The Visible Church before the law, under the law, and now under the Gospel, is one and the same and consists of all those who make profession of thei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2-2. This visible unity of the body of Christ, though obscured, is not destroyed by its division into different denominations of professing Christians; but all of these which maintain the Word and Sacraments in their fundamental integrity are to be recognized as true branch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2-3. It is according to scriptural example that the Church should be divided into many individual churches.

제 2 장.

가시적 교회의 정의

2-1. 율법 이전에, 율법 아래, 그리고 현재 복음 아래 있는 가시적 교회는 하나이며 동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2-2. 그리스도의 몸의 가시적 통일성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파들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파괴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말씀과 성례를 근본적으로 정직하게 유지하는 모든 교파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 지체들로 인정되어야 한다.

2-3. 교회가 여러 지교회로 나뉘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모범에 의한다.

CHAPTER 3*The Nature and Extent of Church Power*

3-1. The power which Christ has committed to His Church vests in the whole body, the rulers and those ruled, constituting it a spiritual commonwealth. This power, as exercised by the people, extends to the choice of those officers whom He has appointed in His Church.

3-2. Ecclesiastical power, which is wholly spiritual, is twofold. The officers exercise it sometimes severally, as in preaching the Gospel, administering the Sacraments, reproofing the erring, visiting the sick, and comforting the afflicted, which is the power of order; and they exercise it sometimes jointly in Church courts, after the form of judgment, which is the power of jurisdiction.

3-3. The sole functions of the Church, as a kingdom and government distinct from the civil commonwealth, are to proclaim, to administer, and to enforce the law of Christ revealed in the Scriptures.

3-4. The power of the Church is exclusively spiritual; that of the State includes the exercise of force.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derives from divine revel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must be determined by human reason and the course of providential events. The Church has no right to construct or modify a government for the State, and the State has no right to frame a creed or polity for the Church. They are as planets moving in concentric orbits: "Render un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Matthew 22:21).

3-5. The Church, with its ordinances, officers and courts, is the agency which Christ has ordained for the edification and government of His people, for the propagation of the faith, and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3-6. The exercise of ecclesiastical power, whether joint or several, has the divine sanction when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s enacted by Christ, the Lawgiver, and when put forth by courts or by officers appointed thereunto in His Word.

제 3 장.

교회 권한의 본질과 범위

3-1.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위임하신 권한은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 전체, 즉 치리 하는 자들과 치리 받는 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행사되는 이 권한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임명하신 그 직원들의 선택에까지 확대된다.

3-2. 교회 권한은 온전히 영적인 것으로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교회의 직원들은 때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성례를 집행하는 일, 그릇된 자를 책망하는 일, 병든 자를 심방 하는 일, 역경에 처한 자를 위로하는 일로서 질서의 권한이다; 때로는 그들이 재판의 형식에 따라 교회 치리회에서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이는 재판의 권한이다.

3-3.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요 통치기구로서의 교회의 유일한 기능들은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하고 시행하며 집행하는 데에 있다.

3-4. 교회의 권한은 오직 영적일 뿐이다; 국가의 권한은 강제력을 포함한다. 교회의 헌법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며, 국가의 헌법은 인간 이성¹⁾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의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교회는 국가를 위한 통치 기구를 구성, 또는 변경할 권리가 없으며, 국가는 교회를 위해서 신조나 정책을 만들 권리가 없다. 그들은 동심원적²⁾ 제도를 운영하는 유성들과 같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3-5. 교회는, 자체 예식과 직원들과 치리회들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교화와 치리, 신앙의 전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제정하신 대리 기관이다.

3-6. 교회의 권한 행사는, 공동으로 하든 혹은 개별적으로 하든, 입법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법도와 일치할 때, 또 그의 말씀 안에서 임명된 치리회나 직원들에 의해서 행사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CHAPTER 4*The Particular Church*

- 4-1.** A particular church consists of a number of professing Christians, with their children, associated together for divine worship and godly living, agreeable to the Scriptures, and submitting to the lawful government of Christ's kingdom.
- 4-2.** Its officers are its teaching and ruling elders and its deacons.
- 4-3.** Its jurisdiction, being a joint power, is lodged in the church Session, which consists of its pastor, pastors, its associate pastor(s) and its ruling elders.
- 4-4.** The ordinances established by Christ, the Head, in His Church are prayer; singing praises; reading, expounding and preaching the Word of God; administering the Sacraments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public solemn fasting and thanksgiving; catechizing; making offerings for the relief of the poor and for other pious uses; and exercising discipline; the taking of solemn vows, and the ordination to sacred office.
- 4-5.** Churches without teaching elders ought not to forsake the assembling of themselves together, but should be convened by the Session on the Lord's Day, and at other suitable times, for prayer, praise, the presenting and expounding of the Holy Scriptures, and exhortation, or the reading of a sermon of some approved minister. In like manner, Christians whose lot is cast in destitute regions ought to meet regularly for the worship of God.

제 4 장.

조직 교회

4-1. 조직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함께 모여, 성경 말씀에 동의하며, 그리스도의 나라의 합법적 통치에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4-2. 조직 교회의 직원은 강도장로와 치리장로와 집사들이다.

4-3. 교회의 재판권은 공동의 권한이며, 그 교회의 담임목사, 목사들, 부목사(들), 치리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 위임된다.

4-4. 교회의 머리에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제정하신 법도는 기도; 찬양;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파하는 일; 세례와 성찬 예식을 집행하는 일; 엄숙한 공적 금식과 감사; 교리 문답 교육; 빈민 구제와 기타 경건한 사역을 위한 헌금; 권징 실시; 엄숙한 서약; 그리고 신성한 직무를 위한 안수이다.

4-5. 강도장로가 없는 교회들은 집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당회는 주일과 기타 필요한 때에 기도, 찬송, 거룩한 말씀의 봉독과 강해, 권면 혹은 어떤 승인된 목회자의 설교를 읽는 것을 위하여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빈곤한 지역에 살게 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야 한다.

CHAPTER 5

The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hurch

A. Mission Churches

5-1. A mission church may be properly described in the same manner as the particular church is described in *BCO* 4-1. It is distinguished from a particular church in that it has no permanent governing body, and thus must be governed or supervised by others. However, its goal is to mature and be organized as a particular church as soon as this can be done decently and in good order.

5-2. Ordinarily, the responsibility for initiation and oversight of a mission church lies with a Presbytery, exercised through its committee on Mission to North America, or by a Session, in cooperation with Presbytery's committee on Mission to North America. However,

- a. if an independent gathering of believers desires to form a congreg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they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Presbytery a written request to come under Presbytery oversight. Upon approval of said request, the gathering will be assigned a temporary government (*BCO* 5-3), which government shall take steps to oversee the election of a pastor according to *BCO* 5-9.f.(1). The Presbytery will follow *BCO* 13-8 when it applies.
- b. if the mission church is located outside the bounds of a Presbytery, the responsibility may be exercised through the General Assembly's Committee on Mission to North America or Committee on Mission to the World, as the case may be, according to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In such a case the powers of the Presbytery in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be exercised by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its appropriate committee.

5-3. The mission church, because of its transitional condition, requires a temporary system of governmen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at its own discretion, Presbytery may provide for such government in one of several ways:

- a. Appoint an evangelist as prescribed in with *BCO* 8-6.
- b. Cooperate with the Session of a particular church in arranging a

제 5 장.

조직 교회 구성

가. 미조직 교회

5-1. 미조직 교회는 교회헌법 4-1 에 설명된 조직 교회와 같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미조직 교회는 항존 치리 기구가 없어서 다른 기관에 의해 다스려지고 감독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교회와 구별된다. 그러나 미조직교회의 목표는 가능한 한 품위 있게 또 건전한 질서 안에서 신속히 성장하여 조직 교회가 되는 것이다.

5-2. 보통 미조직 교회를 설립하는 것과 감독하는 책임은 한 노회에 있다. 노회는 그 노회 국내 선교위원회 위원회를 통하거나 그 노회 국내 선교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는 어떤 당회를 통해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 ㄱ. 만일 독립으로 모이는 믿는자들이 미국장로회의 회중을 형성하기를 원하면, 그들은노회감독 하에 들어 올 것을 적합한 노회에서면으로 요청 하여야 한다. 언급된 요청이 승인되면, 그 모임에 임시 치리회(헌법 5-3)가 배정되고, 치리회는 헌법 5-9.브(1)에 의한 목사 선출을 감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적용시, 노회는 헌법 13-8 을 따른다.
- ㄴ. 만일 미조직 교회가 노회의 경계 밖에 위치해 있다면, 그 책임은 총회운영세칙에 따라 총회의 국내선교위원회 혹은 세계선교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된다. 그런 경우 다음에 나오는 규정을 따르는 노회의 권한은 총회가 총회의 적절한 위원회를 통해 행사한다.

5-3. 미조직 교회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시 치리 기구가 요구된다. 미조직 교회의 형편과 재량에 따라, 노회는 여러 방법 중의 한 치리 형태를 부여할 수 있다:

- ㄱ. 교회헌법 8-6 에 규정된 대로 한 전도 목사를 임명한다.
- ㄴ. 한 조직 교회의 당회와 미조직교회를 모자결연 시켜 협동하게 한다. 이 때 이 당회는 그 미조직 교회의 임시 치리 기구로서 봉사할 수 있다.

mother-daughter relationship with a mission church. The Session may then serve as the temporary governing body of the mission church.

- c. Appoint a *BCO* 15-1 commission to serve as a temporary Session of the mission church. When a minister of the Presbytery has been approved to serve as pastor of the mission church, he shall be included as a member of the commission and serve as its moderator.

5-4. Pastoral ministry for the mission church may be provided:

- a. by a minister of the Presbytery called by Presbytery to serve as pastor, or
- b. by stated, student, or ruling elder supply (*BCO* 22-5, -6), or
- c. by a series of qualified preachers approved by the temporary government (*BCO* 12-5.e).

5-5 The temporary government shall receive members (*BCO* 12-5.a) into the mission church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BCO* 57 so far as they may be applicable. As members of the mission church those received are communing or non-communing membe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a. If there is a minister approved by Presbytery to serve the mission church as its pastor (*BCO* 5-4.a), each member so received shall be understood to assent to the call of that minister and to affirm the promises made to the pastor in *BCO* 21-10.
- b. Meetings of the members of the mission church shall be govern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BCO* 25 so far as they may be applicable.

5-6. Mission churches and their members shall have the right of judicial process to the court having oversight of their temporary governing body.

5-7. Mission churches shall maintain a roll of communicant and non-communicant members, in the same manner as, but separate from, other particular churches.

5-8. It is the inten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that mission churches enjoy the same status as particular churches in relation to civil government.

- ㉔. 미조직 교회의 임시 당회로 봉사할 **헌법 15-1** 전권위원회를 임명한다. 노회의 목회자가 미조직교회의 목사로 봉사 하도록 인준을 받았을 때, 그는 전권위원회의 회원에 포함되며 그 전권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한다.

5-4. 미조직교회를 위한 목회 사역은 다음과 같이 공급된다:

- ㉑. 노회로부터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해당 노회의 목사에게 의해서, 혹은
- ㉒. 현직, 학생, 혹은 임시 치리 장로에 의해서 (**헌법 22-5, -6**), 혹은
- ㉓. 임시 치리회가 인준한 자격 있는 일련의 설교자들에 의해서 (**헌법 12-5.口**).

5-5. 임시 치리회는 **헌법 57** 의 규정을 따라서 규정이 적용 될 수 있는 한 미조직교회에 교인들을 받아 들인다 (**헌법 12-5.㉑**). 미조직교회의 교인들로서 받아들여진 그들은 미국장로회의 수찬 혹은 비수찬 교인이다.

- ㉑. 만일 노회가 미조직 교회를 섬기도록 그 교회의 목사로 인준한 목회자가 있다면 (**헌법 5-4.㉑**), 그렇게 받아들여진 각 교인은 그 목회자를 청빙하기로 동의 한 것과 **헌법 21-10** 에 있는대로 목사에게 약속한 것을 확증한 것임을 이해 하여야 한다.
- ㉒. 미조직교회 교인들의 모임은 **헌법 25** 의 규정이 적용되는 한 그 규정을 따라서 치리를 받아야 한다.

5-6. 미조직 교회와 그 교인들은 그들의 임시 치리 기구를 감독하고 있는 치리회에 재판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

5-7. 미조직 교회는 다른 조직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수찬교인과 비수찬 교인의 명단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명단은 다른 조직 교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5-8. 미조직 교회들이 정부 기관과의 관계에서 조직 교회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미국장로회의 의도이다.

B. The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hurch

- 5-9.** A new church can be organized only by the authority of Presbytery.
- a. A Presbytery should establish standing rules setting forth the prerequisites that qualify a mission church to begin the organization process, e.g., the minimum number of petitioners and the level of financial support to be provided by the congregation. The number of officers sufficient to constitute the quorum for a session shall be necessary to complete the organization process.
 - b. The temporary government of the mission church shall oversee the steps necessary for organization.
 - c. When the temporary government determines that among the members of the mission congregation there are men who appear qualified as officers, the nomination process shall begin and the election conclude following the procedures of *BCO* 24 so far as they may be applicable.
 - d. The election of officers shall normally take place at least two weeks prior to the date of the organization service. However, the effective date of service for the newly elected officers shall be upon the completion of the organization service.
 - e. If deacons are not elected, the duties of the office shall devolve upon the session, until deacons can be secured.
 - f. If there is a minister approved by Presbytery to serve the mission church as its pastor, and members of the mission church have been received according to *BCO* 5-5, the temporary session shall call a congregational meeting at which the congregation may, by majority vote, call the organizing pastor to be their pastor without the steps of *BCO* 20. If no such minister has been appointed, or the minister or congregation choose not to continue the pastoral relationship of the newly organized church, a pastor shall be called as follows:
 - (1) The temporary government shall oversee the election of a pastor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BCO* 20 so far as they are applicable. If a candidate is to be proposed before the organization, the congregational meeting to elect a pastor shall take place early enough for Presbytery to consider and approve the pastor's call prior to the service of organization. This may be the same meeting called for the election of other officers.
 - (2) The ordination and/or installation shall b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BCO* 21 so far as they are applicable. The service may take place at the service of organization.
 - g. In order to proceed to organization as a particular church the members of the mission church shall sign a petition to Presbytery requesting the same

나. 조직 교회 구성

- 5-9. 새 교회는 노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조직될 수 있다.
- ㄱ. 노회는 미조직 교회가 조직 과정을 시작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필수 선행 조건들을 규정하는 기준법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최소 청원자의 수와 회중이 공급할 재정 후원의 수준이다. 조직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당회를 구성하기 위한 정족수를 이루기에 충분한 직분자들의 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 ㄴ. 미조직교회의 임시 치리회는 조직을 위하여 필요한 단계들을 감독한다.
 - ㄷ. 임시 치리회가 미조직 회중의 교인들 중에서 직분자로서 자격이 있는 남자들이 나타났다고 결정을 하면, 헌법 24 의 절차를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한 공천 과정을 시작하고 선거를 종료해야 한다.
 - ㄹ. 임직자 선거는 적어도 조직 예배 일정 두 주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직분자들의 봉사가 유효한 날은 조직 예배가 완료 된 때부터이다.
 - ㅁ. 만일 집사들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그 직분의 의무는 집사들이 확보될 때까지 당회에 양도된다.
 - ㅂ. 만일 노회가 미조직 교회를 섬기도록 그 교회의 목사로 인준한 목사가 있다면, 그리고 미조직 교회의 교인들이 헌법 5-5 를 따라 받아 들여졌다면, 임시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에서 회중은, 과반수의 투표로, 헌법 20 의 절차 없이 [교회를] 조직하는 목사를 그들의 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만일 그런 목사가 임명된 적이 없으면, 혹은 목회자나 회중이 새로 조직된 교회와 목회 연고를 계속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이 청빙 될 수 있다:
 - (1) 임시 치리회는 반드시 헌법 20 의 규정이 적용되는 한 규정에 따라 목사 선거를 감독 하여야 한다. 만일 후보자가 조직 전에 추천 되었으면, 목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는 노회가 조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회자의 청빙을 고려하고 인준하기에 충분하도록 일찍 소집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직분자들의 선출을 위하여 소집된 같은 회의일 수도 있다.
 - (2) 안수와/혹 장립은 헌법 21 의 규정이 적용되는 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예식은 조직 예배시 시행될 수 있다.
 - ㅅ. 조직 교회로 조직 [절차를] 진행 시키기 위하여 미조직 교회의 교인들은 노회에 같은 내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명해서 보내야 한다.

- h. Upon Presbytery's approval of the petition, Presbytery shall appoint an organizing commission and shall set the date and time of the organization service.
- i. At the service of organization the following elements shall be included in the order deemed by the organizing commission to be appropriate:
 - (1) The organizing commission shall ordain and/or install ruling elders and/or deacon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BCO* 24-6 so far as they may be applicable.
 - (2) If a pastor is being ordained and/or installed at the service, the organizing commission shall ac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BCO* 21 so far as they may be applicable.
 - (3) A member of the organizing commission shall require communicant members of the mission church present to enter into covenant, by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 affirmatively, with uplifted hand:

Do you, in reliance on God for strength, solemnly promise and covenant that you will walk together as a particular church, on the principles of the faith and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that you will be zealous and faithful in maintaining the purity and peace of the whole body?

- (4) A member of the organizing commission shall then say:

I now pronounce and declare that you are constituted a church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the faith and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5-10. Upon organization, the newly elected session should meet as soon as is practicable to elect a stated clerk and formulate a budget. If there is no pastor, the session may elect as moderator one of their own number or any teaching elder of the Presbytery with Presbytery's approval. Further, if there is no pastor, action shall be taken to secure, as soon as practicable, the regular administration of Word and Sacraments."

- 나. 노회가 청원서를 인준하면, 노회는 조직 전권위원회를 임명하고 조직 예배 날자와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 ㉔. 조직 예배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조직 전권위원회가 보기에 적절한 순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직 전권위원회가 헌법 24-6 의 규정이 적용되는 한 규정에 따라 치리 장로들과/혹 집사들을 안수하고/혹 장립하여야 한다.
 - (2) 만일 목사가 예배시 안수를 받고/혹 장립되면, 조직 전권위원회는 헌법 21 의 규정이 적용되는 한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3) 조직 전권위원회의 한 회원이 출석한 미조직교회 세례 교인들에게, 손을 들고, 다음의 질문을 확정적으로 대답함으로써, 언약을 맺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여러분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미국장로회 신앙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조직 교회로서 일심동체가 되어 행동하며, 또 교회 전체의 순결과 화평을 유지하는데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기로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 (4) 그 후 조직 전권위원회의 한 회원이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나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미국장로회 신앙과 헌법에 따라 조직 교회가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공포합니다. 아멘.

5-10. 조직이 되면, 새로 선출된 당회는 반드시 실용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열어 당회 서기를 선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없으면, 당회는 당회원 중에 한 사람 혹은 노회의 인준을 받아 노회 강도 장로 중 한사람을 의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나아가서, 만일 목사가 없으면, 실용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말씀과 성례의 규칙적 시행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CHAPTER 6

Church Members

6-1. The children of believers are, through the covenant and by right of birth, non-communing members of the church. Hence they are entitled to Baptism, and to the pastoral oversight, instruction and government of the church, with a view to their embracing Christ and thus possessing personally all benefits of the covenant.

6-2. Communing members are those who have made a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have been baptized, and have been admitted by the Session to the Lord's Table. (See *BCO* 46-4 for associate members).

6-3. All baptized persons are entitled to the watchful care, instruction and government of the church, even though they are adults and have made no profession of their faith in Christ.

6-4. Those only who have made a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have been baptized, and admitted by the Session to the Lord's Table, are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the church. (See *BCO* 57-4 and 58-4)

제 6 장.

등록 교인

6-1.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또 생득권에 의해서 그 교회의 비수찬교인이 된다. 그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언약의 모든 혜택을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세례와 목사의 감독과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를 받을 자격을 부여 받는다.

6-2. 수찬 교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당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다. (준회원에 대해서는 교회헌법 46-4 참조)

6-3.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성인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을 지라도, 교회의 조심스러운 보호와 가르침과 치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6-4.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당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교회의 모든 권리와 특권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 (교회헌법 57-4 와 58-4 참조)

CHAPTER 7

Church Officers-General Classification

7-1. Under the New Testament, our Lord at first collected His people out of different nations, and united them to the household of faith by the ministry of extraordinary officers who received extraordinary gifts of the Spirit and who were agents by whom God completed His revelation to His Church. Such officers and gifts related to new revelation have no successors since God completed His revelation at the conclusion of the Apostolic Age.

7-2. The ordinary and perpetual classes of office in the Church are elders and deacons. Within the class of elder are the two orders of teaching elders and ruling elders. The elders jointly have the government and spiritual oversight of the Church, including teaching. Only those elders who are specially gifted, called and trained by God to preach may serve as teaching elders. The office of deacon is not one of rule, but rather of service both to the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of the people. In accord with Scripture, these offices are open to men only.

7-3. No one who holds office in the Church ought to usurp authority therein, or receive any official titles of spiritual preeminence, except such as are employed in the Scriptures.

제 7 장.

교회의 직원 - 일반적인 분류

7-1.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에 여러 민족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모으셨고, 또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특별한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계시를 완성하게 한 대행자들이다. 새 계시와 관련된 그런 직분들과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시대를 종결하실 때 자신의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계승자가 없다.

7-2. 교회 내의 보통 항존직은 장로들과 집사들이다. 장로직에는 강도장로와 치리장로 두 종류가 있다. 장로들은,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연합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영적으로 감독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도록 특별하게 은사와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장로들만이 강도장로로서 봉사할 수 있다. 집사의 직책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육간에 필요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직책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허락된다.

7-3.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그로 인해 월권해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사용된 칭호 이외에 직분에 대한 어떤 영적 존칭을 받아서도 안 된다.

CHAPTER 8

The Elder

8-1. This office is one of dignity and usefulness. The man who fills it has in Scripture different titles expressive of his various duties. As he has the oversight of the flock of Christ, he is termed *bishop* or *pastor*. As it is his duty to be grave and prudent, an example to the flock, and to govern well in the house and Kingdom of Christ, he is termed *presbyter* or *elder*. As he expounds the Word, and by sound doctrine both exhorts and convinces the gainsayer, he is termed *teacher*. These titles do not indicate different grades of office, but all describe one and the same office.

8-2. He that fills this office should possess a competency of human learning and be blameless in life, sound in the faith and apt to teach. He should exhibit a sobriety and holiness of life becoming the Gospel. He should rule his own house well and should have a good report of them that are outside the Church.

8-3. It belongs to those in the office of elder, both severally and jointly, to watch diligently over the flock committed to his charge, that no corruption of doctrine or of morals enter therein. They must exercise government and discipline, and take oversight not only of the spiritual interests of the particular church, but also the Church generally when called thereunto. They should visit the people at their homes, especially the sick. They should instruct the ignorant, comfort the mourner, nourish and guard the children of the Church. They should set a worthy example to the flock entrusted to their care by their zeal to evangelize the unconverted and make disciples. All those duties which private Christians are bound to discharge by the law of love are especially incumbent upon them by divine vocation, and are to be discharged as official duties. They should pray with and for the people, being careful and diligent in seeking the fruit of the preached Word among the flock.

8-4. As the Lord has given different gifts to men and has committed to some special gifts and callings, the Church is authorized to call and appoint some to labor as teaching elders in such works as may be needful to the Church. When a teaching elder is called to such needful work, it shall be incumbent upon him to make full proof of his ministry by disseminating the Gospel for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 He shall make a report to the Presbytery at least once each year.

제 8 장.

장로

8-1. 이 직책은 존엄하고 유용한 것이다. 성경에서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은 그의 여러 가지 의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른 칭호를 가진다. 그가 그리스도의 양떼를 감독할 때, 감독 혹은 목자로 불리어 진다. 그의 직무가 그러하듯이 그가 엄숙하고 신중하여 양떼들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왕국에서 잘 다스릴 때, 청지기 혹은 장로로 불린다. 그가 말씀을 해설하고, 반박하는 자를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킬 때 교사로 불려진다. 이 칭호들은 직분의 다른 등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요 같은 직분을 묘사하는 것이다.

8-2.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인간의 지식에 어느 정도 능통하며, 흠없는 생활을 하며, 믿음이 건전하며,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온건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야만 한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교회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아야 한다.

8-3. 장로직은 개별적으로나 연합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부지런히 감독하여, 교리적 혹은 도덕적 부패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로들은 다스리는 일과 권징하는 일을 하여야 하고, 지교회는 물론, 상회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반적인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 감독해야 한다. 장로들은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되 특별히 병자를 방문하여야 한다. 장로들은 무지한 자들을 지도하며,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며, 교회의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장로들은 열성으로 불신자를 전도하고 제자를 만듦으로 그들의 보호 아래 맡겨진 양 떼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하도록 사랑의 법으로 묶어 놓은 모든 의무들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장로들에게 부과되어 있고, 그 모든 의무들은 직책상의 의무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장로들은 교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전파되어진 말씀의 열매들을 양무리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찾아야 한다.

8-4.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이에게는 특별한 은사와 소명을 주셨으므로, 교회는 그들을 불러서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강도장로로 임명할 권한이 있다. 강도장로가 그와 같은 필요한 일에 불리움을 받았을 때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의 사역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는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5. When a man is called to labor as a teaching elder, it belongs to his order, in addition to those functions he shares with all other elders, to feed the flock by reading, expounding and preaching the Word of God and to administer the Sacraments. As he is sent to declare the will of God to sinners, and to beseech them to be reconciled to God through Christ, he is termed *ambassador*. As he bears glad tidings of salvation to the ignorant and perishing, he is termed *evangelist*. As he stands to proclaim the Gospel, he is termed *preacher*. As he dispenses the manifold grace of God, and the ordinances instituted by Christ, he is termed *steward* of the mysteries of God.

8-6. When a teaching elder is appointed to the work of an evangelist, he is commissioned to preach the Word and administer the Sacraments in foreign countries or the destitute parts of the Church. The Presbytery may by separate acts from that by which it commissioned him, entrust to the evangelist for a period of twelve months the power to organize churches, and, until there is a Session in the church so organized, to instruct, examine, ordain, and install ruling elders and deacons therein, and to receive or dismiss members.

8-7. A Presbytery may, at its discretion, approve the call of a teaching elder to work with an organization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rovided that he be engaged in preaching and teaching the Word, that the Presbytery be assured he will have full freedom to maintain and teach the doctrine of our Church, and that he report at least annually on his work. As far as possible, such a teaching elder shall be a member of the Presbytery within whose bounds he labors. (See *BCO* 20-1.)

8-8. As there were in the Church under the law, elders of the people for the government thereof, so in the Gospel Church, Christ has furnished others besides ministers of the Word with gifts and commission to govern when called thereunto, who are called *ruling elders*.

8-9. Elders being of one class of office, ruling elders possess the same authority and eligibility to office in the courts of the Church as teaching elders. They should, moreover, cultivate zealously their own aptness to teach the Bible and should improve every opportunity of doing so.

8-5. 어떤 이가 강도장로로 사역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 다른 모든 장로들과 공유하는 기능에 추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설하고, 설교함으로 양무리를 먹이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그의 권한에 속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라 불린다. 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무지하여 멸망할 자들에게 전파하는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라 불린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설교자라 불린다. 그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나누어 주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시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 불린다.

8-6. 어느 강도장로가 전도목사의 임무를 하도록 임명되었을 때, 그는 외국에서나 교회가 없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것이다. 노회는 그를 전도목사로 위임한 것과는 별도의 조치로, 전도목사에게 12 개월 이내에 교회를 조직할 권한을 주고, 또 교회에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치리장로와 집사들을 교육, 시취, 안수, 임직하며, 교인을 영입, 혹은 이명하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

8-7. 노회는, 재량으로, 강도장로가 미국장로교 [총회] 관할 밖의 기관에서 사역하도록 청빙 받은 것을 인준할 수 있다. 단, 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중사하며, 우리 총회의 교리를 유지하고 가르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노회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장 받아야 하고, 그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보고해야 한다. 가능한 한 그와 같은 강도장로는 그가 사역하는 지역내 노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헌법 20-1 을 보라).

8-8. 율법 아래 있던 교회 안에 다스림을 위해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아래 있는 교회 안에도 말씀 사역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스리도록 불러 위임하는 자들을 치리장로라 부른다.

8-9. 장로는 교회 직분 중의 한 종류이므로, 치리장로는 교회의 치리회에서 강도장로와 마찬가지로 직분에 대한 동일한 권한과 자격을 갖는다. 치리장로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의 자질을 열심히 개발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모든 기회를 증진해야 한다.

CHAPTER 9

The Deacon

9-1. The office of deacon is set forth in the Scriptures as ordinary and perpetual in the Church. The office is one of sympathy and service, after the example of the Lord Jesus; it expresses also the communion of saints, especially in their helping one another in time of need.

9-2. It is the duty of the deacons to minister to those who are in need, to the sick, to the friendless, and to any who may be in distress. It is their duty also to develop the grace of liberality in the members of the church, to devise effective methods of collecting the gifts of the people, and to distribute these gifts among the objects to which they are contributed. They shall have the care of the property of the congregation, both real and personal, and shall keep in proper repair the church edifice and other buildings belonging to the congregation. In matters of special importance affecting the property of the church, they cannot take final action without the approval of the Session and consent of the congregation.

In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the deacons are under the supervision and authority of the Session. In a church in which it is impossible for any reason to secure deacons, the duties of the office shall devolve upon the ruling elders.

9-3. To the office of deacon, which is spiritual in nature, shall be chosen men of spiritual character, honest repute, exemplary lives, brotherly spirit, warm sympathies, and sound judgment.

9-4. The deacons of a particular church shall be organized as a Board, of which the pastor shall be an advisory member. The Board shall elect a chairman and a secretary from their number and a treasurer to whom shall be entrusted the funds for the current expenses of the church. It shall meet separately at least once a quarter, and whenever requested by the Session. The Board of each church shall determine the number necessary for a quorum.

The Board shall keep a record of its proceedings, and of all funds and their distribution, and shall submit its minutes to the Session regularly, and at other times upon request of the Session.

It is desirable that the Session and the Board of Deacons meet in joint session once a quarter to confer on matters of common interest.

제 9 장.

집사

9-1. 집사의 직책은 교회 안에 통상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성경에 세워져 있다. 이 직책은 주 예수의 본을 좇아 동정으로 보살핌과 봉사하는 직책이다; 이 직책은 또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때에 서로를 도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9-2. 집사의 의무는 곤궁, 병약, 고독, 기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다. 교인들의 회사 정신을 양성하며, 교인들의 헌물을 효과적으로 거두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 예물들이 기증되어진 목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집사의 의무이다. 집사들은 회중의 재산인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관리하며, 회중에게 속한 교회 예배당과 기타 부속 건물을 적절히 수리 보존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교회의 재산상에 특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 한 일을 처리할 경우에, 집사들은 당회의 승인이나 회중의 동의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집사들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회의 권위와 감독 아래 있다. 집사들을 세우는 일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불가능한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의 직무가 치리장로들에게 이관된다.

9-3. 집사직은 본질이 영적인 것이므로, 집사는 신령한 성품, 정직하다는 평판, 모범적인 생활, 형제 우애 정신, 따뜻한 동정심과 건전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9-4. 조직교회의 집사들은 집사회를 조직하며, 목사는 자문위원이 된다. 집사회는 회원 중에서 회장과 서기를 선출하고 회계를 선출하여 교회의 현재 경상비로 사용될 재정을 관리하게 한다. 집사회는 적어도 매 3 개월마다 일 회씩 별도로 모이며, 당회가 요구할 때마다 모인다. 집사회의 성수는 각 교회의 집사회가 결정한다.

집사회는 회의 진행, 현금 상황과 사용처에 대하여 기록을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록을 당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 당회가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당회와 집사회는 공동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3 개월에 한 번씩 함께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9-5. Deacons may properly be appointed by the higher courts to serve on committees, especially as treasurers. It is suitable also that they be appointed trustees of any fund held by any of the Church courts. It may also be helpful for the Church courts, when devising plans of church finance, to invite wise and consecrated deacons to their councils.

9-6. The deacons may, with much advantage, hold conference from time to time for the discussion of the interests committed to them. Such conferences may include representatives of churches covering areas of smaller or larger extent. Any actions taken by these conferences shall have only an advisory character.

9-7. It is often expedient that the Session of a church should select and appoint godly men and women of the congregation to assist the deacons in caring for the sick, the widows, the orphans, the prisoners, and others who may be in any distress or need. These assistants to the deacons are not officers of the church (*BCO 7-2*) and, as such, are not subjects for ordination (*BCO 17*).

9-5. 집사들은 상회로부터 적법하게 임명 받아 위원회에 속하여 봉사하고, 특히 회계로서 봉사해야 한다. 또 집사들이 교회 치리회가 보관하고 있는 어떤 기금에 대해서 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교회 재정을 계획할 때, 현명하고 헌신적인 집사들을 그 회의로 초대하는 것 역시 교회 치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9-6. 집사들은, 직책 상, 자기들에게 위탁된 유익한 일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때때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의는 좁은 지역이나 넓은 지역 교회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다. 이 회의의 결정은 자문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다.

9-7. 당회가 병자, 과부, 고아, 죄수, 기타 곤란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 집사들을 보조하기 위해 회중 가운데서 경건한 남녀 교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 이 집사들의 보조자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니며 (헌법 7-2), 그러한 사람들은 안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헌법 17).

CHAPTER 10*Church Courts in General*

10-1. The Church is governed by various courts, in regular gradation, which are all, nevertheless, Presbyteries, as being composed exclusively of presbyters.

10-2. These courts are church Sessions, Presbyteries, and the General Assembly.

10-3. The pastor is, for prudential reasons, moderator of the Session.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may be elected at each stated meeting of the court, or for a period of time up to one year.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chosen at each stated meeting; he, or in case of his absence the last moderator present or the oldest minister longest a member of the court, shall open the next meeting with a sermon unless it is impracticable, and shall hold the chair until a new moderator be chosen.

The moderator has all authority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order and for the proper and expeditious conduct of all business before the court, and for convening and adjourning the court according to its own ruling. In any emergency, he may by circular letter change the time or place, or both, of meeting to which the court stands adjourned, giving reasonable notice thereof.

10-4. A clerk or clerks shall be elected by the Session, Presbytery, and General Assembly to serve for a definite period as determined by the court.

It is the duty of the clerk, besides recording the transactions, to preserve the records carefully, and to grant extracts from them whenever properly required. Such extracts under the hand of the clerk shall be evidence to any ecclesiastical court, and to every part of the Church.

10-5. Every meeting of the Session, Presbytery and General Assembly shall be opened and closed with prayer, and in closing the final session a psalm or hymn may be sung and the benediction pronounced.

10-6. The expenses of ministers and ruling elders in their attendance on the courts shall be defrayed by the bodies which they respectively represent.

제 10 장.

교회 치리회 총론

10-1. 교회는, 등급을 따라, 다양한 치리회들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그러나 모든 치리회는 장로들로만 구성된 것으로서, 노회들이다.

10-2. 이들 치리회들은 교회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이다.

10-3. 담임목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한 이유로 당회 의장이 된다. 노회 의장은 정기 노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 년까지 할 수 있다. 총회 의장은 각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 의장이 차기 총회를 가능한 한 설교로 개회하고 새 총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이 되며, 총회 의장 유고 시에는 출석 중인 직전 총회 의장 혹은 최고 연장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총회 회원이었던 목사가 이를 대행한다.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치리회로 상정된 모든 업무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다루기 위해, 또 회의 규칙에 따른 회의의 개회와 폐회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위를 가진다. 비상시에, 의장은 치리회가 정회한 회의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통보서와 함께 회람장을 발행하여, 회의의 재개 일시 또는 장소, 혹은 둘 다를 변경할 수 있다.

10-4.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서기 1 명에서 수명을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가 결정한 일정 기간을 시무하게 한다.

서기의 직무는 의사록을 작성할 뿐 아니라, 기록을 잘 보존하며,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나 사본을 발행하는 것이다. 서기가 서명한 사본은 교회의 모든 치리회와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증거 문서가 된다.

10-5. 당회, 노회, 총회는 반드시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며, 회의를 마칠 때는 찬송과 축도의 [순서를] 가질 수 있다.

10-6. 치리회에 참석하는 목사와 치리장로의 비용은 그들이 대표하는 치리회가 부담한다.

CHAPTER 11*Jurisdiction of Church Courts*

11-1. These assemblies are altogether distinct from the civil magistracy, and have no jurisdiction in political or civil affairs. They have no power to inflict temporal pains and penalties, but their authority is in all respects moral or spiritual.

11-2. The jurisdiction of Church courts is only ministerial and declarative, and relates to the doctrines and precepts of Christ, to the order of the Church, and to the exercise of discipline.

First, they can make no laws binding the conscience; but may frame symbols of faith, bear testimony against error in doctrine and immorality in practice, within or without the Church, and decide cases of conscience.

Secondly, they have power to establish rules for the government, discipline, worship, and extension of the Church, which must be agreeable to the doctrines relating thereto contained in the Scriptures, the circumstantial details only of these matters being left to the Christian prudence and wisdom of Church officers and courts.

Thirdly, they possess the right to require obedience to the laws of Christ. Hence, they admit those qualified to sealing ordinances and to their respective offices, and they exclude the disobedient and disorderly from such offices or from sacramental privileges. The highest censure to which their authority extends is to cut off the contumacious and impenitent from the congregation of believers. Moreover, they possess all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se powers.

11-3. All Church courts are one in nature, constituted of the same elements, possessed inherently of the same kinds of rights and powers, and differing only as the Constitution may provide. When, however, according to Scriptural example, and needful to the purity and harmony of the whole Church, disputed matters of doctrine and order arising in the lower courts are referred to the higher courts for decision, such referral shall not be so exercised as to impinge upon the authority of the lower court.

제 11 장.

[교회] 치리회의 관할권

11-1. 교회의 치리회들은 국가 기관과는 전혀 다르며, 정치적 혹은 시민 생활에 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등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세상법적인 교통이나 징벌을 가할 권한이 없으며, 치리회의 권위는 전적으로 도덕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이다.

11-2. 교회 치리회들의 관할권은 오직 목회적이고, 선언적이며, 그리스도의 교리와 교훈, 교회의 질서, 권징 실행에 관한 것들이다.

첫째로, 치리회는 양심을 속박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교회 대 내외적으로, 신조를 정하며, 교리적 오류와 생활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양심에 관계된 문제를 결정한다.

둘째로, 치리회는 교회정치, 권징, 예배와 교회 확장을 위한 규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 이 규례들은 성경에 있는 관련 교리에 합치해야 하고, 이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만은 교회 직원과 치리회의 그리스도인다운 총명과 지혜에 위임됐다.

셋째로, 치리회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유자격자에게 성례에 참가하는 것과 소정 임원직에 취임하는 것을 허락하며, 불복종하는 자와 무질서한 자를 임원직이나 성례의 특권에서 제외시킨다. 치리회의 권위로 행사하는 최대의 책벌은 회개함 없이 여전히 거역하는 자를 신자의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치리회는 이러한 권한을 유효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 권위를 갖고 있다.

11-3. 모든 교회의 치리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어서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래 같은 종류의 권리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나,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서로 다르다. 그러나 성경의 본을 따라서, 또 교회 전체의 순결과 화목을 위해서, 하위 치리회에서 발생한 교리와 질서에 관한 쟁론이 상회의 판결에 위탁될 때, 이런 위탁 판결이 하위 치리회의 권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11-4. For the orderly and efficient dispatch of ecclesiastical business, it is necessary that the sphere of action of each court should be distinctly defined. The Session exercises jurisdiction over a single church, the Presbytery over what is common to the ministers, Sessions, and churches within a prescribed district, and the General Assembly over such matters as concern the whole Church. The jurisdiction of these courts is limited by the expres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Every court has the right to resolve questions of doctrine and discipline seriously and reasonably proposed, and in general to maintain truth and righteousness, condemning erroneous opinions and practices which tend to the injury of the peace, purity, or progress of the Church. Although each court exercises exclusive original jurisdiction over all matters especially belonging to it, the lower courts are subject to the review and control of the higher courts, in regular gradation. These courts are not separate and independent tribunals, but they have a mutual relation, and every act of jurisdiction is the act of the whole Church performed by it through the appropriate organ.

11-4. 교회 사무를 질서정연하고 유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치리회의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당회는 한 지교회 위에, 노회는 지정 지역 내의 목사들, 당회들과 교회들의 공동 문제 위에, 총회는 모든 교회에 관련된 문제들 위에 관할권을 행사한다. 각 치리회의 관할권은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한정된다.

각 치리회는 교회와 권징에 대하여 제출된 문제를 신중하고 조리 있게 해결할 권리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회의 평화나, 순결이나 발전을 방해하기 쉬운 그릇된 의견과 행동을 책망함으로, 진리와 의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각 치리회는 특별히 그 회에 속해 있는 모든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고유의 관할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지만, 하위 치리회는 정규 절차에 따라 상회의 심사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치리회들은 분립된 재판소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며, 관할권의 모든 조치는 합당한 기관을 통하여 그 권한으로 전체 교회가 취한 조치이다.

CHAPTER 12*The Church Session*

12-1. The church Session consists of the pastor, associate pastor(s), if there be any, and the ruling elders of a church. If there are four or more ruling elders, the pastor and two ruling eld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If there are fewer than four ruling elders, the pastor and one ruling elder shall constitute a quorum. Assistant pastors, although not members of the Session, may be invited to attend and participate in discussion without vote.

When a church has no pastor and there are five or more ruling elders, three shall constitute a quorum; if there are less than five ruling elders, two shall constitute a quorum; if there is only one ruling elder, he does not constitute a Session, but he should take spiritual oversight of the church, should represent it at Presbytery, should grant letters of dismission, and should report to the Presbytery any matter needing the action of a Church court.

Any Session, by a majority vote of its members, may fix its own quorum, provided that it is not smaller than the quorum stated in these paragraphs.

12-2. The pastor is, by virtue of his office,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In the pastor's absence, if any emergency should arise requiring immediate action, the Session may elect one of its members to preside, the quorum for such emergency meeting being as in the case of a church with no pastor in 12-1. Should prudential reasons at any time make it advisable for a minister other than the pastor to preside, the pastor may, with the concurrence of the Session, invite a minister of the same Presbytery to perform this service.

12-3. When a church is without a pastor,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may be either a minister appointed for that purpose by the Presbytery, with consent of the Session, or one invited by the Session to preside on a particular occasion, or one of its own members elected to preside. In judicial cases, the moderator shall be a minister of the Presbytery to which the church belongs.

12-4. Associate or assistant pastors may substitute for the pastor as moderator of the Session at the discretion of the pastor and Session.

제 12 장.

당회

12-1. 당회는 지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가 있을 경우, 부목사(들) 그리고 치리장로들로 구성된다. 치리장로가 넷 혹은 그 이상일 때는 담임목사와 치리장로 두 명으로 성수가 된다. 치리장로가 넷 미만일 때는 담임목사와 치리장로 한 명으로 성수가 된다. 보조목사들은, 비록 당회원은 아니지만, 초청을 받아 [당회에] 참석하고 토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에 치리장로가 다섯 혹은 그 이상일 때는, 치리장로 셋으로 성수를 이룬다; 치리장로가 다섯 미만일 때는 둘로 성수를 이룬다; 치리장로가 단 한 명일 때는, 홀로 당회를 구성할 수 없으나, 그는 교회를 영적으로 감독하며, 노회에서 그 교회를 대표하고, 이명서를 발부하며, 치리회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회는, 다수결로, 자체의 성수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 때에 성수는 본 조에 규정한 성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12-2. 담임목사는 직무상 당회 의장이 된다. 담임목사 부재 중,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당회는 회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하여 사회를 맡길 수 있고, 그런 긴급 당회의 성수는 12-1의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의 경우와 같다. 만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교회 담임목사 이외에 다른 목사가 사회하는 것이 좋을 때에는, 담임목사가 당회의 찬동을 얻어 동일 노회 내의 목사를 청하여 그 일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2-3. 지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을 때, 당회 의장은 노회가 당회의 동의를 얻어 그 목적으로 임명한 목사이든, 혹은 당회가 어떤 특정한 경우를 위하여 사회하도록 초청한 사람이든, 혹은 자체 당회원 중 한 사람을 선임하여 사회하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재판사건의 경우에 당회 의장은 지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

12-4. 담임목사와 당회의 재량에 따라 부목사나 보조목사가, 담임목사를 대신하여 당회 의장이 될 수 있다.

12-5. The church Session is charged with maintaining the spiritual government of the church, for which purpose it has power:

- a. To inquire into the knowledge, principles and Christian conduct of the church members under its care; to censure those found delinquent; to see that parents do not neglect to present their children for Baptism; to receive members into the communion of the Church; to remove them for just cause; to grant letters of dismissal to other churches, which when given to parents, shall always include the names of their non-communing, baptized children;
- b. To examine, ordain, and install ruling elders and deacons on their election by the church, and to require these officers to devote themselves to their work; to examine the records of the proceedings of the deacons; to approve and adopt the budget;
- c. To approve actions of special importance affecting church property;
- d. To call congregational meetings when necessary; to establish and control Sunday schools and Bible class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ildren of the church; to establish and control all special groups in the church such as Men in the Church, Women in the Church and special Bible study groups; to promote world missions; to promote obedience to the Great Commission in its totality at home and abroad; to order collections for pious uses;
- e. To exercise,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ory for Worship, authority over the time and place of the preaching of the Word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over all other religious services, over the music in the services, and over the uses to which the church building and associated properties may be put; to take the oversight of the singing in the public worship of God; to ensure that the Word of God is preached only by such men as are sufficiently qualified (*BCO* 4-4, 53-2, 1 Timothy 2:11-12); to assemble the people for worship when there is no minister; to determine the best measures for promoting the spiritual interests of the church and congregation;
- f. To observe and carry out the lawful injunctions of the higher courts; and to appoint representatives to the higher courts, who shall, on their return, make report of their diligence.

12-6. The Session shall hold stated meetings at least quarterly. Moreover, the pastor has power to convene the Session when he may judge it requisite; and he shall always convene it when requested to do so by any two of the ruling elders. When there is no pastor, it may be convened by two ruling elders. The Session shall also convene when directed so to do by the Presbytery.

12-5. 지교회의 당회는 지교회의 영적 치리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을 위하여 당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당회는],

- ㄱ. 교회의 보호 하에 있는 교인들의 지식과 원칙과 그리스도인의 품행을 살핀다; 비행 있는 사람을 견책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세례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한다; 교인들을 교회의 성찬식에 참가시킨다; 정당한 이유로 교인을 제명한다; 다른 교회에 보내는 이명서를 준다. 이 때 부모에게 주는 이명서에는 세례 받은 비수찬 어린이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 ㄴ. 교회가 선출한 치리장로와 집사를 시취, 안수, 임직하며, 이 직분자들에게 자신들의 일에 헌신하도록 요구한다; 집사회 회의록을 검사한다; 예산안을 승인 채택한다;
- ㄷ. 교회 재산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중요 사안에 대해 취해진 조치를 승인한다;
- ㄹ. 필요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교회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일 학교와 성경공부반을 설립, 감독한다; 남전도회, 여전도회와 특별한 성경공부반 같은 교회 내의 모든 특별한 모임들을 설립, 감독한다; 세계 선교를 촉진한다; 국내외에서 지상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도록 촉구한다; 경건한 목적으로 헌금하도록 한다;
- ㅁ. 예배 모범을 따라,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의 시일과 장소, 기타 모든 교회 예식, 예배시의 음악, 교회 건물과 관련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의 노래를 감독한다; 오직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감독한다 (헌법 4-4, 53-2, 딤편 2:11-12); 목사 유고시에 회중을 모아 예배한다; 교회와 회중의 영적 유익을 촉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한다.
- ㅂ. 상회들의 합법적 명령을 지켜 시행한다; 상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그 근무 상황을 회보하게 한다.

12-6. 당회는 적어도 사분기로 정기 회의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는 당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담임목사는 치리장로 중 누구든 두명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항상 이를 소집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없을 때, 당회는 치리장로 둘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당회는 또한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 소집되어야 한다.

12-7. Every Session shall keep an accurate record of its proceedings, which record shall be submitted at least once in every year to the inspection of the Presbytery.

12-8. Every Session shall keep an accurate record of baptisms, of communing members, of non-communing members, and of the deaths and dismissions of church members.

12-9. Meetings of the Sessions shall be opened and closed with prayer

12-7. 모든 당회는 정확한 회의록을 보존해야 하며, 이 회의록은 적어도 매년 일 회씩은 노회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12-8. 모든 당회는 교회 교인들의 세례, 수찬교인, 비수찬 교인, 교인의 사망과 이명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2-9. 당회 회의는 기도로 개회해야 하며 폐회해야 한다.

CHAPTER 13

The Presbytery

13-1. The Presbytery consists of all the teaching elders and churches within its bounds that have been accepted by the Presbytery. When the Presbytery meets as a court it shall comprise all teaching elders and ruling elders as elected by their Session. Each congregation is entitled to two (2) ruling elder representatives for the first 350 communing members or fraction thereof, and one additional ruling elder for each additional 500 communing members or fraction thereof.

13-2. A minister shall be required to hold his membership in the Presbytery within whose geographical bounds he resides, unless there are reasons which are satisfactory to his Presbytery why he should not do so. When a minister labors outside the geographical bounds of, or in a work not under the jurisdiction of his Presbytery, at home or abroad, it shall be only with the full concurrence of and under circumstances agreeable to his Presbytery, and to the Presbytery within whose geographical bounds he labors, if one exists. When a minister shall continue on the rolls of his Presbytery without a call to a particular work for a prolonged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the procedure as set forth in *BCO* 34-10 shall be followed.

(EDITORIAL COMMENT: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the non-geographical Korean Language Presbyteries as long as the General Assembly mandates their existence.)

13-3. Every ruling elder not known to the Presbytery shall produce a certificate of his regular appointment from the Session of the church which he represents.

13-4. Any three ministers belonging to the Presbytery, together with at least three ruling elders, being met at the time and place appointed, shall be a quorum competent to proceed to business.

However, any Presbytery, by a majority vote of those present at a stated meeting, may fix its own quorum provided it is not smaller than the quorum stated in this paragraph.

13-5. Ordinarily, only a minister who receives a call to a definite ecclesiastical work within the bounds of a particular Presbytery may be received as a member of that Presbytery except in cases where the minister is already honorably retired, or in those cases deemed necessary by the Presbytery,

제 13 장.

노회

13-1. 노회는 관할 지역 내의 노회가 받아들인 모든 강도장로와 교회들로 구성된다. 노회가 치리회로서 모일 때는 당회에 의해서 선출된 모든 강도장로와 치리장로로 구성된다. 각 회중은 첫 수찬교인 350 명까지 혹은 그 비율로는 두 (2) 명의 치리장로를 대표로 보낼 권한이 있으며, 한 사람의 치리장로 추가는 추가 수찬 교인 오백(500)명 혹은 그 비율로 한다.

13-2. 목사는 거주 지역 노회의 노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를 자신이 속해 있는 노회가 만족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목사가 거주 지역 밖에서 일하거나, 혹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회 관할권 밖에서 사역할 때는, 그가 속해 있는 노회의 완전한 동의와 노회가 찬동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또 그가 일하고 있는 지역에 [다른] 노회가 있을 경우, 그 노회의 완전한 동의와 그 노회가 찬동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한다. 목사가 장기간 동안 특정한 사역에 청빙이 없이 자신이 속해 있는 노회에 등록을 계속하려면, 삼(3) 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교회헌법 34-10 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편집자 주: 이 조항은 총회가 무지역 한국어 노회의 존재를 승인하는 한 무지역 한국어 노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13-3. 노회에 알려지지 않은 모든 치리장로는 그가 대표하는 교회의 당회가 발부한 정식 임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노회에 속한 목사 3 명과 적어도 치리장로 3 명 이상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모이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성수를 이룬다.

그러나, 어느 노회든, 정기 노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다수결로, 자체의 성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그 성수는 본 조항에 기록된 성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13-5. 통상, 특정 노회의 관할 지역 안에서 명확한 교회 사역에 청빙을 받은 목사만이 해당 노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단 담임목사가 이미 명예 은퇴를 한 곳의 경우, 혹은 총회의 심사에 순복해서, 노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된 경우들은 예외이다.

subject to the review of the General Assembly. In such cases deemed necessary, which may include the case of a minister without call whose circumstances appear to require relocation within the bounds of that Presbytery, the time allotment of *BCO* 13-2 shall be counted from the day the minister was first continued on the roll without call in any Presbytery.

13-6. Ministers seeking admission to a Presbytery from other Presbyteries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shall be examined on Christian experience, and also touching their views in theology, the Sacraments, and church government. If applicants come from other denominations, the Presbytery shall examine them thoroughly in knowledge and views as required by *BCO* 21-4 and require them to answer in the affirmative the questions put to candidates at their ordination. Ordained ministers from other denominations being considered by Presbyteries for reception may come under the extraordinary provisions set forth in *BCO* 21-4. Presbyteries shall also require ordained ministers coming from other denominations to state the specific instances in which they may differ with the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in any of their statements and/or propositions, which differences the court shall judge in accordance with *BCO* 21-4 (see *BCO* 21-4.e.f.).

13-7. The Presbytery shall cause to be transcribed, in some convenient part of the book of records, the obligations required of ministers at their ordination, which shall be subscribed by all admitted to membership, in the following form:

I, _____, do sincerely receive and subscribe to the above obligation as a just and true exhibition of my faith and principles, and do resolve and promise to exercise my ministry in conformity thereunto.

13-8. The Presbytery, before receiving into its membership any church, shall designate a commission to meet with the church's ruling elders to make certain that the elders understand and can sincerely adopt the doctrines and poli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s contained in its Constitution. In the presence of the commission, the ruling elders shall be required to answer affirmatively the questions required of officers at their ordination.

13-9. The Presbytery has power to receive and issue* appeals, complaints, and references brought before it in an orderly manner. In cases in which the Session cannot exercise its authority, it shall have power to assume original jurisdiction. It has power:

* Editor's note: "Issue" means "settling the issue of the case."

필요하다고 간주된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해당 노회 지역 안에서 재배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는 무임 목사의 경우를 포함할 수도 있는데, 교회헌법 13-2 의 시간 할당은 그 목사가 어느 노회에서든지 무임으로 처음 명부에 오르게 된 그 날부터 계산 된다.

13-6. 미국장로교에 속한 다른 노회로부터 어떤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사들은, 신학, 성례, 교회정치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다룰 것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대하여 시취 받는다. 만약 지원자가 다른 교파에서 오면, 노회는 교회헌법 21-4 에 의해서 요구된 대로 지식과 견해에 있어서 그들을 철저히 시취해야 하고 임직시에 후보자들에게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노회들에 의하여 영입이 고려되어지는 다른 교파로부터 온 안수 받은 목사들은 교회헌법 21-4 에 표명되어 있는 특별규례 하에 들어올 수도 있다. 노회들은 또 타 교파에서 영입되는 안수 받은 목사들에게 그들의 진술문과/이나 명제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구체적인 실례들을 진술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 차이들은 치리회가 헌법 21-4 (헌법 21-4, ㄱ, 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3-7. 노회는 회의록의 적당한 부분에 목사 안수식 때 목사에게 요구되는 의무들을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그 의무들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회원으로 접수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다.

나, _____ 는 상기의 의무가 나의 신앙과 원리의 정당하고 참된 표현이라고 신실하게 받고 동의 하며, 나의 목회가 이에 부합하도록 사역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합니다.

13-8. 노회는 어느 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전권위원회를 선정하여 교회의 치리장로들을 만나도록 하고, 헌법에 기록된 대로 미국장로교의 교리와 정책을 장로들이 이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권위원회 앞에서 치리장로들은 안수를 받았을 때 직분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질문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13-9. 노회는 노회 앞에 규칙에 따라 제출된 상소, 소원 및 문의를 접수하여 처리* 할 권한을 가진다. 당회가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노회가 초기 관할권을 취할 권한이 있다. 노회가 갖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노회는]

* 역자 주: “처리”는 “사건의 문제점을 해결함”을 의미함.

- a. To receive under its care candidates for the ministry; to examine and license candidates for the holy ministry; to receive, dismiss, ordain, install, remove and judge ministers;
- b. To review the records of church Sessions, redress whatever they may have done contrary to order and take effectual care that they observe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 c. To establish the pastoral relation and to dissolve it at the request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r where the interest of religion imperatively demands it;
- d. To set apart evangelists to their proper work; to require ministers to devote themselves diligently to their sacred calling and to censure the delinquent;
- e. To see that the lawful injunctions of the higher courts are obeyed;
- f. To condemn erroneous opinions which injure the purity or peace of the Church; to visit churches for the purpose of inquiring into and redressing the evils that may have arisen in them; to unite or divide churches, at the request of the members thereof; to form and receive new churches; to take special oversight of churches without pastors; to dissolve churches; to dismiss churches with their consent;
- g. To devise measures for the enlargement of the Church within its bounds; in general, to order whatever pertains to the spiritual welfare of the churches under its care;
- h. And, finally, to propose to the Assembly such measures as may be of common advantage to the Church at large.

13-10. When a Presbytery determines to dissolve a church, it shall give no less than sixty (60) days notice of such dissolution to the local church. With such notice, Presbytery shall communicate to the members their responsibility to transfer their membership to other particular or mission churches. In addition, Presbytery shall:

1. transfer membership to existing churches, with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s and the Sessions of the receiving churches; *or*
2. grant a letter of dismissal to an individual so requesting, testifying that the individual was a member in good standing of the local church at the date of dissolution (see *BCO* 46-7). Until such time as the person is received by a church the Presbytery shall continue to provide pastoral oversight; *or*
3. place individuals under the oversight of a commission of Presbytery acting as a session (*BCO* 15-2), for up to one year, renewable, until such time as either a new congregation can be formed or such persons are dismissed to membership in another church.

- ㄱ. 목사 후보생을 노회의 보호 하에 받는다; 강도사 후보생을 시취하고 인허한다; 목사들을 영입, 이명, 안수, 위임, 삭명, 재판한다;
- ㄴ. 교회 당회록을 검토하며, 당회들이 규정에 위배하여 기록 한 것은 무엇이든 바로 잡아주고 당회들이 교회헌법을 준수하도록 효과적인 보살핌을 베푼다;
- ㄷ. 당사자들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이 있거나, 신앙 생활상 절대로 필요한 때, 목회적 연고를 설정 또는 해제한다;
- ㄹ. 전도목사들을 그들에게 적합한 사역을 위해 따로 세운다; 목사들에게 그들의 거룩한 소명에 근면하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비행을 견책한다;
- ㅁ. 상회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감독한다;
- ㅂ. 교회의 순결 혹은 화평을 해치는 그릇된 견해를 정죄한다; 교회들 가운데 일어난 악을 조회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교회를 방문한다; 교인들의 요청에 따라 교회들을 연합 혹은 분리한다; 새 교회를 조직하고 영입한다; 목사가 없는 교회들을 특별히 보살핀다; 교회를 해체한다; 교회들의 동의를 따라 그 교회들[의 노회와의 관계를] 취하한다;
- ㅅ. 지경 내에 있는 [총회 산하] 교회 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일반적으로 노회의 보살핌 하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 안녕에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지 명령한다;
- ㅇ. 끝으로, 교회 전체의 공통 유익을 위한 대책을 총회에 제출한다.

13-10. 노회가 한 교회를 해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그 지역 교회에 그런 해체에 관한 통보서를 적어도 육십(60) 일 전에 발부해야 한다. 그런 통보서와 함께, 노회는 [그 해체되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교인명부를 다른 지교회들이나 혹은 미조직 교회들로 이명해 가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첨가하여, 노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이명을 원하는] 당사자들과 교회들을 영입하는 당회의 동의로, 교인명부를 기존 교회들에게 이명해 준다; 혹은
2. 당사자가 요청하면 [노회와의 관계를 해소하는] 취하 서신을 써주되, 그 개인이 교회가 해체된 날짜에는 그 지역 교회의 무흠한 교인이었음 증언해 주어야 한다(교회헌법 46-7 참조).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영입될 때까지는 노회가 목회적 보살핌을 계속 베풀어야 한다; 혹은,
3. [노회는] 1 년동안 [해체되는 교회의] 개인들을, 새 회중이 형성되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교인이 될 때까지, 당회를 대신하는 노회 전권 위원회의 보살핌 아래 둔다 (교회헌법 15-2). 단, 이 기간은 갱신될 수 있다.

13-11. The Presbytery shall keep a full and accurate record of its proceedings, and shall send it up to the General Assembly annually for review. It shal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every year, all the important changes which may have taken place, such as licensures, ordinations, the receiving or dismissing of members, the removal of members by death, the union and the division of churches, and the formation of new ones.

13-12. The Presbytery shall meet at least twice a year on its own adjournment. The Moderator shall call a special meeting at the request or with the concurrence of three teaching elders and three ruling elders from at least three different churches. Should the Moderator be for any reason unable to act, the Stated Clerk shall, under the same requirements, issue the call. If both Moderator and Stated Clerk are unable to act, any three teaching elders and three ruling elders of at least three different churches shall have power to call a meeting. However, any Presbytery may prescribe in its rules its own requirements for calling a special meeting, provided that those requirements are not less than those stated in this section. Notice of the special meeting shall be sent not less than ten days in advance to each teaching elder and to the Clerk of Session of every church. In the notice, the purpose of the meeting shall be stated, and no business other than that named in the notice is to be transacted. The Presbytery also shall convene when directed to do so by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transaction of designated business only.

13-13. Ministers in good standing in other Presbyteries, or in any evangelical church, being present at any meeting of Presbytery, may be invited to sit as visiting brethren. It is proper for the moderator to introduce these brethren to the Presbytery. This provision shall also apply to the General Assembly.

13-11. 노회는 그들의 완벽하고 정확한 의사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그것을 검열 받기 위해 매년 총회로 보내야 한다. 노회는, 인허, 안수, 회원의 영입 또는 이명, 사망으로 인한 제명, 교회들의 연합과 분립 및 새 교회들의 형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변화들을 매년 총회로 보고해야 한다.

13-12. 노회는 회기를 따라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모여야 한다. 노회 의장은 요청에 의해서 혹은 적어도 세 개의 다른 교회에서 온 세 강도장로와 세 치리장로의 찬동으로 임시 노회를 소집한다. 노회 의장이 어떤 이유로 이를 행하지 못한다면, 노회 서기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만약 노회 의장과 서기 두 명 모두 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다른 세 교회에서 온 세 명의 강도장로와 세 명의 치리장로들이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어느 노회든 임시노회를 소집하기 위한 자체 요구를 자체의 규칙 속에 기안할 수 있다. 단 자체 요구는 이 항에 진술되어 있는 것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임시노회 소집 통보는 회의 십일 이전에 각 목사와 각 교회 당회 서기 앞으로 보내어져야 한다. 소집통보서는, 회의 목적이 진술되어 있어야 하고 소집통보서에 명기되지 않은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총회가 지정하여 임시노회를 모일 때에도 노회는 지정된 안건만 처리해야 한다.

13-13. 다른 노회나 다른 복음적인 교회에 속하는 무흠한 목사들이 노회 회의에 출석했을 때, 그들은 내빈으로 초청되어질 수 있다. 노회 의장이 이 형제들을 노회에 소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조항은 총회에도 역시 적용된다.

CHAPTER 14*The General Assembly*

14-1. The General Assembly is the highest court of this Church, and represents in one body all the churches thereof. It bears the titl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constitutes the bond of union, peace and correspondence among all its congregations and courts.

Principle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Assembly:

1. The Church is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Great Commission.
2. The initiative for carrying out the Great Commission belongs to the Church at every court level, and the Assembly is responsible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fulfillment of this ministry by the various courts.
3. The work of the Church as set forth in the Great Commission is one work, being implemented at the General Assembly level through equally essential committees.
4. It is the responsibility of every member and every member congregation to support the whole work of the denomination as they be led in their conscience held captive to the Word of God.
5.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eneral Assembly to evaluate needs and resources, and to act on priorities for the most effective fulfil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6. The Church recognizes the right of individuals and congregations to labor through other agencies in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7. The Assembly's committees are to serve and not to direct any Church judicatories. They are not to establish policy, but rather execute policy established by the General Assembly.
8. The committees serve the Church through the duties assigned by the General Assembly.
9. The Assembly's committees are to include proportionate representation of all presbyteries, wherever possible.
10. The committees are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n equal number between teaching and ruling elders.

제 14 장.

총회

14-1. 총회는 이 교단의 최고 치리회이며, 총회 내의 모든 교회들을 한 몸으로 대표한다. 총회는 미국장로교 총회라는 명칭을 가지며, 이에 속한 모든 회중들과 치리회들 가운데 연합, 화평과 일치의 유대 관계를 확립한다.

총회 조직 원칙:

1. 교회는 지상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지상명령 수행의 주도권은 총회의 각 치리회 차원에 속하며, 총회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서 이 사역의 성취를 격려, 촉진할 책임이 있다.
3. 지상명령에 정해져 있는 총회 사역은 한 사역이며, 총회와 동등하게 중요한 여러 위원회를 통하여 총회 차원에서 실시된다.
4. 총회의 모든 회원과 회원으로 가입된 모든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들의 양심의 인도를 따라 교단 전체 사역을 후원할 책임이 있다.
5. 총회의 책임은 지상명령의 가장 효과적인 성취를 위하여 필요와 자원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6. 총회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관을 통하여 일하는 개인들과 회중들의 권리를 인정한다.
7. 총회 위원회들은 어느 교회 치리회든 지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수립된 정책을 집행 하기 위한 것이다.
8. 위원회들은 총회가 지정한 임무를 행함으로 교회를 섬긴다.
9. 총회의 위원회들은, 가급적, 모든 노회를 비례적으로 대표해야 한다.
10. 위원회들은 동수의 강도장로와 치리장로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1. A Nominating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one representative elected by each Presbytery in the following manner. Each Presbytery shall be assigned to a class by the stated clerk based on its date of formation. The members shall serve in classes of three year terms, alternating between ruling and teaching elders. When necessary, unexpired terms shall be filled by an elder of the same class, teaching or ruling.

This committee is to present all nominations for which it is responsible to the next meeting of the Assembly from a slate of men nominated by the Presbyteries. Presbyteries shall utilize the nominating forms provided by the stated clerk for their nominations. Each presbytery may present one teaching elder and one ruling elder for each committee or agency.

In addition to nominees for expired terms, the Committee shall nominate for each permanent committee one ruling and one teaching elder as alternates to fill any vacancies that may occur during the year. Each alternate should attend each meeting and fill any vacancy necessary to meet a quorum. In addition to the new nominees from the Presbyteries, alternates not assuming any vacancies during a year will be automatically considered by the Nominating Committee as candidates for nomination to that same committee.

12. The Assembly permanent committees are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Committee on Mission to North America, Committee on Mission to the World, and Committee on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AC) shall consist of twenty (20) members:

- a. Eleven members in classes elected through the standard nomination and election procedure,
- b. One member each from the following program committees or agencies:
 1.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CDM); ●
 2. Covenant College (CC);
 3.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CTS);
 4. Mission to North America (MNA);

11. 공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 노회에서 한 명씩 선임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각 노회는 총회 서기에 의해서 그 설립 일자를 근거로 각 반으로 나누어진다. 위원들은 3년을 임기로 각 반들에서 섬기되, 치리장로들과 강도장로들 간에 교체가 있어야 한다. 필요시 만료되지 않은 임기는 같은 반의 강도장로 혹은 치리장로로 채워진다.

이 공천위원회는 노회들이 공천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초로 하여, [공천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들의 명단을 차기 총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노회들은 공천을 위해서 총회 서기가 준비한 공천 양식을 활용한다. 각 노회는 [총회] 각 위원회 혹은 각 기관을 위하여 강도장로 1인과 치리장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공천 위원회는 임기가 완료될 임원의 후임을 공천할 뿐 아니라, 이에 추가하여 그 해에 생길지도 모를 공석을 채우기 위한 교체위원으로 강도장로 1인과 치리장로 1인을 각 상임 위원회를 위해 공천하여야 한다. 각 교체위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성수를 이루는데 필요한 공석을 채워야 한다. 노회에서 새로 공천 받은 사람들과는 별도로, [지난] 1년 동안 공석을 채운 적이 없는 교체위원들은 자동적으로 같은 위원회에 공천될 후보로 공천 위원회가 고려해야 한다.

12. 총회 상임위원회는 총회 행정위원회, 제자사역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그리고 학원선교위원회이다.

총회 행정위원회는 이십(2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 ㄱ. 표준 공천과 선출 과정을 통해 선출된 각 반에 있는 열한 명 위원들;
- ㄴ. 아래 열거된 위원회와 기관들로부터 임명된 한 명씩의 위원들:
 1. 제자사역위원회;
 2. 커버넌트 대학교;
 3. 커버넌트 신학대학원;
 4. 국내선교위원회;

5. Mission to the World (MTW);
6. PCA Foundation (PCAF);
7. PCA Retirement & Benefits, Inc. (RBI);
8.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RUM);
9. Ridge Haven Conference Center (RH)._

The eleven members at large shall serve a term of four years. The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be one of its members at large.

Each program committee and agency shall designate its member each year at the last meeting of the committee or board before the meeting of General Assembly.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of the program committees and agencies may attend any meeting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They shall be entitled to the privilege of the floor but shall not have a vote and must be excluded when an executive session is called.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Committee on Mission to North America, Committee on Mission to the World, and Committee on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shall consist of fifteen (15) men divided into five classes of three men each, with two men being TEs and one RE or two men being REs and one TE on alternate years, elected to serve five-year terms. Committees on Discipleship Ministries, Mission to North America, Mission to the World, and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shall have one ruling and one teaching elder as alternates to fill any vacancy that may occur during the year.

Persons who have served for a full term, or for at least two years of a partial term, on one of the Assembly's permanent committees or agencies shall not be eligible for re-election to an Assembly committee until one year has elapsed. (Exceptions may be permitted in agency bylaws approved by the Assembly.)

13. The General Assembly establishes personnel salaries after hearing recommendations from the appropriate committee.
14. The Assembly shall elect a six-man Theological Examining Committee (three teaching elders and three ruling elders of three classes of two men each). Nominations for this Committee will be presented by the Assembly's Nominating Committee.

5. 세계선교위원회;
6. 미국장로교 재정위원회;
7. PCA 은퇴 및 복지 재단;
8. 학원선교위원회;
9. 럿지 헤이븐 수양관;

[7의] 위원 열한 명은 일반적으로 사 년을 한 임기로 봉사한다. 행정위원회 의장은 일반적으로 그 위원 중 한 사람이어야 한다.

열거된 각 위원회와 기관은 매년 총회 전에 각 위원회 혹은 이사회 의 마지막 회의에서 그 자체의 위원을 정해야 한다. 열거된 위원회와 기관의 최고 행정 책임자들은 총회 행정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은 가지나, 투표권은 없으며, [총회 행정위원회] 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자사역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학원선교위원회는 남자 열 다섯(15)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교체되는 각 반에 두 사람의 강도장로와 한 사람의 치리장로 혹은 두 사람의 치리장로와 한 사람의 강도장로 세 명으로 구성되는 다섯 개의 반으로 나뉘어져서, 오년 임기 동안 봉사하도록 선출된다. 제자사역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학원선교위원회는 그 해에 발생될 수 있는 공석을 채울 교체위원으로 강도장로 한 명과 치리장로 한 명을 두어야 한다.

총회의 상임위원회 혹은 기관들 중 한 곳에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혹은 임기 중 최소 이년 이상 봉사한 사람들은, [그 일을 종료한 때부터] 일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총회의 어느 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선출 될 수 없다. (예외조항들이 총회가 승인한 기관 내규에 허용될 수는 있다).

13. 총회는 해당 위원회의 건의를 들은 후에 직원들의 봉급을 정한다.
14. 총회는 6 명으로 구성된 신학 고시위원회(강도장로 3 명과 치리장로 3 명이 각 반에 두 사람씩으로 되어 있는 세 개의 반)를 선출한다. 이 위원회를 위한 공천은 총회 공천위원회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This committee shall examine all first and second level administrative officers of committees, boards and agencies, and those acting temporarily in these positions who are being recommended for first time employment. They are to be examined in the areas of:

- a. Christian experience,
- b. Theology,
- c. The Sacraments,
- d. Church government,
- e. Bible content,
- f. Church history, and the
- g.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No person will begin work or move on the field without prior examination and approval by the General Assembly's Theological Examining Committee. No first level administrative officer will be presented to the Assembly for election who has not met the approval of this committee.

15. All business shall ordinarily come to the floor of the Assembly for final action through committees of commissioners, except reports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the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the Nominating Committee and Ad Interim committees, which shall come directly to the Assembly.

14-2. The General Assembly, which is a permanent court, shall meet at least annually upon its own adjournment. It shall consist of all teaching elders in good standing with their Presbyteries, and ruling elders as elected by their Session. Each congregation is entitled to two ruling elder representatives for the first 350 communing members or fraction thereof, and one additional ruling elder for each additional 500 communing members or fraction thereof.

14-3. When an emergency shall require a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earlier than the time to which it stands adjourned, the moderator shall issue a call for a special meeting at the request or with the concurrence of ten percent (10%) of the commissioners who had seats in the Assembly at its preceding meeting, of whom at least ten shall be teaching elders and at least ten ruling elders, representing at least one-third (1/3) of the Presbyteries. Should the moderator be for any reason unable to act, the stated clerk shall under the same requirements issue the call.

이 위원회는 각 위원회, 각 이사회와 기관들의 일급 이급 행정직의 모든 직원들을 시취하고, 상기 직책에 추천받아 처음으로 고용되어 임시로 활동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시취해야 한다. 그들은 다음 내용으로 시취 받아야 한다;

- ㄱ. 신앙 체험,
- ㄴ. 신학,
- ㄷ. 성례,
- ㄹ. 교회 정치,
- ㅁ. 성경,
- ㅂ. 교회사,
- ㅅ. 미국장로교의 역사.

아무도 총회 신학 고시위원회의 시취와 승인 받기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거나 사역지로 나갈 수 없다.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일급 행정직의 직원으로 선출되도록 총회에 상정될 수 없다.

15. 모든 안건들은 일반적으로 최종 조치를 위해서 각 총대 위원회를 통해 총회 석상에 제시된다. 그러나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헌법위원회, 노회록 검열 위원회, 공천위원회, 임시위원회들의 보고는 예외로 총회에 직접 제시 되어야 한다.

14-2. 총회는, 상설 치리회로서, 회기를 따라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최소한 매년 회집한다. 총회는 각 노회의 모든 무흠 강도장로들과, 각 당회에서 선출된 치리장로들로 구성된다. 각 [지교회] 회중은 수찬교인 첫 350 명까지 치리장로 2 인 혹은 그 비율로, 그리고 추가 수찬교인 매 500 명 혹은 그 비율로 치리장로 1 인을 증원 대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4-3. 총회가 개회 예정일 보다 일찍 모여야 할 비상사태 시에는, 총회 의장이 전 총회에 참석하였던 총대들의 십 퍼센트(10%)의 요구나 찬동으로 임시 총회 소집 공고를 내야 한다. 상기 총대들은 적어도 [전체] 노회들의 삼분의 일(1/3)을 대표해야 하며, 그 중에 적어도 열 명은 강도장로이어야 하고 적어도 열명은 치리장로이어야 한다. 총회 의장이 무슨 사유로든 소집할 수 없게 되면, 총회 서기가 같은 요구 조건하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한다.

The members of the special meeting shall be the commissioners elected to the preceding meeting of the Assembly or their alternates. A Session, however, shall have the right to elect a commissioner or alternate in the stead of one who had died since the last meeting of the Assembly, or of one who has notified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of his inability to serve. Notice of the special meeting shall be sent not less than twenty (20) days in advance to each commissioner and to the moderator of each Presbytery. In the notice the purpose of the meeting is to be stated and no other business is to be transacted.

14-4. Each commissioner, before his name shall be enrolled as a member of the Assembly, shall produce appropriate credentials.

14-5. Any one hundred (100) of these commissioners, of whom half shall be teaching elders and half ruling elders, representing at least one-third (1/3) of the Presbyteries, being met on the day and at the place appointed, shall be a quorum for the transaction of business.

14-6. The General Assembly shall have power:

- a. To receive and issue* all appeals, references, and complaints regularly brought before it from the lower courts; to bear testimony against error in doctrine and immorality in practice, injuriously affecting the Church; to decide in all controversies respecting doctrine and discipline;
- b. To give its advice and instruction,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in all cases submitted to it;
- c. To review the records of the Presbyteries, to take care that the lower courts observe the Constitution; to redress whatever they may have done contrary to order;
- d. To devise measures for promoting the prosperity and enlargement of the Church;
- e. To erect new Presbyteries, and unite and divide those which were erected with their consent;
- f. To institute and superintend the agencies necessary in the general work of evangelization; to appoint ministers of such labors as fall under its jurisdiction;
- g. To suppress schismatical contentions and disputations, according to the rules provided therefor;

* Editor's note: "Issue" means "settling the issue of the case".

임시총회의 회원들은 전 총회의 총대로 선출되었던 총대들이나 그들의 교체총대들이다. 그러나 당회는, 마지막 총회 이후 사망한 사람, 혹은 당회 의장에게 자신이 봉사할 능력이 없음을 통고한 사람을 대신할, 총대나 교체총대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 임시총회의 통보서는 적어도 20 일 이전에 각 총대에게와 각 노회의 노회 의장들에게 보내져야 한다. 이 통보서에는 회의의 목적이 언급되어야 하며, 다른 안건은 처리될 수 없다.

14-4. 각 총대는, 그의 이름이 총회의 회원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합당한 신입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4-5. 안건처리를 위한 성수는 이 총대들 중 백 명(100)으로 되며, 지정한 날 지정한 장소에 모였을 때, 그 중 절반은 강도장로들이어야 하고, 그 중 절반은 치리장로들이어야 하며, 적어도 [전체] 노회들의 삼분의 일(1/3)을 대표해야 한다.

14-6.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ㄱ. 총회는 하위 치리회들로부터 총회 앞에 정기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상소, 문의와 소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교회에 해롭게 영향을 주는 교리적 오류와 생활의 부도덕에 대하여 증언한다; 교리와 권징에 관한 모든 논쟁을 결정한다;
- ㄴ. 총회에 제출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헌법에 일치하는, 조언과 가르침을 베푼다;
- ㄷ. 노회록을 검열하며, 하위 치리회들이 헌법을 준수하도록 보살핀다; 하위 치리회들이 규례에 거스려 행한 것은 모든 것을 시정한다;
- ㄹ. 교회의 번영과 확장을 촉진 시키는 방법들을 강구한다;
- ㅁ. 새 노회들을 세우고, 세워진 노회들을 그들의 동의로 통합시키고 분리시킨다;
- ㅂ. 일반적으로 복음화 사업에 필요한 기관들을 설립하고 감독한다; 총회의 관할권 하에 그런 일이 주어질 때, 해당 사역자들을 임명한다;
- ㅅ. 분쟁을 일으키는 쟁론과 변론을 그에 관련된 규칙에 따라 억제한다;

*역자 주: “처리”는 “사건의 문제점을 해결함”을 의미함.

- h. To receive under its jurisdiction, with the consent of three- fourths (3/4) of the Presbyteries, other ecclesiastical bodies whose organization is conformed to the doctrine and order of this Church; to authorize Presbyteries to exercise similar power in receiving bodies suited to become constituents of those courts, and lying within their geographical bounds respectively;
- i. To superintend the affairs of the whole Church;
- j. To correspond with other churches; to unite with other ecclesiastical bodies whose organization is conformed to the doctrines and order of this Church, such union to be effected by a mode of procedure defined in *BCO* 26; and
- k. In general to recommend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charity, truth and holiness through all the churches under its care.

14-7. Ac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BCO* 14-6 such as deliverances, resolutions, overtures, and judicial decisions are to be given due and serious consideration by the Church and its lower courts when deliberating matters related to such action. Judicial decisions shall be binding and conclusive on the parties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matter being adjudicated, and may be appealed to in subsequent similar cases as to any principle which may have been decided. (See *BCO* 3-5 and 6, and *WCF* 31:3.)

14-8. The whole business of the Assembly being finished, and the vote taken for final adjournment, the moderator shall say from the chair:

By virtue of the authority delegated to me by the Church, I do now declare th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s adjourned, to convene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A. D.

After which he shall pray and return thanks, and pronounce or cause to be pronounced on those present the apostolic benediction.

- . 본 총회의 교리 및 규례와 일치하는 다른 교회적 단체를 [총회 산하] 노회들의 사분의 삼(3/4)의 동의로, 총회 관할권 아래 영입한다; 노회들에게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승인하여 노회 지역 산하에 있으며, 그 치리회 구성원이 되기에 합당한 단체들을 받아들일도록 한다;
- ㅈ. 총회 전체의 업무들을 감독한다;
- ㅊ. 다른 [총회] 교회들과 교류한다; 조직이 본 총회의 교리 및 규례와 일치하는 다른 교회적 단체들과 연합한다. 이런 연합은 *교회헌법* 26 장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 ㅋ. 통상 총회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진리와 거룩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을 추천한다.

14-7. 성명서, 결의안, 헌의안, 법적 판결 등 *교회헌법* 14-6 의 규정에 부합하는 총회의 조치들은 그러한 조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심의할 때, 총회와 하위 치리회들에 의해서 정당하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총회의] 법적 판결들은, 재판계류 중인 사건에 직접 관계된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다. 또 이 판결들은 후에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서도 이미 결정되어진 하나의 원리로서 참고되어질 수 있다. (*교회헌법* 3-5 와 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3 참조)

14-8. 총회 업무가 전부 끝나고, 마지막 폐회를 가결한 후, 총회의장은 의석에서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본 총회가 본인에게 위임한 권위로, 나는 이제, 미국장로교 총회가, 주후 _____년 ____월 ____일, _____에서 개최될 때까지 폐회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후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본인이 또는 출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축도하도록 한다.

CHAPTER 15*Ecclesiastical Commissions*

15-1. A commission differs from an ordinary committee in that while a committee is appointed to examine, consider and report, a commission is authorized to deliberate upon and conclude the business referred to it, except in the case of judicial commissions of a Presbytery appointed under *BCO* 15- 3. A commission shall keep a full record of its proceedings, which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appointing it. Upon such submission this record shall be entered on the minutes of the court appointing, except in the case of a presbytery commission serving as a session or a judicial commission as set forth in *BCO* 15-3. When a commission is appointed to serve as an interim Session, its actions are the actions of a Session, not a Presbytery. Every commission of a Presbytery or Session must submit complete minutes and a report of its activities at least once annually to the court which commissioned it.

15-2. Among the matters that may be properly executed by commissions are the taking of the testimony in judicial cases, the ordination of ministers, the installation of ministers, the visitation of portions of the church affected with disorder, and the organization of new churches.

Every commission appointed by Presbytery shall consist of at least two teaching elders and two ruling elders, and the quorum shall be one more than half its membership unless otherwise determined by the Presbytery. However, should a Presbytery clothe a commission with judicial powers and authority to conduct judicial process, or with power to ordain or install a teaching elder of the Gospel, the quorum of such commission shall not be less than two teaching elders and two ruling elders. The quorum for a commission appointed as an interim session need no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a judicial commission, but only to those of a session (*BCO* 12-1). When the ordination of a minister is committed to a commission, the Presbytery itself shall conduct the previous examination.

제 15 장.

교회의 전권위원회

15-1. 일반 위원회가 심사, 숙고, 보고하도록 임명된 반면, 전권위원회는 *교회헌법* 15-3 하에 임명된 노회의 법사 전권위원회의 소송 사건을 제외한, 위탁된 업무를 심의하여 종결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점에서 일반 위원회와는 다르다. 전권위원회는 그 진행상의 완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그 전권위원회를 임명한 치리회에 그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록은 제출되면 임명한 치리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나, *교회헌법* 15-3 에 정해진대로 노회 전권위원회가 당회나 법사 전권위원회의 역할을 할 경우는 예외이다. 전권 위원회가 임시 당회로 섬기도록 임명되면, 전권위원회의 조치는 노회의 조치가 아니라, 당회의 조치이다. 노회나 혹은 당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전권위원회는 일체의 회의록과 활동상황 보고서를 적어도 1 년에 한 번 매년 그 전권위원회를 위임한 치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2.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적절하게 집행되어져야 할 사항들 중에는 재판 사건에 대한 증언 청취, 목사안수, 목사임직, 문란한 질서로 어지러워진 교회 방문, 그리고 새 교회 조직이 있다.

노회의 임명을 받은 모든 전권위원회는 적어도 두 명의 강도장로와 치리장로로 구성되며, 성수는 노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수의 과반수보다 한 명이 더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회가 전권위원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법권과 권위를 부여하거나, 강도장로를 안수 또는 임직 시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 그 전권위원회의 성수는 강도장로 두 명과 치리장로 두명 이상이어야 한다. 임시 당회로 임명된 전권위원회의 성수는 법사 전권위원회가 요구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당회의 [규정]을 따른다(*교회헌법* 12-1). 전권위원회에게 목사의 안수를 위임할 때, 노회가 안수 전에 시취를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15-3. Presbytery as a whole may try a judicial case within its jurisdiction (including the right to refer any strictly constitutional issue to a study committee with options listed below), or it may of its own motion commit any judicial case to a commission. Such a commission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bytery from its members other than members of the Session of the church from which the case comes up. The commission shall try the case in the manner presented by the Rules of Discipline and shall submit to the Presbytery a full statement of the case and the judgment rendered. The Presbytery without debate shall approve or disapprove of the judgment, or may refer, (a debatable motion), any strictly constitutional issue(s) to a study committee. In case of referral, the Presbytery shall either dismiss some or all of the specific charges raised in the case or decide the case only after the report of the study committee has been heard and discussed. If Presbytery approves, the judgment of the commission shall be final and shall be entered on the minutes of Presbytery as the action. If Presbytery disapproves, it shall hear the case as a whole, or appoint a new commission to hear the case again.

15-4. The General Assembly shall elect a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to which it shall commit all matters governed by the Rules of Discipline, except for the annual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which may come before the Assembly. This commission shall consist of twenty-four (24) members divided into four classes of three teaching elders and three ruling elders in each class. Each class shall serve a four-year term and each subsequent Assembly shall declare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as a whole to be its commission. Nominations and vacancies shall be filled according to *BCO* 14-1(11), with nominations allowed from the floor. No person may be elected if there is already a member of the commission from the same Presbytery; but if a person is elected and changes Presbytery, he may continue to serve his full term. No person may serve concurrently on the General Assembly's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and any of the General Assembly's permanent committees.

15-3. 노회는 전체로서 (엄격하게 헌법에 관련된 어떤 문제든 아래 열거된 선택 조항과 함께 연구 위원회에 위탁시킬 권리를 포함해서) 관할권 내 재판 사건을 취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회가 자체의 결의로 어떤 법적 소송이라도 전권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전권위원회는 소송건을 제출한 교회의 당회원이 아닌 다른 노회원 중에서 노회가 임명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권징조례에 명시된 방법대로 그 소송을 재판하고 그 소송에 대한 완전한 진술서와 그 판결을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회는 토론없이 그 판결을 가결하거나 부결할 수 있고, 아니면, (토론할 수 있는 결의), 엄격하게 헌법에 관련된 어느 문제(들)는 연구위원회에 이관시킬 수 있다. 이관시킬 경우, 노회는 그 소송으로 야기된 특수 죄과의 일부나 전부를 각각할 수 있고, 아니면 연구위원회의 보고가 청문되고 토의된 후에야만 그 소송건을 결정할 수 있다. 노회가 가결하면, 전권위원회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노회의 회의록에 결정사항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노회가 부결하면, 노회는 그 소송을 노회 전체로서 청문하거나, 소송을 재청문할 새 전권위원회를 임명한다.

15-4. 총회는, 총회 앞에 상정될 수도 있는 연중 노회록 검열을 제외한, 권징 조례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송건들을 위탁할 상임법사전권위원회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스물네(24) 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반은 강도장로 세 명과 치리장로 세 명으로 되는 네 개의 반으로 편성된다. 각 반의 임기는 4 년이며, 매 차기 총회는 그 전체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가 그 [회기] 총회의 전권위원회임을 공포해야 한다. 공천과 공석은, 총회 석상에서 허락된 공천으로, *교회헌법* 14-1(11)에 의하여 충원된다. 만일 어느 노회에서 이미 전권위원이 선출되었다면 같은 노회에서는 아무도 전권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그러나, 전권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노회를 바꿀 경우에도, 그는 그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다. 아무도 총회의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직책]과 총회의 상임위원회들 가운데 어느 [직책]을 동시에 겸하여 맡을 수 없다.

15-5. a. In the cases committed to it,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have the judicial powers and be governed by the judicial procedure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decision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be the final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except as set forth below, to which there may be no complaint or appeal. Members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may file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s, or a minority report as set forth in (c) below. The General Assembly may direct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to retry a case if upon the review of its minutes exceptions are taken with respect to that case.

b. In each case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issue a summary of the facts, a statement of the issues, its judgment and its reasoning, together with any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s, all of which shall be entered on the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shall be reported by the Stated Clerk to the next General Assembly. The judgm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time of its announcement to the parties.

c. (1) If, within twenty-four (24) hours of the time of adjournment of a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meeting at which a final decision was rendered in a case, at least one-third (1/3) of the voting members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file written notice of their intention to file a minority decision with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and within twenty (20) days from the adjournment do file such a minority decision, such minority decision shall be considered a minority report and shall be referred, with the report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to the General Assembly. In each instance “file” shall be understood as defined by the Operating Manual for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2) No such reference* from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be considered by the General Assembly unless the report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and the minority report have been mailed to the clerk of Session of each church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to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3) The Assembly shall act upon such a reference* from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in each case without question, discussion, debate, or amendment, as follows:

a.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have 30 minutes to present its decision to the Assembly.

*NOTE: It was the opinion of the 26th General Assembly that “reference” is NOT to be understood as the technical term “reference” in *BCO* 41-1.

15-5. ㄱ. 위임된 소송건들에 대해서,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사법권을 가지며 총회 법적 절차에 의해 통제된다.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아래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원이나 상소를 할 수 없는 총회의 최종 결정이 된다.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들, 혹은 아래 (ㄷ)항에 정해진 대로 소수 [판결] 보고서를 접수 시킬 수 있다. 총회는 [총회 시]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회의록을 검열한 결과 그 소송과 관련되었으나 제외된 [사항들이] 있었다면, 동 전권위원회에게 소송을 재심리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ㄴ. 각 소송건에 대해서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사실 요약, 문제들에 관한 진술, 찬동 혹은 반대하는 모든 견해들과 함께, 동 위원회의 판결과 논거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총회록에 실려야 하며 총회 서기에 의해 차기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동 전권위원회의 판결은 각 당사자들에게 발표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ㄷ. (1) 만일, 한 소송에 대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회의가 폐회된 후, 이십사(24) 시간 이내에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투표권자 중 적어도 삼분의 일(1/3)이 총회 서기에게 소수 판결을 접수 시키려는 그들의 의도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폐회한 날부터 이십(20)일 이내에 그러한 소수 판결을 접수 시키면, 그 소수 판결은 하나의 소수 보고서로 간주되어야 하며,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보고서와 함께 총회에 위탁되어야 한다. 각 경우 “접수 시키다”의 [의미]는 상임 법사 위원회 지침서에 의해 정의된 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보고서와 소수 보고서가 적어도 총회 개회 삼십(30) 일 전에 각 교회의 당회 서기 앞으로 우송되지 아니하면,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로부터의 어떤 위탁건*도 총회에 의해 고려될 수 없다.

(3) 총회는 그러한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로부터 위탁된 건*에 대해서, 각 사건에 대한 질문이나 토의, 토론이나 수정 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ㄱ.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그들의 결정을 총회 석상에서 30 분간 발표할 시간을 갖는다.

*참조: “위탁건”은 *교회헌법* 41-1 에 나오는 기술적인 용어로서의 “문의”로 이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6 차 총회의 의견이었다.

- b. The minority shall have 30 minutes to present its decision to the Assembly.
- c.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have 10 minutes to reply to the minority report.
- d. The decision of the minority shall be proposed and the General Assembly shall, without question, discussion, debate, or amendment approve or disapprove of the minority report.
- e. If the General Assembly disapproves the minority report, the General Assembly shall take up the decision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and without question, discussion, debate, or amendment, approve or disapprove of the decision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4) If the General Assembly approves of a proposed decision, it shall be the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printed in its minutes. There may be no complaint or appeal from such a final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f the General Assembly finally disapproves of both proposed decisions, it must set the case for hearing before the General Assembly or a special commission appointed by it, and in either instance the case shall be tried on the record as delivered to the Stated Clerk. Any such special commission shall then proceed to consider the case and shall report its decision, in like manner, to the General Assembly for its approval or disapproval. In any event, the full record of the case, including written testimony of witnesses, all documents, exhibits and papers shall be delivered to the Stated Clerk for permanent preservation.”

15-6. The General Assembly shall have power to commit to a commission, consisting of not less than three elders, the task of forming a provisional Presbytery in a foreign country where there exists no compatible indigenous presbyterian and reformed Church. Such a commission shall have authority to act as the Presbytery in all matters pertaining to the establishment and ordering of a national Church and shall report annually to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ssion shall be dissolved when there are at least three national teaching elders and three organized churches under its care, and these shall then constitute a separate national Church.

- 나. 소수 위원들은 그들의 결정을 총회 석상에서 30 분간 발표할 시간을 갖는다.
- 다.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그 소수 보고서에 대해 10 분간 대답할 시간을 갖는다.
- 르. 소수 위원들의 결정은 총회에 상정되고 총회는 질문이나 토의, 토론이나 수정 없이 소수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 로. 만일 총회가 소수 보고서를 거부하면, 총회는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취하여 질문이나 토의, 토론이나 수정 없이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4) 만일 총회가 상정된 결정을 승인하면, 그것은 총회의 결정이 되며 총회록에 인쇄되어야 한다. 총회의 최종 결정에 대한 소원이나 상소는 있을 수 없다. 만일 총회가 상정된 두 결정을 최종적으로 모두 거부하면, 총회는 그 총회 앞에서나, 총회에 의해서 임명된 특별 전권위원회 앞에서 그 소송건을 위한 청문을 해야 하고, 어느 소송건이든 둘다 총회 서기에게 전달된 대로 [공식] 기록에 근거하여 심리되어야 한다. 그 특별 전권위원회는 그 후 해당 소송 심리를 진행하며 그들의 결정을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회에 제출 해야 하고, [총회는 그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증인들의 서면 증언, 모든 [관계] 서류들, 증거물 및 문서들을 포함한 소송의 모든 기록이 영구 보존을 위해 총회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15-6. 총회는, 3 명 이상의 장로로 구성된 전권 위원회에게, [본 총회와] 비견할 만한 현지의 개혁주의적 장로교회 총회가 없는 외국에 잠정적 노회를 설립하는 임무를 위탁 할 권한이 있다. 그 전권위원회는 그 나라에 총회를 설립하고 정립하는 데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 노회로서 조치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며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 전권위원회는 산하에 적어도 그 민족의 강도장로 세 명과 조직교회 세 개가 있게 될 때 해체되며, 그 때 이들은 독립된 민족 교회를 구성한다.

CHAPTER 16*Church Orders – The Doctrine of Vocation*

16-1. Ordinary vocation to office in the Church is the calling of God by the Spirit, through the inward testimony of a good conscience, the manifest approbation of God's people, and the concurring judgment of a lawful court of the Church.

16-2.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is by officers gifted to represent Christ, and the right of God's people to recognize by election to office those so gifted is inalienable. Therefore no man can be placed over a church in any office without the election, or at least the consent of that church.

16-3. Upon those whom God calls to bear office in His Church He bestows suitable gifts for the discharge of their various duties. And it is indispensable that, besides possessing the necessary gifts and abilities, natural and acquired, every one admitted to an office should be sound in the faith, and his life be according to godliness. Wherefore every candidate for office is to be approved by the court by which he is to be ordained.

제 16 장.

교회의 직분 - 소명론

16-1. 교회 내 직분에 대한 일반적인 소명은, 선한 양심의 내적 증언, 하나님 백성들의 명백한 시인, 교회의 적법한 치리회가 동의하는 판단으로 말미암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부름이다.

16-2.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표할 만한 은사를 받은 직원들에 의해서 치리되며, 그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분별하여 직원으로 선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는 박탈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도, 선거 없이, 적어도 그 교회의 찬동없이, 그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6-3.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을 맡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그 각종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은사를 베푸신다.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필요한 은사들과 능력들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외에도, 그 신앙이 건전하며 생활이 경건해야만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그러므로 모든 직원 후보자는 반드시 자신을 임명하려는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HAPTER 17

Doctrine of Ordination

17-1. Those who have been called to office in the Church are to be inducted by the ordination of a court.

17-2. Ordination is the authoritative admission of one duly called to an office in the Church of God, accompanied with prayer and the laying on of hands, to which it is proper to add the giving of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17-3. As every ecclesiastical office, according to the Scriptures, is a special charge, no man shall be ordained unless it be to the performance of a definite work.

제 17 장.

임직론

17-1. 교회의 직원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치리회의 임직을 받아야 한다.

17-2. 임직은 하나님의 교회의 직원으로 정당하게 부름 받은 사람에 대한 공적 승인으로, 기도와 안수가 수반되며, 그 위에 악수례를 추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

17-3.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경대로, 특수한 직책이므로, 명확한 사역의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도 임직될 수 없다.

CHAPTER 18*Candidates for the Gospel Ministry*

18-1. A candidate for the ministry is a member of the Church in full communion who, believing himself to be called to preach the Gospel, submits himself to the care and guidance of the Presbytery in his course of study and of practical training to prepare himself for this office.

18-2. Every applicant for the ministry must put himself under the care of Presbytery, which should ordinarily be the Presbytery that has jurisdiction of the church of which he is a member. The endorsement of his Session must be given to the Presbytery, consisting of testimonials regarding his Christian character and promise of usefulness in the ministry. The endorsement should also describe the activities of ministry the applicant has participated in with brief evaluation.

Every applicant for care shall be a member of the congregation whose session provides an endorsement for at least six months before filing his application, except in those cases deemed extraordinary by the Presbytery.

Every applicant must file his application with the clerk of the Presbytery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meeting of the Presbytery. An applicant for care may not be received under care and examined for ordination at the same meeting of the Presbytery, since he must serve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of internship prior to ordination (see *BCO* 19-7 and 21-4). An applicant for internship is obliged to be under care and may be licensed to preach the Gospel; further, one who is not already under care may be taken under care, be licensed to preach the Gospel, and become an intern at the same meeting of Presbytery.

18-3. The applicant shall appear before the Presbytery in person, and shall be examined by the Presbytery on experiential religion and on his motives for seeking the ministry.

If the testimonials and the examination prove satisfactory, the Presbytery shall receive him under its care after the following manner:

제 18 장.

목사 후보생

18-1. 목사 후보생은 교회의 온전한 수찬교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았다고 믿어, 이 직분을 위하여 학업과 실제적 훈련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회의 보살핌과 지도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18-2. 모든 목사 후보생은 반드시 노회의 보살핌 아래 있어야만 하고, 통상 그 노회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관할하는 노회여야만 한다. 그가 소속된 교회의 당회는,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에 대한 증언과 사역에 유익할 것이라는 약속을 담은 추천서를 필히 해당 노회에 보내야 한다. 그 추천서에는 후보자의 사역 활동과 거기에 대한 간단한 평가도 기록되어야만 한다.

모든 목사 후보생은, 노회에서 특별히 예외 취급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서를 내기 전 최소한 육 개월 동안은 추천서를 써주는 당회의 교인이어야 한다.

모든 목사 후보생은 노회 서기에게 늦어도 노회 모임 일 개월 전에 그의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목사 후보생은 같은 노회 [기간] 중에 언더케어로 받아 들여지는 것과 동시에 [목사] 시취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 전까지는 반드시 최소한 일 년 이상 인턴십의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교회헌법 19-7 과 21-4 참조). 수련을 원하는 목사 후보생은 언더케어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설교 할 수 있는 강도사로 인허 받을 수 있다; 나아가서, 아직 언더케어를 받고 있지 않은 목사 후보생이라도 언더케어를 받을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강도사로 인허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노회 기간 중에 인턴이 될 수 있다.

18-3. 목사 후보생은 직접 노회에 출석하여, 신앙 경력과 목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에 대해 노회의 시취를 받아야 한다.

만일 [그의] 증언과 시취가 만족하다고 입증되면, 노회는 다음 절차를 따라 그를 노회의 언더케어로 받는다.

The moderator shall propose to the applicant these questions:

1. **Do you promise in reliance upon the grace of God to maintain a becoming Christian character, and to be diligent and faithful in making full preparation for the sacred ministry?**
2. **Do you promise to submit yourself to the proper supervision of the Presbytery in matters that concern your preparation for the ministry?**

If these questions be answered in the affirmative, the moderator, or someone appointed by him, shall give the candidate a brief charge; and the proceeding shall close with prayer.

The name of the applicant is then to be recorded on the Presbytery's roll of candidates for the ministry.

18-4. The candidate continues to be a private member of the church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ession, but as respects his preparatory training for the ministry he is under the oversight of the Presbytery. It shall be the duty of the Presbytery to show a kindly and sympathetic interest in him, and to give him counsel and guidance in regard to his studies, his practical training, and the institutions of learning he should attend. In no case may a candidate omit from his course of study any of the subjects prescribed in the Form of Government as tests for ordination without obtaining the consent of Presbytery (see *BCO* 21-4); and where such consent is given the Presbytery shall record the fact and the reasons therefore.

18-5. For the development of his Christian character, for the service he can render, and for his more effective training, the candidate, when entering on his theological studies, should be authorized and encouraged by the Presbytery to conduct public worship, to expound the Scriptures to the people, and to engage in other forms of Christian work. These forms of service should be rendered under the direction of Presbytery, and also with the sanction and under the guidance of the candidate's instructors during the time of his being under their instruction. A candidate should not undertake to serve a church which is without a pastor as regular supply unless he has been licensed and approved for that supply by the Presbytery having jurisdiction of the church (see *BCO* 19-1).

노회 의장이 목사 후보생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1.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유지하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성직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약속하십니까?
2. 귀하는 귀하의 성직 준비에 관한 일들에 대해 노회의 적법한 감독을 받으며 순종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만일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노회 의장이나 그의 지명을 받은 자가 후보생에게 간단한 권면을 하고, 기도로 그 절차를 마친다.

그 후에 후보자의 이름이 노회의 목사 후보생 명단에 기록된다.

18-4. 목사 후보생은 계속해서 그 교회의 교인이어야 하고 그 당회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사역을 위한 준비 훈련에 관한 그는 노회의 감독 아래에 있다. 그에게 친절하고 호감이 가는 관심을 보여 주며, 그의 학업과 실제 훈련, 그리고 그가 다녀야 할 학교에 관해 상담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노회의 의무이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목사 후보생은 노회의 허락 없이 교회 정치 부분에 명기된 안수를 위한 고시 과목 중 어느 과목도 그의 학업 과정에서 생략할 수 없다 (*교회헌법* 21-4 참조); 노회가 허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노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18-5.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계발,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봉사, 또 자신의 보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하여, 목사 후보생이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노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격려를 받아, 공공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며,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역은 노회의 지도하에 수행되며, 목사 후보생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지도 교수의 승인과 지도도 견해야 한다. 목사 후보생은, 해당 교회 관할권을 가진 노회로부터 강도사 인허를 받고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임시 설교자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 교회에 정기적인 임시 설교자로 봉사할 수 없다 (*헌법* 19-1 을 보라).

18-6. The Presbytery shall require every candidate for the ministry under its care to make a report to it at least once a year; and it shall secure from his instructors an annual report upon his deportment, diligence, and progress in study.

18-7. The Presbytery may, upon application of the candidate, give a certificate of dismissal to another Presbytery. The candidate may be allowed to retain membership in his home church upon the request of his Session and the approval of both Presbyteries involved. A candidate shall, at his request, be allowed to withdraw from the care of the Presbytery. The Presbytery may also, for sufficient reasons, remove the name of the candidate from its roll of candidates; but in such a case it shall report its actions and the reasons therefor to the candidate and to the Session of his church.

18-8. An applicant coming as a candidate from another denomination must present testimonials of his standing in that body and must become a member of a congregation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He shall then fulfill the requirements of applicants listed under *BCO* 18-2, as well as requirements placed upon those desiring to be licensed or to become an intern as set forth in *BCO* 19.

18-6. 노회는 언데케어에 있는 모든 목사 후보생들에게 최소한 일 년에 한 차례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또 노회는 지도 교수들로부터 그의 품행과 근면함과 학업 성적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확보해야 한다.

18-7. 노회는, 목사 후보생이 신청하면, 다른 노회로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목사 후보생은 소속 교회 당회의 요청과 [이명에] 관련된 두 노회의 승인으로 자신의 본 교회 교인됨을 유지하도록 허락 받을 수 있다. 목사 후보생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노회의 보살핌으로부터 철회를 허락 받을 수 있다. 노회 역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목사 후보생 이름을 목사 후보생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노회는 노회의 조치들과 그 이유를 그 목사 후보생과 그의 교회 당회에 통보해야 한다.

18-8. 다른 교단에서 전입하는 목사 후보생은 그 교단으로부터 무흠하다는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미국장로교에 속한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 후 그는 *교회헌법* 18-2 에 명기된 목사 후보생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헌법* 19 장의 규정대로 인허받기를 원하거나 인턴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갖추어야 한다.

CHAPTER 19

Licensure and Internship

A. Licensure

19-1. To preserve the purity of the preaching of the Gospel, no man is permitted to preach in the pulpit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on a regular basis without proper licensure from the Presbytery having jurisdiction where he will preach. An ordained teaching elder who is a member in good standing of another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may be licensed after being examined as to his views,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BCO* 13-6. This license shall immediately become void if the minister's own Presbytery administers against him a censure of suspension from office or the sacraments, or deposition from office, or of excommunication (in the event of such censures, the Presbytery with jurisdiction shall always notify the licensing Presbytery). A ruling elder, a candidate for the ministry, a minister from some other denomination, or some other man may be licensed for the purpose of regularly providing the preaching of the Word upon his giving satisfaction to the Presbytery of his gifts and passing the licensure examination. (See also *BCO* 22-5 and 22-6.)

19-2. Examination for Licensure.

The examination for licensure shall be as follows:

- a. Give a statement of his Christian experience and inward call to preach the Gospel in written form and/or orally before the Presbytery (at the discretion of the Presbytery):
- b. Be tested with a written and/or oral examination by the Presbytery (at the discretion of the Presbytery) for his:
 1. basic knowledge of Biblical doctrine as outlined in the *Confession of Faith* and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2. practical knowledge of Bible content.
 3. basic knowledge of the govern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s defined in *The Book of Church Order*.
- c. Be examined orally before Presbytery for his views in the areas outlined in part b above.
- d. Provide his written sermon on an assigned passage of Scripture embodying both explanation and application, and present orally his sermon or exhortation before Presbytery or before a committee of Presbytery.

제 19 장.

인허와 인턴십

가. 인허

19-1. 복음 전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그 사람이 설교하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회로부터 적절한 인허를 받음이 없이 미국장로교 강단에서 정기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미국장로교 산하 타 노회 소속 무흠 노회원 강도장로는 *교회헌법* 13-6 의 규정에 따라 그의 견해에 관하여 시취를 받은 후 인허 될 수 있다. 이 인허는 그 목회자가 소속해 있는 노회가 그에 대하여 정직이나 수찬 정지, 혹은 면직이나 출교 등의 책벌을 시행하는 경우 즉각 무효된다 (이상과 같은 책벌의 경우, 관할 노회는 언제나 인허를 발급한 노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치리장로나 목사후보생, 다른 교단에서 전입하는 목사 혹은 그 외 누구라도 그의 은사들에 대하여 노회를 만족 시키고 강도사 시취를 합격하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을 목적으로 인허 받을 수 있다. (*교회헌법* 22-5 와 22-6 참조)

19-2. 인허시취.

인허 시취는 다음과 같다:

- ㄱ. 그리스도인 신앙 체험과 복음 전파에 관한 [그의] 내적 소명에 대하여 (노회의 재량에 따라) 서면과 구두로 혹은 둘 중의 하나로 노회 앞에 진술한다:
- ㄴ. (노회의 재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혹은 둘 중의 하나로 노회가 시취한다:
 1. 미국장로교 *신앙고백*이나 *대소요리 문답*에 요약된 성경적 교리에 대한 기초 지식.
 2. 성경 내용에 대한 실제적 지식.
 3. *교회 헌법*에 명시된 미국장로교 정치에 대한 기초 지식.
- ㄷ. 상기 ㄴ에 요약된 분야에 대한 그의 견해를 노회 앞에서 구두로 시취 받는다.
- ㄹ. 지정된 성경본문에 기초하여 설명과 적용이 포함된 설교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노회 앞이나 노회의 위원회 앞에서 그의 설교[목사 후보생 혹은 목사의 경우]나 권면[치리장로의 경우]을 구두로 제시해야 한다.

- e. While our Constitution does not require the applicant's affirmation of every statement and/or proposition of doctrine in our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it is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the Presbytery to determine if the applicant is out of accord with any of the fundamentals of these doctrinal standards and, as a consequence, may not be able in good faith sincerely to receive and adopt the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of this church as containing the system of doctrine taught in the Holy Scriptures (cf. BCO 19-3, Q.2).
- f. Therefore, in examining an applicant for licensure, the Presbytery shall inquire not only into the candidate's knowledge and views in the areas specified above, but also shall require the candidate to state the specific instances in which he may differ with the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in any of their statements and/or propositions. The court may grant an exception to any difference of doctrine only if in the court's judgment the applicant's declared difference is not out of accord with any fundamental of our system of doctrine because the difference is neither hostile to the system nor strikes at the vitals of religion.

No Presbytery shall omit any of these parts of examination except in extraordinary cases; and whenever a Presbytery shall omit any of these parts, it shall always make a record of the reasons therefor, and of the trial parts omitted.

19-3. Questions for Licensure.

If the Presbytery be satisfied with the trials of the applicant, it shall then proceed to license him in the following manner:

The moderator shall propose to him the following questions, namely:

1. **Do you believe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s originally given, to be the inerrant Word of God,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2. **Do you sincerely receive and adopt the *Confession of Faith* and the *Catechisms* of this Church as containing the system of doctrine taught in the Holy Scripture?**
3. **Do you promise to strive for the purity, peace, unity and edification of the Church?**
4. **Do you promise to submit yourself, in the Lord, to the government of this Presbytery, or of any other into the bounds of which you may be called?**

- ㄱ. 본 교단의 헌법이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에 있는 모든 진술과/혹은 교리의 명제에 대하여 후보생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생이 이 교리 기준들의 근본적인 것들 중 어느 것과 일치하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본 교회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받으며 채용할 수 없게 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회의 권리와 책임이다 (헌법 19-3, 제 2 문).
- ㄴ. 그러므로, 인허를 위한 후보생 시취시, 노회는 상기에 명시된 영역에 대하여 후보생의 지식과 견해를 조회 할 뿐만 아니라, 후보생이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의 진술문과/혹은 명제들 중 어느 것이라도 [견해를] 달리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반드시 진술하도록 후보생에게 요구해야 한다. 치리회는 치리회의 판단에 후보생이 선언한 이견이 [교리] 체계에 적대적이거나 신앙의 생명력을 뒤흔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만 교리에 대한 어떤 이견에 예외를 허용 할 수 있다.

어느 노회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취의 어느 부분도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노회가 이 시취의 어느 부분이라도 생략할 경우, 노회는 항상 그 이유와 생략된 시취 부분을 노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19-3. 인허를 위한 질문.

만일 노회가 후보생의 시취에 만족한다면, 노회는 다음 절차를 따라 그를 인허 해야 한다:

노회 의장은 다음 질문들을 그에게 한다:

1. 귀하는 친구약 성경 원본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 무오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2. 귀하는 미국장로교의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체계를 포함한다고 신실하게 받으며 채용하십니까?
3. 귀하는 교회의 순결과 화평과 연합과 건덕을 위해 진력하기로 약속하십니까?
4. 귀하는 주 안에서 이 노회의 치리나, 귀하가 청빙 받게 될 다른 노회 치리에 복종하기로 약속하십니까?

19-4. The applicant having answered these questions in the affirmative, the moderator shall offer a prayer suitable for the occasion, and shall address the applicant as follow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at authority which He has given to the Church for its edification, we do license you to preach the Gospel in this Presbytery wherever God in His providence may call you; and for this purpose may the blessing of God rest upon you, and the Spirit of Christ fill your heart. Amen.

Record shall be made of the licensure in the following or like form: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the _____ Presbytery, having received testimonials commending _____, proceeded to submit him to the prescribed examination for licensure, which was met to the approval of the Presbytery. Having satisfactorily answered the questions for licensure, _____ was licensed by the Presbytery to preach the Gospel within the bounds of this Presbytery.

19-5. When any licentiate shall have occasion to remove from the bounds of his Presbytery into those of another, the latter Presbytery may, at its discretion, on his producing proper testimonials from the former, repeat any portion of the previous Presbytery's examination it desires. The Presbytery into whose bounds the licentiate is moving, however, must at least examine the man concerning:

- a. his Christian experience,
- b. his call to preach the Gospel,
- c. his views in theology,
- d. Bible content,
- e. church government.

This Presbytery then may license him to preach within its bounds.

19-6. The license to preach the Gospel shall expire at the end of four years. The Presbytery may, if it thinks proper, renew it without further examination. The licentiate must apply for renewal prior to expiration. If the license expires, the stated clerk shall report the expiration to the Presbytery and to the individual's Session, and such action shall be recorded in the minutes. The procedures of *BCO* 19-2 must be followed for re-licensure and such fact shall be recorded in the minutes. The license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a simple majority vote of the issuing Presbytery. The Presbytery shall always record its reasons for this action in its minutes.

19-4. 후보생이 이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한 후, 노회 의장은 때에 적절한 기도를 하고, 후보생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귀하를 어디서 부르시든지 이 노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귀하를 강도사로 인허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와 함께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귀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인허는 다음과 같이 혹은 비슷한 형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_____ 노회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_____에 대한 추천 증명서를 받은 후, 노회의 소정 인허 시취를 치렀습니다. 인허 시취에 만족할만 하게 합격하였으므로 본 노회는 _____를 본 노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허 합니다.

19-5. 강도사가 그의 소속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노회는, 강도사가 이전 노회에서 가져온 적법한 증빙서류들을 제출 받은 후, 노회가 원하면 노회 재량으로 이전 노회가 시취한 어느 부분이라도 반복하여 [시취]할 수 있다. 강도사를 이명 받는 노회는 최소한 그에 대한 다음사항을 시취해야 한다:

- ㄱ. 그리스도인 신앙체험.
- ㄴ.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
- ㄷ. 신학적 견해.
- ㄹ. 성경.
- ㅁ. 교회 정치.

이 노회는 시취 후 그에게 노회 관할 지역에서 설교하도록 인허할 수 있다.

19-6. 강도사 인허는 사[4] 년이 만기이다. 노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반복 시취 없이 인허를 갱신할 수 있다. 강도사는 인허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인허가 만료되면 노회 서기는 노회와 소속 당회에 통보해야 하고, 그 조치를 노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재인허를 받을 경우 *교회헌법* 19-2 항의 절차대로 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은 노회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인허는 인허를 해 준 노회 단순 과반수 투표로 언제든지 취하될 수 있다. 그 노회는 항상 이러한 조치의 이유들을 노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B. Internship

19-7. The Holy Scriptures require that some trial be previously made of those who are to be ordaine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both concerning their gifts and concerning their ability to rule as teaching elders, in order that this sacred office may not be degraded by being committed to weak or unworthy men, and that the Church may have an opportunity to form a better judgment respecting the gifts of those to whom this sacred office is to be committed.

To provide for such a period of trial, a candidate for ordination must serve an internship. This period of internship shall be at least one year in length, and may be longer at the discretion of the Presbytery so as to give sufficient time for the Presbytery to judge the candidate's qualifications and service. This period of internship may occur during or after the candidate's formal theological education. When it occurs during his formal theological education, it may include an intern year in addition to his time of academic training or it may run concurrent with his academic training.

The nature of the internship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bytery, but it should involve the candidate in full scope of the duties of any regular ministerial calling approved by the Presbytery. It is to be both a time of practical instruction and testing by the Presbytery, and may be in any work which the Presbytery deems to be a suitable ministry to test the intern's gifts. The intern should be closely supervised by the Presbytery throughout this trial period.

19-8. An applicant for internship must be a candidate and may be a licentiate in the Presbytery in which he is seeking to become an intern. He may, however, become a candidate, and an intern at the same meeting of Presbytery. If an applicant for internship is already a candidate in another Presbytery, that Presbytery should dismiss him as a candidate to the Presbytery in which he is seeking to become an intern.

19-9. Examination for Internship.

Before the applicant begins his period of internship, he shall give to the Presbytery a written and/or an oral statement (at the discretion of the Presbytery) of his inward call to the ministry of the Word.

19-10. When an applicant is approved for internship,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shall offer a prayer suitable for the occasion, and shall address the applicant, if present, as follows:

나. 인턴십

19-7. 성경은 말씀 사역에 안수 받을 사람들을 목사로써 그의 은사와 치리 능력에 대해 먼저 시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 성직이 직책에 불충분한 자나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되어 천시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가 이 성직이 수여될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 더 잘 판단토록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 시험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안수 후보생은 인턴십을 거쳐야 한다. 이 인턴십은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노회의 재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데 이는 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봉사를 [바르게] 판단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다. 이 인턴십은 후보생이 정식 신학 교육을 받는 동안이나 그 후에 있을 수 있다. 인턴십이 정식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에 있을 때는, 인턴십이 그의 신학 훈련 기간에 추가하여 일[1]년의 인턴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신학 훈련과 병행해서 수행될 수도 있다.

인턴십의 성격은 노회가 결정하나, 그 성격은 후보자로 하여금 노회가 인준한 정규 [목회] 사역적 소명 전반에 관한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노회가 실제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시험하는 기간이 되어야만 한다; 또 노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도 인턴의 은사를 시험할 수 있다. 인턴은 전 훈련 기간 동안 철저히 노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9-8. 인턴십 지원자는 반드시 목사 후보생이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자신이 인턴이 되고자 하는 노회의 강도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같은 노회 회기 중 목사후보생이 되고 동시에 인턴이 될 수도 있다. 인턴십 지원자가 이미 다른 노회의 목사후보생이면, 그 노회는 그 후보생이 인턴이 되고자 하는 노회에 목사 후보생으로서 이명시켜야 한다.

19-9. 인턴십 시취.

지원자는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에, (노회의 재량에 따라) 필기와 구두로 혹은 둘 중의 하나로 말씀 사역에 대한 내적 소명을 노회에 진술해야 한다.

19-10. 지원자가 인턴십을 인준 받으면, 노회 의장은 때에 적절한 기도를 드리고, 지원자가 출석했으면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at authority which He has given to the Church for its edification, we do declare you to be an intern of this Presbytery as a means of testing your gifts for the holy ministry wherever God in His providence may call you; and for this purpose may the blessing of God rest upon you, and the Spirit of Christ fill your heart. Amen.

Record shall be made of the internship in the following or like form, namely: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the _____ Presbytery, having received testimonials commending _____, having received him as a candidate for the ministry, has placed him under internship at his request in order to test his gifts for the holy ministry.

19-11. When any intern shall have occasion, while his internship is in progress, to remove from the bounds of his own Presbytery into those of another, the latter Presbytery may, at its discretion, on his producing proper testimonials from the former, take up his internship at the point at which it was left, and conduct it to a conclusion in the same manner as if it had been commenced by itself. Presbytery may repeat any portion of the previous Presbytery's examination it desires.

When God gives the intern the providential opportunity to serve the Church and to receive part of his training within the bounds of a Presbytery other than the one in which he has been declared an intern, the Presbyteries involved may develop a cooperative agreement to assure the proper training of the intern. In such cases the home Presbytery retains the final responsibility for and authority over the internship, but may rely to any extent considered necessary and proper in the circumstances, on the assistance of the sister Presbytery. When regular preaching of the Word is involved, care must be taken to comply with *BCO* 19-1.

19-12. Presbyteries should require interns to devote themselves diligently to the trial of their gifts; and no one should be ordained to the work of the ministry of the Word until he has demonstrated the ability both to edify and to rule in the Church. Reports on every intern in the Presbytery should be presented at each stated meeting of the Presbytery by the committee of Presbytery charged with the oversight of interns, and these reports shall become a part of the minutes of Presbytery. The Presbytery shall also require every intern himself to make a report to it at least once a year describing his ministerial experiences. If the intern is still in school, the Presbytery shall secure from his instructors an annual report upon his deportment, diligence, and progress in study.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교회에 주신 권위로, 본 노회는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귀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귀하의 은사를 시험하는 방편으로서 이 노회의 인턴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에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귀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인턴십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혹은 다음과 유사한 형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_____ 노회는 _____년 ____ 월 ____ 일에 _____에서, _____을(를) 추천하는 증빙서류를 받은 후, 그를 사역을 위한 목사 후보생으로 받고, 자신의 요청을 따라 거룩한 사역에 대한 그의 은사를 시험하기 위해 인턴십을 받도록 하다.

19-11. 인턴십이 진행되는 동안, 인턴이 소속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될 경우, 그 노회는 재량에 따라 전 교회로부터 증빙서류를 이관 받고 인턴의 잔여부분을 이어받아, 시작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인턴십을 종결지어 줄 수 있다. 그 노회는 전 교회의 시험 중 어느 부분이라도 노회가 원하면 반복할 수 있다.

인턴이 소속되어 있지 않는 교회의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 내에서 부분적으로 훈련 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때는, 해당 노회들이 인턴의 적법한 훈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소속 노회가 인턴십에 대한 최종적 책임과 권위를 유지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한, 자매 교회의 협조에 의존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설교할 경우에는 *교회헌법 19-1*의 규정을 따라 보살펴야 한다.

19-12. 노회들은 인턴들이 그들의 은사를 시험하는 일에 성실하게 헌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치리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이기 전에는 아무도 말씀 사역을 위해 안수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노회의 모든 인턴에 대한 보고는 인턴들을 감독하도록 위임받은 노회 위원회에 의해 매 노회 때마다 보고되어야 하며, 이 보고는 노회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노회는 모든 인턴으로 하여금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 노회 앞에 자신의 목회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인턴이 아직 재학 중이면, 노회는 지도 교수로부터 인턴의 품행, 근면, 그리고 학업 진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확보해야 한다.

19-13. At the end of the period of time set by the Presbytery for his internship, an intern shall have his internship either approved or disapproved. Even if it is approved, he cannot be ordained without a call to some specific work. If the internship is disapproved, the Presbytery may either extend it for another definite period of time or it may completely rescind his intern status and may revoke his internship. If the intern shall devote himself unnecessarily to such pursuits as interfere with a full trial of his gift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Presbytery to rescind his intern status, and to record its reasons therefor in the Minutes of Presbytery.

19-14. An intern, who, during his internship, is to serve a congregation in the capacity of the minister of the Word must be called by the congregation in the same way that a regular minister is called. A congregation may later call such a man as its pastor. This call must be approved by Presbytery prior to the time of ordination. In the event a congregation does not desire to call such a man as its pastor as determined by a congregational vote, notice should be given as early as possible. Interns may be called to serve as assistants to ministers during their internship, by the Session of a church with approval of the call by Presbytery.

19-15. Restrictions. The intern may be asked by the moderator of a Session temporarily to chair the meeting of the Session. In such cases the moderator shall supervise this activity and may overrule the intern or re-assume the chair at will. The intern is not a member of Session and may not vote in the meetings unless he has previously been ordained a Ruling Elder and elected to the Session by the congregation. Normally, he shall serve in an advisory capacity to the Session and Diaconate when he has been called to work out his internship by a congregation. He shall have the right to conduct funerals. An intern may not administer the Sacraments. He may serve on committees of the church he serves.

19-16. Where circumstances warrant, a Presbytery may approve previous experience which is equivalent to internship. This equivalency shall be decided by a three-fourths (3/4) vote of Presbytery at any of its regular meetings. Such equivalent experience shall be decided only after the Presbytery's internship committee has determined and reported that the candidate has m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a. he has had at least one (1) year of experience in comparable ministry;
- b. he has satisfactorily performed the full scope of ministerial duties;
- c. he has the manifest approbation of God's people in a local church as having the requisite gifts for the pastoral ministry.

19-13. 노회가 규정한 인턴십이 끝날 때, 인턴은 그의 인턴십을 승인 받거나 거부 받게 된다. 비록 승인 받았을지라도 어떤 특정 사역에 대한 청빙이 없으면 안수 받을 수 없다. 만일 인턴십이 거부 당했을 경우, 노회는 일정 기간을 재설정하여 인턴십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그의 인턴 신분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인턴십을 취소할 수 있다. 만일 인턴이 자신의 은사를 충분히 시험하는데 방해되는 어떤 일에 불필요하게 몰두한다면, 노회는 그의 인턴 신분을 무효화하고, 그 이유를 노회록에 기록할 의무가 있다.

19-14. 인턴십 중에 있는 인턴이 목사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회중을 섬기려면, 정규 목사가 청빙받는 것과 같은 절차를 따라 회중으로부터 청빙 받아야 한다. 회중은 나중에 그를 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이 청빙은 그가 안수 받기 전에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중이 공동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를 목사로 청빙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될 수 있는 한 속히 알려야 한다. 인턴십 중, 교회 당회의 [요청]이 있고 청빙에 대한 노회의 인준이 있으면 인턴들은 목사 보조자로 섬기도록 청빙 받을 수 있다.

19-15. 제한 사항.

인턴은 당회 의장의 요청으로 당회의 임시 사회자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당회 의장은 [인턴의] 활동을 감독하고 인턴의 사회권을 제재하거나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 인턴은 당회원이 아니며, 사전에 처리장로로 안수 받아 그 교회 회중에 의해 당회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한, [당회] 모임에서 투표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인턴은 인턴십을 받도록 회중에 의해 청빙 받았을 때 [그 교회의] 당회나 집사회의 자문역으로 봉사한다. 그는 장례를 집행 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성례 집전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는 그가 섬기는 교회의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다.

19-16. 상황이 정당할 때 노회는 인턴십에 동등한 이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동등성은 정기노회에서 노회 투표권자 사분의 삼(3/4)의 찬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 동등한 경력 [인정]은 노회 인턴십 위원회가 후보생이 다음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켰다고 결정하고 보고한 뒤에 만 가결 될 수 있다.

- ㄱ. 그는 최소한 1년의 비교할만한 사역 경험을 가지고 있다;
- ㄴ. 그는 사역 의무의 모든 분야를 만족할 만 하게 수행했다;
- ㄷ. 그는 지역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자]로 회중들의 명백한 인정을 받고 있다.

CHAPTER 20*The Election of Pastors*

20-1. Before a candidate, or licentiate, can be ordained to the office of the ministry, he must receive a call to a definite work. Ordinarily the call must come from a church,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of this denomination. If the call comes from another source, the Presbytery shall always make a record of the reasons why it considers the work to be a valid Christian ministry. (See also *BCO* 8-7 and 21-1).

A proper call must be written and in the hands of the Presbytery prior to being acted upon by a Presbytery. It must include financial arrangements (such as salary, vacation, insurance, retirement, etc.) between those calling and the one called, and assurance that the definite work will afford the liberty to proclaim and practice fully and freely the whole counsel of God, a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and understood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t shall be in accord with the *BCO* 8.

20-2. Every church should be under the pastoral oversight of a minister, and when a church has no pastor it should seek to secure one without delay.

A church shall proceed to elect a pastor in the following manner: The Session shall call a congregational meeting to elect a pulpit committee which may be composed of members from the congregation at large or the Session, as designated by the congregation (see *BCO* 25). The pulpit committee shall, after consultation and deliberation, recommend to the congregation a pastoral candidate who, in its judgment, fulfill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at office (e.g., *BCO* 8, 13-6 and 21) and is most suited to be profitable to the spiritual interests of the congregation (cf. *BCO* 20-6).

The Session shall order a congregational meeting to convene at the regular place of worship. Public notice of the time, place, and purpose of this meeting shall be given at least one week prior to the time of the meeting.

20-3. When a congregation is convened for the election of a pastor it is important that they should elect a minister or ruling el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to preside, but if this be impracticable, they may elect any male member of that church. The Session shall appoint one of their number to call the meeting to order and to preside until the congregation shall elect their presiding officer. All communing members in good and regular standing, but no others, are entitled to vote in the churches to which they are respectively attached.

제 20 장.

담임목사의 선출

20-1. 목사 후보생이나 강도사는 목사로 안수 받기 전에 확정된 사역에 반드시 청빙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청빙은 미국장로교의 교회, 노회, 또는 총회에서 온 것이어야만 한다. 만일 청빙을 다른 곳으로부터 받는다면, 노회는 왜 그 사역을 정당한 기독교적 사역으로 간주하는지 그 이유를 항상 기록해야 한다 (*교회헌법* 8-7 과 21-1 참고).

합법적인 청빙은 노회가 처리하기 전에 필히 서면으로 제출되어 노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청빙서에 포함할 것은, 청빙 하는 자와 청빙 받는 자 사이에 합의된 재정사항(사례비, 휴가, 보험, 퇴직금 등)과 그 확정된 사역이 성경에 담겨져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해된 대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롭게 선포하고 실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확신을 포함해야만 한다. 청빙은 *교회헌법* 8 장과 부합되어야 한다.

20-2. 모든 지교회는 목사의 목회적 보살핌 아래 있어야 하며, 목사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목사를 확보하도록 찾아야 한다.

지교회가 목사를 선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당회는 청빙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청빙위원회는 회중의 지명에 따라 (*교회헌법* 25 장) 전체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교인들로 구성되거나 당회 회원들로 구성된다. 청빙위원회는 상의하고 심의 한 후, 목사 후보를 공동의회에 추천하는데, 후보는 청빙위원회의 판단에 헌법상 그 직분의 요구를 만족 시키며 (예를 들면, *교회헌법* 8, 13-6 과 21) 회중의 영적 관심사에 유익을 끼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야 한다 (*교회헌법* 20-6 비교)

당회는 정규 예배 장소에서 공동의회가 모이도록 해야 한다. 공동의회 시간, 장소 및 목적에 대하여는 적어도 개회 일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3. 담임목사 선출을 위해 공동의회가 모일 때 미국장로교 목사 혹은 지리 장로로 하여금 사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일이 불가능할 경우 그들은 본교회의 남자 회원 중 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 당회는 당회원 한 사람을 지명하여 회중이 그들의 사회자를 선출하기까지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하게 해야 한다. 오직 모든 무흠 정규 교인들만이 각각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투표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20-4. Method of voting: The voters being convened, and prayer for divine guidance having been offered, the moderator shall put the question:

Are you ready to proceed to the election of a pastor?

If they declare themselves ready, the moderator shall call for nominations, or the election may proceed by ballot without nominations. In every case a majority of all the voters present shall be required to elect.

20-5. On the election of a pastor, if it appears that a large minority of the voters are averse to the candidate who has received a majority of votes, and cannot be induced to concur in the call, the moderator shall endeavor to dissuade the majority from prosecuting it further; but if the electors be nearly or quite unanimous, or if the majority shall insist upon their right to call a pastor, the moderator shall proceed to draw a call in due form, and to have it subscribed by them, certifying at the same time in writing the number of those who do not concur in the call, and any facts of importance, all of which proceedings shall be laid before the Presbytery, together with the call.

20-6. Form of call: The terms of the call shall be approved by the congregation in the following or like form:

The _____ Church being on sufficient grounds well satisfied of the ministerial qualifications of you, _____, and having good hopes from our knowledge of your labors that your ministrations in the Gospel will be profitable to our spiritual interests, do earnestly call you to undertake the pastoral office in said congregation, promising you, in the discharge of your duty, all proper support, encouragement and obedience in the Lord. That you may be free from worldly cares and avocations, we hereby promise and oblige ourselves to pay you the sum of \$ _____ a year in regular monthly (or quarterly) payments, and other benefits, such as, manse, retirement, insurance, vacations, moving expenses etc., during the time of your being and continuing the regular pastor of this church.

In testimony whereof we have respectively subscribed our names this _____ day of _____, A.D. _____.

Attest: I, having moderated the congregational meeting which extended a call to _____ for his ministerial services, do certify that the call has been made in all respects according to the rules laid down in the *Book of Church Order*, and that the persons who signed the foregoing call were authorized to do so by vote of the congregation.

Moderator of the Meeting

20-4. 투표 방법: 투표자들이 소집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귀하들은 담임목사 선출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일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하면, 사회자는 공천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선거를 공천 없이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선거는 전체 출석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20-5. 담임목사 선출 시, 만일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 목사에게 대해 소수 투표자들 중 다수가 반대하고, 또 청빙에 동의하라는 권유에 설득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면, 사회자는 다수 투표자들이 청빙을 더 이상 집행하지 말고 단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투표자들이 거의 혹은 완전히 만장일치라면, 혹은 다수 투표자들이 담임목사 청빙 권한을 주장한다면, 사회자는 합당한 청빙서를 만들어 그들의 서명을 받아 진행 시키는 동시에, 청빙 반대자들의 수와 중요 사실 모두를 서면으로 작성 인증하고, 이 모든 진행 과정을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20-6. 청빙 양식: 청빙의 조건은 다음의 형식 혹은 그와 유사한 형식으로 회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_____ 교회는 귀하 _____ 씨의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만족하다는 충분한 근거 위에서, 또 귀하의 수고를 알기에 귀하의 복음 사역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에 귀하가 본 교회 회중의 목회 사역을 맡아 주기를 진심으로 청원하며, 귀하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모든 필요한 지원과 격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을 약속합니다. 귀하가 이 교회의 정식 담임목사직을 맡아 감당하는 동안, 귀하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 직업에서 자유하도록, 우리는 귀하에게 연봉 \$ _____ 를 일정한 월 생활비(혹은 분기별 생활비)로 나누어, 사택, 퇴직금, 보험, 휴가, 이사 비용 등 다른 혜택과 함께 지급하기로 여기에 약속하며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로 삼가 서명했습니다.

증인: 본인은 _____ 씨를 목회 사역 담당자로 청빙하는 공동의회에서 사회하였으며, 청빙서는 교회헌법에 규정된 대로 작성되었고, 청빙에 서명한 사람들은 공동의회 결정에 의해 서명할 권한이 위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공동의회 의장

20-7. If any church shall choose to designate its ruling elders and deacons, or a committee to sign its call, it shall be at liberty to do so. But it shall, in such case, be fully certified to the Presbytery by the minister or other person who presided, that the persons signing have been appointed for that purpose by a public vote of the church, and that the call has been in all other respects prepared as above directed.

20-8. Prosecution of call: One or more commission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church to present and prosecute the call before their Presbytery.

20-9. When a pastor desires to accept a call to another Presbytery, he must be examined and approved by the Presbytery for the pastorate to which he is being called, and must be released for transfer by his present Presbytery from his pastorate.

20-10. A congregation desiring to call a pastor from his charge, shall, by its commissioners to the Presbytery, prosecute the call before its Presbytery. The Presbytery, having heard all the parties, may, upon viewing the whole case, either recommend them to desist from prosecuting the call; or may order it to be delivered to the minister to whom it is addressed, with or without advice; or may decline to place the call in his hands; as it shall appear most beneficial for the peace and edification of the Church at large.

No pastor shall be transferred without his own consent, if the parties are not ready to have the matter decided at the meeting then in progress, a written citation shall be given the minister and his church to appear before the Presbytery at its next meeting, which citation shall be read from the pulpit during a regular service,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intended meeting.

20-7. 만일 어느 교회가 치리장로와 집사들, 혹은 위원회로 하여금 청빙서에 서명하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도 가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서명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하여 교회의 공적 투표로 임명되었다는 사실과 모든 청빙절차가 상기 규정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회한 목사나 사회한 다른 사람이 노회에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20-8. 청빙 집행: 교회는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선정하여 노회 앞에 청빙서를 제출, 집행하도록 한다.

20-9. 담임목사가 다른 노회로부터의 청빙을 수락하고자 하면, 그가 청빙 받은 목회사역을 위하여 [청빙한] 노회의 시험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가 사역하고 있는 현 노회로부터 이명 받아야 한다.

20-10. 어떤 회중이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경우, [교회중은] 청빙 위원들을 통해 소속 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하고, 소속 노회 앞에서 청빙서를 집행해야 한다. 노회는 청빙과 관계된 모든 측의 설명을 듣고, 사건 전체를 검토한 후에, 청빙서를 취소하도록 권면할 수 있다; 또는 [노회의] 조언과 함께 혹은 조언없이 청빙 받은 목사에게 청빙서가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모든 조치는 교회 전체의 평화와 건덕을 위해 취해져야 한다.

만일 청빙하는 모든 측이 현재 진행중인 노회 석상에서의 청빙건을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찬동 없이 어떤 목사도 이명시킬 수 없다. [노회는] 차기 노회 석상에 출두 하라는 서면 소환장을 목사나 그의 교회에게 발부 할 것이요, 그 소환장은 최소한 예정된 노회 이 (2) 주 전에 [본 교회] 정기 예배 때 강단에서 낭독되어야 한다.

20-11. If the congregation or other field of labor to which a minister, licentiate, or candidate is called,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a different Presbytery, on his acceptance of a call he shall be furnished with the proper testimonials, and required to repair immediately to the Presbytery, in order that he may be regularly inducted into his office. (See *BCO* 21).

20-12. A candidate or licentiate found fit and called (in accordance with *BCO* 20-1) for missionary service by a missionary agency or Presbytery shall be examined by Presbytery for ordination. If approved the Presbytery shall proceed to his ordination.

20-13. A missionary who is an ordained teaching elder in another denomination found fit and called (in accordance with *BCO* 20-1) for missionary service by a missionary agency or Presbytery shall be examined by Presbytery for admission to Presbytery in accordance with *BCO* 13-6. If approved he shall be enrolled as a member of Presbytery.

20-11. 만일 목사나 강도사 혹은 목사 후보생이 청빙 받은 교회나 사역 분야가 다른 노회 관할 하에 있다면, 청빙을 수락하는 즉시 그는 적법한 증빙서류들을 구비해야 하고, 자신이 그의 직무에 정상적으로 취임받기 위해 즉시로 그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회헌법 21 참조)

20-12. 선교 기관이나 노회에 의해 선교 사역에 적격자로 판단되어 청빙 받은 목사후보생이나 강도사는 (교회헌법 20-1 에 의해) 안수 받기 위해 노회의 시취를 받아야 한다. 시취에 통과되면 노회는 안수하여야 한다.

20-13. 선교 기관이나 노회에 의해 선교 사역에 적격자로 판단되어 청빙 받은 다른 교단의 목사 선교사는 (교회헌법 20-1 에 의해) 교회헌법 13-6 에 의거하여 노회가 회원으로 받도록 시취해야 한다. 시취에 통과되면 노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CHAPTER 21*The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Ministers*

21-1. No minister, licentiate or candidate shall receive a call from a church but by the permission of his Presbytery. When a call has been presented to the Presbytery, if found in order and the Presbytery deems it for the good of the Church, they shall place it in the hands of the person to whom it is addressed.

Ordinarily a candidate or licentiate may not be granted permission by the Presbytery to move on to the field to which he has been called, prior to his examination for licensure or ordination. Likewise an ordained minister from another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resbytery or another denomination, ordinarily shall not move on to the field to which he has been called until examined and received by Presbytery.

21-2. When an intern has completed his internship to the satisfaction of the Presbytery, and has accepted a call, the Presbytery shall take immediate steps for his ordination.

21-3. No Presbytery shall ordain any intern to the office of minister of the Word with reference to his laboring within the bounds of another Presbytery, but shall furnish him with the necessary testimonials, and require him to repair to the Presbytery within whose bounds he expects to labor, that he may submit himself to its authori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21-4. Ordin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 a. An intern applying for ordination shall be required to present a diploma of Bachelor or Master from some approved college or university, and also a diploma of Bachelor or Master from some approved theological seminary or authentic testimonials of having completed a regular course of theological studies, or a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and endorsement from a theological study program a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one of the Presbyter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No Presbytery shall omit any of these educational requirements except in extraordinary cases, and then only with a three-fourths (3/4) approval of the Presbytery. Whenever a Presbytery shall omit any of these educational requirements, it shall always make a record of the reasons for such omission and the parts omitted. The intern shall also present satisfactory testimonials as to the completion and approval of his internship in the practice of the ministry.

제 21 장.

목사의 안수와 위임

21-1. 노회의 허락 없이는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누구라도 지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을 수 없다. 청빙서가 노회에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법대로 되었고 노회가 교회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노회는 청빙서를 청빙 받은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사 후보생이나 강도사가 인허나 목사 안수를 위한 시취를 받기 전에는 그가 청빙 받은 사역지로 옮기는 것을 노회가 허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장로교 산하 다른 노회에 속한 목사나 타 교단 목사가 노회 시취를 받고 회원이 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청빙 받은 사역지로 옮길 수 없다.

21-2. 노회가 만족할 만큼 인턴십을 마친 후 인턴이 청빙을 수락했을 때, 노회는 즉시 그의 안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1-3. 어느 노회도 다른 노회 관할 하에서 사역하는 것을 근거로 인턴을 목사로 안수할 수 없으나, [노회는] 그에게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어, 그가 사역하기를 원하는 관할 노회에 가입하도록 그에게 요청하고, 교회헌법에 따라 그 노회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

21-4. 안수를 위한 필수 사항과 절차

1. 안수를 지원하는 인턴은 정규 단과 대학이나 종합 대학에서 취득한 학사증이나 석사증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인정된 신학교에서 취득한 학사증이나 석사증 혹은 정규 신학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빙서류 원본들 또는 총회와 미국장로교의 노회 중 하나가 인정하는 신학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수료증과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떠한 노회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학력 요구사항의 하나라도 생략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로서, 노회의 사분의 삼(3/4)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예외이다. 노회가 상기 학력 요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노회는 항상 그 이유와 면제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인턴은 사역 실습에 있어서도 그의 인턴 훈련의 완료와 승인에 대한 만족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b. Every candidate for ordination shall ordinarily have met the requirements of the Assembly's approved curriculum. Ordinarily, the intern shall have been examined in most of the following trials when he was licensed. If the Presbytery previously approved all parts of the licensure examination, it need not re-examine the intern in those areas at this time. If there were areas of weakness, which the Presbytery noted, or if any member of the Presbytery desires to do so, the intern may be examined on particular points again. Additionally, the intern shall be examined on any parts required for ordination which were not covered in his examination for licensure. In all cases, he should be asked to indicate whether he has changed his previous views concerning any points in the *Confession of Faith*, *Catechisms*, and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c. Trials for ordination shall consist of:
- (1) A careful examination as to:
 - (a) his acquaintance with experiential religion, especially his personal character and family management (based on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1 Timothy 3:1-7, and Titus 1:6-9),
 - (b) his knowledge of the Greek and Hebrew languages,
 - (c) Bible content,
 - (d) theology,
 - (e) the Sacraments,
 - (f) Church history,
 - (g) the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 (h) the principles and rules of the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A Presbytery may accept a seminary degree which includes study in the original languages in lieu of an oral examination in the original languages.
 - (2) He shall prepare a thesis on some theological topic assigned by Presbytery.
 - (3) The candidate shall prepare an exegesis on an assigned portion of Scripture, requiring the use of the original language or languages.
 - (4) He shall further be required to preach a sermon before the Presbytery or committee thereof, upon three-fourths (3/4) vote.
- No Presbytery shall omit any of these parts of trial for ordination except in extraordinary cases, and then only with three-fourths (3/4) approval of Presbytery.
- d. Whenever a Presbytery shall omit any of these parts, it shall always make a record of the reasons for such omissions and of the trial parts omitted.
- e. While our Constitution does not require the candidate's affirmation of every statement and/or proposition of doctrine in our *Confession*

- ㄴ. 모든 안수 후보자들은 일반적으로 총회가 인정하는 교과 과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턴은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아래 고시의 대부분을 시취 받아야 한다. 만일 노회가 강도사 고시의 전과목을 이미 인준했다면, 노회가 이 때에는 같은 과목에 대하여 재시할 필요가 없다. 만일 노회가 주목하는 부족한 과목들이 있거나, 노회원 중 누구라도 재시를 요구한다면, 인턴은 특정 과목에 대하여 재시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턴은 목사 안수를 위한 필수 과목 중 강도사 인허 시 시취 받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취를 받아야 한다. 이 모든 경우에 미국장로교의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교회헌법**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는 그의 견해에 변화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그에게 물어야 한다.
- ㄷ. 목사 안수를 위한 고시는 다음과 같다:
- (1) 아래에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시취 받아야 한다:
 - (ㄱ) 그의 신앙 경력, 특히 개인 인격과 가족 관리(딤후전 3:1-7 과 딤후 1:6-9 에 나온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 (ㄴ) 성경 원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
 - (ㄷ) 성경 내용,
 - (ㄹ) 신학,
 - (ㅁ) 성례,
 - (ㅂ) 교회사,
 - (ㅅ) 미국장로교 역사,
 - (ㅇ) 교회 정치와 권징조례의 원리와 규칙들에 대한 지식.
 노회는 원어 구두시험 대신 원어 학점을 포함하고 있는 신학 교 학위를 수용할 수 있다.
 - (2) 그는 노회가 정하여 준 신학 주제에 대한 논문을 준비해야 한다.
 - (3) 목사 후보생은 원어 혹은 원어들의 사용을 요구하는, 지정된 성경 본문에 대한 주해를 준비해야 한다.
 - (4) 그는 노회, 혹은 노회의 사분의 삼 (3/4) 이상의 찬성 투표로 노회의 위원회 앞에서 설교해야만 한다.
- 어떠한 노회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수를 위한 시험 중 어느 부분도 생략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는 노회의 사분의 삼 (3/4)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 ㄷ. 노회가 이 시험 과목 중 어느 부분을 생략할 때는, 그 때마다 항상 그 면제 이유와 생략된 고시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ㄱ. 헌법이 후보자들에게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에 내포된 교리의 모든 진술과/혹 명제를 확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이 이 교리들의 표준의 근본적인 어떤 것에

of Faith and Catechisms, it is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the Presbytery to determine if the candidate is out of accord with any of the fundamentals of these doctrinal standards and, as a consequence, may not be able in good faith sincerely to receive and adopt the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of this Church as containing the system of doctrine taught in the Holy Scriptures (cf. *BCO* 21-5, Q.2; 24-6, Q.2).

- f. Therefore, in examining a candidate for ordination, the Presbytery shall inquire not only into the candidate's knowledge and views in the areas specified above, but also shall require the candidate to state the specific instances in which he may differ with the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in any of their statements and/or propositions. The court may grant an exception to any difference of doctrine only if in the court's judgment the candidate's declared difference is not out of accord with any fundamental of our system of doctrine because the difference is neither hostile to the system nor strikes at the vitals of religion.
- g. The Presbytery, being fully satisfied of his qualifications for the sacred office, shall appoint a day for his ordination, which ought, if practicable, to be in that church of which he is to be the pastor.
- h. The extraordinary clauses should be limited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of the church or proven extraordinary gifts of the man. Presbyteries should exercise diligence and care in the use of these provisions in order that they not prevent the ordination of a candidate for whom there are truly exceptional circumstances, nor ordain (nor receive from other denominations (*BCO* 13-6) a person who is inadequately prepared for the ministry.

21-5. The day appointed for the ordination having come, and the Presbytery being convened, a sermon suitable for the occasion shall be preached by a person appointed or invited by the Presbytery. The Presbytery member appointed to preside shall afterwards briefly recite from the pulpit the proceedings of the Presbytery preparatory to the ordination; he shall point out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the ordinance, and endeavor to impress the audience with a proper sense of the solemnity of the transaction.

Questions for Ordination¹

Then, addressing himself to the candidate, he shall propose to him the following questions:

- 1. Do you believe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s originally given, to be the inerrant Word of God,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¹For an assistant minister, only questions 1-7 shall be used.

서 일치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선한 믿음으로 이 교단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의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채택하지 못 할 수도 있고 받아드리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회의 권리와 의무이다 (비교. 헌법 21-5, 문.2; 24-6, 문.2).

- 비. 그러므로, 안수를 위한 후보자 시취 시, 노회는 위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영역에 있어서 후보자의 지식과 견해를 조사 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의 진술과/혹은 명제 중 그 어느 것에서라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례들에 대하여 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치리회는 치리회의 판단에 후보자가 선언한 이견이 [우리 교리] 체계에 적대적이 아니거나 치명적으로 신앙의 생명력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 교리 체계의 어떤 근본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고 판단할 때만 그 의견을 열외로 허락할 수 있다.
- 사. 노회가 성직에 대한 그의 자질에 충분히 만족하면, 안수 받을 날짜를 정하되, 실용적이라면, 마땅히 그가 목회할 교회에서 안수 받도록 한다.
- 오. 특별 예외 조항은 그 교회의 특수 상황이나, 혹은 그 사람의 특별한 은사가 입증된 경우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노회는 이 특례를 사용함에 있어서 참으로 예외적 상황에 놓여 있는 목사 후보생의 안수를 저해하거나, 반대로 성역에 적절히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안수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교단으로부터 영입하지 않도록) (교회헌법 13-6) 근면함과 주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21-5. 목사안수 날짜가 되어 노회에 소집되면 노회가 지명하거나 초청한 사람이 적절한 설교를 하여야 한다. 그 후에 사회하도록 지명된 노회원이 강단에서 간단히 노회의 안수 준비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는 의식의 본질과 중요성을 지적하고 청중으로 하여금 이 행사의 엄숙함을 적절하게 느낄 만큼 [강한] 인상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수를 위한 질문¹

[사회자는] 목사 후보생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목사 후보생에게 아래와 같이 묻는다:

1. 귀하는 친구약 성경 원본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오한 법칙이라고 믿으십니까?

¹ 보조목사의 경우 1-7 번 질문까지만 사용할 것.

2. Do you sincerely receive and adopt the *Confession of Faith* and the *Catechisms* of this Church, as containing the system of doctrine taught in the Holy Scriptures; and do you further promise that if at any time you find yourself out of accord with any of the fundamentals of this system of doctrine, you will on your own initiative, make known to your Presbytery the change which has taken place in your views since the assumption of this ordination vow?
3. Do you approve of the form of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Biblical polity?
4. Do you promise subjection to your brethren in the Lord?
5. Have you been induced, as far as you know your own heart, to seek the office of the holy ministry from love to God and a sincere desire to promote His glory in the Gospel of His Son?
6. Do you promise to be zealous and faithful in maintaining the truths of the Gospel and the purity and peace and unity of the Church, whatever persecution or opposition may arise unto you on that account?
7. Do you engage to be faithful and diligent in the exercise of all your duties as a Christian and a minister of the Gospel, whether personal or relational, private or public; and to endeavor by the grace of God to adorn the profession of the Gospel in your manner of life, and to walk with exemplary piety before the flock of which God shall make you overseer?
8. Are you now willing to take the charge of this church, agreeable to your declaration when accepting their call? And do you, relying upon God for strength, promise to discharge to it the duties of a pastor?

Questions to Congregation²

21-6. The candidate having answered these questions in the affirmative, the presiding minister shall propose to the church the following questions:

1. Do you, the people of this congregation, continue to profess your readiness to receive _____, whom you have called to be your pastor?
2. Do you promise to receive the word of truth from his mouth with meekness and love, and to submit to him in the due exercise of discipline?
3. Do you promise to encourage him in his labors, and to assist his endeavors for your instruction and spiritual edification?

²For assistant minister, address the Session omitting the last phrase of questions 1 and 2.

2. 귀하는 본 총회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체계를 포함한다고 신실하게 인정하며 채용하십니까? 그리고 귀하는, 하시라도 귀하가 이 교리 체계의 근본 조항 중 어느 부분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안수 서약을 한 이후 발생한 견해의 변화를, 자진해서 노회에 알리기로 약속하십니까?
3. 귀하는 미국장로교의 정치 형태와 권징조례가 성경적 정치제도의 일반적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4. 귀하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하십니까?
5. 귀하는, 귀하 자신이 아는 한, 귀하가 성직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아들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신실한 소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6. 귀하는, 복음의 진리와 본 총회의 순결 및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그로 인한 어떤 박해나 반대를 받더라도, 열성과 충성을 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7. 귀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사적이든 공적이든, 귀하의 모든 의무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귀하의 생활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귀하의 감독 하에 두신 양떼 앞에서 모범적으로 경건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8. 귀하는 이 교회의 청빙을 수락할 때 선언한 대로, 이제 이 교회를 기꺼이 담당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교회 앞에 목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회중에게 하는 질문²

21-6. 목사 후보자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사회하는 목사는 지교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본 교회 교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목사로서 청빙한 _____ 씨를 기꺼이 영접하고자 하십니까?
2. 여러분은 은유와 사랑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그가 적합한 권징을 행사할 때에 복종하기로 약속하십니까?
3. 여러분은 수고하는 그를 격려하며, 여러분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덕을 세우려는 그의 노력을 협력하기로 약속하십니까?

²보조목사의 경우 당회에게 1번과 2번 질문의 후반부를 빼놓고 말할 것.

4. **Do you engage to continue to him while he is your pastor that competent worldly maintenance which you have promised, and to furnish him with whatever you may see needful for the honor of religion and for his comfort among you?**

21-7. The people having answered these questions in the affirmative, by holding up their right hands, the candidate shall kneel, and the presiding minister shall, with prayer and the laying on of hands of the Presbytery, according to the apostolic example, solemnly set him apart to the holy office of the Gospel ministry. Prayer being ended, he shall rise from his knees; and the minister who presides shall first, followed by all members of the Presbytery, take him by the right hand, saying, in words to this effect:

We give you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to take part in this ministry with us.

The presiding minister shall then say:

I now pronounce and declare that _____ has been regularly elected, ordained, and installed pastor of this congregation, agreeable to the Word of God, an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that as such he is entitled to all support, encouragement, honor, and obedience in the Lord: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Amen.

After which the minister presiding, or some other teaching or ruling elder appointed for the purpose, shall give a solemn charge to the pastor and to the congregation, to persevere in the discharge of their reciprocal duties, and then after prayer and the singing of a psalm, or hymn, the congregation shall be dismissed with the benediction. The Presbytery shall duly record its proceedings.³

21-8. After the installation, the heads of families of the congregation then present, or at least the ruling elders and deacons, should come forward to their pastor, and give him their right hand, in token of cordial reception and affectionate regard.

³For assistant minister, add the word 'assistant' before 'pastor', and charge the Session rather than the congregation.

4.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의 담임목사로서 시무하는 동안, 여러분이 약속한 충분한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명예와 목사의 위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십니까?

21-7. 회중이 오른손을 들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목사 후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사회하는 목사는 사도들의 선례를 따라 기도와 노회원들의 안수로 목사 후보자를 엄숙히 목사직에 성별한다. 기도가 끝난 후에 안수 받은 자를 기립하게 하고, 사회하는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노회원 일동이 차례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면서 아래와 같이 인사한다:

우리와 함께 성직에 참여하는 귀하를 동료로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회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_____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장로교의 헌법에 따라 정식으로 선출되었고, 안수 받았으며, 이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책상 주 안에서 모든 지지와 격려와 존경과 복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를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아멘.

그 후에 사회하는 목사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임명 받은 목사나 치리장로가, 신임목사와 회중에게 상호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참고 견딜 것을 엄숙하게 권면하고 기도 한 후, 시편이나 찬송가를 부르고 축도로 마친다. 노회는 이 절차를 확실히 기록하여야 한다.³

- 21-8. 임직 후 당시 출석한 회중의 가족들 중 대표들이나, 또는 적어도 치리장로와 집사들이 그들의 담임목사 앞에 나와 정중한 환영과 경애의 표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눈다.

³보조목사의 경우 “목사” 앞에 “보조”라는 말을 더하고, 교인들 보다는 당회에 말한다.

Questions for Installation⁴

21-9. In the installation of an ordained minister, the following questions are to be substituted for those addressed to a candidate for ordination, namely:

- 1. Are you now willing to take charge of this congregation as their pastor, agreeable to your declaration in accepting its call?**
- 2. Do you conscientiously believe and declare, as far as you know your own heart, that, in taking upon you this charge, you are influenced by a sincere desire to promote the glory of God and the good of the Church?**
- 3. Do you solemnly promise that, by the assistance of the grace of God, you will endeavor faithfully to discharge all the duties of a pastor to this congregation, and will be careful to maintain a deportment in all respects becoming a minister of the Gospel of Christ, agreeable to your ordination engagements?**

Questions to Congregation⁵

21-10. The candidate having answered these question in the affirmative, the presiding minister shall propose to the church the following questions:

- 1. Do you, the people of this congregation, continue to profess your readiness to receive _____, whom you have called to be your pastor?**
- 2. Do you promise to receive the word of truth from his mouth with meekness and love, and to submit to him in the due exercise of discipline?**
- 3. Do you promise to encourage him in his labors, and to assist his endeavors for your instruction and spiritual edification?**
- 4. Do you engage to continue to him while he is your pastor that competent worldly maintenance which you have promised, and to furnish him with whatever you may see needful for the honor of religion and for his comfort among you?**

⁴For assistant minister, substitute the word 'serve' for 'take charge of', and add the word 'assistant' before 'pastor'.

⁵For assistant minister, address the Session omitting the last phrase of questions 1 and 2.

위임을 위한 질문 ⁴

21-9. 이미 안수 받은 목사를 위임할 때는 안수 받은 목사 후보생에게 물었던 질문들 대신에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1. 귀하는 이 지교회의 청빙을 수락했을 때에 약속한 대로 지금 저들의 담임목사로서 이 지교회를 담임할 의사가 있습니까?
2. 귀하는, 본인 스스로, 이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신실한 소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양심적으로 믿고 선언합니까?
3.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힘쓰며, 안수 받을 때 약속한 대로 주의하여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품행을 유지하기로 엄숙히 서약합니까?

회중에게 하는 질문 ⁵

21-10. 후보자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사회하는 목사는 지교회에 대하여 다음 질문을 해야 한다:

1. 본 교회 회원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목사로서 청빙한 _____ 씨를 기꺼이 영접하고자 합니까?
2. 여러분은 온유와 사랑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을 받으며, 그가 적합한 권징을 행사할 때에 복종하기로 약속합니까?
3. 여러분은 수고하는 그를 격려하며, 여러분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덕을 세우려는 그의 노력을 협력하기로 약속합니까?
4.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의 담임목사로서 시무하는 동안 여러분이 약속한 적합한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며 교회의 명예와 목사의 위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까?

⁴보조목사의 경우 “담임목사”라는 말 대신에 “보조목사”라는 말로 대체하고, “담임할”이라는 말 대신에 “섬길”로 라는 말을 추가한다

⁵보조목사의 경우 질문 1 과의 2 의 후반부를 빼고 당회에 말한다.

21-11. In the ordination of interns as evangelists the same questions are to be propounded as in the ordination of pas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eighth, for which the following shall be substituted:

Do you now undertake the work of an evangelist, and do you promise, in reliance on God for strength, to be faithful in the discharge of all the duties incumbent on you as a minister of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21-11. 인턴을 전도 목사로 안수할 때는 목사 안수 시와 같은 질문을 하되, 다만 여덟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이 대치되어야 한다:

귀하는 이제 전도 목사의 일을 맡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귀하가 담당한 모든 의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하기로 약속합니까?

CHAPTER 22*The Pastoral Relations*

- 22-1.** The various pastoral relations are pastor, associate pastor, and assistant pastor.
- 22-2.** The pastor and associate pastor are elected by the congregation using the form of call in *BCO* 20-6. Being elected by the congregation, they become members of the Session.
- 22-3.** An assistant pastor is called by the Session, by the permission and approval of Presbytery, under the provisions of *BCO* 20-1 and 13-2, with Presbytery membership being governed by the same provisions that apply to pastors. He is not a member of the Session, but may be appointed on special occasions to moderate the Session under the provisions of *BCO* 12-4.
- 22-4.** The relationship of the associate pastor to the church is determined by the congregation. The relationship of the assistant pastor to the church is determined by the Session. The dissolution of the relationship of both is governed by the provision of *BCO* 23.
- 22-5.** In order to provide necessary changes in pastorates, a temporary relation may be established between a church and a minister called Stated Supply. If a church is unable to secure a regular pastor or a Stated Supply, then the Session with approval of Presbytery may establish a temporary relation between the church and a licentiate called Student Supply or Ruling Elder Supply.
- 22-6.** Such temporary relationships can take place at the invitation of the church Session to the minister of the Word, the licentiate, or the ruling elder. The length of the relationship will be determined by the Session and the minister, the licentiate, or the ruling elder,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bytery. Stated supply, student supply, or ruling elder supply relationships will be for no longer than one year, renewable at the request of the Session and at the review of the Presbytery. (See also *BCO* 19-1).

제 22 장.

목회적 관계

22-1. 목회적 관계는 담임목사, 부목사, 보조목사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한다.

22-2.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교회헌법* 20-6 의 청빙 방법에 의해 회중이 선출한다. 그 회중의 선출로 그들은 당회원이 된다.

22-3. 보조목사는 당회에 의해서 청빙을 받는다, 단 보조목사는 *교회헌법* 20-1 과 13-2 의 규정에 따라 노회의 허락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담임목사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노회원이어야 한다. 그는 당회원은 아니나 특별한 경우 *교회헌법* 12-4 에 의거, 당회를 사회하도록 지명 받을 수 있다.

22-4. 부목사의 교회와의 관계는 회중에 의해서 결정된다. 보조목사의 교회와의 관계는 당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들의 [교회와의] 관계 해소는 *교회헌법* 23 장의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22-5. [교회의] 목사직에 필요한 변화를 대비하여, 교회와 임시 목사 사이에 일시적인 목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만일 지교회가 담임목사나 임시 목사를 구할 수 없으면, 당회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 인허 받은 강도사나 치리장로와의 일시적인 목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22-6. 이런 일시적인 관계는 당회가 목사나 강도사나 [인허 받은] 치리장로를 청빙할 때 성립될 수 있다. 그 일시적인 관계의 기간은 노회의 승인을 받아 당회와 임시 목사, 강도사, 또는 [인허 받은] 치리장로에 의해서 결정된다. 임시 목사, 강도사, 또는 [인허 받은] 치리장로와의 목회적 관계의 기간은 1 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당회의 요구와 노회의 검토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교회헌법* 19-1 참조).

CHAPTER 23*The Dissolution of the Pastoral Relation and The Procedure for Honorable Retirement*

23-1. When any minister shall tender the resignation of his pastoral charge to his Presbytery, the Presbytery shall cite the church to appear by its commissioners, to show cause why the Presbytery should or should not accept the resignation. If the church fails to appear, or if its reasons for retaining its pastor be deemed insufficient, his resignation shall be accepted and the pastoral relation dissolved.

If any church desires to be relieved of its pastor, a similar procedure shall be observed. But whether the minister or the church initiates proceedings for a dissolution of the relation, there shall always be a meeting of the congregation called and conducted in the same manner as the call of the pastor. In any case, the minister must not physically leave the field until the Presbytery or its commission empowered to handle uncontested requests for dissolution has dissolved the relation.

The associate or assistant pastors may continue to serve a congregation when the pastoral relation of the senior pastor is dissolved, but they may not normally succeed the senior pastor without an intervening term of service in a different field of labor. However a congregation by a secret ballot with four-fifths (4/5) majority vote may petition Presbytery for an exception which by a three-fourths (3/4) majority vote Presbytery may grant. Presbytery needs to determine if the dissolution of the pastoral relationship with the senior pastor was brought about in Christian love and good order on the part of the parties concerned.

23-2. The Presbytery may designate a minister as honorably retired when the minister by reason of age wishes to be retired, or as medically disabled when by reason of infirmity is no longer able to serve the church in the active ministry of the Gospel. A minister medically disabled or honorably retired shall continue to hold membership in his Presbytery. He may serve on committees or commissions if so elected or appointed.

23-3. A minister, being medically disabled or honorably retired, may be elected pastor emeritus by a congregation which seeks to honor his past earnest labors among them.

제 23 장.

목회적 관계 해소와 은퇴 절차

23-1. 목사가 자신의 목회 사임서를 자신이 속해 있는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노회 전권위원회를 통해서 그 교회 [관계자]를 출두하도록 하고 그 사임서의 수리 여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게 한다. 만일 교회 [관계자]가 노회에 출두하지 않거나, 혹은 그 목사를 유입시키려는 그들의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사임서는 수리되고 목회적 관계는 해소된다.

만일 어느 교회가 그 교회 목사의 사임을 원하면, [상기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계 해소를 발의하는 것이 목사이든 교회이든, 항상 목사 청빙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처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노회 혹은 상정된 관계 해소의 청원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노회 전권위원회가 교인 총의에 의해 이의가 없이 [목회적] 관계를 해소할 때까지, 그 목사는 임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

담임목사의 목회적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부목사 혹은 보조목사가 계속 회중을 섬길 수 있으나, 그들은 [본 교회를 떠나] 다른 사역지에서 일정 기간을 시무하지 않고는 본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원칙적으로 승계 할 수 없다. 단, 회중은 무기명 투표로 [교인] 오분의 사(4/5) 이상의 찬동을 얻어 노회에 예외를 청원하면 노회는 [노회원] 사분의 삼 (3/4) 이상의 찬동으로 그 예외를 허락할 수 있다. 노회는 담임목사의 목회적 관계 해소가 관련되어 있는 쌍방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 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3-2. 목사가 연령상의 이유로 은퇴를 원하거나, 혹은 병약해져서 의학적인 신체 장애자가 되어 더 이상 교회의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노회는 [그에게] 명예 은퇴 목사 호칭을 줄 수 있다. _목사는 의학적인 신체 장애자이든 명예 은퇴를 했던 노회의 회원권은 계속되며, [노회의] 선출이나 임명에 의해 위원회나 전권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23-3. 목사는, 의학적인 신체 장애자가 되거나 명예 은퇴를 했을 때, 그의 과거의 노고를 공경하고자 하는 회중에 의해서 원로목사로 선출될 수 있다.

CHAPTER 24*Election,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Ruling Elders and Deacons***Election**

24-1. Every church shall elect persons to the offices of ruling elder and deacon in the following manner: At such times as determined by the Session, communicant members of the congregation may submit names to the Session, keeping in mind that each prospective officer should be an active male member who meets the qualifications set forth in 1 Timothy 3 and Titus 1. After the close of the nomination period nominees for the office of ruling elder and/or deacon shall receive instruction in the qualifications and work of the office. Each nominee shall then be examined in:

- a. his Christian experience, especially his personal character and family management (based on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1 Timothy 3:1-7 and Titus 1:6-9),
- b. his knowledge of Bible content,
- c. his knowledge of the system of doctrine, government, discipline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BCO* Preface III, *The Constitution Defined*),
- d. the duties of the office to which he has been nominated, and
- e. his willingness to give assent to the questions required for ordination. (*BCO* 24-6)

If there are candidates eligible for the election, the Session shall report to the congregation those eligible, giving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notice of the time and place of a congregational meeting for elections.

If one-fourth (1/4) of the persons entitled to vote shall at any time request the Session to call a congregational meeting for the purpose of electing additional officer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ssion to call such a meeting on the above procedure. The number of officers to be elected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gregation after hearing the Session's recommendation.

24-2. The pastor is, by virtue of his office, moderator of congregational meetings. If there is no pastor, the Session shall appoint one of their number to call the meeting to order and to preside until the congregation shall elect their presiding officer, who may be a minister or ruling el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or any male member of that particular church.

24-3. All communing members in good and regular standing, but no others, are entitled to vote in the election of church officers in the churches to which they respectively belong. A majority vote of those present is required for election.

제 24 장.

치리장로와 집사의 선출, 안수 및 임직

선 출

24-1. 모든 교회가 치리장로와 집사 직분자를 선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당회가 선거일을 정하면, 회중의 수찬교인들은 당회 앞으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단 예상되는 후보자는 디모테전서 3 장과 디도서 1 장에 명시된 자격을 구비한 무흠 남자 수찬교인이어야 한다. 공천 기간이 종료된 후에 치리장로와/ 또는 집사 직분자로 공천 받은 사람들은 직분의 자격과 사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천 받은 각 사람은 다음 분야의 시취를 받아야 한다:

- ㄱ.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경험, 특별히 그의 인격적 성품과 가정을 다스리는 일 (디모테 전서 3:1-7 과 디도서 1:6-9 에 명시된 자격에 기초하여),
- ㄴ. 성경 내용에 관한 지식
- ㄷ. 미국장로교 헌법(헌법 서문 III, 헌법의 정의)에 내포된 교리 체계, 교회 정치, 권징 조례에 대한 지식,
- ㄹ. 공천 받은 직분의 의무
- ㅁ. 안수를 위한 질문에 동의할 의사 (헌법 24-6).

만일 피선 가능한 후보자가 있으면, 당회는 그 가능한 후보자를 회중 앞에 알려야 하며,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시간과 장소를 적어도 삼십(30) 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만일 어느 때든지 투표권자 사분의 일(1/4)이 추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목적으로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하면, 당회는 상기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피선될 직원의 수는 당회의 추천을 들은 후 회중에 의해서 결정된다.

24-2. 목사는 직권상 공동의회 의장이 된다. 만일 목사가 없을 때는 당회가 정한 당회원이 공동의회 개최를 하고, 회중이 미국장로교 목사이거나 혹은 치리 장로 혹은 그 교회의 남자 수찬교인을 사회자로 선정할 때까지 [그가 임시] 의장이 된다.

24-3. 예외 없이, 오직 무흠 수찬 교인들에게만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교회 직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부여된다. 선출은 출석한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요구한다.

24-4. The voters being convened, the moderator shall explain the purpose of the meeting and then put the question:

Are you now ready to proceed to the election of additional ruling elders (or deacons) from the slate presented?

If they declare themselves ready, the election may proceed by private ballot without nomination. In every case a majority of all the voters present shall be required to elect.

24-5 On the election of a ruling elder or deacon, if it appears that a large minority of the voters are averse to a candidate, and cannot be induced to concur in the choice, the moderator shall endeavor to dissuade the majority from prosecuting it further; but if the electors are nearly or quite unanimous, or if the majority insist upon their right to choose their officers, the election shall stand.

Ordination and Installation

24-6. The day having arrived, and the Session being convened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a sermon shall be preached after which the presiding minister shall state in a concise manner the warrant and nature of the office of ruling elder, or deacon, together with the character proper to be sustained and the duties to be fulfilled. Having done this, he shall propose to the candidate, in the presence of the church, the following questions, namely:

- 1. Do you believe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s originally given, to be the inerrant Word of God,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 2. Do you sincerely receive and adopt the *Confession of Faith* and the *Catechisms* of this Church, as containing the system of doctrine taught in the Holy Scriptures; and do you further promise that if at any time you find yourself out of accord with any of the fundamentals of this system of doctrine, you will, on your own initiative, make known to your Session the change which has taken place in your views since the assumption of this ordination vow?**
- 3. Do you approve of the form of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biblical polity?**
- 4. Do you accept the office of ruling elder (or deacon, as the case may be) in this church, and promise faithfully to perform all the duties thereof, and to endeavor by the grace of God to adorn the profession of the Gospel in your life, and to set a worthy example before the Church of which God has made you an officer?**
- 5. Do you promise subjection to your brethren in the Lord?**

24-4. 공동의회가 개최되면, 의장이 회의의 목적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묻는다:

이제 여러분은 제출된 명단 중에서 추가로 치리장로(또는 집사)를 선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회중이 준비되었다고 대답하면, 공천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어떤 경우든지 선출은 출석한 투표자 전체 과반수의 득표를 요구한다.

24-5. 치리장로나 집사의 선거에서, 만일 소수 투표자 중 다수가 후보자를 싫어하고, 선택에 동의하도록 권유를 받지 않는다면, 의장은 다수 투표자들이 투표를 계속 집행하지 않고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출자들이 거의 혹은 완전히 만장일치에 가깝다면, 혹은 대다수가 자기들의 직분자들 선택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선거는 유효하다.

안수와 임직

24-6. 지정한 날이 되면, 당회와 회중이 모여, 설교 후, [공동의회] 사회목사는 치리장로 혹은 집사의 [성경적] 근거와 성격을, 그리고 그들이 계속 지켜져야 할 품성과 감당해야 될 의무와 함께 간단히 설명한다. 설명이 끝나면, 교회 앞에서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1. 귀하는 신구약 성경 원본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오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2. 귀하는 미국장로교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체계를 포함한다고 신실하게 인정하며 채용하고, 하시라도 귀하가 이 교리 체계의 근본 조항 중 어느 부분에서라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을 자각하면, 이 안수 서약을 한 이후 발생한 견해의 변화를, 자진해서 당회에 알리기로 약속합니까?
3. 귀하는 미국장로교의 교회 정치체제와 권징조례가 성경적 조직의 일반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고 인정합니까?
4. 귀하는 이 교회에서 치리장로(혹은 집사)의 직책을 수락하며, 그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생활화하고, 하나님이 귀하를 직원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앞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5. 귀하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합니까?

6. Do you promise to strive for the purity, peace, unity and edification of the Church?

The ruling elder or deacon elect having answered in the affirmative, the minister shall address to the members of the church the following question:

Do you, the members of this church, acknowledge and receive this brother as a ruling elder (or deacon), and do you promise to yield him all that honor, encouragement and obedience in the Lord to which his offic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the Constitution of this Church, entitles him?

The members of the church having answered this question in the affirmative, by holding up their right hands, the candidate shall then be set apart, with prayer by the minister or any other Session member and the laying on of the hands of the Session, to the office of ruling elder (or deacon). Prayer being ended, the members of the Session (and the deacons, if the case be that of a deacon) shall take the newly ordained officer by the hand, saying in words to this effect:

We give you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to take part in this office with us.

The minister shall then say:

I now pronounce and declare that _____ has been regularly elected, ordained and installed a ruling elder (or deacon) in this church, agreeable to the Word of God, an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that as such he is entitled to all encouragement, honor and obedience in the Lord: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Amen.

After which the minister or any other member of the Session shall give to the ruling elder (or deacon) and to the church an exhortation suited to the occasion.

24-7. Ordination to the offices of ruling elder or deacon is perpetual; nor can such offices be laid aside at pleasure; nor can any person be degraded from either office but by deposition after regular trial; yet a ruling elder or deacon may have reasons which he deems valid for being released from the active duties of his office. In such a case the Session, after conference with him and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matter, may, if it thinks proper, accept his resignation and dissolve the official relationship which exists between him and the church.

6. 귀하는 교회의 순결과 화평과 연합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선출받은 치리장로 또는 집사가 위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사회하는 목사는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이 교회의 회원 여러분은 이 형제를 치리장로(혹은 집사)로 인정하고 수락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단의 헌법에 따라 그가 직무상 주 안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과 격려와 순종을 그에게 드리기로 약속합니까?

교인들이 오른손을 들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목사 혹은 다른 당회원의 기도와 함께 당회[원들]의 안수로 후보자들을 치리장로(혹은 집사)의 직분으로 구별하여 세운다. 기도가 끝나면 당회원들이 (집사인 경우는 집사들이) 새로 안수 받은 직분자들과 악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말로 인사한다:

우리와 함께 이 직책을 맡은 귀하를 환영합니다.

악수가 끝나면 사회 목사가 아래와 같이 말한다:

나는 이제 _____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선출되었고, 안수와 임직을 받아 이 교회의 치리장로(혹은 집사)가 되었으며, 따라서, 그는 직책상 주 안에서 격려와 존경과 순종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아멘.

공포 후 목사 혹은 당회원 중 다른 사람이 치리장로(혹은 집사)와 교회에 적절한 권면을 한다.

24-7. 치리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항존직이다; 이 직무는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정식 재판을 거쳐 면직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면직될 수 없다; 그러나 치리장로나 집사가 시무를 면제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를 가질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 당회는, 본인과 협의하고 사정을 숙고한 후, 당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와 교회 사이의 직무상 관계를 해소한다.

The ruling elder or deacon, though chargeable with neither heresy nor immorality, may become unacceptable in his official capacity to a majority of the church which he serves. In such a case the church may take the initiative by a majority vote at a regularly called congregational meeting, and request the Session to dissolve the offi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officer without censure. The Session, after conference with the ruling elder or deacon, an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may use its discretion as to dissolving the official relationship. In either case the Session shall report its action to the congregation. If the Session fails or refuses to report to the congregation within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or if the Session reports to the congregation that it declined to dissolve such relationship, then any member or members in good standing may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Se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BCO* 43.

24-8. When a ruling elder or deacon who has been released from his official relation is again elected to his office in the same or another church, he shall be installed after the above form with the omission of ordination.

24-9. When a ruling elder or deacon cannot or does not for a period of one year perform the duties of his office, his official relationship shall be dissolved by the Session and the action reported to the congregation.

24-10. When a deacon or ruling elder by reason of age or infirmity desires to be released from the active duties of the office, he may at his request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Session be designated deacon or elder emeritus. When so designated, he is no longer required to perform the regular duties of his office, but may continue to perform certain of these duties on a voluntary basis, if requested by the Session or a higher court. He may attend Diaconate or Session meetings, if he so desires, and may participate fully in the discussion of any issues, but may not vote.

Editorial Comment: The General Assembly explicitly provided that those Elders and Deacons granted emeritus status prior to June 22, 1984, retain the privilege of vote. (By order of the Fifteenth General Assembly 15-83, III, 31).

치리장로나 집사가 기소 당할만한 이단 사설이나 부도덕한 과오가 없을 지라도 그가 섬기는 교회의 다수에게 직무상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교회는 절차를 따라 소집된 임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발의하여 당회에 책별 없이 교회와 직분자 사이의 직무상 관계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당회는 해당 장로 혹은 집사와 의논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당회의 재량으로 직무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당회는 그 조치를 회중 앞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당회가 공동의회 이후 60 일 이내에 교회 앞에 보고하지 못하거나, 보고를 거부하면, 혹은 당회가 그런 직무 관계 해소를 거부하기로 한 것을 회중 앞에 보고하면, 무흠 교인 혹 교인들은 누구나 교회헌법 43 장의 규정을 따라 당회를 상대로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4-8. 직무상 관계가 해소되었던 치리장로나 집사가 같은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그 직책에 다시 선출되면, 위의 절차에 따라 임직을 받되 안수는 생략한다.

24-9. 치리장로나 집사가 일 년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의 직무상 관계는 당회에 의해서 해소되고 그 조치는 회중 앞에 보고되어야 한다.

24-10. 치리장로나 집사가 병약해지거나 나이로 인해 시무를 면제 받기 원한다면, 그는 본인의 요청과 당회의 인준으로 명예장로 또는 집사로 임명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임명 받으면, 그는 직무상 정규적인 의무는 없으나 당회나 혹은 상회의 요청에 의해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 그는 당회나 집사회에 참석해서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참고 해설: 총회는 1984 년 6 월 22 일 이전에 명예장로 혹은 명예집사가 된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제 15 차 총회의 지시에 의하여, 15-83, III, 31)

CHAPTER 25*Congregational Meetings*

25-1. The congregation consists of all the communing members of a particular church, and they only are entitled to vote.

25-2. Whenever it may seem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urch that a congregational meeting should be held, the Session shall call such meeting and give public notice of at least one week. No business shall be transacted at such meeting except what is stated in the notice. The Session shall always call a congregational meeting when requested in writing to do so:

- a. by one-fourth (1/4) of the communing members of a church of not more than one hundred (100) such members,
- b. by one-fifth (1/5) of the communing members of a church of more than one hundred (100) and not more than three hundred (300) such members,
- c. by one-sixth (1/6) of the communing members of a church of more than three hundred (300) and not more than five hundred (500) such members,
- d. by one-seventh (1/7) of the communing members of a church of more than five hundred (500) members but not more than seven hundred (700) such members,
- e. by one hundred (100) of the communing members of a church of more than seven hundred (700) such members.

Upon such a proper request, if the Session cannot act, fails to act or refuses to act, to call such a congregational meeting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receipt of such a request, then any member or members in good standing may file a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BCO* 43.

25-3. The quorum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shall consist of one-fourth (1/4) of the resident communing members, if the church has not more than one hundred (100) such members, and of one-sixth (1/6) of the resident communing members if a church has more than one hundred (100) such members.

제 25 장.

공동의회

25-1 공동의회의 회중은 지교회의 모든 수찬교인으로 구성되며 그들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25-2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마다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되 적어도 일주일 전에 교회 앞에 공고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는 소집 공고 시 상정된 안건만을 다룬다.

- ㄱ. 투표권이 있는 수찬교인이 백(100)명 이하일 경우, 그들의 사분의 일(1/4),
- ㄴ. 투표권이 있는 수찬교인이 백(100)명 보다 많고 삼백(300)명 이하일 경우, 그들의 오분의 일 (1/5),
- ㄷ. 투표권이 있는 수찬교인이 삼백(300)명 보다 많고 오백(500)명 이하일 경우, 그들의 육분의 일(1/6),
- ㄹ. 투표권이 있는 수찬교인이 오백(500)명 보다 많고 칠백(700)명 이하일 경우, 그들의 칠분의 일(1/7),
- ㅁ. 투표권이 있는 수찬교인이 칠백(700)명 보다 많을 경우, 그들 백(100)명 이상에 의해서 서면으로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받으면 당회는 항상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서를 접수한 지 30 일 이내에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소집을 못하거나, 혹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흠 교인은 개인으로나 다수로 교회헌법 43 장의 규정에 의거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5-3 공동의회 성수는 현지 거주하는 투표권 있는 수찬교인이 백(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그들의 사분의 일(1/4), 현지 거주하는 투표권 있는 수찬교인이 백(100)명 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들의 육분의 일(1/6)로 한다.

25-4. The pastor shall be the moderator of congregational meetings by virtue of his office. If it should be impracticable or inexpedient for him to preside, or if there is no pastor, the Session shall appoint one of their number to call the meeting to order and to preside until the congregation shall elect their presiding officer, who may be a minister or ruling el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or any male member of that particular church.

25-5. A clerk shall be elected by the congregation to serve at that meeting or for a definite period, whose duty shall be to keep correct minutes of the proceedings and of all business transacted and to preserve these minutes in a permanent form, after they have been attested by the moderator and the clerk of the meeting. He shall also send a copy of these minutes to the Session of the church.

25-6. A particular church which is not incorporated, desiring to elect trustees, may select from among its membership trustees or officers of like nature who shall have the power and authority:

- a. to buy, sell, or mortgage property for the church,
- b. to accept and execute deeds as such trustees,
- c. to hold and defend titles to the same, and
- d. to manage any permanent special funds entrusted to them for the furtherance of the purposes of the church.

In the fulfillment of their duties, such trustees shall be subject always to the authority, and shall act solely under the instructions of the congregation which they serve as trustees. The powers or duties of such trustees must not infringe upon the powers or duties of the Session or of the Board of Deacons. Such trustees shall be elected in regularly constituted congregational meetings.

25-4. 담임목사는 직권상 공동의회 회장이 된다. 만일 담임목사가 사회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불편하거나 혹은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당회는 당회원 중 한 사람을 지명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회중이 사회자를 선정할 때까지 사회하게 한다. 이 때 선출되는 사회자는 미국장로교 목사사이거나 혹은 치리 장로 혹은 해당 지교회 남자 수찬교인이어야 한다.

25-5. 공동의회 서기는 공동의회에서 선출하여 그 회의 혹은 일정기간 동안 봉사하게 하되, 그 임무는 회의 의사진행과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가 확인을 받아, 영구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다. 서기는 또 이 공동의회록 사본을 그 교회 당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25-6.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지교회가 이사들을 선출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 회원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권위를 가진 이사들 혹은 유사한 직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

- ㄱ. 교회를 위한 재산 매매 및 저당,
- ㄴ. 이사로서 [재산] 증서 수납 및 처리
- ㄷ. 재산 소유권 보유 및 수호,
- ㄹ. 교회 사역 증진을 위해 위탁된 모든 특별 영구기금 관리.

임무를 수행할 때, 이사들은 항상 권위에 복종하며, 그들이 이사로 섬기는 [공동의회] 회중의 지시 하에서만 행동한다. 이사들의 권한이나 임무는 당회나 집사회의 권한이나 임무와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사는 정기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25-7. If a particular church is incorporated, the provisions of its charter and bylaws must always be in accord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ll the communing members on the roll of that church shall be members of the corporation. The officers of the corporation, whether they be given the title *trustee* or some other title,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in a regularly constituted congregational meeting. The powers and duties of such officers must not infringe upon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Session or the Board of Deacons.

All funds collected for the support and expense of the church and for the benevolent purposes of the church shall be controlled and disbursed by the Session and the Board of Deacons as their relative authorities may from time to time be established and defined.

To the officers of the corporation may be given by the charter and bylaws of the corporation any or all of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 a. the buying, selling and mortgaging of property for the church,
- b. the acquiring and conveying title to such property, the holding and defending title to the same,
- c. the managing of any permanent special funds entrusted to them for the furtherance of the purposes of the church, provided that such duties do not infringe upon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Session or of the Board of Deacons.

In buying, selling, and mortgaging real property such officers shall act solely under the authority of the corporation, granted in a duly constituted meeting of the corporation.

25-8. The corporation of a particular church, through its duly elected trustees or corporation officers, (or, if unincorporated, through those who are entitled to represent the particular church in matters related to real property) shall have sole title to its property, real, personal, or mixed, tangible or intangible, and shall be sole owner of any equity in any real estate, or any fund or property of any kind held by or belonging to any particular church, or any board, society, committee, Sunday school class or branch thereof. The superior courts of the Church may receive monies or properties from a local church only by free and voluntary action of the latter.

25-7. 만일 지교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법인의 헌장과 내규의 규정은 항상 미국장로교 헌법과 부합되어야 한다. 그 교회의 교적부에 있는 모든 수찬교인은 그 법인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법인의 직원들은, *이사들* 또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든지, 정기 공동의회 시 법인의 회원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그 직원들의 권한과 임무는 당회나 집사회의 권한과 임무와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위한 지원과 지출 및 교회가 자선을 목적으로 모금한 모든 기금은, 당회나 집사회에 권위가 부여되는 경우, 그들에 의해 통제 분배되어야 한다.

법인의 직원들에게는 법인 정관과 내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부여될 수 있다.

- ㄱ.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매매 또는 저당하며,
- ㄴ. 재산권을 취득 또는 양도하며, 동일한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 또는 수호하며,
- ㄷ. 그런 임무가 당회나 집사회의 권한과 임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사역 증진을 위해 위탁된 모든 특별 영구 기금을 관리하게 한다.

부동산을 매매 또는 저당할 때, 법인의 직원들은, 적법하게 소집된 법인 회의에서 부여 받은 법인의 권위 안에서만 행동해야 한다.

25-8. 지교회의 법인은, 적법하게 선출된 이사 또는 법인 직원들을 통하여 (또는, 만일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부동산에 관하여 지교회를 대표할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교회의 재산, 부동산, 동산, 혹은 혼합적, 유형 또는 무형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가지며, 어떤 부동산이든 저당 초과 가격, 또는 어느 지교회이든 [그 교회], 이사회, 사회단체, 위원회, 주일학교, 또는 그 분교에 의해서 보유되어 있거나 [그것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기금이나 재산, 모든 것의 단독 소유권자가 된다. 상회는 지교회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서만 지교회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을 받을 수 있다.

25-9. All particular churches shall be entitled to hold, own and enjoy their own local properties, without any right of reversion whatsoever to any Presbytery, General Assembly or any other courts hereafter created, trustees or other officers of such courts.

25-10. The provisions of this *BCO 25* are to be construed as a solemn covenant whereby the Church as a whole promises never to attempt to secure possession of the property of any congregation against its will, whether or not such congregation remains within or chooses to withdraw from this body. All officers and courts of the Church are hereby prohibited from making any such attempt.

25-11. While a congregation consists of all the communing members of a particular church, and in matters ecclesiastical the actions of such local congregation or church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Book of Church Order*, nevertheless, in matters pertaining to the subject matters referred to in this *BCO 25*, including specifically the right to affiliate with or become a member of this body or a Presbytery hereof and the right to withdraw from or to sever any affiliation of connection with this body or any Presbytery hereof, action may be taken by such local congregation or local church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laws applicable to such local congregation or local church; and as long as such action is taken in compliance with such applicable civil laws, then such shall be the action of the local congregation or local church.

It is expressly recognized that each local congregation or local church shall be competent to function and to take actions covering the matters set forth herein as long as such action is in compliance with the civil laws with which said local congregation or local church must comply, and this right shall never be taken from said local congregation or local church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and affirmative action of such local church or congregation.

Particular churches need remain in association with any court of this body only so long as they themselves so desire. The relationship is voluntary, based upon mutual love and confidence, and is in no sense to be maintained by the exercise of any force or coercion whatsoever. A particular church may withdraw from any court of this body at any time for reasons which seem to it sufficient.

25-9. 모든 지교회는 자체의 현지 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노회나 총회나 금후 창설될 어떤 치리회나 이런 치리회들의 이사나 직원에게는 그 재산에 대한 계승권이 전혀 없다.

25-10. 본 *교회헌법* 제 25 장의 규정은 회중이 미국장로교 내에 남아 있는지 탈퇴하기로 결정하든지, 교단 전체로서는 결코 어느 회중이든 그 회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언약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언약은 교단의 직원이나 치리회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한다.

25-11. 회중은 지교회의 모든 수찬교인으로 구성되며, 교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회중 또는 지교회의 모든 조치가 본 *교회헌법*이 명시한 규례와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미국장로교 혹은 미국장로교에 속한 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이 되는 권리와 미국장로교 혹은 미국장로교에 속한 노회와 연계된 어떤 연합으로부터 탈퇴 혹은 단절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이 *교회헌법* 제 25 장에 언급된 문제들에 관해서는, 지역 회중이나 지역 교회가 그 지역 회중 혹은 그 지역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민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해당 민법에 순응해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한, 그 조치는 그 지역 회중 혹은 지역교회의 조치가 된다.

해당 지역 회중 혹은 지역 교회가 준수해야 하는 민법을 준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 각 지역 회중 혹은 지역 교회는 여기에 규정된 일들을 포함하여 기능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교회 혹은 회중의 명시한 승낙이나 확정적 조치가 없으면 그 지역 회중 혹은 지역 교회로부터 그 권리가 박탈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인지된 사실이다.

지교회들은 그들이 원하는 한 미국장로교의 치리회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관계는 상호간의 우애와 신뢰를 기초로 자원하는 것으로, 결코 어떤 형태이든 무력이나 강요에 의해서 지속될 수 없다. 지교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미국장로교의 어느 치리회에서나 탈퇴할 수 있다.

25-12. If a church is dissolved by the Presbytery at the request of the congregation and no disposition has been made of its property by those who hold the title to the property within six months after such dissolution, then those who held the title to the property at the time of such dissolution shall deliver, convey and transfer to the Presbytery of which the church was a member, or to the authorized agents of the Presbytery, all property of the church; and the receipt and acquittance of the Presbytery, or its proper representatives, shall be a full and complete discharge of all liabilities of such persons holding the property of the church. The Presbytery receiving such property shall apply the same or the proceeds thereof at its discretion.

25-12. 회중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가 지교회를 해산하고 해산 후 6 개월 이내에 재산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으면, 해산 시에 재산 소유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지교회가 소속했던 노회나 노회 대리인에게 교회 재산 일체를 양도해야 한다; 노회나 그 정식 대표가 재산을 접수하면 교회 재산을 유보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책임은 모두 완전히 면제된다. 이런 재산을 받은 노회는 재량으로 그 재산이나 재산 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

CHAPTER 26*Amending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26-1.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which is subject to and subordinate to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 inerrant Word of God, consists of its doctrinal standards set forth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ogether with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and the *Book of Church Order*, comprising the Form of Government, the Rules of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for Worship; all as adopted by the Church.

26-2. Amendments to the *Book of Church Order* may be made only in the following manner:

1. Approval of the proposed amendment by majority of those present and voting in the General Assembly, and its recommendation to the Presbyteries.
2. The advice and consent of two-thirds (2/3) of the Presbyteries.
3. The approval and enactment by a subsequent General Assembly by a majority of those present and voting.

26-3. Amendments to the *Confession of Faith* and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may be made only in the following manner:

1. Approval of the proposed amendment by three-fourths (3/4) of those present and voting in the General Assembly, and its recommendation to the Presbyteries.
2. The advice and consent of three-fourths (3/4) of the Presbyteries.
3. The approval and enactment by a subsequent General Assembly by three-fourths (3/4) of those present and voting.

This paragraph (*BCO* 26-3) can be amended only by the same method prescribed for the amendment of the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of the church.

제 26 장.

교회헌법의 개정

26-1. 미국장로교의 헌법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 지배되고 종속되며, 교회가 받아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교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헌법에 규정된 교리적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26-2. 교회헌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만 개정될 수 있다:

1.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총회 출석 총대 과반수의 득표 승인과, 수의를 위한 각 노회로의 이첩.
2. [전체] 노회 삼분의 이(2/3)의 조언과 동의.
3. 차기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총대 과반수 득표로 승인하여 제정.

26-3.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만 개정될 수 있다.

1.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총회 출석 총대 사분의 삼(3/4)의 득표 승인과, 수의를 위한 각 노회로의 이첩.
2. [전체] 노회 사분의 삼(3/4)의 조언과 동의.
3. 차기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총대의 사분의 삼(3/4)의 득표로 승인하여 제정.

본 문단(교회헌법 26-3)은 오로지 신앙고백과 교회의 요리문답들의 개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동일 방법으로만 개정될 수 있다.

26-4. In voting upon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the Presbyteries may not divide the parts of the amendment except as dir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which has recommended its adoption.

26-5. Full organic union and consolid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with any other ecclesiastical body can be effected only in the following manner:

1. The approval of the proposed union by three-fourths (3/4) of those present and voting in the General Assembly and its recommendation to the Presbyteries.
2. The advice and consent of three-fourths (3/4) of the Presbyteries.
3. The approval and consummation by a subsequent General Assembly by three-fourths (3/4) vote of those present and voting.

This paragraph (*BCO 26-5*) can be amended only by the same method prescribed for the amendment of the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of the church.

26-6. If by reason of the failure of a number of Presbyteries to act, or to report action, on any proposed amendment to the Standards and the response of the Presbyteries is not satisfactory to the succeeding General Assembly, it may defer action for one year. In that event the General Assembly shall urge the delinquent Presbyteries to report their judgment to the next Assembly, which shall take final action on the proposed amendment.

26-4. 미국장로교 헌법 개정안을 투표할 때, 노회들은 총회가 채택하도록 추천하여 지시한 사항이 아닌 한, 개정안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투표할 수 없다.

26-5. 미국장로교가 다른 어떤 교단과 완전 유기적 연합이나 합병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된다:

1. 상정된 연합 건에 대한 총회 출석 총대 사분의 삼(3/4)의 득표 승인과, 수의를 위한 각 노회로의 이첩.
2. [전체] 노회 사분의 삼(3/4)의 조언과 동의.
3. 차기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총대의 사분의 삼(3/4)의 득표로 승인하여 완료.

본 문단(교회헌법 26-5)은 오로지 신앙고백과 교회의 요리문답들의 개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동일 방법으로만 개정될 수 있다.

26-6. 만일 상정된 어떤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노회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결정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차기 총회가 노회들의 응답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면, 총회는 일 년간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런 때에 총회는 직무를 유기한 노회들이 차기 총회에 그 결정을 보고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차기 총회는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해야 한다.

PART II

THE RULES OF DISCIPLINE

CHAPTER 27

Discipline – Its Nature, Subjects and Ends

27-1. Discipline is the exercise of authority given the Church by the Lord Jesus Christ to instruct and guide its members and to promote its purity and welfare.

The term has two senses:

- a. the one referring to the whole government, inspection, training, guardianship and control which the church maintains over its members, its officers and its courts;
- b. the other a restricted and technical sense, signifying judicial process.

27-2. All baptized persons, being members of the Church are subject to its discipline and entitled to the benefits thereof.

27-3. The exercise of discipline is highly important and necessary. In its proper usage discipline maintains:

- a. the glory of God,
- b. the purity of His Church,
- c. the keeping and reclaiming of disobedient sinners. Discipline is for the purpose of godliness (1 Timothy 4:7); therefore, it demands a self-examination under Scripture.

Its ends, so far as it involves judicial action, are the rebuke of offenses, the removal of scandal, the vindication of the honor of Christ, the promotion of the purity and general edification of the Church, and the spiritual good of offenders themselves.

27-4. The power which Christ has given the Church is for building up, and not for destruction. It is to be exercised as under a dispensation of mercy and not of wrath. As in the preaching of the Word the wicked are doctrinally separated from the good, so by discipline the Church authoritatively separates between the holy and the profane. In this it acts the part of a tender mother, correcting her children for their good, that every one of them may be presented faultless in the day of the Lord Jesus. Discipline is systematic training under the authority of God's Scripture. No communing or non-communing member of the Church should be allowed to stray from the Scripture's discipline. Therefore, teaching elders must:

- a. instruct the officers in discipline,
- b. instruct the congregation in discipline,
- c. jointly practice it in the context of the congregation and church courts.

제 2 부 권 징 조 례

제 27 장.

권 징 - 그 본질과 대상과 목적

27-1. 권징은 교인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며 교회의 순수성과 안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권징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 ㄱ. 하나는, 교회가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에 대해서 행하는 치리 전체와 검열과 훈련과 보호지도와 그리고 통제요;
- ㄴ. 다른 하나는, 제한된 전문적인 의미로서, 곧 재판 절차를 뜻한다.

27-2. 모든 세례교인은 교인으로서 교회의 권징에 복종하며 그로 말미암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7-3. 권징의 실시는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 올바른 권징 실시는:

- ㄱ. 하나님의 영광과,
- ㄴ.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성 유지와,
- ㄷ.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보호하며 회개시킨다. 권징은 경건을 위한 것이다(딤후 4:7); 따라서 권징은 성경의 [권위 하에] 자기 반성을 요구한다.

재판 사건에 관련된 권징의 목적은 범죄를 책망하며, 추문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예를 변호하며, 교회의 순결성과 건덕을 증진하며, 범과자들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27-4.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은 건설하기 위한 것이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은 진노 시대 하에서처럼 아니라 공휼 시대 하에서처럼 행사되어야 한다. 말씀 선포에 있어서 악인은 교리적으로 의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같이, 권징으로 교회는 권위있게 신성한 자와 모독적인 자를 분리한다. 이 일에 교회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교정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교인들 모두가 주 예수의 날에 무흠한 자로 드러질 수 있도록 한다. 권징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체계적인 훈련이다. 교회의 수찬 교인이나 비수찬 교인이나 성경의 권징에서 벗어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목사는:

- ㄱ. 직원들에게 권징을 가르치며,
- ㄴ. 회중들에게 권징을 가르치며,
- ㄷ. 회중과 교회 치리회의 상관관계 속에서 함께 권징을 실시한다.

27-5. Scriptural law is the basis of all discipline because it is the revelation of God's Holy will.

Proper disciplinary principles are set forth in the Scriptures and must be followed. They are:

- a. Instruction in the Word;
- b. Individual's responsibility to admonish one another (Matthew 18:15, Galatians 6:1);
- c. If the admonition is rejected, then the calling of one or more witnesses (Matthew 18:16);
- d. If rejection persists, then the Church must act through her court unto admonition, suspension, excommunication and deposition (See *BCO* 29 and 30 for further explanation).

Steps (a) through (d) must be followed in proper order for the exercise of discipline.

27-5.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한 뜻의 계시임으로 성경의 법은 모두 권징의 기본이다.

적법한 권징의 원리들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 ㄱ. 말씀으로 가르침;
- ㄴ. 당사자를 권면해야 하는 개인적인 책임 (마 18:15; 갈 6:1);
- ㄷ. 만일 권면이 거부되면, 그 때는 한 두 사람의 증인을 부를 것 (마 18:16);
- ㄹ. 만일 거부를 계속하면, 그 때는 교회가 반드시 치리회를 통하여 견책, 정직, 출교, 면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회헌법 제 29 장과 30 장 참고)

권징을 실시할 시 (ㄱ)항에서 (ㄹ)항에 이르는 적법한 순서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CHAPTER 28*Disciplining of Non-communing Members*

28-1. The spiritual nurture, instruction and training of the children of the Church are committed by God primarily to their parents. They are responsible to the Church for the faithful discharge of their obligations. It is a principal duty of the Church to promote true religion in the home. True discipleship involves learning the Word of God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both at home and in the Church. Without learning there is no growth and without growth there is no discipline and without discipline there is sin and iniquity (1 Timothy 4:7).

28-2. The home and the Church should also make special provision for instructing the children in the Bible and in the church Catechisms. To this end Sessions should establish and conduct under their authority Sunday schools and Bible classes, and adopt such other methods as may be found helpful. The Session shall encourage the parents of the Church to guide their children in the catechising and disciplining of them in the Christian religion.

28-3. The Church should maintain constant and sympathetic relations with the children. It also should encourage them, on coming to years of discretion, to make confession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o enter upon all privileges of full church membership. If they are wayward they should be cherished by the church and every means used to reclaim them.

28-4. Adult non-communing members, who receive with meekness and appreciation the oversight and instruction of the Church, are entitled to special attention. Their rights and privileges under the covenant should be frequently and fully explained, and they should be warned of the sin and danger of neglecting their covenant obligations.

28-5. All non-communing members shall be deemed under the care of the church to which their parents belong, if they live under the parental roof and are minors; otherwise, under that of the church where they reside, or with which they ordinarily worship.

제 28 장.

비수찬 교인에 대한 권징

28-1. 교회의 어린이들의 영적 양육, 훈계와 훈련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그들의 부모에게 맡기신 것이다. 부모는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교회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가정 안에서 진실한 신앙을 배양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의무 중 하나이다. 참된 제자도는 가정과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포함한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면 절제가 없고, 절제가 없으면 죄와 불의가 생긴다 (딤후 4:7)

28-2. 가정과 교회는 어린이들에게 성경과 요리문답을 가르칠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당회는 그들의 권위 아래 주일학교와 성경공부반을 설치 운영하며, 기타 유익한 방법을 채용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중에 지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8-3. 교회는 어린이들과 계속적이며 이해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 어린이들이 성장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며 교회의 정회원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가지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들이 결길로 나갈 경우 교회는 그들을 아껴 온갖 시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28-4. 교회의 감독과 교훈을 은유와 감사로 받아들이는 성인 비수찬 교인들에게 교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에게 언약 아래 있는 그들의 권리와 특권은 자주 그리고 충분히 설명해 주되, 그들의 언약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죄와 위협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고해야 한다.

28-5. 모든 비수찬 교인이 부모와 동거하며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가 소속한 교회의 보호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거주지 교회나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교회의 보호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CHAPTER 29*Offenses*

29-1. An offense, the proper object of judicial process, is anything in the doctrines or practice of a Church member professing faith in Christ which is contrary to the Word of God. The *Confession of Faith* and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together with the formularies of government, discipline, and worship are accept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s standard expositions of the teachings of Scripture in relation to both faith and practice. Nothing, therefore, ought to be considered by any court as an offense, or admitted as a matter of accusation, which cannot be proved to be such from Scripture.

29-2. Offenses are either personal or general, private or public; but all of them being sins against God, are therefore grounds of discipline.

29-3. Personal offenses are violations of the divine law, considered in the special relation of wrongs or injuries to particular individuals. General offenses are heresies or immoralities having no such relation, or considered apart from it.

29-4. Private offenses are those which are known only to a few persons. Public offenses are those which are notorious.

제 29 장.

범죄

29-1. 재판 절차의 정식 대상이 되는 범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원의 교리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모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은 [헌법의]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과 더불어, 신앙과 행위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표준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미국장로교는 인정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근거로 증명될 수 없는 일은 아무 치리회도 범죄로 인정하거나 고소할 문제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29-2. 범죄는 개인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사적이거나 공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므로 권징의 근거가 된다.

29-3. 개인적인 범죄는 특정 개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계의 과오나 피해로 간주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다. 일반적인 범죄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없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는 이단설이나 부도덕 행위를 의미한다.

29-4. 사적 범죄는 소수 몇 사람에게만 알려진 것이다. 공적 범죄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CHAPTER 30*Church Censures*

30-1. The censures, which may be inflicted by church courts, are admonition, suspension from the Sacraments, excommunication, suspension from office, and deposition from office. The censures of admonition or definite suspension from office shall be administered to an accused who, upon conviction, satisfies the court as to his repentance and makes such restitution as is appropriate. Such censure concludes the judicial process. The censures of indefinite suspension or excommunication shall be administered to an accused who, upon conviction, remains impenitent.

30-2. Admonition is the formal reproof of an offender by a church court, warning him of his guilt and danger, and exhorting him to be more circumspect and watchful in the future.

30-3. Suspension from Sacraments is the temporary exclusion from those ordinances, and is indefinite as to its duration. There is no definite suspension from the Sacraments.

Suspension from office is the exclusion of a church officer from his office. This may be definite or indefinite as to its duration. With respect to church officers, suspension from Sacraments shall always be accompanied by suspension from office. But suspension from office is not always necessarily accompanied with suspension from Sacraments.

Definite suspension from office is administered when the credit of religion, the honor of Christ, and the good of the delinquent demand it, even though the delinquent has given satisfaction to the court.

Indefinite suspension is administered to the impenitent offender until he exhibits signs of repentance, or until by his conduct, the necessity of the greatest censure be made manifest. In the case of indefinite suspension from office imposed due to scandalous conduct, the procedure outlined in *BCO* 34-8 shall be followed.

제 30 장.

교회의 책벌들

30-1. 교회의 치리회가 부과할 수 있는 책벌은 견책, 수찬 정지, 출교, 정직, 면직이 있다. 견책이나 유기 정직의 책벌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회개하여 치리회를 만족시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낸 자에게 시행된다. 그와 같은 책벌로 재판을 종결한다. 무기 정직이나 출교의 책벌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 시행된다.

30-2. 견책은 교회의 치리회가 범과자에게 가하는 공식적 책망으로, 그의 죄책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앞으로 더 신중하고 조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30-3. 수찬 정지는 일시적으로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책벌이며, 그 기간은 일정하지 않다. 수찬 정지에는 한정된 기간이 없다.

정직은 그의 교회의 직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 기간은 유기일 수도 있고 무기일 수도 있다. 교회의 직분자에 관한 수찬 정지는 언제나 정직을 동반한다. 그러나 정직은 항상 필연적으로 수찬 정지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유기 정직은 직무 유기자가 치리회를 만족 시켰을지라도, 신앙의 신뢰성, 그리스도의 영예와 당사자의 유익을 위해 요구될 때 시행된다.

무기 정직은, 당사자가 회개의 징조를 보일 때까지, 혹은 그의 행위로 인해 최고의 책벌을 가할 필요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뉘우치지 않는 범과자에게 시행된다. 수치스러운 품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무기 정직은, 교회헌법 34-8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30-4. Excommunication is the excision of an offender from the communion of the Church. This censure is to be inflicted only on account of gross crime or heresy and when the offender shows himself incorrigible and contumacious. The design of this censure is to operate on the offender as a means of reclaiming him, to deliver the church from the scandal of his offense, and to inspire all with fear by the example of his discipline.

30-5. Deposition is the degradation of an officer from his office, and may or may not be accompanied with the infliction of other censure.

30-4. 출교는 범과자를 교회의 [성도의] 교제로부터 축출하는 [책벌]이다. 이 책벌은 심한 범죄나 이단설의 경우와 범죄자 스스로 개선 할 의향이 없고 완고히 불순종 할 때만 가해져야 한다. 이 책벌은 범죄자를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그의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추문에서 교회를 건져내기 위해, 범과자에 대한 권징의 본을 삼음으로 모든 [교인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30-5. 면직은 직분자를 그의 직위에서 파면하는 것으로, 다른 책벌의 고통을 첨가 할 수도 있고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CHAPTER 31

The Parties in Cases of Process

31-1. Original jurisdiction (the right first or initially to hear and determine) in relation to ministers of the Gospel shall be in the Presbytery of which the minister is a member, except in cases as provided in *BCO* 34-1. Such original jurisdiction in relation to church members shall be in the Session of the church of which he/she is a member, except in cases as provided in *BCO* 33-1.

31-2. It is the duty of all church Sessions and Presbyteries to exercise care over those subject to their authority. They shall with due diligence and great discretion demand from such persons satisfactory explanations concerning reports affecting their Christian character. This duty is more imperative when those who deem themselves aggrieved by injurious reports shall ask an investigation.

If such investigation, however originating, should result in raising a strong presumption of the guilt of the party involved, the court shall institute process, and shall appoint a prosecutor to prepare the indictment and to conduct the case. This prosecutor shall be a member of the court, except that in a case before the Session, he may be any communing member of the same congregation with the accused.

31-3. The original and only parties in a case of process are the accuser and the accused. The accuser is always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whose honor and purity are to be maintained. The prosecutor, whether voluntary or appointed, is always the representative of the Church, and as such has all its rights in the case. In appellate courts the parties are known as appellant and appellee.

31-4. Every indictment shall begin: **“In the nam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shall conclude, **“against the peace, unity and purity of the Church, and the honor and majesty of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King and Head thereof.”** In every case the Church is the injured and accusing party, against the accused.

제 31 장.

소송 당사자

31-1. 목회자들에 관련된 최초의 재판권(먼저 혹은 일차적으로 청문하고 결의하는 권리)은 그 목회자가 소속된 노회에 있다. 단, *교회헌법* 34-1 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교인과 관련된 최초의 재판권은 그 교인이 소속된 교회의 당회에 있다. 단, *교회헌법* 33-1 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31-2. 모든 교회의 당회와 노회의 의무는 그들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돌아 보는 것이다. 당회와 노회는 마땅히 근면하고 신중하게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고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가해성 있는 보고로 인하여 심하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요구할 때는 더 긴박해 진다.

그러한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든 간에 그 결과로 관련된 당사자의 범죄 혐의가 짙을 경우 치리회는 재판을 제소해서, 고소장을 준비하여 사건을 담당할 기소자를 임명한다. 이 기소자는 치리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당회 앞에 제출된 소송건을 취급할 때는 피소자와 동일한 회중의 수찬 교인은 누구나 기소자가 될 수 있다.

31-3. 재판 사건에 있어서 최초의 또 유일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원고는 언제나 명예와 순수성을 유지하여야 할 미국장로교이다. 기소자는 자원했거나 임명되었거나 간에 항상 교회를 대표하며, 대표자로서 소송에 관한 교회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상소 치리회에서는 당사자들이 상소인과 피상소인이라 불린다.

31-4. 모든 기소장은 “미국장로교의 이름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며, “교회의 화평과 일치와 순결과,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와 존엄에 대적하여” 라는 말로 끝나야 한다. 모든 사건에서 교회가 피해자요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한다.

31-5. An injured party shall not become a prosecutor of personal offenses without having tried the means of reconciliation and of reclaiming the offender, required by Christ.

“Moreover, if thy brother shall trespass against thee, go and tell him his fault between thee and him alone: if he shall hear thee, thou hast gained thy brother but if he will not hear thee, then take with thee one or two more, that in the mouth of two or three witnesses every word may be established” (Matthew 18:15-16).

A church court, however, may judicially investigate personal offenses as if general when the interest of religion seem to demand it. So, also, those to whom private offenses are known cannot become prosecutors without having previously endeavored to remove the scandal by private means.

31-6. When the offense is general, the case may be conducted either by any person appearing as prosecutor or by a prosecutor appointed by the court.

31-7. When the prosecution is instituted by the court, the previous steps required by our Lord in the case of personal offenses are not necessary. There are many cases, however, in which it will promote the interests of religion to send a committee to converse in a private manner with the offender, and endeavor to bring him to a sense of his guilt, before instituting actual process.

31-8. Great caution ought to be exercised in receiving accusations from any person who is known to indulge a malignant spirit towards the accused; who is not of good character; who is himself under censure or process; who is deeply interested in any respect in the conviction of the accused; or who is known to be litigious, rash or highly imprudent.

31-9. Every voluntary prosecutor shall be previously warned, that if he fail to show probable cause of the charges, he may himself be censured as a slanderer of the brethren.

31-10. When a member of a church court is under process, all his official functions may be suspended at the court’s discretion; but this shall never be done in the way of censure.

31-11. In the discussion of all questions arising in his own case, the accused shall exercise the rights of defendant only, not of judge.

31-5. 피해자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먼저 범죄자와 화해하며 그를 돌이키도록 시도하지 않고는 개인적인 범과에 대한 고소자가 될 수 없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마 18:15-16)

그러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회 치리회는 개인적 범죄일 지라도 일반적 범죄와 같이 법적으로 조사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적 범죄를 알게 된 사람들도 먼저 사적 방법으로 추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지 않고는 기소자들이 될 수 없다.

31-6. 일반적 범과일 때는 기소자로 출두한 자는 누구나 혹은 치리회의 임명을 받은 기소자가 소송건을 담당할 수 있다.

31-7. 치리회가 고소를 제기할 때에는 개인적 범죄인 경우에 주께서 명령하신 상기 선행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범죄인에게 위원회를 파송하여 사적으로 대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죄를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사례가 많다.

31-8.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품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 책벌이나 재판중에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라도 피고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소송을 좋아하거나, 경술하거나 심히 경망한 사람의 고소를 받을 때에는 각별히 신중하여야 한다.

31-9. 자원 기소자에 대해서는, 그가 제기한 고소의 추정 이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그 자신이 형제를 증상한 자로 책벌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

31-10. 교회 치리 회원이 재판 하에 있을 때, 그의 모든 직무를 치리회의 재량으로 정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책벌을 가하는 것처럼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31-11. 피고는 자신의 소송건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질문을 토의할 때, 피고의 권리만 행사해야지, 재판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CHAPTER 32

General Provisions Applicable to all Cases of Process

32-1. It is incumbent on every member of a court of Jesus Christ engaged in a trial of offenders, to bear in mind the inspired injunction:

“Brethren, if a man is overtaken in any trespass, you who are spiritual restore such a one in the spirit of gentleness, considering yourself lest you also be tempted” (Galatians 6:1).

32-2. Process against an offender shall not be commenced unless some person or persons undertake to make out the charge; or unless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for the honor of religion, itself to take the step provided for in *BCO* 31-2.

32-3. It is appropriate that with each citation the moderator or clerk call the attention of the parties to the Rules of Discipline (*BCO* 27 through 46) and assist the parties to obtain access to them. When a charge is laid before the Session or Presbytery, it shall be reduced to writing, and nothing shall be done at the first meeting of the court, unless by consent of parties, except:

1. to appoint a prosecutor,
2. to order the indictment drawn and a copy, along with names of witnesses then known to support it, served on the accused, and
3. to cite the accused to appear and be heard at another meeting which shall not be sooner than ten days after such citation.

At the second meeting of the court the charges shall be read to the accused, if present, and he shall be called upon to say whether he be guilty or not.

If the accused confesses, the court may deal with him according to its discretion; if he plead and take issue, the trial shall be scheduled and all parties and their witnesses cited to appear. The trial shall not be sooner than fourteen (14) days after such citation.

Accused parties may plead in writing when they cannot be personally present. Parties necessarily absent should have counsel assigned to them.

제 32 장.

모든 재판과정에 대한 일반 규정

32-1.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회 회원으로서 범죄자 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명령을 마음에 새겨 둘 의무가 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1)

32-2. 한 범죄자에 대하여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고발하든지, 또는 치리회 자체가 교회의 영예를 위하여 교회헌법 31-2 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고발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때까지는 재판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32-3. 각 소환장과 함께 당회 의장이나 서기는 쌍방 당사자들이 권징조례(교회헌법 27-46 장)를 참조하도록 촉구하고 쌍방이 다 권징조례를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합당하다. 고소건이 당회나 노회앞에 제출 되었을 때, 그것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치리회의 첫 모임에서는 쌍방 당사자들의 찬동이 없는 한 다음의 일만 해야 한다:

1. 기소인을 임명하고,
2. 고소장을 작성할 것과 고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증인들의 이름과 함께 피고측의 입장을 담은 사본 한통을 요청하고,
3. 모든 당사자와 증인들이 다음 회의에 출두하여 청문 받도록 소환하되, 차기 회의는 그 소환장을 보낸 후 십일 이내에 열 수 없다.

두 번째 치리회의에서, 만일 피고가 출두했으면, 그에게 고소 이유를 낭독해 주고, 유죄 여부를 대답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일 피고가 [죄를] 고백하면 치리회는 재량대로 처리할 수 있다; 만일 피고가 [무죄를] 호소하고 문제를 삼으면, 재판 일정을 정하고 모든 당사자들과 그들의 증인들은 소환 받고 출두해야 한다. 그 재판은 소환장 발부 후 십사(14)일 이내에 열릴 수 없다.

피고측이 직접 출두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호소할 수도 있다. 부득이 불참하게 되는 당사자 측은 변호인을 지정 받아야 한다.

32-4. The citation shall be issued and signed by the moderator or clerk by order and in the name of the court. He shall also issue citations to such witnesses as either party shall nominate to appear on his behalf. Indictments and citations shall be delivered in person or in another manner providing verification of the date of receipt. Compliance with these requirement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ulfilled if a party cannot be located after diligent inquiry or if a party refuses to accept delivery.

32-5. In drawing the indictment, the times, places and circumstances should, if possible, be particularly stated, that the accused may have an opportunity to make his defense.

32-6. a. When an accused person shall refuse to obey a citation, he shall be cited a second time. This second citation shall be accompanied with a notice that if he does not appear at the time appointed (unless providentially hindered, which fact he must make known to the court) he shall be dealt with for his contumacy (cf. *BCO* 33-2; 34-4).

b. When an accused person shall appear and refuse to plead, or otherwise refuse to cooperate with lawful proceedings, he shall be dealt with for his contumacy (cf. *BCO* 33-2; 34-4).

32-7. The time which must elapse between the serving of the first citation on the accused person, and the meeting of the court at which he is to appear, shall be at least ten (10) days. The time allotted for his appearance on the subsequent citation shall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provided that it be quite sufficient for a seasonable and convenient compliance with the citation.

32-8. When the offense with which an accused person stands charged took place at a distance, and it is inconvenient for the witnesses to appear before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that court may either appoint a commission of its body, or request the coordinate court contiguous to the place where the facts occurred to take the testimony for it. The accused shall always have reasonable notice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of this commission or coordinate court.

32-4. 소환장은 규정상 당회 의장이나 서기가 치리회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발부되어야 한다. 그는 쌍방 어느 측이든 자신을 위해 출두하도록 지명한 증인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고발장과 소환장은 반드시 인편 혹은 수신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만일 최선을 다해 문의했어도 당사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전달물의 접수를 거부하면 따라야 할 이 요구사항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32-5.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 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32-6. ㄱ. 피고가 소환장에 불복하면 재차 소환해야 한다. 재차 소환장을 발송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즉 만일 그가 지정한 시간에 출두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두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치리회에 알려야 한다) 그는 그의 항명에 대해 조치를 받게 된다 (교회헌법 33-2; 34-4 비교).

ㄴ. 피고가 출두해서 [선처] 호소를 거부하거나, 혹 다른 모양으로 적법한 의사진행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면, 그는 그의 항명에 대해 조치를 받게 된다 (교회헌법 33-2; 34-4 비교).

32-7. 피고인에게 첫 소환장을 송달한 때부터 그가 출두해야 할 치리회의 회의일정까지는 적어도 십(10) 일간의 기간이 있어야만 한다. 자기 출두를 위한 소환장에 지정될 시간은 치리회의 재량에 맡겨야 하고, 다만 그 시간은 매우 충분해서 소환에 순응하기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32-8. 피고가 고발당한 범과가 먼 곳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그리고 증인들이 사건관할 치리회에 출두하기 불편할 때는, 치리회가 자체의 위원회를 임명하거나, 사건 발생 인접 지역의 대등한 치리회에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증언을 얻게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위원회나 대등한 치리회가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적절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32-9. When an offense,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at a distance, is not likely otherwise to become known to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ourt within whose bounds the facts occurred, after satisfying itself that there is probable ground for accusation, to send notice to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which shall at once proceed against the accused; or the whole case may be remitted for trial to the coordinate court within whose bounds the offense i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32-10. Before proceeding to trial, courts ought to ascertain that their citations have been duly served.

32-11. In every process, if deemed expedient there may be a committee appointed, which shall be called the Judicial Committee, and whose duty it shall be to digest and arrange all the papers, and to prescrib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urt, the whole order of the proceedings.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shall be entitled, notwithstanding their performance of this duty, to sit and vote in the case as members of the court.

32-12. When the trial is about to begin, it shall be the duty of the moderator solemnly to announce from the chair that the court is about to pass to the consideration of the case, and to enjoin on the members to recollect and regard their high character as judges of a court of Jesus Christ, and the solemn duty in which they are about to engage.

32-13. In order that the trial may be fair and impartial, the witnesses shall be examined in the presence of the accused, or at least after he shall have received due citation to attend. Witnesses may be cross-examined by both parties, and any questions asked must be pertinent to the issue.

32-14. On all questions arising in the progress of a trial, the discussion shall first be between the parties; and when they have been heard, they may be required to withdraw from the court until the members deliberate upon and decide the point.

32-9. [거리상] 먼 곳에서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범과가 [피고가 속한] 관할 치리회에 알려질 듯하지 않을 때, 사건 발생 지역 내 치리회의 의무는 자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정죄 가능한 근거를 확보한 후, 관할 치리회로 통지해야 하는 것이고, 관할 치리회는 즉시 피고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아니면 사건 전체를 범과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지역 내에 있는 대등한 치리회에 넘겨 재판할 수 있다.

32-10.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치리회는 반드시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11. 모든 재판에서, 편리다고 생각되면 법사위원회라 불리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법사 위원회의 임무는 모든 서류를 분류, 정리하며, 치리회의 지시에 따라 전체 재판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치리회의 회원으로서 소송건을 심리하며 표결할 권리가 있다.

32-12. 재판이 시작되려 할 때, 의장의 의무는 의석에서 치리회가 이제 소송건 심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고, 치리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의 재판관으로서 자신들의 높은 품위와 그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엄숙한 의무를 상기 시키고 인식하게 해야 한다.

32-13. 재판이 공정하고 공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심문은 피고의 면전에서 받거나, 적어도 피고가 출두해야 한다는 적법한 소환장을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증인들은 쌍방 당사자들의 반대 심문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질문은 반드시 사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32-14. 재판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쌍방 간에 토의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청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치리 회원들이 쟁점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까지 퇴정을 요구 받을 수도 있다.

32-15. When a court of first resort proceeds to the trial of a case, the following order shall be observed:

1. The moderator shall charge the court.
2. The indictment shall be read, and the answer of the accused heard.
3. The witnesses for the prosecutor and then those for the accused shall be examined.
4. The parties shall be heard: first, the prosecutor, and then the accused, and the prosecutor shall close.
5. The roll shall be called, and the members may express their opinion in the case.
6. The vote shall be taken, the verdict announced and judgment entered on the records.

32-16. Either party may, for cause, challenge the right of any member to sit in the trial of the case, which question shall be decided by the other members of the court.

32-17. Pending the trial of a case, any member of the court who shall express his opinion of its merits to either party, or to any person not a member of the court; or who shall absent himself from any sitting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urt, or satisfactory reasons rendered, shall be thereby disqualified from taking part in the subsequent proceedings.

32-18. Minutes of the trial shall be kept by the clerk, which shall exhibit the charges, the answer, record of the testimony, as defined by *BCO 35-7*, and all such acts, orders, and decisions of the court relating to the case, as either party may desire, and also the judgment.

The clerk shall without delay assemble the Record of the Case which shall consist of the charges, the answer, the citations and returns thereto, and the minutes herein required to be kept.

The parties shall be allowed copies of the Record of the Case at their own expense if they demand them.

When a case is removed by appeal or complaint, the lower court shall transmit "the Record" thus prepared to the higher court with the addition of the notice of appeal or complaint, and the reasons therefor, if any shall have been filed.

Nothing which is not contained in this "Record"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higher court. On the final decision of a case in a higher court, the judgment shall be sent down to the court in which the case originated.

32-15. 일심 치리회가 소송건의 재판을 진행할 때, 다음 절차를 지켜야 한다:

1. 의장이 재판의 개회를 선언한다.
2. 고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의 답변을 듣는다.
3. 처음에 기소자의 증인을 심문하고, 다음에 피고인의 증인을 심문한다
4. 쌍방을 [모두] 청문한다: 처음은 기소자, 다음은 피고, 그리고 기소자가 청문을 종료한다.
5. [출석 치리 회원을] 호명하고, 소송건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듣는다.
6. 투표에 붙여, 표결을 공포하고 판결을 기록한다.

32-16. 어느 측이든, 이유가 있을 시, [치리회원 중] 어떤 특정인이 소송건의 재판석에 앉는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이의는 치리회의 다른 회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32-17. 소송건의 재판이 계류 중일 때, 쌍방 어느 측에게든 혹은 치리회의 회원(재판관)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라도 자기 견해를 펼칠하는 치리회원; 혹은 치리회의 허락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결석하는 치리 회원은 누구라도, 그로 인해서 차기 재판 진행에 참가할 자격을 상실한다.

32-18. 재판기록은 서기가 보관하며, 그 기록은 *교회헌법* 35-7 에 정의된 대로, 고소내용, 답변, 증언의 서면기록 등을 명시하며, 쌍방 어느 측이든 요구하는 대로, 소송건에 연관된 치리회의 모든 조치, 명령과 결의안, 또 판결까지도 명시해야 한다.

서기는 고소내용, 답변, 소환장과 거기에 상응하는 회신, 보관이 요구되는 재판 기록 등으로 구성되는 소송 기록을 지체 없이 작성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들이 요구할 경우 그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 소송 기록 사본을 취득함을 허락해야 한다.

소송건이 상소나 소원에 의해 [상회로] 이관될 때는, 하위 치리회가 그 동안 준비한 “[소송] 기록”을 상소 또는 소원 통지서에 첨부하여 상회로 보내되, 만일 추가로 접수된 무슨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사유도 첨부 시킨다.

상회는 이 “[소송] 기록”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것도 심리할 수 없다. 상회에서 소송건이 최종적으로 결의되면, 그 판결은 소송건이 시작된 치리회로 내려 보내져야 한다.

32-19. No professional counsel shall be permitted as such to appear and plead in cases of process in any court; but an accused person may, if he desires it, be represented before the Session by any communing member of the same particular church, or before any other court, by any member of that court. A member of the court so employed shall not be allowed to sit in judgment in the case.

32-20. Process, in case of scandal, shall commence within the space of one year after the offense was committed, unless it has recently become flagrant. When, however, a church member shall commit an offense, after removing to a place far distant from his former residence, and where his connection with the church is unknown, in consequence of which process cannot be instituted within the time above specified, the recent discovery of the church membership of the individual shall be considered as equivalent to the offense itself having recently become flagrant. The same principle, in like circumstances, shall also apply to ministers.

32-19. 어느 치리회에서나 직업적인 변호사가 출정하여 심의 중인 소송건을 변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하면 같은 지교회의 어느 수찬교인이라도 당회 앞에서 그를 대리 할 수 있고, 혹 다른 어떤 치리회 앞에서 일 경우에는, 그 치리회의 어떤 회원이라도 그를 대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채용되었던 그 치리회 회원은 그 소송건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32-20. 추문에 관한 소송건은, 최근에 와서 더 악화되지 않는 한, 범행 이후 일년 이내에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교인이 이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후에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의 교회 소속 관계가 분명치 않음으로 그에 대한 재판이 상기 기간 내에 성립 될 수 없을 때에는, 그 개인의 교회 소속 관계가 최근 발견된 그 때를 범죄 자체가 악화된 때와 동일시하여 처리한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목사들에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CHAPTER 33*Special Rules Pertaining to Process Before Sessions*

33-1. Process against all church members, other than ministers of the Gospel, shall be entered before the Session of the church to which such members belong, except in cases of appeal. However, if the Session refuses to act in doctrinal cases or instances of public scandal and two other Sessions of churches in the same Presbytery request the Presbytery of which the church is a member to initiate proper or appropriate action in a case of process and thus assume jurisdiction and authority, the Presbytery shall do so.

33-2. When an accused person is found contumacious (cf. 32-6), he shall be immediately suspended from the sacraments (and if an officer from his office) for his contumacy. Record shall be made of the fact and of the charges under which he was arraigned, and the censure may be made public, should this be deemed expedient by the Session. The censure shall in no case be removed until the offender has not only repented of his contumacy, but has also given satisfaction in relation to the charges against him.

33-3. If after further endeavor by the court to bring the accused to a sense of his guilt, he persists in his contumacy, he shall be excommunicated from the Church.

33-4. When it is impracticable immediately to commence process against an accused church member, the Session may, if it thinks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 requires it, prevent the accused from approaching the Lord's Table until the charges against him can be examined.

제 33 장.

당회 재판과정에 대한 특별 규정

33-1. 목사 이외의 모든 교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그가 소속된 교회의 당회 앞에 제기한다. 단, 상소인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만약 당회가 교리적 소송건들이나 공공 추문의 취급을 거부할 경우, 같은 노회에 소속된 두 교회 당회가 동 노회에 그 재판 소송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과 관할권 및 권한을 양도 받도록 요청하면, 그 노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33-2. 피고가 항명죄로 드러나면 (32-6 비교), 그는 그의 항명죄로 인해서 즉시로 수찬정지 (만일 직분자이면 직분 정지)를 당한다. 그가 책벌을 받은 사실과 죄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당회에 의해서 유익하다고 간주될 경우 이 책벌은 공포될 수 있다. 책벌은 어느 경우에도 범죄자가 자기의 항명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적용된 죄목에 관해서도 만족한 증거를 보일 때까지 해벌될 수 없다.

33-3. 만일 치리회가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죄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항명을 계속하면, 그는 교회로부터 출교되어야 한다.

33-4. 고발된 교인에 대하여 즉시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만일 당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피고에 대한 고소 내용을 조사할 때까지 그에게 수찬금지를 명할 수 있다.

CHAPTER 34

Special Rules Pertaining to Process Against a Minister (Teaching Elder)

34-1. Process against a minister shall be entered before the Presbytery of which he is a member. However, if the Presbytery refuses to act in doctrinal cases or cases of public scandal and two other Presbyteries request the General Assembly to assume original jurisdiction (to first receive and initially hear and determine), the General Assembly shall do so.

34-2. As no minister ought, on account of his office, to be screened in his sin, or slightly censured, so scandalous charges ought not to be received against him on slight grounds.

34-3. If any one knows a minister to be guilty of a private offense, he should warn him in private. But if the offense be persisted in, or become public, he should bring the case to the attention of some other minister of the Presbytery.

34-4. a. When a minister accused of an offense is found contumacious (cf. 32-6), he shall be immediately suspended from the sacraments and his office for his contumacy. Record shall be made of the fact and of the charges under which he was arraigned, and the censure shall be made public. The censure shall in no case be removed until the offender has not only repented of his contumacy, but has also given satisfaction in relation to the charges against him.

b. If after further endeavor by the court to bring the accused to a sense of his guilt, he persists in his contumacy, he shall be deposed and excommunicated from the Church.

34-5. Heresy and schism may be of such a nature as to warrant deposition; but errors ought to be carefully considered, whether they strike at the vitals of religion and are industriously spread, or whether they arise from the weakness of the human understanding and are not likely to do much injury.

34-6. If the Presbytery find on trial that the matter complained of amounts to no more than such acts of infirmity as may be amended, so that little or nothing remains to hinder the minister's usefulness, it shall take all prudent measures to remove the scandal.

제 34 장.

목사(강도장로) 소송과정에 대한 특별 규정

34-1. 목사에 대한 소송은 그가 소속한 노회 앞에 제기한다. 그러나 만약 노회가 교리적 소송건들이나 공공 추문의 취급을 거부할 경우, 두 다른 노회가 총회에 (일차로 소송을 받아서 우선 청문하고 결의하기 위한) 최초 관할권을 양도 받도록 요청하면, 총회는 그렇게 해야한다.

34-2. 목사는 어느 누구도, 그의 직책 때문에, 그의 죄를 엄폐하거나 가법게 책벌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문이 될 만한 고소 내용을 빈약한 근거 위에서 접수해서도 안 된다.

34-3. 만일 누가 목사에게 사적인 죄가 있음을 알게될 경우, 그는 사적으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목사의 범과가 계속되거나 공개되면, 그는 이를 노회의 다른 목사들에게 알려야 한다.

34-4. a. 고발을 당한 목사가 항명죄(32-6 비교)로 드러난 때는, 그의 항명죄로 인해서 즉시로 수찬 정지와 직분 정지를 당한다. 그가 책벌을 받은 사실과 죄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책벌은 공포되어야 한다. 책벌은 어느 경우에도 범죄자가 자기의 항명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적용된 죄목에 관해서도 만족한 증거를 보일 때까지 해벌될 수 없다.

b. 만일 노회가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항명을 계속하면, 그는 면직되어야 하고 교회로부터 출교되어야 한다.

34-5. 이단설 주장과 분열행동은 본질상 면직에까지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오류에 대해서는, 그 오류가 교회에 치명적 타격을 주며 급속히 파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오류가 인간적 이해 부족 때문에 생겼으며 그 피해가 심하지 않을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34-6. 만일 노회의 재판 결과로 고발된 문제가 시정할 수 있는 약점에 불과하며, 목사의 유익한 시무를 거의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회는 추문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7. When a minister, pending a trial, shall make confession, if the matter be base and flagitious, such as drunkenness, uncleanness, or crimes of a greater nature, however penitent he may appear to the satisfaction of all, the court shall without delay impose definite suspension or depose him from the ministry.

34-8. A minister under indefinite suspension from his office or deposed for scandalous conduct shall not be restored, even on the deepest sorrow for his sin, until he shall exhibit for a considerable time such an eminently exemplary, humble and edifying life and testimony as shall heal the wound made by his scandal. A deposed minister shall in no case be restored until it shall appear that the general sentiment of the Church is strongly in his favor, and demands his restoration; and then only by the court inflicting the censure, or with that court's consent. The removal of deposition requires a three-fourths (3/4) vote of the court inflicting the censure, or a three-fourths (3/4) vote of the court to which the majority of the original court delegates that authority. ● ● ●

34-9. When a minister is deposed, his pastoral relation shall be dissolved; but when he is suspended from office it shall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Presbytery whether the censure shall include the dissolution of the pastoral relation.

34-10. Whenever a minister of the Gospel shall habitually fail to be engaged in the regular discharge of his official function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Presbytery, at a stated meeting, to inquire into the cause of such dereliction and, if necessary, to institute judicial proceedings against him for breach of his covenant engagement. If it shall appear that his neglect proceeds only from his lack of acceptance to the Church, Presbytery may, upon the same principle upon which it withdraws license from a licentiate for lack of evidence of the divine call, divest him of his office without censure, even against his will, a majority of two-thirds (2/3) being necessary for this purpose.

In such a case, the clerk shall under the order of the Presbytery forthwith deliver to the minister concerned a written note that, at the next stated meeting, the question of his being so dealt with is to be considered. This notice shall distinctly state the grounds for this proceeding. The party thus notified shall be heard in his own defense; and if the decision pass against him he may appeal, as if he had been tried after the usual forms. This principle may apply, with any necessary changes, to ruling elders and deacons.

34-7. 목사가 재판 진행 중에, 만일 술취함, 불결함, 혹은 중범죄와 같은 흉악 비열한 일을 고백하면,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가 충분히 회개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치리회는 즉시 그를 유기 정직에 처하거나 사역으로부터 면직시켜야 한다.

34-8. 추문이 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무기정직 혹은 면직된 목사는 아무리 자기 죄를 슬퍼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추문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료하면서, 겸손하고, 생활과 증거가 덕을 세우는 현저한 모범을 상당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복직 시킬 수 없다. 면직된 목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강력하게 그 목사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서 그의 복직을 요구하고 나설 때까지 결코 복직시킬 수 없다; 그렇게 된 때에만 책벌을 가한 치리회에 의해서, 혹은 그 치리회의 찬동으로 복직시킬 수 있다. 면직 철회는 책벌을 가한 치리회의 [찬동] 투표 사분의 삼 (3/4), 혹은 첫 치리회의 다수가 그 권한을 위탁한 치리회의 [찬동] 투표 사분의 삼 (3/4)을 요구한다.

34-9. 목사가 면직되면 그의 목회관계는 해소된다; 그러나 정직된 때 그의 목회관계 해소를 책벌 속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

34-10. 목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정상적인 목회 임무수행을 상습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노회의 의무는, 정기노회에서, 그러한 직무 유기의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임직시의 서약파기로 그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만일 그의 태만함이 단지 교회가 그를 수용하지 않는 데서 야기 되는 것이라면, 노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도사의 인허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원칙 위에서, 목사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라도, 책벌 없이 그를 해직 시키되, 이 목적을 위해서는 삼분의 이 (2/3) 이상의 득표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경우에 서기는 노회의 명령으로 해당 목사에게, 차기 정기 노회에서, 그의 그러한 처신에 대한 조회가 다루어 질 것이라고 하는 서면 통보를 즉시 발송해야 한다. 이 통보서는 명확하게 이 소송건에 대한 근거를 언급해야 한다. 그렇게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다; 만일 결정이 그에게 불리하면, 그는 정규 재판을 받은 경우처럼, 상소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필요하다면 변경을 가하여, 치리장로와 집사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CHAPTER 35*Evidence*

35-1. All persons of proper age and intelligence are competent witnesses, except such as do not believe in the existence of God, or a future state of rewards and punishments. The accused party may be allowed, but shall not be compelled to testify; but the accuser shall be required to testify, on the demand of the accused. Either party has the right to challenge a witness whom he believes to be incompetent, and the court shall examine and decide upon his competency. It belongs to the court to judge the degree of credibility to be attached to all evidence.

35-2. A husband or wife shall not be compelled to bear testimony against one another in any court.

35-3. The testimony of more than one witness shall be necessary in order to establish any charge; yet if, in addition to the testimony of one witness, corroborative evidence be produced, the offense may be considered to be proved.

35-4. No witness afterwards to be examined, unless a member of the court, shall be present during the examination of another witness on the same case, if either party object.

35-5. Witnesses shall be examined first by the party introducing them; then cross-examined by the opposite party; after which any member of the court, or either party, may put additional interrogatories. No question shall be put or answered except by permission of the moderator, subject to an appeal to the court. The court shall not permit questions frivolous or irrelevant to the charge at issue.

35-6. The oath or affirmation to a witness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Moderator in the following or like terms:

Do you solemnly promise, in the presence of God, that you will declare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according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in the matter in which you are called to witness, as you shall answer it to the great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If, however, at any time a witness should present himself before a court, who for conscientious reasons prefers to swear or affirm in any other manner, he should be allowed to do so.

35-7. All testimony shall be recorded (transcription, audiotape, videotape, or some other electronic means) and witnesses informed of such prior to testifying.

제 35 장.

증거

35-1. 적법한 연령과 지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증인의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혹은 장래 상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 피고가 증언하는 것이 허락될 수는 있으나,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단 고소인은 피고가 요구할 때 증언해야 한다. 쌍방 어느 측이든 그 증인이 자격이 없다고 간주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치리회는 그의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한다. 모든 증거에 첨부되어야 할 [제반 자료의] 신빙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치리회 소관이다.

35-2. 어떤 치리회에서도 부부가 서로 반대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35-3. 어떤 경우라도 고소 내용이 성립되려면 한 명보다 많은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증인 한 명의 증언에 추가해서 그것을 확정하는 증거가 제시되면,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5-4. 만일 쌍방 어느 측이든 반대하면, 치리회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고소건에 대한 다른 증인을 심사하는 동안 그 이후 심사 받아야 할 어느 증인도 그 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

35-5. 증인들은 증인을 제시하는 측에 의해서 먼저 심문을 받고, 다음에 반대 측에 의해서 반대 심문을 받는다; 그 후에 치리회의 어느 회원이나 쌍방 중 어느 측이 보충 심문을 할 수 있다. 의장 허락 없이는 아무 질문이나 대답도 할 수 없으나, 치리회에는 호소할 수 있다. 치리회는 문제가 되는 고소 내용에 부적절하거나 경박한 질문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35-6. 증인에 대한 서약 혹은 확언은 의장이 다음과 같은 또는 비슷한 말로 시행해야 한다:

귀하는, 귀하가 증인으로 부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대심판자에게 대답할 때와 같이, 귀하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사실, 가감 없는 사실, 오직 사실만을 언명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까?

그러나, 만일 어느 때든, 치리회 앞에 나타난 증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다른 형태의 서약이나 확언을 선호하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35-7. 모든 증언은 (문서화, 녹음, 녹화, 혹 다른 전산 수단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증인들이 증언하기 전에 그런 기록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런 기록은 소송 기록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서면

Such recording becomes part of the Record of the Case. However, in order to be referenced in written or oral briefs, such recording must be transcribed and the transcription authenticated by the trial court. The court of final appeal may assess the cost of transcription equitably among the parties.

35-8. The records of a court or any part of them, whether original or transcribed, if regularly authenticated by the moderator and clerk, or by either of them, shall be deemed good and sufficient evidence in every other court.

35-9. In like manner, testimony taken by one court and regularly certified shall be received by every other court as no less valid than if it had been taken by itself.

35-10. When it is not convenient for a court to have the whole or perhaps any part of the testimony in any particular case taken in its presence, a commission shall be appointed, or coordinate court requested, to take the testimony in question, which shall be considered as if taken in the presence of the court.

Due notice of the commission or coordinate court, and of the time and place of its meeting, shall be given to the opposite party, that he may have an opportunity of attending. If the accused shall desire on his part to take testimony at a distance for his own exculpation, he shall give notice to the court of the time and place at which it shall be taken, in order that a commission or coordinate court, as in the former case, may be appointed for the purpose. Testimony may be taken on written interrogatories by filing the same with the clerk of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case, and giving two weeks' notice thereof to the adverse party, during which time he may file cross-interrogatories, if he desire it. Testimony shall then be taken by the commission or coordinate court in answer to the direct and cross-interrogatories, if such are filed, and no notice need be given of the time and place of taking the testimony.

35-11. A member of the court who has given testimony in a case becomes disqualified for sitting as a judge if either party makes objection.

35-12. An officer or private member of the church refusing to testify may be censured for contumacy.

35-13. If after trial before any court new testimony be discovered, which the accused believes important, it shall be his right to ask a new trial and it shall be within the power of the court to grant his request.

35-14. If, in the prosecution of an appeal, new evidence be offered which, in the judgment of the appellate court, has an important bearing on the case, it shall be competent for that court to refer the case to the lower court for a new trial; or, with the consent of parties, to admit the evidence and proceed with the case.

이나 구두 증언에 참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록이 필사본화 되어야 하고 필사본화 된 것은 재판 중인 치리회에 의해서 사실 증명되어야 한다. 최종 상소 치리회는 당사자들 간에 균등하게 필사본에 사용된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35-8. 원본이 되었든 필사본이 되었든, 치리회의 기록이나 그 기록의 일부가, 만일 의장과 서기, 혹은 그 중 한 사람에 의해서 정식으로 인증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치리회에서도 합당하고 충분한 증거로 간주되어야 한다.

35-9. 마찬가지로, 어느 한 치리회에서 채택되어 정식으로 보증된 증언은, 모든 다른 치리회에 의해서도 그 치리회가 직접 채택한 것과 같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5-10. 어떤 특정한 소송건에 있어서 치리회가 치리회 앞에서 증언의 일체 혹은 그 어느 일부를 청문하는 것이 불편할 때, [전권] 위원회를 임명하거나 또는 대등한 치리회에 요청하여 문제가 되는 증언을 청문하게 하고, 그 증언은 치리회의 앞에서 청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전권 위원회 혹은 대등한 치리회에 대해서, 또 모임의 시일과 장소에 대해서 [소송] 반대측에 마땅히 통보하여,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만일 피고가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기 위해 멀리서 청문을 받고자 하면, 피고는 청문 받을 시일과 장소를 치리회에 통보하여, 앞서의 경우와 같이 그 목적으로 [전권] 위원회나 대등한 치리회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면 질의에 근거한 증언은 소송건 관할 치리회의 서기에게 동일한 서류를 접수 시켜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두 주간 여유를 둔 통보를 반대측에 보내어, 반대측이 원하면, 그 기간 동안 반대 [신문] 질의서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 후 [전권] 위원회 혹은 대등한 치리회는 직접 질의 혹은 접수된 것이 있을 경우 반대 [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증언을 받을 것이요, 그 시일과 장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35-11. 소송건에 관해서 증언한 치리회 회원은 쌍방 어느 한측이라도 반대하면 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35-12. 교회의 직원이나 수찬 교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

35-13. 만일 재판이 끝난 후 어느 치리회 앞에 피고가 중요하다고 믿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새로운 재판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피고의 권리이며, 그 요청을 허락하는 것은 치리회의 권한 내에 있다.

35-14. 만일 상소건을 기소하는 중, 상소 치리회에 소송건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상소 치리회는 소송건을 하위 치리회로 회부하여 새로운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는 쌍방의 동의로 증거를 채택하고 소송건을 진행해야 한다.

CHAPTER 36*The Infliction of Church Censures*

36-1. When any member or officer of the Church shall be found guilty of an offense the court shall proceed with all tenderness and shall deal with its offending brother in the spirit of meekness, the members considering themselves lest they also be tempted.

36-2. Church censures and the modes of administering them should be suited to the nature of the offenses. For private offenses, censure should be administered in the presence of the court alone, or in private by one or more members of the court. In the case of public offenses, the degree of censure and mode of administering it shall be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act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below which deal with particular censures.

36-3. The Censure of Admonition should be administered in private by one or more members of the court if the offense is known only to a few and is not aggravated in character. If the offense is public the Admonition should be administered by the moderator in presence of the court and may also be announced in public should the court deem it expedient.

36-4. Definite suspension from office should be administered in the presence of the court alone or in open session of the court, as it may deem best, and public announcement thereof shall be at the court's discretion.

36-5. Indefinite suspension from office or the Sacraments should be administered after the manner prescribed for definite suspension, but with added solemnity, that the indefinite suspension may be the means of impressing the mind of the delinquent with a proper sense of his danger. Indefinite suspension should also be administered under the blessing of God of leading him to repentance. When the court has resolved to pass this sentence, the moderator shall address the offending brother to the following purpose:

제 36 장.

시벌

36-1. 교인이나 교회 직원의 범과가 유죄로 드러나면 치리회는 지극히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요,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한 형제를 대하며, 치리회원 자신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36-2. 교회의 책벌과 시행 방법은 범죄의 성질에 적합해야 한다. 사적 범죄에 대한 시벌은 치리회 앞에서만 시행되거나,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치리회원들에 의해서 사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공적 범죄의 경우, 책벌의 정도와 시행 방법은 치리회의 재량권 내에서, 특정 책벌을 다루고 있는 아래 문안과 일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6-3. 견책은, 성격상 범죄가 중하지 않고 오직 소수에게만 알려진 것이라면, 한 사람이나 그 이상의 치리회 회원에 의해서 사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만일 범죄가 공개됐으면, 견책은 의장이 치리회 앞에서 시행해야 하고 치리회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공적으로 공포될 수 있다.

36-4. 유기 정직은 치리회의 면전에서만 혹은 치리회의 공개회의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공적 공포 여부는 치리회 재량에 맡긴다.

36-5. 직분이나 성례로부터의 무기 정직은 유기 정직 시벌을 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보다 엄숙히 행하여, 범죄자의 의식 속에 적절한 위기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 또 무기 정직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범죄자가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치리회가 이 책벌을 내리기로 결정한 때는, 의장이 다음과 같은 말로 범죄한 형제에게 선언해야 한다:

Whereas, you, _____ (here describe the person as a teaching elder, ruling elder, deacon, or private member of the church) are convicted by sufficient proof (or are guilty by your own confession) of the sin of _____ (here insert the offense), we the _____ Presbytery (or Church Session)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do now declare you suspended from the Sacraments of the Church (and from the exercise of your office), until you give satisfactory evidence of repentance.

To this shall be added such advice or admonition as may be judged necessary, and the whole shall be concluded with prayer to almighty God that He would follow this act of discipline with His blessing.

36-6. Excommunication is to be administered according to one or other of the two modes laid down for indefinite suspension, or to be inflicted in public as the court may decide. In administering this censure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shall make a statement of the several steps which have been taken with respect to the offending brother, and of the decision to cut him off from the communion of the church. He shall then show from Matthew 18:15-18 and 1 Corinthians 5:1-5 the authority of the church to cast out unworthy members, and shall explain the nature, use and consequences of this censure. He shall then administer the censure in the words following:

Whereas, _____, a member of this church has been by sufficient proof convicted of the sin of _____, and after much admonition and prayer, obstinately refuses to hear the Church, and has manifested no evidence of repentance: Therefore,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we, the Session of _____ church do pronounce him to be excluded from the Sacraments, and cut off from the fellowship of the Church.

Prayer shall then be made that by God's blessing this solemn action of the court may issue in the repentance and restoration of the offender, and in the establishment of all true believers.

_____ 씨는 (여기에서 피고가 강도장로, 치리장로, 집사 혹은 평교인인지를 밝힌다)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또는 죄에 대한 자백에 의하여) _____ 죄 (죄명을 명시한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_____ 노회(또는 교회 당회)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귀하가 만족할 만한 회개의 증거를 보일 때까지, 수찬정지(와 직무로부터의 정직)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언이나 권면이 첨부 될 수 있고, 전체 [시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권징 위에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함으로 마친다.

36-6. 출교는, 무기정직을 시벌 하는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든지, 또는 치리회의 결의를 따라 공개적으로 시벌되어야 한다. 이 책벌을 시행할 때 당회의 의장은 범죄한 형제를 존중하여 취한 여러 단계의 [조치들과], 교회의 교제로부터 단절시키기로 한 결정을 설명해야 한다. 의장은 이어서 마태복음 18:15-18 과 고린도전서 5:1-5 에 근거하여 합당치 못한 교인을 출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음을 밝히고, 이 책벌의 성격과 용도와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그 후 의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책벌을 시행한다:

본 교회의 교인이었던 _____ 씨는 충분한 증거로 _____ 죄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귀하는 많은 권고와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순종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회개의 증거를 보이지 않았습다. 이에 본 _____ 교회의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귀하의 수찬을 금지하며 교회로부터의 교제에서 단절된 것을 공포합니다.

이어서, 치리회의 이 엄숙한 조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범죄자의 회개와 회복을 이루게 하며, 모든 진실된 신자들을 굳게 세우도록 기도해야 한다.

36-7. The censure of deposition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moderator in the words following:

Whereas, _____, a teaching elder of this Presbytery (or ruling elder or deacon of this church), has been proved, by sufficient evidence to be guilty of the sin of _____, we, the _____ Presbytery (or Church Session), do adjudge him disqualified for the office of the Christian ministry (or ruling eldership, or deaconship), and therefore we do hereby,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depose from the office of a teaching elder (or ruling elder or deacon) the said _____, and do prohibit him from exercising any of the functions thereof.

If the censure includes suspension or excommunication, the moderator shall proceed to say:

We do moreover, by the same authority, suspend the said _____ from the Sacraments of the Church, until he shall exhibit satisfactory evidence of sincere repentance,

or

We do moreover, by the same authority, exclude the said _____ from the Sacraments, and cut him off from the fellowship of the Church.

The sentence of deposition ought to be inflicted with solemnities similar to those already prescribed in the case of excommunication.

36-7. 면직 시별은 의장이 다음과 같은 말로 시행한다:

본 노회의 강도장로인 (혹은 본 교회의 치리장로 혹은 집사인) _____씨는 충분한 증거로 _____죄에 대하여 유죄가 증명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_____노회(또는 교회 당회)는 _____씨를 성역의 직분(혹은 치리장로, 집사)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치리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미 언급된 _____씨를 강도장로(혹은 치리장로, 집사)의 직에서 면직하며, 귀하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수행을 금지합니다.

만일 이 책벌이 정직이나 출교를 포함하면, 의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첨부해야 한다:

추가로 본 치리회는 동일한 권위로 이미 언급된 _____씨가 만족할 만하고 신실한 회개의 증거를 보일 때까지 교회의 수찬을 금지합니다,

혹은

추가로 본 치리회는 동일한 권위로 이미 언급된 _____씨의 수찬을 금지하며, 교회의 교제에서 귀하를 배제합니다.

면직 신고는 출교의 경우를 위해 이미 규정된 것과 유사하게 엄숙히 시별되어야 한다.

CHAPTER 37*The Removal of Censure*

37-1. A person who has been definitely suspended from office shall be restored by the court at the end of the term of his suspension by declaring words of the following import to him:

Whereas, you _____ have been debarred from the office of teaching elder, (or ruling elder, or deacon), but have now fulfilled the time of your censure, we, of the _____ Presbytery (or Church Session) do hereby,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absolve you from the sentence of suspension and do restore you to the exercise of your said office, and all the functions thereof.

37-2. After any person has been indefinitely suspended from the Sacraments, it is proper that the rulers of the church should frequently converse with him as well as pray with him and for him, that it would please God to give him repentance.

37-3. When the court shall be satisfied as to the reality of the repentance of an indefinitely suspended offender, he shall be admitted to profess his repentance, either in the presence of the court alone or publicly. At this time the offender shall be restored to the Sacraments of the Church, and/or to his office, if such shall be the judgment of the court. The restoration shall be declared to the penitent in the words of the following import:

Whereas, you _____, have been debarred from the Sacraments of the Church (and/or from the office of teaching elder, or ruling elder, or deacon), but have now manifested such repentance as satisfies the church, we, the _____ Church Session (or Presbytery), do hereby,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absolve you from the said sentence of suspension from the Sacraments (and/or your office) and do restore you to the full communion of the Church (and/or the exercise of your said office, and all the functions thereof).

After which there shall be prayer and thanksgiving.

제 37 장.

해벌

37-1. 유기 정직에 처해졌던 사람은 그 정직 기간이 끝날 때 치리회가 다음과 같은 말로 해벌한다:

_____ 씨는 강도장로(혹은 치리장로 또는 집사)의 직분에서 제외되어 왔었으나, 이제 그 책벌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본 _____ 노회(혹은 교회의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정직 선고에서 귀하를 사면합니다. 이에 이전의 직분과 직분의 모든 기능을 행사하도록 귀하의 복직을 공포합니다.

37-2. 어떤 사람이 무기 수찬 정지를 받았을 때, 교회의 치리자들이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주 그를 만나 대화하며,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다.

37-3. 무기 정직 당한 자의 회개한 진상에 대해서 치리회가 만족하면, 치리회 앞에서만 혹은 공개적으로, 그가 자신이 회개한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 때 치리회의 판단에 따라, 그에게 교회의 수찬과/또는 그의 직분을 회복 시켜 주어야 한다. 회개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로 회복을 선언한다:

_____ 씨는 교회의 수찬(과/또는 강도장로, 치리장로, 또는 집사의 직분)에서 제외되어 왔었으나, 이제 교회를 만족케 할만한 회개를 나타내 보였으므로, _____ 교회의 당회(혹은 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미 선고된 수찬정지(와/또는 정직)에서 귀하를 사면합니다. 이에 귀하가 교회의 모든 교제(와/ 또는 귀하에게 관련된 직분과, 직분의 모든 기능의 행사)에 복직됨을 공포합니다.

이 후에 기도와 감사를 드린다.

37-4. When an excommunicated person shall be so affected with his state as to be brought to repentance, and to desire to be readmitted to the communion of the church, the Session, having obtained sufficient evidence of his sincere penitence, shall proceed to restore him. This may be done in the presence of the court, or of the congregation as seems best to the Session.

On the day appointed for his restoration, the minister shall call upon the excommunicated person and propose to him in the presence of the court or the congregation the following questions:

1. **Do you, from a deep sense of your great wickedness, freely confess your sins in thus rebelling against God, and in refusing to hear His Church; and do you acknowledge that you have been in justice and mercy cut off from the communion of the Church?**

Answer, **I do.**

2. **Do you now voluntarily profess your sincere repentance and contrition for your sin and obstinacy; and do you humbly ask the forgiveness of God and His Church?**

Answer, **I do.**

3. **Do you sincerely promise, through divine grace, to live in all humbleness of mind and circumspection; and to endeavor to adorn by a holy life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ur?**

Answer, **I do.**

37-4. 출교 당한 사람이 자기의 [범죄] 상태를 깨달아 회개하며, 다시 교회의 교제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면, 당회는, 그의 신실한 회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획득한 후, 그의 복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일은 당회의 재량에 의해, 치리회 앞에서 하거나 교회의 회중 앞에서 한다.

그의 복원을 위하여 지정된 날에, 목사는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회중 앞에서 출교되었던 사람을 불러 세우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귀하, 귀하의 엄청난 사악함을 깊이 깨닫고, [그런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죄를 숨김없이 고백합니까? 또 귀하는 [교회가] 귀하를 공의와 자비로 교회의 [모든] 교제로부터 배제시켜 온 것을 인정합니까?

대답: 예.

2. 귀하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하의 죄와 완고함을 신실하게 회개하고 뉘우칩니까? 또 귀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용서를 간구합니까?

대답: 예.

3. 귀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겸손과 신중함으로 살고, 또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 우리 구주의 교훈을 빛내기 위해 힘쓸 것을 신실하게 약속합니까?

대답: 예.

Here the minister shall give the penitent a suitable exhortation, encouraging and comforting him. Then he shall pronounce the sentence of restoration in the following words:

Whereas, you _____, have been shut out from the communion of the church, but now have manifested such repentance as satisfies the Church;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His authority, we, the Session of this church, do declare you absolved from the sentence of excommunication formerly pronounced against you, and we do restore you to the communion of the Church, that you may be a partaker of all the benefits of the Lord Jesus to your eternal salvation.

The whole shall be concluded with prayer and thanksgiving.

37-5. The restoration of a deposed officer, after public confession has been made in a manner similar to that prescribed in the case of the removal of censure from an excommunicated person, shall be announced to him by the Moderator in the following form, namely:

Whereas, you, _____, formerly a teaching elder of this Presbytery (or a ruling elder or deacon of this church), have been deposed from your office, but have now manifested such repentance as satisfies the Church;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His authority, we, the _____ Presbytery (or Church Session) do declare you absolved from the said sentence of deposition formerly pronounced against you; and we do furthermore restore you to your said office, and to the exercise of all the functions thereof, whenever you may be orderly called thereto.

After this there shall be prayer and thanksgiving, and the members of the court shall extend to him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37-6. When a ruling elder or deacon has been absolved from the censure of deposition, he cannot be allowed to resume the exercise of his office in the church without re-election by the people. The removal of deposition requires a three-fourths (3/4) vote of the court inflicting the censure, or a three-fourths (3/4) vote of the court to which the majority of the original court delegates that authority. ●●●

이 때 목사는 통회한 사람에게 적절한 권면의 말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한다. 그 후에 다음과 같은 말로 복원을 선포한다:

_____씨는 그 동안 교회의 [모든] 교제로부터 배제되어 왔었으나, 이제 교회를 만족시킬 만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었으므로, 본 교회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전에 귀하에게 선포했던 출교 선고로부터 귀하가 사면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에 귀하가 귀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주 예수의 모든 은총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의 [모든] 교제에 복원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순서를] 기도와 감사로 종료한다.

37-5. 면직된 자의 복원은, 출교된 자의 해벌을 위하여 규정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공개적인 고백이 있는 후, 의장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복원을 선포한다:

이전에 본 노회의 강도장로(혹은 본 교회의 치리장로, 또는 집사)였던 귀하 _____씨는 귀하의 직분에서 면직되었었지만, 이제 교회를 만족시킬 만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었으므로, 본 _____노회(혹은 교회의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전에 귀하에게 선포했던 면직 선고로부터 귀하가 사면된 것을 선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 치리회는 귀하가 언제든지 정식으로 그 직분에 청빙받으면, 관련된 직분과 직분의 모든 기능을 행사하도록 귀하를 복직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이 후에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치리회 회원들은 그와 교제의 악수를 나눈다.

37-6. 치리장로나 집사가 면직에서 해벌되었을 때, 교회에서 재선되지 않으면 전직 시무를 계속할 수 없다. 면직 철회는 책벌을 가한 치리회의 [찬동] 투표 사분의 삼 (3/4), 혹은 첫 치리회의 다수가 그 권한을 위탁한 치리회의 [찬동] 투표 사분의 삼 (3/4)을 요구한다.

37-7. When a person under censure shall reside at such a distance from the court by which he was sentenced as to make the continued exercise of spiritual oversight impractical (cf. *BCO* 37-2), it shall be lawful for the court, with the acquiescence of the offender and the concurrence of the receiving court, to transmit a certified copy of its proceedings to the court where the delinquent resides, which shall assume jurisdiction, take up the case, and proceed with it as though it had originated with itself.

37-8. In the restoration of a minister who is under indefinite suspension from the Sacraments, and/or his office, or has been deposed, it is the duty of the Presbytery to proceed with great caution. It should first admit him to the Sacraments, if he has been debarred from them. Afterwards it should grant him the privilege of preaching on probation for a time, so as to test the sincerity of his repentance and prospect of his usefulness. When satisfied in these respects, the Presbytery shall take steps to restore him to his office. But the case shall always be under judicial consideration until the declaration of restoration has been pronounced.

37-9. In the case of the removal of censures from, or the restoration of, a minister, jurisdiction shall be as follows:

- a. If the censure(s) does not include excommunication, the presbytery inflicting the censure(s) shall retain the authority to remove the censure(s) and, at its discretion, restore him to office. This authority is retained by the presbytery even when a divested or deposed minister is assigned, under the provisions of *BCO* 46-8, to a session.
- b. If the censure includes excommunication, the penitent may only be restored to the communion of the church through a session (*BCO* 1- 3; 6-4; 57-4; 57-5; 57-6). Once the penitent is restored, and therefore a member of a local church, the authority to remove any other censure(s) in respect to office, concurrently imposed with that of excommunication shall belong to the court originally imposing such censure(s).

37-7. 책벌 하에 있는 사람이 책벌한 치리회 [관할]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고 그 치리회가 계속하여 영적 감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실행 불가능하다고 그 사람에게 신고하면 (비교: 헌법 37-2), 치리회가, 범법자의 목인과 받아 들이는 치리회의 동의로, 재판 진행에 대한 공증된 사본을 범법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치리회에 송달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그 치리회는 관할권을 물려 받고, 동 소송건을 이관 받아, 자체 내에서 발생한 소송건 같이 [그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37-8. 무기 수찬 정지와/또는 무기 정직, 또는 면직 받은 목사의 복원 시, 노회는 극히 신중하게 [그 경과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그가 수찬 정지 시벌을 받았었으면, 노회는 먼저 그를 성찬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 후 노회는 유예 기간을 두고 설교할 특권을 허락해서, 그의 회개의 진실성과 그의 장래 효용성을 판단한다. 이런 면에서 만족하면, 노회는 그의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복원을 선언하기까지는 그 소송건은 항상 법적 고려 하에 두어야 한다.

37-9. 목사를 책벌에서부터 해벌하는 경우, 혹은 복직 시키는 경우에, 관할 [치리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ㄱ. 만일 책벌(들)이 출교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 책벌(들)을 부과한 노회가 해벌할 권리를 가지며, 재량으로, 그를 복직시킬 수 있다. 교회헌법 46-8의 규정에 의해 [목사직]을 박탈당했거나 면직된 목사에게 어떤 당회를 맡길 때에도 이 권한은 노회가 보유한다.
- ㄴ. 만일 책벌이 출교를 포함하면, 회개한 자는 당회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교제까지만 복원시켜야 한다 (교회헌법 1-3; 6-4; 57-4; 57-5; 57-6). 회개한 자가 일단 복원되면, 그것으로 한 지교회의 교인이 되나, 출교와 더불어 동시에 부과되었던 직분에 관한 다른 어떤 책벌(들)을 해벌할 권리는 최초에 그런 책벌(들)을 부과했던 치리회가 가진다.

CHAPTER 38*Cases Without Process*

38-1. When any person shall come forward and make his offense known to the court, a full statement of the facts shall be recorded and judgment rendered without process. In handling a confession of guilt, it is essential that the person intends to confess and permit the court to render judgment without process. Statements made by him in the presence of the court must not be taken as a basis of a judgment without process except by his consent. In the event a confession is intended, a full statement of the facts should be approved by the accused, and by the court, before the court proceeds to a judgment. The accused has the right of complaint against the judgment.

38-2. A minister of the Gospel against whom there are no charges, if fully satisfied in his own conscience that God has not called him to the ministry, or if he has satisfactory evidence of his inability to serve the Church with acceptance, may report these facts at a stated meeting of Presbytery. At the next stated meeting, if after full deliberation the Presbytery shall concur with him in judgment, it may divest him of his office without censure. This provision shall in like manner apply with any necessary changes to the case of ruling elders and deacons; but in all such cases the Session of the church to which the ruling elder or the deacon who seeks demission belongs shall act as the Presbytery acts in similar cases where a minister is concerned.

38-3. a. When a member or officer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shall attempt to withdraw from the communion of this branch of the visible Church by affiliating with some other branch (*BCO* 2-2), if at the time of the attempt to withdraw he is in good standing, the irregularity shall be recorded, his new membership acknowledged, and his name removed from the roll. But if at the time of the attempt to withdraw there is a record of an investigation in process (*BCO* 31-2), or there are charges (*BCO* 32-3) concerning the member or minister, the court of original jurisdiction may retain his name on the roll and conduct the case, communicating the outcome upon completion of the proceedings to that member or minister. If the court does not conduct the case, his new membership shall be acknowledged, his name removed from the roll, and, at the request of the receiving branch, the matters under investigation or the charges shall be communicated to them.

제 38 장.

재판을 하지 않는 소송건

38-1. 어떤 사람이 치리회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릴 때는 그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 죄의 자백을 다룰 때, 당사자가 [죄를] 고백하고 치리회가 [재판] 절차 없이 판결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치리회 앞에서 자백한 그의 진술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재판] 절차 없이 판결의 근거로 채택될 수 없다. 자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치리회가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 하기 전에, 사실 일체의 진술이 피고와 치리회에 의해서 승인되어야만 한다. 피고는 판결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있다.

38-2. 고발당한 적이 없는 목사가, 하나님을 목회사역으로 부르시지 않았다고 양심으로부터 확신하거나, 또는 교회의 청빙을 받아도 교회를 섬길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전혀 없음을 자증하게 되면, 그는 이 사실들을 정기노회에서 보고할 수 있다. 차기 노회에서, 노회가 이 사실을 충분히 심의한 후 그의 판단에 동의하면, 책벌없이 그의 직분을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치리장로와 집사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사직을 원하는 치리장로나 집사가 소속해 있는 교회의 당회는 노회가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목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것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38-3. 1. 미국장로교 어느 교인 혹은 직분자가 어떤 다른 교단에 가입함으로 가시적인 교회인 본 교회와 교제를 중단하려고 할 경우 (*교회헌법* 2-2), 중단하려고 하는 그 때, 만일 그가 무흠 교인이면 이 변칙적 행동을 기록에 남기고, 그가 [타 교회의] 새 회원 됨은 승인해 주고, 그의 이름은 명단에서 삭제한다. 그러나 중단하려고 하는 그 때, [재판] 진행 중인 조사 기록이 있거나(*교회헌법* 31-2), 교인 혹은 목사에 관한 죄목이 있으면 (*교회헌법* 32-3), 최초의 관할권이 있는 치리회가 명부에 그의 이름을 계류 시키고 소송건을 처리하여, [재판] 진행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교인 혹은 목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일 치리회가 소송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가 [타 교회의] 새 회원 됨은 승인되고, 그의 이름은 명단에서 삭제되며, 또, 영입하는 치리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 중에 있는 일들이나 죄목들을 그들에게 알려 줄 수 있다.

b. When a member or minist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shall attempt to withdraw from the communion of this branch of the visible Church by affiliating with a body judged by the court of original jurisdiction as failing to maintain the Word and Sacraments in their fundamental integrity (*BCO* 2-2), that member or minister shall be warned of his danger, and if he persists, his name shall be erased from the roll, thereby, so far as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s concerned, he is deemed no longer to be a member in any body which rightly maintains the Word and Sacraments in their fundamental integrity, and if an officer, thereby withdrawing from him all authority to exercise his office as derived from this Church. When so acting the court shall make full record of the matter and shall notify the offender of its action.

38-4. When a member of a particular church has willfully neglected the church for a period of one year, or has made it known that he has no intention of fulfilling the church vows, then the Session, continuing to exercise pastoral discipline (*BCO* 27-1a and 27-4) in the spirit of Galatians 6:1, shall remind the member, if possible both in person and in writing, of the declarations and promises by which he entered into a solemn covenant with God and His Church (*BCO* 57-5, nos. 3-5), and warn him that, if he persists, his name shall be erased from the roll.

If after diligently pursuing such pastoral discipline, and after further inquiry and due delay, the Session is of the judgment that the member will not fulfill his membership obligations in this or any other branch of the Visible Church (cf. *BCO* 2-2), then the Session shall erase his name from the roll. This erasure is an act of pastoral discipline (*BCO* 27-1a) without process. The Session shall notify the person, if possible, whose name has been removed.

Notwithstanding the above, if a member thus warned makes a written request for process (i.e., *BCO* Chapters 31-33, 35-36), the Session shall grant such a request. Further, if the Session determines that any offense of such a member is of the nature that process is necessary, the Session may institute such process.

나. 미국장로교 어느 교인 혹은 직분자가 최초 관할권이 있는 치리회에 의해서 말씀과 성례를 근본적으로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가시적인 교회인 본 교회와의 [모든] 교제를 중단하려고 할 경우(교회헌법 2-2), 그 교인 혹은 목사는 그가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해당 치리회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가 계속 고집하면, 그의 이름은 명부로부터 제명되고, 그로 말미암아, 미국장로교에 관한, 그는 더 이상 정당하게 말씀과 성례를 근본적으로 온전히 시행하고 있는 어떤 단체의 회원도 될 수 없다고 간주한다. 또 만일 그가 직분자이면, 본 교회가 그에게 부여한 직분 행사의 모든 권위를 그로부터 박탈한다. 그렇게 조치했을 때 치리회는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야 하고 범법자에게 치리회의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38-4. 한 조직 교회의 교인이 고의로 그 교회를 일 년간 소홀히 하였거나, 혹은 그 교회와의 서약을 이행할 의도가 없음을 알려 왔을 때, 당회는, 갈라디아서 6 장 1 절의 정신에 의거한 목회권징(교회헌법 27-1 ㄱ과 27-4)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가능하면 면담과 서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엄숙한 언약을 맺었을 때의 선언과 서약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교회헌법 57-5, 3-5 번). 그러나, 그가 [그의 입장을] 고집하면, 그의 이름이 교인 명부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목회 권징을 근면하게 추구하며, 더 깊은 조사와 정당한 기간 동안의 기다림이 있는 후에도, 당회가 이 교인은 가시적 교회인 본 교회나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참조: 교회헌법 2-2), 당회는 그의 이름을 교인 명부에서 삭제한다. 이 삭제 조치는 [재판] 절차 없는 목회 권징(교회헌법 27-1 ㄱ)이다. 그 당회는 가능하면 이름이 삭제된 자에게 이를 통보 한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만일 경고 받은 교인이 재판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즉 교회헌법 31-33, 35-36 장), 당회는 그런 요청을 허락해야 한다. 그 위에, 만일 당회가 그런 교인의 어떤 범과가 성격상 [재판]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결정하면, 당회는 그런 [재판] 절차를 설정해야 한다.

CHAPTER 39*Modes in Which the Proceedings of Lower Courts Come Under the Supervision of Higher Courts*

39-1. The acts and decisions of a lower court are brought under the supervision of a higher court in one or another of the following modes:

1. Review and Control;
2. Reference;
3. Appeal; and
4. Complaint.

39-2. When the proceedings of a lower court are before a higher court, themembers of the lower court shall not lose the right to sit, deliberate and vote in the higher court, except in cases of appeal or complaint.

39-3. While affirming that the Scripture is “the supreme judge by which all controversies of religion are to be determined” (*WCF* 1.10), and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s “subordinate to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 inerrant Word of God” (*BCO* Preface, III), and while affirming also that this Constitution is fallible (*WCF* 31.3),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ffirms that this subordinate and fallible Constitution has been “adopted by the church” (*BCO* Preface, III) “as standard expositions of the teachings of Scripture in relation to both faith and practice” (*BCO* 29-1) and as setting forth a form of government and discipline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biblical polity” (*BCO* 21-5.3). To insure that this Constitution is not amended, violated or disregarded in judicial process, any review of the judicial proceedings of a lower court by a higher court shall be by guid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1. A higher court, reviewing a lower court, should limit itself to the issues raised by the parties to the case in the original (lower) court. Further, the higher court should resolve such issues by applying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as previously establish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process.

제 39 장.

하위 치리회의 재판절차가 상회의 감독을 받게 되는 형태

39-1. 하위 치리회의 조치와 결정이 상회의 감독을 받게 되는 형태는 다음 형태들 중 하나이다:

1. 검토와 교정;
2. 문의;
3. 상소;
4. 소원.

39-2. 하위 치리회의 재판 기록이 상회 앞에서 다루어질 때, 하위 치리회의 회원은 상회에 출석하여 심의하며 투표할 권리를 가지나, 상소나 소원의 경우는 예외이다.

39-3. 성경이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는 최고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0)과 미국장로교의 헌법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교회헌법* 서문 III) 확인한다. 반면 또한 이 헌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3). 그러나 미국장로교는 성경의 지배를 받으며 오류 가능성이 있는 헌법이 “신앙과 행위 모두에 관계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표준 해설”로서 (*교회헌법* 29-1) 또 “성경적 정치 체계의 일반적 원리와 일치하는” 치리와 권징의 형태를 제시한 것으로써 (*교회헌법* 21-5.3)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어 왔음을 (*교회헌법* 서문 III) 확인한다. 이 헌법이 재판 진행 중 개정되거나, 위반되거나, 혹은 무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상회에 의한 하위 치리회의 재판 절차에 대한 검토는 어느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 하위 치리회를 검토하는 상회는, 처음 치리회(하위)에서 소송건에 관하여 쌍방이 제기한 사건들만 다루도록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 그 위에, 상회는 그런 사건들을 헌법적 재판 절차를 통하여 성립된 이전의 [판례]에 따라 교회의 헌법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2. A higher court should ordinarily exhibit great deference to a lower court regarding those factual matters which the lower court is more competent to determine, because of its proximity to the events in question, and because of its personal knowledge and observations of the parties and witnesses involved. Therefore, a higher court should not reverse a factual finding of a lower court, unless there is clear error on the part of the lower court.
3. A higher court should ordinarily exhibit great deference to a lower court regarding those matters of discretion and judgment which can only be addressed by a court with familiar acquaintance of the events and parties. Such matters of discretion and judgment would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moral character of candidates for sacred office, the appropriate censure to impose after a disciplinary trial, or judgment about the comparative credibility of conflicting witnesses. Therefore, a higher court should not reverse such a judgment by a lower court, unless there is clear error on the part of the lower court.
4. The higher court does have the power and obligation of judicial review, which cannot be satisfied by always deferring to the findings of a lower court. Therefore, a higher court should not consider itself obliged to exhibit the same deference to a lower court when the issues being reviewed involv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Regarding such issues, the higher court has the duty and authority to interpret and apply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according to its best abilities and understanding, regardless of the opinion of the lower court.

2. 상회는 하위 치리회가 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진상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위 치리회를 크게 존중해야 한다; 이는 하위 치리회가 심의되고 있는 사건들에 근접하여 있기 때문이고, 또 하위 치리회는 쌍방 당사자들과 개입되어 있는 증인들에 대하여 일차적인 지식과 관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위 치리회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상회는 하위 치리회의 진상 조사 결과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
3. 상회는 사건들에 익숙하고 쌍방 당사자들과 친밀한 치리회만이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들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위 치리회를 크게 존중해야 한다; 그런 분별력과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성직 후보자들의 도덕적 인격, 권징을 위한 재판 이후 가해야 할 적절한 책벌, 혹은 상충하는 증인들의 비교되는 신뢰도에 대한 판단 등이다. 그러므로, 하위 치리회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상회는 하위 치리회의 판단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4. 상회는 재판기록 검토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하위 치리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회는, 검토된 사건들이 교회 헌법의 해석과 연관 될 때는, 하위 치리회에 동일한 존경심을 나타내 보일 의무는 없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상회는 하위 치리회의 의견에 관계없이, 상회 최선의 능력과 이해를 따라 교회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의무와 권위를 가진다.

CHAPTER 40*General Review and Control*

40-1. It is the right and duty of every court above the Session to review, at least once a year, the records of the court next below, and if any lower court fails to present its records for this purpose, the higher court may require them to be produced immediately, or at any time fixed by this higher court.

40-2. In reviewing records of a lower court the higher court is to examine:

1. Whether the proceedings have been correctly recorded;
2. Whether they have been regular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3. Whether they have been wise, equitable and suited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Church;
4. Whether the lawful injunctions of the higher court have been obeyed.

40-3. It is ordinarily sufficient for the higher court merely to record in its own minutes and in the records reviewed whether it approves, disapproves or corrects the records in any particular; but should any serious irregularity be discovered the higher court may require its review and correction by the lower. Proceedings in judicial cases, however, shall not be dealt with under review and control when notice of appeal or complaint has been given the lower court; and no judgment of a lower court in a judicial case shall be reversed except by appeal or complaint.

40-4. Courts may sometimes entirely neglect to perform their duty, by which neglect heretical opinions or corrupt practices may be allowed to gain ground; or offenders of a very gross character may be suffered to escape; or some circumstances in their proceedings of very great irregularity may not be distinctly recorded by them. In any of these cases their records will by no means exhibit to the higher court a full view of their proceedings. If, therefore, the next higher court be well advised that any such neglect or irregularity has occurred on the part of the lower court, it is incumbent on it to take cognizance of the same, and to examine, deliberate and judge in the whole matter as completely as if it had been recorded, and thus brought up by review of its records.

제 40 장.

일반적 검토와 통제

40-1. 당회 이상의 각 치리회의 권리와 의무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직계 하위 치리회록을 검토하는 것이고, 만일 어느 하위 치리회가 이 목적으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회는 즉시로, 또는 이 상회가 지정한 어느 때에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0-2. 하위 치리회의 회의록을 검토할 시 상회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재판 절차가 바르게 기록되었는가?
2. 재판 절차가 규칙적이며 헌법과 부합하였는가?
3. 재판 절차가 교회의 유익을 증진하도록 현명하며, 공평하며 적합하였는가?
4. 상회의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가?

40-3. 일반적으로 상회는 간단히 자체 회의록과 검토된 회의록에, 승인한다든지 승인할 수 없다든지 혹 특별한 경우 회의록을 정정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조인]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심각한 변칙이 발견되면 상회는 하위 치리회로 하여금 재검토하고 교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나 소원이 하위 치리회에 제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을 때, 재판 소송건의 재판 기록은 [일반적인] 검토와 통제 하에서는 다를 수 없다; 상소나 소원에 의하지 않고는 법적 소송건에 관한 하위 치리회의 판결을 번복하지 못한다.

40-4. 치리회가 간혹 그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이단적인 의견이나 부패한 행위가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 또는, 심히 야비한 범죄자들이 책벌을 면할 수도 있다; 또는, 재판 진행 중에 있는 매우 심각한 변칙의 일부 상황들이 명백히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치리회의 기록은 결코 하회의 모든 재판 진행을 상회에 온전히 보여줄 수 없다. 그러므로 만일 그러한 소홀함이나 변칙이 하위 치리회에서 일어났다고 직계 상회에 조언이 들어오면, 상회는 그 소홀함이나 변칙을 인식하고, 상회가 기록하고 자체 기록을 검토해서 제기하듯 완전하게 [하회의] 전체 사건을 조회, 심의,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40-5. When any court having appellate jurisdiction shall receive a credible report with respect to the court next below of any important delinquency or grossly unconstitutional proceedings of such court, the first step shall be to cite the court alleged to have offended to appear before the court having appellate jurisdiction, or its commission, by representative or in writing, at a specified time and place, and to show what the lower court has done or failed to do in the case in question.

The court thus issuing the citation may reverse or redress the proceedings of the court below in other than judicial cases; or it may censure the delinquent court; or it may remit the whole matter to the delinquent court with an injunction to take it up and dispose of it in a constitutional manner; or it may stay all further proceedings in the case; as circumstances may require.

40-6. In process against a lower court, the trial shall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rules provided for process against individuals, so far as they may be applicable.

40-5. 상소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치리회가, 직계 하위 치리회의 어떤 중요한 범과나 극심하게 비헌법적인 재판 절차에 관하여 믿을 만한 보고서를 접수 했을 때, 첫 단계는, 대표를 보내거나 서면으로, 범과 했다고 주장되는 치리회가 상소 관할권을 가진 치리회, 혹은 그 전권위원회 앞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보내고, 문제가 되는 소송건에 관하여 하위 치리회가 해 온 것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환장을 발송한 치리회는, 상황에 따라, 재판 소송건이 아닌 경우 하위 치리회의 재판 진행을 번복하거나 교정할 수 있다; 또는 범죄한 치리회를 책벌할 수 있다; 또는 전체 소송건을 범죄한 치리회에 회송하여 소송건을 헌법적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는 소송건의 모든 차후 재판 진행을 그대로 둘 수도 있다.

40-6. 하위 치리회를 고소할 때에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에 대한 고소 규례를 따라 재판을 진행시킨다.

CHAPTER 41*References*

41-1. A reference is a written representation and application made by a lower court to a higher for advice or other action on a matter pending before the lower court, and is ordinarily to be made to the next higher court.

41-2. Among proper subjects for reference are matters that are new, delicate or difficult; or on which the members of the lower court are very seriously divided; or which relate to questions involving the Constitution and legal procedures respecting which the lower court feels the need of guidance.

41-3. In making a reference the lower court may ask for advice only, or for final disposition of the matter referred; and in particular it may refer a judicial case with request for its trial and decision by the higher court.

41-4. A reference may be presented to the higher court by one or more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lower court for this purpose. It should be accompanied with so much of the record as shall be necessary for proper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f the matter referred.

41-5. Although references are sometimes proper, in general it is better that every court should discharge the duty assigned it under the law of the Church.

A higher court is not required to accede to the request of the lower, but it should ordinarily give advice when so requested.

41-6. When a court makes a reference, it ought to have all the testimony and other documents duly prepared, produced and in perfect readiness, so that the higher court may be able to fully consider and handle the case with as little difficulty or delay as possible.

제 41 장.

문의

41-1. 문의는 하위 치리회 앞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 조언이나 다른 조치의 [협조를] 받고자 하위 치리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청원한 것으로, 통상 직계 상회 앞으로 보내진다.

41-2. 문의에 적합한 주제는 새롭거나, 민감하거나 어려운 사항들이다; 또는 하위 치리회원들이 매우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또는 헌법과 법적 절차를 포함하는 질의들과 관계 있는 것으로 하위 치리회가 지도 받을 필요를 느끼는 사항이다.

41-3. 문의를 할 때, 하위 치리회는 조언만 구하거나, 문의된 사안에 대한 최종 처분을 구할 수 있다; 특별히 하위 치리회는 상회에 의한 재판과 판결 요청과 함께 재판 소송건을 위탁할 수 있다.

41-4. 문의는 이 목적으로 하위 치리회가 임명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를 세워 상회에 제출할 수 있다. 문의는 문의된 사항의 적절한 이해와 배려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41-5. 문의가 때로는 적절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각 치리회가 교회 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상회는 하위 치리회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조언을 위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조언해 주어야 한다.

41-6. 어느 치리회가 문의를 제출할 때, 동 치리회는 마땅히 모든 증인과 다른 문서를 정식으로 준비하고 보유하며 완전히 구비함으로써, 상회가 가능한 한 어려움과 지체함 없이 소송건을 충분히 심의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HAPTER 42*Appeals*

42-1. An appeal is the transfer to a higher court of a judicial case on which judgment has been rendered in a lower court, and is allowable only to the party against whom the decision has been rendered. The parties shall be known as the appellant and appellee. An appeal cannot be made to any court other than the next higher, except with its consent.

42-2. Only those who have submitted to a regular trial are entitled to an appeal.

42-3. The grounds of appeal are such as the following: any irregularity in the proceedings of the lower court; refusal of reasonable indulgence to a party on trial; receiving improper or declining to receive proper evidence; hurrying to a decision before all the testimony is taken; manifestation of prejudice in the case; and mistake or injustice in the judgment and censure.

42-4. Notice of appeal may be given the court before its adjournment. Written notice of appeal, with supporting reasons, shall be filed by the appellant with both the clerk of the lower court and the clerk of the higher court, within thirty (30) days of notification of the last court's decision. Notific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occurred on the day of mailing (if certified, registered or express mail of a national postal service or any private service where verifying receipt is utilized), the day of hand delivery, or the day of confirmed receipt in the case of e-mail or facsimile. Furthermore,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ulfilled if a party cannot be located after diligent inquiry or if a party refuses to accept delivery. No attempt should be made to circularize the courts to which appeal is being made by either party before the case is heard.

42-5.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lerk of the lower court to file with the clerk of the higher court, not more tha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notice of appeal, a copy of all proceeding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including the notice of appeal and reasons therefor, the response of the lower court, the evidence, and any papers bearing on the case, which together shall be known as "the Record of the Case", and the higher court shall not admit or consider anything not found in this "Recor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case. Should new evidence come to light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rom which the appeal was made, unless both parties consent to admit the new evidence and proceed with the case.

제 42 장.

상소

42-1. 상소는 하위 치리회에서 판결이 내려진 소송건을 상회로 이관하는 것이며, 내려진 결정이 자신에게 불리한 측에게만 허락된다. 쌍방은 상소인과 피상소인이라 칭한다. 상소는 직계 상회 외의 다른 상회에 할 수 있다. 단 그 상회의 동의가 있으면 다음 직계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42-2. 정규 재판을 받은 사람들만 상소할 권한이 있다.

42-3. 상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위 치리회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 어떤 변칙; 재판 받는 측에 대한 합리적인 관용의 거부; 적법치 않은 증거를 취하거나 적법한 증거의 거절; 모든 증언을 받기 전에 조급히 내려진 결정; 소송건에 드러난 편견; 판결과 책벌에 있어서의 과오나 불의 등이다.

42-4. 상소는 [그 소송건을 다루는] 치리회가 폐회하기 전에 그 치리회에 통보해야 한다. 서면에 의한 상소 통보는, 정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소인이 하위 치리회의 서기와 상회의 서기 모두에게, 최종 치리회의 조치에 대한 통보일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접수 시켜야 한다. 통보는 (국내 우체국의 수취인 확인, 등기 혹은 속달, 또는 수취인 확인을 활용하는 모든 사실 우편의 경우) 우송 당일, 직접 전달한 당일, 또는 이메일이나 팩시밀리의 경우에는 접수가 확인된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서, 성실하게 조회를 한 후에도 당사자의 소재가 확인될 수 없거나 당사자가 배달된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 그러한 [통보] 요구들에 따를 것은 이행되었다고 간주된다. 소송건이 청문되기 전에 쌍방 어느 측도 상소가 제기되어 있는 치리회에 회람을 돌려서는 안 된다.

42-5. 하위 치리회 서기의 의무는 상소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상회 서기에게, 상소 통보서, 상소 사유, 하위 치리회의 회신, 증거 등 소송건에 관계된 서류 일체를 포함하여, 소송건에 연관된 재판 진행 일체의 사본 한 부를 접수시켜야 하는데, 이것 전체를 합하여 “소송 기록”이라고 부르며, 상회는 소송 중에 있는 쌍방의 동의 없이 이 “기록”에 없는 것은 일체 용인하거나 고려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경우, 쌍방 모두가 새로운 증거를 수용하고 소송건을 [계속] 진행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소송건은 상소를 제기한 하위 치리회로 돌려 보내져야 한다.

42-6. Notice of appeal shall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until the case has been finally decided in the higher court. However, the court of original jurisdiction may, for sufficient reasons duly recorded, prevent the appellant from approaching the Lord's Table, and if an officer, prevent him from exercising some or all his official functions, until the case is finally decided (cf. *BCO* 31-10; 33-3). This shall never be done in the way of censure.

42-7. If a lower court shall neglect to send up "the Record of the Case" or any part of it, to the injury of the appellant, it shall receive a proper rebuke from the higher court, and the judgment from which the appeal has been taken shall be suspended until "the Record" is produced upon which the issue can be fairly tried.

42-8. After a higher court has decided that an appeal is in order and should be entertained by the court, the court shall hear the case, 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BCO* 15-2 and 15-3, appoint a commission to do so. At the hearing, after the Record has been read, each side should be allotted not over thirty (30) minutes for oral argument, the appellant having the right of opening and closing the argument. After the hearing has been concluded, the court or commission should go into closed session, and discuss the merits of the case.

The vote then should be taken, without further debate, on each specification in this form:

Shall this specification of error be sustained?

If the court or commission deem it wise, it may adopt a minute explanatory of its action, which shall become a part of its Record of the Case. The court or commission shall designate one of its members to write the opinion, which opinion shall be adopted by the court or commission as its opinion.

42-9. The decision of the higher court may be to affirm in whole or in part; to reverse in whole or in part; to render the decision that should have been rendered; or to remand the case to the lower court for a new trial. In every case a written opinion shall be prepared, and a copy of the opinion and judgment entered will be delivered personally or mailed to the lower court and the appellant, with a written receipt required.

42-10. An appellant may represent himself or be represented as provided in *BCO* 32-19.

42-6. 상소의 통보는 동 소송건이 상회에서 최종 결정 될 때까지 하위 처리회의 판결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최초 관할 처리회는, 정식으로 기록된 충분한 사유에 의거, 동 소송건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상소인의 수관을 금지시킬 수 있고, 만일 그 상소인이 직분자일 경우, 직분자로서의 기능 수행 일부 혹은 전부를 금지시킬 수 있다 (*교회헌법* 31-10 과 33-3 참조). 이것은 결코 책벌의 방법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42-7. 만약 하위 처리회가 “소송 기록” 혹은 동 기록의 일부를 [상회에] 올려 보내는 것을 소홀히 하여, 상소인에게 피해가 있을 때, 하위 처리회는 상회로부터 적절한 책망을 받아야 하며, 상소의 원인이 된 [하위 처리회의] 판결은 “기록”이 제공되어 그것을 근거로 사건이 공정하게 재판 받게 될 때까지 정지된다.

42-8. 상소가 법대로 이루어졌고 또 처리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상회가 결정한 후에는, 처리회가 소송건을 청문하거나, *교회헌법* 15-2 와 15-3 의 규정에 따라, 청문할 전권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청문 시, 기록이 낭독된 후, 각 측에게 삼십(30) 분 이내의 구두증언 [시간]을 할당하되, 상소인이 변론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청문이 종결된 후, 그 처리회 혹은 전권위원회는 비공개회의에 들어가서, 소송건의 시비 극직을 토의해야 한다.

그 후, 더 이상의 논쟁 없이, 다음의 형태로 각각의 특정 사항을 투표해야 한다:

이 사항의 오류를 인정 하십니까?

만약 처리회나 전권위원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조치에 대한 해명서를 채택할 수 있고, 이 해명서는 그들의 “소송 기록”의 일부가 된다. 처리회나 전권위원회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의견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 의견서는 처리회나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그들의 의견서로 채택되어야 한다.

42-9. 상회의 결정은, 일체 혹은 일부를 확증하거나 일부를 반복한다; 마땅히 내려졌어야만 하는 결정을 내린다; 새로운 재판을 하도록 하위 처리회에 돌려보낸다. 각 경우, 서면으로 된 의견서가 갖추어져야 하며, 기록된 의견서와 판결문의 사본 한 통은 인편이나 우편으로 하위 처리회와 상소인에게 보내져야 하고, 서면으로된 접수증을 확보 하도록 한다.

42-10. 상소인은 스스로 증언하거나 *교회헌법* 32-19 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을 세울 수 있다.

42-11. An appellant shall be considered to have abandoned his appeal if he fails to appear before the higher court, in person or by counsel, for a hearing thereof, after he has been properly notified; but an appellant may waive, in writing, his right to appear with permission of the court and not be considered to have abandoned his case. In case of such failure to appear,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will stand unless the appellant gives to the court a prompt and satisfactory explanation.

42-12. If an appellant manifests a litigious or otherwise un-Christian spirit in the prosecution of his appeal, he shall receive a suitable rebuke by the appellate court.

42-11. 만일 상소인이 적법하게 통보를 받은 후, 청문을 받기 위해, 친히 혹은 변호인을 세워 상회에 출두하지 못하면, 상소인은 그의 상소를 유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상소인은, 서면으로, 치리회의 허락 하에 출두 권한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의 소송건은 유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출두하지 못했을 경우, 상소인이 치리회에 신속하고 또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하위 치리회의 판결은 유효하다.

42-12. 만일 상소인이 소송 상의 논쟁을 좋아하거나 그의 상소건이 진행되는 중 기독교인답지 못한 정신을 나타내 보이면, 상회는 적합한 책망을 가해야 한다.

CHAPTER 43*Complaints*

43-1. A complaint is a written representation made against some act or decision of a court of the Church. It is the right of any communing member of the Church in good standing to make complaint against any action of a court to whose jurisdiction he is subject, except that no complaint is allowable in a judicial case in which an appeal is pending.

43-2. A complaint shall first be made to the court whose act or decision is alleged to be in error. Written notice of complaint, with supporting reasons, shall be filed with the clerk of the court within sixty (60) days following the meeting of the court.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complaint at its next stated meeting, or at a called meeting prior to its next stated meeting. No attempt should be made to circularize the court to which complaint is being made by either party.

43-3. If, after considering a complaint, the court alleged to be delinquent or in error is of the opinion that it has not erred, and denies the complaint, the complainant may make complaint to the next higher court. If the court fails to consider the complaint by or at its next stated meeting, the complainant may make complaint to the next higher court. Written notice of complaint, together with supporting reasons, shall be filed with both the clerk of the lower court and the clerk of the higher court within thirty (30) days of notification of the last court's decision. Notific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occurred on the day of mailing (if certified, registered or express mail of a national postal service or any private service where verifying receipt is utilized), the day of hand delivery, or the day of confirmed receipt in the case of e-mail or facsimile. Furthermore,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ulfilled if a party cannot be located after diligent inquiry or if a party refuses to accept delivery.

43-4. Notice of complaint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the action against which the complaint is made, unless one-third (1/3) of the members present when the action was taken shall vote for its suspension, until the final decision in the higher court.

43-5. The court against which complaint is made shall appoint one or more representatives to defend its action before the higher court, and the parties in the case shall be known as complainant and respondent. The complainant himself may present his complaint, or he may obtain the assistance of a communing memb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who is in good standing, in presenting his complaint.

제 43 장.

소원

43-1. 소원은 교회 치리회의 일부 조치나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모든 무흠 수찬교인은 자신을 관할하는 치리회의 어떤 조치에라도 반대하여 소원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단 상소가 접수된 법적 소송건에 있어서는 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43-2. 소원은 조치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되는 치리회에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소원에 대한 서면 통보는, 정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치리회 회기가 끝난 후 육십(60) 일 이내에 치리회 서기에게 접수 시켜야 한다. 치리회는 소원을 차기 정기 회의에서 심의하거나, 차기 정기 회의 이전에 임시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쌍방 어느 측도 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치리회에 회람을 돌려서는 안 된다.

43-3. 만일, 소원을 심의한 후, 범죄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주장되었던 치리회가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소원을 거부하면, 소원인은 직계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만일 그 치리회가 그 소원을 차기 정기 회의 때까지 혹은 그 회의에서 심의하지 못하면, 상소인은 [그 치리회의] 직계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소원 서면 통보서는 정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최종 치리회의 조치에 대한 통보일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하위 치리회의 서기와 상회의 서기 모두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통보는 (국내 우체국의 수취인 확인, 등기 혹은 속달, 또는 수취인 확인을 활용하는 모든 사설 우편의 경우) 우송 당일에, 직접 전달한 당일, 또는 이메일이나 팩시밀리의 경우에는 접수가 확인된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서, 성실하게 조회를 한 후에도 당사자의 소재가 확인될 수 없거나 당사자가 배달된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 그러한 [통보] 요구들에 따를 것은 이행되었다고 간주된다.

43-4. 소원 통보는, 소원과 관계되는 조치에 대해서 그 조치가 채택되었을 때 참석했던 회원들 삼분의 일(1/3) 이상이 찬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조치를 정지 시키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43-5. 소원의 대상인 치리회는 상회 앞에서 자체의 조치를 변호하기 위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며, 소송건의 쌍방 당사자들은 소원인과 피소원인이라고 부른다. 소원인은 자신이 친히 소원을 제출하거나, 그의 소원을 제출할 때 미국장로교의 무흠 수찬교인의 협력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43-6.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lerk of the lower court to file with the clerk of the higher court, not more tha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notice of complaint, a copy of all its proceedings in connection with the complaint including the notice of complaint and supporting reasons, the response of the lower court, if any, and any papers bearing on the complaint. If the clerk of the lower court shall neglect to send up the proceedings on the complaint, he shall receive a proper rebuke from the higher court, and the act or decision complained against shall be suspended until the proceedings are produced so that the higher court can fairly consider the complaint.

43-7. The complainant shall be considered to have abandoned his complaint if he fails to appear before the higher court, in person or by counsel, for a hearing thereof, after he has been properly notified; but a complainant may waive, in writing, his right to appear with permission of the court and not be considered to have abandoned his case. In case of such failure to appear,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will stand unless the complainant gives to the court a prompt and satisfactory explanation.

43-8. After the higher court has decided that the complaint is in order, the court shall hear the complaint, 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BCO* 15-2 and 15-3, appoint a commission to do so. If the date of the hearing shall, for good cause, be other than the same day it is presented, the court shall notify the complainant and respondent in writing of the date set for the hearing.

43-9. At the hearing, after all the papers bearing on the complaint have been read, the complainant and respondent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resent argument, the complainant having the right of opening and closing the argument. After the hearing has been concluded, the court or the commission should go into closed session, and discuss and consider the merits of the complaint. The vote should then be taken as to what disposition should be made of the complaint, and the complainant and respondent notified of the court's decision.

43-10. The higher court has power, in its discretion, to annul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action of a lower court against which complaint has been made, or to send the matter back to the lower court with instructions for a new hearing. If the higher court rules a lower court erred by not indicting someone, and the lower court refers the matter back to the higher court, it shall accept the reference if it is a doctrinal case or case of public scandal (see *BCO* 41-3). ● ● ●

43-6. 하위 치리회 서기의 의무는, 소원 통보서를 접수 한 후, 삼십(30)일 이내에, 상회 서기에게 소원 통보서와 정당한 사유서, 하위 치리회의 회신과 소원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 소원과 연관된 동 치리회의 모든 재판 진행 사본 한 통을 접수 시키는 것이다. 만일 하위 치리회 서기가 소원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상회로] 올려 보내기를 소홀히 하면, 그는 상회로부터 적법한 책망을 받아야 하며, 소원과 관련된 조치나 결정은 재판 진행 [기록]이 제시되어 상회가 공정하게 소원을 심의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정지된다.

43-7. 만일 소원인이 적법하게 통보를 받은 후, 청문을 받기 위해, 본인이 혹은 변호인을 세워 상회에 출두하지 못하면, 소원인은 그의 소원을 유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소원인은, 서면으로, 치리회의 허락 하에 출두 권한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의 소송건은 유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출두하지 못했을 경우, 소원인이 치리회에 신속하고 또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하위 치리회의 판결은 유효하다.

43-8. 소원이 법대로 되어졌다고 상회가 결정한 후에는, 치리회가 그 소원을 청문하거나, 교회헌법 15-2 와 15-3 의 규정에 따라 청문할 전권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만일 청문할 일정이 타당성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시된 날과 다른 날로 변경되어야 하면, 치리회는 청문할 새 일정을 서면으로 소원인과 피소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3-9. 청문 시, 소원에 관한 모든 서류를 낭독하게 한 후, 소원인과 피소원인에게 자신의 변론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소원인이 변론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권한을 가진다. 청문이 종결된 후, 그 치리회 혹은 전권위원회는 비공개회의에 들어가서, 소송건의 시비 곡직을 토의해야 한다. 그 후 소원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투표하고, 소원인과 피소원인에게 치리회의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43-10. 상회는, 재량으로, 소원에 관련되어 있는 하위 치리회의 조치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를 무효화하거나, 새로운 청문을 하도록 지시하여 사건을 하위 치리회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만일 상회가 하위치리회가 어떤 사람을 기소하지 않음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판결하고, 하위치리회가 사안을 상회에 회부하면, 상회는 그 사안이 교리적이거나 공적 추문의 경우 (헌법 41-3 참조), 상회는 그 문의를 반드시 수락해야 한다.

CHAPTER 44

(Vacated)

CHAPTER 45

Dissents, Protests, and Objections

45-1. Any member of a court who had a right to vote on a question, and is not satisfied with the action taken by that court, is entitled to have a dissent or protest recorded.

None can join in a dissent or protest against an action of any court except those who had a right to vote in the case.

Any member who did not have the right to vote on an appeal or complaint (see *BCO 39-2*), and is not satisfied with the action taken by the court, is entitled to have an objection recorded.

A dissent, protest or objection shall be filed with the clerk of the lower court within thirty (30) days following the meeting of the lower court or with the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before its adjournment.

45-2. A dissent is a declaration on the part of one or more members of a minority, expressing a different opinion from the majority in its action on any issue before the court, and may be accompanied with the reasons on which it is founded.

45-3. A protest is a more solemn and formal declaration by members of a minority, bearing their testimony against what they deem an improper or erroneous action on any issue before the court, and is generally accompanied with the reasons on which it is founded.

45-4. An objection is a declaration by one or more members of a court who did not have the right to vote on an appeal or complaint, expressing a different opinion from the decision of the court and may be accompanied with the reasons on which it is founded.

45-5. If a dissent, protest, or objection be couched in temperate language, and be respectful to the court, it shall be recorded; and the court may, if deemed necessary, put an answer to the dissent, protest, or objection on the records along with it. Here the matter shall end, unless the parties obtain permission to withdraw their dissent, protest, or objection absolutely, or for the sake of amendment.

제 44 장.

(삭제)

제 45 장.

이의와 항의 및 반대

45-1. 어떤 문제에 대해서 투표할 권리를 가진 치리회의 어느 회원이 그 치리회의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이의나 항의가 [회의록에] 기록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소송건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어떤 치리회 결정에 반대해서 이의와 항의에 연대할 수 없다.

상소나 소원에 대해서 (헌법 39-2 를 보라) 투표 할 권리가 없는 어느 회원이 그 치리회의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반대[하는 내용이] 기록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의, 항의 또는 반대는 하위 치리회가 끝난 때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하위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키거나, 총회가 폐회하기 전에 총회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45-2. 이의는 소수 측의 회원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언으로, 치리회 앞에 상정된 어떤 안건에 관한 치리회의 조치에 대하여 다수측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며, 이의의 논거가 되는 사유를 첨부할 수도 있다.

45-3. 항의는 소수 측 회원들의 좀 더 엄숙하고 형식을 갖춘 선언으로, 그들이 치리회 앞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조치가 부당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는 증언을 제시하며, 통상 항의의 논거가 되는 사유를 첨부한다.

45-4. 반대는 상소나 소원에 대해서 투표할 권리가 없는 치리회 회원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언으로, 치리회의 결정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며 반대의 논거가 되는 사유를 첨부할 수도 있다.

45-5. 만일 이의, 항의, 또는 반대가 온건한 말로 표현되었고, 치리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은 기록에 올려야 한다; 또 치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항의와 이의 또는 반대와 함께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기록에 올릴 수 있다. 쌍방이 그들의 이의, 항의, 또는 반대를 무조건, 또는 수정을 위하여 철회하기 위한 허락을 받아 내지 않는 한, 사안은 여기서 끝난다

CHAPTER 46*Jurisdiction*

46-1. When a church member shall remove his residence beyond the bounds of the congregation of which he is a member, so that he can no longer regularly attend its services, it shall be his duty to transfer his membership by presenting a certificate of dismissal from the Session of the church of which he is a member to the church with which he wishes to unite.

When the church of which he is a member has no Session, or for other good reasons it seems impossible for the member to secure a certificate of dismissal, he may be received by the Session upon other satisfactory testimonials, in which case the church of which he was a member shall be duly notified.

46-2. When a church member shall remove his residence beyond the bounds of the church of which he is a member into the bounds of another, it shall be the duty of the teaching and ruling elders of the church of which he is a member, as far as possible, to continue pastoral oversight of him and to inform him that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our *Book of Church Order* it is his duty to transfer his membership as soon as practicable to the church in whose bounds he is living.

It shall also be the duty of the church from whose bounds the member moved to notify the teaching and ruling elders of a church into whose bounds he has moved and request them to take pastoral oversight of the member, with a view of having him transfer his membership, unless *BCO 18-7* applies.

If a member, after having thus been advised, shall neglect for one (1) year to have his membership transferred, the Session shall then proceed, according to *BCO 38-4*, except in special cases such as: servicemen, students, etc.

The name of any member whose residence has been unknown for one year to the Session shall be removed from the roll and such names are not to be counted in the annual statistical reports, though act of removal should be recorded in the Session's minutes. If such a person at a later date should appear or desire transfer of his or her letter, the Session will inform the governing body of the inquiring church of their action in removing said person from their roll.

제 46 장.

관할구역

46-1. 교인이 소속 회중의 지역 [경계] 밖으로 이주해서, 본 교회의 예배에 규칙적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될 때, 소속 지교회의 당회로부터 이명증서를 받아 가입하고자 하는 지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의 교적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소속교회에 당회가 없거나 다른 정당한 이유 때문에 교인이 이명증서를 받는 일이 불가능할 때, 다른 만족할만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당회가 그를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그가 소속했던 교회에 정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46-2. 한 교인이 소속 교회의 지역 [경계] 밖으로 이주해서 다른 지역 [경계] 안으로 들어 갈 때, 그 교인이 속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가능한 한, 그에 대한 목회적 감독을 계속하며, *교회헌법*의 가르침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의 교회로 이명해 가는 것이 그의 의무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그 교인이 떠난 교회도, 교인이 그의 교적을 이명해 간다고 볼 경우, *교회헌법* 18-7 이 적용되지 않는 한, 그가 이주해 들어간 지역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게 통보하고 그들에게 그 교인을 위한 목회적 감독을 청원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렇게 조언을 받은 후, 그 교인이 일(1) 년 동안 교적 이명을 소홀히 하면, 그 때 당회는 *교회헌법* 38-4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군인, 학생 등 특별한 경우들은 예외이다.

거주지가 일년 동안 당회에 알려지지 않은 교인의 이름은 교인명부에서 삭제되어야 하고, 그러한 삭제 조치는 반드시 당회록에 기록되어야 하되, 그 이름들이 [총회] 연차 보고서에 가산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사람이 후에 나타나거나 그의 이명을 요구하면, 당회는 조회를 구하는 교회 치리기관에 언급된 사람을 교적부에서 삭제한 그들의 조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46-3. Members of one church dismissed to join another shall be held to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ession dismissing them until they form a regular connection with that to which they have been dismissed.

46-4. Associate members are those believers temporarily residing in a location other than their permanent homes. Such believers may become associate members of a particular church without ceasing to be communicant members of their home churches. An associate member shall have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that church, with the exception of voting in a congregational or corporation meeting, and holding an office in that church.

46-5. (*Vacated*) [see 38-4]

46-6. When a Presbytery shall dismiss a minister, licentiate or candidate, the name of the Presbytery to which he is dismissed shall be given in the certificate, and he shall remai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esbytery dismissing him until received by the other.

46-7. No certificate of dismissal from either a Session or a Presbytery shall be valid testimony of good standing for a period longer than one (1) year, unless its earlier presentation be hindered by some providential cause; and such certificates given to persons who have left the bounds of the Session or Presbytery granting them shall certify the standing of such persons only to the time of their leaving those bounds.

46-8. When a Presbytery shall divest a minister of his office without censure, or depose him without excommunication, it shall assign him, to membership in some particular church,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Session of that church.

46-3. 다른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 이명 증서를 받은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이 이명 받아 가입하고자 했던 교회와 정상 관계를 형성할 때까지 그들에게 이명 증서를 발행한 당회의 관할권 아래 있다.

46-4. [교회] 준회원들은 그들의 상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신자들이다. 그런 신자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본 교회의 수찬교인 됨을 중단함이 없이 다른 특정 교회의 준회원들이 될 수 있다. [교회] 준회원은, 공동의회나 법인회의에서 투표할 수 없고,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외에는, 그 교회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46-5. (삭제) [헌법 38-4 를 보라]

46-6. 노회가 목사, 강도사, 또는 [목사] 후보생을 이명 시킬 때, 그가 이명 받아 가고자 하는 노회의 이름을 이명증서에 명기할 것이며, 그는 다른 노회가 받아 들일 때까지 그를 이명 시키고자 하는 노회의 관할권 아래 남아있어야 한다.

46-7. 당회나 노회가 무흠함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한] 모든 이명증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섭리적 요인에 의해서 시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것이 아닌 한, 일(1) 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그리고 당회나 노회의 허락으로 관할 지역을 떠난 사람들에게 발행되는 그러한 [이명] 증서는 그 사람들이 당회나 노회의 관할 지역을 떠나던 그 시점까지만 그들의 무흠을 증명한다.

46-8. 노회가 목사를 책벌 없이 목사직을 해직 시키거나, 출교 없이 면직시킬 때, 노회는 어느 특정한 교회 당회의 승인을 얻어 그를 그 교회의 교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PART III

THE DIRECTORY FOR THE WORSHIP OF GOD

Temporary statement adopted by the Third General Assembly to preface the Directory for Worship: The Directory for Worship is an approved guide and should be taken seriously as the mind of the Church agreeable to the Standards. However, it does not have the force of law and is not to be considered obligatory in all its parts. BCO 56, 57 and 58 have been given full constitutional authority by the Eleventh General Assembly after being submitted to the Presbyteries and receiving the necessary two-thirds (2/3) approval of the Presbyteries.

CHAPTER 47

The Principles and Elements of Public Worship

47-1. Since the Holy Scriptures are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the principles of public worship must be derived from the Bible, and from no other source.

The Scriptures forbid the worshipping of God by images, or in any other way not appointed in His Word, and requires the receiving, observing, and keeping pure and entire all such religious worship and ordinances as God hath appointed in His Word (*WSC* 51, 50).

47-2. A service of public worship is not merely a gathering of God's children with each other, but before all else, a meeting of the triune God with His chosen people. God is present in public worship not only by virtue of the Divine omnipresence but, much more intimately, as the faithful covenant Savior. The Lord Jesus Christ said: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I am in the midst of them" (Matthew 18:20).

47-3. The end of public worship is the glory of God. His people should engage in all its several parts with an eye single to His glory. Public worship has as its aim the building of Christ's Church by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and the addition to its membership of such as are being saved -- all to the glory of God. Through public worship on the Lord's day Christians should learn to serve God all the days of the week in their every activity, remembering, whether they eat or drink, or whatever they do, to do all to the glory of God (1 Corinthians 10:31).

제 3 부 예 배 모 범

제 3 차 총회에서 예배 모범의 서언으로 채택된 임시 선언문: 예배 모범은 공인된 안내서이며, 총회의 정신이 동의할 만한 표준으로 진지하게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배 모범은 법의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모든 부분이 의무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헌법 56, 57, 58 장은 각 노회에 수의되어 필요한 노회들 삼분의 이(2/3)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에 제 11 차 총회에 의해서 전적으로 헌법적 권위가 주어져 왔다.

제 47 장.

공예배의 원리와 기초

47-1.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게 정확무오한 법칙이므로, 공예배의 원리들은 성경을 근간으로 하며, [그 외에] 아무 다른 자료도 근간으로 할 수 없다.

성경은, [어떤] 형상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지정하신 대로 순결하고 온전한 모든 신앙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1, 50).

47-2. 공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적 편재하심의 속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하게, 신실하신 언약의 구원자로서, 공예배에 임재하여 계신다. 주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마 18:20).

47-3. 공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예배의 모든 분야에 참여해야 한다. 공예배는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사람들이] 구원 받는대로 그런 교회에 교인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전 10:31)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일 내내 그들의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47-4. Public worship is Christian when the worshippers recognize that Christ is the Mediator by whom alone they can come unto God, when they honor Christ as the head of the Church, who rules over public worship, and when their worship is an expression of their faith in Christ and of their love for Him.

47-5. Public worship must be performed in spirit and in truth. Externalism and hypocrisy stand condemned. The forms of public worship have value only when they serve to express the inner reverence of the worshipper and his sincere devotion to the true and living God. And only those whose hearts have been renewed by the Holy Spirit are capable of such reverence and devotion.

47-6. The Lord Jesus Christ has prescribed no fixed forms for public worship but, in the interest of life and power in worship, has given His Church a large measure of liberty in this matter. It may not be forgotten, however, that there is true liberty only where the rules of God's Word are observed and the Spirit of the Lord is, that all things must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and that God's people should serve Him with reverence and in the beauty of holiness. From its beginning to its end a service of public worship should be characterized by that simplicity which is an evidence of sincerity and by that beauty and dignity which are a manifestation of holiness.

47-7. Public worship differs from private worship in that in public worship God is served by His saints unitedly as His covenant people, the Body of Christ. For this reason the covenant children should be present so far as possible as well as adults. For the same reason no favoritism may be shown to any who attend. Nor may any member of the church presume to exalt himself above others as though he were more spiritual, but each shall esteem others better than himself.

47-8. It behooves God's people not only to come into His presence with a deep sense of awe at the thought of His perfect holiness and their own exceeding sinfulness, but also to enter into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into His courts with praise for the great salvation, which He has so graciously wrought for them through his only begotten Son and applied to them by the Holy Spirit.

47-4. 공예배는, 예배자들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시요 오직 이 중보자를 의지해서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할 때, 그들이 공예배를 주관하시며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경할 때, 또 그들의 예배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표현일 때 기독교적이다.

47-5. 공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외형주의와 위선을 배격해야 한다. 공예배의 형식은 오직 그것이 예배자의 내적 경외심과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헌신을 표현하도록 할 때 가치가 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만이 그런 경외심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다.

47-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예배를 위하여 지시해 주신 고정된 형식은 없지만, 예배의 생명과 능력을 위해, 이 일에 있어서 그의 교회에 광범위한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이 준행되고 주의 성령이 임재 하는 곳이라야만 진정한 자유가 있으며,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시행되며, 하나님의 백성은 경외심과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성의 증거인 단순함과 성결의 표출인 미와 품위로 특성 지워져야 한다.

47-7. 공예배는, 공예배 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곧 그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연합되어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점에서, 사적 예배와 다르다. 이 이유 때문에,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녀들도 할 수 있는 한 [공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아무에게도 편견을 보여서는 안 된다. 또 교회의 교인 중 아무도 자신이 더 영적인 것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여서는 안 되며,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한다.

47-8.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자신들의 극심한 죄성을 생각할 때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적용하신,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한다.

47-9. The Bible teaches that the following are proper elements of worship service: reading of Holy Scripture, singing of psalms and hymns, the offering of prayer, the preaching of the Word, the presentation of offerings, confessing the faith and observing the Sacraments; and on special occasions taking oaths.

47-9.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예배의 적합한 기본 요소들이라고 가르친다: 성경 봉독, 시와 찬미로 노래함, 기도 드림, 말씀 선포, 헌금 봉헌, 신앙 고백, 성례 집행; 특별한 때 서약함.

CHAPTER 48

The Sanctification of the Lord's Day

48-1. “The fourth commandment requireth the keeping holy to God such set times as he hath appointed in his word; expressly one whole day in seven, to be a holy sabbath to himself.” (*WSC* 58).

48-2. God commanded His Old Testament people to keep holy the last day of the week, but He sanctified the first day as the Sabbath by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from the dead. For this reason the Church of the new dispensation has from the time of the apostles kept holy the first day of the week as the Lord's Day.

48-3. It is the duty of every person to remember the Lord's Day; and to prepare for it before its approach. All worldly business should be so ordered, and seasonably laid aside, as that they may not be hindered thereby from sanctifying the Sabbath, as the Holy Scriptures require.

48-4. The whole day is to be kept holy to the Lord; and to be employed in the public and private exercises of religion. Therefore, it is requisite, that there be a holy resting, all the day, from unnecessary labors; and an abstaining from those recreations which may be lawful on other days; and also, as much as possible, from worldly thoughts and conversation.

48-5. Let the provisions for the support of the family on that day be so ordered that others be not improperly detained from the public worship of God, nor hindered from sanctifying the Sabbath.

48-6. Let every person and family, in the morning, by secret and private prayer, for themselves and others, especially for the assistance of God to their minister, and for a blessing upon his ministry, by reading the Scriptures, and by holy meditation, prepare for communion with God in his public ordinances.

48-7. Let the time not used for public worship be spent in prayer, in devotional reading, and especially in the study of the Scriptures, meditation, catechising, religious conversation, the singing of psalms, hymns, or spiritual songs; visiting the sick, relieving the poor, teaching the ignorant, holy resting, and in performing such like duties of piety, charity, and mercy.

제 48 장.

주일 성수

48-1.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지정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 명백하게, 칠일 중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8)

48-2.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에게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한 주의] 첫 날을 안식일로 성별하셨다. 이 이유로 인해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사도시대로부터 한 주의 첫 날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 왔다.

48-3. 주일을 기억하는 것과, 또 주일이 이르기 전에 주일 준비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세상 일은 [주일을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때를 따라 구별해 됨으로써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8-4. 하루 전체를 거룩히 지켜 주께 드려야 하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신앙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거룩한 쉼을 가지며, 평일에는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오락과, 또한 할 수 있는 한 세속적인 사고와 대화를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

48-5. 주일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식량은 [주일을 중심으로] 준비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억류당하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48-6. [주일] 아침에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그들의 목회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또 그의 사역 위에 축복을 위해, 은밀하고도 사적인 기도와, 성경 읽음과, 거룩한 묵상으로, 모든 개인과 가족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해야 한다.

48-7. 공예배 시간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은 기도로, 경건 서적을 읽음으로, 특히 성경 연구, 묵상, 요리문답 공부, 신앙의 대화, 시와 찬미 또는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 보내도록 해야 한다;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거룩한 휴식을 취하며, 경건, 자비, 긍휼과 같은 의무를 수행하며 보내도록 해야 한다.

CHAPTER 49

The Ordering of Public Worship

49-1. When the congregation is to meet for public worship, the people (having before prepared their hearts thereunto) ought all to come and join therein; not absenting themselves from the public ordinances through negligence, or upon pretence of private meetings.

49-2. Let the people assemble at the appointed time, that all being present at the beginning they may unite with one heart in all the parts of public worship. Let none unnecessarily depart until after the blessing be pronounced.

49-3. Let the people upon entering the church take their seats in a decent and reverent manner, and engage in a silent prayer for a blessing upon themselves, the minister, and all present, as well as upon those who are unable to attend worship.

49-4. All who attend public worship are expected to be present in a spirit of reverence and godly fear, forbearing to engage in any conduct unbecoming to the place and occasion. Since the family, as ordained by God, is the basic institution in society, and God in the Covenant graciously deals with us, not just as individuals but also as families, it is important and desirable that families worship together.

제 49 장.

공예배에서의 질서

49-1. 회중이 공예배로 모이고자 할 때, (공예배를 위해 미리 마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모두 와서 그 곳에 연합한다; 태만하거나 사적인 모임을 핑계로 공예배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49-2.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모이도록 하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면 그들은 공예배 모든 부분에 걸쳐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축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불필요하게 자리를 떠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49-3.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품위 있고 경건한 태도로 자리에 앉아, 자신과 목사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뿐 아니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해야 한다.

49-4. 공예배에 출석한 모든 사람에게는, 때와 장소에 합당치 않은 행동을 일체 조심하며, 존경심과 경건한 경외심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대로 가족은 사회의 기본 제도이며,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단지 개인적으로서만 아니라 가족으로서도 은혜롭게 대하신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하고 또 바람직하다.

CHAPTER 50*The Public Reading of the Holy Scriptures*

50-1. The public reading of the Holy Scriptures is performed by the minister as God's servant. Through it God speaks most directly to the congregation, even more directly than through the sermon. The reading of the Scriptures by the minister i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responsive reading of certain portions of Scripture by the minister and the congregation. In the former God addresses His people; in the latter God's people give expression in the words of Scripture to their contrition, adoration, gratitude and other holy sentiments. The psalms of Scripture are especially appropriate for responsive reading.

50-2. The reading of the Holy Scriptures in the congregation is a part of the public worship of God and should be done by the minister or some other person.

50-3.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shall be read from a good translation, not a paraphrase, in the language of the people, that all may hear and understand.

50-4. How large a portion shall be read at once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every minister; and he may, when he thinks it expedient, expound any part of what is read; always having regard to the time, that neither reading, singing, praying, preaching, nor any other ordinance, be disproportionate the one to the other; nor the whole rendered too short, or too tedious.

제 50 장.

성경봉독

50-1. 공적인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수행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봉독을 통해서 회중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심지어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목사와 회중이 성경의 어느 일부를 교독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후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통회와 찬양과 감사와 기타 거룩한 감정을 표현한다. 시편은 특별히 교독을 위해서 적합하다.

50-2. 회중 가운데 성경봉독은 하나님께 대한 공예배의 일부분이며, 목사나 다른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50-3. 신구약 성경봉독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하되, 평이한 의역이 아닌 훌륭한 번역[성경]을 봉독한다.

50-4. 한번에 얼마나 긴 부분을 봉독하느냐 하는 것은 각 목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 목사는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봉독된 [본문]의 어느 일부를 해설할 수 있다; 항상 시간을 고려해서, [성경]봉독이든, 찬송이든, 기도든, 설교든, 또는 다른 어떤 의식이든, 상호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안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체가 너무 짧거나 너무 지루해서도 안 된다.

CHAPTER 51

The Singing of Psalms and Hymns

51-1. Praising God through the medium of music is a duty and a privilege. Therefore, the singing of hymns and psalms and the use of musical instruments should have an important part in public worship.

51-2. In singing the praises of God, we are to sing in the spirit of worship, with understanding in our hearts.

51-3. It is recommended that Psalms be sung along with the hymns of the Church, but that caution be observed in the selection of hymns, that they be true to the Word. Hymns should have the note of praise, or be in accord with the spirit of the sermon.

51-4. The leadership in song is left to the judgment of the Session, who should give careful thought to the character of those asked to lead in this part of worship, and the singing of a choir should not be allowed to displace congregational singing.

51-5. The proportion of the time of public worship given to praise is left to the judgment of the minister, and the singing of psalms and hymns by the congregation should be encouraged.

제 51 장.

찬송

51-1. 음악이라는 매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무요 특권이다. 그러므로 시와 찬미로 노래하는 것과 악기의 사용은 공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51-2.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때, 우리는 마음에 그 뜻을 생각하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51-3. 시편은 교회의 찬송가와 함께 부르도록 추천하되, 찬송가 선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찬송가는 찬양의 음류를 갖추거나, 아니면 설교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51-4. 찬송 지도는 당회의 판단에 맡기되, 당회는 예배의 이 부분에서 [찬송]인도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의 인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성가대의 노래로 회중의 찬송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51-5. 찬양을 위해 주어지는 공예배 시간의 비율은 목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회중이 시편을 노래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권장해야 한다.

CHAPTER 52

Public Prayer

52-1. It is proper to begin the public worship in the sanctuary with the Doxology followed by a short prayer, in which the minister shall lead the people, humbly adoring the infinite majesty of the living God, expressing a sense of our distance from Him as creatures, and our unworthiness as sinners; and humbly imploring His gracious presence, the assistance of His Holy Spirit in the duties of His worship, and His acceptance of us through the merits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It is appropriate that this prayer conclude with the Lord's Prayer in which all may unite.

52-2. Then, after singing a psalm, or hymn, it is proper that, before the sermon, there should be a full and comprehensive prayer:

- a. Adoring the glory and perfections of God, as they are made known to us in the works of creation, in the conduct of Providence, and in the clear and full revelation He has made of Himself in His written words;
- b. Giving thanks to Him for all His mercies of every kind, general and particular, spiritual and temporal, common and special; above all, for Christ Jesus, His unspeakable gift, the hope of eternal life through Him, and for the missi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
- c. Making humble confession of sin, both original and actual, acknowledging, and endeavoring to lead the heart of every worshipper with a deep sense of the evil of all sin, as such, as being a departure from the living God; and also taking a particular and affecting view of the various fruits which proceed from this root of bitterness; as sins against God, our neighbor and ourselves; sins in thought, in word, and in deed; sins secret and presumptuous; sins accidental and habitual. Also, the aggravations of sin, arising from knowledge, or the means of it; from distinguishing mercies; from valuable privileges; from breach of vows, etc.;
- d. Making earnest supplication for the pardon of sin, and peace with God, through the blood of the atonement, with all its important and happy fruits; for the Spirit of sanctification, and abundant supplies of the grace that is necessary to the discharge of our duty; for support and comfort, under all the trials to which we are liable, as we are sinful and mortal; and for all temporal mercies that may be necessary in our passage through this valley of tears; always remembering to view them as flowing in the channel of covenant love, and intended to be subservient to the preservation and progress of the spiritual life;

제 52 장.

공 기도

52-1. 교회에서의 공예배는 간단한 기도로 이어지는 송영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기도 중목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존엄성을 겸손하게 앙모하며, 피조물로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감과, 죄인들로서 우리가 느끼는 무가치함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절차에 성령의 도움, 우리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납해 주실 것을 겸손하게 간청하며, 회중을 인도한다.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끝마치는 것이 적절하다.

52-2. 그 후, 시편이나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하기 전에 충실하고 포괄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적합하다:

- ㄱ. 피조 세계와 섭리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진, 또, 분명하고 완전한 계시로 말미암아 그의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에 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함을 찬양함;
- ㄴ. 일반적이고 특별하며,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보편적이고 특수한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모든 공훈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그로 말미암는 영생의 소망을 인해서 또 성령의 사역과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
- ㄷ. 각 예배자의 마음에 모든 죄, 예를 들면,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죄와 같은 죄의 악함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며; 또,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들을 거스르는 죄들;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들; 은밀하고 뻔뻔한 죄들; 우발적이고 습관적인 죄들과 같은, 이 쓴 뿌리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의 관한 특별히 영향력 있는 견해를 가지고, 원죄와 실제죄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함. 또, 지식에서, 아니면, 지식의 수단에서; 특별한 공훈을 [입음]에서; 귀중한 특권에서; 서원의 파기 등에서 일어나는 죄의 고통을 고백함;

- e. Pleading from every principle warranted in Scripture; from our own necessity; the all-sufficiency of God; the merit and intercession of our Saviour; and the glory of God in the comfort and happiness of His people;
- f. Intercession and petition for others, including the whole world for mankind; fo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upon all flesh; for the peace, purity, and extension of the Church of God; for ministers and missionaries in all lands; for all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 particular church then assembled, and all other churches associated in one body with it; for the sick, dying, and bereaved; for the poor and destitute; for strangers, for prisoners, the aged and the young; for those who travel; for the community in which the church is situated; for civil rulers; and for whatever else may seem to be necessary or suitable to the occasion.

The prominence given each of these topics must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minister.

52-3. Ordinarily there should be prayer after the sermon having relation to the subject that has been treated in the discourse; and all other public prayers should be appropriate to the occasion.

52-4. Ministers are not to be confined to fixed forms of prayer for public worship, yet it is the duty of the minister, previous to entering upon his office, to prepare and qualify himself for this part of his work, as well as for preaching. He should, by a thorough acquaintance with the Holy Scriptures, by the study of the best writers on prayer, by meditation, and by a life of communion with God, endeavor to acquire both the spirit and the gift of prayer. Moreover, when he is to offer prayer in public worship, he should compose his spirit, and so order his thoughts, that he may perform this duty with dignity and propriety, and with profit to the worshippers, lest he disgrace this important service by coarse, undignified, careless, irregular or extravagant expressions.

52-5. All prayer is to be offered in the language of the people.

- ㄹ. 대속의 피로 말미암는, 대속의 모든 중요하고 행복한 열매들과 더불어,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성결케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혜의 풍성한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시련 속에 [있을 때의] 도움과 위로를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 여로에 필요할 수도 있는 모든 현세적 공훈을 위해서 간절한 간구를 드림; 그것들은 언약의 사랑의 강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요, 또 영적 생명의 보존과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의도된 것들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함;
- ㅍ. 성경이 보증하는 모든 원리들에 근거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족케 하심, 우리 구주의 공로와 중보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와 행복에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호소함;
- ㅂ. 온 세상을 포함한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육체 위에 성령 부어주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와 순결과 확장을 위해서; 땅 위의 모든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모이고 있는 조직 교회와 그 교회와 한 몸을 이루며 연관되어 있는 모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병든 자, 죽어 가는 자, 가족을 잃은 자를 위해서;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위해서; 나이든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나그네들과 옥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세상 치리자들을 위해서, 또 그 외에 그 경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모든 것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와 간구.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 할 것인가는 목사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52-3. 설교가 끝나면 대개 설교에서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된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공기도들은 모두 그 경우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

52-4. 목사들은 공예배시 기도의 일정한 형식에 제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목사가 자신의 직무에 들어 가기 이전에, 설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 중 이 부분을 위해서도 스스로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그의 의무이다. 목사는 마땅히, 성경에 통달함으로써, 기도에 관해서는 가장 훌륭한 저자들을 연구함으로, 목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기도의 성과 은사를 얻도록 힘써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공예배시 기도를 드릴 때, 목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이 중요한 예배를 찬 박하고, 품위가 없으며, 부주의하고, 변칙적인 혹은 과장된 언사로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이 의무를 품위와 예의를 갖추고, 또 예배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수행해야 한다.

52-5. 모든 기도는 회중의 언어로 드러져야 한다.

CHAPTER 53*The Preaching of the Word*

53-1. The preaching of the Word is an ordinance of God for the salvation of men. Seriou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manner in which it is done. The minister should apply himself to it with diligence and prove himself a “worker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2 Timothy 2:15).

53-2. The subject of a sermon should be some verse or verses of Scripture, and its object, to explain, defend and apply some part of the system of divine truth; or to point out the nature, and state the bounds and obligation, of some duty. A text should not be merely a motto, but should fairly contain the doctrine proposed to be handled. It is proper also that large portions of Scripture be sometimes expounded, and particularly improved,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in the meaning and use of the sacred Scriptures.

53-3. Preaching requires much study, meditation, and prayer, and ministers should prepare their sermons with care, and not indulge themselves in loose, extemporary harangues, nor serve God with that which costs them naught. They should, however, keep to the simplicity of the Gospel, and express themselves in language that can be understood by all. They should also by their lives adorn the Gospel which they preach, and be examples to believers in word and deed.

53-4. As a primary design of public ordinances is to unite the people in acts of common worship of the most high God, ministers should be careful not to make their sermons so long as to interfere with or exclude the important duties of prayer and praise, but should preserve a just proportion in the several parts of public worship.

53-5. By way of application of the sermon the minister may urge his hearers by commandment or invitation to repent of their sins, to put their trust in the Lord Jesus Christ as Savior, and to confess him publicly before men.

53-6. No person should be invited to preach in any of the churches under our care without the consent of the Session.

제 53 장.

말씀 선포

53-1. 말씀 선포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주의해야 한다. 목사는 말씀 선포를 위해서 근면하게 자신을 드러야 하며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옹계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딤후 2:15) 인정 받도록 힘써야 한다.

53-2. 설교의 주제는 성경의 어느 한 절 또는 여러 절이어야 하며,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체계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변호하며, 적용하거나, 혹 어떤 의무의 성격을 지적해 내고, 그 한계와 책임을 언명하는 것이다. 본문은 단순한 구호이어서는 안 되며 강론하려는 교리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때때로 많은 양의 성경 본문을 강론하고, 또 성경말씀의 의미와 용도를 따라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 특별히 [본문의 양을] 늘리는 것은 적법하다.

53-3. [말씀] 선포는 많은 연구와 묵상과 기도를 요구하며, 목사들은 마땅히 신중하게 자신들의 설교를 준비해야 하며, 산만하고, 즉흥적인 연설에 자신들을 방임해 두거나, 자신들이 아무 대가도 치루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 안 된다. 목사들은 복음의 단순성에 착념하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또 목사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빛내야 하며 말과 행동에 신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53-4. 공예배 제정의 주된 구상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 예배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므로,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기도와 찬양의 중요한 의무를 방해하거나 제외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예배의 여러 부분을 적당한 비율로 유지해야 한다.

53-5. 설교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목사는 명령이나 초청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청중을 강권할 수 있다.

53-6. 본 총회에 속한 교회에서는 당회의 동의 없이 아무에게나 설교를 부탁할 수 없다.

CHAPTER 54

The Worship of God by Offerings

54-1. The Holy Scriptures teach that God is the owner of all persons and all things and that we are but stewards of both life and possessions; that God's ownership and our stewardship should be acknowledged; that this acknowledgement should take the form, in part, of giving at least a tithe of our income and other offerings to the work of the Lord through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us worshipping the Lord with our possessions; and that the remainder should be used as becomes Christians.

54-2. It is both a privilege and a duty, plainly enjoined in the Bible, to make regular, weekly, systematic and proportionate offerings for the support of religion and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our own and foreign lands, and for the relief of the poor. This should be done as an exercise of grace and an act of worship, and at such time during the service as may be deemed expedient by the Session.

54-3. It is appropriate that the offerings be dedicated by prayer.

CHAPTER 55

Confessing the Faith

55-1. It is proper for the congregation of God's people publicly to confess their faith, using creeds or confessions that are true to the Word, such as, the Apostle's Creed, the Nicene Creed, or the *Westminster Standards*.

제 54 장.

헌금/헌물로 예배함

54-1. 성경의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만물의 소유주시요 우리는 생명과 소유물 모두의 청지기 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권과 우리의 청지기직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 인정함은,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위하여 적어도 우리 수입의 십일조와 다른 헌금들을 드리는 형태를 취해야 하며, 그러므로서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 또 나머지 수입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54-2. 주의 사역 지원을 위해, 국내외에서의 복음 전파를 위해, 빈민구제를 위해, 일반 [헌금]과 주정 [헌금], 조직적이고 비울적인 헌금을 정하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는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다. 이것은 은혜의 훈련과 예배의 행위로서, 예배 중 당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시행되어야 한다.

54-3. 헌금/헌물들은 기도로 봉헌하는 것이 합당하다.

제 55 장.

신앙고백

55-1.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신조나 [신앙]고백을 사용해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적법하다.

CHAPTER 56

*The Administration of Baptism
The Baptism of Infants and Children*

- 56-1.** Baptism is not to be unnecessarily delayed; not to be administered, in any case, by any private person; but by a minister of Christ, called to be the steward of the mysteries of God.
- 56-2.** It is not to be privately administered, but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ession.
- 56-3.** After previous notice is given to the minister, the child to be baptized is to be presented, by one or both the parents, or some other responsible person, signifying the desire that the child be baptized.
- 56-4.** Before baptism, the minister is to use some words of instruction, touching the institution, nature, use, and ends of this sacrament, showing:
- a. That it is instituted by our Lord Jesus Christ; b. That it is a seal of the Covenant of Grace, of our ingrafting into Christ, and of our union with Him, of remission of sins, regeneration, adoption, and life eternal;
 - c. That the water, in baptism, represents and signifies both the blood of Christ, which taketh away all guilt of sin, original and actual; and the sanctifying virtue of the Spirit of Christ against the dominion of sin, and the corruption of our sinful nature;
 - d. That baptizing, or sprinkling and washing with water, signifies the cleansing from sin by the blood and for the merit of Christ, together with the mortification of sin, and rising from sin to newness of life, by virtue of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 e. That the promise is made to believers and their children; and that the children of believers have an interest in the covenant, and right to the seal of it, and to the outward privileges of the Church, under the Gospel, no less than the children of Abraham in the time of the Old Testament; the Covenant of Grace, for substance, being the same; and the grace of God, and the consolation of believers, more plentiful than before;
 - f. That the Son of God admitted little children into His presence, embracing and blessing them, saying,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God”;

제 56 장.

세례식과 유아 및 어린이 세례

56-1. 세례를 불필요하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 어느 경우에도, 개인이 사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비밀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풀어야 한다.

56-2. 세례는 사적으로 베풀어져서는 안 되며, 당회의 감독 하에 [교회] 회중 앞에서 베풀어져야 한다.

56-3. 목사에게 사전 통보를 한 후, 부모나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책임 맡은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아이를 데리고 나와 아이에게 세례 베풀기를 원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56-4. 세례를 베풀기 전, 목사는 몇 가지 가르치는 말로, 이 성례의 제정, 성격, 용도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 ㄱ.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 ㄴ. 세례는 은혜의 언약,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짐,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의 용서, 중생, 양자됨과 영원한 생명의 인침이다;
- ㄷ. 세례에서 [사용하는] 물은, 원죄와 실제죄의 모든 죄책을 없이 해준 그리스도의 피와, 죄의 지배 세력과 우리의 죄악 된 본성에서 나오는 부패를 거스러 [역사하는] 그리스도 영의 성결케 하는 능력, 둘 다를 대표하고 의미한다;
- ㄹ. 세례를 베품, 또는 물로 뿌리거나 씻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또 그의 공로에 [근거해서] 죄를 씻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능으로, 죄를 억제하고 죄악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ㅁ. 이 약속은 신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주셨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못지않게, 복음 아래서, 신자들의 자녀들은 언약으로 말미암는 유익과, 언약의 인침과 교회의 외적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본질상, 언약의 은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위로는 이전 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
- ㅂ.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안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어린이들이 그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 g. That children by Baptism, are solemnly received into the bosom of the Visible Church, distinguished from the world, and them that are without, and united with believers; and that all who are baptized in the name of Christ, do renounce, and by their Baptism are bound to fight against the devil, the world, and the flesh;
- h. That they are federally holy before Baptism, and therefore are they baptized;
- i. That the inward grace and virtue of Baptism is not tied to that very moment of time wherein it is administered; and that the fruit and power thereof reaches to the whole course of our life; and that outward baptism is not so necessary, that through the want thereof, the infant is in danger of damnation;
- j. By virtue of being children of believing parents they are, because of God's covenant ordinance, made members of the Church, but this is not sufficient to make them continue members of the Church. When they have reached the age of discretion, they become subject to obligations of the covenant: faith, repentance and obedience. They then make public confession of their faith in Christ, or become covenant breakers, and subject to the discipline of the Church.

In these or the like instructions, the minister is to use his own liberty and godly wisdom, as the ignorance or errors in the doctrine of Baptism, and the edification of the people, shall require.

He is also to admonish all that are present to look back to their Baptism, to repent of their sins against their covenant with God; to stir up their faith; to improve and make right use of their Baptism, and of the covenant sealed between God and their soul.

He is to exhort the parent to consider the great mercy of God to him and his child; to bring up the child in the knowledge of the grounds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in the nurture and admonition of the Lord; and to let him know the danger of God's wrath to himself and child, if he be negligent; requiring his solemn promise for the performance of his duty.

- 스. 어린이들은 세례로, 가시적 교회의 품안에 엄숙하게 안기게 되며, 세상과 세례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며, 신자들과 연합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로 말미암아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포기한 사람은, 그것들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되어 있다;
- 오. 세례 받기 전에, 어린이들은 [언약적] 연대 관계로 기록하며,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
- 즈. 세례의 내면적인 은혜와 효력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례의 열매와 능력은 우리의 생의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난다; 외형적 세례는, 그 외형적 세례가 결여되었다는 것 때문에 유아들이 파멸의 위험에 처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츠. 하나님이 언약으로 제정하신 것 때문에, 유아들은 믿는 부모에게 속한 자녀들이라는 것만으로도 교회의 교인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교회의 교인됨을 계속 [감당]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들이 분별력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언약의 의무, 곧 믿음, 회개, 순종에 순복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 때 그들은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고백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약의 파기자가 되어 교회의 권정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혹은 이와 유사한 교훈으로 가르칠 때, 세례의 교리에 대한 무지나 오류를 [바로 잡아 주고] 교인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목사는 필요에 따라 반드시 자신의 자유와 경건한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목사는 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례를 회상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스려 범한 죄를 회개하며, 그들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 그들의 세례와, 하나님과 그들의 영혼 사이에 인친 바 된 언약을 바르게 사용하고 항상 시키도록 권고해야 한다.

목사는 반드시 부모에게, 그 자신과 자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기억하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지식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간곡히] 권고해야 한다; 또, 만일 부모가 [이 일을] 등한히 하면, 그 자신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그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확고한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

The minister is also to exhort the parents to the careful performance of their duty, requiring:

- a. That they teach the child to read the Word of God;
- b. that they instruct him in the principles of our holy religion, a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n excellent summary of which we have in the *Confession of Faith*, and in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which are to be recommended to them as adopted by the Church, for their direction and assistance, in the discharge of this important duty;
- c. that they pray with and for him;
- d. that they set an example of piety and godliness before him; and endeavor, by all the means of God's appointment, to bring up their child in the nurture and admonition of the Lord.

56-5. The minister shall then read the covenant promises:

For to you is the promise, and to your children, and to all that are afar off, even as many as the Lord our God shall call unto him.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between me and thee and thy seed after thee throughout their generations for an everlasting covenant, to be a God unto thee and to thy seed after thee. Believe on the Lord Jesus, and thou shalt be saved, thou and thy house. (Acts 2:39; Gen. 17:7; Acts 16:31)

The minister shall then propose the following questions:

1. **Do you acknowledge your child's need of the cleansing blood of Jesus Christ, and the renewing grace of the Holy Spirit?**
2. **Do you claim God's covenant promises in (his) behalf, and do you look in faith to the Lord Jesus Christ for (his) salvation, as you do for your own?**
3. **Do you now unreservedly dedicate your child to God, and promise, in humble reliance upon divine grace, that you will endeavor to set before (him) a godly example, that you will pray with and for (him), that you will teach (him) the doctrines of our holy religion, and that you will strive, by all the means of God's appointment, to bring (him) up in the nurture and admonition of the Lord?**

목사는 또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여 그들의 의무를 신중히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 ㄱ.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가르칠 것;
- ㄴ. 부모는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 자녀를 가르칠 것인데, 이 원리는 부모들이 이 중요한 의무를 감당하도록 지도와 협조를 주기 위해 총회가 채택하여 추천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에 잘 요약되어 있다;
- ㄷ.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 ㄹ. 부모는 자녀 앞에서 신앙과 경건의 본을 보이며,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힘써야 한다.

56-5. 다음에 목사는 아래와 같이 언약의 약속들을 낭독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2:39; 창 17:7; 행 16:31)

목사는 다음과 같이 물으라:

1. 귀하는 귀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2. 귀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요구하며, 귀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리하시겠습니까?
3. 귀하는 이제 귀하의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의지하여, 귀하의 자녀 앞에 경건한 모범을 보이도록 힘쓰며, 자녀와 함께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에게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치며, 귀하의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힘쓰기로 약속하십니까?

To the congregation (optional):

Do you as a congregation undertake the responsibility of assisting the parents in the Christian nurture of this child?

56-6 Then the minister is to pray for a blessing to attend this ordinance, after which, calling the child by name, he shall say: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s he pronounces these words, he is to baptize the child with water, by pouring or sprinkling it on the head of the child, without adding any other ceremony; and the whole shall be concluded with prayer.

회중에게 묻는다(생략할 수도 있음):

그대들은 한 회중으로서 부모가 이 자녀를 그리스도의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돕는 책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56-6. 그 후 목사는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기도한 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네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아이의 머리에 물을 붓거나 또는 뿌리거나 하여, 다른 어떤 예식도 첨가함이 없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 모든 [의식]은 기도로 마친다.

CHAPTER 57*The Admission of Persons to Sealing Ordinances*

57-1. Believers' children within the Visible Church, and especially those dedicated to God in Baptism, are non-communing members under the care of the Church. They are to be taught to love God, and to obey and serve the Lord Jesus Christ. When they are able to understand the Gospel, they should be earnestly reminded that they are members of the Church by birthright, and that it is their duty and privilege personally to accept Christ, to confess Him before men, and to seek admission to the Lord's Supper.

57-2. The time when young persons come to understand the Gospel cannot be precisely fixed. This must be left to the prudence of the Session, whose office it is to judge, after careful examination, the qualifications of those who apply for admission to sealing ordinances.

57-3. When unbaptized persons apply for admission into the Church, they shall, ordinarily, after giving satisfaction with respect to their knowledge and piety, make a public profession of their faith,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and thereupon be baptized.

57-4. It is recommended, as edifying and proper, that baptized persons, when admitted by the Session to the Lord's Supper, make a public profession of their faith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But in all cases, there should be a clear recognition of their previous relation to the church as baptized members.

57-5. The time having come for the making of a public profession, and those who have been approved by the Session having taken their places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the minister may state that:

Of the number of those who were baptized in infancy as members of the Church of God by birthright, and as heirs of the covenant promises, the Session has examined and approved (call them by name), who come now to assume for themselves the full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ir inheritance in the household of faith.

제 57 장.

입교 예식

57-1.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자녀들과, 특히 [유아] 세례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들은, 교회의 보살핌 아래 있는 비수찬 교인들이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그들은 기득권으로 교회의 교인이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할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상기 시켜주어야 한다.

57-2. 어린 자녀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고정시킬 수 없다. 그것은 당회의 재량에 맡겨야 하며, 당회의 임무는 신중하게 시험한 후 입교 지원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57-3.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입교를 청원할 때,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건에 대해 만족하게 [입증한 후], 통상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받는다.

57-4.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당회의 허락을 받아 성찬에 참여할 때,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합당한 일로 권장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수세 신자로서 그들이 이미 교회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57-5.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시기가 되어서 당회의 허락을 받아 회중 앞에 섰을 때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아 세례를 받아 기득권으로 교회 회원이 되었고, 또 언약의 약속의 후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부른다)를 당회가 심사하고 승인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믿음의 가족으로 그들의 기업에 대한 모든 특권과 책임을 받아 드리려고 합니다.

If there be present any candidates for Baptism, the minister may state that:

As applicants for admission into the Church of God by Baptism, which is a sign and seal of our engrafting into Christ, and of our engagement to be the Lord's, the Session has examined and approved (call them by name), who are cordially welcomed into the fellowship of the household of faith.

The minister may then address those making a profession in the following terms:

(All of) you being here present to make a public profession of faith, are to assent to the following declarations and promises, by which you enter into a solemn covenant with God and His Church.

- 1. Do you acknowledge yourselves to be sinners in the sight of God, justly deserving His displeasure, and without hope save in His sovereign mercy?**
- 2. Do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and Savior of sinners, and do you receive and rest upon Him alone for salvation as He is offered in the Gospel?**
- 3. Do you now resolve and promise, in humble reliance upon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hat you will endeavor to live as becomes the followers of Christ?**
- 4. Do you promise to support the Church in its worship and work to the best of your ability?**
- 5. Do you submit yourselves to the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and promise to study its purity and peace?**

The minister may now briefly admonish those making a profession of faith as to the importance of the solemn obligations they have assumed; then baptism may be administered, if there be present any candidates for the ordinance, and the whole concluded with prayer.

57-6. Persons received from other churches by letters of dismissal as well as those being received by reaffirmation of faith should give a testimony of their Christian experience to the Session. Their names are to be announced to the congregation with a recommendation of them to its Christian confidence and affection.

만일 그 자리에 수세 후보자가 있으면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고 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표식이요 인침인 세례를 받아 교회에 영입되고자 하는 청원인들 중에, (이름을 부른다) 씨를 당회가 심사하고 승인하였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가족과의 교제 속에 들어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후 목사는 신앙을 고백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적으로 신앙고백을 하기 위해 여기 출석한 여러분 모두는, 다음의 선언과 약속에 찬동해야 합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 더불어 엄숙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1. 귀하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2. 귀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제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분만을 의지합니까?
3. 귀하들은 이제,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합니까?
4. 귀하들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받들기로 약속합니까?
5. 귀하들은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합니까?

여기서 목사는 신앙고백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 들인 엄숙한 책임의 중대성에 대해서 간단히 권면하고, 만일 수세 후보자가 있으면 세례를 베푸는 다음 기도로 모든 예식을 마친다.

57-6. 다른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받아 옴으로 [교회에] 영입된 사람들은 신앙을 재확인함으로써 교회에 영입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회 앞에서 그들의 신앙 체험을 증언해야 한다. [당회는] 그들의 이름을 회중 앞에 발표하며 회중이 신앙적 확신과 애정으로 [그들을 돌아보도록] 권장해야 한다.

CHAPTER 58

The Administration of the Lord's Supper

58-1. The Communion, or Supper of the Lord, is to be observed frequently; the stated times to be determined by the Session of each congregation, as it may judge most for edification.

58-2. The ignorant and scandalous are not to be admitted to the Lord's Supper.

58-3. It is proper that public notice should be given to the congregation, at least the Sabbath before the administration of this ordinance, and that, either then, or on some day of the week, the people be instructed in its nature, and a due preparation for it, that all may come in a suitable manner to this holy feast.

58-4. On the day of the observance of the Lord's Supper, when the sermon is ended, the minister shall show:

- a. That this is an ordinance of Christ; by reading the words of institution, either from one of the Evangelists, or from 1 Corinthians 11, which, as to him may appear expedient, he may explain and apply;
- b. That it is to be observed in remembrance of Christ, to show forth His death till He come; that it is of inestimable benefit, to strengthen His people against sin; to support them under troubles; to encourage and quicken them in duty; to inspire them with love and zeal; to increase their faith, and holy resolution; and to beget peace of conscience, and comfortable hopes of eternal life.

Since, by our Lord's appointment, this Sacrament sets fort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minister, at the discretion of the Session, before the observance begins, may either invite all those who profess the true religion, and are communicants in good standing in any evangelical church, to participate in the ordinance; or may invite those who have been approved by the Session, after having given indication of their desire to participate. It is proper also to give a special invitation to non-communicants to remain during the service.

제 58 장.

성찬 예식

58-1. 성찬, 또는 주의 만찬은 자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성찬예식 횟수는 각 회중의 당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한다.

58-2. [교리에] 무지한 자와 추문이 있는 자는 성찬에 참여 할 수 없다.

58-3. 이 성례전을 집행하려 할 때 적어도 한 주 전 주일에 회중에게 공고하고, [광고] 당일이나, 그 주간 어느 한 날에 신자들에게 성찬의 근본 뜻을 가르쳐, 올바른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태도로 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58-4. 성찬식이 있는 날 설교 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예식을 진행한다.
 ㄱ. 복음서나 고린도 전서 11 장에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봉독하여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증명하고, 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설명하며 적용한다;
 ㄴ.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행하는 것이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임을 증명한다; [또]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싸우는 힘을 주며, 고난 중에 그들을 붙들어 주며, 신자들의 의무수행을 격려하고 촉진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며, 그들의 믿음과 거룩한 결심을 강화하며, 양심의 평안과 위안이 되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 주는 데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성찬은 우리 주께서 정하신 대로 성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목사는 당회의 재량에 따라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진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복음주의 교회의 무흠 교인들을 예식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거나; 아니면, [성찬에] 참가할 의사를 [당회에] 알린 후, 당회에 승인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다. 또 비수찬 교인들에게도 예식 중 [자리에] 남아 있도록 특별한 초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58-5. The table, on which the elements are placed, being decently covered, and furnished with bread and wine, and the communicants orderly and gravely sitting around it (or in their seats before it), the elders in a convenient place together, the minister should then set the elements apart by prayer and thanksgiving.

The bread and wine being thus set apart by prayer and thanksgiving, the minister is to take the bread, and break it, in the view of the people, saying:

That the Lord Jesus Christ on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gave it to His disciples, as I, ministering in His name, give this bread to you,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Some other biblical account of the institution of this part of the Supper may be substituted here.)

Here the bread is to be distributed. After having given the bread, he shall take the cup, and say:

In the same manner, He also took the cup, and having given thanks as has been done in His name, He gave it to the disciples,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Drink from it, all of you."

While the minister is repeating these words, let him give the cup.

58-6. Since believers are to act personally in all their covenanting with the Lord, it is proper that a part of the time occupied in the distribution of the elements should be spent by all in silent communion, thanksgiving, intercession and prayer.

58-7. The minister may, in a few words, put the communicants in mind:

Of the grace of God, in Jesus Christ, held forth in this sacrament; and of their obligation to be the Lord's; and may exhort them to walk worthy of the vocation wherewith they are called; and, as they have professedly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that they be careful so to walk in him, and to maintain good works.

58-5. 떡과 포도주가 놓인 상은 단정하게 덮고, 수찬자들이 그 주위에 (혹은 그 앞의 자기 자리에) 질서 정연하고 엄숙하게 앉고, 장로들이 함께 편리한 곳에 앉으면 그 후 목사는 기도와 감사로 떡과 포도주를 성별 한다.

이와 같이 기도와 감사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한 후, 목사는 회중 앞에서 떡을 떼면서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음같이, 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성찬의 이 부분의 제정에 대한 성경의 다른 기록으로 대치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떡을 분배한다. 분병 후 잔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미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같이 사례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목사가 이 말들을 반복하는 동안 분잔한다.

58-6. 신자들은 주님과 맺은 그들의 모든 언약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므로, 성찬분배 시간 중의 일부를 모든 사람들이 고요한 [영적] 교통, 감사, 간구와 기도로 보내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

58-7. 목사는 간단한 말로 수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이 성찬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신자들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가 될 의무가 있다는 것; 또 수찬자들이 그들을 불러 주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 것과, 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공적으로 고백하여 [그들의] 주로 영접하였은즉, 조심하여 그리스도 안에 행하며 선한 일을 계속하도록 권면할 수 있다.

It may not be improper for the minister to give a word of exhortation also to those who have been only spectators, reminding them:

Of their duty, stating their sin and danger, by living in disobedience to Christ, in neglecting this holy ordinance; and calling upon them to be earnest in making preparation for attending upon it at the next time of its celebration.

Then the minister is to pray and give thanks to God,

For His rich mercy, and invaluable goodness, vouchsafed to them in that Sacred Communion; to implore pardon for the defects of the whole service; and to pray for the acceptance of their persons and performances; for the gracious assistance of the Holy Spirit to enable them, as they ha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to walk in Him; that they may hold fast that which they have received, that no man take their crown; that their conversation may be as becomes the Gospel; that they may bear about with them, continually, the dying of the Lord Jesus, that the life also of Jesus may be manifested in their mortal body; that their light may so shine before men, that others, seeing their good works, may glorify their Father who is in heaven.

An offering for the poor or other sacred purpose is appropriate in connection with this service, and may be made at such time as shall be ordered by the Session.

Now let a psalm or hymn be sung, and the congregation dismissed, with the following or some other Gospel benediction:

Now the God of peace, that brought again from the dead our Lord Jesus, that great Shepherd of the sheep, through the blood of the everlasting covenant, make you perfect in every good work to do His will, working in you that which is well pleasing in His sight,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58-8. As past custom has been found in many part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ur congregations are urged to have a service of spiritual preparation for the Lord's Supper during the week previous to the celebration of the Sacrament.

목사가 성찬식에 참관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사항] 상기시키며 권면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되, 그리스도께 불순종 하는 삶으로 인해 그들이 성례전을 등한시하는 죄와 위험성을 지적하고, 다음 성찬예식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진지한 준비를 하라고 권고한다.

그 후 목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린다:

이 성찬예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하심을 위하여; 전체 예식 중에 [있을 수 있는] 과오에 대한 사죄를 위하여; 수찬자들과 그 드리는 행위를 받아 주시기를 위하여; 그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들의 품행이 복음적으로 되도록; 그들이 주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다님으로서 그들의 죽을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들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성찬식과 연관시켜서 빈민구제나 그 밖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헌금 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며, 그런 순서는 당회의 명령에 따라 결정한다.

그 후 시나 찬송가를 부르고 회중은 다음과 같은 혹은 다른 복음적인 축도로 폐회한다:

이제는, 양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대들을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완전하게 만드사 그의 뜻을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대들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8-8. 장로교의 많은 부분에서 과거의 전통이 발견되고 있듯이, 우리의 회중들은 성례식이 있기 한 주 전부터 주의 성찬을 위한 영적 예배 준비를 하도록 강권한다.

CHAPTER 59

The Solemnization of Marriage

59-1. Marriage is a divine institution though not a sacrament, nor peculiar to the Church of Christ. It is proper that every commonwealth, for the good of society, make laws to regulate marriage, which all citizens are bound to obey insofar as they do not transgress the laws of God (Acts 5:29).

59-2. Christians should marry in the Lord; therefore it is fit that their marriage be solemnized by a lawful minister, that special instruction be given them, and suitable prayers offered, when they enter into this relation.

59-3. Marriage is to b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God.

59-4. The parties should be of such years of discretion as to be capable of making their own choice; and if they be under age, or live with their parents, the consent of the parents or others, under whose care they are, should be previously obtained, and well certified to the minister before he proceeds to solemnize the marriage.

59-5. Parents should neither compel their children to marry contrary to their inclinations, nor deny their consent without just and important reasons.

59-6. Marriage is of a public nature. The welfare of civil society, the happiness of families, and the credit of Christianity, are deeply interested in it. Therefore, the purpose of marriage should be sufficiently published a proper time previously to the solemnization to it. It is enjoined on all ministers to be careful that, in this matter, they obey the laws of the community to the extent that those laws do not transgress the laws of God as interpre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that they may not destroy the peace and comfort of families, ministers should be assured that, with respect to the parties applying to them, no just objections lie against their marriage.

59-7. The minister should keep a proper register of the names of all persons whom he marries, and of the time of their marriage, for the perusal of all whom it may concern.

제 59 장.

결혼 예식

59-1. 결혼은, 비록 성례전도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에 독특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다.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각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는 한 모든 시민이 마땅히 복종해야 할 결혼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사도행전 5:29).

59-2.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결혼] 관계를 맺을 때, 적절한 목사의 주례로 엄숙하게 결혼식을 올려야 하며, 특별한 교훈을 받으며, 적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적당하다.

59-3.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만 일남 일녀간에 맺어져야 한다.

59-4. 혼인 당사자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분별 연령이어야 한다; 만일, 나이가 어리거나 부모 슬하에 있으면, 그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며 확실히 증명된 후에, 목사는 엄숙한 혼인예식을 주례한다.

59-5. 부모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고 중요한 이유 없이 결혼에 동의할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59-6. 결혼은 본질상 공개적이다. 시민 사회의 복리, 가족들의 행복과 기독교의 신뢰도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적당한 때에 혼인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공고해야 한다. 이 일에 있어서, 미국장로교의 헌법이 해석하는 바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 사회의 법을 순종한다는 것과, 또 가족들의 평화와 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례를 신청하는 쌍방 당사자들에 관한, 그들의 결혼에 대하여 정당한 반대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 하는 일에, 모든 목사들은 주의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9-7. 목사는 자신이 결혼 시킨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결혼 시일을 기록한 적법한 등록부를 보관하여,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HAPTER 60

The Visitation of the Sick

60-1. The power of the prayer of faith is great, and Christians therefore should make entreaty for the sick at the throne of heavenly grace, and should also seek God's blessing upon all proper means which are being employed for their recovery. Moreover, when persons are sick, their minister, or some officer of the church, should be notified, that the minister, officers and members may unite their prayers in behalf of the sick. It is the privilege and duty of the pastor to visit the sick and to minister to their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welfare. In view of the varying circumstances of the sick, the minister should use discretion in the performance of this duty.

CHAPTER 61

The Burial of the Dead

- 61-1.** The services proper for such an occasion are:
- a. The singing of appropriate psalms or hymns;
 - b. The reading of some suitable portion or portions of Scripture, with such remarks as it may seem proper to the minister to make;
 - c. Prayer, in which the bereaved shall be especially remembered, and God's grace sought on their behalf, that they may be sustained and comforted in their sorrow, and that their affliction may be blessed to their spiritual good.
- 61-2.** The funeral services are to be left largely to the discretion of the minister performing them, but he should always remember that the proper object of the service is the worship of God and the consolation of the living.

제 60 장.

병자의 심방

60-1.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위대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서 병든 자를 위해 마땅히 강청의 기도를 해야 하며, 그들의 [치료]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합당한 방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플 때는, 그들의 목사, 또는 교회의 몇몇 직분자에게 알려져 목사, 직분자와 교인들이 병든 자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야 한다. 병든 자를 방문하며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안녕을 위해 수종 드는 것은 목사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병든 자의 다양한 상황을 참작하여, 목사는 이 의무를 수행할 때 슬기롭게 처신해야 한다.

제 61 장.

장례식

61-1. 장례식에 합당한 행사는 다음과 같다:

- ㄱ. 적절한 시나 찬송가를 부르는 것;
- ㄴ. 성경의 어느 적당한 부분, 혹은 부분들을 낭독하고, 목사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설명을 할 것;
- ㄷ.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유가족을 기억해야 하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 함으로, 그들이 슬픔 가운데서도 힘과 위로를 얻으며, 그들의 고통이 변하여 영적 유익이 될 것을 간구 한다.

61-2. 장례식 중의 행사들은 대체로 주례목사의 재량에 맡길 것이지만, 목사는 항상 장례식의 올바른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남은 자들을 위로하는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CHAPTER 62

Days of Fasting and Thanksgiving

62-1. The observance of days of fasting and of thanksgiving, as the dispensations of Divine Providence may direct, is both scriptural and rational.

62-2. Fasting and thanksgiving may be observed by individual Christians; by families; by particular congregations; by a number of congregations contiguous to each other; by the congregations under the care of a Presbytery; or by all the congregations of our Church.

62-3. It should be left to the judgment and discretion of every Christian and family to determine when it is proper to observe a private fast or thanksgiving; and to the church Sessions to determine for particular congregations; and to the Presbyteries, to determine for larger districts. When it is deemed expedient that a fast or thanksgiving should be general, the call for it should be issued by the General Assembly. If at any time the civil power should appoint a fast or thanksgiving, in keeping with the Christian faith, it is the duty of the ministers and people of our communion to pay all due respect to it.

62-4. Public notice should be given a sufficient time before the appointed day of fasting or thanksgiving, that persons may so order their affairs as to allow them to attend properly to the duties of the day.

62-5. There should be public worship upon all such days; and the prayers, psalms or hymns, the selection of Scripture, and sermons, should all be in a special manner adapted to the occasion.

62-6. On days of fasting, the minister should point out the authority and providences calling for the observance; and he should spend more than the usual time in solemn prayer, particular confession of sin, especially for the sins of the day and place; and the whole day should be spent in prayer and meditation.

62-7. On days of thanksgiving, he should give information respecting the authority and providences which call for the observance; and he should spend more than the usual time in giving thanks, agreeably to the occasion, and in singing psalms or hymns of praise. On these days, the people should rejoice with holy gladness of heart; but their joy should be tempered with reverence, that they indulge in no excess or unbecoming levity.

제 62 장.

금식일과 감사일

62-1. 하나님의 섭리의 경영을 따라 금식일과 감사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고 이성적이다.

62-2. 금식일과 감사일은 그리스도인 한 개인; 가족; 특정한 회중;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회중들; 노회 산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회중들; 또는 우리 총회의 모든 회중들이 지킬 수 있다.

62-3.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가정이 사사로이 금식일이나 감사일을 지킬 때, 적당한 시일의 결정은 그 개인이나 가족의 재량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 특정한 회중을 위해서는 그 교회의 당회가 결정하며; 광범위한 지역을 위해서는 노회가 결정한다. 금식일이나 감사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것을 위하여 총회가 소집하고 공포해야 한다. 만일 언제라도 정부 당국이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일치하는 금식일이나 감사일을 지정할 때, 목사들과 우리 [총회의] 신자들은 그에 합당한 모든 경의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62-4. 금식일이나 감사일이 결정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신변을 정돈하고 그 날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5. 그런 날에는 항상 공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기도와 시나 찬송가, 성경 본문 선택과 설교는 모두 그 날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마련해야 한다.

62-6. 금식일에는 목사가 이 날을 지키도록 소집하는 권위와 섭리적 [상황을] 지적하여 알린다; 그는 일상 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엄숙한 기도로, 특별한 그 날과 장소의 죄를 위하여 자복하는 특정한 죄의 고백을 위해 보낸다; 온 종일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야 한다.

62-7. 감사일에는 목사가 이 날을 지키도록 소집하는 권위와 섭리적 [상황에] 관해 알린다; 그는 일상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날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며, 시편을 노래하거나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 이런 날에 사람들은 거룩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하되, 기쁜 가운데도 경건을 지키며 방종이나 불미한 경박함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CHAPTER 63

Christian Life in the Home

63-1. In addition to public worship, it is the duty of each person in secret, and of every family in private, to worship God.

63-2. Secret worship is most plainly enjoined by our Lord. In this duty everyone, apart, should spend some time in prayer, reading the Scriptures, holy meditation, and serious self-examination. The many advantages arising from a conscientious performance of these duties are best known to those who are found in the faithful discharge of them.

63-3. Family worship, which should be observed by every family, consists in prayer, reading the Scriptures, and singing praises; or in some briefer form of outspoken recognition of God.

63-4. Parents should instruct their children in the Word of God, and in the principles of our holy religion. The reading of devotional literature should be encouraged and every proper opportunity should be embraced for religious instruction.

63-5. Parents should set an example of piety and consistent living before the family. Unnecessary private visits on the Lord's Day and indulgence in practices injurious to the spiritual life of the family, should be avoided.

63-6. In the supreme task of religious education, parents should co-operate with the Church by setting their children an example in regular and punctual attendance upon the sessions of the church school and the services of the sanctuary, by assisting them in the preparation of their lessons, and by leading them in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teachings of the Gospel in their daily activities.

제 63 장.

신자의 가정생활

63-1. 공예배 이외에, 각 사람은 은밀히, 각 가정은 사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가 있다.

63-2. 은밀한 예배는 주께서 가장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사람은, 구별하여, 기도, 성경 읽기, 거룩한 묵상과 진지한 자기 검증에 얼마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일들을 양심적으로 행하는 데서 오는 많은 유익은 진실한 실천가들이 가장 잘 안다.

63-3. 모든 가정은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이 가정 예배는 기도, 성경 읽기와 찬송으로 구성 된다; 혹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좀 더 간결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63-4.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신앙서적을 읽도록 장려해야 하며, 모든 적당한 기회를 붙잡아 신앙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63-5. 부모는 가족 앞에 경건과 일관성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주일에는 불필요한 사적 방문과 가족의 신앙생활에 유해한 일들에 빠져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

63-6. 신앙교육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위해, 부모는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일 학교와 예배시간에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출석하는 분을 보임으로, 자녀들의 학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또 자녀들이 복음의 교훈을 일관성 있게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함으로 교회와 협력해야 한다.

OPTIONAL FORMS FOR PARTICULAR SERVICES

These forms were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to be printed with the *Book of Church Order*, but not to be a part of the Constitution. They were derived from the PCUS Book as approved in 1893, and from the OPC Book as approved in 1940. Appendix G was adapted from forms used by the OPC and RPCNA.

APPENDIX A

MARRIAGE SERVICE

Whether the marriage is in the church or in a private house, the betrothed shall present themselves attended by witnesses, the man having the woman at his left hand, before the minister, who shall s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Numbers 6:24-26). If any here present can show just cause why these persons may not lawfully be joined together in marriage, let them now speak, or hereafter forever hold their peace.

Marriage is a divine ordinance instituted for the promotion of man's happiness and the glory of God. The sacredness of the relation is revealed by the fact that the Holy Spirit has selected it as an apt emblem of the union existing between our Lord and His bride, the Church. Hence, beloved friends, take heed to the exhortation of the inspired apostle,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also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it" (Ephesians 5:26). "Wives, submit to your own husbands, as to the Lord" (Ephesians 5:22). The happiness contemplated by this union is realized only by those who fully appreciate its sacredness and are faithful in the performance of the mutual obligations growing out of it, and seek daily God's blessing.

And now as you enter into this new relation, consecrated by heaven's benediction and hallowed by all that is tenderest and truest in human affection, I entreat you both to join with me in the prayer that God may bless this union, and sanctify it to the furtherance of your good and to the glory of His most holy Name.

특별 예식들을 위한 추가 양식들

이 양식들은 총회에 의해 인준을 받아 교회헌법과 함께 출판되었으나, 헌법의 일부는 아니다. 이것들은 1893년에 인준된 미국장로교(PCUS) 헌법과, 1940년에 인준된 정통 장로교회(OPC)헌법을 기초로 했다. 부록 “사”는 정통장로교회(OPC)와 개혁장로교회(RPCNA)가 사용하는 양식으로부터 채택되었다.

부록 가

결혼 예식 1

결혼식이 교회에서 있게 되든 개인 집에서 있게 되든, 혼약자들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주례자 앞에서 신랑은 신부를 그의 좌측에 서게 하고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6)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왜 이 두 사람이 합법적으로 결혼해서는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지금 말해 주십시오. 없으면, 이 후로는 영원히 잠잠하실 것입니다.

결혼은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결혼]의 신성함은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의 상징으로 이 [결혼] 관계를 선택하신 사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권면하던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엡 5:22).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추구하는 행복은, 오직 결혼의 신성함을 온전히 인식하고, 결혼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상호 간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며, 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현되어 집니다.

이제 그대들이, 하늘의 축복으로 성결하게 되고, 사람의 애정 속에 있는 가장 부드럽고 진실한 모든 것으로 기록해진, 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축복해 주시고, 그대들의 유익과 지극히 기록하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대들의 결혼을 성화 시켜주시기를 간구하는 나의 기도에 그대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APPENDIX A: MARRIAGE SERVICE

The Prayer

Most gracious God, fountain of life and love and joy, look with merciful favor upon these your servants now to be joined in holy wedlock, and enable them ever to remember and truly keep the vows which they make as they enter into covenant with one another and with you, in accordance with the Holy Wor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

The Covenant

Here the parties join their right hands, and the minister says:

Do you, M--, take N--, whom you now hold by the hand to be your lawful and wedded wife, and do you promise in the presence of God and these witnesses to be to her a faithful, loving and devoted husband, so long as you both shall live?

The man answers:

I do.

The minister shall say:

Do you, N--, take M--, whom you now hold by the hand to be your lawful and wedded husband and do you promise in the presence of God and these witnesses to be to him a faithful, loving and obedient wife, so long as you both shall live?

The woman answers:

I do.

If a ring is given and received, the minister shall say:

Let this ring be the token of your plighted faith, and the memorial of your mutual and unending love.

부록 가: 결혼 예식 1

기도

생명과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여, 이제 거룩한 혼인 예식을 통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오니, 이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고, 거룩한 말씀을 따라 이들이 서로와 또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는 이 맹세를 영원히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

혼인 당사자들은 오른 손을 마주 잡고,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_____군(씨)는 _____양(씨)를 그대의 합법적으로 혼인한 아내로 취하여,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대들이 사는 날 동안, 신실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남편이 될 것을 서약하느냐?

신랑 대답:

“예”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_____양(씨)은 _____군(씨)을 그대의 합법적으로 혼인한 남편으로 취하여,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대들이 사는 날 동안, 신실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느냐?

신부 대답:

“예”

반지를 손에 들고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반지는 그대들의 _____ 믿음의 표지요, 그대들의 서로를 [향한] 끝없는 사랑의 기념물이 되도록 하십시오.

APPENDIX A: MARRIAGE SERVICE

Then the minister, addressing himself to the company present, says:

Forasmuch as these persons have covenanted together in marriag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commonwealth, I do now pronounce them husband and wife, after the ordinance of God.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t man separate” (Matthew 19:6).

The Prayer

Almighty and ever blessed God, our heavenly Father, place the seal of your loving approval upon the union of these two hearts and lives in the sacred bonds of matrimony. Enable your servants, by the gift of thy sufficient grace to be faithful in keeping the vows they have now assumed. Whether in prosperity or in adversity, in sickness or in health, in sorrow or in joy, may their love and sympathy for each other never fail. Into your holy keeping we now commit them, praying that they may ever live “as being heirs together of the grace of life” (1 Peter 3:7). For Jesus’ sake. Amen.

Benediction

Then the married pair standing, or kneeling, the minister shall pronounce the benediction: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Ghost, bless, preserve, and keep you; the Lord mercifully with his favor look upon you, and so fill you with his grace that you may live faithfully together in this life and in the world to come may have life everlasting. Amen.

부록 가: 결혼 예식 1

그 후에 주례자는 회중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두 사람이 주정부의 법을 따라 결혼하기로 함께 언약을 맺었으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따라 이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히 송축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한 혼인 예식의 때로 이 두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연합 위에 사랑의 인을 쳐 주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이 종들에게 내려 주사 이제 이들이 서약한 맹세를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행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서로를 향한 이들의 사랑과 연민이 영원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거룩한 보호 아래 이들을 위탁하오며, 이 둘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들로”(벧전 3:7)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축도

그 후 결혼한 부부는 일어서거나, 무릎을 꿇고,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축도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대들을 축복하고, 보호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대들을 긍휼히 여겨 은총을 베푸시고, 그대들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그대들이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APPENDIX B

A SECOND MARRIAGE SERVICE

At the time and place appointed for the solemnization of matrimony, the persons to be married shall take their places before the minister, the man having the woman at his left hand, and all present reverently standing.

The minister shall say:

Dearly beloved, we are gathered here in the presence of God to join this man and this woman in holy matrimony.

Marriage was instituted by God himself in the time of man's innocence and uprightness.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 helper comparable to him" (Genesis 2:18). Thereupon God created woman of man's own substance and brought her to the man. Our Lord Jesus Christ honored marriage by His presence at the wedding in Cana of Galilee. And He confirmed it as a divine ordinance and a union not to be severed when He declared,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t man separate" (Matthew 19:6). Moreover, the apostle Paul set forth the sacred and exalted nature of marriage when he likened it to the mystical union that subsists between Christ and His Church.

The purpose of marriage is the enrichment of the lives of those who enter into this estate, the propagation of the race, and the extension of Christ's Church to the glory of the covenant God.

Let us reverently hear what the Holy Scriptures teach concerning the duty of husbands to their wives and of wives to their husbands: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also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it; that He might sanctify, and cleanse it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So husbands ought to love their own wives as their own bodies" (Ephesians 5:25-28).

"Wives, submit to your own husbands, as to the Lord. For the husband is head of the wife, as also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and He is the Savior of the body" (Ephesians 5:22-23).

These two persons are come to be joined in this holy estate of marriage. If any man can show just cause why they may not lawfully be wedded, let him now declare it, or else hereafter forever hold his peace.

I require and charge you both that, if either of you knows any cause why you may not be lawfully joined together in matrimony, you do now confess it.

부록 나

결혼 예식 2

엄숙한 결혼식을 위해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결혼 할 사람들은 주례자 앞에 서되, 신랑은 신부를 그의 좌측에 서게 하고, 모든 참석자들로 경건하게 서게 한다.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혼인 예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를 연합 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둘러 섰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 순전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 2:1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취하여 낸 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에 친히 참여 하심으로 결혼[예식]을 존증했습니다. 또 주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 19:6) 라고 선포하셨을 때, 결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이요 연합으로서 결코 나뉘 수 없는 것이라고 확인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 가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간에 있는 신비한 연합과 같다고 했을 때, 그는 결혼의 신성하고 고상한 본질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이 결혼으로 들어가는 당사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과, 종족을 보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언약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경건하게 경청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찌니라” (엡 5:25-28)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엡 5:22-23).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거룩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연합되고자 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이 두 사람이 적법하게 결혼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말할 것이요, 이 후로는 영원히 잠잠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대들 두 사람에게 부탁하고 권고합니다. 만일 그대들 중 누구라도 그대들이 적법하게 결혼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APPENDIX B: MARRIAGE SERVICE

Let us pray:

Most holy and most merciful Father, at once the God of nature and of grace, creator, preserver and redeemer of mankind, fill these, your servant and your handmaiden, with a sense of the solemnity of the vows they are about to make. May they look to you for your assistance, and enter into these sacred obligations in humble dependence upon your enabling grace. Grant this, O Father, with the forgiveness of our sins, through Jesus Christ, your Son. Amen.

After prayer the minister shall say:

Who gives this woman to be married to this man?

The father of the woman, or someone in his stead, shall place her right hand in that of the minister, and the minister shall cause the man to take with his right hand the right hand of the woman.

The minister shall then say:

M--, will you have this woman to be your wedded wife, to live with her after God's commandments in the holy estate of marriage? And will you love her, honor and cherish her, so long as you both shall live?

The man shall answer:

I will.

Then the minister shall say:

N--, will you have this man to be your wedded husband, to live with him after God's commandments in the holy estate of marriage? And will you love him, cherish and obey him, so long as you both shall live?

부록 나: 결혼 예식 2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시여, 만물과 은혜의 하나님, 창조주이시요, 인류의 보존자와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 이 두 사람이 맺고자 하는 언약에 대한 숭고한 의식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고 이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것을 허락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후에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가 이 신부를 이 신랑과 결혼하도록 내어 줍니까?

신부의 아버지 혹은 대리자가 신부의 오른 손을 주례자의 오른 손에 올려 놓고, 주례자는 신랑이 오른 손으로 신부의 오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그 후]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_____군은 신부를 그대의 결혼한 아내로 맞이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결혼한 부부로서 이 신부와 함께 살겠느냐? 또, 그대 둘이 사는 날 동안 신부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소중히 여겨 아끼겠느냐?

신랑 대답:

예

그 후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_____양은 신랑을 그대의 결혼한 남편으로 맞이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결혼한 부부로서 이 신랑과 함께 살겠느냐? 또, 그대 둘이 사는 날 동안, 신랑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 아끼며 그에게 순종하겠느냐?

APPENDIX B: MARRIAGE SERVICE

The woman shall answer:

I will.

The man shall say:

I, M--, take you, N--, to be my wedded wife, and I do promise and covenant before God and these witnesses to be your loving and faithful husband in sickness and in health, in plenty and in want, in joy and in sorrow, as long as we both shall live.

The woman shall say:

I, N--, take you, M--, to be my wedded husband, and I do promise and covenant before God and these witnesses to be your loving and faithful wife in sickness and in health, in plenty and in want, in joy and in sorrow, as long as we both shall live.

The man shall then put the ring on the third finger of the woman's left hand, and shall say after the minister:

This ring I give you as a symbol and pledge of constant faith and abiding love.

The minister shall say to the woman:

Do you, N--, receive this ring as a token of your pledge to keep this covenant and perform these vows?

The woman shall say:

I do.

The minister shall say:

Let us pray.

After prayer the minister shall say:

By virtue of the authority committed unto me by the church of Christ and the law of the state, I now pronounce you, M--, and N--, husband and wife,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부록 나: 결혼 예식 2

신부 대답:

예

신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_____는 _____양을 나의 정혼한 아내로 맞이하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한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대를 사랑하며 그 대에게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며 언약합니다.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_____는 _____군을 나의 정혼한 남편으로 맞이하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한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대를 사랑하며 그 대에게 신실한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며 언약합니다.

그 후 신랑은 반지를 신부의 좌측 손 세 번째 손가락에 끼워 주고 주례자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반지를 변함없는 믿음과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요 보증으로 그대에게 드립니다.

주례자가 신부에게 묻는다:

그대 _____양은 이 반지를 그대가 이 언약을 지키고 이 맹세를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증표로 받겠느냐?

신부 대답:

예

주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후에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주정부의 법으로 내게 주어진 권위를 의지해서, 이제 나는 그대들 _____군과 _____양이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APPENDIX C

A FUNERAL SERVICE

Let the service begin with the reading of the whole or a part of the following selections from Scripture: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may die, he shall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John 11:25).

Man who is born of woman is of few days, and full of trouble. He comes forth like a flower, and fades away; he flees like a shadow, and does not continue (Job 14:1).

For we are aliens and pilgrims before You, as were all our fathers; our days on the earth are as a shadow, and without hope (1 Chronicles 29:15).

We brought nothing into this world, and it is certain we can carry nothing out (1 Timothy 6:7).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Job 1:21).

Prayer of Invocation:

O God, You who are our God, and our fathers' God; You whose compassions fail not, but who are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grant us now your presence, we beseech you, that our souls may be strengthened, and that we faint not under your afflicting providence, but that through your condescension we may find all grace to help in this our time of need, which we ask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to whom, with You and the Holy Ghost, we will ascribe all honor, majesty and might, world without end. Amen.

Hymn.

Then let the whole or a part of the following selections of Scripture be read:

부록 다

장례 예식

장례 예식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본문 전체 혹은 일부를 읽음으로 시작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25).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 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욘 14:1).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대상 29:15)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딤후 3:7)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쯤니이다 (욘 1:21)

기도의 부름:

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지요, 이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 아래서 낙담치 말게 하옵시며, 굽어 보시는 하나님의 낮추심을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덧입게 하옵기를, 우리의 주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오며, 그 주님과 성부와 성령께 모든 존귀, 엄위와 능력, 나라가 영원토록 돌려지기를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

다음 성경 본문 전체 혹은 일부를 낭독한다:

APPENDIX C: FUNERAL SERVICE

Psalm 39:4-13:

Lord, make me to know my end, and what is the measure of my days, that I may know how frail I am.

Indeed, You have made my days as handbreadths, and my age is as nothing before You; certainly every man at his best state is but vapor. Selah.

Surely every man walks about like a shadow; surely they busy themselves in vain; he heaps up riches, and does not know who will gather them.

And now, Lord, what do I wait for? My hope is in You.

Deliver me from all my transgressions; do not make me the reproach of the foolish.

I was mute, I did not open my mouth, because it was You who did it.

Remove Your plague from me; I am consumed by the blow of Your hand.

When with rebukes You correct man for iniquity, You make his beauty melt away like a moth; surely every man is vapor. Selah

Hear my prayer, O Lord, and give ear to my cry; do not be silent at my tears; for I am a stranger with You, a sojourner, as all my fathers were.

Remove Your gaze from me, that I may regain strength, before I go away and am no more.

Psalm 90:1-12:

Lord,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in all generations.

Before the mountains were brought forth, or ever You had formed the earth and the world, even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You turn man to destruction, and say, "Return, O children of men."

For a thousand years in Your sight are like yesterday when it is past, and like a watch in the night.

You carry them away like a flood; they are like a sleep. In the morning they are like grass which grows up:

In the morning it flourishes and grows up; in the evening it is cut down and withers.

For we have been consumed by Your anger, and by Your wrath we are terrified.

You have set our iniquities before You, our secret sins in the light of Your countenance.

For all our days have passed away in Your wrath; we finish our years like a sigh.

시편 39:4-13: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한을 알게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옵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 뿐이니이다(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90:1-12: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간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췌 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APPENDIX C: FUNERAL SERVICE

The days of our lives are seventy years; and if by reason of strength they are eighty years, yet their boast is only labor and sorrow; for it is soon cut off, and we fly away.

Who knows the power of Your anger? For as the fear of You, so is Your wrath.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1 Corinthians 15:20-58:

But now Christ is risen from the dead, and has become the first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For since by man came death, by Man also came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For as in Adam all die, even so in Christ all shall be made alive. But each one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fruits, afterward those who are Christ's at His coming. Then comes the end, when He delivers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when He puts an end to all rule and all authority and power. For He must reign till He has put all enemies under His feet. The last enemy that will be destroyed is death. For "He has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But when He says "all things are put under Him," it is evident that He who put all things under Him is excepted. Now when all things are made subject to Him, then the Son Himself will also be subject to Him who put all things under Him, that God may be all in all.

Otherwise, what will they do who are baptized for the dead, if the dead do not rise at all? Why then are they baptized for the dead? And why do we stand in jeopardy every hour? I affirm, by the boasting in you which I have in Christ Jesus our Lord, I die daily. If, in the manner of men, I have fought with beasts at Ephesus, what advantage is it to me? If the dead do not rise, "Let u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die." Do not be deceived: "Evil company corrupts good habits." Awake to righteousness, and do not sin; for some do not have the knowledge of God. I speak this to your shame.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 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고전 15:20-58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 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 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 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 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APPENDIX C: FUNERAL SERVICE

But someone will say, “How are the dead raised up? And with what body do they come?” Foolish one, what you sow is not made alive unless it dies. And what you sow, you do not sow that body that shall be, but mere grain -- perhaps wheat or some other grain. But God gives it a body as He pleases, and to each seed its own body. All flesh is not the same flesh, but there is one kind of flesh of men, another flesh of beasts, another of fish, and another of birds. There are also celestial bodies and terrestrial bodies; but the glory of the celestial is one, and the glory of the terrestrial is another. There is one glory of the sun, another glory of the moon, and another glory of the stars; for one star differs from another star in glory. So also i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 body is sown in corruption, it is raised in incorruption. It is sown in dishonor, it is raised in glory. It is sown in weakness, it is raised in power. It is sown a natural body, it is raised a spiritual body. There is a natural body, and there is a spiritual body. And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However, the spiritual is not first, but the natural, and afterward the spiritual. The first man was of the earth, made of dust; the second Man is the Lord from heaven. As was the man of dust, so also are those who are made of dust; and as is the heavenly Man, so also are those who are heavenly. And as we have borne the image of the man of dust, we shall also bear the image of the heavenly Man. Now this I say, brethren, that flesh and blood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nor does corruption inherit incorruption.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d --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ncorruptible, and we shall be changed. For this corruptible must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So when this corruptible has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has put on immortality, then shall be brought to pass the saying that is written: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O Death, where is your sting? O Hades, where is your victory?”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strength of sin is the law.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labor is not in vain in the Lord.

Instead of the foregoing passage from 1 Corinthians 15,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ay be substituted as the occasion may require:

부록 다: 장례 예식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께서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면서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상기에 언급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대신에, 경우에 따라서 다음 말씀들로 대체할 수도 있다:

APPENDIX C: FUNERAL SERVICE

Ecclesiastes 12:1-7:

Remember now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before the difficult days come, and the years draw near when you say, "I have no pleasure in them": While the sun and the light, the moon and the stars, are not darkened, and the clouds do not return after the rain; in the day when the keepers of the house tremble, and the strong men bow down; when the grinders cease because they are few, and those that look through the windows grow dim; when the doors are shut in the streets, and the sound of grinding is low; when one rises up at the sound of a bird, and all the daughters of music are brought low; also when they are afraid of height, and of terrors in the way; when the almond tree blossoms, the grasshopper is a burden, and desire fails. For man goes to his eternal home, and the mourners go about the streets.

Remember your Creator before the silver cord is loosed, or the golden bowl is broken, or the pitcher shattered at the fountain, or the wheel broken at the well. Then the dust will return to the earth as it was, and the spirit will return to God who gave it.

Psalms 27: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of whom shall I be afraid? When the wicked came against me to eat up my flesh, my enemies and foes, they stumbled and fell. Though an army should encamp against me, my heart shall not fear; though war should rise against me, in this I will be confident.

One thing I have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For in the time of trouble He shall hide me in His pavilion; in the secret place of His tabernacle He shall hide me; He shall set me high upon a rock.

And now my head shall be lifted up above my enemies all around me; therefore I will offer sacrifices of joy in His tabernacle; I will sing, yes, I will sing praises to the Lord.

Here, O Lord, when I cry with my voice! Have mercy also upon me, and answer me. When You said, "Seek My face," my heart said to You, "Your face, Lord, I will seek." Do not hide Your face from me; do not turn Your servant away in anger; You have been my help; do not leave me nor forsake me, O God of my salvation. When my father and my mother forsake me, then the Lord will take care of me.

Teach me Your way, O Lord, and lead me in a smooth path, because of my enemies. Do not deliver me to the will of my adversaries; for false witnesses have risen against me, and such as breathe out violence. I would have lost heart, unless I had believed that I woul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Wait on the Lord; be of good courage, and He shall strengthen your heart; wait, I say, on the Lord!

전도서 12:1-7: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멧들길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멧들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 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향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시편 27: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찰찌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찌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 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 나는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APPENDIX C: FUNERAL SERVICE

Revelation 22:1-5:

And he showed me a pure river of water of life, clear as crystal, proceed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In the middle of its street, and on either side of the river, was the tree of life, which bore twelve fruits, each tree yielding its fruit every month. And the leaves of the tree we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And there shall be no more curse, but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shall be in it, and His servants shall serve Him. They shall see His face, and His name shall be on their foreheads. And there shall be no night there: they need no lamp nor light of the sun, for the Lord God gives them light. And they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Prayer:

Almighty and most merciful God, our heavenly Father, the consolation of the sorrowful and the support of the stricken, who does not willingly afflict the children of men, look in pity, we beseech you, on all upon whom You have laid your afflicting hand, and, in the multitude of Your tender mercies, be pleased to uphold and comfort them in the day of their trial and distress. Grant us all grace that we may lay to heart the lesson of this solemn providence, and work while the day lasts, knowing that the night comes, when no man can work; and that we may set our affections on things that are in heaven, and not on things that are on the earth. Enable us to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that 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we also may appear with Him in glory.

O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Lamb of God, which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to whom shall we go but to You?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You who were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have pity upon those who cry unto You. When our eyes grow dim in the shadows of death, and we pass through the deep waters, by Your agony and bloody sweat, and by Your death on Calvary, we beseech You to remember us. O You who have saved us forsake us not in the trying hour; You who has vanquished death, give us the victory, and bring us to Your own everlasting rest in the assembly of Your saints on high.

O God, the Holy Ghost, author of light and life and truth, inspire our souls with hope through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imparting the benefits of His atonement, and the power of His all-sufficient grace. Release us from our sins; fill us with the fruits of Your own indwelling, and form us anew in the image of God. Help us now, O blessed Comforter; heal our wounded spirits and do not despise our broken and contrite hearts.

부록 다: 장례 예식

요한 계시록 22:1-5: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 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 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기도:

전능하시고 가장 긍휼하신 하나님, 슬픈 자의 위로와 상한 자의 의지이시며, 의도적으로 인생을 괴롭히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간구 하노니 아버지께서 고통케 하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보옵시고, 아버지의 많은 인자와 긍휼로 환난과 낙심의 날에 기쁨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가 이 엄숙한 섭리를 통하여 마음에 교훈을 받게 하시며,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직 낮일 때에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를 능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게 하소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여, 우리가 주님 외에 그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슬픈 인자시며 깊은 슬픔을 익히 아시는 주께서는 주께 부르짖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이다. 우리의 눈 빛이 죽음의 그늘 아래서 쇠약하여 갈 때, 또 우리가 깊은 물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간구하노니, 주님의 고통과 피땀으로, 또 갈보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여 시험의 때에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죽음을 정복하신 자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 총회에 들어 가게 하사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빛과 생명과 진리의 주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속죄의 혜택을 덧입혀 주옵시며, 주님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 충족한 은혜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 하심으로 말미암는 열매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복되신 위로 자시여 지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부서지고 참회하는 마음을 떨치하지 마옵소서.

APPENDIX C: FUNERAL SERVICE

O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Triune Jehovah, have mercy upon us, Your servants, as we wait before You: and hear our prayer. Be pleased graciously to attend to our humble requests, and to do for us all that we need, glorifying Yourself by us both in this present world, and in that which is to come: all of which we ask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 ever. Amen.

Benediction: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After which the service may be concluded with a hymn. For service at the grave, see Appendix E.

부록 다: 장례 예식

오 아버지 하나님이지여, 아들 하나님이지여, 성령 하나님이지여, 삼위 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기쁨으로 은혜롭게 우리의 소박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을 쥬어다. 아멘.

이 후에 예배는 찬송으로 종료할 수 있다. 하관 예배는 부록 마를 보십시오.

APPENDIX D

A CHILD'S FUNERAL

Let the service begin with the reading of the whole or a part of the following selections from Scripture:

May the Lord answer you in the day of trouble; may the name of the God of Jacob defend you; may He send you help from the sanctuary, and strengthen you out of Zion (Psalm 20:1-1).

Man who is born of a woman is of few days, and full of trouble. He comes forth like a flower, and fades away; he flees like a shadow and does not continue (Job 14:1).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Job 1:21).

Come unto me, all you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atthew 11:28).

Prayer:

Father of mercies, God of all grace, ever comforting us by the tender assurance of Your love for all those whom you chasten, be near to us now in this hour of sorrow, as we come to cast our care upon You, and seek the strength and consolation You only can impart.

As a father pities His children, so do You pity those who sit before You, smitten and afflicted. As one whom his mother comforts, do You comfort them, and so sanctify to them this sorrow that theirs may be everlasting consolation.

O You who leads Joseph like a flock, who knows Your own sheep by name as they follow You, carrying the lambs in Your arms and folding them in Your bosom, it is not Your will that one of these little ones should perish. When You do send your messenger, like a gentle shepherd, to lead them into the heavenly pastures, may bereaved parents hear the voice which says,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forbid them" (Matthew 19:14). Fill them with resignation to Your will; give them the consolations of Your Spirit, and grant that, through Your grace, this chastening may be for their profit, that, being made partakers of Your holiness, they may be prepared for everlasting blessedness in that world where, after the separations and sorrows of this life, they may be forever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 Lord, through the merits and mediation of Jesus Christ, Your Son, our Savior. Amen.

Hymn.

The minister may read the whole or a part of the following selections:

APPENDIX D

부록 라

유아 장례 예식

장례 예식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본문 전체 혹은 일부를 읽음으로 시작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원하노라](시 20:1-2)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 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 14:1)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쟈니이다 (욥 1:2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기도:

공홀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징계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확신으로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하시여, 이제 이 슬픔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걱정을 내려 놓으며 주님께서만이 덧입혀 주실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구하오니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는 맞고 고통으로 [일그러져] 주 앞에 앉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이다. 어머니가 위로하듯이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이 슬픔을 거룩하게 하사 그들의 슬픔이 영원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자시여, 양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양들을 팔에 안아 나르시며 품 속에 안아 주시며, 주님의 양들의 이름을 아시는 주시여, 이 어린 영혼들이 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부드러운 목자처럼 그들을 천국의 초장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 19:14)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징계가 그들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사,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는 주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 세상의 이별과 슬픔 후에 그들이 영원히 서로 하나가 되며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의지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례자는 다음에 나오는 본문들 전체 혹은 일부를 낭독한다:

APPENDIX D: FUNERAL SERVICE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the still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runs over.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2 Samuel 12:16-23:

David therefore pleaded with God for the child, and David fasted and went in and lay all night on the ground. So the elders of his house arose and went to him, to raise him up from the ground. But he would not, nor did he eat food with them. Then on the seventh day it came to pass that the child died. And the servants of David were afraid to tell him that the child was dead. For they said, "Indeed, while the child was still alive, we spoke to him, and he would not heed our voice. How can we tell him that the child is dead? He may do some harm!" When David saw that his servants were whispering, David perceived that the child was dead. Therefore David said to his servants, "Is the child dead?" And they said, "He is dead." So David arose from the ground, washed and anointed himself, and changed his clothes; and he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and worshiped. Then he went to his own house; and when he requested, they set food before him, and he ate. Then his servants said to him, "What is this that you have done? You fasted and wept for the child while he was alive, but when the child died, you arose and ate food?" So he said, "While the child was still alive, I fasted and wept; for I said, 'Who can tell whether the Lord will be gracious to me, that the child may live?' 'But now he is dead; why should I fast? Can I bring him back again? I shall go to him, but he shall not return to me.'"

Isaiah 51:12, 66:13:

I, even I, am He who comforts you. . . .As one whom his mother comforts, so I will comfort you.

John 13:7:

What I am doing you do not understand now, but you will know after this.

시편 23편: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무엘 하 12:16-23: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앞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레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찌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체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 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 입고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이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어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1:12, 66:13: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요한복음 13:7: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APPENDIX D: FUNERAL SERVICE

Hebrews 12:5-7, 11-12:

My son, do not despise the chastening of the Lord, nor be discouraged when you are rebuked by Him; for whom the Lord loves He chastens, and scourg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If you endure chastening, God deals with you as with sons; for what son is there whom a father does not chasten? . . . Now no chastening seems to be joyful for the present, but grievous; nevertheless, afterward it yields the peaceable fruit of righteousness to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Therefore strengthen the hands which hang down, and the feeble knees.

Romans 8:15-18:

For you did not receive the spirit of bondage again to fear,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by whom we cry out, "Abba, Father." The Spirit Himself bears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and if children, then heirs--heirs of God and joint 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uffer with Him,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together. For I consider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

John 14:1-2: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Isaiah 40:1, 11: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 . .He shall feed his flock like a shepherd; He shall gather the lambs with His arm, and carry them in His bosom.

Mark 10:13-16:

Then they brought young children to Him, that He might touch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ose who brought them. But when Jesus saw it, He was greatly displeased and said to them,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forbid them;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God. Assuredly, I say to you,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will by no means enter it." And He took them up in His arms, put His hands on them, and blessed them.

부록 라: 유아 장례 예식

히브리서 12:5-7, 11-12: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너희 아버지께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 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로마서 8:15-18: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복음 14:1-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사야 40:1, 11: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찌니라

막 10:13-16: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APPENDIX D: FUNERAL SERVICE

Matthew 18:10-14:

Take heed that you do not despise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I say to you that in heaven their angels always see the face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ave that which was lost. What do you think? If a man has a hundred sheep, and one of them goes astray, does he not leave the ninety-nine and go to the mountains to seek the one that is straying? And if he should find it, assuredly, I say to you, he rejoices more over that sheep than over the ninety-nine that did not go astray. Even so it is not the will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that one of these little ones should perish.

Revelation 7:15-17:

Therefore they are before the throne of God, and serve Him day and night in His temple. And He who sits on the throne will dwell among them. They shall neither hunger anymore nor thirst anymore; the sun shall not strike them, nor any heat; for the Lamb who is in the midst of the throne will shepherd them and lead them to living fountains of waters. And God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Prayer:

O God, our heavenly Father, who through the blood of Your Son has provided redemption for all Your own, we would render to You most hearty thanks, in this our time of grief, for the sure confidence we have that the soul of this dear child whose loss we mourn is at rest in You. Not a sparrow falls to the ground without our Father, and those who are of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 cannot die until You, who regards with tender compassion the weakest of Your creatures, call them to Yourself. We would not sorrow as those who have no hope, but bow in humble submission to Your sovereign decree, and by divine grace would say, Your will be done.

Vouchsafe unto Your servants, we beseech You, the consolations of Your Spirit, giving us beauty for ashes, the oil of joy for mourning, and the garment of praise for the spirit of heaviness. May this chastisement which now seems so grievous yield us the peaceable fruits of righteousness, by drawing us into closer fellowship with You, that we may not set our affections on the things of this world; but upon that blessed home above, where all who have departed in Christ await us beyond the reach of sorrow.

Shine upon our darkness, O Lord; pardon all our sins; build us up and strengthen us in our most holy faith; and at last give us the victory over death, bringing us in holiness and joy to Your own eternal rest.

마태복음 18:10-14: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한 계시록 7:15-17: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기도: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성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우리가 어린아이를 잃고 애통해 하는 이 어린아이의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히 쉼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이 슬픔의 때에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피조물 중 가장 연약한 것을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돌아 보시는 아버지께서 많은 참새들보다 가치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부르시기 전에는 그들이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의 위로를 허락하사, 재 대신 아픔다움을, 슬픔 대신 회락의 기쁨을, 중압감 대신 찬양의 웃을 입혀 주소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슬프게 보이는 이 징계가, 아버지와 더 가까운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슬픔이 미칠 수 없는 하늘의 복된 집을 사모하게 하소서.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우리의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소서; 우리를 거룩함과 기쁨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 가게 해 주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APPENDIX D: FUNERAL SERVICE

Hear now our prayer, O God, and be pleased mercifully to bestow the blessings which we need,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Your well-beloved Son, to whom, with You and the Holy Spirit, be all dominion, glory and praise, world without end. Amen.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Benediction: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Hymn.

부록 라: 유아 장례 예식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하는 축복을 긍휼히 여기사 기쁨으로 내려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께 아버지와 성령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찬양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을 쩌어다. 아멘.

찬송.

APPENDIX E GRAVESIDE SERVICE

After the body has been lowered into the grave (or to sea), the following words may be said:

Forasmuch as it has pleased Almighty God, in His wise providence, to take out of this world the soul of our deceased (brother), we therefore commit (his) body to the ground; earth to earth, ashes to ashes, dust to dust: awaiting the hour when all who are in the graves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come forth, “those who have done good, to the resurrection of life and those who have done evil, to the resurrection of condemnation” (John5:29).

But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brethren, concerning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lest you sorrow as others who have not hope. For if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even so God will bring with Him those who sleep in Jesus (1 Thessalonians 4:13-14).

Then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ing to me, “Write: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Yes,” says the Spirit, “that they may rest from their labors, and their works follow them” (Revelation 14:13).

Prayer:

Almighty God, who has sanctified the grave by Your Son’s rest therein, and by His glorious resurrection has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to light, accept, we pray, our unfeigned thanks for the victory which He has obtained for us and for all who sleep in Him, and keep us who are still in the body, in everlasting fellowship with all that wait for You on earth, and with all that are around You in heaven, in union with Him who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 lives and reigns with You and the Holy Ghost, ever one God, world without end. Amen.

O Merciful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n whom whosoever believes, shall live, though he die; and whosoever lives and believes in Him, shall not die eternally; who also has taught us, by His holy Apostle Paul, not to be sorry, as men without hope, for those who sleep in Him; we humbly beseech You, O Father, to raise us from the death of sin unto the life of righteousness; that when we shall depart this life, we may rest in Him; and that, at the general resurrection in the last day, we may be found acceptable in Your sight; and receive that blessing, which Your well-beloved Son shall then pronounce to all who love and fear You, saying, Come, blessed children of my Father, receive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Grant this, we beseech You O merciful Father, through Jesus Christ, our Mediator and Redeemer. Amen.*

*This prayer is from John Knox's Liturgy.

부록 마 하관 예식

시신을 무덤 (혹은 바다) 속에 내린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로운신 섭리를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인 (형제)의 영혼을 이 세상에서 데려 가시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몸을 이 땅에 위탁합니다;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 가리이다 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 오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9)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잠자든 자들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 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그와 함께 데려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 4:13-14).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 14:13)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시여, 성자의 안식으로 무덤을 성화시키시고, 성자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생명과 불멸을 빛 가운데로 나아 오게 하신 하나님이지시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또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획득하신 승리를 인하여 드리는 우리의 가식 없는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이 육신 가운데 사는 우리를 지켜 주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천국에서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하옵시고, 부활과 생명이지시며, 지금도 살아서 성부와 성령, 곧 한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통치하실 주님과 연합되기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지시여;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위하여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 아버지지시여, 우리가 겸손히 간청하오니,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일으키사 의의 생명에 들어 가게 하소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 할 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열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때 아버지를 사알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아, 오라, 태초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지시여, 우리가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시오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 기도는 잔 나스의 예식서에서 발췌한 것임

APPENDIX E: GRAVESITE SERVICE

Benediction:

Now may the God of peace who brought up our Lord Jesus from the dead, that great Shepherd of the sheep, through the blood of the everlasting covenant, make you complete in every good work to do His will, working in you what is well pleasing in His sight,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Hebrews 13:20-21).

축도:

이제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 13:20-21).

APPENDIX F

THE DEDICATION OF A CHURCH BUILDING

The congregation shall stand, and the following portions from the Psalter shall be read by the presiding minister and the people responsively, or, if desired, by the minister alone.

Make a joyful shout to the Lord, all you lands!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s presence with singing. Know that the Lord, He is God; it is He who has made us, and not we ourselves; we are His people and the sheep of his pasture. Enter into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into His courts with praise. Be thankful to Him, and bless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His mercy is everlasting, and His truth endures to all generations (Psalm 100).

I was glad when they said to me, "Let us go into the house of the Lord." Our feet have been standing within your gates, O Jerusalem! Jerusalem is built as a city that is compact together, where the tribes go up, the tribes of the Lord, to the Testimony of Israel, to give thanks to the name of the Lord. For thrones are set there for judgment, the thrones of the house of David.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ey prosper who love you. Peace be within your walls, prosperity within your palaces." For the sake of my brethren and companions, I will now say, "Peace be within you." Because of the house of the Lord our God I will seek your good (Psalm 122).

How lovely is Your tabernacle, O Lord of Hosts! My soul longs, yes, even faints for the court of the Lord; my hear and my flesh cry out for the living God. Even the sparrow has found a home, and the swallow a nest for herself, where she may lay her young -- even Your altars, O Lord of hosts, my King and my God.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ouse; they will still be praising You. ... For a day in Your courts is better than a thousand. I would rather be a doorkeeper in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wickedness (Psalm 84:1-4, 10).

The earth is the Lord's, and all its fullness, the world and those who dwell therein. For He has founded it upon the seas, and established it upon the waters. Who may ascend into the hill of the Lord? 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nor sworn deceitfully.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This is Jacob, the generation of those who seek Him, who seek Your face. Selah. Lift up your heads, O you gates! And be lifted up, you everlasting doors! And the King of glory shall come in. Who is the King of glory? The Lord strong and mighty, The Lord mighty in battle. Lift up your heads, O you gates! And lift them up, you everlasting doors! And the King of glory shall come in. Who is this King of glory? The Lord of hosts, He is the King of glory. Selah (Psalm 24).

부록 바 교회 헌당 예배

회중이 일어서고, 사회를 하는 목사와 회중은 원하면 시편 중 다음 본문을 교독하거나, 목사 혼자 낭독할 것이다.

은 땅이여 어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대저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 100)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와 지파들이 여호와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찌어다 내가 내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찌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시 122)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 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 84:1-4, 10)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

APPENDIX F: DEDICATION OF A BUILDING

The minister shall say:

Beloved in the lord, we are gathered to consecrate and set apart this house for the worship of the one living and true God. Let us therefore dedicate this place to its proper and sacred uses.

Then the minister and the people shall say responsively:

To You, God and Father of Jesus Christ, our Lord:

We dedicate this house.

To You, eternal Son of God, Redeemer of Your people and Head of they church:

We dedicate this house.

To You, Spirit of God, lord and giver of life, our teacher, sanctifier and comforter:

We dedicate this house.

For the worship of God in praise and prayer;

For the preaching of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For the celebration of the holy Sacraments:

We dedicate this house.

For the diffusion of sacred knowledge;

For the promotion of righteousness;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God:

We dedicate this house.

For release of the captives;

For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For rest to the heavy laden:

We dedicate this house.

For comfort to those who mourn;

For strength to those who are tempted;

For assurance to those of little faith:

We dedicate this house.

For the sanctifying of the family;

For the nurture of the young;

For the perfection of believers:

We dedicate this house.

In gratitude for the gracious keeping of the divine covenant throughout past generations;

In reliance upon the promise that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the church;

In the hope of the eternal glory of the Church Triumphant

We dedicate this house.

부록 바: 교회 헌당 예배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집을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이 처소를 목적에 합당하고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헌신하십시오.

그 후 목사와 회중은 다음과 같이 교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이 집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주시오 그들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는 이 집을 봉헌합니다.

생명의 주요 시여자이요, 우리의 선생이시요, 성화자시요, 위로자 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이 집을 봉헌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성례의 잔치를 위하여;

우리는 이 집을 봉헌합니다.

신성한 지식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의를 조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집을 봉헌합니다.

간힌 자를 풀어 주기 위하여;

눈 먼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집을 봉헌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위로를 위하여;

시험을 받는 자들이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의 확신을 위하여;

우리는 이 집을 봉헌합니다.

가족의 성결을 위하여;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믿는 자들의 완전함을 위하여;

우리는 이 집을 봉헌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롭게 지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교회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집을 봉헌합니다.

APPENDIX F: DEDICATION OF A BUILDING

Then the minister shall say:

Beloved in the Lord, seeing that it has pleased Almighty God to prosper us in our undertaking to build (or secure) a house for His worship, let us now invoke upon it His abiding blessing, to the end that pure apostolic doctrine and order may be maintained herein, and that the Holy Spirit may make His own ordinances effectual. In so doing let us reverently set this house apart for these sacred uses with prayer and supplication.

Let us pray:

Almighty and everlasting God, maker of heaven and earth, who dwells in the high and holy place, with Him also who is of contrite and humble spirit, we adore You for Your manifold perfections, for the infinite majesty and glorious beauty of Your being, and for the truthfulness and sanctity of Your divine revelation.

We give thanks unto You for Your infinite mercies to us, and, in particular, for the gift of Your Son to be our Saviour. We praise You for the Church of God, of which He is the only Head and King and of which we are humble and unfaithful members. We acknowledge that we are not worthy to receive from Your hand the blessings of Your common grace; and especially do we recognize the abundance of Your great goodness in granting to us, through Your particular grace, membership in the Church Universal, the mystical Body of Christ.

You have put it into our hearts to prepare this house of worship where men may gather in Your service. We earnestly beseech You that You will watch over and protect this place which we have dedicated in Your name. We ask that here may be preached only the pure Gospel of the free grace of God. May all that is proclaimed be firmly grounded upon the unchanging foundation of Holy Scripture. Grant that no portion of Your sacred revelation to man may be neglected but that Your servants who minister here shall give to all its parts that due regard which will exhibit its majesty and scope. We pray that by the favor of Your Spirit sinners may in this house be converted unto You, and that the saints of God, the members of Your holy body, may be built up and edified by the proclamation of Your matchless Word.

May the Holy Spirit of God, the third person of the blessed Trinity ever be present to guide, illumine and inform those who teach here. May He prepare the hearts of the hearers to receive with meekness the instruction which is presented, so that their lives may show forth the wonders of His grace and truly adorn the doctrin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부록 바: 교회 헌당 예배

그 후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집을 건축하는 (개축하는) 우리의 역사를 행통하게 하기를 기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같이 이 집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도록 기도하여, 순수한 사도의 가르침과 규례가 계속 유지되게 하며,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거룩한 용도를 위하여 이 집이 경건하게 구별되도록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지여, 참회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완전하심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엄위와 존재하심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의 계시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무한하신 긍휼과,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시오 왕이시며, 우리는 천박하고 불성실한 지체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히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을 자격이 없을 인정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의 풍성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집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헌한 이 곳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수한 복음만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불변하는 성경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진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어떤 부분도 소홀이 여김을 받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이 곳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이 보여주는 계시의 위엄과 범주에 합당한 관심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성령의 은총으로 이 집에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몸의 지체들이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복되신 삼위일체 중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곳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며, 지식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게 되신 교훈을 은유함으로 받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나타내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주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옷 입게 하옵소서.

APPENDIX F: DEDICATION OF A BUILDING

Bless this Your house that it may serve without surcease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God. Teach us to look for the return of the Lord of glory that we shall be quickened day by day in our present service of Him, and shall be always prepared to greet Him and to enter in with Him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forever to dwell in that holy city where there is no candle neither light of the sun for the Lamb is the light thereof.

Now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o God who alone is wise, be honor and glory forever and ever. Amen (1 Timothy 1:17).

An offering to the Lord may then be received.

After the singing of an appropriate psalm or hymn, a sermon shall be preached.

부록 바: 교회 헌당 예배

이 하나님의 집을 축복하사 중단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기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하루 소생함을 받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와 함께 들어 가서, 촛불이나 햇빛이 없고, 어린 양이 친히 빛이신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딤펴전 1:17)

이 후 주께 드리는 헌금을 받을 수 있다.

적절한 시편이나 찬송을 부른 후에 설교한다.

APPENDIX G
SUGGESTED FORMS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RULES OF DISCIPLINE

I

CHARGE AND SPECIFICATIONS

In the nam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_____ (title of the trial judicatory) charges _____ with _____ (name the alleged offense): _____ (give references to applicable portions of the Word of God, and, where pertinent, to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gainst the peace, unity and purity of the Church, and the honor and majesty of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King and Head thereof.

Specifications: That on or about _____ the said _____ did _____ (set forth briefly the place and circumstances of the alleged offense).

Witnesses and/or Documents: _____ (set forth the names of witnesses and/or titles of documents to be produced in support of the charge and specifications).

_____ (Moderator)

_____ (Clerk)

Date: _____

부록 사
권징시 사용하도록
제안된 양식들

I

고소장과 설명서

미국 장로회의 이름으로 _____ (재판 처리회의
직위)는 _____ 씨를 _____ (주장되는 범죄 내용)로
고소합니다: _____ (하나님의 말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헌법의 적절한 규정을 참조로 제시함)에 의거,
교회의 평화와 연합과 순결을 해치며, 교회의 왕과 머리되신 주 예수 그
리스도의 존귀와 엄위를 훼손했습니다.

설명: _____ 에 관해서 혹은 대해서 [상기에] 언급
된 _____ 씨는 _____ 을 했다 (주장되고 있는
범죄의 장소와 상황을 간략하게 진술한다).

증인과/또는 증빙서류: _____ (증
인과/또는 고소 내용과 세부 내용을 뒷받침 할 증빙서류의 제목을 진술한
다).

_____ (의장)

_____ (서기)

날자: _____

APPENDIX G: FORMS FOR JUDICIAL DISCIPLINE

II

CITATION OF ACCUSED

To _____:

You are hereby cited to appear before _____, meeting on _____ at _____ o'clock at _____, then and there to hear and receive certain charges and specifications which have been preferred against you by _____ (here insert the title of the trial judica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n the case of a second citation, add the appropriate warning prescribed by *BCO* 32-6.)

By order of _____ (insert the title of the trial judica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_____(Moderator)

_____(Clerk)

Date: _____

II

피고인 소환장

_____ 에게:

귀하는 이로써, _____ 에서 있게 될 회의에 _____ 일, _____ 시에 _____ 앞에 출두하여, 미국 장로회의 _____ (여기에 재판 치리회의 직위를 삼입할 것)가 귀하를 거스려서 제기된 특정한 고소 내용과 설명을 청문하고 수용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환장의 경우에는, *교회헌법* 32-6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경고를 추가할 것)

미국 장로회의 _____ (재판 치리회의 직위를 삼입할 것)의 명령에 의함.

_____ (의장)

_____ (서기)

날자: _____

APPENDIX G: FORMS FOR JUDICIAL DISCIPLINE

III

CITATION OF WITNESS

To _____:

You are hereby cited to appear before _____, meeting on _____ at _____ o'clock, at _____, then and there to give evidence in the trial of _____ (here insert the name of the accused.)

(In the case of a second citation of a witness who has failed to appear after one citation, add the warning prescribed in *BCO* 32-6.)

By order of _____ (here insert the title of the trial judica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_____ (Moderator)

_____ (Clerk)

Date: _____

III

증인 소환장

_____ 에게:

귀하는 이로써, _____에서 있게 될 회의에 _____
일, _____시에 _____앞에 출두하여,
_____ (여기에 피고의 이름을 삽입 할 것)의 재판에 증거
를 제출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첫번째 소환 이 후 출두하지 못한 증인의 두 번째 소환일 경우,
교회헌법 32-6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경고를 추가할 것)

미국 장로회의 _____(재판 치리회의 직
위를 삽입할 것)의 명령에 의함.

_____ (의장)

_____ (서기)

날자: _____

APPENDIX G: FORMS FOR JUDICIAL DISCIPLINE

IV

NOTICE OF INTENTION TO APPEAL

To _____, Clerk of _____ (here insert the title of the judicatory form which the appeal is to be take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now, this _____ day of _____, A.D. _____, comes _____ and gives notice of intention to appeal to _____ from the judgment of _____ in the case of _____ (here insert the name of the accused).

_____ Appellant

Date: _____

IV

상소 의지 통고서

미국 장로회의 _____ (여기에 상소를 받은 재판 치리회 양식의 직위를 삽입 할 것) 서기 _____ 에게.

이제, 주후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 날에, _____와서 _____ (여기에 피고의 이름을 삽입할 것) 의 소송건에 있어서 _____의 판결에 대해서 _____에게 상소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합니다.

_____ 상소인

날자: _____

APPENDIX G: FORMS FOR JUDICIAL DISCIPLINE

V

APPEAL

To _____, Clerk (or Moderator) of _____
(here insert the title of the judicatory to which the appeal is take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now, this _____ day of _____, A.D.
_____, comes _____ and
appeals from the judgment of _____ in the case of
_____ (here insert the name of the accused), and in support of said appeal sets
forth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of error:

_____ (Here insert the title of the judicatory
from which the appeal is take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erred in
_____ (here state concisely the error
alleged to have been made).

(Additional specifications of error may be filed).

_____ Appellant

Date: _____

V

상소장

미국 장로회의 _____ (여기에 상소를 받은 재판 치리회 양식의 직위를 삽입 할 것) 서기 (혹은 의장) _____ 에게.

이제, 주후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이 날에, _____ 와서 _____ (여기에 피고의 이름을 삽입할 것) 의 소송건에 있어서 _____ 의 판결에 대해 상소하며, 언급된 상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에 나오는 설명 상의 오류를 진술합니다.

미국 장로회의 _____ (여기에 상소를 받은 재판 치리회 양식의 직위를 삽입 할 것)는 _____ (여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에 오류를 범했습니다.

(설명상의 오류를 추가로 접수 할 수 있음)

_____ 상소인

날자: _____

APPENDIX G: FORMS FOR JUDICIAL DISCIPLINE

VI

COMPLAINT

To _____, Clerk of _____ (here insert the title of the judicatory to which the complaint is take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now, this _____ day of _____, A.D. _____, comes _____ and complains against the action (or delinquency) of _____ in connection with _____ (here state briefly the matter of which complaint is made), and in support of said complaint sets forth the following reasons:

(Here set forth concisely in numbered paragraphs the reasons for the complaint).

_____, Complainant

Date: _____

VI

소원장

미국 장로회의 _____ (여기에 고소를 제기 받은 재판 치리회의 직위를 삽입 할 것) 서기 _____ 에게.

이제, 주후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이 날에, _____ 와서 _____ (여기에 소원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진술할 것)와 연관된 _____ 의 조치 (혹은 직무 유기)에 반대하여 소원을 내며, 언급된 소원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소원을 위한 이유들을 번호를 붙인 문단으로 진술할 것)

_____ 소원인

날자: _____

APPENDIX H

**SUGGESTED PROCEDURES FOR
PRESBYTERY JUDICIAL COMMISSIONS
ACTING AS APPELLATE COURTS**

1. These procedures are suggested when a Presbytery, as an appellate court, decides that an appeal or complaint arising from a Session is in order, and in accordance with *BCO 15*, chooses to appoint a Judicial Commission to hear the case. The Presbytery Stated Clerk shall promptly notify the parties of the names of the Commission members and the initial contact information. (See flowchart.)
2. A hearing shall not be conducted until the Commission determines that the Record of the Case is complete (perfected), the parties have had opportunity to file briefs, and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have had adequate time to read the Record and all briefs.
3. The convener or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convene the first meeting within 10 days of the Presbytery meeting at which the Commission was appointed. This meeting may be held the same day Presbytery appoints the Commission. At this convening meeting the Commission shall elect its chairman and secretary, unless Presbytery had previously appointed them. In addition to other preliminary matters, the Commission may discuss potential dates for a hearing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cord. The chairman shall promptly notify the parties of all addresses necessary for filing purposes.
4. Conference calls are acceptable for all Commission meetings other than the hearing. This includes the meetings to: 1) convene the Commission, 2) resolve disputes on the Record, 3) adopt a Judgment, and 4) adopt a written decision and approve minutes.
5. At its discretion and with the consent of both parties, the Commission may decide to accept email, fax or similar means for filings after establishing procedures to confirm the date that a document is filed and received.
6. Record of the Case – After the Commission is appointed, the Presbytery Stated Clerk shall promptly ensure delivery of the Record to each Commission member and to all parties to the case. It shall be delivered to the appellant/complainant in person or in some other manner providing verification of the date of receipt. If the appellant/complainant believes the Record is incomplete or incorrect,

부록 아
노회 법사 전권위원회가
상소 처리회로 대행하기 위한
절차 제안

1. 이 절차들은, 상소 처리회로서, 노회가 당회에서 올라온 상소나 고소가 법대로 되었고 헌법 15 와 일치하다고 결정하고, 소송건을 청문하기 위하여 법사 전권위원회를 임명하기로 선택했을 때를 위한 제안이다. 노회 서기는 즉시로 전권위원들의 이름과 첫 연락 정보를 양쪽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표 참조.)
2. 청문은 전권위원회가 소송 기록이 완전하고 (완료됨), 양쪽 당사자들이 개요를 접수 시킬 기회가 있었으며, 전권위원회 회원들이 소송 기록과 모든 개요를 읽을 수 있기에 적합한 시간을 취하게 될 때까지 시행될 수 없다.
3. 전권위원회 소집자 혹은 위원장은 전권위원회가 임명을 받은 노회 때부터 10 일 내에 첫 모이퐁르 소집해야 한다. 이 회의는 노회가 임명한 동일일에 소집 될 수도 있다. 이 소집되는 회의에서 전권위원회는 노회가 사전에 전권위원회의 의장과 서기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선출한다. 다른 예비 사항에 추가로, 전권위원회는 가능한 청문 날짜와 소송기록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토론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즉시로 서류 접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주소들을 쌍방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4. 청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전권위원회 모임을 위하여 전화 회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1) 전권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2) 소송 기록에 있는 해결하기 위한, 3) 판결을 채택 하기 위한, 그리고 4) 서면 의결을 채택하고 회의록을 인준하기 위한, 회의들을 포함한다.
5. 서류를 접수하고 수취 하여야 할 날짜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들이 확립된 후에는, 쌍방 당사자들의 재량과 동의로, 전권위원회는 서류 접수를 위하여 이메일, 팩스, 혹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6. 소송 기록 전권위원회가 임명되고 난 후, 노회 서기는 즉시로 소송 기록이 전권위원회 각 위원과 소송 쌍방 당사자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상소자/고소자에게 인편으로, 아니면 수취일을 증명해 주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만일 상소자/고소자가 소송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믿으면, 그 당사자는 그런 소송 기록을 접수 한 때부터 14 일 내에,

APPENDIX H: APPELLATE COURTS

he shall, within 14 days of receiving such Record, file written notice with the Commission and with the Session (clerk or respondent). Such notice shall specify the alleged defects and suggestions for corrections. Failure to file a timely objection will constitute acceptance of the Record. Within 14 days of receiving such written notice, the Session shall file a written response with the Commission and with the appellant/complainant. The chairman shall promptly send to the commissioners the notice of objection and the Session's response. If no objection is filed, the parties are considered to have received the perfected Record on the day they received the original Record.

7. Resolving Disputes on the Record - If the Session agrees to any suggested correction, the Record shall be revised accordingly. If the Session does not agree to a suggested correction, the Commission shall consider the written arguments of both parties and rule whether the change(s) should be made. This ruling shall be made within 14 days of when the Commission received the Session's response and the chairman shall promptly notify the parties of the ruling. If the original Record is revised, the chairman shall ensure both parties receive the perfected Record and the date of its receipt shall be recorded. In this event, the chairman shall also ensure the commissioners receive copies of the revision.

8. Filing Briefs - After the Record has been perfected, the parties may file briefs with the Commission. Such briefs are optional and additional to the notice of appeal/complaint (*BCO* 42-4, 43-3) and to the Session's initial response (*BCO* 42-5, 43-6).

1. The appellant/complainant's brief shall be filed no later than 14 days after he receives the perfected Record (or the original Record if undisputed.) The Commission will immediately send this brief to the Session and the delivery date shall be recorded. The chairman will promptly send this brief to the commissioners.
2. The Session's brief shall be filed no later than 28 days after it receives the perfected Record (or the original Record if undisputed) or 14 days after it receives the appellant/ complainant's brief, whichever is later. The Commission will immediately send this brief to the appellant/complainant. The chairman will promptly send this brief to the commissioners.

부록 아: 상소 처리회

전권위원회와 당회(서기나 응답자)에 통보서를 서면으로 접수 시켜야 한다. 그런 통보서는 주장하는 바 결함과 바로잡기 위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시간 내에 반대를 접수 시키지 못하면 소송 기록은 수용된 것으로 설립된다. 그런 서면 통보서를 14 일 내에 수취하면, 당회는 전권위원회와 상소자/고소자와 함께 서면 응답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즉시 전권위원들에게 반대 통보서와 당회의 응답서를 보내야 한다. 만일 반대가 없다면, 쌍방 당사자들은 그들이 소송기록 원본을 받은 날 완전한 소송 기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7. 소송 기록에 관한 논쟁 해결 - 만일 당회가 제안된 정정안에 동의하면, 소송기록은 맞추어서 수정된다. 만일 당회가 제안된 정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권위원회는 쌍방 당사자의 서면 주장을 고려하고 변경 시켜야 할 것인지를 판정한다. 이 판정은 전권위원회가 당회의 응답을 받은 때로부터 14 일 내에 내려져야 하고 위원장은 신속히 판정을 쌍방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만일 소송 기록 원본이 수정되었으면, 위원장은 쌍방 당사자들이 완전한 소송 기록을 접수하도록 확인하고 접수일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수정판의 사본을 접수 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8. [소송] 개요 접수 - 소송 기록이 완성된 후에, 쌍방 당사자들은 전권위원회에 [소송] 개요를 접수 시킨다. 그런 [소송] 개요는 상소/고소 통보장(헌법 43-4, 43-3)과 당회의 첫 응답(헌법 45-5, 43-6)에 선택적으로 추가 할 수 있다.

1. 피고와 원고의 개요는 당사자가 완전한 소송 기록 (혹은 논쟁이 없을 경우 소송기록 원본)을 접수 한 후 14 일 이내에 접수 시켜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즉시로 이 개요를 당회로 보내고 배송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2. 당회의 개요는 당회가 완전한 소송 기록 (혹은 논쟁이 없을 경우 소송기록 원본)을 접수 한 후 28 일 이내에 접수 시키거나, 당회가 상소/고소의 개요를 접수 한 후 14 일 이내로, 더 늦은 쪽으로 한다. 전권위원회는 즉시로 이 개요를 상소자/고소자에게 보내야 한다. 위원장을 이 개요를 신속히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APPENDIX H: APPELLATE COURTS

3. The Commission should not schedule the hearing for sooner than 42 days after the date the parties receive the perfected Record (or the original Record if undisputed), unless both parties, in writing, waive their right to file briefs.
4. The briefs shall include the party's position with regard to: a summary of the facts, a summary of the proceedings before the Session, a proposed statement of the issue(s), the proposed judgment & relief, and the argument in favor of judgment & relief.
5. No brief shall make reference to any evidence not already part of the perfected Record. The Commission may, at its discretion, strike the part of any brief that makes such reference. Parties may petition the Commission to strike any alleged new evidence from a brief. At the same time, briefs may mention and the Commission may take judicial notice of facts not subject to reasonable dispute.
6. A brief is limited to 10 pages. It must be typewritten on 8 1/2 x 11-inch paper, with 1-inch margins on all sides, and no smaller than 10-point type. Any brief that does not meet these standards of form shall be returned to the sending party with reasons. If this occurs, a revised brief may be submitted, provided such brief is filed with the Commission within 5 days of when the party received notification that the brief did not meet the standard of form.
9. Before the hearing begins, the chairman shall call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to order and he shall:
 1. Open the meeting with prayer and certify a quorum is present.
 2. Ask each member individually if he has read the Record and all briefs. Any member who cannot affirm such is disqualified from deliberating and voting.
 3. Remind the members to disregard all evidence not in the Record, even though such evidence may be found in the briefs of the parties or in oral argument.
 4. Read to the members the four principles adopted as Standards of Review in *BCO 39-3*.
10. During the hearing:
 1. Before arguments begin, commissioners may question the parties on any matter before the court.

부록 아: 상소 처리회

3. 전권위원회는 쌍방 당사자들이 완전한 소송 기록 (혹은 논쟁이 없을 경우 소송기록 원본)을 접수 한 후 42 일 이내에 청문 일정을 잡을 수 없으나, 쌍당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소송] 개요를 접수 시킬 수 있는 권리를 포기 했을 때는 예외이다.
 4. [소송] 개요는 다음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포함해야 한다: 사실 요약, 당회 앞에서 [재판] 진행 요약, 상정된 문제(들)의 진술, 상정된 판결과 구제 [조치], 그리고 판결과 구제 [조치]를 선호하는 주장.
 5. [소송] 개요는 완전한 소송 기록의 일부로 제시되지 않은 어떤 증거도 참고 할 수 없다. 전권위원회는, 재량으로, 소송 개요에서 그런 참고 언급이 있는 부분을 삭제 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들은 전권위원회에 [소송] 개요에 있는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되는 어떤 것도 삭제 해 줄 것을 호소 할 수 있다. 동시에, [소송] 개요가 언급한 것을 전권위원회가 합리적 논쟁 하에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주목 할 수 있다.
 6. [소송] 개요는 10 페이지로 제한 된다. 8 ½ X 11 인치 타이프 용지여야 하고, 사면으로 1 인치의 여백을 두어야 하며, 글자 크기는 포인트 10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이 표준 양식에 맞지 않는 어떤 [소송] 개요도 이유와 함께 우송 당사자에게 반송된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수정된 [소송] 개요를 제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정된 개요는 당사자가 소송 개요가 표준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때부터 5 일내에 전권위원회에 접수 되어야 한다.
9. 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위원장은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명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기도로 개회하고 출석 성수가 됨을 확인 한다.
 2. 각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소송 기록과 모든 [소송] 개요를 읽었는지 질문 한다. 그렇다고 확인 할 수 없는 회원은 어느 누구도 심의와 투표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3. 회원들에게 소송 기록에 없는 모든 증거는, 그런 증거가 쌍방 당사자들의 개요들 혹은 구두 주장에서 발견된다 할 지라도, 무시 할 것을 상기 시킨다.
 4. **헌법 39-3** 의 검토의 표준으로 채택된 네 가지 원리들을 회원들에게 읽어준다.
10. 청문 시:
1.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처리회 앞에서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쌍방 당사자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질문 할 수 있다.

APPENDIX H: APPELLATE COURTS

2. The arguments shall be heard in the following order: 1) the appellant/complainant opens, 2) the Session responds, and 3) the appellant/complainant closes. Each party should be present to hear the arguments of the other.
3. A party shall have a maximum of 30 minutes to argue his case. For the appellant/complainant, these 30 minutes are inclusive of both his opening and closing arguments. He may divide that time as he chooses.
4. At any time during which a party is presenting an argument, a commissioner may ask questions of that party. The time taken for such questions shall not form a part of the argument time of the party questioned.

11. Judgment - As soon as possible after hearing oral arguments, the Commission shall go into closed session and discuss the issues in the case. In that discussion, the Commission may frame the issues and vote on a Judgment. Or, the Commission may adjourn and reconvene within the next 10 days, as often as necessary, to do so.

12. Written Decision - After the Judgment is adopted, the chairman shall designate a member who voted with the majority to draft the written decision. If the chairman did not vote in the majority, the majority will select their own drafter. The decision shall contain four parts:

1. Summary of Facts (chronological summary of relevant history and facts bearing on case)
2. Statement of the Issue(s) (concise framing by the court of specific issue(s) being judged in case)
3. Judgment (definite conclusion rendered on the specific issue(s) being adjudged)
4. Reasoning and Opinion (reasons for judgment rendered and resolution of any disputed facts)

The drafter of the decision shall send it to the commissioners promptly enough so that within 21 days of adopting the Judgment, the Commission shall adopt a written decision and approve the minutes of its meetings. Any Commission member may file a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부록 아: 상소 처리회

2. 논쟁은 다음의 순서로 청문되어야 한다: 1) 상소인/고소인이 시작한다, 2) 당회가 응답한다, 그리고 3) 상소인/고소인이 종결한다. 각 당사자는 출석해서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청문해야 한다.
3. 한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건을 위하여 최고 30 분을 사용 할 수 있다. 상소인/고소인을 위한 이 30 분에는 논쟁을 시작과 종결이 다 포함된다. 당사자는 시간을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나누어서 사용 할 수 있다.
4. 한 당사자가 논쟁을 진행하는 동안 언제라도 전권위원회 회원이 그 당사자에게 질문 할 수 있다. 그런 질문을 위한 시간은 질문을 받는 당사자가 논쟁을 하는 시간의 일부로 간주 되지 않는다.

11. 판결 - 구두 논쟁 청문 후 가능한 한 바로, 전권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로 들어가서 소송건의 문제들을 토론한다. 토론 시, 전권위원회는 문제들을 구성하고 판결에 관한 투표를 한다. 혹, 전권위원회는 정회하고 다음 열흘 내에 속회하되, 필요한 만큼 자주, 그렇게 할 수 있다.

12. 결의서 - 판결이 채택되면, 위원장은 다수와 함께 투표한 위원을 지명하여 결의서를 기안하도록 한다. 만일 위원장이 다수와 함께 투표하지 않았다면, 다수는 그들 중에서 기안자를 선택한다. 결의서는 네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실 요약 (적법한 역사의 연대적 요약과 소송건에 관련된 사실들)
2. 문제(들)에 대한 진술 (소송건에서 판결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처리회가 간단 명료하게 구성한 것)
3. 판결 (판결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내려진 확정적 결론)
4. 논고과 견해 (내려진 판결에 대한 논고들과 어떤 것이든 논쟁이 됐던 사실들에 대한 해결)

의결서의 기안자는 의결서를 신속히 전권위원들에게 우송하여 판결이 채택된 날로부터 21 일 내에, 전권위원회가 의결서를 채택하고 처리회의 회의록을 인증하도록 해야 한다. 전권위원회 회원은 누구나 동의 혹은 반대하는 의견을 접수 시킬 수 있다.

APPENDIX H: APPELLATE COURTS

13. Reporting – Within 42 days after the hearing, the Commission shall file its report with the Presbytery Stated Clerk. In addition, any commissioner writing a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shall file it with the Presbytery Stated Clerk within 42 days after the hearing. The Commission’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Commission’s written decision, including the vote.
2. Minutes of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3. Briefs of the Parties
4. Record of the Case as perfected

14. Distribution – The Presbytery Stated Clerk shall promptly forward to both parties a copy of the Commission’s decision and any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s. The Stated Clerk shall send the same to the members of the Presbytery, in sufficient time for them to review prior to voting on the Commission’s judgment.

15. For the purposes of computing times, the day of the act or event from which a designated period of time begins shall not be included. The last day of the period shall be included, unless it is a Saturday, Sunday or postal holiday, in which case the period extends until the end of the next day which is not a Saturday, Sunday or postal holiday. “Filing” shall not be timely unless the documents are received by the appropriate party within the time fixed for such filing. “Received” shall be when the documents are actually delivered to the party.

16. The Commission may extend any of the deadline dates in this Appendix, or page limits for briefs, upon its determination that so doing is required in the interest of justice.

SUMMARY – This procedure would only apply to a Presbytery Judicial Commission acting as an appellate court. This procedure does not apply if a Presbytery chooses to hear any case as a whole body. Furthermore, Presbytery would still need to vote on adopting any judgment of its Judicial Commission.

These procedures provide three distinct six-week (42 day) periods:

1. Resolving any disputes on the Record
2. Filing, distributing and reading briefs
3. Conducting hearing, deliberating and filing full report with Stated Clerk

부록 아: 상소 처리회

13. 보고서 - 청문 후 42 일 내에, 전권위원회는 전권회 보고서를 노회 서기에게 접수 시켜야 한다. 추가로, 동의 혹은 반대하는 의견을 쓴 전권위원회 회원은 누구나 그것을 청문 후 42 일 내에 노회 서기에게 접수 시켜야 한다. 전권위원회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전권위원회의 투표를 포함 시킨 의결서
2. 전권위원회 회의록
3. 쌍방 당사자들의 [소송] 개요
4. 완전한 소송 기록.

14. 분배 - 노회 서기는 신속히 전권위원회의 의결과 동의 혹은 반대하는 견해 무엇이든 사본 1 부를 쌍방 당사자 앞으로 보내야 한다. 서기는 동 사본을 노회원들이 전권위원회 판결에 대한 투표를 하기 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회원들에게 우송 해야 한다.

15. 시간 계산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기간이 시작된 조치나 사건 당일을 포함 시키지 않는다. [지정된] 기간의 마지막 날은 포함 시키되, 토요일, 주일, 혹은 우체국이 쉬는 공휴일은 예외이며, 그 경우, [지정된] 기간은 토요일, 주일, 혹은 우체국이 쉬는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 끝까지 연장된다. “접수 시킨다”는 것은 그 접수를 목적으로 고정된 날자 내에 적법한 당사자가 서류를 수신 하지 않는 한 시간 안에 접수 됐다고 할 수 없다. “수신했다”고 하는 것은 문서가 실제로 당사자에게 전달 된 때이다.

16. 전권위원회는 이 부록의 마감일을 연장하거나 혹은 [고소] 개요를 위한 페이지 제한을 늘리는 것이 정의 [구현]의 유익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라고 결정하면, 그 결정에 근거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요약 - 이 절차는 오직 노회 전권법사 전권위원회가 상소 처리회로 기능하는데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노회가 어떤 소송건이든 전체로 청문할 것을 선택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노회는 여전히 노회법사 전권위원회의 어떤 판결도 채택하기 위한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절차들은 셋으로 구분되는 여섯 주 (42 일)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 소송 기록에 있는 어떤 논쟁이든 해결하기
2. 소송 개요를 접수, 분배, 읽기
3. 청문 지휘, 판결과 서기에게 완전한 보고서 접수 시키기

APPENDIX H: APPELLATE COURTS

Long Process – If the Record is disputed, and the parties choose to file briefs, and the full time is taken for all deadlines, the Commission might not file its final report with the Stated Clerk until four months (126 days) after the Presbytery meeting at which it was appointed. However, if the full time is not taken for all deadlines, the Commission may be able to file its report in time for consideration at the next Presbytery meeting, even if the Record is disputed and briefs are filed.

Medium Process – If either the Record is not disputed or the parties waive their right to file briefs, and the full time is taken for all deadlines, a Commission should file its final report within 84 days (12 weeks). In most Presbyteries, this should be in time for the next meeting.

Short Process – If the Record is not disputed, and the parties waive their right to file briefs, the Commission should file its report within 42 days of the hearing, which could be held as soon as the Commissioners have read the Record. This scenario would also result in Presbytery considering the Commission's report at the next Presbytery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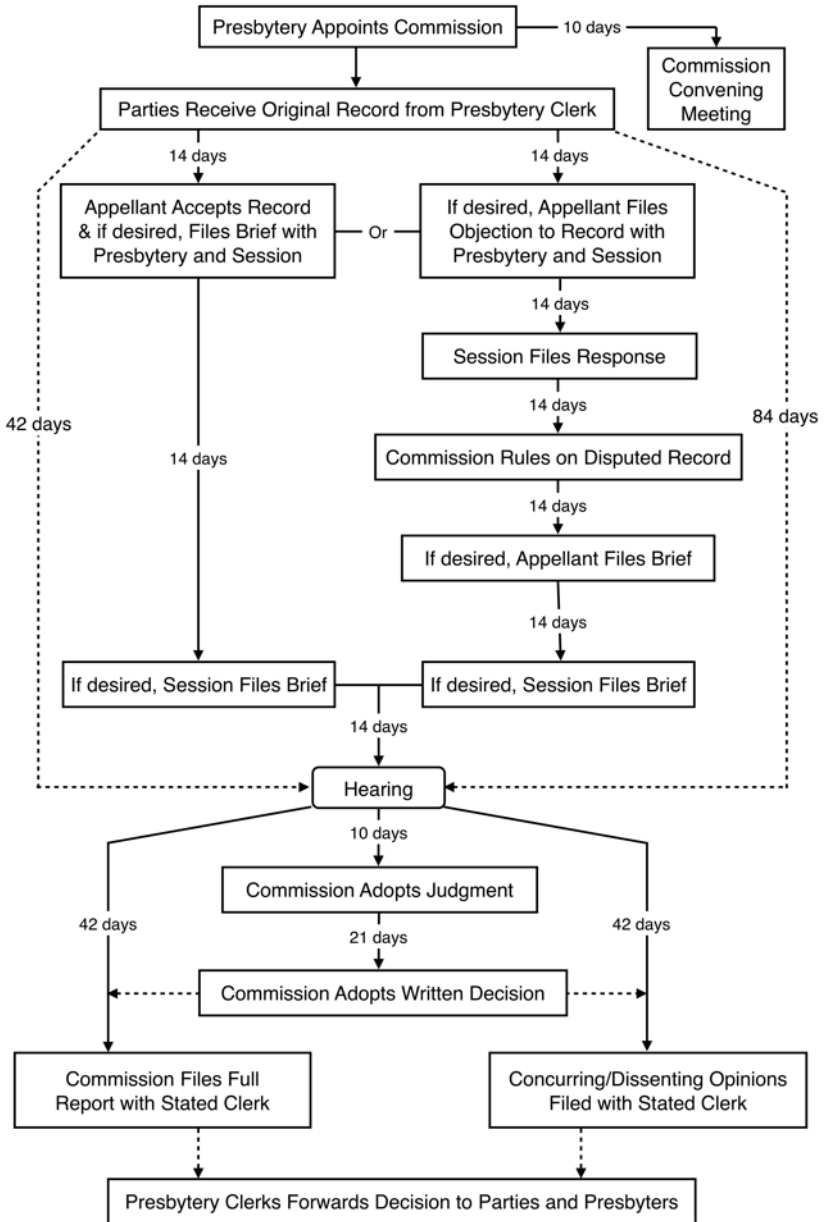
부록 아: 상소 처리회

장기 진행 - 만일 소송 기록이 논쟁거리가 되고, 쌍방 당사자들이 [소송] 개요를 접수 시킬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의 마감을 위하여 시간이 다 소모 되었으면, 전권위원회는 그 최종 보고서를 전권위원회가 임명된 그 노회 회기로 부터 네 달(126 일)이 될 때까지 서기에게 최종 보고서를 접수 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마감을 위하여 시간이 다 소모 되지 않았으면, 소송 기록이 논쟁거리가 되거 소송개요들이 접수 되었을 찌라도, 전권위원회는 차기 노회 회의에서 고려하도록 시간 내 그 보고서를 접수 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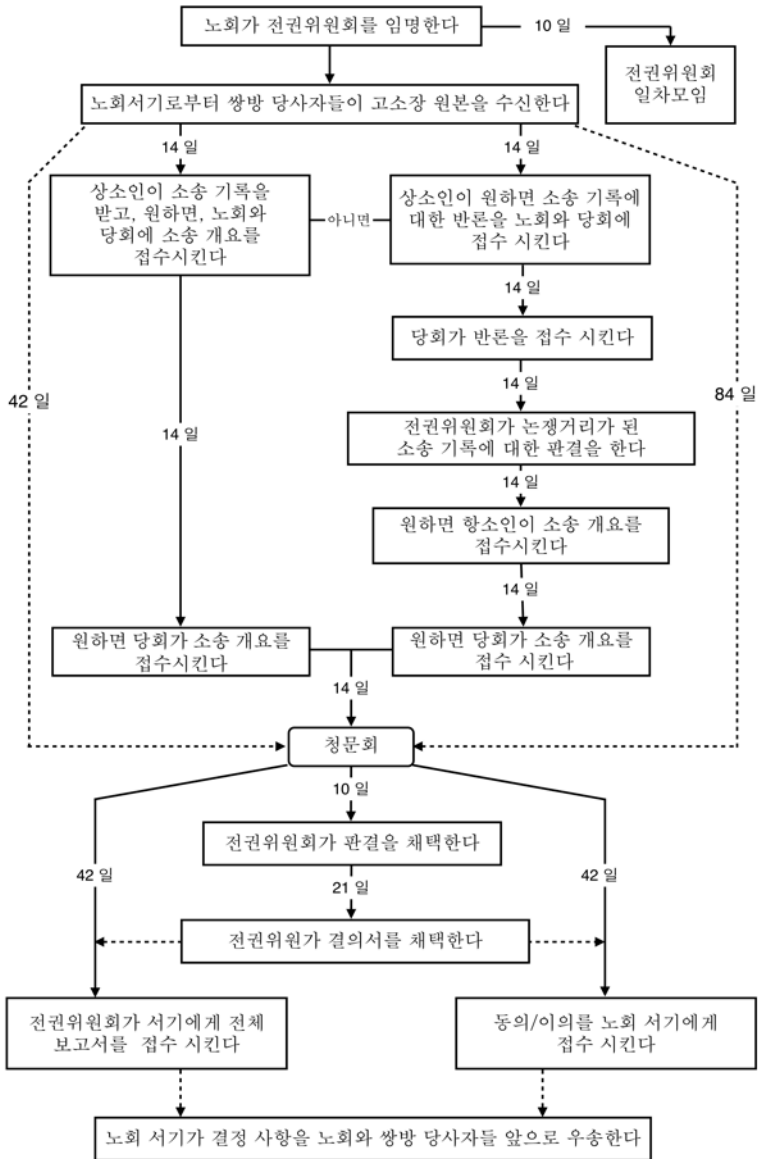
중기 진행 - 만일 소송 기록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거나 쌍방 당사자들이 [소송] 개요를 접수 시킬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의 마감을 위하여 시간을 다 소모 했다면, 전권위원회는 84 일 (12 주) 내에 그 최종 보고서를 접수 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노회들의 경우, 이것은 차기 노회 시간에 맞추게 될 수 있다.

단기 진행 - 만일 소송 기록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쌍방 당사자들이 [고소] 개요를 접수 시킬 권리를 포기하면, 전권위원회는 전권위원들이 소송 기록을 읽자 마자 주취할 수 있는 청문일로부터 42 일 내에 그 최종 보고서를 접수 시켜야 한다. 이 각본도 노회가 차기 노회에서 전권위원회 보고서를 고려 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APPENDIX H: APPELLATE COURTS



부록 아: 상소 처리회



APPENDIX I

BIBLICAL CONFLICT RESOLUTION

PREFACE

As we continue to seek to become a church holy before God, the manner in which we respond to sin and conflicts in the body, and gently shepherd those caught in sin, will reflect our commitment to the authority of God's Word and the spirit of love, which should define all of our actions and relationships. Biblical peacemaking is one of God's highest priorities (Matt. 5:23-24; Rom. 12:18; Gal. 6:1); therefore, it must be one of our highest priorities. The *Book of Church Order (BCO)* reflects our commitment to following God's procedure for reclaiming those going astray. It says, "Scriptural law is the basis of all discipline because it is the revelation of God's Holy will. Proper disciplinary principles are set forth in the Scriptures and must be followed" (*BCO* 27-5). It also says, "An injured party shall not become a prosecutor of personal offenses without having tried the means of reconciliation and of reclaiming the offender, required by Christ" (*BCO* 31- 5). The purpose of this Appendix is to provide guidance through the steps of biblical peacemaking required as pre-conditions to judicial process in cases of personal offense (*BCO* 31-5), and for use whenever possible in cases of general offense (*BCO* 31-7).

Each presbytery should endeavor to have several elders trained in the methods of "Christian conciliation" (includ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available to serve as Christian conciliators in cases that could and should be resolved privately before judicial process is initiated. We would do well to follow the wisdom of those who have considered the importance of this matter. For example, Elder Edmund Clowney states, "Discipline...is not first an exercise of negative judgment, a matter of church courts and censures. It begins with the care of friends with whom we strive to follow Christ" (Clowney, E.P., *The Church*, IVP, 1995).

THE BIBLICAL STEPS OF DISCIPLINE AS THEY RELATE TO BIBLICAL PEACEMAKING

BCO 27-5 outlines the proper principles for the exercise of church discipline. This *BCO* section emphasizes that the steps indicated, (a) through (d), must be followed in proper order. The steps are:

- a) Instruction in the Word;
- b) An individual's responsibility to admonish one another (Matt. 18:15; Gal. 6:1);

부록 자 성경적 갈등 해소

서론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죄와 몸 안의 갈등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과, 죄의 현장에서 잡힌 자들을 부드럽게 목양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정신을 반영 하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 행동과 관계 모두를 정의 하여야 한다. 성경적으로 화평케 함이 하나님의 최고 우선 순위들 중 하나이다 (마 5:23-24; 롬 12:18; 갈 6:1);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 순위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 헌법(헌법)*은 잘 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교화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를 따르는 우리의 헌신을 반영한다. 거기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계시임으로 성경의 법은 모두 권징의 기본이다. 적법한 권징의 원리들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따라야 한다”(헌법 27-5)고 되어 있다. 거기에는 또 “피해자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먼저 범죄자와 화해하며 그를 돌이키도록 시도하지 않고는 개인적인 법과에 대한 고소자가 될 수 없다”(헌법 31-5)고 되어 있다. 이 부록의 목적은 개인적 법과에 대한 소송건들에 있어서 (*헌법 31-5*) 법적 진행 절차에 선행 조건들로 요구되는 성경적 화평케함의 단계들을 통과 하도록 하며, 일반적 법과에 대한 소송건에 있어서 (*헌법 31-7*) 언제나 사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각 노회는 (중재와 조정을 포함하는) “기독교적 화해” 방법들의 훈련을 받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거나 해결되어야만 하는 소송건들에 있어서 기독교적 화해자들로서 항상 섬길 수 있는 여러 장로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는 자들의 지혜를 따르면 잘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에드먼드 클라우니 장로가, “권징은... 먼저 부정적인 판단, 교회 치리회와 책벌의 관한 일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분투하는 친구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시작한다” (클라우니, E. P., *교회, IVP*, 1995).

성경적 화평케함에 관계된 권징의 성경적 단계들

*헌법 27-5*는 교회 권징을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원리들의 개요를 제시한다. *헌법*의 이 부분은 (㉠)에서 (㉢)까지 제시된 단계들이 반드시 적법한 순서대로 지켜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 말씀으로 가르침;

㉡) 당사자를 권면해야 하는 개인적인 책임 (마 18:15; 갈 6:1);

APPENDIX I: BIBLICAL CONFLICT RESOLUTION

- c) If the admonition is rejected, then the calling of one or more witnesses (Matt. 18:16);
- d) If rejection persists, then the church must act through her court unto admonition, suspension, excommunication and deposition.

This Appendix addresses the first three steps, (a) through (c), by providing an expanded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raised by Scriptural direction for a complete process at each step. Step (d), formal church discipline, is addressed by Part II of the *Book of Church Order*, The Rules of Discipline.

1. The first step - Instruction in the Word.

Many Christians do not fully understand the emphasis God places on living at peace and in unity with others (Eph. 4: 3). Preaching and teaching should regularly address this emphasis and the purposes for church discipline as set forth in *BCO* 27-3 and *BCO* 27-4. Attention should be drawn to the fact that the main procedural passage related to church discipline, Matthew 18:15-20, is set forth in the context of two powerful parables teaching the extent and depth of God's love in reclaiming those who have strayed (Matt. 18:10-14), and the vast measure of His forgiveness and the expansive forgiveness He expects from His children toward one another (Matt. 18:21-35). The extent of instruction on reconciliation provided to church members in "new member classes" and regular preaching from the pulpit will have a significant bearing on the extent to which a church member understands the benefits of church discipline and has consented to ecclesiastical jurisdiction (which is helpful for the church if it is to avoid legal liability for the proper exercise of church discipline).

Teaching God's Word concerning sin, and conflicts that result from it, and how Christians should respond biblically to conflict, will equip church members to become peacemakers themselves. Peacemaking has always been one of a Christian's most important ministries. As we are reminded in 2 Corinthians 5:18, God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One of the most powerful ways that we can encourage reconciliation with God is to model reconciliation among people. When others see us resolve our differences in a loving and biblical manner, they are inclined to give more weight to what we say about the Lord (John 13:34-35; 17:20-23). On the other hand, when they see Christians embroiled in disputes, they tend to write God's people off as hypocrites and dismiss the claims of Christ (Rom. 2:21-24; 1 Cor. 6:1-8).

The Bible sets forth a process for resolving personal and substantive disputes in a constructive manner. This process is sometimes referred to as "Christian

부록 자: 성경적 갈등 해소

- ㄷ) 만일 권면이 거부되면, 그 때는 한 두 사람의 증인을 부를 것 (마 18:16);
- ㄹ) 만일 거부를 계속하면, 그 때는 교회가 반드시 치리회를 통하여 견책, 징직, 출교, 면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회헌법 제 29 장과 30 장 참고)

이 부록은 (ㄱ)에서 (ㄷ)까지 제시된 처음 세 단계에 대한 언급으로, 각 단계의 완전한 진행을 위하여 성경적 지시가 제시하는 함축된 의미들을 확대 토론하여 제공한 것이다. 공식적 교회 권징인, (ㄹ) 단계는 교회 헌법 제 2 부, 권징 조례에 언급되어 있다.

1. 첫 단계 - 말씀으로 가르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연합하여 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계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 한다 (엡 4:3). 설교와 교육은 이 강조점과 헌법 27-3과 헌법 27-4에 규정된 교회 권징의 목적을 정기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교회 권징에 관계된 주요 절차에 대한 본문, 마태복음 18:15-20이,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마 18:10-14), 하나님의 용서의 측량 할 수 없는 광대함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값 비싼 서로를 향한 용서를 (마 18:21-35) 가르치는 강력한 두 가지 비유들을 문맥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 등록 교인 공부반”에 있는 교인들에게 제공되는 화목에 대한 가르침과 강단에서 정기적으로 화목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의 정도는 한 교인이 교회 권징의 혜택들을 이해하고 교회적 치리관할권에 동의하는 것(이것은 만일 교회가 법적 책임을 피하여 교회 권징을 적법하게 행사하려면 교회에 도움이 된다)의 정도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결과를 낼 것이다.

죄와, 죄로 결과되는 갈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반응 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교인들 스스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도록 구비 시켜 줄 것이다. 화평케함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로 있어 왔다. 고린도후서 5:18절이 우리를 상기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들 중의 하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화목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며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차이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요 13:34-35; 17:20-23)에 더 무게를 주는 쪽으로 기울어 진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논쟁에 휩싸이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선자들과 같겨 쓰고 그리스도의 주장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롬 2:21-24; 고전 6:1-8).

성경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이고 실재적인 논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한다. 이 과정이 때로는 “기독교적 화해”로 언급되었고, 이것은 사소한 개인적 차이점들부터 교회 분열,

APPENDIX I: BIBLICAL CONFLICT RESOLUTION

conciliation” and it may be used to resolve everything from minor personal differences to church divisions or lawsuits involving church members. As indicated in passages such as Proverbs 19:11, Matthew 5:23-25 and 18:15- 20, 1 Corinthians 6:1-8, and Galatians 6:1, conciliation involves three basic steps: (1) when Christians are involved in a conflict that is too serious to overlook, the first thing that they should do is meet together privately and in person to try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2) if this effort is unsuccessful, they should ask one or more other Christians to meet with them and help them to seek reconciliation and a voluntary settlement of their differences (a process sometimes referred to as mediation); and (3) if they cannot arrive at a voluntary settlement, they should ask one or more other Christians to hear both sides of the matter and render a biblically based decision that both sides are obligated to accept (a process sometimes referred to as arbitration).

There are many benefits to resolving disputes through Christian conciliation. It prevents a public quarrel that would dishonor the Lord Jesus Christ and diminish the credibility and witness of His Church. Conciliation also allows Christians to demonstrate their faith in Christ and their confidence in His teachings (John 13:34; 14:15; 17:20-23). In addition, conciliation encourages forgiveness and promotes reconciliation, which can help to preserve valuable relationships and strengthen the Church (Eph. 4:29-32; Col. 3:12-17). Conciliation also helps people to identify and deal with the root causes of conflict, which may include such things as pride, selfishness, fear, vengeance, greed, bitterness, or unforgiveness (see Matt. 7:3-5). This allows people to make changes in their lives so that they will enjoy more peaceful relationships in the future (Eph. 4:1-3, 22-24).

Christian conciliation is especially beneficial for people who sincerely want to do what is right and are open to learning where they have been wrong (Prov. 15:31-32). Conciliators can help them to identify improper attitudes or unwise practices, to understand more fully the effects of their decision and actions, and to make improvements in their lives that will help them to honor and serve the Lord more effectively in the future (1 Peter 2:12).

Teaching and Ruling elders are encouraged to learn all they can about Christian conciliation and develop local ministries that will equip members under their care to respond to conflicts in a manner that reflects the power of Christ working in their lives. The more church members understand these concepts and benefits, the more likely they will be to apply biblical principles when conflicts occur.

부록 자: 성경적 갈등 해소

혹은 교인들을 포함하는 소송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잠언 19:11, 마태복음 5:23-25과 18:15-20, 고린도전서 6:1-8, 갈라디아서 6:1과 같은 본문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화해는 세 기본 단계들을 포함한다: (1) 그리스도인들이 간과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갈등에 빠져 있을 때, 첫 번째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사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들의 차이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2) 만일 이 노력이 실패하면, 그들은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만나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의 차이점들을 자원하여 해결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이 때로는 중재라고 언급되었다); (3) 만일 그들이 자원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들은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사건에 대한 쌍방의 말을 듣고 쌍방이 받아 드릴 의무가 있는 성경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이 때로는 조정이라고 언급되었다).

기독교적 화해를 통한 논쟁의 해결에는 많은 혜택이 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 시키고 그의 교회의 신용과 증언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공개된 다툼을 방지한다. 화해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나타내는 것도 허용한다 (요 13:34; 14:15; 17:20-23). 그 위에, 화해는 용서를 권장하고 화목을 촉진 시키는데, 이는 귀중한 관계를 보존하는 것과 교회를 강화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엡 4:29-32; 골 3:12-17). 화해는 또 사람들이 갈등의 근본 원인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다루도록 돕는데, 교만, 이기심, 두려움, 복수심, 탐욕, 쓴뿌리, 혹은 용서치 않음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마 7:3-5).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장래 더 화평한 관계들을 즐기도록 하게 할 것이다 (엡 3:1-3, 22-24).

기독교적 화해는 특별히 신실하게 바른 것을 하기를 원하며 어디에서 잘못 되어 왔는지를 배우는 일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다 (잠 15:31-32). 화해자들은 그들을 부적절한 태도들과 어리석은 습관들의 정체를 확인 하는 것과, 그들의 결정과 행위들의 결과들을 더 온전하게 이해 하는 것과, 장래에 그들의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공경하며 섬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개선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벧전 2:12).

강도장로들과 치리장로들은 기독교적 화해에 대하여 그들의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우고 그들의 보살핌 아래 있는 교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반영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갈등들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구비 시키는 지역 사역들을 개발하도록 권장 되어야 한다. 이런 개념들과 혜택들을 이해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갈등이 발생할 때 그들이 성경적 원리들을 적용 하게 될 가능성은 더 많아 질 것이다.

APPENDIX I: BIBLICAL CONFLICT RESOLUTION

2. The second step - An individual's responsibility to admonish another (Matt. 18:15; Gal. 6:1).

Scripture warns against making a premature judgment about a matter (Matt. 7:1-5). By first going personally and in private to those who have offended, we provide the opportunity for clarification of misunderstandings and avoid premature judgment. This step includes the three responses of personal peacemaking as follows:

Overlook an offense: An individual may overlook an offense of another if it is minor in nature and it has not significantly dishonored God, damaged a personal relationship, or hurt other people (including the offender). "A man's wisdom gives him patience; it is to his glory to overlook an offense" (Prov. 19:11).

Discussion: When personal wrongs are too serious to overlook, the parties are required to seek to resolve them privately through loving confrontation and confession. "If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go and be reconciled" (Matt. 5:23-24).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and show him his fault, just between the two of you" (Matt. 18:15).

Negotiation: When a substantive issue related to money, property, or other material issues or rights divides Christians, a process of biblical negotiation should be followed that will meet the interests of all those involved. "Each of you should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s, but also to the interests of others" (Phil. 2:4).

Privately responding to conflict early, before it escalates, through the means of these three forms of personal peacemaking will often result in reconciliation and no need for further peacemaking attention. Successful personal peacemaking is usually based on at least one parties' willingness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how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conflict and by being willing to humble themselves for the greater goal of God's glory through "making every effort" (Eph. 4:3)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3. The third step - If private admonition is rejected, then calling of one or more witnesses (Matt. 18:16; 1 Cor. 6:1-9).

Involving others is a serious escalation of a conflict and should be considered only after the elements of step two have been fully exhausted. Step three includes the three assisted peacemaking responses as follows:

2. 두 번째 단계 - 당사자를 권면해야 하는 개인적인 책임 (마 18:15; 갈 6:1).

성경은 한 사물에 대하여 조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반대하여 경고한다 (마 7:1-5). 범죄자에게 개인적으로 또 사적으로 먼저 찾아 감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명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조급한 판단을 피한다. 이 단계는 다음과 같은 개인적 화평케함의 세 반응을 포함 한다:

범죄를 간과함: 만일 범죄가 성격상 사소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인간 관계를 손상했거나, (범죄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상한 것이 아니라면,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간과해 줄 수 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잠 19:11).

토론: 개인적 잘못들이 간과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때, 쌍방 당사자들이 사랑으로 대면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사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도록 요구한다.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 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마 5:23-24).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나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마 18:15).

협상: 돈, 재산, 혹 다른 물질적 문제들, 혹 권리와 관계된 실제적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분열 시킬 때,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충족 시켜 주는 성경적 협상의 과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빌 2:4).

갈등이 고조되기 전, 이 세 가지 형태의 개인적 화평케함의 방법으로, 갈등에 대하여 사적으로 조기 대응하는 것이 종종 화목을 결과하게 하고 화평케 하기 위하여 더 주목 할 필요가 없게 한다. 개인적 화평케함이 성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한 쪽 당사자가 그들이 기여한 갈등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초하고 있고 연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지키라”(엡 4:3)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더 큰 목표를 위하여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기를 원함으로 된다.

3. 세 번째 단계 -만일 권면이 거부되면, 그 때는 한 두 사람의 증인을 부를 것 (마 18:16; 고전 6:1-9).

다른 사람을 포함 시킨다는 것은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된 것이며 두 번째 단계의 요소들이 온전히 소진된 다음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보조하는 화평케함의 반응들을 포함한다:

APPENDIX I: BIBLICAL CONFLICT RESOLUTION

Mediation: If a dispute cannot be resolved through personal peacemaking, the parties should ask one or more other Christians to meet with them to help the parties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and explore possible solutions. The mediators may give advice but have no power to impose solutions. They may later act as witnesses in formal church disciplinary proceedings, should mediation fail due to hardness of heart or the unrepentant sin of one or both parties. “If he will not listen, take one or two others along, so that every matter may be established by th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ses.” (Matt. 18:16).

Arbitration: When two parties to a conflict cannot come to a voluntary agreement on a substantive issue, one or more arbitrators may be appointed to listen to the arguments and evidence of each side and render a binding decision. “If you have disputes about such matters, appoint as judges even men of little account in the church” (1 Cor. 6:1-8).

Church Discipline: Formal church discipline, pursuant to the procedures of *BCO* Part II, is reserved for those cases where the person who professes to be a Christian refuses to be reconciled, repent of personal sin, and do what is right. Church leaders bearing ecclesiastical jurisdiction over such persons should formally intervene to promote justice, repentance, and forgiveness. “If he refuses to listen, tell it to the church” (Matt. 18:17-20).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Judicial cases that come to the attention of church courts frequently begin as personal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individuals. Typically, when one side feels they are not getting what they want, they bring charges of sin against the other side. In this manner, sessions and presbyteries are drawn into conflicts that would better be resolved at a personal level through Christian conciliation. Of course, when conflicted parties refuse to be reconciled, the accountability afforded by formal church discipline should be used to further the goals of purity in the Church, the rebuke of offenses, the removal of scandal, and the spiritual good of offenders (1 Cor. 5:5). Every effort should be made, however, to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repentance, confession,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before formal charges are entertained by a church court. The intent of the relevant *BCO* provisions is to encourage Christian unity before the formal provisions of church discipline are brought to bear on a situation. Of course, not every situation will lend itself to Christian conciliation. However,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utilize private confront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in order to

부록 자: 성경적 갈등 해소

중재: 논쟁이 개인적 화평케함을 통하여 해결 될 수 없으면, 쌍방 당사자들은 한 사람 혹은 그 이상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모여서 쌍방 당사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가능한 해결책을 탐구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중재자들은 조언 할 수 있지만 해결책을 부과 할 권한은 없다. 그들은 후에, 한 쪽이나 쌍방 당사자 모두의 마음이 완고하거나 회개치 않은 죄로 인하여 중재가 실패하게 된다면, 공식 교회 권징 진행 시 증인으로 행동할 수 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마 18:16).

조정: 갈등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실제적 문제에 대해서 자원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중재자들을 더 임명 하여 주장하는 것들과 각 측의 증거를 듣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다.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고전 6:1-8)

교회 권징: 공식 교회 권징은, 헌법 제 2 부의 절차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바른 것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들을 위하여 유보된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 위에 교회적 치리관할권을 지니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공의, 회개, 용서를 촉진 시키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마 18:17-20).

원리들의 적용

교회 치리회의 주목을 받게 되는 법적 소송건들은 자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 간의 개인적 논쟁으로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한 쪽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다른 쪽에 대항하여 죄에 대한 고소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당회들과 노회들은 기독교적 화해를 통하여 개인적 단계에서 더 잘 해결 될 수 있을 법한 갈등들 속으로 끌려들어 간다. 물론, 쌍방 당사자들이 화해하기를 거부 할 때는, 교회의 순결성에 대한 목표들, 범죄들에 대한 책망, 추문의 제거와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조장하기 위하여 공식적 교회 권징이 제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전 5:5). 그러나, 공식적 고소를 교회 치리회가 받아 드리기 전에 회개, 자백, 용서와 화해를 통한 갈등 해소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관련된 헌법 규정의 의도는 교회 권징의 공식적 규정들이 상황을 감당하는데 도입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권장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상황이 기독교적 화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순결성과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보호하

APPENDIX I: BIBLICAL CONFLICT RESOLUTION

reserve the use of formal church discipline, and the time of church courts, for those matters related to the purity of the Church and the keeping and reclaiming of disobedient sinners (*BCO 27-3*). Many of these ends will be realized through the processes of Christian concili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viewed as prerequisite procedures to the formal disciplinary process.

FAILURE TO FOLLOW THE STEPS

Churches unwilling or unable to instruct their members completely in the full breadth of the steps of conciliation and discipline encourage resorting to unbiblical, worldly responses to conflict. The escape responses of denial, flight, and even suicide can be expected if church members are not positively directed to the biblical processes of Christian conciliation. Others, when not given the hope of having matters responded to within the body of Christ, will resort to civil litigation, verbal and physical attack, and possibly even murder to remove an opponent where there is no avenue for a just resolution.

Moving a case too quickly to formal church discipline can build barriers that could otherwise be dealt with in mediation or arbitration. Every church and presbytery is encouraged to equip elders and mature members with the skills of Christian conciliation, and to exhaust conciliation processes and remedies before moving to formal church discipline.

USE OF CONCILIATION CLAUSES IN MEMBERSHIP DOCUMENTS

One significant way church members can be educated and prepared for biblical conflict resolution is through the use of a conciliation clause in the membership covenant or other agreement signed by new members when they join the church. The recommended language for this clause is set forth below. It should be noted that signing this clause cannot be made a condition for membership, but may be encouraged as a voluntary biblical commitment. It should be clearly offered as an optional statement for the resolution of any disputes that may arise.

부록 자: 성경적 갈등 해소

고 개심 시키게 관련된 일들을 위하여 (헌법 27-3), 사적 대면, 중재와 조정을 활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공식적 교회 권징과 교회 치리회의 시간 사용을 유보해야 한다. 이 목적들의 많은 부분이 기독교적 화해의 과정을 통하여 실현 될 수 있고, 그러므로 공식 권징 과정에 선행하는 절차들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

단계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인들에게 화해와 권징의 단계들의 전 내용을 완전하게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거나 가르칠 능력이 없는 교회들은 갈등에 대하여 비성경적, 세상적 반응에 호소 하는 것을 조장한다. 만일 교인들이 긍정적으로 기독교적 화해의 성경적 과정으로 인도되지 않는다면 부인, 도주, 심지어는 자살의 도피적 반응들을 기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건들이 응답 될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을 때, 공정한 해결의 길이 없는 곳에서 대적하는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 언어 및 육체적 공격, 심지어는 살인에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건을 너무 빨리 공식적인 교회 권징으로 이동 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중재와 조정으로 다루어 질 수도 있는 장벽을 세울 수 있다. 모든 교회와 노회는 장로들과 성숙한 교인들에게 기독교적 화해의 기술을 구비 시킬 것과, 공식적 교회 권징으로 이동하기 전에 화해 과정들과 해결책들을 [다 사용하여] 소진 시킬 것을 권장한다.

등록 교인 증서들에 화해 구절의 사용

교인들에게 성경적 갈등 해소를 위하여 교육 시키고 준비 시키는 한 가지 의미 심장한 방법은 새 교인들이 교회에 가입 할 때 서명하는 등록교인 언약서 혹은 동의서에 화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구절의 사용을 위하여 추천하는 용어가 아래 제시되었다. 이 구절에 서명하는 것이 등록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성경적 헌신을 하는 것으로 권장 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것은 어떤 논쟁이 발생시 해결을 위하여 하나의 선택 할 수 있는 진술문으로 분명하게 제안되어야 한다.

APPENDIX I: BIBLICAL CONFLICT RESOLUTION

Christian Conciliation

Members are encouraged but not required to make this additional commitment.

If I ever have a dispute with the church that cannot be resolved through its own internal procedures, I agree to resolve the dispute according to biblical principles (such as those set forth in Matthew 5:23-25 and 18:15-20, and 1 Corinthians 6:1-8) by submitting the matter to mediation and, if necessary,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Bylaws of this church and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Institute for Christian Conciliation. I understand that arbitration is a legally binding process, and that judgment upon an arbitration award may be entered in any court otherwise having jurisdiction.

Dated this _____ day of _____, 20_____

Name (Printed)

Signature

Name (Printed)

Signature

Parent's or Guardian's Name
(for minors)

Parent's or Guardian's Signature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ARBITRATION PURSUANT TO THE [STATE] ARBITRATION ACT, TITLE ##, CHAPTER #, [STATE] CODE ANNOTATED.

기독교적 화해

교인들에게 강요는 아니지만 추가로 이 헌신을 할 것을 권장한다.

만일 내가 교회 자체 내 절차들을 통하여 해결 될 수 없는 교회와의 논쟁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일을 중재와, 만일 필요 하다면, 이 교회의 정관과 기독교적 화해를 위한 기구의 절차의 규칙들을 따라 조정 받을 것을 제시함으로, (마태복음 5:23-35과 18:15-20, 고린도전서 6:1-8에 제시된 것처럼) 성경적 원리들을 따라 논쟁을 해결 할 것에 동의한다. 나는 이 조정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과정이고, 부과된 조정에 대한 판결은 처리 관할권이 다른 어떤 법정에서도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일자 _____, 20__

이름 (인쇄체) _____ 서명 _____

이름 (인쇄체) _____ 서명 _____

부모 혹은 보호자 이름 (인쇄체) _____ 부모 혹은 보호자 서명 _____
(미성년자의 경우)

이 동의서는 [주] 법전 주해, 제목 ##, 장 #, [주] 조정 조치에 부합하는 조정에 종속한다.

AMEND CHURCH BYLAWS TO ALLOW CONTINUING CHURCH JURISDICTION

The following clause is recommended for inclusion in local church bylaws to allow the continuing ecclesiastical jurisdiction over a member who may otherwise simply flee from the church to avoid biblical discipline:

Members may be removed from membership at their own request following the steps of appropriate pastoral care as set forth in *BCO* 38-4. If a member requests to withdraw because of specific problems or disappointments with the church, the Session shall attempt to resolve those matters so that the member may remain in the church and enjoy greater fruitfulness and personal spiritual growth. If the Session is unable to resolve those matters, it shall offer to assist the member in locating a church of like faith and practice that can respond more effectively to his gifts and needs. If it appears to the Session that a member has requested removal merely to avoid church discipline, that request shall not be given effect until the disciplinary process has been properly concluded.

Use of this clause will also help the church avoid serious legal liability for following through with all of the steps of church discipline. Members should be informed of its provisions and carefully taught the Scriptural basis for continuing shepherding and pastoral care especially when caught in sin (see also *BCO* 38-3 and 38-4).

CONCLUSION

The courts of the church are encouraged to employ the means of Christian conciliation whenever possible. That is, churches and presbyteries are encouraged to defer judicial action until all other remedies have been exhausted. Peace, unity,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can be furthered through careful and complete attention to every step of the process as set forth in *BCO* 27-5 as understood through the expanded guidance concerning Christian conciliation as set forth above.

교회 치리관할권이 계속 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교회 정관 수정

다음 구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적 권징을 피하기 위하여 단순히 교회에서 도망 갈 수 있는 교인에 대하여 교회 치리관할권이 계속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지역 교회 정관에 삽입 할 것을 추천한다:

교인은 헌법 38-4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적절한 목회적 보살핌의 단계를 따른 후 그들 자신의 요청에 따라 등록교인 [명부]에서 삭제 될 수 있다. 만일 교인이 교회와의 구체적인 문제들이나 실망감 때문에 물러 갈 것을 요청한다면, 당회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시도하여 그 교인이 교회에 남아 더 풍성한 결실과 개인의 영적 성장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만일 당회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면, 그 교인이 교인의 은사와 필요에 더 효과적으로 응답 할 수 있는 신앙과 행위가 비슷한 지역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당회가 보기에 교인이 단순히 교회의 권징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를 요청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 요청은 권징 과정이 적절하게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구절의 사용은 또 교회가 교회의 모든 권징 단계를 통과 할 때 심각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돕을 것이다. 교인들에게 교회의 규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히 범죄 중 잡혔을 때 계속되는 목양과 목회적 돌봄을 위한 성경적 근거들을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한다 (헌법 38-3과 38-4도 보라).

결론

교회 치리회는 가능한 한 언제든지 기독교적 화해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것은, 교회와 노회들이 다른 모든 구제 방법이 소진 될 때까지 법적 조치를 미루어 둘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교회의 평화, 연합과 사명은 헌법 27-5에 설명된 과정의 모든 단계를 상기에 설명된 대로 기독교적 화해에 관한 확대 지침서를 통하여 이해 하는 것과 같이 조심히 완전히 주목함으로 더욱 증진 시킬 수 있다.

APPENDIX J

SAMPLE FORM FOR TERMS OF CALL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_____ Presbytery, the _____ (*Session, or Congregation, or Session on behalf of the congregation*) of _____ Church in _____ earnestly calls you _____, to undertake the office of _____ in our congregation, promising you, in the discharge of your duty, all proper support, encouragement and obedience in the Lord. That you may be free from worldly care and avocations, we hereby promise and oblige ourselves to provide you with the following:

Annual Cash Salary & Housing Allowance, paid _____ \$ _____
(semi-monthly, etc.)

The amount/portion dedicated to housing allowance wi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and approved by the Session before employment with the church in this new position and shall be reviewed prior to each fiscal year.

Primary Benefits

Social Security/Medicare Allowance: _____ % of salary + housing \$ _____
 Medical Insurance &/or Medicare Supplement Insurance (specific \$ amt) \$ _____
 Retirement Savings: _____ % of salary + housing \$ _____
 Long Term Disability Insurance: enough to replace _____ % of salary + housing \$ _____
 Life Insurance: amount equal to _____ x (salary + housing) \$ _____
 Equity Allowance if Minister living in a manse \$ _____
 Other _____ \$ _____

Secondary Benefits

Dental Insurance \$ _____
 Vision Insurance \$ _____
 Long Term Care Insurance \$ _____

Temporary Benefits

Relocation expenses reimbursed up to a maximum of: \$ _____
 Other _____

Miscellaneous Paid Leaves per year. (Any specific church policies are described in a separate document.)

Vacation _____ days Sick Leave _____ days
 Educational Leave _____ days Paternity Leave _____ days
 Sabbatical Leave accrual _____ days Funeral Leave _____ days

Any reimbursement of reasonable and necessary business expenses shall be in accord with a Session-adopted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 with a maximum amount specified in the annual church budget.

I, having moderated the _____ (*Session or Congregational*) meeting which extended a call to _____ for his ministerial services, do certify the call has been made in all respects according to the rules in the PCA Book of Church Order and the persons who signed the call were authorized to do so by vote of the _____ (*Session or Congregation*).

(Check if applicable)

____ Authority to approve these Terms was delegated by the Congregation to the Session at a congregational meeting on _____ (date).

Meeting Moderator (sign) _____ Print name _____

Position _____ Phone or email _____

Date of Meeting _____ Vote: # Yes = _____ # No = _____

Minister-Elect (sign) _____ Print name _____

부록 차 청빙서 양식 견본

_____ 노회의 인준 하에, _____ 소재한 _____ 교회의 _____ (당회, 혹은 회중, 혹은 회중을 대신한 당회)는 우리 회중의 _____ 직분을 감당하도록 진지하게 귀하를 청빙하며, 귀하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모든 필요한 지원과 격려, 그리고 주안에서의 순종을 약속합니다. 귀하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 직업에서 자유하도록, 우리는 이것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며 책임을 지겠습니다:

연봉 생활비와 주택비, _____ (격주로, [월별로.] 등) \$ _____
 주택비로 제공된 금액/부분은 목회자가 결정할 것이며 이 새 지위로 교회에 고용되기 전에 당회가 인준해야 하고 매 회계년도 전에 검토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혜택들

소설세큐리티/메디케어 비용: 생활비의 _____% + 주택비 \$ _____
 의료 보험과/또는 메디케어 보완 보험 (구체적 금액) \$ _____
 은퇴 저금: 생활비의 _____% + 주택비 \$ _____
 장기 장애 보험: 생활비의 _____% + 주택비를 대체하기에 충분하도록 \$ _____
 생명 보험: (생활비+주택비) x _____ 와 동등한 금액 \$ _____
 만일 목회자가 사택에 살 경우 동등 가치 비용 \$ _____
 기타 _____ \$ _____

이자적 혜택들

치과 보험 \$ _____
 안과 보험 \$ _____
 장기 돌봄 보험 \$ _____

임시 혜택들

최대 이사 비용 변상 \$ _____
 기타 \$ _____

기타 연간 언급 휴가들 (모든 구체적 교회 정책은 별도의 서류에 설명되어야 한다.)

휴가 _____ 일 병가 _____ 일
 교육 휴가 _____ 일 남편의 육아 휴가 _____ 일
 누적될 수 있는 안식년 휴가 _____ 일 장례 휴가 _____ 일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업무 경비들의 변상은 당회가 채택한 책임 질 수 있는 변상 계획과, 교회 연간 예산에 명시된 최대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본인은, 목회 사역들을 위하여 _____ 씨를 청빙하는 _____ (당회 혹은 공동의회)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청빙서는 모든 면에서 미국장로회 교회헌법에 규정된 대로 작성되었고, 청빙에 서명한 사람들은 _____ (당회 혹은 회중)의 투표로 서명할 권한이 위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해당 시 체크하실 것) _____ 이런 내용으로 인준할 권한은 _____ (날짜)에 있었던 공동의회에서 회중이 당회에 위탁한 것입니다.

회의 의장 (날인) _____ 인채체로 이름 _____
 지위 _____ 전화 혹은 이메일 _____
 회의 날짜 _____ 투표: 찬성 = _____ 표, 반대 = _____ 표
 선출 된 목회자 (날인) _____ 인채체로 이름 _____

INDEX

Absentee Church Members	46-2	Appeals (continued)	
Accusation Cautions	31-8	Litigious spirit by appellant ..	42-12
Accused		Lodging with higher court.....	42-5
Barred from the Lord's Table	33-4	New testimony, new trial	35-14
New testimony, new trial	35-13	Notice of	42-6
Not compelled to testify	35-1	Notice within 30 days	42-4
Original party in case of process	31-3	Records of case ...	42-5, 42-7, 42-9
Plead in writing	32-3	Who can appeal	42-2
Protection of	31-8	Appellant	
Refusal to appear	33-2	Counsel for	32-19, 42-1
Refusal to plead	33-2	Defined	42-1
Accuser		Failure to appear	42-11
Challenge to witness	35-1	Litigious spirit	42-12
Church as accuser	31-4	Lodge appeal within 30 days...	42-4
Original party in case of process	31-3	Appellate Court (see also Appendix H)	
Testimony required	35-1	40-5
Adjournment, General Assembly...	14-8	Appellee Defined	42-1
Administration of the Lord's Supper		Assistant pastor	
.....	58-1 thru 58-8	Called by Session	22-3
Administrative Committee	14-1(12)	Dissolution of relationship	22-4
Admission to Sealing		Moderator of Session	12-4, 22-3
Ordinances	57-1 thru 57-6	Succeed senior pastor	23-1
Admonition		When senior pastor leaves.....	23-1
Administered	36-3	Associate Membership Defined ...	46-4
Church censure	30-1	Associate pastor	
Definition of	30-2	Called by congregation	22-2
Adult Non-communing Members		Dissolution of relationship	22-4
Oversight of church	6-3, 28-4	Moderator of Session	12-4
Under care of church.....	28-5	Succeed senior pastor	23-1
Advice		When senior pastor leaves.....	23-1
Requested of higher courts by lower		Baptism	
.....	41-1	Adults.....	57-3
Subjects for reference	41-2	Infants and children	56-1 thru 56-4
Advisory member	9-4	Record kept by Session	12-8
Amending Constitution		Baptized Persons	
Book of Church Order	26-2	Cared for	6-3
Confession and Catechisms	26-3	Disciplined.....	27-2
Presbytery action	26-6	Bible Instruction for Children	28-2
Appeals		Biblical Conflict Resolution	
Abandoned.....	42-11	Appendix I
Circularizing the court	42-4	Binding Conscience	11-2
Decisions of higher court	42-9	Bishop or Pastor	8-1
Definition of appellant		Book of Church Order	
and appellee	42-1	Amending.....	26-2
Disqualification.....	39-2	Composition of.....	26-1
Forms	Appendix G	Budgets	9-2, 12-5
Grounds	42-3	Burial Service	
Hearing by higher court	42-8	Appendices C, D and E

색인

결석 교인	46-2	상소 (계속)	
고소 이유	31-8	상소인의 논쟁 정신	42-12
피고		상회에 접수	42-5
수찬정지	33-4	새 증언, 새 재판	35-14
새 증언, 새 재판	35-13	통보	42-6
증언을 강요할 수 없음	35-1	통보, 30 일 내	42-4
진행의 경우 원 당사자	31-3	소송 기록	42-5, 7, 9
서면 상소	32-3	상소 자격	42-2
피고인 보호	31-8	상소인	
출두 거부	33-2	자문	32-19, 42-10
상소 거부	33-2	정의	42-1
원고		출두 실패시	42-11
증인에 대한 이의	35-1	논쟁 정신	42-12
원고로서의 교회	31-4	30 일 내 상소 접수	42-4
진행의 경우 원 당사자	31-3	상소 처리회	부록 아를 보라
증언이 요구됨	35-1		40-5
폐회, 총회	14-8	피상소인의 정의	42-1
성찬 집례	58-1~8	보조 목사	
행정위원회	14-1(12)	당회가 청빙	22-3
인침 조례 허락	57-1~6	연고 해소	22-4
견책		당회장	12-4, 22-3
시행될 것	36-3	담임 목사 계승	23-1
교회 책벌	30-1	담임 목사 사임시	23-1
정의	30-2	준회원 정의	46-4
비수찬 장년 교인들		부 목사	
교회의 감독	6-3, 28-4	공동의회가 청빙	22-2
교회의 돌봄	28-5	연고 해소	22-4
문의		당회장	12-4
하위 치리회가 상회에 요청	41-1	담임 목사 계승	23-1
주제	41-2	담임 목사 사임시	23-1
자문위원	9-4	세례	
헌법 개정		장년	57-3
교회헌법	26-2	영아 및 유아	56-1~4
신앙고백과 요리문답	26-3	당회 기록	12-8
노회 조치	26-6	세례 받은 자	
상소		돌봄	6-3
유기	42-11	권징	27-2
치리회 회람	42-4	유아에 대한 성경의 교훈	28-2
상회 결정	42-9	성경적 갈등 해소	부록 자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정의	42-1	양심의 속박	11-2
자격 상실	39-2	감독 또는 목사	8-1
양식들	부록 사	교회헌법	
근거	42-3	개정	26-2
상회의 청문	42-8	구성	26-1
		예산	9-2, 12-5
		장례 예식	부록 다, 라, 마

INDEX

- Call to Pastor** 20-1, 20-6
Without Call 34-10
- Called Meetings**
Congregation 20-2, 24-1
General Assembly 14-3
Presbytery..... 13-12
- Candidates for Gospel Ministry**
Academic requirements 21-4
Call to a definite work 20-1
Christian service 18-5
Declaration and form of license 19-4
Definition 18-1
Different Presbytery may complete
examination 19-11
Dismissed to another Presbytery
..... 18-7, 46-6
Examination by Presbytery 18-3
Examination for
licensure 19-2 thru 19-4
Missionary Service 20-12
Ordination 19-13, 19-14
Procedure of receiving 18-3
Questions for licensure 19-3
Report to Presbytery yearly 18-6
Supervised by Presbytery 18-4
Trials for licensure 19-7
Under care of Presbytery 18-2
Under jurisdiction of Session .. 18-4
- Cases of Process**
Absence from court 32-17
Accusation caution 31-8
Accused
Answer to charge..... 32-15
Confession 32-3, 34-7, 38-1
Defendant only 31-11
Testimony not required 35-1
Accuser..... 31-3, 35-1
Against Lower Court 40-6
Appeals..... 34-1
Appellant defined 31-3, 42-1
Appellee defined 31-3, 42-1
Attitude of court 32-1
Censure
Official functions 31-1
Sacraments 33-2, 33-4
Slight 34-2
Challenges 32-16, 35-1
Character investigation..... 31-2
- Charge
Forms Appendix G
Gross crime or heresy 33-3
Origination..... 31-2, 32-2
Read..... 32-3, 32-15
To the court 32-15
Written..... 32-3
- Citations
Contumacy..... 33-2, 34-4
Forms..... Appendix G
General 32-3 thru 33-7
Committee, Judicial 32-11
Confession 32-3, 34-7
Counsel 32-3, 32-19
Deposed minister 34-8, 34-9
Dereliction of duty 34-1
Discussions during trial 32-14
Disqualification 32-16, 32-17, 32-19,
33-4, 35-11, 39-2
Divestiture 34-1
Excommunication 34-4
Failure to act, or to consider 33-1, 43-2
Heresy..... 34-5
Indictment
Content 32-5
Drawn and served 32-3
Form 31-4, Appendix G
Read..... 32-15
Instituted 31-2, 31-7, 32-2
Judgment recorded..... 32-15
Judicial Committee 32-11
Members of court 32-15, 32-17
Minutes of trial 32-18
Oath of witness 35-6
Offense
General 31-6
Distant 32-8, 32-9, 32-2
Public or private 31-5, 34-3
Time limit for accusation..... 32-20
Original jurisdiction 31-1, 33-1, 34-1
Plea
Refusal to..... 32-6, 33-2
Written..... 32-3
Presbytery vs. ministers
..... 34-1 thru 34-1
Prosecutor
Appointed..... 31-2, 32-3
Heard first..... 32-15

색인

목사 청빙	20-1, 6	고소	
청빙이 없을 때	34-10	양식	부록 사
임시 회의들		추악한 범죄 후 이단	33-3
공동의회	20-2, 24-1	시작	31-2, 32-2
총회	14-3	읽을 [기회]	32-3, 15
노회	13-12	치리회에게	32-15
목회자 후보		서면	32-3
필수 학력	21-4	소환	
구체적 사역의 청빙	20-1	항명죄	33-2, 34-4
그리스도인 사역	18-5	양식	부록 사
인허 선언 및 형식	19-4	제반 사항	32-3~33-7
정의	18-1	법사 위원회	32-11
다른 노회가 시취를 완료		자백	32-3, 34-7
할 수 있음	19-11	자문	32-3, 19
다른 노회 이명	18-7, 46-6	면직된 목사	34-8, 9
노회 시취	18-3	직무 유기	34-10
인허 시취	19-2-4	재판 중 토의	32-14
선교 사역	20-12	자격 상실	32-16, 17, 19
안수	19-13, 14		33-4, 35-11, 39-2
가입 절차	18-3	해직	34-10
인허시 질문들	19-3	출교	34-4
매년 노회 보고	18-6	조치, 고려가 없으면	33-1, 43-2
노회가 감독	18-4	이단	34-5
인허를 위한 시험	19-7	고소	
노회 언더케어	18-2	내용	32-5
당회 관할 아래	18-4	작성 및 협조	32-3
소송 진행		양식	부록 사
치리회 불참	32-17	읽을 [기회]	32-15
고소 이유	31-8	제정됨	31-2, 7, 32-2
피고		판결 기록	32-15
답변	32-15	법사 위원회	32-11
자백	32-3, 34-7, 38-1	치리회원	32-15, 17
권리 한계	31-11	재판 기록	32-18
증언서	35-1	증인 서약	35-6
고소인	31-3, 35-1	범과	
하위 치리회 고소	40-6	일반적	31-6
상소	34-10	면 지역	32-8, 9, 20
상소인 정의	31-3, 42-1	공적 후 사적	31-5, 34-3
피상소인 정의	31-3, 42-1	고소 시효	32-20
치리회 태도	32-1	최초 관할권	31-1, 33-1, 34-1
책벌		상소	
공적 기능	31-10	거부	32-6, 33-2
성례	33-2, 4	서면	32-3
경시	34-2	노회 대 목사	34-1~10
이의	32-10, 35-1	검사	
조사 성격	31-2	임명	31-2, 32-3
		일심 청문	32-15

INDEX

- Prosecutor (continued)
Represents church..... 31-3
Voluntary 31-3, 31-9
Reconciliation, reclaiming .. 31-5, 32-1
Record
Copies..... 32-18
Of charges..... 34-4
Other court's use..... 32-18, 35-8
Testimony of witness..... 35-7
Removals
Appeal or complaint 32-18
Of scandal..... 34-6
Private..... 31-5, 31-7
Repentance..... 33-2
Restoration of minister..... 34-8
Roll call 32-15
Schism 34-5
Sessions vs. members .. 33-1 thru 33-4
Spouse, testimony 35-2
Statute of Limitation 32-2
Suspension of Judgment 42-6, 43-4
Suspension
Sacraments 33-2
Official function
..... 31-10, 34-4, 34-7, 34-8
Testimony 35-9 thru 35-14
Trial 32-12 thru 32-18
Witnesses
Challenge of..... 35-1
Distant..... 32-8
Examined 32-13, 32-15, 35-1,
..... 35-4, 35-5
Number of..... 35-3
Oath 35-6
Verdict 32-15
Vote 32-15
Cases without process
Communing member or officer
with charge 38-2, 38-3
Demitting without censure..... 38-2
Joining other church/
denomination 38-3
Voluntary statement 38-1
Catechism (Larger and Shorter)
Amending 26-3
Children's instruction 28-2
Part of Constitution .. Preface III, 26-1
Censures of Church
Admonition administered 36-2
Admonition defined 30-2
Censures of Church (continued)
Censure administered 36-2
Deposition defined 30-5
Deposition administered
..... 36-7, 38-2
Excommunication defined 30-4
Excommunication administered
..... 36-6
Removal of censures
..... 37-1 thru 37-7
Suspension defined 30-3
Suspension administered
..... 36-4, 36-5
Certificate of Dismission
Baptized children 12-5
Presbytery to minister 46-6
Secured by candidate 18-7
Secured by interns..... 19-8
Session to member 12-5
Session to members in good
standing..... 46-1
Valid for one year 46-7
Challenge (in Case of Process)
Member of the court..... 32-16
Witness..... 35-1
Charge Against Offender
Caution in receiving
charges 31-8, 34-2
Form..... Appendix G
Made by some person or
persons..... 32-2
Written..... 33-3
Children
Baptism of..... 56-4
Church instructs 28-2
Members of visible Church
..... 2-1, 56-4
Pastoral oversight..... 6-1
Profession of faith 28-3
Responsibility of parents and
church 28-1
Under care of church 28-5
Christ
Doctrine, government, discipline
and worship Preface I
King and Head of Church Preface I
Names in Scriptures Preface I
Officers in church Preface I
Present Preface I
Christian Life in Home 63-1 thru 63-6

색인

검사 (계속)		교회 책벌들 (계속)	
교회를 대표	31-3	책벌 시행	36-2
자원	31-3, 9	면직의 정의	30-5
화해, 재요구	31-5, 32-1	면직 시행	36-7, 38-2
기록		출교의 정의	30-4
사본들	32-18	출교 시행	36-6
고소	34-4	해벌	37-1~7
다른 치리회용	32-18, 35-8	정직의 정의	30-3
증인의 증언	35-7	정직 시행	36-4, 5
삭제		이명 증서	
상소 혹은 고소	32-18	유아 세례	12-5
추문	34-6	노회가 목사에게	46-6
개인적	31-5, 7	후보가 확보	18-7
회개	33-2	인턴이 확보	19-8
목사 복직	34-8	당회가 교인에게	12-5
호명	32-15	당회가 무흠 교인에게	46-1
분열	34-5	일년 간 유효	46-7
당회 대 교인들	33-1~4	이의 (재판 중에 있는 소송건)	
배우자, 증언	35-2	치리회 회원	32-16
한계 규정	32-20	증인	35-1
판결 정지	42-6, 43-4	범죄자에 대한 고소	
정지		고소 접수시 유의	31-8, 34-2
성례	33-2	양식	부록 사
공적 기능	31-10, 34-4, 34-7, 8	일인 혹은 다수의 고소	32-2
증언	35-9~14	서면	33-3
재판	32-12~18	유아	
증인		세례	56-4
이의	35-1	교회의 가르침	28-2
거리	32-8	가시 교회 성원	2-1, 56-4
심문	32-13, 15, 35-1, 4, 5	목회적 감독	6-1
수	35-3	신앙 고백	28-3
서약	35-6	부모와 교회의 책임	28-1
판결	32-15	교회의 돌봄 아래	28-5
투표	32-15	그리스도	
재판 없는 소송건		교리, 정치, 치리, 예배	서문 I
죄목 있는 수찬교인		교회의 왕과 머리	서문 I
혹 직분자	38-2, 3	성경에 있는 이름	서문 I
책벌 없는 사임	38-2	교회의 직분들	서문 I
다른 교회/교단 가입	38-3	임재	서문 I
자술서	38-1	집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63-1~6
요리문답 (대, 소)			
개정	26-3		
어린이 교훈	28-2		
헌법 중	서문 III 26-1		
교회 책벌들			
견책 시행	36-2		
견책의 정의	30-2		

INDEX

Church

- Agency Christ ordained..... 3-5
- Associate member 46-4
- Building dedication Appendix F
- Calling a pastor 20-2 thru 20-11
- Catholic, defined 1-3
- Courts in general 10-1 thru 10-6
- Duties of officers 7-2, 7-3
- Incorporation of 25-7
- Members of 1-3, 6-1,6-4, 46-4
- New church organization..... 5-1, 13-8
- Officers of 4-2, 7-2
- Ordinances 4-4
- Particular, definition..... 4-1
- Polity consists of 7-2
- Property 25-8, 25-9
- Reception of, examination..... 13-8
- Unity 2-2
- Visible, definition..... 1-3, 2-1
- Withdrawal 25-11
- Worship without teaching elder... 4-5

Church Courts

- Authority moral or spiritual..... 11-1
- Binding conscience, may not.... 11-2
- Clerks, duties 10-4
- Expenses of members 10-6
- General Assembly 14-1
- Jurisdiction limited by
 - Constitution 11-4
- Jurisdiction ministerial/
 - declarative 11-2
- Moderators of 10-3
- Names of 10-2
- One in nature 11-3
- Open and close with prayer 10-5
- Presbyteries composed of 10-1
- Presbytery..... 13-1 thru 13-12
- Referrals, lower courts to higher
 - 11-3
- Rights of courts 11-4
- Sessions 12-1 thru 12-9
- Sphere of action defined 11-4

Church Government

- Joint, not several 1-5
- Officers..... 1-4, 16-2
- Purpose of 1-2
- Representative 1-1
- Scriptural form 1-1

Church Organization of Particular
..... (see Particular Church)

Church Power

- Divine sanction 3-6
- Ecclesiastical power Preface II-7, 3-2
- Functions 3-3
- Joint power in Session 4-3
- Limitation of Pref. II-1 and 7, 3-4,11-4
- Representative 3-1
- Spiritual exclusively 3-1, 3-4
- Vested in rulers and ruled 3-1

Church Property

- Buying and selling 25-6, 25-7
- Civil law 25-11
- Dissolved churches 25-12
- Funds controlled and disbursed 25-7
- Ownership 25-8
- Seizure of..... 25-10

Church Growth 13-9g, 14-6d, 47-3

Circularizing 42-4, 43-2

Citation (in Cases of Process)

- Duly served..... 32-1
 - Form Appendix G
 - Issued and signed 32-4
 - Refusal to obey 32-6, 33-2, 34-4
 - Time lapse 32-7
 - Unconstitutional proceedings 40-5
- Civil Authority Preface II-1, 25-6, 25-11

Clerk

- Congregational meeting 25-5
 - Courts 10-4
 - Duties of 10-4, 32-18
- Closed Session..... 42-8, 43-9

Commissions (Ecclesiastical)

- (see also Appendix H)
- Appointed authority 35-1
- Authority 15-1
- Consists of 15-2 thru 15-4
- Defined 15-1
- Judicial cases 15-3
- Provisional national churches 15-6
- Quorum of 15-2, 15-3
- Records 15-1
- Standing Judicial 15-1,15-4, 15-5

Commissioners to General Assembly

- Expenses, how paid 10-6
 - Credentials 14-4
 - Congregational representation ... 14-2
 - Quorum..... 14-5
 - Called meetings representation . 14-3
- Committees of General Assembly.. 14-1
- Communion 58-1 thru 58-8

색인

교회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기관	3-5
준회원	46-4
헌당	부록 바
목사 청빙	20-2~11
보편적, 정의	1-3
치리회	10-1~6
직분자 의무	7-2, 3
법인	25-7
교인	1-3, 6-1, 4, 46-4
새 교회 조직	5-1, 13-8
직분자	4-2, 7-2
법도	4-4
조직, 정의	4-1
정치 조직	7-2
재산	25-8, 9
가입, 시취	13-8
통일성	2-2
가시, 정의	1-3, 2-1
탈퇴	25-11
강도 장로가 없을 시예배	4-5

교회치리회

도덕적 영적 권위	11-1
양심의 속박	11-2
서기의 의무	10-4
회원 비용	10-6
총회	14-1
헌법이 제한하는 관할권	11-4
목회적, 선언적 관할권	11-2
의장	10-3
명칭	10-2
본질적 하나	11-3
기도로 개회 폐회	10-5
노회 구성	10-1
노회	13-1~12
상위 치리회로 위탁	11-3
치리회 권리들	11-4
당회	12-1~9
활동 범위의 정의	11-4

교회정치

개별적이 아닌 공동의 것	1-5
직원들	1-4, 16-2
대표	1-1
성경적 형태	1-1
조직 교회	(조직 교회를 보라)

교회 권한

하나님의 인준	3-6
교회적 권한	서문 II-7, 3-2
기능들	3-3
당회의 공동 권한	4-3
한계	서문 II-1, 7, 3-4, 11-4
대표	3-1
오직 영적	3-1, 4
치리자들과 치리 받는자들에게 부여	3-1

교회 재산

매매	25-6, 7
민법	25-11
교회 해산	25-12
기금 모금 및 분배	25-7
소유권	25-8
압수	25-10
교회성장	13-9 아, 14-6 라, 47-3
회람	42-4, 43-2

소환(소송 절차상)

적법한 송달	32-10
양식	부록 사
발부 및 서명	32-4
불복	32-6, 33-2, 33-4
시간 경과	32-7
비헌법적 절차	40-5
세상 권위	서문 II-1, 25-6, 11

서기

공동의회	25-5
치리회	10-4
의무	10-4, 32-18
비공개 회의	42-8, 43-9

위원회들(교회)

(부록 아도 보라)	
임명된 권한	35-10
권한	15-1
구성	15-2~4
정의	15-1
소송건들	15-3
민족 교회 규정	15-6
성수	15-2, 3
기록	15-1
상임 법사	15-1, 4, 5

총회 총대들

비용 지출 방법	10-6
신임장	14-4
교회 대표 비율	14-2
성수	14-5
임시 총회 대표	14-3
총회 위원회들	14-1
성찬	58-1~8

INDEX

- Complainant Defined 43-3
- Complaints**
- Abandoned 43-7
 - Circularizing the court 42-4, 43-2
 - Commission appointed 43-8
 - Definition of 43-1
 - Denial of error 43-3
 - Disqualification..... 39-2
 - Form Appendix G
 - Hearing 43-9
 - Higher court 43-6, 43-1
 - Representatives 43-5
 - Respondent 43-5
 - Suspension of action 43-4
 - Time requirements 43-2, 43-3
 - Written 43-1
- Confessing Faith as Part of Worship
..... 55-1
- Confession of Faith**
- Amending 26-3, 26-5
 - Part of Constitution Preface III, 26-1
- Confession of Offense**
- Any person..... 32-3, 38-1
 - Minister 34-7
- Confessional Subscription**
- Differences/Exceptions ... 21-4.b, e, f
 - Questions for ordination 21-5
- Congregation**
- Presbytery affiliation 25-11
 - Pastor selection 20-2, 23-1
 - Property rights 25-9 thru 25-12
 - Questions
 - Ordination/installation of officers 24-6
 - Installation of minister 21-10
 - Ordination of minister 21-6
- Congregational Meetings**
- Absentee voting prohibited 20-4,
..... 24-3, 24-4
 - Clerk of 25-5
 - Members request..... 25-2
 - Trustees elected 25-6
 - Moderator elected .. 20-3, 24-2, 25-4
 - Notice of one week 25-2
 - Quorum for 25-3
 - Session calls..... 12-5, 20-2, 25-2
 - Pastor elected 20-2 thru 20-4
 - Ruling elders and deacons
 - elected 24-1 thru 24-5
 - Voters 24-3, 25-1
- Conscience Preface II-1 and 7
..... 11-2, 14-1(4)
- Constitution of PCA**
- Definition Preface III, 26-1
 - Amending..... 26-2 thru 26-6
 - Principles applied..... 32-20, 34-10
..... 38-2, 40-6
- Control (oversight) 11-4, 13-9f
- Contumacy 32-6, 33-2, 34-4
- Counsel**
- Assigned to necessarily absent.. 32-3
 - Professional not allowed 32-19
 - Right of appellant to..... 42-9
 - Who may represent the accused
..... 32-19
- Court of Jurisdiction 11-4, 32-8 and 9
- Deacons**
- Assistance from godly men or women..... 9-7
 - Conferences 9-6
 - Definition of office 9-1
 - Dissolve relationship against their will..... 24-7, 24-9, 34-10
 - Divested without censure
..... 34-10, 38-2
 - Duties of 7-2, 7-3, 9-2
 - Election... 3-1; 16-2; 24-1, 3 thru 8
 - Emeritus 24-1
 - Gifts of 16-3
 - Ordination by a court 17-1
 - Ordination, questions 24-6
 - Organized as board 9-4
 - Pastor, advisory member 9-4
 - Qualifications of..... 9-3
 - Resignation or dissolving of office..... 24-7 thru 9; 38-3
 - Session ordains and installs..... 12-5
 - Session oversight 12-5
 - Special assignments 9-5
- Definite Suspension**
- Administered..... 36-4
 - Church censure..... 30-1
 - Definition..... 30-3
- Demission 38-2
- Deposed Minister**
- Conditions for restoration 34-8
 - Restoration 37-5, 37-7
- Deposition**
- Administration 36-7
 - Appeal..... 42-6

색인

소원의 정의	43-3	양심	서문 II-1, 7, 11-2, 14-1(4)
소원		미국장로회 헌법	
유기	43-7	정의	서문 III, 26-1
치리회 회람	42-4, 43-2	개정	26-2~6
전권위원회	43-8	원리 적용	32-20, 34-10, 38-2, 40-6
정의	43-1	통제 (감독)	11-4, 13-9 ㄴ
오류 상 거부	43-3	불복	32-6, 33-2, 34-4
부적격	39-2	변호인	
양식	부록 사	부득이한 불참시	32-3
청문	43-9	직업인 불가	32-19
상위 치리회	43-6, 10	상소인 권리	42-9
대표들	43-5	피고인 대표	32-19
피소원인	43-5	관할 치리회	11-4, 32-8, 9
조치 정지	43-4	집사	
요구된 시간	43-2, 3	경건한 남녀 교인 보조	9-7
서면	43-1	토의	9-6
예배 모범의 일부로서의 신앙고백	55-1	직분의 정의	9-1
신앙 고백		뜻에 반대하는 연고해소	24-7, 9, 34-10
개정	26-3, 5	책벌없는 해직	34-10, 38-2
헌법의 일부	서문 III, 26-1	의무	7-2, 3, 9-2
범죄 고백		선거	3-1, 16-2, 24-1, 3~8
누구나	32-3, 38-1	명예	24-10
목사	34-7	은사	16-3
신앙고백적 찬동		치리회의 안수	17-1
차이/예외	21-4 ㄴ, ㄹ, ㄷ, ㄹ	안수, 질문	24-6
안수를 위한 질문	21-5	집사회 조직	9-4
회중		목사, 자문위원	9-4
노회 가입	25-11	자격	9-3
목사 선택	20-2, 23-1	사임 또는 관계 해소	24-7~9, 38-3
재산권	25-9~12	당회의 안수 및 장립	12-5
질문들		당회의 감독	12-5
안수 및 임직	24-6	특별 과제	9-5
목사 임직	21-10	정지의 정의	
목사 안수	21-6	시행	36-4
공동의회		교회 책벌	30-1
부제자 투표 금지	20-4, 24-3, 24-4	정의	30-3
서기	25-5	면직	38-2
요구되는 교인수	25-2	면직된 목사	
이사 선출	25-6	복직의 조건들	34-8
의장 선출	20-3, 24-2, 25-4	복직	37-5, 7
한 주전 통보	25-2	면직 시별	
성수	25-3	시행	36-7
당회의 소집	12-5, 20-2, 25-2	상소	42-6
목사 선출	20-2~4		
치리 장로와 집사 선출	24-1~5		
투표	24-3, 25-1		

INDEX

- Deposition (continued)
- Church censure 30-1
 - Confession by minister 34-7
 - Defined 30-5
 - Disobeying citations 34-4
 - Heresy and schism..... 34-5
 - Restoration of minister or officer 37-5
- Destitute Regions 4-5, 8-6, 15-6
[cf. MTW Policy Manual 2.02.1(5)]
- Differences to WCF 21-4.b, e, f
- Discipline**
- Definition
 - Administrative & judicial..... 27-1
 - Duty of Presbytery and Session 32-1
 - Grounds for 29-2
 - Ordained by Christ Preface I
 - Power of 27-4
 - Principles of 27-5
 - Purpose of 27-3
 - Who is subject to..... 27-2
- Dismission
..... (see Certificate of Dismission)
- Dissent**
- Definition of 45-2
 - Time limitation..... 45-1
 - Treatment by court 45-5
 - Who may join..... 45-1, 45-5
 - Withdrawal..... 45-5
-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
- Congregational initiative 23-1
 - Deposition as cause 34-9
 - Procedure of 23-1
 - Resignation of pastor..... 23-1
 - Succeeding senior pastor 23-1
 - Suspension of minister 34-9
- Divestiture from Office**
- Membership of divested minister 46-8
 - Minister against his will 34-1
 - Minister at his request 38-2
 - Officer against his will ... 24-7, 9; 34-1
 - Officer at his request 38-2
 - Ecclesiastical Commission
..... (see Commissions)
- Ecclesiastical Jurisdiction**
- Church courts 11-1 thru 11-4
 - Joint power 1-5, 3-6, 4-3, 8-3
 - Ecclesiastical Power (see Church Power)
..... 46-1 thru 46-8
- Elders**
- Defined 7-2, 8-8
 - Duties 7-2, 8-3
 - Election Preface II-6, 3-1
..... 16-2, 24-1 thru 24-5, 24-8
 - Emeritus 24-1
 - Gifts 8-4
 - Inactive 13-2, 24-7 thru 10, 37-6
 - Installation of..... 24-6
 - Ordination of 24-6, 24-7
 - Parity 8-8
 - Qualifications..... 8-2
 - Resignation..... 24-7, 24-9
 - Ruling elders..... 8-8, 8-9
..... (see also Ruling Elders)
 - Titles..... 8-1
 - Teaching Elders..... 8-4 thru 8-7
..... (see also Ministers,
and Teaching Elders)
- Election of Pastor**
- Call 20-1, 20-6
 - Installation service..... 21-8 thru 21-11
 - Minority refusal to concur 20-5
 - Moderator, congregational meeting 20-3
 - Presbytery approval 20-1
 - Procedure of local church 20-2
 - Prosecution of call 20-8, 20-9
 - Pulpit committee..... 20-2
 - Subscription of call..... 20-7
 - Voting..... 20-3, 20-4
- Election of Ruling Elders and Deacons**
- Congregational meeting..... 24-4
 - Electing additional officers..... 24-1
 - Examination of nominees 24-1
 - Moderator of congregational meeting..... 24-2, 25-4
 - Number of officers 24-1
 - Ordination and installation 24-6, 24-7
 - Public notice given 24-1
 - Quorum of congregational meeting 25-3
 - Re-elected, installed, not ordained 24-8
 - Voting 24-3
- Election of Officers**
- By congregation Preface II-6, 3-1,
..... 16-2, 24-1, 24-4
 - Inalienable right of church..... 16-2
 - Emeritus 23-3, 24-1
 - Evangelism Duty of Elders..... 8-3

색인

면직 시벌 (계속)		장로들	
교회 책벌	30-1	정의	7-2, 808
목사의 고백	34-7	의무	7-2, 8-3
정의	30-5	선거	서문 II-6, 3-1, 16-2, 24-1~5, 24-8
소환 불복	34-4	명예	24-10
이단과 분열	34-5	은사	8-4
목사나 직원의 복직	37-5	무임	13-2, 24-7~10, 37-6
빈곤한 지역	4-5, 8-6, 15-6	임직	24-6
[세계선교 지침 2.02.1(5) 비교]		안수	24-6,7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동등	8-8
이견	21-4, 나, 口, 바	자격	8-2
권징		사임	24-7, 9
정의, 행정적 및 법적	27-1	치리 장로	8-8, 9 (치리 장로를 보라)
노회와 당회의 의무	32-1	칭호	8-1
근거들	29-2	강도 장로	8-4~7
그리스도의 제정	서문 1		(목사, 강도 장로를 보라)
권한	27-4	목사 선거	
원리	27-5	청빙	20-1, 6
목적	27-3	임직 예배	21-8~11
복종의 대상	27-2	반대하는 소수	20-5
이명	(이명 증서를 보라)	공동의회 의장	20-3
항의		노회 인준	20-10
정의	45-2	지역 교회 절차	20-8, 9
시간 제한	45-1	청빙위원회	20-2
처리회의 처리	45-5	청빙 서명	20-7
연대 대상	45-1, 5	투표	20-3, 4
철회	45-5	치리 장로와 집사 선거	
목사의 연고 해소		공동의회	24-4
회중의 주도	23-1	추가 직분자 선거	24-1
면직이 원인	34-9	후보 시취	24-1
절차	23-1	공동의회 의장	24-2, 25-4
목사의 사임	23-1	직분자 수	24-1
답임 목사 승계	23-1	안수 및 임직	24-6,7
목사 정직	34-9	공적 통보	24-1
직무의 해직		공동의회 성수	25-3
해직된 목사의 교인됨	46-8	안수 없이 재선, 재임	24-8
목사의 뜻에 반대하여	34-10	투표	24-3
목사의 요청에 따라	38-2	직분자 선거	
직분자의 뜻에 반대하여	24-7, 9, 34-10	공동의회에서	서문 II-6, 3-1, 16-2, 24-1,4
직분자의 요청에 따라	38-2	박탈 될 수 없는 권리	16-2
교회 위원회	(위원회들을 보라)	명예	23-3, 24-10
교회 관할권		장로의 전도 의무	8-3
교회 치리회	11-1~4		
공동 권한	1-5, 3-6, 4-3, 8-3		
교회적 권한	(교회 권한을 보라)		
	46-1~8		

INDEX

- Evangelist**
Called and appointed 8-5
Minister of the Word 8-5
Ordination questions 21-11
Organize churches/ordain
officers 8-6
Receive and dismiss members 8-6
- Evidence**
Accused not compelled to testify 35-1
Accuser required to testify 35-1
Certified testimony valid 35-9
Challenge of witnesses..... 35-1
Commission appointment 35-1
Competency of witnesses..... 35-1
Court judges evidence..... 35-1
Examination of witnesses .. 35-4, 35-5
More than one witness
 necessary 35-3
New testimony, new trial 35-13,
 35-14, 42-5
Oath of witness 35-6
Questions asked witness 35-7
Records authenticated 35-8
Refusing to testify 35-12
Spouse testimony 35-2
Taking testimony 15-2, 35-10
Witness disqualified as judge,
if challenged 35-11
- Examination**
Admission to sealing ordinances 57-2
Candidate for Gospel ministry 18-3
Candidate for internship..... 19-9
Candidate for licensure 19-2
Elders of congregation being
 received..... 13-8
Intern for ordination..... 21-4, 21-5
Minister from another
 denomination/Presbytery 13-6
Officer nominees 5-9(2), 12-5,
 16-3, 24-1
Exceptions/Differences to WCF 21-4
- Excommunication**
Form for administering 36-6
Appeal..... 42-6
Church censure 30-1
Contumacy 34-4
Defined 30-4
Disobeying citations 34-4
Purpose of 30-4
Restoration of person 37-3
- Expenses Attending Church Court
 Paid 10-6
- Extraordinary Case**
Candidates..... 18-2
Licensure trials..... 19-2
Ordination trials 21-4
- Fasting and Thanksgiving . 62-1 thru 62-7
- Forms**
Baptism, infant 56-6
Call to a pastor 20-6
Censures 36-5, thru 36-7
Communion 58-5, 58-7
Dedication of Building Appendix F
Funeral Appendices C, D and E
General Assembly adjournment
 14-8
Indictment 31-4
Internship 19-8
Judicial Discipline..... Appendix G
Licensure..... 19-4
Marriage Appendices A and B
Ministerial Obligation 13-7
Ordination of minister 21-7
Ordination/installation of officers 24-6
Organization of particular church 5-8
Restoration from
 censures..... 37-1, 37-3, 37-4, 37-5
- General Assembly**
Actions, effect of..... 14-7
Adjournment 14-8
Called meeting of 14-3
Committees of 14-1
Consists of..... 14-2
Definition of 14-1
Examining committee 14-1, 14
Expenses of commissioners 10-6
Judicial cases to commission 15-3
Jurisdiction over whole church ... 11-4
Meets annually 14-2
Nominating committee..... 14-1.11
Opens and closes with prayer 10-5
Organization 14-1
Permanent court 14-2
Powers of 14-6, 7, 15-6
Quorum of 14-5
Quorum of Judicial Commission 15-3
Visiting brethren 13-13
General offenses..... 29-2, 29-3, 31-6
Government of Church
 (see Church Government)

색인

전도 목사		교회 치리회 출석 비용 담당	10-6
청빙 및 임명	8-5	예외 건	
말씀 사역자	8-5	후보	18-2
안수 질문	21-11	인허 시취	19-2
교회 조직 및 직분자 안수	8-6	안수 시취	21-4
교회 영입 및 이명	8-6	금식과 감사	62-1~7
증거		형태	
증언 할 것을 피고에게		유아 세례	56-6
강요할 수 없음	35-1	목사 청빙	20-6
고소자에게 요구되는 증언	35-1	책벌	36-5~7
보증된 증언의 유효성	35-9	성찬	58-5, 7
증인의 이익	35-1	현당	부록 바
전권위원회 임명	35-10	장례	부록 다, 라 마
증인의 신빙성	35-1	총회 폐회	14-8
치리회 판사들의 증거	35-1	판결	31-4
증인 심문	35-4,5	인턴	19-8
일인 이상의 증인 필요	35-3	법적 치리	부록 사
새 증거, 새 재판	35-13,14, 42-5	인허	19-4
증인의 서약	35-6	결혼	부록 가, 나
증인에게 묻는 질문들	35-7	목회적 의무	13-7
기록 인증	35-8	목사 안수	21-7
증언 거부	35-12	직분자 안수/임직	24-6
배우자 증언	35-2	조직 교회 조직	5-8
증언하기	15-2, 35-10	책벌에서 해벌	37-1,3,4,5
의의가 있을 시, 증인은		총회	
판사 자격 상실	35-11	조치 효과	14-7
시취		폐회	14-8
인침 규제 허용	57-2	임시 총회	14-3
복음 사역 후보	18-3	위원회	14-1
인턴 후보	19-9	구성	14-2
강도사 후보	19-2	정의	14-1
회중의 장로 영입	13-8	고시위원회	14-1,14
안수를 위한 인턴	21-4, 5	총대 경비	10-6
타 교단/노회의 목사	13-6	전권위원회로 넘길 법적 소송	15-3
직분자 공천자들	5-9(2), 12-5, 16-3, 24-1	모든 교회 관할권	11-4
신앙고백서에 대한 예외/이견	21-4	매년 회집	14-2
출교		공천위원회	14-1.11
시행 형태	36-6	기도로 개회 및 폐회	10-5
상소	42-6	조직	14-1
교회 책벌	30-1	항존 치리회	14-2
불복	34-4	권한	14-6,7, 15-6
정의	30-4	성수	14-5
소환 불복	34-4	법사 위원회 성수	15-3
목적	30-4	방문자	13-13
개인 회복	37-3	일반 범죄	29-2,3, 31-6
		교회 정치	(교회 정치를 보라)

INDEX

- Heresy and Schism 34-5
- Higher Court**
- Advice to lower court 41-4, 41-5
 - Citation to lower court..... 40-5
 - Complaints 43-1 thru 43-5
 - Hearing an appeal 42-8
 - Jurisdiction of..... 11-4
 - Limits of jurisdiction
 - Preface II-1, 2, 6, 7, 8, 11-4
 - Neglect of lower court 42-7
 - Process against lower court 40-6
 - References 41-1 thru 41-6
 - Review of lower courts 11-4
 - Subjects for reference 41-2
- Holy Spirit, Application of Benefits
..... Preface I
- Home**
- Christian life in..... 63-1 thru 63-6
 - Church to promote religion in 28-1
 - Honorably Retired 23-2 and 3
 - Inactive Elders..... (see Elders)
 - Incorporation 25-7
- Indefinite Suspension**
- Administered 36-5
 - Defined 30-3
 - Removal of censure 37-3
- Infants**
- Baptism of 6-1, 56-1 thru 56-6
 - Membership in church... 1-3, 2-2, 6-1
- Inflation of Church Censures**
- Private and public offenses..... 36-2
 - Spirit of meekness 36-1
 - Suited to offense..... 36-2
- Interim Pastors (see Stated Supply)
- Intern, Internship**
- Applicant for 19-8
 - Approval of 19-13
 - Approval of call of 19-14
 - Called by congregation..... 19-14
 - Changing Presbyteries..... 19-11
 - Cooperative agreements 19-11
 - Disapproval of 19-13
 - Establishment of 19-7
 - Examination for 19-9
 - Previous Experience 19-16
 - Relation of to Session..... 19-15
 - Report on 19-12
 - Restrictions on..... 19-15
 - Testing gifts..... 19-7
- Installation of Minister**
- Procedure..... 21-1 thru 21-9
 - Questions asked congregation
..... 21-1
 - Questions asked minister 21-9
- Investigation**
- Personal offenses by court
..... 31-5, 31-7
 - Requested by aggrieved..... 31-2
 - Irregular(ity) 34-5, 40-3
 - Joint Power 1-5, 3-6, 4-3, 7-2, 8-3
 - Judicial Case ... (see Appeals, Complaint
..... and References)
- Judicial Commissions**
- Matters executed by 15-2
 - Quorum in Presbytery..... 15-2
 - Record of Case 15-1, 15-5
 -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15-1, 15-4, 15-5
 - Taking of testimony..... 15-2
- Judicial Committee**
..... (see also Appendix H)
..... 32-11
- Jurisdiction of Church Courts**
- Defined for each court 11-4
 - Divested minister assigned church
membership 46-8
 - Joining another denomination 38-3
 - Joint power 1-5
 - Limited by constitution..... 11-4
 - Ministerial and declarative 11-2
 - Moral or spiritual 11-1
 - Original: Session and
Presbytery..... 46-1 thru 46-8
 - Persons under censure who move 37-7
 - Presbytery over minister, licentiate
or candidate 5-1, 13-2, 19-1, 46-6
 - Session over members 12-5
- Laboring Out of Bounds 8-7, 13-2, 13-5
- Licensure, Licentiate**
- Candidates for the ministry..... 19-1
 - Examination for 19-2
 - Ministers from other denominations
..... 19-1
 - Missionary Service 20-12
 - Necessity 18-5, 19-1
 - Procedure for 19-2
 - Questions for 19-3
 - Renewal procedures..... 19-6

색인

이단과 분열	34-5	목사 임직	
상위 치리회		절차	21-1~9
하위 치리회 자문	41-4,5	회중에게 묻는 질문	21-10
하위 치리회 소환	40-5	목사에게 묻는 질문	21-9
이의	43-1~5	조사	
상소 청문	42-8	치리회의 사적 범죄	31-5,7
관할권	11-4	피해자의 요구	31-2
관할권 한계	서문 II-1,2, 6,7,8	불규칙(적)	34-5, 40-3
	11-4	공동 권한	1-5, 3-6, 4-3, 7-2, 8-3
하위 치리회의 소환	42-7	법적 소송권	(상소, 이의와 위탁을 보라)
하위 치리회에 대한 절차	40-6	법사 전권 위원회	
문의	41-1~6	집행 사안	15-2
하위 치리회의 검토	11-4	노회의 성수	15-2
문의를 위한 주제들	41-2	소송 기록	15-1,5
성령, 적용 혜택	서문 1	상임법사위원회	15-1,4,5
가정		증언을 들음	15-2
그리스도인의 삶	63-1~6	법사 위원회	부록 아를 보라
교회가 신앙을 권장할 곳	28-1		32-11
명예 은퇴	23,2,3	교회 치리회 관할권	
무임 장로	(장로들을 보라)	각 치리회를 위한 정의	11-4
법인	25-7	해직된 목사의 교인됨	46-8
무기 정직		타 교단 가입	38-3
시행	36-5	공동 권한	1-5
정의	30-3	헌법의 제약	11-4
해벌	37-3	사역적 및 선언적	11-2
유아		도덕적 혹은 영적	11-1
세례	6-1, 56-1~6	원래 당회와 노회	46-1~8
등록 교인	1-3, 2-2, 6-1	책벌 하에 이주한 사람들	37-7
교회 책벌의 고등		노회의 목사, 강도사, 또는	
사적, 공적 범죄	36-2	목사 후보 감독	5-1, 13-2,
온유한 영	36-1		19-1, 46-6
범죄에 적합	36-2	당회의 교인 감독	12-5
임시 목사들	(정해진 공급을 보라)	지역 밖의 사역	8-7, 13-2,5
인턴, 인턴십		인허, 강도사	
지원자	19-8	사역 후보	19-1
인준	19-13	시취 내용	19-2
청빙 인준	19-14	타 교단 목사	19-1
회중의 청빙	19-14	선교 봉사	20-12
노회 변경	19-11	필요성	18-5, 19-1
협력 합의	19-11	절차	19-2
거부	19-13	질문들	19-3
성립	19-7	갱신 절차	19-6
시취	19-9		
이전 경험	19-16		
당회와의 관계	19-15		
보고	19-12		
계약	19-15		
은사를 시험함	19-7		

INDEX

Licensure, Licentiates (continued)

- Ruling elders 19-1
- Terms 19-6
- Transfer to another Presbytery
..... 19-5, 46-6

Litigious Spirit..... 31-8, 42-12

Lord's Day

- Sanctification of..... 48-1 thru 48-7

Lord's Supper

- Administration 58-1 thru 58-8

Lower Court

- Advice from higher court... 41-1, 41-5
- Cited by higher court 40-5
- Discharge of duty..... 41-5
- Jurisdiction..... 11-4, 46-1 thru 46-8
- Neglect to send record of case 42-7
- Preparation of case..... 41-6
- Process against..... 40-6
- Reference representatives 41-4
- References to higher court 41-3
- Review and control 11-4
- Subjects for reference 41-2
- Supervision of higher court..... 39-1

Marriage

- Service Appendices A and B
- Solemnization of..... 59-1 thru 59-7

Members of Church

- Associate, defined..... 46-4
- Baptized persons 6-3
- Certificate of dismissal 46-7
- Children of believers..... 6-1
- Communing, defined 6-2
- Corporation members 25-7
- Discipline 27-2
- Erasure/dismissal ... 38-3, 38-4, (46-5)
- Joining another denomination 38-3
- Membership 1-3
- Non-communing defined 6-1, 56-4
- Privileges of 6-4
- Process against..... 33-1 thru 33-4
- Professing Faith 6-4
- Questions to new members 57-5
- Received on profession of
faith..... 46-1, 57-6
- Removal from roll..... 46-2
- Session jurisdiction
of transfers 46-2, 46-3
- Session, court of original
jurisdiction..... 31-1
- Transferring membership..... 46-1

Minister

- Admission to Presbytery 13-5, 13-6
 - Call, terms and form 20-5
 - Cases of process
..... 31-1 thru 31-20, 34-1 thru 34-10
 - Demission 38-2
 - Deposing, demitting..... 38-2, 46-8
 - Dissolving relationship 23-1
 - Divested against his will .. 34-10, 46-8
 - Divested at his request 38-2
 - Election of..... 16-2, 20-1 thru 20-11,
..... 23-1
 - Emeritus..... 23-3
 - Evangelist 8-6
 - From other denominations
..... 13-6, 19-1, 20-13, 21-1, 21-4
 - Gifts 8-4
 - Installation of 21-9 thru 21-11
 - Laboring out of bounds 13-2
 - Laboring outside of PCA 8-7
 - Membership in Presbytery
..... 13-2, 46-6
 - Ministerial Obligation 13-7
 - Missionary of another
denomination 20-13
 - Ordination of..... 21-1 thru 21-8
 - Organizing pastor..... 8-6
 - Other fields of service 8-4, 8-7
 - Presbytery, court of
original jurisdiction..... 31-1
 - Qualifications of..... 8-2
 - Questions for ordination..... 21-5
 - Restoration after
censure 34-8, 37-1 thru 37-9
 - Retirement..... 23-2
 - Transfer 13-6, 20-9, 21-4, 46-6
 - Voting in Session 4-3, 12-1
 - Without call..... 13-2, 34-10
- ## Minister, Process Against
- Accusation cautioned 34-2
 - Church of deposed minister 34-9
 - Citations disobeyed..... 34-4
 - Confession 34-7
 - Deposed for heresy and schism
..... 34-5
 - Deposed without excommunication
..... 38-2, 46-8
 - Divested without censure
..... 34-10, 38-2, 46-8

색인

인허, 강도사 (계속)

치리 장로들	19-1
기간	19-6
타 노회로 이명	19-5, 46-6
논쟁 정신	31-8, 42-12
주일 인준	48-1~7
성찬 시행	58-1~8

하위 치리회

상위 치리회 자문	41-1,5
상위 치리회 소환	40-5
의무 면제	41-5
관할권	11-4, 46-1~8
소송기록 보내는 것 소홀	42-7
소송 준비	41-6
소송 절차	40-6
문의 대표	41-4
상위 치리회에 의탁	41-3
검토와 통제	11-4
문의 주제들	41-2
상위 치리회의 감독	39-1

결혼

예배	부록 가,나
예식	59-1~7

등록교인

준 회원 정의	46-4
수세자	6-3
이명증서	6-7
신자의 자녀들	6-1
수찬의 정의	6-2
법인 회원들	25-7
권징	27-7
삭제/이명	38-3, 38-4, (46-5)
타 교단 가입	38-3
등록교인	1-3
비수찬의 정의	6-1, 56-4
특권	6-4
소송 절차	33-1~4
신앙 고백	6-4
새 교인에게 묻는 질문들	57-5
신앙 고백에 근거 영입	46-1, 57-6
명단에서 삭제	46-2
당회 이명 관할권	46-2,3
원 관할관의 당회, 치리회	31-1
교적 이명	46-1

목사

노회 가입	13-5,6
청빙, 조건과 양식	20-5
소송진행절차	31-1~20, 34-1~10
면직	38-2
해직, 면직	38-2,46-8
연고 해소	23-1
뜻에 반대하는 면직	38-2
선출	16-2, 20-1~11
명예	23-3
전도 목사	8-6
타 노회로부터	13-6, 19-1, 20-13, 21-1,4
은사	8-4
임직	21-9~11
지역 밖 사역	13-2
미국장로회 밖 사역	8-7
노회 회원	13-2, 46-6
사역의 의무	13-7
타 교단 선교사	20-13
안수식	21-1~8
조직하는 목사	8-6
다른 사역 현장	8-4,7
노회, 원래 관할 치리회	31-1
자격	8-2
안수 질문	21-5
책별 후 복직	34-8, 37-1~9
은퇴	23-2
이명	13-6, 20-9, 21-4, 46-6
당회에서 투표	4-3, 12-1
무임	13-2, 34-10

목사에 대한 고소 절차

조심해야 할 경계	34-2
면직된 목사의 교회	34-9
소환 불복	34-4
고백	34-7
이단과 분열로 면직	34-5
출교 없이 면직	38-2, 46-8
책별 없이 해직	34-10, 38-2, 46-8

INDEX

- Minister, Process Against (continued)
Neglect of duty 34-1
Presbytery jurisdiction..... 34-1
Removal of scandal..... 34-6
Restoration after censure 34-8, 37-7
Warning in private..... 34-3
- Minutes**
Case of trial 32-18
Presbytery..... 13-1
Session 12-7
- Mission Church**
Civil government, relationship 5-7
Defined 5-1
Government 5-3
Judicial Process of 5-5
Members received 5-4
Particular church, distinction..... 5-1
- Missionary**
Ordination 20-12
Other denomination 20-13
- Moderator**
Authenticates records of court..... 35-8
Authority of 10-3
Congregational
meetings 20-3, 24-2, 25-4
Duties of 10-3, 13-11, 13-12
General Assembly 10-3
Presbytery..... 10-3
Session 10-3
Session when pastor is absent 12-2
Session with associate or assistant
pastor 12-4
Session with no pastor 12-3
Mutual Love and Confidence 25-11
National Church Provisional
Presbytery..... 15-6
Neglect of Lower Court to
Send up Record 42-7
New Trial/New Evidence ... 35-13, 35-14
Nominating Committee 14-1.11
Nominating Procedures 5-9, 16-2,
..... 24-1, 24-3, 24-4
- Non-communing Member of Church**
Adult 6-3, 28-4, 28-5
Become communing members ... 28-3
Children..... 5-4, 6-1, 6-3, 28-1, 28-2
Discipline 28-1 thru 28-5
Under care of church 28-5
Non-Resident Members..... 46-2
- Notice of Appeal**
Effects..... 42-6
Form..... Appendix G
Within 30 days..... 42-4, 42-5
Written..... 42-4
Objection Defined 45-4
Obligation Subscription 13-7
Offenses Defined 29-1 thru 29-4
- Offenders**
Charges..... 32-2
Reclaiming,
Reconciliation..... 30-4, 31-5, 31-7
Restoration..... 34-8, 37-1 thru 37-7
Offerings, Worship of God
..... 54-1 thru 54-3
-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Ministers**
Call to a work required 21-2
Commission 15-2
Definition of 17-2
Differences to Standards..... 21-4
Doctrine of..... 17-1 thru 17-3
Presbytery jurisdiction over
church 21-3
Procedure of 21-1 thru 21-11
Questions to
congregation..... 21-6, 21-1
Questions to minister 21-5, 21-9
Requirements for trials 21-4
-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Ruling
Elders and Deacons**
Inducted by a court 1-6, 17-1
Perpetual office..... 24-7
Procedure 24-4
Questions to congregation 24-6
Questions to officers-elect 24-6
Organic Union with Other Bodies
26-4
- Organization of Particular Church**
By a commission 5-8
Deacons elected 5-1
Pastor elected..... 5-11
Presbytery authority only..... 5-8
Procedure 5-8
Ruling Elders elected..... 5-9
Original Jurisdiction 11-4, 31-1,
..... 33-1, 34-1
Out of Bounds 8-7
- Particular Church**
Definition of..... 4-1
Examination of Session 13-8

색인

목사에 대한 고소절차(계속)		상소 통보	
의무 소홀	34-10	효력	42-6
노회 관할권	34-1	양식	부록 사
추문 제거	34-6	30 일 내	42-4,5
책별 후 복직	34-8, 37-7	서면	42-4
사적 경고	34-3	반대의 정의	45-4
회의록		의무 동의	13-7
재판권	32-18	범죄의 정의	29-1~4
노회	13-10	범죄자	
당회	12-7	고소 내용	32-2
개척 교회		교화, 화목	30-4, 31-5,7
시 정부 관계	5-7	복직	34-8, 37-1~7
정의	5-1	헌금, 하나님 예배	54-1~3
치리 기구	5-3	목사의 안수와 임직	
재판 절차	5-5	요구되는 사역으로 청빙	21-2
교인 영입	5-4	위원회	15-2
구별된 조직 교회	5-1	정의	17-2
선교사		신앙고백을 달리함	21-4
안수	20-12	교리	17-1~3
타 교단	20-13	교회의 노회 관할권	21-3
의장		절차	21-1~11
치리회 기록을 인증	35-8	회중에게 묻는 질문	21-6,10
권위	10-3	목사에게 묻는 질문	21-5, 9
공동의회	20-3, 24-2, 25-4	재판 필수 사항들	21-4
의무	10-3, 13-11,12	치리 장로와 집사의 안수와 임직	
총회	10-3	치리회가 집행	1-6, 17-1
노회	10-3	향존직	24-7
당회	10-3	절차	24-4
담임 목사 부재시 당회	12-2	회중에게 묻는 질문	24-6
부목사나 보조목사가		선출된 직분자들에게	
있는 당회	12-4	묻는 질문	24-6
목사가 없는 당회	12-3	타 교단과 유기적 연합	26-5
상호 사랑과 신뢰	25-11	조직교회 조직	
잠정적 노회가 있는 국가 교회	15-6	전권위원회가	5-8
하위 치리회가 기록을 올려		선출된 집사들	5-10
보내기를 소홀히 함	42-7	선출된 목사	5-11
새 재판/새 증거	35-13,14	노회의 권위로만	5-8
공천 위원회	14-1.11	절차	5-8
공천 절차	5-9, 16-2, 24-1,3,4	선출된 치리장로	5-9
교회의 비수찬 교인		원래 관할권	11-4, 31-1, 33-1, 34-1
성인	6-3, 28-4,5	지역 밖	8-7
수찬 교인이 됨	28-3	조직 교회	
어린이	5-4, 6-1, 28-1,2	정의	4-1
권징	28-1~5	당회 조사	13-8
교회의 돌봄 아래	28-5		
미거주 교인들	46-2		

INDEX

- Particular Church (continued)
Incorporation 25-7
New church organized 5-1 thru 5-3
Officers of 4-2
Presbytery affiliation 13-8, 25-11
Property ownership 25-9
Session jurisdiction 4-3
Unincorporated, power of
trustees 25-6
Withdrawal 25-11
Parents Responsible for Children
..... 28-1
- Parties in Cases of Process**
..... (see also Cases of Process)
Accused and accuser 31-3
Accused defendant only 31-11
Challenge of member 32-16
Copies of proceedings 32-18
Withdrawal while court
deliberates 32-14
Witnesses examined 32-13
- Parts of Trials for**
Licensure 19-7
Ordination 21-4
- Pastor** (see also Minister, and
..... Minister, Process against)
Call prosecuted 20-8 thru 20-11
Dissolution of relationship 23-1
Divestiture 34-10, 38-2, 46-8
Duties 8-5
Election of Preface II-6, 3-1,
..... 16-2, 20-2, 23-1
Emeritus 23-3
Expenses paid to church courts
..... 10-6
Installation service 21-5 thru 21-10
Moderator of congregational
meetings 24-2, 25-4
Moderator of Session 12-3, 12-2
Non-PCA calls 20-1
Ordination 21-1 thru 21-8
Power to convene Session 12-6
Qualifications 8-2
Refusal by minority to concur 20-5
Testimonials furnished by his
Presbytery 20-11
Transferal 20-1
Voting 4-3, 12-1, 20-4, 22-2
Personal Offenses Defined 20-2, 29-3
- Polity** (see Church Government,
and Church Power) .. 7-2
- Power** (see Church Power)
- Powers of**
Church judicatories... Preface II-2, 7, 8
..... 11-1, 11-2, 11-4
General Assembly 14-6 and 7
Presbytery 13-9
Session 12-5 thru 12-8
Preaching of The Word 12-5(e),
..... 53-1 thru 53-6
- Presbytery**
Bounds, boundary 13-1
Commission appointed by
..... 15-2, 15-3
Consists of 13-1
Court of original jurisdiction for
minister 31-1
Dissolves pastoral relation 23-1
Divest minister against his
will 34-1
Divest minister on
his request 38-2, 46-8
Judicial Commission acting as
Appellate Court Appendix H
Jurisdiction of 11-4
Jurisdiction over dismissed minister,
licentiate, or candidate 46-6
Labor in bounds, out of
bounds 13-2, 13-5
Meetings, called and stated 13-12
Minister's membership in 13-2
Open and close with prayer 10-5
Ordains ministers 21-2
Powers of 12-6, 13-9
Process against minister 34-1
Quorum of 13-4
Records 13-1
Reports to General Assembly 13-1
Visiting brethren 13-13
- Principles of Public**
Worship 47-1 thru 47-9
- Private Offenses** 29-2, 29-4
- Process, Cases of**
..... (see Cases of Process)
- Process Against Lower Court**
..... 40-4 thru 40-6
- Process Against Minister**
..... (see Minister, Process Against)

색인

조직 교회 (계속)		정치 형태 (교회 정치와 교회 권한을 보라)	7-2
법인	25-7	권한 (교회 권한을 보라)	
새 교회 조직	5-1~3	속한 권한	
직분자들	4-2	교회 관할권	서문 II-2,7,8, 11-1, 2, 4
노회 가입	13-8, 25-11	총회	14-6, 7
재산 소유권	25-9	노회	13-9
당회 관할권	4-3	당회	12-5~8
미등록 법인, 이사회 권한	25-6	말씀 선포	12-5(口), 53-1~6
탈퇴	25-11	노회	
자녀들을 위한 부모 책임	28-1	경계	13-1
진행 중인 소송건의 당사자들		전권위원회 임명	15-2, 3
(소송 진행을 보라)		구성	13-1
피고와 원고	31-3	목사 연고 해소	23-1
피고의 권리만	31-11	뜻에 반대하여 해직	34-10
치리회원에 대한 이의	32-16	요청에 따른 해직	38-2, 46-8
진행 기록 사본	32-18	법사 전권위원회가 치리회 대행	상소 부록 아
퇴정	32-14	관할권	11-4
중인 심문	32-13	이명 받는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에 대한 관할권	46-6
시취를 위한 내용들		지역 내, 지역 밖 사역	13-2, 5
강도사	19-7	임시, 정기 회의	13-12
안수	21-4	목사의 회원권	13-2
목사		기도로 개회, 폐회	10-5
(목사, 목사에 대한 고소 절차를 보라)		목사 안수	21-2
청빙 집행	20-8~11	권한	12-6, 13-9
연고 해소	23-1	목사 고소 진행 절차	34-1
해직	34-10, 38-2, 46-8	성수	13-4
의무	8-5	기록	13-10
선출	서문 II-6, 3-1, 16-2, 20-2, 23-1	총회 보고	13-13
명예	23-3	공 예배 원리	47-1~9
치리회 비용 담당	10-6	사적 범죄	29-2, 4
임직 예배	21-5~10	소송 진행 절차 (소송 진행 절차를 보라)	
공동의회 의장	24-2, 25-4	하위 치리회를 고소하는 진행 절차	40-4~6
당회장	12-2,3	목사를 고소하는 절차 (목사 고소 진행 절차를 보라)	
타 교단의 청빙	20-1		
안수	21-1~8		
당회 소집 권한	12-6		
자격	8-2		
소수에 의한 반대	20-5		
소속 노회가 제공하는 증언	20-11		
이명	20-10		
투표	4-3, 12-1 20-4, 22-2		
사적 범죄의 정의	20-2, 29-3		

INDEX

Process Before Session

- Against church member 33-1
- Barred from Lord's Table..... 33-4
- Censure for crime or heresy 33-3
- Citations disobeyed 33-2
- Refusal to plead 33-2

Professional Counsel Not

- Permitted 32-19
- Prosecution of Call 20-8 thru 20-11

Property

- Care of 9-2
- Civil law 25-11
- Covenant on property rights 25-1
- Dissolved church 25-12
- Ownership 25-7 thru 25-9

Prosecutor in Judicial Cases

- Communing member 31-2
- Member of the court 31-2
- Professional counsel not permitted 32-19
- Reconciliation tried first 31-5
- Voluntary or appointed..... 31-2, 31-6
- Warning to voluntary prosecutor 31-9

Protest

- Definition of 45-3
- Time limitation 45-1
- Treatment by court 45-5
- Who may 45-1, 41-5
- Withdrawal 45-5

Provisional Presbytery Foreign

- Country..... 15-6

Public Offenses 29-2, 29-4

Public Prayer 52-1 thru 52-5

Public Worship

- Confessing the faith..... 55-1
- Offering 54-1 thru 54-3
- Ordering of 49-1, 49-2
- Prayer 52-1 thru 52-5
- Preaching of the Word 53-1 thru 53-6
- Pulpit Committee 5-11, 20-2
- Scripture Reading 50-1 thru 50-4
- Singing 51-1 thru 51-5

Questions to

- Bride and groom Appendices A and B
- Candidates 18-3

Questions to (continued)

Congregation

- Baptism of infant 56-5
- Dedication of building Appendix F
- Election of officers 24-4
- Installation of minister 21-1
- Ordination/installation of officers..... 24-6
- Ordination of minister 21-6
- Evangelist 21-11
- Licentiate 19-3
- Minister 21-5, 21-9
- Parents at infant baptism..... 56-5
- Person professing faith 57-5
- Restored person 37-4
- Witnesses..... 35-6

Quorums

- Commissions (ecclesiastical) 15-2
- Congregational Meetings..... 25-3
- General Assembly 14-5
- Judicial Commission 15-2
- Presbytery 13-4
- Session..... 12-1, 15-2
- Reading of Scriptures 50-1 thru 50-4
- Reception of Church 13-8

Reception of Members

- Certificate..... 46-1, 57-6
- Profession of faith..... 12-5, 28-3
- 57-1 thru 57-5

Reconciliation Attempted by

- Injured Party 31-5

Record of Case, of Process

- Appeal or complaint 15-5, 42-5
- Definition of 32-18, 42-5
- Filing with higher court 32-18, 42-5, 43-6
- Lower court rebuked for failure 42-7, 43-6

Records of a Court

- Annual review by higher court 40-1, 40-3
- Clerk's duties..... 10-4
- Examination by higher court 40-2
- Evidence in all courts 35-8
- Sessional 12-7, 12-8
- Records of Board of Deacons 9-4

색인

당회 앞에서 진행 절차

교인에 대하여	33-1
수찬 정지	33-4
범죄나 이단에 대한 책벌	33-3
소환 불복	33-2
해명 거부	33-2
직업적 자문 불허	32-19
청빙 집행	20-8~11

재산

관리	9-2
민법	25-11
재산권에 대한 언약	25-10
교회 해산	25-12
소유권	25-7~9

법적 소송건의 기소자

수찬 교인	31-2
치리회 회원	31-2
직업적 자문 불허	32-19
첫 화해 시도	31-5
자원 혹은 임명	31-2, 6
자원 기소자에 대한 경고	31-9

항의

정의	45-3
시한	45-1
치리회 조치	45-5
주체	45-1, 41-5
철회	45-5

외국의 잠정적 노회

공적 범죄	29-2, 4
공 기도	52-1~5

공 예배

신앙고백	55-1
헌금	54-1~3
질서	49-1, 2
기도	52-1~5
설교	53-1~6
청빙 위원회	5-11, 20-2
성경 봉독	50-1~4
찬양	51-1~5

질문들

신랑 신부에게	부록 가, 나
후보에게	18-3

질문들 (계속)

회중에게	56-5
유아 세례	56-5
헌당	부록 바
직분자 선출	24-4
목사 임직	21-10
직분자 안수/임직	24-6
목사 안수	21-6
진도 목사	21-11
강도사	19-3
목사	21-5, 9
유아 세례시 부모에게	56-5
신앙 고백자에게	57-5
복직된자에게	37-4
증인에게	35-6

성수

전권 위원회 (교회관련)	15-2
공동의회	25-3
총회	14-5
법사 전권위원회	15-2
노회	13-4
당회	12-1, 15-2
성경 봉독	50-1~4
교회 영입	13-8

교인 영입

증서	46-1, 57-6
신앙고백	12-5, 28-3, 57-1~5
피해자에 의한 화해 시도	31-5

소송 기록, 진행 절차 중

상소 혹은 이의	15-5, 42-5
정의	32-18, 42-5
상위 치리회 접수	32-18, 42-5, 43-6
하위 치리회 실수 책망	42-7, 43-6

치리회 기록

상위 치리회가 매년 검토	40-1, 3
서기의 의무	10-4
상위 치리회가 검열	40-2
모든 치리회의 증거	35-8
당회 관련	12-7, 8
집사회 기록	9-4

INDEX

References

- Advice only on final disposition 41-3
- Definition of 41-1
- Duty of higher court..... 41-5
- How and by whom presented..... 41-4
- Mode for bringing proceedings 39-1
- Preparation of case by lower court 41-6
- Response by higher court..... 41-5
- Subjects for 41-2

Refusal of Accused to

- Appear 33-2
 - Plead 33-2
- Refusal of Witness to Testify..... 35-12

Removal of Censure

- By court 34-8, 37-7
- Cautions 37-8
- Converse with suspended person 37-2
- Deposed person..... 37-5
- Excommunicated person 37-4
- Offender has moved..... 37-7
- Suspended offender 37-1 thru 37-3

Removal of Membership

- Certificate 46-1
 - Duty of Sessions when neglected 46-2
 - Willful neglect 38-4
- Renouncing Jurisdiction 38-4

Resignation

- Of Pastor 23-1
- Of Elder/Deacon 24-7

- Respondent Appointed to Answer Complaint 43-3

- Restoration of Censured 34-8, 37-1 thru 37-9

- Retirement of Ministers 23-2

Review of Records

- Failure to follow constitutional procedure..... 40-5
- Neglect on part of lower court 40-4
- Proceedings of lower court before higher 11-4, 39-1
- Process against lower court..... 40-6
- Record of approval, disapproval or correction 40-3

Review of Records (continued)

- Records of lower court 13-9, 12-7, 40-1
 - Subject of reviews 11-4, 13-10, 14-6c, 40-2
- Roll of Members 12-8

Ruling Elders

- Authority and eligibility 8-8
- Certificate of appointment..... 13-3
- Dissolving relationship against their will 24-7, 24-9, 34-1
- Dissolving relationship upon request..... 38-2
- Divested without censure .. 34-10, 38-2
- Duties of..... 7-2, 7-3, 8-3
- Duties to members who move 46-2
- Duties when there are no deacons 9-2
- Election Preface II-6, 3-1, 16-2, 24-1 thru 24-5, 24-8
- Emeritus 24-1
- Examination of 5-9(2), 12-5, 16-3, 24-1
- Expense of church courts paid 10-6
- Gifts of 16-3
- Inactive..... 24-7 thru 24-1
- Joining another denomination 38-3
- Licensure to preach 21-1, 21-2
- Officer of church 8-1
-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24-6
- Ordination by a court 17-1
- Process against .. 33-1 thru 33-4, 34-1
- Questions asked ruling elders-elect and members 24-6
- Qualifications of..... 8-2
- Re-election to office..... 24-8
- Represents church in higher Courts..... 12-5f, 13-1, 14-2
- Resignation or dissolving of office 24-7, 24-9
- Restoration of censured..... 34-8, 37-1 thru 37-9
- Teaching aptitude..... 8-9
- Without call..... 24-7 thru 24-9

Ruling Elder Supply

- Defined..... 22-6
- Length of service..... 22-6
- Session oversight with Presbytery approval 22-6

색인

문의

최종 처분에 대한 자문	41-3
정의	41-1
상위 치리회의 의무	41-5
주체와 방법	41-4
진행 절차를 들여오는 형태	39-1
하위 치리회의 소송 준비	41-6
상위 치리회의 반응	41-5
주체들	41-2

피고의 거부

상소	33-2
탄원	33-2
증인의 증언 거부	35-12

해벌

치리회가	34-8, 37-7
주의 사항들	37-8
정직된 자와의 대화	37-2
면직된 자	37-5
출교된 자	37-4
이사한 범죄자	37-7
정직된 범죄자	37-1~3

교인 삭제

[이명] 증서	46-1
소홀히 할 때 당회 의무	46-2
의도적 소홀히 함	38-4

관할권 포기

관할권 포기	38-4
--------	------

사임

목사	23-1
장로/집사	24-7
이의에 대한 응답자 대답	43-3
책벌 받은 자의 복직	34-8, 37-1~9
목사의 은퇴	23-2

기록 검토

헌법 절차를 따르지 못 할 때	40-5
하위 치리회의 소홀	40-4
상위 치리회 이전	
하위 지리회의 진행절차	11-4, 39-1
하위 지리회에 대한 고소	
진행 절차	40-6
승인, 승인 거부, 또는 정정	40-3

기록 검토 (계속)

하위 치리회의 기록	13-9, 12-7, 40-1
검토 주제	11-4, 13-10, 14-6 나, 40-2
교인 기록	12-8

치리 장로

권한과 자격	8-8
임직 증명서	13-3
뜻에 반대하는 연고 해소	24-7, 9, 34-10
요청에 의한 연고 해소	38-2
책벌 없는 해직	34-10, 38-2
의무	7-2, 3, 8-3
이사한 교인에 대한 무	46-2
집사가 없을 때 의무	9-2
선거 서문 II-6, 3-1, 16-2, 24-1~5, 24-8	
명예	24-10
시취	5-9(2), 12-5, 16-3, 24-1
교회 치리회의 경비	10-6
은사	16-3
무임	24-7~10
타 교단 가입	38-3
설교를 위한 인허	21-1, 2
교회 직분자	8-1
안수와 임직	24-6
치리회의 안수	17-1
고소 절차	33-1~4, 34-10
교인과 치리장로 후보에게 묻는 질문들	24-6
자격	8-2
직분에 재선	24-8
상위 치리회에서 교회를 대표	12-5 나, 13-1, 14-2
사임 또는 연고 해소	24-7, 9
책벌 후 복직	34-8, 37-1~9
가르칠 수 있는 자결	8-9
무임	24-7~9

임시 치리 장로

정의	22-6
봉사 기간	22-6
노회의 인준으로 당회가 감독	22-6

INDEX

- Sabbath, Sanctification of. 48-1 thru 48-7
- Schism and Heresy 34-5
- Sealing Ordinances..... 57-1 thru 57-6
- Session**
- Bar accused from Lord's Table ... 33-4
 - Censure for gross crime/heresy ... 33-3
 - Certificates of dismissal to
 - members in good standing..... 46-1
 - Consists of 12-1
 - Contumacious member 33-2
 - Court of original
 - jurisdiction 31-1, 33-1
 - Delete names from roll 46-5
 - Divest officer at his request 24-7, 38-2
 - Divest officer against his
 - will 24-7, 24-9, 34-1
 - Duties and power of 12-5 thru 12-8
 - Examines officers-elect 24-1
 - Joint meetings with deacons..... 9-4
 - Jurisdiction over dismissed member
 - until received..... 46-3
 - Jurisdiction over single church.... 11-4
 - Meetings..... 12-6
 - Open and close meetings..... 12-9
 - Quorum 12-1
 - Records..... 12-7, 12-8
 - Records examined by Presbytery 40-2
 - Records to Presbytery annually ... 12-7
 - Spiritual government 12-5
 - Stated meetings held quarterly 12-6
 - Temporary or Interim 5-3, 15-1
- Singing of Psalms/Hymns 51-1 thru 51-5
-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14-1(15),
..... 15-1, 15-4, 15-5
- Stated Meetings**
- Board of Deacons..... 9-4
 - Congregation 49-2
 - General Assembly 14-2
 - Presbytery..... 13-12
 - Session 12-6
- Stated Supply**
- Defined..... 22-5
 - Length of service..... 22-6
 - Ruling elder 22-5, 22-6
 - Session oversight with Presbytery
 - approval..... 18-5, 19-1, 22-5, 22-6
 - Student Supply . 18-5, 19-1, 22-5, 22-6
- Suspended Minister**
..... (see also Suspension)
- Pastoral relation dissolved 34-9
- Restored..... 34-8, 37-1, 37-3, 37-8
- Suspended Person** (see also Suspension)
- Restoration of 37-1 thru 37-5
 - Session to visit..... 37-2
- Suspension**
- Administered 36-4, 36-5
 - Church censure 30-1
 - Citations disobeyed 34-4
 - Contumacy..... 34-4
 - Defined 30-3
 - Definite and indefinite 30-3
 - Minister making confession..... 34-7
 - Official functions 31-1
 - Removal of and from... 37-1 thru 37-3
- System of doctrine... Preface I-4, 19-3(2),
..... 21-5(2), 24-6(2)
- Teaching Elders**
... (see also Elder, Minister, Pastor)
- Class of office..... 7-2
 - Duties 8-5
 - Emeritus 23-3
 - Evangelists..... 8-6
 - Gifts..... 8-4
 - Other works 8-4, 8-7
 - Titles..... 8-5
 - Transfer 46-6
 - Without call 13-2, 34-10
- Testimony**
- Commission..... 32-8
 - Coordinate court 32-8, 35-1
 - More than one witness..... 35-3
 - New testimony, new trial..... 35-13
 - Of member of court 35-11
 - Records for all courts..... 35-8
 - Refusal..... 35-12
 - Valid in every court if certified ... 35-9
- Transfer of membership..... 12-5a, 13-6,
..... 20-10, 46-1 thru 46-3, 46-6
- Treasurer..... 9-4
- Trials**
- For Licensure..... 19-7
 - For Ordination 21-4
 - Of Offenders ... (see Cases of Process)
- Trustees**
- Duties of 25-6 thru 25-8
 - Elected 25-6
 - Powers 25-7
- Union With Other Bodies 26-4, 26-5
- Usurpation of Authority 7-3

색인

안식일, 승인	48-1~7	목회 연고 해소	34-9
분열과 이단	34-5	복직	34-8, 37-1, 3, 8
인침 조례	57-1~6	정직된 사람	(정직을 보라)
당회		복직	37-1~5
고소된 자 수찬 정지	33-4	당회의 방문	37-2
무도한 범죄/이단 책벌	33-3	정직	
무흠 교인에게 이명증서	46-1	시행	36-4, 5
구성	12-1	교회 책벌	30-1
불복하는 교인	33-2	소환 불복	34-4
원래 관할권의 처리회	31-1, 33-1	항명	34-4
명부에서 이름 삭제	38-4	정의	30-3
직분자 요청에 따라 해직	24-7, 38-2	유기 및 무기	30-3
직분자의 뜻에 반대하여		고백한 목사	34-7
해직	24-7, 9, 34-10	공식적인 기능	31-10
의무와 권한	12-5~8	해벌	37-1~3
선출된 직분자 시취	24-1	교리 체계	서문 1-4, 19-3(2), 21-5(2), 24-6(2)
집사들과 연석 회의	9-4	강도 장로	
이명 받은 교인이 영입		(장로, 목사를 보라)	
될 때까지 관할권 감독	46-3	직분 분류	7-2
개 교회에 대한 관할권	11-4	의무	8-5
회의들	12-6	명예	23-3
기도로 개회, 폐회	12-9	전도 목사	8-6
성수	12-1	은사	8-4
당회록	12-7, 8	다른 사역	87-4, 7
노회가 당회록 검열	40-2	호칭	8-5
당회록 매년 노회 제출	12-7	이명	46-6
영적 정치	12-5	무임	13-2, 34-10
분기별 정기 당회	12-6	증언	
일시 또는 임시	5-3, 15-1	전권위원회	32-8
시/찬송의 찬양	51-1~5	대등한 처리회	32-8, 35-10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14-1(15), 15-1, 4, 5	일인 이상 증인	35-3
정기 회의들		새 증거, 새 재판	35-13
집사회	9-4	처리회 회원	35-11
공동의회	49-2	모든 처리회를 위한 기록들	35-8
총회	14-2	거부	35-12
노회	13-12	만일 증명서가 있으면	
당회	12-6	모든 처리회에서 유효	35-9
규정된 임시		교적 이명	12-5 ㄱ, 13-6, 20-10, 46-1~3, 6
정의	22-5	회계	9-4
봉사 기간	22-6	시험	
치리 장로	22-5, 6	강도사	19-7
노회 인준으로 당회가		안수	21-4
감독	18-5, 19-1, 22-5, 6	범죄자 (소송 진행 절차를 보라)	
임시 신학생	18-5, 19-1, 22-5, 6	이사들	
정직된 목사	(정직을 보라)	의무	25-6~8
		선출	25-6
		권한	25-7
		다른 교단과의 연합	26-4, 5
		월권	7-3

INDEX

Visible Church		Wedding Services ..	Appendices A and B
Kingdom of Grace	1-2, 2-1	Witnesses	
Unity Defined	2-2	Challenge to	35-1
Visitation of the Sick	60-1	Citation	32-4
Vitals of Religion	21-4, 34-5	Distant from court	32-8
Vocation		Examination	32-13, 35-4, 35-5
Doctrine of	16-1	Form of citation.....	Appendix G
Gifts	16-3	Member of court	35-11
Voluntary Prosecutor		Oath of	35-6
Accepted by court	31-6	Questions, written	35-7
Probable cause of charges	31-9	Refusing to testify	32-6, 35-12
Voluntary Relationship.....	25-11	Spouses	35-2
Voter Qualifications.....	20-4, 24-3, 25-1	Who is competent	35-1
Voting on Call to Minister	20-4	Women in the Church	
Voting Percentages (Quorums)	12-1, 13-4	Assist deacons.....	9-7
		Sessional oversight of	12

Please use the remainder of this page for notes
and additional index entries that are of assistance to you.
Communicating these entries to the Stated Clerk's Office would be appreciated.

색인

가시적 교회		결혼 예식	부록 가, 나
은혜의 왕국	1-2, 2-1	증인	
통일성의 정의	2-2	이의	35-1
병자 심방	60-1	소환	32-4
교단의 생명력	21-4, 34-5	치리회에서 먼 곳	32-8
소명		심문	32-13, 35-4, 5
교리	16-1	소환 양식	부록 사
은사	16-3	치리회 회원	35-11
자원 기소자		서약	35-6
치리회가 수용	31-6	서면 질문	35-7
고소의 추정 이유	31-9	증언 거부	32-6, 35-12
자원하는 관계	25-11	배우자	35-2
투표자 자격	20-4, 24-3, 25-1	신빙성 있는 자	35-1
목사 청빙 투표	20-4	교회 내 여성들	
투표 비율 (청수)	12-1, 13-4	보조 집사	9-7
		당회의 감독	12

이 페이지의 여백은 노트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색인 제목들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런 제목들을 총회 서기에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장로교

**With revisions adopted through
the 42nd General Assembly (2014)**

제 42 차 총회(2014)까지 채택된 수정안 포함

(RAO-Rules of Assembly Operations)

총회 운영 세칙

(SJC-Standing Judicial Commission Manual)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지침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 등록 인가서

(Corporate Bylaws)

교단 정관

(NAPARC Agreements)

네이팍 협정서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With revisions adopted through the 42nd General Assembly (2014)

Revisions to the following sections were adopted in 2014:

RAO 16-3.e.6), [7) and 8) renumbered]; RAO 16-6.c.1) References to
Committee on Christian Education & Publications changed to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4-2; 5-1.b.1); 6-1; 14-1.2

[Editorial corrections: RAO 11-5; 11-8]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Distributed with *The Book of Church Order* by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1700 North Brown Road, Suite 102
Lawrenceville, Georgia 30043-8143
1-800-283-1357**

총회 운영세칙

제 42 차 총회(2014)까지 채택된 수정안 포함

2014 년에 다음 항들이 채택 수정됨:

총운세 16-3.ㄱ.6; 16-3.ㄱ.7, 8 (번호 다시 매김); 16-6.ㄷ.1;
기독교교육 및 출판 위원회(CEP)에 관한 언급들은 제자 사역
위원회(CDM)에 관한 언급들로 변경되어야한다 - 총운세 4-2; 5-
1.ㄴ.1); 6-1; 14-1.2 [편집 수정: 총운세 11-5; 11-8]

발행처
미국장로회 총회
서기 사무실

보급처
미국장로회 제자사역위원회가
헌법과 함께 보급
1700 North Brown Road, Suite 102
Lawrenceville, Georgia 30043-8143
1-800-283-1357

PREFATORY STATEMENT

In keeping with the concept that the Bylaws are designed for the conduct of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 Corporation) in regard to civil matters,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RAO*) is designed to serve the General Assembly itself as an ecclesiastical organization. Therefore, care should be taken that these Rules contain only that which is essential for the biblical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ecclesiastically.

Copyright 2014 ©
by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ll rights reserved

서문

총회 정관은 민사 소송과 관련된 미국장로교(법인)의 처사를 위해 고안된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총회운영세칙은 교회 조직체로서 총회 자체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칙은 총회를 교회로서 성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Copyright © 2014

미국장로회 총회
서기 사무실
모든 판권 소유

CONTENTS

ARTICLE I	THE ORGANIZATION OF A GENERAL ASSEMBLY'S MEETING
ARTICLE II	THE MODERATOR
ARTICLE III	THE STATED CLERK
ARTICLE IV	COMMITTEES AND AGENCIES
ARTICLE V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ARTICLE VI	PROGRAM COMMITTEES
ARTICLE VII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ARTICLE VIII	SPECIAL COMMITTEES
ARTICLE IX	AD INTERIM COMMITTEES
ARTICLE X	THE ASSEMBLY ARRANGEMENTS
ARTICLE XI	COMMUNICATIONS AND OVERTURES
ARTICLE XII	REPORTS TO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XIII	NEW BUSINESS
ARTICLE XIV	COMMITTEES OF COMMISSIONERS FOR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ARTICLE XV	THE OVERTURES COMMITTEE
ARTICLE XVI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ARTICLE XVII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ARTICLE XVIII	ASSEMBLY EXPENSES
ARTICLE XIX	PARLIAMENTARY PROCEDURE
ARTICLE XX	AMENDMENT OR SUSPENSION OF RULES

목차

- 제 1 항 총회 회의의 구성
- 제 2 항 총회장
- 제 3 항 총회 서기
- 제 4 항 위원회와 기관
- 제 5 항 총회 행정위원회
- 제 6 항 프로그램 위원회
- 제 7 항 목회 협력 위원회
- 제 8 항 특별 위원회
- 제 9 항 임시 위원회
- 제 10 항 총회 준비
- 제 11 항 소통의 방편들과 헌의들
- 제 12 항 총회로 올리는 보고서들
- 제 13 항 신안건
- 제 14 항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을 위한 총대 위원회들
- 제 15 항 헌의 위원회
- 제 16 항 노회록 검열
- 제 17 항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 제 18 항 총회 비용
- 제 19 항 회의 진행 절차
- 제 20 항 세칙의 수정 혹은 효력정지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RTICLE I. ORGANIZATION OF A GENERAL ASSEMBLY'S MEETING

1-1.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called to order at the designated time by the Moderator, and shall begin with a worship service, including a season of prayer, a sermon or exhortation by the retiring Moderator, and the celebration of the Lord's Supper.

1-2. The Stated Clerk shall present a report on the enrollment of commissioners, and declare if a quorum is present. If it is present, then the Assembly shall be declared to be properly constituted for the transaction of business.

1-3. The first order of business shall be the election of a Moderator. There shall be only one nominating speech not to exceed five minutes for each nominee. No seconding speeches shall be permitted.

1-4. If more than one commissioner is nominated, election shall be by ballot, on ballots provided by the Stated Clerk. Tellers appointed by the Stated Clerk shall gather and count the ballots, and report the tabulation to the Stated Clerk. If no nominee receives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a second ballot shall be called on the two nominees who received the highest number of votes on the first ballot. The Moderator shall declare an election when a nominee receives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by the commissioners present and voting.

1-5. As soon as a Moderator shall have been declared elected he shall assume his constitutional duties as Moderator

총회 운영세칙

제 1 항. 총회 회의의 구성

1-1. 총회는 지정된 시간에 총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개회되며, 기도시간 및 퇴임 총회장의 설교나 권면과, 성찬식을 포함한 예배로써 시작하여야 한다.

1-2. 총회 서기는 참석 총대수를 보고하고 총회 성수여부를 발표한다. 성수가 되면, 안전처리를 위해 총회가 합법적으로 구성되었음이 공포되어야 한다.

1-3. 첫 번째 안건은 총회장 선출이다. 총회장으로 추천 받은 각 사람을 위하여 한 번의 추천 발언을 할 수 있고 시간은 오분을 초과할 수 없다. 두번째 추천 발언은 허락되지 않는다.

1-4. 일인 이상의 총대가 추천을 받았을 경우, 총회 서기가 마련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총회 서기가 임명한 투표위원들은 투표용지를 거두어 수를 세고 그 집계 결과를 서기에게 보고한다. 일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점자가 없을 때는 일차 투표에서 최다 득점을 한 두 후보를 놓고 이차 투표를 실시한다. 한 후보가 참석하여 투표한 총대들의 과반수 표를 받으면, 총회장은 신임 총회장 선출을 선포해야 한다.

1-5. 신임 총회장의 당선이 선포되는 즉시 헌법에 제정된 총회장으로서의 임무를 맡아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RTICLE II. THE MODERATOR

2-1. The Moderator shall preside at all sessions of the Assembly except when he may invite another commissioner to act temporarily as the presiding officer.

2-2. The Moderator shall call the succeeding Assembly to order and preside over its sessions until a successor has been elected. Ordinarily he shall present a retiring Moderator's sermon or exhortation. If the Moderator is unable to act, the Stated Clerk shall call the Assembly to order and preside over its sessions until a Moderator has been elected.

2-3. Any former moderator attending a General Assembly shall have the privilege of the floor.

제 2 항. 총회장

2-1. 총회장은 사회자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도록 총대 중 한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 회기 중의 모든 회의를 사회해야 한다.

2-2. 총회장은 차기 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차기 총회를 소집하고 개회하며 그 회의들을 사회해야 한다. 통상 그가 퇴임 총회장이 설교 혹은 권면을 하도록 소개한다. 만일 총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회 서기가 총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차기 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회를 사회하여야 한다.

2-3. 총회에 참석한 증경 총회장은 누구든지 총회 석상에서 발언권을 가질 특권이 있다.

ARTICLE III. THE STATED CLERK

3-1. The Stated Clerk shall perform the duties assigned by the *Book of Church Order*,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nd the Bylaw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 Corporation). The Stated Clerk shall serve as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As such, he shall be responsible, under the supervision and subject to th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for carrying out and executing the appropriat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said Committee. The Stated Clerk shall be authorized to employ, with the approval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a Business Administrator. All other staff personnel for said Committee shall then be employed by the Business Administrator with the approval and consent of the Stated Clerk.

3-2. The Stated Clerk shall have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to the General Assembly:

- a. In his office as an elder he may, as appropriate, advise and counsel, and upon invitation, preach and teach.
- b. His duties are clerical, and as an ordained elder in the denomination he has no special role as spiritual leader or teacher to the denomination.
- c. H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recording of the transactions of each General Assembly.
- d. He shall carefully preserve all of the records of each General Assembly.
- e. He shall obtain and grant abstracts from the Assembly records whenever properly required or requested.
- f. He shall prepare and distribute a *Commissioner Handbook* so as to reach commissioners one month prior to the convening of each General Assembly.
- g. He shall gather and assemble the items of business that come before each Assembly and refer such items of business to the proper committee or committees.
- h. He shall be responsible for publishing the minutes and statistical report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periodically updating the digest of the minutes.
- i. He shall be the parliamentarian of the General Assembly but may fulfill this function through the use of assistant parliamentarians whom he recommends to the Moderator for his appointment.

제 3 항. 총회 서기

3-1. 총회 서기는 *교회헌법*, 총회운영세칙, 미국장로회(법인)의 정관(Bylaws)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총회 서기는 총회 행정위원회의 수석 행정원으로서 봉사하여야 한다. 수석 행정원으로서 총회 서기는 총회 행정위원회의 감독과 지도하에 행정위원회의 적절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총회 서기는 총회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명의 사무 행정관을 채용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모든 다른 직원들은 총회 서기의 승인과 동의로 사무 행정관에 의해 고용되어야 한다.

3-2. 총회 서기가 총회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은 다음과 같다.

- ㄱ. 직책상 장로로서, 적절하게, 충고와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초청 받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
- ㄴ. 그의 임무는 사무적인 것이며, 총회의 안수 받은 장로로서 총회에 대하여 영적 지도자나 가르치는 자로서의 특별한 역할은 없다.
- ㄷ. 매 총회의 의사록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 ㄹ. 매 총회의 모든 기록을 신중을 기하여 보존해야 한다.
- ㅁ. 정당한 요구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총회 의사록의 초록을 구하여 제공해야 한다.
- ㅂ. 매 총회 개최 한 달 전에 각 총대들에게 총대 핸드북이 도착하도록 준비하여 배포해야 한다.
- ㅅ. 총회 앞으로 온 안건들을 모아 수집하며, 그런 안건들을 해당 위원회나 위원회들로 회부해야 한다.
- ㅇ. 총회 의사록과 총회의 통계 보고서를 출판하며 총회 의사록의 개요를 주기적으로 경신할 책임이 있다.
- ㅈ. 그는 총회의 의회법 학자이어야 하나, 그가 추천하여 총회장이 임명한 보조 의회법 학자들을 활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j. He shall be an ex officio member of the Committee on Interchurch Relations.
- k. He shall be available to give advice to the Boards and Agenc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f, as, and when so requested.
- l. H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oversight of the PCA Historical Center for the preservation of the archiv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m.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he shall propose the docket of the General Assembly and shall be available to advise the General Assembly on means to expedite and complete the business of the General Assembly.
- n. He shall be responsible for notifying all appropriate persons of the decis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o. He shall serve as the secretary and treasur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 Corporation).
- p. He shall receive progress reports and/or minutes from the committees appoin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cluding special committees.
- q. He shall have the privilege of the floor in all matters pertaining to his office at the General Assembly, to present necessary information on business before the meeting concerning the work and report of any committee on which he serves, and at such times when the Moderator, the coordinators, the executive directors, chairmen of Assembly Committees and Agencies (or their designated representative), or any commissioner may request that he clarify matters before the court.
- r. He shall serve as custodian of the rolls of each General Assembly.
- s. He shall be the correspondent with the lower courts of the church.
- t. He shall be authorized to make public statements for and on behalf of the denomination only insofar as such statements are warranted on the basis of specific ac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3-3. The Stated Clerk shall have responsibility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as follows:

총회운영세칙

- 츠. 그는 직권상 대외 총회 관계 위원회의 회원이다.
- 크. 그는 미국장로교 총회 산하의 각종 이사회 및 기관들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대로, 그 요청을 받은 때에, 그들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티. 미국장로교 총회의 역사적 기록을 보관하는 미국장로교 역사관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 피. 총회의 행정위원회의 감독하에 총회의 의사 일정을 상정할 수 있으며, 총회 사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총회에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
- 히. 총회의 결정을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 타. 미국장로교(법인)의 총무 및 회계로서 봉사하여야 한다.
- 타. 특수 위원회들을 포함한, 총회가 임명한 위원회들로부터 경과 보고서와(또는) 회의록을 접수하여야 한다.
- 가. 그는 총회 석상에서 그의 임무에 관한 모든 일들에 대한 발언의 특권을 가지고, 총회 앞에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모든 위원회의 업무와 보고에 관한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총회장, 조정 자들, 집행 담당자들, 총회 위원회 위원장들과 총회 기관의 기관장들(또는 그들에게서 지명 받은 대리인들), 또는 총대 중 누구라도 치리회 앞에서 안전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이다.
- 카. 그는 매 총회 회원 명부의 관리자로서 봉사한다.
- 나. 그는 총회의 하위 치리회와 교신하여야 한다.
- 냐. 그는 총회의 특정한 결정 조치에 근거한 발언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총회를 위하여, 총회를 대신하여, 공적 발언을 할 권한을 갖는다.

3-3. 총회 서기는 총회 행정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a. He shall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between the meetings of General Assembly.
- b. He shall perform such duties as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shall direct.
- c. He shall recommend a person to fill the office of business administrator, such recommendation to be made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He shall employ such business administrator,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is Administrative Committee. The person filling the office of business administrator shall be responsible directly to the Stated Clerk, and through the business administrator the necessary personnel and equipment shall be obtained and utilized -- all under the overall oversight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 d. He shall make a full report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each year pertaining to his assessment of and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by himself and those under his supervision and control during the year, which full report shall be submitted by this Administrative Committee to the General Assembly. This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of adding its comments,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to such report which shall include an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person filling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3-4.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has the responsibility of nominating to the General Assembly the person to fill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Additional nominations may be made from the floor of the Assembly through the regular process for additional nominations.

3-5. The qualifications for the person to fill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shall be as follows:

- a. He must be either a teaching or ruling elder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b. He must be conversant with the history and distinctives of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tradition and in particular of the history and distinctiv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c. He must possess a competent knowledge of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d. He must have demonstrated managerial and organizational skills.

총회운영세칙

- ㄱ. 그는 총회 휴기중 총회 행정위원회의 감독하에 일해야 한다.
- ㄴ. 그는 총회 행정위원회가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ㄷ. 그는 사무 행정관의 직책을 맡을 사람을 한 명 추천해야 하며, 그 추천은 총회 행정위원회로 한다. 그는 동 행정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사무 행정관을 채용한다. 사무 행정관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총회 서기의 직접 책임하에 있으며, 이 사무 행정관을 통하여 필요한 직원과 장비가 구해지고 이용되어야 한다 -- 이 모든 것들은 총회 행정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 ㄹ. 그는 매년 자신을 비롯하여 그 한 해동안 그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의 종합 평가에 관하여 총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할 완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완전 보고서는 동 행정위원회에 의해 총회로 제출되어야 한다. 동 행정위원회는 그 보고서에 총회 서기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활동 평가를 포함하여, 그들의 의견, 추천 사항 및 제안 사항을 추가할 책임이 있다.

3-4. 총회 행정위원회는 총회 서기의 직책을 맡을 사람을 총회에 공천할 책임이 있다. 추가 공천을 위한 정규 과정을 통하여 총회 총대석으로부터 추가 공천이 있을 수도 있다.

3-5. 총회 서기의 직무를 이행할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ㄱ. 미국장로교 총회 소속 강도장로 혹은 치리장로이어야 한다.
- ㄴ.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역사와 특징들에 정통하여야 하며, 특히 미국장로교 총회의 역사와 특징들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어야 한다.
- ㄷ. *미국장로교 총회의 교회헌법*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ㄹ. 경영능력과 조직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e. He must be loyal to the standard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be able to fairly represent the actions of each General Assembly. He must be conversant with the breadth of Reformed thinking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membe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with representatives of other Reformed denominations.
- f. He must be able to work in a capable, sensitive manner with persons who are in positions of responsibility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organization structure.
- g. He must understand and be committed to the proposition set out in *BCO* 14-1, 3: "The work of the Church as set forth in the Great Commission is one work. . ." Therefore, such person must recognize and be committed to implementing the important principle of the interdependency of each court, Committee, and Agency of the PCA.
- h. He must have an appreciation of the whole churc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defined in *BCO* 1-3 and thus be able to work with the leaders of all branches of this true Church.

총회운영세칙

- ㄱ. 미국장로교 총회의 교리 표준을 신봉하고, 매 총회에 의해 내려진 결정조치를 공정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미국장로교 총회의 개혁 신앙 사상의 전반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장로교 총회 회원들 및 다른 개혁교 총회의 대표들과 의사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ㄴ. 미국장로교 총회 구조 속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과 더불어 유능하고도 민감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ㄷ. 헌법 14-1, 3: “지상 명령 속에 제시된 교회의 사역은 동일한 사역이다...”라고 제시된 신조를 이해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미국장로교 총회 산하의 각 치리회와 위원회 및 기관의 상호 의존성의 중대 원리를 실행할 것을 인지하고 그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ㄹ. 헌법 1-3에 규정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따라서 이 참 교회의 모든 분파에 속한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RTICLE IV. COMMITTEES AND AGENCIES

4-1. The affairs and program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conducted primarily through its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4-2. The permanent Committees are those specifically created by the *Book of Church Order*:

- Administrative Committee (AC)
-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CDM) ●
- Mission to the World (MTW)
- Mission to North America (MNA)
-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RUM)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function as a service committee to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denomination. The Committees on Discipleship Ministries, Mission to North America, Mission to the World, and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shall be known as program Committees. ● ●

4-3. The Agencies are:

-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CTS)
- Covenant College (CC)
- PCA Foundation (PCAF)
- PCA Retirement & Benefits, Inc. (RBI)
- Ridge Haven Conference Center (RH)

The relationship of the Agencies to the Assembly remains as a Committee, although they may be incorporated separately for civil purposes. The composition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gencies are set forth in the Bylaws.

4-4. The Special Committees are:

-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 Interchurch Relations Committee
-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 Nominating Committee
-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 Theological Examining Committee

제 4 항. 위원회와 기관

4-1. 총회의 사무와 프로그램들은 주로 총회의 각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4-2. 상임 위원회들은 본질적으로 교회헌법에 의해 창설된 위원회들이다.

행정위원회 (AC)
제자사역위원회 (CDM)
세계선교위원회 (MTW)
국내선교위원회 (MNA)
학원선교위원회 (RUM)

행정위원회는 총회와 교단에 대한 봉사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자사역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학원선교위원회는 프로그램 위원회들로 일컬어 진다.

4-3. 총회의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커버넌트 신학교 (CTS)
커버넌트 대학교 (CC)
럿지 헤이븐 회관 (RH)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 (RBI)
미국장로교 재단 (PCAF)

총회 기관들이 민사상의 목적으로 개별적인 법인 등록을 하였을지라도, 총회와의 관계에서는 (총회의) 위원회로 남는다. 각 기관의 구성과 책임에 대해서는 총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4-4. 특별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사역협력 위원회
대외 교단 관계 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
공천 위원회
노회록검열위원회
신학교시위원회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4-5. The membership of Committees or Agencies shall be limited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permanent Committees or Agencies (*BCO* 14-1.12): namely, that those who have served for at least a full term, or at least two years of a partial term on one of the Assembly's permanent Committees or Agencies shall not be eligible for re-election to an Assembly Committee or Agency until one year has elapsed, unless provision has been approved by the Agency bylaws. Nominations shall be handled according to the *BCO* 14-1.11. These provisions shall not apply to ad interim committees, study committees or other committees appointed.

4-6. No individual shall serve on more than one Assembly committee or agency at one time, except those who serve as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representatives on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and those who serve on ad interim committees.

4-7. Employees of the Assembly's Committees and Agencies are not eligible for office on an Assembly's Committee or Agency which administers matters directly related to their area of employment.

4-8.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shall be the Stated Clerk.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four program Committees shall be the coordinators and of the Agencies shall be the executive directors or presidents.

4-9. The four program Committees shall nominate annually a coordinator for election by the General Assembl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nominate annually a Stated Clerk for election by the General Assembly. If the nominee has not been examined by the Theological Examining Committee, such an examination must take place prior to the election when it is a first time employment. A new coordinator shall assume office at the end of the Assembly meeting, or at such time thereafter as desig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4-10.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may appoint subcommittees for specific tasks or areas of responsibility assigned by the General Assembly, according to the following guidelines:

- a. Membership of subcommittees may include persons not elected to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provided the subcommittee chairman is a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member.
- b. All policies and procedures of a subcommittee must be approved by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prior to implementation.

총회운영세칙

4-5. 각 위원회나 기관의 위원 자격은 상임 위원회들의 위원 자격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14-1.12)에 의해 동일하게 한정되어 진다: 즉, 각 기관의 정관이 허용하지 않는 한, 총회 상임 위원회나 기관 중의 하나에서 적어도 한 임기를 완전히 봉사한 사람, 혹은 최소 2 년간의 한 임기의 일부를 봉사한 사람은 1 년이 경과할 때까지 총회의 위원회나 기관의 위원으로 재선될 자격이 없다. 공천은 헌법 14-1.11 에 따라 처리된다. 이 규정은 임시위원회들이나 연구 위원회들, 혹은 다른 임명된 위원회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6. 총회 행정위원회에서 상임 위원회 대표자로 봉사하는 사람들과 임시위원회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한 개 이상의 총회 위원회나 기관에서 동시에 봉사할 수 없다.

4-7. 총회의 위원회나 기관의 피고용인들은 그들의 사역 분야와 직결된 문제를 관리하는 총회의 위원회나 기관의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4-8. 총회 행정위원회의 수석 행정원은 총회 서기이다. 네 프로그램 위원회의 수석 행정원은 조정자들이며, 각 기관의 수석 행정원은 집행 담당자 혹은 회장이라고 부른다.

4-9. 네 개의 프로그램 위원회는 매년 총회에서 조정자들을 공천해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매년 총회에서 총회 서기를 공천해야 한다. 만일 그 피추천자가 신학고시위원회에 의해 시험받지 않았을 경우, 그 직책을 처음으로 맡는 경우, 선거 이전에 고시를 치러야 한다. 새 조정자는 총회 폐회 후나, 그 후 총회가 지정한 때에 임무를 맡는다.

4-10. 총회가 할당한 특수 과업이나 책임 분야를 감당하기 위하여 상임 위원회들이나 기관들은 다음의 지침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ㄱ. 분과 위원회의 위원은, 분과 위원장이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위원일 때, 상임 위원회 혹은 기관의 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 할 수 있다.
- ㄴ. 분과 위원회의 모든 정책들과 절차들은 이행에 앞서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c. The staff of a subcommittee is controlled by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through its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4-11. The budget for each permanent Committee and Agency shall be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which shall independently evaluate the proposed budget of each permanent Committee and Agency and report to the Assembly its considered opinion on the adoption. To protect the ministry and fiduciary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ttees and Agency Boards, the financial coordination and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budgets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be for review, discussion, and recommendation to the Assembly.

Should modifications in budgets be deemed necessary by the Assembly, special care shall be taken that changes not be made in such a way as to threaten the continuity or effectiveness of the Committee's or Agency's ministry. Budgets of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that are agreed upon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may be changed only by a two-thirds vote of the Assembly commissioners present and voting at the time the budget is submitted for adoption. In the event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disagrees with the budget submitted by one of the Committees or Boards, in whole or any item thereof, the General Assembly may adopt either the Committee's or Board's budget or the Administrative Committee's recommended budget by simple majority. The requirement of a two-thirds vote of the General Assembly applies only to changes not recommend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initiated on the floor of the Assembly. With respect to the Committees and Agencies, financial coordination is through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to the Assembly and from the General Assembly to the Committees and Agencies.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is a "filter upward" and has no downward authorit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annually provide and publish guidelines for the Partnership Share Giving Program of the PCA, including the Ministry Ask. These guidelines shall include statistical information expressed both in per capita giving terms and in proportional (percentage) giving terms to demonstrate the giving necessary to attain full funding for budgets of the General Assembly Committees and Agencies.

The Committees and Agencies receiving support through the PCA Partnership Share Giving Program shall present their financial needs and their Ministry Ask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for review and recommendation in the course of the regular budgeting process. Each Committee and Agency shall then be free to request from the PCA churches and constituency the contributions necessary to fund its approved budget.

총회운영세칙

- ㉔. 분과 위원회의 간사는 상임 위원회 혹은 기관의 수석 행정 임원을 통하여 상임 위원회나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4-11. 각 상임위원회와 기관의 예산은, 각 상임 위원회와 기관의 상정된 예산안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채택한 [예산]에 대하여 고려한 견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총회 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 이사들의 사역과 수탁자의 의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위원회가 상정한 재무 조정과 독립적 평가는 총회에 대한 검토, 토론과 추천을 위한 것이다.

각 위원회와 기관의 예산안이 총회에서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각 위원회나 기관 사역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수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위원회가 동의한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예산안은, 채택 받기 위해 제출된 때에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총대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만 수정될 수 있다. 한 상임위원회나 기관의 예산안의 전부 혹은 그 일부에 대하여 행정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총회는 단순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그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예산안이나 행정위원회가 추천한 예산안을 채택할 수 있다. 총회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 투표 조건은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지 않고, 총회 석상에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에 대한 재무 조정은 행정위원회를 통하여 총회에 올려지고 총회로부터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에게 하달된다. 행정위원회는 “상향시 여과기”[역할을] 하지만 하향시에는 권한이 없다.

행정위원회는 매년, 사역 [지원] 요청을 포함하여, 본 교단의 기부금 나누기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안내서를 공급하고 출판하여야 한다. 이 안내서들은 총회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예산을 위하여 완전한 기부금을 받아야 하는 기부금의 필요성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일인당 기부금 용어들과 비례적 (백분율) 기부금 용어들을 모두 표시하는 통계적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본 교단의 기부금 나누기 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후원을 받는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은 그들의 재정적 필요들과 사역 [지원] 요청을 통상적 예산 편성 과정의 검토와 추천을 위하여 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각 상임 위원회와 기관은 인준 받은 예산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들을 본 교단 교회들이나 교인들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While all churches remain free to give their contributions as they by God's guidance determine, all churches are encouraged to give, as they are able, at least ten percent (10%) of their tithes and offerings to the PCA causes of presbyteries and General Assembl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maintain a manual containing the Affirmation of Core Financial Standards. This information, by which each PCA General Assembly ministry (Committee or Agency) shall function and by which the budget process is governed for each Committee and Agency, shall be available to all constituencies.

4-12. All funds received by the Corporation that are designated for the benefit of any particular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shall be disbursed by the treasurer to the proper Committee or Agency. There shall be no equalization of funds so designated. Any funds received by the Corporation not designated as being for the benefit of a particular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shall be distributed by the treasurer as dir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4-13. Each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by resolution adopted by a majority of its Committee or Board members, may designate the place, date, and time for its regular meetings, which should be held as needed, but no less than twice a year. Written or printed notice of such resolution should be given to all Committee or Board member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adoption thereof. Notice of the time, place or purpose of such regular meetings of the permanent Committee or Board shall not be required to be given.

4-14. Special meetings of the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may be called at any time or place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r Board, or by a majority of the Committee or Board members. Written notice stating the place, date, and hour of such special meeting shall be delivered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r Board to each Committee or Board member at least ten days prior to the date of such meetings, and such notice should specify the purpose of such special meetings. Attendance of a Committee or Board member at such a meeting will constitute a waiver of notice of such meeting. The act of the majority of the Committee or Board members present at a meeting at which a quorum is present shall be the act of the Committee or Board.

4-15. A majority of a permanent Committee or Board shall constitute a quorum.

총회운영세칙

모든 교회들은하나님의 인도 하에 그들이 정한대로 그들의 기부금을 내는 것은 자유한 그대로 있게되는 반면, 모든 교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적어도 그들의 십일조들과 헌금들의 십 퍼센트 (10 %)를 본 교단의 노회들과 총회의 [정당한] 이유들을 위하여 내도록 격려 받게 된다.

행정위원회는 핵심 재정 표준 선언서를 포함하는 지침서를 유지해야 한다. 이 정보에 의하여 본 교단의 총회의 각 사역이 (상임 위원회 혹 기관) 기능하고 각 상임 위원회와 기관을 위한 예산 편성과정이 통제되는, 이 정보는 모든 교인들에게 제공 될 수 있어야 한다.

4-12. 총회법인이 수령한 어떤 특정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혜택을 위하여 지정된모든 기금은 회계가 적절한 위원회나 기관에 분배 한다. 그렇게 지정된 기금은 [모든 위원회나 기관에] 균등 분배해서는 안된다. 총회법인이 수령한 어떤 특정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혜택을 위하여 지정되지 않은 모든 기금은 회계가 총회에서 지시한 대로 분배 한다.

4-13. 각 상임 위원회나 기관은, 상임 위원회나 이사들의 다수가 채택한 결의로, 각각의 정기회의 장소, 날짜,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정기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고, 적어도 1 년에 두 번 이상 소집되어야 한다. 서면, 혹은 인쇄된 의결 통지는 그 의결이 채택된 후 합당한 시간 내에 모든 위원회 위원들이나 이사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임 위원회나 이사회 회의의 정기회의 시간, 장소 및 목적에 관한 통지는 꼭 배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14. 상임 위원회와 기관의 특별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이사장, 또는 위원회나 이사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시로 어느 곳에서나 소집될 수 있다. 그러한 특별 회의의 장소, 날짜 및 시간이 적힌 서면의 통지는 적어도 그 회의 개최 십일 전에 그 위원회 위원장이나 이사장이 각 위원회나 이사회에 전달하여야 하며, 그런 통지서는 그런 특별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야 한다. 그런 회의에 위원회나 이사회가 출석한 것은 그런 회의의 통보에 대한 권한 포기를 성립 시킨다. 성수가 된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나 이사회 위원들의 다수 결의는 그 위원회나 이사회 회의의 결의가 된다.

4-15. 상임 위원회나 이사회 회의의 다수가 성수를 이룬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4-16. The chairman, vice-chairman, secretary, and any other officers of each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shall be elected annually at the last regular meeting of the Committee or Board prior to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Notice of this meeting shall include notice to the effect that these elections shall take place.

4-17. In the event any administrative personnel employed by a Committee or Agency and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resigns, dies, or is unable to act, such Committee or Agency may employ a provisional replacement, who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by the Assembly's Theological Examining Committee, and who shall serve until the next General Assembly.

4-18. Chairmen of special committees (4-4), subcommittees, commissions including the SJC, ad interim committees, and study committees (9-1 – 9-4) that are fund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r whose funds are administer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have the authority to call, postpone, or cancel meetings. The Stated Clerk has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notify the chairman that a meeting(s) to be held between Assemblies will not be funded if the resources are not sufficient to meet the General Assembly defined spending requirements. These requirements dictate that Committee and Agency expenses not exceed income and reserve levels.

4-19. Copies of all permanent Committee and Agency meeting agendas and minutes shall be sent, in a timely manner, to all chairmen and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4-20. All chairmen and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or their designees)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ttend (at the expense of their respectiv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any meeting of any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4-21. Guidelines for Keeping Minutes of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of the General Assembly

- a. The minutes of Assembly Committees and Agencies should be kept either in a lock-type record book, with numbered pages, or be printed, mimeographed, or otherwise reproduced.
- b. The minutes should be typewritten or printed, or reproduced from typewritten masters, and should be neat and legible.

총회운영세칙

4-16. 각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및 다른 임원들은 매년 총회 전에 모이는 위원회나 이사회 의 마지막 정기 회의에서 선출된다. 그 회의의 소집 통지는 그러한 임원 선출이 있을 것임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17. 위원회나 기관이 고용하고 총회가 인준한 어느 행정 직원이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위원회나 기관은 임시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그 대리인은 총회 신학교시 위원회가 고시하여 인준한 사람이어야 하며, 차기 총회 때까지 봉사한다.

4-18. 행정위원회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 받고 있거나 조달 받고 있는 자금을 행정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상법위, 임시위원회 및 연구위원회들 (9-1~9-4)을 포함하는 특별 위원회들 (4-4), 분과 위원회들, 전권위원회들의 위원장들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서기는 위원장에게 만일 재원이 총회가 정하고 있는 지출 요청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면 두 총회 기간 사이에 주최되어야 될 회의(들)을 위한 자금이 조달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 요청들은 위원회와 기관의 지출들이 수입과 비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4-19. 모든 상임 위원회와 기관 회의 안건들과 회의록 사본들은, 시간에 맞도록, 총회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위원장들(기관장들)과 수석 행정 임원들에게 보내져야 한다.

4-20. 총회 상임 위원회와 기관들 (또는 그들의 지명자들)의 모든 위원장들 (기관장들)과 수석 행정 임원들은 (그들이 속한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비용으로) 어느 상임위원회 또는 기관의 어느 회의에라도 참석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4-21. 총회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회의록을 보존하기 위한 지침들

- ㄱ. 총회 상임 위원회와 기관들의 회의록은 페이지 번호가 매겨진 잠금 형태의 기록물이나, 인쇄된 것, 등사인쇄된 것, 또는 달리 재생된 것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 ㄴ. 회의록은 타이프로 치든가 인쇄하든가, 또는 타이프로 친 원판에서 재생된 것으로, 깔끔하여 읽기 쉬워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c. The opening paragraphs of the minutes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which need not, however, be divided into numbered or separate items):
 - 1) The kind of meeting: regular, called, adjourned regular, or adjourned called;
 - 2) The name of the Committee or Agency;
 - 3) The date and time of the meeting, and the place;
 - 4) The name of the chairman, and if someone other than the regular secretary served as a clerk pro-tem, his name should be indicated;
 - 5) If the minutes of the previous meeting were not approved at that meeting, a record of their having been read and approved by this session should be indicated, including the date of the minutes being so approved.
 - 6) The names of those present at the meeting should be recorded, indicating whether they were teaching elders or ruling elders, and the presbytery represented in each case. The names of alternate elders and their respective churches should also be included, and the names of visitors should be included.
- d. The contents of the minute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items:
 - 1) The names of persons leading in opening and closing prayers at all sessions;
 - 2) In the event of a called meeting, the portion of the call stating the purpose of the meeting should be recorded verbatim in the minutes;
 - 3) A recording of the actions of the Committee or Board, including all motions adopted and business transacted, together with such additional information as the Committee or Board deems desirable for historical purposes. Ordinarily in church courts, motions that are lost are not included in the record unless an affirmative vote for the lost motion is recorded, in which case the lost motion must be shown. Each main motion should normally be recorded in a separate paragraph. Subsidiary and procedural motions may be recorded in the same paragraph with the main motion to which they pertain. Main motions may be recorded in the same paragraph, if they are closely related and pertain to the same item of business.
- e. It may be desirable to number these paragraphs consecutively, and to give a title over each paragraph indicating succinctly the content of business included. This is not mandatory, but is

총회운영세칙

- ㉔. 회의록을 시작하는 문단에는 (번호 매김이나 구분된 항목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1) 회의의 종류: 정기, 임시, 정기 정회, 또는 임시 정회;
 - 2) 위원회나 기관의 이름;
 - 3) 날짜와 회의 시간과 장소;
 - 4) 위원장의 이름과, 만일 정 서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기 대행을 했다고 하면, 그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 5) 만일 전기 회의의 회의록이 그 회의에서 인준되지 않았다면, 이번 회의에서, 그 회의록이 인준된 날자를 포함하여, 그 기록이 낭독되고 인준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 6) 회의에 출석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야 하고, 그들이 강도 장로인지 치리 장로인지와 각 자가 대표하는 노회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리 장로들과 그들의 교회들의 이름들도 포함되어야 하고, 방문자들의 이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 ㉕. 회의록의 내용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모든 회의에서 개회 및 폐회 기도를 인도한 사람들의 이름들;
 - 2) 임시 회의의 경우, 회의 목적을 진술하는 회의 소집 부분이 원래 소집서에 기록된 그대로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 3) 위원회나 이사회에 결의들의 기록은, 채택된 모든 동의안들과 처리된 안건을 포함하여, 위원회나 이사회가 역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정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 치리회에서, 기각된 동의안들은 기각된 동의안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찬동 투표를 받지 못하는 한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데, 찬동 투표를 받는 경우 기각된 동의안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추가 되는 각 동의안은 구별된 문단으로 기록되는 것이 정상이다. 재청과 절차적 동의안은 그것들과 관계된 주 동의안과 같은 문단에 기록되어야 한다. 주 동의안들은, 만일 그것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안의 같은 항목에 관계된 것이면, 같은 문단에 기록되어야 한다.
- ㉖. 이 문단들은 연속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 문단에 포함된 사안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시하는 제목을 붙여야 한다. 이것 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desirable for the later reading of the minutes. For historical purposes, some notes as to the extent and kind of debate may be included, but minutes should never reflect the secretary's opinion, favorable or otherwise, on anything said or done.

- f. The minutes of the Committees and Boards should appear in the minute book in the order in which the meetings occur. When a previous action of the Committee or Board is cited, the date should be given, and the volume and page and paragraph number.
- g. The minutes of each meeting should be signed by the secretary.
- h.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if there be one, and if not, the chairman,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ustody of the minutes of the Committee or Agency. He is responsible for the presentation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of all minutes of the Committee or Agency which have been approved by the Committee or Agency not previously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All other minutes of the Committee or Agency to which specific reference is made in the minutes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shall be submitted for purposes of information.
- i. A copy of the **Guidelines for Keeping Committee or Agency Minutes** should be kept with the minutes of the Committee or Agency.
- j. An up-to-date copy of the bylaws and manual of the Committee or Agency, if such exist, should be kept with the minutes.

총회운영세칙

지만, 후에 회의록을 읽는데 바람직하다. 역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논쟁의 정도나 종류에 대한 약간의 요지를 포함 시킬 수 있으나, 회의록은, 언급되어진 것이나 시행된 일 중 어떤 것에 대하여서도, 호의를 보이거나 [견해를] 달리하는, 서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

- ㅂ. 위원회와 이사회의 회의록들은 회의를 한 순서대로 회의록에 정렬되어야 한다. 위원회나 이사회의 이전 결의가 인용된 때는, 날자와 권수, 페이지와 문단 번호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 ㅅ. 각 회의의 회의록은 서기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ㅇ. 수석 행정 임원이 있다면, 그가, 없다면, 위원장(이사장)이 위원회나 기관의 회의록에 보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에게 총회에서 이전에 인준 받지 못했으나 위원회나 기관에서 인준한 위원회나 기관의 모든 회의록의 인준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총회의 인준을 위하여 제출된 회의록들에 구체적 언급이 있는 위원회나 기관의 모든 다른 회의록들은 정보를 목적으로 하여 제출된다.
- ㅈ.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회의록을 보존하기 위한 지침들의 사본은 위원회나 기관의 회의록들과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 ㅊ. 위원회나 기관의 정관과 지침의 최신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회의록들과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RTICLE V.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5-1.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shall consist of twenty (20) members:

- a. Eleven members in classes elected through the standard nomination and election procedure;
- b. One member each from the following program Committees or Agencies:
 - 1)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 2) Covenant College;
 - 3)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 4) PCA Retirement & Benefits, Inc;
 - 5) Mission to North America;
 - 6) Mission to the World;
 - 7) PCA Foundation;
 - 8) Ridge Haven Conference Center;
 - 9)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5-2. The eleven members at large shall serve a term of four years. The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be one of its members at large.

5-3. Each program Committee and each Agency shall designate its member each year at the last meeting of the Committee or Board before the meeting of General Assembly.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of the program Committees and Agencies may attend any meeting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They shall be entitled to the privilege of the floor but shall not have a vote and must be excluded when an executive session is called.

5-4. In order to support the ministry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in its unique role as a service committee to the to the General Assembly and to the entire denomination, and in order to express financially a mutual commitment to the theology of a spiritually connectional Church, Committees and Agencies are directed, and particular churches and Teaching Elders are encouraged, to contribute to the support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in the following manner:

- a. Each Committee and Agency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annually contribute at an equal share to the operating budget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The General Assembly shall annually

제 5 항. 총회 행정위원회

- 5-1.** 총회 행정위원회는 이십(20)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 ㄱ. 각 반의 열한 명의 위원들은 공천과 선거의 표준 절차를 통하여 선출된다;
 - ㄴ. 다음의 각 프로그램 위원회들과 기관들에서 한 명씩 선출된다;
 - 1) 제자사역위원회
 - 2) 커버넌트 대학교;
 - 3) 커버넌트 신학교;
 - 4) 미국장로교 연금 및 혜택재단;
 - 5) 국내선교위원회;
 - 6) 세계선교위원회;
 - 7) 미국장로회 재단;
 - 8) 릿지 헤이븐 회관;
 - 9) 학원선교위원회.
- 5-2.** 대체로 열 한명 위원들의 임기는 사년이다.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체로 동 위원회 회원 중 한 사람이다.
- 5-3.** 각 프로그램 위원회와 기관은 매년 총회 전에 모이는 위원회나 이사회 마지막 회의에서 그들의 위원을 임명한다. 각 프로그램 위원회와 기관의 수석 행정원들은 총회 행정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가할 수 있다. 그들은 총회 석상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으며, 임원 회의가 소집될 때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
- 5-4.** 총회와 교단 전체를 섬기는 위원회로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위원회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하여, 또 영적으로 연결된 교회 신학에 재정적으로 서로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정위원회를 위하여 후원금을 제공하도록 위원회들과 기관들에게 지시하며, 조직 교회들과 강도 장로들을 권장한다.
- ㄱ. 총회의 각 위원회와 기관은 매년 행정위원회의 운영 예산을 위하여 동등한 분담금을 제공한다. 총회는 매년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determine the specific contribution to be given by each Committee or Agency based on a recommendation from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not to exceed (in total) 5% of the budget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In a given year, should a Committee or Agency have difficulty contributing its share,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may recommend to the Assembly a reduction for that Committee or Agency, and so reduce the total contribution for that year.

- b. Particular churches are encouraged to contribute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n an annual basis a percentage of their operating budget. The General Assembly shall annually determine the percentage of congregational operating budgets requested, based on a recommendation from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the operating budget shall be defined as all funds received excepting those for capital campaign expenditures.
- c. All Teaching Elders are encouraged to pay an annual "Administration Fee for Ministers." The General Assembly shall annually determine the Administration Fee for Ministers, based on a recommendation from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총회운영세칙

각 위원회와 기관에서 제공할 구체적인 분담금을 행정위원회의 추천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총액이) 행정위원회 예산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 해당 연도에 어떤 위원회나 기관이 분담금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우면, 행정위원회는 총회에 그 위원회나 기관을 위하여 분담금을 감소시켜 주도록 추천할 수 있고, 그 해 총 분담금은 그렇게 감소 시킨다.

- ㄴ. 조직 교회들은 그들의 매년 교회 운영 예산의 어떤 비율에 기초하여 행정위원회 분담금을 감당하도록 권장한다. 총회는 매년 행정위원회 추천에 기초하여, 필요로 하는 교회 운영 예산의 비율을 결정한다.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 예산은 조직 활동 경비를 위하여 수금된 헌금을 제외한 모든 헌금으로 정의한다.
- ㄷ. 모든 강도 장로들은 매년 “목회자들을 위한 행정비”를 내도록 권장한다. 총회는 매년 목회자들을 위한 행정비를 행정위원회 추천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RTICLE VI. PROGRAM COMMITTEES

6-1. The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The affairs of the church in the areas of Christian education and publications are assigned to the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whose duties and authority shall be desig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6-2. The Committee on Mission to North America. The affairs of the church involved in its exten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e assigned to the Committee on Mission to North America, whose duties and authority shall be desig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6-3. The Committee on Mission to the World. The affairs of the church in the area of world mission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e assigned to the Committee on Mission to the World, whose duties and authority shall be desig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 The Committee on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The affairs of the church in the area of campus ministry are assigned to the Committee on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whose duties and authority shall be desig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제 6 항. 프로그램 위원회들

6-1. 제자사역위원회. 기독교 교육과 출판 분야의 교회 사역은 제자사역위원회로 할당되며, 그 임무와 권한은 총회에 의해 지정된다.

6-2. 국내선교위원회. 미국과 캐나다 지역 내의 교회 사역은 국내선교위원회에 할당되며, 그 임무와 권한은 총회에 의해 지정된다.

6-3. 세계선교위원회.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세계 선교 분야의 교회 사역은 세계선교위원회에 할당되며, 그 임무와 권한은 총회에 의해 지정된다.

6-4. 학원선교위원회. 학원 사역 영역에 속하는 교회 사역들은 학원선교위원회에 할당되며, 그 의무와 권위는 총회에 의해서 지정된다.

Article VII.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7-1. Membership

- a. The members of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shall be the chairmen and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 b. The current Moderator and immediate past five moderato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advisory members, having six- year terms.

7-2. Terms of office

- a. The chairmen of the General Assembly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shall serve as elected by their respective Committees or Boards.
- b.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permanent Committees shall serve as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of Agencies shall serve as elected by their respective Boards.
- c. The Moderator shall begin service during the year he is elected by the Assembly as Moderator.
- d. Past moderators shall serve during six years following their election by the Assembly as Moderator.

7-3. Responsibilities

- a. Consider only such matters as enumerated below or such matters as referred to it by the Committees and Agencies of the General Assembly.
- b. Meet together to foster cooperative ministry among Committees an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PCA purpose statement adopted by the 10th Assembly in 1982, upon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t is the purpose of the PCA to bring glory to God as a worshipping and serving community until the nations in which we live are filled with churches that make Jesus Christ and His Word their chief joy, and the nations of the world, hearing the Word are disciplined in obedience to the Great Commission.
- c. Facilitate integrated long-range planning that supports progress toward the overall mission and ministry of the PCA. Such

제 7 항. 목회협력위원회

7-1. 회원

- ㄱ. 목회협력위원회 회원들은 총회 상임 위원회와 기관들의 위원장(이사장)들과 수석 행정 임원들로 한다.
- ㄴ. 현직 총회장과 과거의 다섯 총회 직전 총회장들은 육년 임기의 자문위원들이 된다.

7-2. 직무에 관한 규정들

- ㄱ. 총회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위원장(이사장)은 위원회들 혹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로 봉사한다.
- ㄴ. 총회 상임 위원회들의 수석 행정 임원들은 총회에서 선출한 대로 봉사하고 기관들의 수석 행정 임원들은 그들의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로 봉사한다.
- ㄷ. 총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 대로 그 해 중 총회장으로서 봉사를 시작한다.
- ㄹ. 전직 총회장들은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그들을 선출한 해에 이어 육년간 봉사한다.

7-3. 의무들

- ㄱ. 아래 열거된 그러한 사안들만 또는 총회 위원회들이나 기관들이 목회협력위원회에 위탁한 그러한 사안들만 참작한다.
- ㄴ. 1982년, 국내선교위원회의 추천에 근거하여, 제 10 차 총회가 채택한 본 교단 목적 진술문을 따라 위원회들과 기관들 가운데 협력 사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함께 회합한다:
 - 본 교단의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그들의 제일된 즐거움으로 만드는 교회들로 충만하게 채우고, 세상의 나라들이 말씀을 들어 대 위임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될 때까지 예배하며 봉사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 ㄷ. 본 교단의 전체적 사명과 사역을 진척 시키도록 돕는 융화된 장기 계획을 조장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planning shall be with respect to matters that fall within the ordinary scope of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PCA's Committees and Agencies, particularly with a view toward the mission of the PCA as a whole. Any matters requiring General Assembly action shall be referred to the appropriate Committee or Agency for its consideration and recommendation.

- d. Keep minutes of the meetings and distribute them to all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and chairmen.
- e. Establish appropriate subcommittees to deal with specific issues as they are identified.
- f. Send recommendations to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and their respective Committees or Boards. Encourage them to deal with the issues presented to them, and if necessary, for them to meet together to resolve issues.
- g. Monitor and evaluate the standards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in light of the unique ministry of each Committee or Agency,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inter-Committee-and-Agency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 h. Serve as a forum for resolving issues of inter-agency cooperation, collaboration or conflict.

7-4. Meetings

- a. Frequency – The committee shall have an annual meeting in January, and other called meetings as necessary. The moderator of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shall call a special meeting of the committee when requested by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or chairmen of two Committees or Agencies. There shall be thirty days advance notice of called meetings. The moderator of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shall call an emergency meeting of the committee when requested by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or chairmen of three Committees or Agencies. There shall be seven days advance notice of emergency meetings.
- b. Moderator – The current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or his designee shall moderate the meetings of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 c. Docket – The Stated Clerk shall be the secretary of the committee for the purposes of maintaining the committee's records, receiving matters for the agenda from all committee members, working with the moderator of the committee to propose the agenda at each meeting of the committee, and to prepare the annual information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총회운영세칙

그러한 계획은, 특별히 전체로서 본 교단의 사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 교단의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관련된 의무들의 일반적 범주 안에서 들어 가는 사안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안들은 어느 것이나 그것에 대한 고려와 추천을 위하여 적합한 위원회나 기관에게 위탁 된다.

- ㄱ. 회의들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모든 수석 행정 임원들과 위원장(이사장)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ㄴ. 특별한 안건들이 확인되는 대로 그것들을 다루기에 적절한 분과 위원회들을 구성한다.
- ㄷ. 수석 행정 임원들과 관련된 위원회들 또는 이사회들 앞으로 추천서를 보낸다. 그들에게 제시된 안건들을 다루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필요하다면,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한다.
- ㄹ.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효과와 효율성의 표준을, 위원회와 기관의 상호 소통, 합작, 협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 위원회나 기관의 독특한 사역의 빛에 비추어 관찰하고 평가 한다.
- ㅇ. 기관의 상호 협력, 합작, 또는 충돌에 대한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개 토론장으로 봉사한다.

7-4. 회의들

- ㄱ. 빈도 - 위원회는 매년 일월에 정기 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다른 임시 회의들을 한다. 목회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두 개의 위원회들 또는 기관들의 수석 행정 임원들이나 위원장(이사장)들이 요구할 때 동 위원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 회의 소집은 삼십일 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목회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세 개의 위원회들이나 기관들의 수석 행정 임원들이나 위원장(이사장)들이 요구할 때 동 위원회의 비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비상 회의 소집은 칠일 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 ㄴ. 위원장 - 총회 현직 총회장 또는 그의 임명받은 자가 목회협력위원회 회의들을 사회한다.
- ㄷ. 회의 안건록 - 총회 서기는 동 위원회의 기록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위원회의 서기가 되는데, 모든 위원회 위원들에게서 나온 안건을 위한 사안들을 접수하고, 동 위원회의 각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또 총회에 제출할 연간 정보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과 함께 일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7-5. Appeal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for Unresolved Matters

In the event any matter considered by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has not been satisfactorily resolved within the committee, the matter may be referred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 a. Any member of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may request the advisory members to refer a matter arising from the committee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 b. A request shall be referred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nly if a majority of the advisory members of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agree to make the reference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by:
 - 1) Giving notice of an intent to make the reference to the chairman within three (3) business days after adjournment and;
 - 2) Submitting the reference signed and in writing to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at least thirty-five (35) business days prior to the spring meeting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 c. The committee by its own action may bring a matter arising from the committee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 d. Matters referred from the committee or the majority of advisory members shall be consider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nly at its stated spring meeting.
- e. The six advisory members of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may attend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meeting or Administrative Committee subcommittee meetings when issues referred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from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are being addressed.
- f. The chairmen,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and immediate past chairmen of the General Assembly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or their designees may attend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meeting or Administrative Committee subcommittee meetings when issues referred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from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are being addressed.
- g.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may not act upon matters that are solely within the specified areas of responsibility of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until such matters are properly referred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in order for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to facilitate discussion and resolution of such matters.

7-5. 미해결된 사안들을 위하여 행정위원회에 상소

목회협력위원회가 고찰한 사안 중 어느 것이라도 동 위원회 안에서 만족할 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안은 행정 위원회에 위탁된다.

- ㄱ. 목회협력위원회 위원 누구라도 자문 위원들에게 동 위원회로부터 야기된 사안을 행정위원회에 위탁해 줄 것을요청 할 수 있다.
- ㄴ. 요청은 목회협력위원회 자문 위원들의 다수가 다음과 같이 행정위원회에 위탁하기로 동의 한 때만 위탁 될 수 있다:
 - 1) 정회 후 평일로 삼일(3) 내에 위원장에게 위탁하기로 한 의도의 통보서를 보냈을 때;
 - 2) 적어도 평일로 행정위원회의 봄 회의 삼십오일 (35) 이전에 총회 서기 사무실로 날인 된 서면 위탁서가 제출 되었을 때.ㄷ. 위원회는 자체 결의로 동 위원회에서 야기된 사안을 행정위원회로 가져 올 수 있다.
- ㄷ. 위원회에서 또는 자문 위원들 다수가 위탁한 사안들은 행정위원회가 행정위원회의 봄 정기 회에서만 고려 할 수 있다.
- ㄹ. 목회협력위원회의 자문 위원들 여섯이 목회협력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위탁한 사안들이 언급되어 질 때 행정위원회 회의 또는 행정위원회 분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 ㅁ. 위원장(이사장), 수석 행정 임원들과 직전 총회 상임 위원회와 기관들의 위원장(이사장)들 또는 그들의 지명 받은 자들이 목회협력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위탁한 사안들이 언급되어 질 때 행정위원회 회의 또는 행정위원회 분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 ㅂ. 행정위원회는, 전적으로 목회협력위원회의 책임으로 명시된 영역들 안에 있는 사안들에 관하여, 행정위원회가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토론과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안들이 행정위원회로 적법하게 위탁 될 때 까지, 결의 할 수 없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7-6. Reporting Process – The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shall submit an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but any recommendations to the Assembly must come as set forth in 7-3.c.

7-7. Funding – The funding of the committee shall be as follows:

- a. All travel and other expenses for each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and chairman shall be borne by the respective Committee or Agency.
- b. All travel and other expenses of the advisory members shall be shared equally by the Committees and Agencies.

총회운영세칙

7-6. 보고 절차 - 목회협력위원회는 총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총회에 올리는 어떤 추천도 7-3.ㄷ에 정해진대로 제출해야 한다.

7-7. 기금 - 위원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다:

- ㄱ. 각 수석 행정 임원과 위원장(이사장)의 모든 여행 및 기타 경비들은 관련된 위원회나 기관에서 담당한다.
- ㄴ. 자문 위원들의 모든 여행 및 기타 경비들은 위원회들과 기관들이 반반씩 분담한다.

ARTICLE VIII. SPECIAL COMMITTEES

8-1. Interchurch Relations Committee

There shall be an Interchurch Relations Committee composed of three teaching elders and three ruling elders who may serve two consecutive, three-year terms of office. There shall be a ruling elder and a teaching elder to serve as alternates.

The committee shall serve as liaison betwee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other denominations and church councils as approved by the Assembly.

8-2.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 a. There shall be a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composed of eight members divided into four classes of two members each serving four-year terms. Each class shall be composed of one teaching elder and one ruling elder. There shall be one teaching elder and one ruling elder to serve as alternates.
- b.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shall:
 - 1) Function as advisor to the Stated Clerk when requested by him. Such advice shall be for information only and without binding authority.
 - 2) Receive from the Stated Clerk all non-judicial references submitted by presbyteries under *BCO* 41-1 and 41-4, and, if it accedes to the request, give its advice to the presbytery sending the non-judicial reference. Such advice shall be for information only and without binding authority or precedent but shall be included as a part of the annual report of the Stated Clerk to the General Assembly.
 - 3) Provide advice concerning the effect of any propos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r to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Such advice shall be included in the report of the committee as printed in the *Commissioner Handbook*, and shall be presented orally to the Overtures Committee at the time the proposed amendment is considered by the Overtures Committee. Upon so advising the Overtures Committee,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s responsibility with respect to such proposed amendment shall cease.
 - 4) Advise the Overtures Committee on any constitutional inquiry submitted to it by the Overtures Committee.

제 8 항. 특별 위원회

8-1. 대외 교단 관계 위원회

대외 교단 관계 위원회는 세 명의 강도장로와 세 명의 치리장로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삼 년이며 연속으로 재임하여 봉사할 수 있다. 강도장로 일인, 치리장로 일인을 교체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미국장로교와 총회에서 인준한 다른 교단들과 교회 협의회들 사이에서 연락자로 봉사한다.

8-2. 헌법연구위원회

- ㄱ. 헌법연구위원회는 여덟 명으로 구성되고 이 여덟 명은 각 두 명씩 네 개의 반으로 나누이며 임기는 사 년이다. 각 반은 강도장로 일인, 치리장로 일인으로 구성된다. 강도장로 일인과 치리장로 일인을 교체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 ㄴ. 헌법연구위원회는:
 - 1) 총회 서기가 요청할 때 총회 서기에게 자문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한 자문은 정보를 위한 것일 뿐 구속력이 없다.
 - 2) 헌법 41-1과 41-4에 의거, 노회가 제출한 법적인 것이 아닌 모든 문의를 총회 서기에게서 접수하고, 만약 헌법연구위원회가 그 요청에 동의하면, 법적인 것이 아닌 문의를 보내 온 노회에게 헌법 연구위원회의 자문을 제공한다. 그러한 자문은 정보를 위한 것일 뿐 구속력이 없고 또는 선례가 될 수 없지만 총회 서기가 총회에 보고하는 연례 보고서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3) 헌법이나 총회운영세칙에 대하여 상정된 수정안이 무엇이든 그 효과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자문은 총대를 위한 안내서에 인쇄된 대로 동 위원회의 보고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헌의 위원회가 상정한 수정안을 검토 할 때 헌의 위원회에 구두로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정된 수정안에 관한 헌법연구위원회의 책임은 중단된다.
 - 4) 헌의 위원회가 헌법연구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헌법적 문의에 관하여 헌의 위원회를 자문해 주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5) Report directly to the General Assembly on all constitutional inquiries submitted to it by the General Assembly.
- c.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shall not be separately funded but administratively shall operate as a subcommittee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8-3. Theological Examining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BCO* 14-1.14 there shall be a Theological Examining Committee composed of three teaching elders and three ruling elders of three classes of two men each. There shall also be one teaching elder and one ruling elder as alternates to fill any vacancy that may occur during the year.

This committee shall conduct its work as specified in *BCO* 14-1.14. Furthermore this committee shall record all nominees' differences to our denominational standards in their own words, as set forth in *RAO* 16-3.e.5. Those differences shall be included in this committee's annual report which is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8-4. Nominating Committee

The Assembly's Nominating Committee shall operate under the following guidelines:

- a. Every member of the Nominating Committee should make a reasonable effort to attend the next General Assembly.
- b. The Nominating Committee should be reminded of paragraph *BCO* 14-1.9 regarding proportionate representation wherever possible.
- c. No presbytery shall ordinarily be represented by more than one person nominated for any given Committee or Agency. This includes alternates.
- d. A typed biographical form must accompany each name submitted to the Nominating Committee. All nominees should be contacted by their presbyteries to ascertain their availability and willingness to serve prior to submission of names to General Assembly's Nominating Committee.
- e. Presbyteries should send names of nominees on forms to the Stated Clerk's office no later than four months prior to the General Assembly. The Stated Clerk will then make the forms available to the convener of the Nominating Committee.

총회운영세칙

- 5) 총회가 헌법연구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헌법적 문의에 관하여 총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ㄷ. 헌법연구위원회는 별도로 기금을 만들지 않고 행정적으로 총회 행정 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서 운영하여야 한다.

8-3. 신학교시위원회

헌법 14-1.14 에 따라, 각 두 명으로 된 세 개의 반에 세 명의 강도장로와 세 명의 치리장로로 구성된 신학교시위원회를 둔다. 또한, 강도장로 일인과 치리장로 일인을 교체 위원으로 두어, 그 해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공석이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헌법 14-1.14 에 명시된대로 사역을 시행해야만 한다. 나아가서 이 위원회는 총운세 16-3.ㄱ5 에 규정된대로, 모든 후보자들이 총회의 표준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후보자 자신들의 말로 기록해야 한다. 그 견해 차이들은 총회에 인준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이 위원회의 연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8-4. 공천 위원회

총회의 공천 위원회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ㄱ. 공천 위원회의 각 위원은 차기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ㄴ. 공천 위원회는 어디에서든지 가급적 비례 대표에 관한 헌법 14-1.9의 문단을 상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ㄷ. 통상 어떤 노회도 주어진 어떤 위원회나 기관을 위하여 공천받은 사람 일인 이상을 대표로 보낼 수 없다. 이것은 교체 위원도 포함한다.
- ㄹ. 타자로 친 전기 형식[의 인적사항]이 공천 위원회에 제출되는 각 사람의 이름에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공천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총회 공천 위원회로 제출되기에 앞서, 그들이 속해 있는 노회들은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ㅁ. 노회들은 공천받은 사람의 명단을 기입한 서식을 늦어도 총회 개회 사 개월 전에 총회 서기실로 보내야 한다. 그 후, 총회 서기는 그 서식들을 공천 위원회 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f. A list of members, by presbytery, currently serving on the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should be furnished to the convener of the Nominating Committee by the Stated Clerk. The Directory of the current Assembly Committees should indicate the presbytery of each Committee or Agency member.
- g. “In addition to the new nominees from presbyteries, alternates not assuming any vacancies during a year will be automatically considered by the Nominating Committee as candidates for nomination to that same committee” (*BCO* 14-1.11).
- h. The committee shall present its nominations to the Assembly through the *Commissioner Handbook* or *Supplement*. This presentation shall include a brief statement regarding each nominee.
- i. Additional nominations may be made in writing on forms supplied by the Stated Clerk, which shall include consent of the nominee to serve, if elected, and a brief statement regarding the nominee. The nominee is to give consent to only one nomination. The deadline for these nominations is the close of the afternoon session of the second day of the Assembly. The Clerk’s office shall issue a supplement to the Assembly’s Nominating Committee report during the third day’s business sessions.
- j. The time for the election shall be docketed as a special order. Only those commissioners present or on the floor of the Assembly shall be eligible to vote. The voting procedures may be conducted either by voice vote or by standing vote, or by use of ballots as determined by the General Assembly.
- k. In the event of the resignation of any member of an Assembly elected Committee or Agency, such resignation should be presented to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The Stated Clerk, shal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hairman of the respective Committee or Board, be authorized to accept such resignation on behalf of the Assembly. He is to report such actions to the next General Assembly, and arrange for the nomination of a replacement by the Assembly’s Nominating Committee, where such replacement is appropriate.

8-5.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 a. The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shall be comprised of one representative from each presbytery elected by the presbytery in the manner set forth in *BCO* 14-1.11 for the election of the Nominating Committee. A person who is serving as a member of or on the staff of one of the permanent or special committees, or board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eligible to serve on this committee.

총회운영세칙

- ㄴ. 현재 총회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에서 봉사하고 있는 위원들의 노회별 명단을 총회 서기가 공천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 총회 위원회들의 주소록은 각 위원회 혹은 기관에 속한 위원의 소속 노회를 명시해야 한다.
- ㄷ. “노회에서 새로 공천받은 사람들과는 별도로, [지난] 1년 동안 공석을 채운 적이 없는 교체 위원들은 자동적으로 같은 위원회에 공천될 후보로 공천 위원회가 고려해야 한다”(헌법 14-1.11).
- ㄹ. 공천 위원회는 총대를 위한 안내서나 그 보충자료를 통하여 총회에 그 들의 공천 [서류]를 제출한다. 이 제출물은 각 공천받은 사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 ㅁ. 추가 공천은 총회 서기가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서식은, 선출된다면, 봉사하겠다는 그 공천받은 사람의 동의와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공천받은 사람은 오직 한 개의 공천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공천 받은 사람은 하나의 공천에만 동의 할 수 있다. 이 추가 공천의 접수 마감은 총회 둘째 날 오후 회기를 마칠 때까지이다. 총회 서기실은 총회 셋째 날 일정한 회의들이 진행되는 동안 총회 공천 위원회 보고서에 [추가 될] 보충자료를 발행하여야 한다.
- ㅂ. 선거를 위한 시간은 특별 순서로 회의 일정에 잡혀야 한다. 총회에 출석했거나 총회 석상에 있는 총대만 투표할 자격을 갖는다. 투표 절차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구두 투표나 기립 투표, 혹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될 수 있다.
- ㅅ. 총회가 선출한 위원회나 기관의 위원이 사임할 경우, 그 사직서는 총회 서기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총회 서기는 해당 위원회나 이사회 의 위원장(이사장)과 협의한 후, 총회를 대표하여 그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있다. 총회 서기는 반드시 그러한 조치들을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총회 공천 위원회에 의한 교체가 적절한 곳에서는, 그런 교체 공천을 주선해야 한다.

8-5. 노회특검열위원회

- ㄱ. 노회특검열위원회는 공천 위원회의 선거에 대하여 헌법 14-1.11가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각 노회에서 선출한 각 노회 된 대표 일인으로 구성된다. 총회의 상임 위원회나 특수 위원회 또는 이사회 회원이나 직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이 위원회에서 봉사 할 자격이 있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b. The committee shall be scheduled to meet prior to the opening session of the Assembly.
- c. A chairman and vice-chairman for the following year shall be elected by the committee from members who shall be serving in at least the second year of their term.

총회운영세칙

- ㄴ. 이 위원회는 총회 개회 전 모이도록 일정을 잡아야 한다.
- ㄷ. 다음 해에 봉사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 위원회에 의해, 적어도 그들 임기의 두 번째 해를 봉사하게 될 위원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RTICLE IX. AD INTERIM COMMITTEES

9-1. The Assembly may elect or appoint ad interim or study committees of a temporary character to handle particular matters of business as designated by the Assembly.

9-2. Only two (2) ad interim study committees may be appointed or continued in any given year, (with no committee continuing with undesignated Administrative Committee funding beyond the third year of its inception and no more than two [2] committees existing in any one [1] year), and any additional committees would have to be approved by a two-thirds vote of commissioners, with financing provided from outside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budget.

9-3. The total number of committee members per committee is not to exceed seven (7) members. Each committee's appointment and/or extension must be ratified by a majority vote of the commissioners.

9-4. All ad interim and study committees shall be considered by the General Assembly for appointment or extension at the time during the General Assembly docket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s report so that due consideration be given as to their priority and their effect on the budgets.

제 9 항. 임시위원회

- 9-1.** 총회는 총회가 지정하는 특수 사무를 취급할 일시적 성격의 임시위원회 혹은 연구 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 9-2.** 한 해에 임시 연구 위원회는 두(2) 개 까지만 임명되거나 존속될 수 있으며, (모든 위원회는 발족 후 삼년을 초과하여 행정위원회의 비지정 기금으로 운영될 수 없고, 한(1) 해에 두(2)개 이상의 위원회가 존속할 수 없다), 모든 추가 위원회들은, 행정위원회 예산 밖의 재정으로, 총회 총대 삼분의 이의 찬성 투표로 인준된다.
- 9-3.** 위원회 당 위원회 위원들 총수는 일곱(7) 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위원회의 임명과/또는 [존속기간] 연장은 반드시 총회 총대의 다수 투표로 인가된다.
- 9-4.** 모든 임시위원회와 연구 위원회의 임명과 [존속기간] 연장은 행정위원회의 보고가 총회 예정 안건을 다루는 동안 총회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에 대한 그 위원회들의 우선 순위와 효과에 관한 정당한 중요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ARTICLE X. THE ASSEMBLY ARRANGEMENTS

10-1. There shall be a General Assembly Local Arrangements Committee, which shall fun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Final approval of all decisions regarding the Assembly shall rest in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The Assembly's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Local Arrangements Committee shall operate under a Manual approv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10-2. The Local Arrangements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the following:

- a. The chairman of the Local Arrangements Committee, who is appointed by the host presbytery.
- b. The treasurer of the local committee
- c. Other members of the local committee as set forth in the General Assembly Arrangements Manual.
- d.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 e. The business administrator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10-3. Worship services shall be included as approved by the Assembl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must approve any non-PCA speaker.

10-4.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set a suitable registration fe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10-5.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must approve any non-PCA exhibitor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for Displays at the Assembly.

Subject to space available, priorities for exhibitors will be as follows:

- a. Committees and Agenc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ncluding agencies or institutions with which they have formally, through their minutes, established a working relationship;
- b. Agencies or institutions with which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its minutes has established a working relationship;
- c. Agencies and institutions which in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have objectives, policies, or programs in general conformity with thos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제 10 항. 총회 준비

10-1. 총회 지역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되, 행정위원회 밑에서 기능하게 한다. 총회에 관한 모든 결정의 최종 인준은 행정위원회의 책임이다. 총회의 행정위원회와 지역 준비 위원회는 행정위원회가 인준한 지침서에 따라 운영한다.

10-2. 지역 준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총회를 주최하는 노회가 임명한 지역 준비 위원회 위원장.
- ㉡. 지역 준비 위원회 회계.
- ㉢. 총회 준비 지침서가 정하고 있는 지역 준비 위원회 다른 회원들.
- ㉣. 총회 서기.
- ㉤. 총회 행정위원회의 사무 행정관.

10-3. 예배는 총회가 인준한 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본 교단 소속이 아닌 모든 연사들에 대한 인준을 하여야 한다.

10-4. 행정위원회는 적당한 총회 등록비를 정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0-5. 행정위원회는 본 교단 소속이 아닌 전시자들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인준해야 한다:

총회장의 전시를 위한 안내.

장소가 허락하는 조건하에서 전시물 출품자들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 ㉠. 미국장로교 위원회들과 기관들이, 그들의 회의록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실무 관계를 확립해 온 기관들이나 학원들을 포함하는, 미국장로교의 위원회들과 기관들.
- ㉡. 총회가 그 회의록에 의거하여 실무 관계를 확립해 온 기관들이나 학원들.
- ㉢. 행정위원회의 판단에 미국장로교 총회의 것과 보편적으로 부합하는 목표나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학원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 disclaimer statement should be printed in the *Commissioner Handbook* distributed to all commissioners, stating in effect that permission granted to place an exhibit does not mea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necessarily fully endorses the exhibitor's product, services, or objectives. These guidelines are to serve as the ordinary guidelines. I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feels that an exception must be made, it has the authority to do so, and is to report such actions and the reasons to the next Assembly.

10-6. In case of extraordinary events occurring or unusual circumstances arising that make it impractical for the General Assembly to hold its annual stated meeting on the dates or at the site previously approved by the Assembly, the Moderator with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be authorize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tated Clerk and Moderator, to make alternative arrangements.

10-7.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be authorized to take the initiative to investigate and recommend to the General Assembly sites for the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o that end,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be authorized to suggest to presbyteries their hosting the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10-8. Ordinaril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will bring General Assembly sites before the Assembly for approval before any contracts are finalized. However,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be authorized to finalize contracts with hotels and convention centers before obtaining General Assembly approval when circumstances arise wherein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pproves the site, the presbytery (or presbyteries) has/have agreed to host the Assembly, good facilities at favorable rates are available, and the opportunity may be lost if a delay in finalizing the contract must await approval at the next General Assembly.”

10-9. In order to assist more Presbyteries to host the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each Presbytery is encouraged to contribute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nnually an amount determin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annually recommend to the Assembly the amount of the requested Presbytery contribution.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will make such designated gifts available to the Local Arrangements Committee of host Presbyteries.

총회운영세칙

책임에 대한 경고문은 모든 총대들에게 나누어 주는 총대를 위한 안내서에, 전시물을 배치하도록 허락한 것이 반듯이 미국장로교가 그 전시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목표를 전적으로 추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하는 말로 인쇄되어야 한다. 이 지침들은 보편적인 지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만일 행정위원회가 반드시 예외로 삼아야 한다고 느끼면, 동 위원회는 그와 같이 할 권한이 있으며, 그러한 결정들과 사유들을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0-6. 예외적인 사건 혹은 비상한 상황이 발생해서 전기 총회에서 인준된 날자와 장소에서 정기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총회장은 총회 행정위원회와 더불어, 총회 서기와 총회장의 추천으로, 교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0-7. 행정위원회는 연중 총회를 위한 장소를 조사하여 총회에 추천하는 것을 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 목적으로, 행정위원회는 노회들에게 연중 총회를 주최하도록 제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0-8. 일반적으로 행정위원회는 어떤 계약이라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총회의 인준을 받기 위하여 총회 전에 총회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위원회가 장소를 인준하고, 노회 (혹 노회들)이 총회를 주최하기로 합의하고, 훌륭한 시설이 바람직한 비율로 제시되었으나,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미룰 경우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행정위원회가 총회의 인준을 받기 전에 호텔과 컨벤션 센터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0-9. 매년 정기 총회를 더 많은 노회들이 주최 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하여, 총회가 결정한 금액을 각 노회가 매년 행정위원회에 기부할 것을 권장한다. 행정위원회는 각 노회에 요청된 금액을 총회에 매년 상정한다. 행정위원회는 그런 명목 헌금이 주최 노회의 지역 준비 위원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RTICLE XI. COMMUNICATIONS AND OVERTURES

11-1. A communication to the General Assembly is formal correspondence received by the Stated Clerk from other churches, from interchurch agencies to which this church may be related, from committees of this church on matters which can not be included in regular reports, from presbyteries, and from organized bodies outside the Church proper having business with the General Assembly.

11-2.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shall not be received by the General Assembly, unless they originate with persons who have no other access to the Assembly. If the Assembly desires to receive and consider any such communications, other than as information, the Stated Clerk shall recommend reference to the proper Assembly committee. Letters, telegrams, or telephone calls from communicants or congregat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re not proper communications, and are not to be received by the Assembly.

11-3. The Stated Clerk shall recommend to the Assembly reference for all proper communications.

11-4. An overture ordinarily is the request of a presbytery for action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a specific matter.

11-5. Upon receipt the Stated Clerk shall refer all overtures requesting amendment of the *Book of Church Order* or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to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for its advice to the Overtures Committee. Upon receipt, the Stated Clerk shall forward all overtures concerning presbytery boundaries or a new presbytery to the permanent Committee on Mission to North America. Any overture, other than an overture proposing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having to do with the nature or responsibilities of a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shall be referred by the Clerk to the appropriat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or ad interim committee. All other overtures shall be referred to the Overtures Committee. All overtures shall be published in the *Commissioner Handbook* with reference for consideration indicated. ●

제 11 항. 소통의 방편들과 헌의들

11-1. 총회로 가는 소통의 방편은 총회 서기가 접수한 타 교단에서, 본 총회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외 교단 관계 기관들에서, 정규 보고서에 포함될 수 없는 사안들에 관하여 본 총회 위원회들에서, 또 총회와 사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본 교단에 부합한 교단 밖의 조직체들에서, 보내 온 공식 서한이다.

11-2. 총회는 개인들에게서 보내 오는 소통의 방편들을 접수하지 않는다. 단 그 소통의 방편들이 총회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보내진 경우는 예외이다. 만약 총회가 그와 같은 소통의 방편들 중 어느 것이라도, 정보로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접수하여 검토하기를 원하면, 총회 서기는 해당 위원회에 위탁 할 것을 추천해야 한다. 본 교단의 세례 교인들이나 회중들이 보내는 편지들, 전보들, 또는 전화들은 적법한 소통의 방편들이 아니며, 총회가 접수할 수 없다.

11-3. 총회 서기는 모든 적법한 소통의 방편을 위한 위탁을 총회에 추천해야 한다.

11-4. 헌의안은 통상 특정 사안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구하는 노회의 요청이다.

11-5. 접수 시, 총회 서기는 교회헌법이나 총회운영세칙의 수정을 요청하는 모든 헌의안들을 헌법연구위원회가 헌의 위원회를 자문하도록 헌법연구위원회에 위탁한다. 접수 시, 총회 서기는 노회 경계선이나 새 노회에 관한 모든 헌의안을 국내선교위원회에 관한 상임 위원회로 보낸다. 헌법의 수정을 상정하는 헌의안 이외의 다른 헌의안은 모두,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특성이나 의무들과 관련하여, 서기가 적합한 상임 위원회나 기관이나 임시위원회에 위탁한다. 다른 모든 헌의안들은 헌의 위원회로 위탁된다. 모든 헌의안들은 지적된 검토 사항에 대한 언급과 함께 총대를 위한 안내서에 게재되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11-6. All overtures requiring references to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shall be delivered by at least sixty (60) day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General Assembly to the Stated Clerk in order to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No overture requiring reference to the permanent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received later than sixty (60) day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General Assembly by the Stated Clerk shall be referred or considered by the General Assembly convening in that year.

11-7. All other overtures shall be delivered to the Stated Clerk at least ninety (90) day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General Assembly in order to be included in the *Commissioner Handbook* for the nex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11-8. Overtures received after the *Commissioner Handbook* is published, ● and at least one (1) month (31 day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reported to the Assembly by the Stated Clerk, together with reference.

11-9. No overtures received by the Stated Clerk less than one month prior to the opening of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referred to or considered by the General Assembly convening in that year. An overture proposed by a commissioner to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proceedings shall be treated as new business (cf. 13-1, 13-2).

11-10. No overture will be considered by the General Assembly until it first has been presented to a presbytery. If approved by the presbytery, it will come before the Assembly as the overture of that court. An overture requested by an individual communicant, a teaching elder, or a session, but rejected by the presbytery, may be presented to the Assembly, provided the fact that it was rejected by the presbytery is clearly stated with the overture.

11-11. All communications or overtures which propose or request that General Assembly appoint a study committee for any purpose shall contain as a part of the request or proposal a statement of the maximum amount to be budgeted for the study committee (see 9-2).

총회운영세칙

11-6 헌법연구위원회로의 위탁이 요구되는 모든 헌의안들이 그 위원회에 위탁되려면 적어도 총회 개회 육십 (60) 일 전에 총회 서기에 넘겨져야 한다. 총회 서기가 총회 개회 육십 (60) 일 후에 접수한 상임 헌법연구위원회에 위탁될 것을 요구되는 헌의안들은 그 해에 개최되는 총회가 위탁하거나 검토 할 수 없다.

11-7. 다른 모든 헌의안들이 차기 총회의 총대를 위한 안내서에 포함되려고 하면 적어도 총회 개회 구십 (90) 일 전에 서기에게로 넘겨져야 한다.

11-8. 총대를 위한 안내서가 출판된 후에, 또, 최소한 총회 개회 일 (1)개월 (31 일) 전에 접수된 헌의안들은 총회 서기가 위탁 [내용]과 함께 총회에 보고한다.

11-9. 총회 서기가 총회 개회를 앞두고 채 한 달이 못되게 접수한 헌의안들은 그 해에 개최되는 총회가 위탁하거나 검토하지 않는다.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총대가 상정한 헌의안은 새 안건으로 취급된다 (비교. 13-1, 13-2).

11-10. 먼저 노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정안은 어떤 것도 총회가 검토하지 않는다. 노회가 인준하면, 그것은 치리회의 헌의안으로서 총회 앞에 올라온다. 개인 수찬 교인, 강도 장로, 또는 한 당회가 요청한 헌의안은, 그 헌의안에 노회가 그 헌의안을 거부했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면, 총회에 제출 될 수 있다.

11-11. 총회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연구 위원회를 임명하는 것을 상정하거나 요청하는 모든 소통의 방편들이나 헌의안들은 그 요청이나 상정안의 일부로 연구 위원회를 위하여 최대 금액의 예산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9-2 를 보라).

ARTICLE XII. REPORTS TO THE GENERAL ASSEMBLY

12-1. The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special committees, and ad interim committees of the Assembly shall make annual reports, which shall be transmitted to the Stated Clerk by at least ninety (90) day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General Assembly. The Stated Clerk shall refer these reports to the relevant committee of commissioners for their review and recommendation to the General Assembly (cf. 14-6; 14-7). The Nominating Committee, the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and ad interim committees shall report directly to the General Assembly without reference to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However, all recommendations proposing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shall be referred to the Overtures Committee for their review and recommendation to the General Assembly under the rules governing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as applicable (*RAO* 14-6.d.-k.; 14-7.c.-d.; 14-9.d.-h.).

12-2. Presentations informing the Assembly of the work reported by the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shall be limited to fifteen (15) minutes.

12-3. All other business brought to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referred to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제 12 항. 총회로 올리는 보고서들

12-1. 총회의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 특별 위원회들 및 임시위원회들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보고서들은 적어도 총회 개회 구십 (90) 일 전에 총회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총회 서기는 이 보고서들을 적절한 총대 위원회들에게 위탁하여 검토하고 총회에 추천하도록 한다 (비교. 14-6; 14-7). 공천 위원회, 노회록검열위원회,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 및 임시위원회들은 총대 위원회에 위탁하는 것 없이 총회에 직접 보고 한다. 그러나 헌법의 수정을 상정하는 모든 추천들은 (총운세 14-6.ㄱ.-ㄱ.; 14-7.ㄷ.-ㄷ.; 14-9.ㄱ.-ㅇ.)에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총대 위원회를 규정하는 규칙들을 따라 헌의위원회가 그것들을 검토하고 총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헌의위원회에 위탁되어야 한다.

12-2.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이 총회에 알리기 위한 업무 보고는 십오 (15) 분으로 제한한다.

12-3. 총회에 가져 온 그 외의 모든 사안은 총대 위원회로 위탁되어야 한다.

ARTICLE XIII. NEW BUSINESS

13-1. Any matter presented in any form which has not been received by the Stated Clerk prior to the opening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treated as new business.

13-2. New business must be presented to the General Assembly before the recess of the afternoon session on the second day of business, and if received by a two-thirds (2/3) vote of the commissioners present and voting, shall be referred by the Stated Clerk to the appropriate committee of commissioners. No propos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shall be received as new business.

13-3. The appropriate committee shall receive and consider all such references, deliberate, and report to the Assembly in compliance with the directions of these Rules.

13-4. All matters introduced as new business, if received, and touching on constitutional matters, including requested rulings by the Moderator on questions of order involving constitutional questions, shall be referred in writing to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for consideration.

13-5.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shall consider each such constitutional matter referred to it, and make recommendation directly to the Assembly.

제 13 항. 신안건

13-1. 어떤 형태로 제시된 어떤 안건이든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서기가 접수하지 못한 것은 신안건으로 취급된다.

13-2. 신안건은 반드시 총회 둘째날 오후 회의가 정회 하기 전에 총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만일 출석하여 투표한 총대들의 삼분의 이 (2/3)의 득표를 받았다면, 총회 서기가 적절한 총대 위원회로 위탁해야 한다. 헌법 수정 상정안은 어떤 것도 새 안건으로 받지 않는다

13-3. 적절한 [총대] 위원회는 그런 모든 위탁을 접수하여 검토하고 이 규정들의 지시에 순응하여 심의, 총회에 보고한다.

13-4. 신안건으로 소개된 모든 사안들과, 접수되면, 헌법적 사항을 다루는 모든 사안들은, 헌법적 문제들에 연루된 의사 진행의 문제에 대하여 총회장이 요청한 판결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헌법연구위원회에 위탁되어야 한다.

13-5. 헌법연구위원회는 헌법 연구위원회에 위탁된 모든 헌법적 사안을 토의하여, 총회에 직접 추천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RTICLE XIV. COMMITTEES OF COMMISSIONERS FOR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14-1. Committees of commissioners shall review the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ir assigned permanent Committees or Agencies or special committee:

Title	Committee/Agency	Review Matters Touching
1. Administrative Committee	Permanent Committee	Administration
2. <u>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u>	Permanent Committee	Christian education and publications ● ●
3. Covenant College	Agency	Covenant College
4. Covenant Seminary	Agency	Covenant Seminary
5. Interchurch Relations	Special Committee	Comity, cooperation, relations to other churches
6. Mission to North America	Permanent Committee	Home missions
7. PCA Retirement & Benefits, Inc.	Agency	Retirement, insurance, & ministerial relief
8. Mission to the World	Permanent Committee	World missions
9. PCA Foundation	Agency	PCA Foundation
10.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Permanent Committee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11. Ridge Haven	Agency	Ridge Haven

14-2. Each presbytery shall, prior to the meeting of the Assembly, elect one of its commissioners to each of these committees of commissioners (cf. 14-1), dividing them as to ruling and teaching elders by a formula established by the Stated Clerk. In the event that presbytery does not have sufficient teaching elders to supply the committees thus assigned, the presbytery may, at its own discretion, elect ruling elders to these committees (or vice versa, may elect teaching elders for insufficient ruling elders). In the event that presbytery is not able to supply members for all the committees, the presbytery may select the committees to which they wish to appoint representatives. Commissioners serving on permanent Committees or Agencies or sub-committees of the Assembly or the staffs thereof are not eligible to serve on any of these committees of commissioners. For the purpose of defining those ineligible for service in committees of commissioners,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staff” is to be understood as persons required to be examined by the Theological Examining Committee (*BCO* 14-1.12.) and all permanent Committee and Agency support personnel. All commissioners should bear in mind *Robert’s Rules of Order* regarding abstaining from voting on a question of direct personal interest (*RRO* § 45).

제 14 항.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을 위한 총대 위원회들

14-1. 총대 위원회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상임 위원회들 또는 기관들 또는 특별 위원회의 보고와 추천들을 검토 한다:

명칭	위원회/기관	취급하는 검토 사안들
1. 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행정
2. <u>제자사역위원회</u>	상임위원회	기독교 교육 및 출판
3. 커버넌트 대학교	기관	커버넌트 대학교
4. 커버넌트 신학교	기관	커버넌트 신학교
5. 대외 교단 관계	상임위원회	타교단에 대한 예절, 협조, 관계들
6. 국내선교	상임위원회	국내선교
7. 세계선교	상임위원회	세계선교
8. 미국장로교 재단	기관	미국장로교 재단
9. 미국장로회 연금 및 혜택재단	기관	연금, 보험 및 사역적 구제
10. 학원선교 사역	상임위원회	학원선교 사역
11. 릿지 헤이븐 회관	기관	릿지 헤이븐

14-2. 각 노회는, 총회 전에, 각 총대 위원회로 노회 총대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되 (비교. 14-1), 그들을 총회 서기가 제정해 놓은 공식에 따라 치리 장노와 강도 장로들로 나누어야 한다. 만약 할당 된 위원회들로 파송할 노회 강도 장로들이 부족한 경우, 노회는 자체의 재량으로 이 위원회들로 치리 장로들을 선출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부족한 치리 장로들을 대신하여 강도 장로들을 선출할 수 있다). 노회가 모든 위원회들을 위하여 위원들을 파송할 수 없을 경우, 노회는 노회가 대표자들을 임명하기를 원하는 위원회들을 선택할 수 있다. 상임 위원회들, 또는 기관들이나 총회의 분과 위원회들에서 봉사하고 있는 총대들, 또는 거기에 속한 직원들은 이 총대 위원회들 중 어디에서도 봉사 할 자격이 없다. 총대 위원회들에서 봉사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정의할 목적으로 말하자면, 상임 위원회 또는 기관의 “직원”은 신학교시위위원회의 (헌법 14-1.12) 시취를 필수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상임 위원회와 기관은 직원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총대들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개인적 이해 관계가 있는 문제에 관한 투표시 기권해야 하는 것(만통회법 45 항)에 관한 만국통상회의법을 기억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14-3. Minutes of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for review. Copies of the minutes shall be sent by the Stated Clerk to the members of committees of commissioners one month prior to the opening of the General Assembly.

14-4. The conveners of the committees shall be designated by the Moderator.

14-5. Committees may be scheduled to meet prior to the opening session of the Assembly to handle the business referred by the Stated Clerk, as published in the *Commissioner Handbook*.

14-6. The committees of commissioners shall proceed as follows:

- a. At the proper time each committee shall assemble in its assigned room, elect a chairman and a secretary, review material in hand, appoint sub-committees as may be necessary, and begin its work.
- b. Each committee shall be available to reconvene to consider additional references that may come from the floor of the Assembly.
- c. Meetings of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shall ordinarily be open to the public as non-participating visitors, to the extent made possible by the physical facilities of the available meeting room. If such visitors desire the committee to consider a proposal on some item of business that is before the committee, this must be presented in writing.
- d. Only business referred to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by the Stated Clerk may be considered. Proposed amendments to recommendations must be germane according to *Robert's Rules*. [Editor's Note: This rule defines german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stated in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10th ed., §12 (pp. 129-30).]
- e. The chairman and representatives of the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and the coordinator and appropriate staff members shall be available for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reviewing their work.
- f. After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has received input from the permanent Committee, coordinator, staff members, and visitors, it should then go into executive session as it frames and adopts it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It must be in executive session when it actually adopts the report.

총회운영세칙

14-3.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회의록들은 검토를 위하여 총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회의록들의 사본들은 총회 개회 한 달 전에 총회 서기가 총대 위원회들의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14-4. 총대 위원회들의 위원장들은 총회장이 지명한다.

14-5. 위원회들은, 총대들을 위한 안내서에 인쇄되어 있는 대로, 서기가 위탁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총회 개회에 앞서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다.

14-6. 총대 위원회들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 ㄱ. 적절한 시간에 각 위원회는 지정된 회의실에 모여, 위원장과 총무를 선출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시, 분과 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원회 업무를 시작한다.
- ㄴ. 각 위원회는 총회 석상으로부터 올려지는 추가 위탁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재소집이 가능하여야 한다.
- ㄷ. 총대 위원회들의 회의는 통상, 사용 가능한 회의실의 물리적 시설이 허락하는 한, 방청인들로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그런 방청인들이 위원회 앞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의 어떤 항에 관하여 하나의 제안을 위원회가 검토 해 주기를 원하면, 이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ㄹ. 총회 서기가 총대 위원회에 위탁한 안건만 검토 할 수 있다. 추천안들에 대하여 상정된 수정안들은 반드시 **만국통상회의법**에 부합해야 한다. [편집자 주: 이 규정은 부합을 **만국통상회의법 새 개정**, 제 10 판, 12 항에 기록된 정의를 따라 정의한다 (129-130 페이지)]
- ㅁ.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위원장(이사장)과 대표들, 또 조정자와 적법한 간사 직원들은 그들의 업무를 검토하는 총대 위원회에 자문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ㅂ. 총대 위원회는 상임 위원회, 조정자, 간사 직원들 및 방청인들에게서 자문을 받은 후 실무 회의에 들어가서 총회에 올릴 위원회 보고서를 짜고 채택한다. 위원회가 보고서를 실제로 채택하는 때는 반드시 실무 회의에서여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g. When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may, by a majority of those present and voting, invite other persons to address the committee.
- h.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may, by a majority of those present and voting, adopt a recommendation to be offered to the Assembly as a substitute (cf. *Robert's Rules of Order*, §12, pp. 149-54) for a recommendation of a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cf. RAO 14-8.g). Should a recommendation of a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be properly liable to division,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may, by a two thirds (2/3) vote of those present and voting, divide the recommendation. A minority report from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shall not be permitted.
- i. Upon the adoption of a proposed substitute recommendation, the chairman of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shall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within one hour of any recess or adjournment of the committee following the adoption of said recommendation.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shall inform the chairman of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of such notice as soon as practicable. The printed substitute recommendation must be presented to the chairman of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no case less than fifteen (15) minutes before the recommendation in question is brought to the floor.
- j. Any recommendation affecting the budgets of the Assembly or the Assembly's Committees and Agencies shall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on Administrative Committee.
- k. By majority vote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may adopt recommendations commending coordinators, staff, Committees and/or Agencies for their efforts.

14-7. The report of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shall be brief and concise. I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a. A list of all items referred to and considered by the committee.
- b. A statement of the issues discussed.
- c. A report of all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a Committee or Agency report under consideration, and any recommendation to be offered as a substitute for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s recommendation, with any rationale approved by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총회운영세칙

- ㄷ. 위원회의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대 위원회는, 출석자들 다수의 투표로, 위원회에 자문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청빙 할 수 있다.
- ㄹ. 총대 위원회는, 출석자들 다수의 투표로, 상임 위원회 또는 기관의 추천안을 대신하는 대체안으로 (만국통상회의 법, 12 항, 149-54 페이지) 총회에 올릴 추천안을 채택할 수 있다 (비교. 총운세 14-8.ㄷ). 상임 위원회 혹은 기관의 추천안이 적법하게 분리되어야만 한다면, 총대 위원회는, 출석 총대 삼분의 이(2/3)의 투표로, 그 추천안을 분리해야 한다. 총대 위원회의 소수 보고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ㅈ. 상정된 대체 추천안이 채택되면, 총대 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언급된 추천안의 채택 후에 있게 되는 위원회의 휴회 또는 정회 후 한 시간 내에 서면 통보서를 총회 서기 사무실에 제공해야 한다. 총회 서기 사무실은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런 통보서를 상임 위원회 또는 기관의 위원장(이사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인쇄된 대체 추천안은,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상임 위원회 또는 기관의 위원장(이사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나, 어떤 경우에도 십오분(15) 전에 문제가 있는 추천안이 총회 석상에 올려 질 수 없다.
- ㅊ. 총회 또는 총회의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예산에 영향을 주는 어떤 추천안도 행정 총대 위원회에 위탁된다.
- ㅋ. 다수표로 총대 위원회는 조정자들, 직원, 위원회들과/또는 기관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추천안들을 채택할 수 있다.

14-7. 총대 위원회의 보고서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ㄱ. 위원회에 위탁되고 위원회가 검토한 모든 안건의 목록.
- ㄴ. 토론된 문제들에 대한 진술문.
- ㄷ. 검토하에 있는 위원회 또는 기관의 보고서 안에 포함된 모든 추천안들의 보고, 또 총대 위원회가 인준한 모든 합리적 사유와 함께, 상임 위원회 또는 기관의 추천안에 대한 대체안으로 상정되어야 할 모든 추천안.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d. A statement of the division of the vote on every recommendation made by the committee.
- e. Reference to overtures by number with brief statement of content and recommended answer. Amendments to the original overture shall be reported and explained. Deference should be shown to the intent of the body presenting the overture.
- f. Reference to communications by number with brief statement of content and recommended answer.
- g. Only such portions of narrative sections of the printed reports as are necessary to make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intelligible.
- h. A note that the audit of the reporting Committee or Agency has been received and that the Committee or Agency is taking any necessary action on any recommendation of its audits.
- i. Where a study committee is proposed in any communication or overture, a statement of the maximum amount that is to be budgeted for the study committee.
- j. The findings of the committee with respect to the minutes of the relevant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cf. 14-11).

14-8. The completed report of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shall contain the full text of the report and shall be handled as follows:

- a. Typed original by Assembly stenographers or committee secretary.
- b. Proofread and signed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nd then delivered to the Stated Clerk when duplicated copies are available for the commissioners.
- c. Docketed by the Moderator and Stated Clerk for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 d. Presented to the Assembly by the chairman or his designee, the text having been made available by electronic means, or by copies distributed, such that commissioners may read the entire report prior to acting upon it. Any change ordered by the Assembly shall be noted and included by the chairman with the assistance of the Stated Clerk on the original copy.
- e. The report, as adopted by the Assembly, shall be filed with the Recording Clerk for the permanent record.

총회운영세칙

- ㄹ. 위원회가 올린 모든 추천안에 대한 표 나뉘에 대한 진술문.
- ㅁ. 번호가 매겨진 헌의안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추천하는 대답의 진술을 포함하는 참고 사항. 원래 헌의안에 가해진 수정안들이 보고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헌의안을 제출하는 기관의 의도에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
- ㅂ. 번호가 매겨진 소통의 방편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추천하는 대답의 진술을 포함하는 참고 사항.
- ㅅ. 총대위원회의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분량의 인쇄된 보고서의 서술 부분.
- ㅇ. 보고하는 위원회나 기관의 감사가 실시되었고 위원회나 기관이 감사 결과 추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기록.
- ㅈ. 어떤 소통의 방편이나 헌의안 안에 연구 위원회가 상정된 곳에, 그 연구 위원회를 위하여 책정되어야 할 최대 예산 금액에 대한 진술문.
- ㅊ. 관련된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회의록들에 관한 위원회의 발견 사항들 (비교. 14-11).

14-8. 총대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보고서의 전문을 포함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 ㄱ. 총회 속기사 또는 위원회 서기가 타자한 원본.
- ㄴ. 위원회의 위원장이 교정하여 서명한 것; 그 후, 복사본들을 총대들이 입수 할 수 있을 때 총회 서기에게 넘겨져야 한다.
- ㄷ. 총회가 검토하도록 총회장과 총회 서기가 동의한 대로 회의 일정을 정한다.
- ㄹ. 위원장이나 그의 지명을 받은 자가 총회에 제출하되, 전문은 전자 수단이나 분배된 복사본으로, 입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총대들이 보고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보고서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회가 명령한 변경 사항은 무엇이나 위원장이 총회 서기의 도움을 받아 원본에 기록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 ㅁ. 보고서는, 총회가 채택한대로, 영구 기록을 위하여 기록 서기와 함께 접수 시켜야 한다.

14-9. Presentation of the Report of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through Their Respective Committees of Commissioners, to the General Assembly

- a. The informational report or portions of that report of a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shall be presented to the General Assembly by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chairman or his designee.
- b. No report printed in the *Commissioner Handbook* shall be read in full to the Assembly.
- c. After whatever informational presentation there may be (cf. 12-2),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shall be called upon to present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report.
- d.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or his designee shall move each recommendation in turn, offering an explanation of the motion and the committee's rationale. The Moderator may put to the Assembly in gross all recommendations passed by the committee, unless there is objection from the floor to the inclusion of specific recommendation(s), in which case such recommendation(s) shall be voted upon separately.
- e. A recommendation shall be considered under the standard rules governing debate, but Subsidiary Motions (*RRO VI*) to *Postpone Indefinitely*, to *Amend*, to *Commit*, and to *Limit Debate*; and Incidental Motions (*RRO VIII*) to *Divide a Question*, to *Consider Seriatim*, and *Constitutional Inquiries*, shall not be permitted. A motion to *Recommit* shall be permitted, but a motion to *Recommit With Instructions* shall not be permitted.
- f. Recommendations recommitted may be considered and reported by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to that General Assembly, or may be referred to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for report to the following General Assembly (cf. 12-1).
- g. Should a recommendation proposing an answer to an overture in the affirmative fail to be adopted, the overture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answered in the negative. Should a recommendation proposing an answer to an overture in the negative fail to be adopted, the overture by that action shall be recommitted to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 h. If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offers a substitute for a recommendation of a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the substitute shall be presented to the Assembly as follows:
 - 1) The chairman of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or his designee shall have ten (10) minutes to move the

14-9.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보고서는 그들과 관계된 총대 위원회들을 통하여 총회에 제출

- ㄱ. 정보용 보고서나 그 보고의 상임 위원회나 기관에 관한 부분은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위원장(이사장)이나 그의 지명인이 총회에 제출한다.
- ㄴ. 총대를 위한 안내서에 인쇄되지 않는 보고는 어떤 것도 전체가 총회에 낭독될 수 없다.
- ㄷ. 무엇이든 정보용으로 제출된 후 (비교. 12-2), 총대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대 위원회의 보고를 제출하도록 초청된다.
- ㄹ. 총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의 지명자는, 동의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의 논리를 제시한 후, 각 추천안을 순서대로 동의한다. 총회장은 위원회가 통과시킨 모든 추천안들을 전체로 총회 앞에 제출한다. 단, 총회 석상에서 특정 추천안(들)에 포함된 것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 그러한 추천안(들)은 개별적으로 투표를 받아야 한다.
- ㅁ. 추천안은 토론을 규제하는 표준 규칙하에 검토되어야 하나, 무기한 연기, 수정, 위탁 및 토론 제한을 위한 보조 동의안들 (만통법 VI); 또, 문제를 분리, 연속적으로 검토, 헌법적 문의를 위한 부수적 동의안들은 (만통법 VIII) 허락되지 않는다. 재위탁을 위한 동의는 허락되는데, 지시 사항들을 포함한 재위탁은 허락되지 않는다.
- ㅂ. 재위탁된 추천안들은 총대 위원회가 검토하고 동 총회에 보고하거나,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상임 위원회나 기관에 위탁될 수 있다 (비교. 12-1).
- ㅅ. 현의안에 예로 대답을 제시하는 추천안이 채택되지 못하면, 그 현의안은 아니므로 대답되었다고 간주한다. 현의안에 아니므로 대답을 제시하는 추천안이 채택되지 못하면, 그 현의안은 그 결정으로 총대 위원회에 재위탁되어야 한다.
- ㅇ. 만일 총대 위원회가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추천안에 대한 대체안을 제출하면, 그 대체안은 총회에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 1)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위원장(이사장)이나 그의 지명자가 십(10)분 동안 추천안에 동의하고 동 위원회의 주장을 제시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recommendation and present the argument of the Committee;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or his designee shall have fifteen (15) minutes to move the substitute and present the argument of the committee; the same representative of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shall have five (5) minutes to reply to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 2) Consideration of the substitute and the main motion shall be as above (d-e).
- 3) Debate on the main motion and the substitute shall be limited to a total of sixty (60) minutes unless extended. When the allotted time has elapsed the Moderator shall put the question to the Assembly: "Will the Assembly extend the time on the question ten (10) minutes?" A simple majority shall extend the time; otherwise the Moderator shall put the question or questions as the case may be. If time is extended, the question of extension shall again be put every succeeding ten (10) minutes until the matter is concluded. Each Commissioner shall be limited to five (5) minutes on the same question unless the Court by a simple majority grants additional time.

14-10. No partial report of a committee of commissioners shall be presen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Assembly.

14-11. Guidelines for Examining Committee and Agency Minutes

- a. Minutes of Assembly Committees and Agencies shall be examined for conformity to:
 - 1) The primary and secondary standards of the church, as to substance of the actions recorded;
 - 2) The Assembly's Guidelines for Keeping Minutes of Permanent Committees of the General Assembly, as to form, structure, and minimum content (4-21); and
 - 3) Appropriate standards as to the use of the English language.
- b. Each set of Committee or Agency minutes should be read by at least two members of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 c. The committee may divide its work so that two or more members examine them primarily as to form, and two or more members may examine them primarily as to substance.
- d. The findings of the committee with respect to the minutes of each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shall be reported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as appropriate:

총회운영세칙

총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의 지명자가 십오(15)분 동안 대체안에 동의하고 동 위원회의 주장을 제시한다;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동일 대표자가 오(5)분 동안 총대 위원회에 응답한다.

- 2) 대체안과 주 동의안에 대한 검토는 상기 (ㄹ-ㄱ)와 같다.
- 3) 주 동의안과 대체안에 관한 토의는 연장되지 않는 한 총 육십(60) 분으로 제한된다. 할당된 시간이 경과하면, 총회장은 총회 앞에 질문한다: “총회가 동 문제를 위하여 시간을 십(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다수표로 시간을 연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장은 동 문제나 문제들을 안건대로 제출한다. 만일 시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동 문제는 그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매 십(10)분마다 연이어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같은 문제에 관한 각 총대의 시간은 총회가 단순 다수표로 추가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한 오(5)분으로 제한된다.

14-10. 총대 위원회의 어떤 불완전한 보고서도 총회의 동의 없이 제출 될 수 없다.

14-11. 위원회와 기관의 회의록 검사를 위한 지침

- ㄱ. 총회 각 위원회와 기관의 회의록들은 다음 사항들에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사되어야 한다:
 - 1) 기록된 결의안들의 본질에 대하여, 교회의 일차적 또 이차적 표준에 일치;
 - 2) 형태, 구조 및 최소한의 내용(4-21)에 대하여, 총회 상임 위원회들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기 위한 총회 지침들에 일치; 또,
 - 3) 영어의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표준에 일치.
- ㄴ. 위원회와 기관의 회의록들의 각 권들은 적어도 두 명의 총대 위원회의 회원들이 읽어야 한다.
- ㄷ. 위원회는 그들의 업무를 나누어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위원들은 주로 회의록의 형태에 대하여 검사하고, 다른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위원들은 주로 회의록의 본질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ㄹ. 위원회가 각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회의록들에 관련하여 발견한 것들은 아래 범주들을 따라 적절하게 보고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1) Notations: Typographical errors, misspellings, improper punctuation, non-prejudicial misstatements of fact, etc., may be reported under this category. Also failures to provide proper or sufficient information or identification, etc., may be reported under this category.
 - 2) Exceptions: Violations of the Assembly's Guidelines for Keeping Minutes of Permanent Committees of the General Assembly, prejudicial misstatements of fact, and actions which in substance appear not to conform to the Standard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or to be out of accord with the deliverances of the General Assembly, should be reported under this category.
- e. The committee shall prepare a report concerning the minutes of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The filling out of a form, designed for the purpose for each committee, shall meet the requirement for this section. After action by the Assembly, one copy of the report shall be sent by the Stated Clerk to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A second copy shall be retained by the Stated Clerk in a permanent file. A third copy shall be kept in the records of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which shall be maintained in a suitable binder. The custody of the records of the committee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d Clerk in the period between the General Assemblies.
- f. Notations and exceptions in a Committee's or Agency's report shall be disposed of as follows:
- 1) Notations shall normally be sent to the Committee or Agency by the Stated Clerk without being read before the General Assembly or recorded in its Minutes.
 - 2) Exceptions shall be read before the Assembly, recorded in its Minutes, and disposed of as the Assembly determines.
 - 3) The Assembly shall adopt an appropriate motion with respect to the minutes of each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the following being examples:
 - a) That the minutes of the Committee of _____ be approved without exception (show dates of minutes being approved);
 - b) That the minutes of the Committee of _____ be approved with the exceptions noted (show dates of minutes being approved).
- g. The permanent Committee or Agency shall take note in its minutes of exceptions taken by the Assembly, together with the corrections or explan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to rectify them. Committees or Agencies shall advise the next General Assembly of the disposition they have made of the exceptions.
- h. Reports to the Assembly from the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concerning disposition of exceptions taken by the past Assembly shall normally be referred to the relevant committee of commissioners.

총회운영세칙

- 1) 표기: 타자 상의 오류, 맞춤법 상의 오류, 구두법 상의 오류, 사실에 관한 편견 없는 오문, 등은 이 범주 아래 보고될 수 있다. 또,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나 내용 확인, 등을 제시 하지 못한 것들도 이 범주 아래 보고될 수 있다.
 - 2) 예외: 총회 상임 위원회들의 회의록 [기록] 보관을 위한 총회 지침들에 위배되는 사항들, 사실에 대한 편견적 오문들 및 미국장로교 총회의 표준에 본질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총회의 판결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결의안들은 이 범주 아래 보고되어야 한다.
- ㉠. 위원회는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회의록들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각 위원회를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양식의 기입은 본 항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총회가 결의 한 후, 총회 서기는 보고서 사본 한 부를 상임 위원회나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두번째 사본 한 부는 총회 서기가 영구 서류로서 보존해야 한다. 세번째 사본 한 부는 총대 위원회의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하는데, 적합한 바인더에 관리되어야 한다. 총회 휴회 기간 동안 위원회의 기록들 관리 책임은 총회 서기에게 있다.
- ㉡. 위원회와 기관의 보고서에 있는 표기와 예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 1) 표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총회 석상에서 낭독되거나 총회 회의록에 기록됨 없이 총회 서기가 해당 위원회나 기관으로 보낸다.
 - 2) 예외 [사항]들은 총회 석상에서 낭독되고, 총회 회의록에 기록되며, 총회가 결정하는 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 3) 총회는 다음의 예와 같이 각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회의록들에 관한 적절한 동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 ㉠) _____ 위원회의 회의록들은 예외없이 인준한다 (회의록들이 인준된 날짜 기록);
 - ㉡) _____ 위원회의 회의록들은 기록된 예외 [사항]을 포함하여 인준한다 (회의록들이 인준된 날짜 기록).
- ㉢. 상임 위원회나 기관은, 총회가 지적한 예외를 그들의 회의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는데, 예외 [사항]들을 바로 잡기 위해 채택한 동 상임 위원회의 교정이나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은 그 예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차기 총회에 조언해야 한다.
- ㉣. 전 총회가 지적한 예외 [사항]들의 처리에 관하여 상임 위원회나 기관이 총회로 올린 보고서들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총대 위원회로 위탁된다.

ARTICLE XV. THE OVERTURES COMMITTEE

15-1. The Overtures Committee shall consider and make recommendation upon all overtures or recommendations (cf. *RAO* 12-1.) proposing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nd all other overtures referred by the Stated Clerk.

15-2. Each presbytery shall, prior to the meeting of each General Assembly, elect to the Overtures Committee one teaching elder and one ruling elder from among its registered commissioners to the General Assembly. Unless approved by a two thirds (2/3) vote of his presbytery, no commissioner shall serve on the Overtures Committee for more than two (2) consecutive Assemblies. It is recommended that, where necessary, the presbytery underwrite the expenses of its representatives to the Overtures Committee.

15-3. The Overtures Committee shall meet immediately preceding the General Assembly in sufficient time, as determined by the Stated Clerk, for the committee to complete its work before the convening of the Assembly. Should the committee fail to finish before the convening of the Assembly, or should the committee be called into session during the meeting of the Assembly, the committee's sessions shall be held during non-business sessions of the Assembly, unless by majority vote the Assembly directs otherwise.

15-4. The Moderator shall designate a convener for the Overtures Committee, and the Stated Clerk shall provide a meeting room large enough for committee members, interested commissioners to the General Assembly, and others to observe the proceedings of the committee.

15-5. The committee shall elect from among its number a chairman and vice-chairman. The Stated Clerk shall be an advisory member of the committee, and he, or his designee, shall serve as secretary and parliamentarian.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may appoint assistant parliamentarians.

15-6. Special Rules of Procedure for the Overtures Committee.

- a. The rules contained in the current edition of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 50 and other relevant sections, shall govern the Overture Committee in all cases to which they are applicable, except as provided below.

제 15 항. 헌의 위원회

15-1. 헌의 위원회는 모든 헌의안들 혹은 헌법의 수정을 상정하는 모든 추천안들과 (비교. 총운세 12-1), 총회 서기가 위탁한 모든 다른 헌의안들을 검토하고 추천안을 만들어야 한다.

15-2. 각 노회는, 각 총회의 회집에 앞서, 총회에 등록된 각 노회 총대들 가운데서 강도 장로 일인과 치리 장로 일인을 헌의 위원회로 선출해야 한다. 어느 총대도 자신이 속해 있는 노회의 삼분의 이(2/3)의 투표로 인준 받지 못하면, 연속적으로 이(2)년 이상 총회 헌의 위원회에서 봉사 할 수 없다. 필요시, 각 노회가 노회 대표들을 헌의 위원회로 보내는 경비를 부담 할 것을 권고한다.

15-3. 헌의 위원회는 총회 서기가 결정한 대로, 총회 직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여, 총회가 시작하기 전에 동 위원회의 업무를 종료해야 한다. 만일 총회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가 업무를 끝내지 못하거나, 총회 회의 중에 회의를 하도록 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총회가 다수표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회의들은 총회의 안건 일정이 없는 기간에 열려야 한다.

15-4. 총회장이 헌의 위원회 소집자를 지명하고, 총회 서기가 위원회 위원들, 관심있는 총회 총대들과 위원회의 진행과정들을 참관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큰 회의실을 하나 제공해야 한다.

15-5. 위원회는 그 수 가운데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총회 서기는 위원회의 자문 위원이 되고, 자신이나, 그의 지명자가 서기와 법률 자문인으로 봉사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조 법률 자문인들을 임명할 수 있다.

15-6. 헌의 위원회를 위한 절차 상 특별 규칙들.

1. 현행 *만국통상회의법 새 개정판*, 50 항과 다른 해당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규칙들이, 적용이 되는 한, 모든 경우에 헌의 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단, 아래에 제시된 경우는 예외이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b. A quorum shall consist of fifteen (15) teaching elder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fifteen (15) ruling elder members of the committee.
- c. Only business referred to the committee by the Stated Clerk may be considered.
- d. The chairman may not enter debate or make motions without leaving the chair, and ordinarily should not vote on a question.
- e. Members of the committee must obtain the floor before making motions or speaking.
- f. Motions must be seconded.
- g. A motion to *Limit or Extend Limits of Debate* shall not be permitted, but there shall be permitted a motion to order the *Previous Question*, which motion shall be adopted upon three-quarters (3/4)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 h. Informal discussion of a subject shall not be permitted.
- i. Proposed amendments to overtures must be germane according to *Robert's Rules*. [Editor's Note: This rule defines german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stated in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10th ed., §12 (pp. 129-30).]
- j. Commissioners to the General Assembly shall have the right to be present throughout the committee's proceedings.
- k. Commissioners to the General Assembly from a presbytery sending an overture shall be permitted to appear before the committee in order to present their views and respond to questions but may not enter into debate.
- l.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or his designee shall be permitted to appear before the Overtures Committee to present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s advice on any propos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nd respond to questions but may not enter into debate.
- m. When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the committee may, by a majority of those present and voting, invite other persons to address the committee.
- n. Amendments adopted by the committee to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may be recommended to the General Assembly without furthe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unless one-fifth (1/5) of the members of the Overtures Committee request further consultation.
- o. Upon majority vote a constitutional inquiry may be submitted to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 p. The committee may go into executive session only upon three-quarters (3/4) vote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and such executive session shall not exclude visiting General Assembly commissioners.

총회운영세칙

- ㄴ. 성수는 위원회의 강도 장로 열 다섯 (15) 위원들과 위원회의 치리 장로 열 다섯 (15) 위원들로 구성된다.
- ㄷ. 총회 서기가 위원회로 위탁한 안건들만 검토한다.
- ㄹ. 위원장은 토론에 참가 하거나 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고 동의안을 낼 수 없고, 통상 문제에 관한 투표를 하지 않는다.
- ㄹ. 위원회 위원들은 동의안을 내거나 발언 하기 전에 반드시 석상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ㅂ. 동의안을 반드시 재청이 있어야 한다.
- ㅅ. 토론을 제한하거나 제한을 연장하기 위한 동의안은 허락되지 않으나, 이전 문제를 정리하자는 동의안은, 출석 위원들 사분의 삼(3/4)의 투표로 채택하여, 허락 할 수 있다.
- ㅇ. 주제에 관한 비공식적 토의는 허락되지 않는다.
- ㅈ. 상정된 헌의안에 대한 수정안들은 반드시 **만국통상회의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편집자 주: 이 규정은 부합을 **만국통상회의법 새 개정, 제 10 판, 12 항**에 기록된 정의를 따라 정의한다 (129-130 페이지)]
- ㅊ. 총회 총대들은 위원회의 [회의]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ㅋ. 헌의안을 보낸 노회에서 온 총회 총대들은 그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위원회 앞에 나서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토론에 참가 할 수는 없다.
- ㅌ. 헌법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의 지명자는 상정된 헌법 수정안의 어느 것에 관한 것이든 헌법연구위원회의 조언을 제시하고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헌의 위원회 앞에 나서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토론에 참가 할 수는 없다.
- ㅍ. 필요시 위원회가 그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석 위원들 다수 투표로, 위원회에 강연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청빙 할 수 있다.
- ㅎ. 상정된 헌법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수정안들은 헌의 위원회의 위원들 오분 일(1/5)이 추가 자문을 요구하지 않는 한 헌법 위원회의 추가 검토 없이 총회로 추천된다.
- ㅊ. 다수표로 헌법적 문의를 헌법연구위원회에 제출된다.
- ㅊ. 위원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위원들 사분의 삼(3/4)의 투표로만 실행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실행 회의는 방청하고 있는 총회 총대들을 제외 시킬 수 없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q. Each recommendation by the committee to the General Assembly must be approved by a majority of members of the committee present and voting.
- r. Any recommendation affecting the budget of the Assembly shall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on Administrative Committee.
- s. Minority Reports.
 - 1) With respect to any recommendation, prior to a recess or adjournment of the Overtures Committee following the adoption of said recommendation, any member of the committee may indicate an intention to file a minority report by giving notice to the chairman.
 - 2) Written notice of intent to file a minority report, signed by at least three teaching elder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three ruling elder members of the committee, must be delivered to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within one hour of any recess or adjournment following the adoption of said recommendation.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shall inform the chairman of the Overtures Committee of such notice as soon as practicable.
 - 3) The printed minority report, signed by at least three (3) teaching elder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three (3) ruling elder members of the committee, must be presented to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no case less than fifteen (15) minutes before the recommendation in question is brought to the floor.

15-7. The written report of the Overtures Committe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a. A list of all items referred to and considered by the committee.
- b. A statement of the division of the vote on every recommendation made by the committee.
- c. Reference to overtures by number with brief statement of content and recommended answer.
- d. In the case of overtures requesting amendment of the *Book of Church Order*, explicit indication of any language that would be added or deleted from the *Book of Church Order* through adoption of the overture. Such overture shall be sent to the presbyteries, if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this particular form.
- e. Reference to communications by number with brief statement of content and recommended answer.

총회운영세칙

- ㄱ. 위원회가 총회에 올린 각 추천안은 반드시 출석하여 투표한 위원회 위원들의 다수표로 인준되어야 한다.
- ㅋ. 총회 예산에 영향을 주는 어떤 추천안도 행정 총대 위원회에 위탁되어야 한다.
- ㄴ. 소수 보고서.
 - 1) 어떤 추천안에 대해서, 그 추천안이 채택된 다음에 오는 현의 위원회의 휴식이나 정회에 앞서, 위원회 위원 누구든지 소수 보고서를 접수 시킬 의도가 있음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알릴 수 있다.
 - 2) 소수 보고서를 접수 시킬 의도의 서면 통보서는, 적어도 동 위원회의 강도 장로 삼인과 동 위원회의 치리 장로 삼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 추천안이 채택된 다음에 오는 어떤 휴식이나 정회 한 시간 내에 총회 서기 사무실에 전달되어야 한다. 총회 서기 사무실은 그러한 통보서를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현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3) 인쇄된 소수 보고서는, 적어도 동 위원회의 강도 장로 삼(3)인과 동 위원회의 치리 장로 삼(3)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동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나,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추천안이 십오(15)분 내에 총회 석상에 올려 질 수 없다.

15-7. 현의 위원회의 서면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ㄱ. 위원회로 위탁되어 위원회가 검토한 모든 사안들의 목록.
- ㄴ. 위원회가 제시한 각 추천안에 관한 표 나뉘는 기록.
- ㄷ. 번호 매겨진 간단한 내용 진술과 추천된 대답이 있는 현의안에 대한 참고 사항.
- ㄹ. 교회 헌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현의안들의 경우, 현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교회 헌법에 추가하거나 교회 헌법에서 삭제해야 될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모든 언어. 그러한 현의안은, 만일 총회가 인준하면, 이 특정한 양식대로 노회들에게 보내져야 한다.
- ㅁ. 번호 매겨진 간단한 내용 진술과 추천된 대답이 있는 소통의 [방편들]에 대한 참고 사항.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f. Where a study committee is recommended, a statement of the maximum amount to be budgeted for the study committee.

15-8. Presentation of the Report of the Overtures Committee to the General Assembly.

- a. The report or portions of the report shall be presented to the General Assembly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r his designee.
- b. The chairman or his designee shall move each recommendation in turn, offering an explanation of the motion and the committee's rationale. The Moderator may put to the Assembly in gross all recommendations passed by the committee, unless there is objection from the floor to the inclusion of specific recommendation(s), in which case such recommendation(s) shall be voted upon separately.
- c. A recommendation shall be considered under the standard rules governing debate, but Subsidiary Motions (*RRO VI*) to *Postpone Indefinitely*, to *Amend*, to *Commit*, and to *Limit Debate*; and Incidental Motions (*RRO VIII*) to *Divide a Question*, to *Consider Seriatim*, and *Constitutional Inquiries*, shall not be permitted. A motion to *Recommit* shall be permitted, but a motion to *Recommit With Instructions* shall not be permitted.
- d. Recommendations recommitted may be considered and reported by the Overtures Committee to that General Assembly, or may be referred to a subsequent Overtures Committee for report to the following General Assembly.
- e. Should a recommendation proposing an answer to an overture in the affirmative fail to be adopted, the overture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answered in the negative. Should a recommendation proposing an answer to an overture in the negative fail to be adopted, the overture by that action shall be recommitted to the Overtures Committee.
- f. A member of the Overtures Committee may not participate in debate unless he is the designee of the chairman with respect to the presentation of a particular recommendation, or presenting a minority report. With respect to any recommendation, this restriction may be removed for a particular member of the Overtures Committee upon the adoption of a non-debatable motion to that effect by majority vote.
- g. If there is a minority report (cf. 15-6.s), that report shall be presented to the Assembly as follows:

총회운영세칙

- ㄴ. 연구 위원회가 추천된 곳에, 그 연구 위원회를 위하여 책정한 예산의 최고 금액에 대한 진술문.

15-8. 총회에 헌의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 ㄱ. 보고서나 보고서의 일부를 위원회 위원장이나 그의 지명자가 총회에 제출한다.
- ㄴ. 위원장이나 그의 지명자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의 논리를 제시하고, 순서대로 각 추천안에 동의한다. 총회장은 위원회가 통과시킨 모든 추천안을 전체로 총회 앞에 제시한다. 단, 총회 석상에서 특정한 추천안(들)을 포함 시키는 것에 반대가 있으면, 그러한 추천안(들)은 개별적으로 투표되어야 한다.
- ㄷ. 추천안은 토론을 규제하는 표준 규칙하에 검토되어야 하나, 무기한 연기, 수정, 위탁 및 토론 제한을 위한 보조 동의안들 (만통법 VI); 또, 문제를 분리, 연속적으로 검토, 헌법적 문의를 위한 부수적 동의안들은 (만통법 VIII) 허락되지 않는다. 재위탁을 위한 동의는 허락되는데, 지시 사항들을 포함한 재위탁은 허락되지 않는다.
- ㄹ. 재위탁 된 추천안은 헌의 위원회가 검토하여 동 총회에 보고하거나,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차기 헌의 위원회에 위탁한다.
- ㅁ. 헌의안에 예로 대답을 제시하는 추천안이 채택되지 못하면, 그 헌의안은 아니므로 대답되었다고 간주한다. 헌의안에 아니므로 대답을 제시하는 추천안이 채택되지 못하면, 그 헌의안은 그 결정으로 총대 위원회에 재위탁되어야 한다.
- ㅂ. 헌의 위원회의 위원은, 동 위원이 특정한 추천안을 제시하는 일에 관해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자이거나, 소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토론에 참가 할 수 없다. 어떤 추천안에 관해서든, 토론이 없는 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다수표로 채택되면 이 제한은 헌의 위원회의 특정 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ㅅ. 만일 소수 보고서가 있으면 (비교.15-6.1.),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1) The chairman or his designee shall have ten (10) minutes to move the recommendation and present the argument of the committee; the minority shall have fifteen (15) minutes to move the substitute and present the argument of the minority; the same representative of the committee shall have five (5) minutes to reply to the minority;
- 2) Consideration of the substitute and the main motion shall be as above (c-d).
- 3) Debate on the main motion and the substitute shall be limited to a total of sixty (60) minutes unless extended. When the allotted time has elapsed the Moderator shall put the question to the Assembly: "Will the Assembly extend the time on the question ten (10) minutes?" A simple majority shall extend the time; otherwise the Moderator shall put the question or questions as the case may be. If time is extended, the question of extension shall again be put every succeeding ten (10) minutes until the matter is concluded. Each Commissioner shall be limited to five (5) minutes on the same question unless the Court by a simple majority grants additional time.

15-9. The completed report of the Overtures Committee, and any duly filed minority report, in which case the provisions below shall be understood to apply to a minority representative, shall contain the full text of the report and shall be handled as follows:

- a. Typed original by Assembly stenographers or committee secretary.
- b. Proofread and signed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nd then delivered to the Stated Clerk when duplicated copies are available for the commissioners.
- c. Docketed as agreed by the Moderator and Stated Clerk for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 d. Presented to the Assembly by the chairman or his designee, the text having been made available by electronic means, or by copies distributed, such that commissioners may read the entire report prior to acting upon it. Any change ordered by the Assembly shall be noted and included by the chairman with the assistance of the Stated Clerk on the original copy.
- e. The report, as adopted by the Assembly, shall be filed with the Recording Clerk for the permanent record.

총회운영세칙

- 1) 위원장이나 그의 지명자가 십(10)분 동안 추천안에 동의하고 동 위원회의 주장을 제시한다; 소수 [보고자]가 십오(15)분 동안 대체안에 동의하고 소수의 주장을 제시한다; 동 위원회의 같은 대표자가 오(5)분 동안 소수에 응답한다.
- 2) 대체안과 주 동의안에 대한 검토는 상기 (㉔-㉒)와 같다.
- 3) 주 동의안과 대체안에 관한 토의는 연장되지 않는 총 한 육십(60)분으로 제한된다. 할당 된 시간이 경과하면, 총회장은 총회 앞에 질문한다: “총회가 동 문제를 위하여 시간을 십(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다수표로 시간을 연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장은 동 문제나 문제들을 안건대로 제출한다. 만일 시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동 문제는 그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매 십(10)분마다 연이어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같은 문제에 관한 각 총대의 시간은 총회가 단순 다수표로 추가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한 오(5)분으로 제한된다.

15-9. 헌의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와, 정당하게 접수된 모든 소수 보고서는, 동 보고서의 전문을 포함해야 하고, 소수 보고서의 경우, 하기 규정들이 소수의 대표자에게 적용된다고 이해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 ㉑. 총회 속기사 또는 위원회 서기가 타자한 원본.
- ㉒. 위원회의 위원장이 교정하여 서명한 것; 그 후, 복사본들을 총대들이 입수 할 수 있을 때 총회 서기에게 넘겨져야 한다.
- ㉓. 총회가 검토하도록 총회장과 총회 서기가 동의한 대로 회의 일정을 정한다.
- ㉔. 위원장이나 그의 지명을 받은 자가 총회에 제출하되, 전문은 전자 수단이나 분배된 복사본으로, 입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총대들이 보고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보고서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회가 명령한 변경 사항은 무엇이나 위원장이 총회 서기의 도움을 받아 원본에 기록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 ㉕. 보고서는, 총회가 채택한대로, 영구 기록을 위하여 기록 서기와 함께 접수 시켜야 한다.

ARTICLE XVI.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16-1. It is the right and duty of the General Assembly to review, at least once a year, the records of the presbyter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BCO* 40-1 and 2).

16-2. General Assembly carries out this review through its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The operation of this committee shall be considered a General Assembly expense.

16-3. Guidelines for Keeping Presbytery Minutes

- a. The stated clerk of each presbytery is responsible for the custody of the minutes of presbytery.
- b. The minutes should be neat and legible. Minutes should be dated, and the pages numbered. An official copy of the minutes should be printed and either bound or kept in a good binder.
- c. The minutes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 1) The kind of meeting: stated, called, adjourned stated, or adjourned called. In the case of a called meeting the portion of the call stating the purpose of the meeting should be recorded verbatim in the minutes.
 - 2) The name of the presbytery.
 - 3)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 4) The name of the moderator, and if someone other than the regular stated clerk served as a clerk pro-tem, his name should be indicated.
 - 5) That sessions were opened and closed with prayer (*BCO* 10-5).
 - 6) The names of those present at the meeting, indicating whether they were teaching elders, or ruling elders and the church they represented. The names of alternate ruling elders and their respective churches should also be included, and the names of visitors may be included.
 - 7) Teaching elders not attending and churches not represented should be listed as excused or unexcused.
 - 8) Approval of current or previous minutes.
- d. The minutes should be signed by the clerk.
- e. Additional guidelines:
 - 1) Points of order ruled against by the chair and appeals from the decision of the chair, whether sustained or lost, together with the reason given by the chair for his ruling, should be included for the sake of any case that may be carried to a higher court and for the protection of a minority. The record of the presbytery's actions should be recorded.

제 16 항. 노회록 검열

16-1. 총회는 미국장로교에 속한 노회들 기록들을,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검열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헌법 40-1 과 2).

16-2. 총회는 산하의 노회록 검토 위원회를 통하여 이 검열을 실시한다. 이 위원회의 운영은 총회 경비로 담당한다.

16-3. 노회록 보관을 위한 지침서

- ㄱ. 각 노회 서기는 그 노회의 노회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 ㄴ. 노회록은 깔끔하여 읽기 쉬어야 하고, 날짜와 페이지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노회록의 공식 사본은 인쇄하여 제본하거나 좋은 바인더에 보관해야 한다.
- ㄷ. 노회록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1) 회의의 종류: 정기, 임시, 정기 속회, 또는 임시 속회. 임시 노회의 경우, 회의 목적을 진술하는 회의 소집 부분이 원래 소집서에 기록된 그대로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 2) 노회의 이름.
 - 3) 회의 날짜, 시간과 장소.
 - 4) 노회장의 이름과, 노회 정 서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시로 서기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의 이름.
 - 5) 회의들이 기도 시작하고 마침. (헌법 10-5)
 - 6) 강도 장로 또는 치리장로로 구분한 노회에 참석한 총대들의 명단과 그들이 대표하는 교회의 이름들. 교체 치리 장로들과 그들이 대표하는 교회의 이름들도 포함되어야 하고, 방청자들의 이름을 포함시킬 수 있다.
 - 7) 불참한 강도 장로들의 이름과 총대를 보내지 않은 교회들의 명단은 통보 있음 또는 통보 없음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8) 현 노회록이나 전 노회록의 인준.
- ㄹ. 노회록은 노회서기가 서명해야 한다.
- ㅁ. 추가 지침사항:
 - 1) 노회장이 반대하여 판결된 회의 진행 절차 문제들과 노회장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노회장이 자신의 판결에 대하여 제시한 이유와 함께, 인준되었거나 거부된 것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회로 이관되어야 할 모든 경우와 소수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노회의 모든 결정들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2) When a count has been ordered, or the vote is by ballot, the number of votes on each side should be entered.
- 3) The proceedings of a committee of the whole should not be entered in the minutes, but the fact that the assembly went into the committee as a whole. The committee report should be recorded.
- 4) When a commission is charged with carrying out a task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such as organizing a church or ordaining or installing a teaching elder), the minutes of presbytery should reflect the completion of each action prescribed in the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vision. This may be accomplished by reporting the work of the commission using a form provided by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which should be included in or appended to the minutes.
- 5) Minutes of presbytery relating to examinations must list all specific requirements and trials for licensure and/or ordination which have been accomplished, including that each candidate being examined for ordination was required to “state the specific instances in which he may differ with the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in any of their statements and/or propositions” (BCO 21-4). This does not mean that a separate vote on each item must be recorded. Presbytery minutes shall record ministers’ and ministerial candidates’ stated differences with our Standards in their own words. Each presbytery shall also record whether:
 - a) the candidate stated that he had no differences; or
 - b) the court judged the stated difference(s) to be merely semantic; or
 - c) the court judged the stated difference(s) to be more than semantic, but “not out of accord with any fundamental of our system of doctrine” (BCO 21-4); or
 - d) the court judged the stated difference(s) to be “out of accord,” that is, “hostile to the system” or “strick[ing] at the vitals of religion” (BCO 21-4).
- 6) Minutes of presbytery relating to ministerial calls shall record that the specific arrangements (BCO 20-1) and the call were found to be in order. ●●●
- 7) Minutes of executive sessions are not exempt from the general requirement that presbytery’s actions shall be recorded in the presbytery’s minutes and that these minutes (even if kept in a separate section on executive sessions)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for review (BCO 13-11; 14-6.c; 40-1). Presbytery may ask that the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deal with these minutes confidentially. However, any exceptions to these minutes must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normal procedures. ●

총회운영세칙

- 2) 투표수를 세도록 결정하였을 경우, 혹은 무기명 투표일 경우, 그 찬반의 수를 기록해야 한다.
- 3) 노회 전체가 그 산하의 한 위원회의 회의로 모였을 경우 그 진행절차 기록은 노회록에 기록하지 않으나, 노회가 그렇게 모였다는 사실은 기록해야 한다. 그 위원회의 보고서는 기록해야 한다.
- 4) (교회의 조직이나 강도장로의 안수 및 위임과 같은) 헌법에 규정된 사역을 수행하도록 전권 위원회가 임명을 받았을 때, 노회록은 그 해당 헌법 규정에 지시된 각 조치가 완료된 것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은 총회 서기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전권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노회록 안에 포함시키거나, 노회록에 첨부되어야 한다.
- 5) 고시들에 관계된 노회록은 반드시 강도사 인허와/또는 안수식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되어 온 구체적인 필수 과목 사항들과 [실습] 시험들 모두를 목록 별로 기록해야 하는데, 안수를 위하여 시취를 받은 각 후보가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들 중에 어떤 진술 내용들과/또는 가정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구체적인 경우들을 진술하도록”(헌법 21-4) 요구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이 각 사안에 대하여 개별적 투표를 한 것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회록은 목사들과 목사 후보생들이 우리의 표준과 다르게 진술한 것을 그들 자신들의 말로 기록해야 한다. 각 노회 역시 [다음과 같이] 했는지 안했는지를 기록한다:
 - ㄱ) 후보가 견해(들)를 달리하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는
 - ㄴ) 치리회가 진술된 견해(들)의 차이가 단순히 어의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는
 - ㄷ) 치리회가 진술된 견해(들)의 차이가 어의적인 것 이상이지만, “우리 교리 체계의 근본적인 것들 중 어느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다”(헌법 21-4)고 판결했다; 또는
 - ㄹ) 치리회가 진술된 견해(들)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체계에 적대적이다” 또는 신앙의 생명력에 치명적”(헌법 21-4)이라고 판결했다
- 6) [목회] 사역의 청빙들에 관계된 노회록은 반드시 구체적인 합의안(헌법 20-1)과 그 청빙이 합법적이었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한다.
- 7) 실행 회의 기록들은, 노회의 조치들이 노회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 회의록들은 (실행 위원회에 관해서는 별개 항으로 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열 받기 위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헌법 13-11; 14-6.ㄷ; 40-1). 노회는 노회록검열위원회에 이 [실행 회의] 회의록들을 비밀로 다루도록 부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의록들에 대한 예외 [사항]들은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8) Minutes of presbytery dealing with judicial cases shall not be dealt with by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BCO* 40-3) when notice of appeal or complaint has been given the lower court, but still must be submitted for review as part of the record. ●
- f.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to clerks and presbyteries for the keeping of minutes:
 - 1) The minutes should record the actions of the presbytery, including all motions adopted and business transacted, together with such additional information as the presbytery deems desirable for historical purposes.
 - 2) Ordinarily in church courts, motions that are lost are not included in the record, unless an affirmative vote for the lost motion is recorded, in which case the lost motion must be shown.
 - 3) Each main motion should normally be recorded in a separate paragraph. Subsidiary and procedural motions may be recorded in the same paragraph with the main motion to which it pertains.

16-4. Guidelines for Submitting of Presbytery Records:

- a. The stated clerk of each presbytery is to provide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with three (3) copies of all minutes to be reviewed.
- b. The minutes to be reviewed shall include the unreviewed minutes of all presbytery meetings that have been held through the end of the previous calendar year (*BCO* 40-1).
- c. In addition to the minutes themselves, the presbytery shall submit three (3) copies of the following items:
 - 1) A current Directory of Presbytery, including (1) a list of all teaching elders, with their addresses; and of all churches and missions with the address of the church,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erk of Session, (2) a listing of all officers and committee members of the regular committees of presbytery, and (3) a list identifying all candidates under care, interns, and licentiates of the presbytery with their addresses.
 - 2) An up-to-date copy of the Standing Rules of the presbytery.
 - 3) A letter stating presbytery's response to the Assembly concerning disposition of any exceptions of substance taken by the past Assembly.

총회운영세칙

- 8) 법적 소송건들을 다루고 있는 노회록들은 상소나 고소 통보서가 하위 처리회에 제출되었을 때 노회록검열위원회가 다루지 않아야 하지만 (헌법 40-3), 여전히 [노회] 기록의 일부로서 검열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 비. 노회록 보관을 위해 [노회] 서기들과 노회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 1) 노회록은 노회의 결정들을 기록하되, 노회가 역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추가 정보들과 함께, 채택된 모든 동의안들과 처리된 안건을 포함 시켜야 한다.
 - 2) 통상 교회 처리회들에서, 채택되지 않은 동의안들은 기록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단, 채택되지 않은 동의안을 기록하도록 찬성 투표를 했을 경우는 예외이며, 그런 경우는 채택되지 않은 동의안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 3) 매 주 동의안은 별개의 [새] 문단에 기록하는 것이 정상이다. 보조 동의안들과 절차적 동의안들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주 동의안과 같은 문단에 기록되어야 한다.

16-4. 노회록 제출을 위한 지침:

- ㄱ. 각 노회의 노회 서기는 총회 서기에게 검열받을 모든 노회록의 사본 세(3) 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ㄴ. 검열을 위해 제출될 노회록은 전 해의 마지막 날까지 개최되었던 모든 노회 회의들의 검열 받지 않은 노회록들을 포함한다 (헌법 40-1).
- ㄷ. 그 노회록들에 추가해서, 노회는 다음 서류들의 사본 세(3)부를 제출해 한다:
 - 1) 가장 최신판 노회주소록과 함께: (1) 모든 소속 강도장로의 명단과 그들의 주소; 또, 모든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이름과 주소 및 각 당회 서기의 이름과 주소, (2) 노회 임원들의 이름과 노회 산하 정규 위원회의 위원 명단, (3) 언더 케어를 받는 모든 [목회자] 후보생과, 노회 강도사들과 그들의 주소를 확인해 주는 명단.
 - 2) 가장 최근에 개편된 노회의 현행 내규.
 - 3) 지난 총회가 채택한 모든 본질적 예외 [사항]들의 처리에 관하여 노회의 응답을 진술해서 총회로 보내는 서신.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d. The minutes are to be reviewed and the items listed under 14-4c shall be mailed to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not less than sixty (60) day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Assembly.
- e. If a presbytery repeatedly fails to submit its minutes, or its responses to exceptions of substance, the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may recommend to the General Assembly that the provisions of *BCO* 40-1, 4, & 5 be applied.

16-5. The stated clerk of each presbytery, or his representative, should be prepared to meet with the committee to answer questions and to clarify any possible discrepancy. The committee should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consult with the clerk of the presbytery (or his designee) on any questions before finalizing the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16-6. Guidelines for Examining Presbytery Records:

- a. Presbytery minutes shall be examined for conformity to:
 - 1) The Scripture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s to the substance of the actions recorded (*BCO* 40-2), and
 - 2) The Assembly Guidelines for Keeping Presbytery Minutes, as to form, structure, and minimum content (RAO 16-3).
- b. Each set of presbytery minutes and other materials submitted under RAO 16-4c should be read by at least two members of the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 c. The findings of the committee with respect to the minutes of each presbytery shall be noted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as appropriate:
 - 1) Exceptions of substance: Apparent violations of the Scripture or serious irregularities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ctions out of accord with the deliverance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matters of impropriety and important delinquencies, and any non-compliance with RAO 16-3.e.5 should be reported under this category. ● ●
 - 2) Exceptions of form: Violations of the Assembly's Guidelines for Keeping Presbytery Minutes (RAO 16-3), rules of order, etc. should normally be reported under this category. When a minor irregularity from a *BCO* provision or requirement is noted, it may be treated as an exception of form (*BCO* 40-3). If subsequent minutes continue to reflect the same particular exception of form, it may become an exception of substance.

총회운영세칙

- ㄹ. 검열 받을 노회록들과 14-4ㄷ에 열거된 서류들은 적어도 총회 개회 육십(60)일 전에 총회 서기 사무실로 우송되어야 한다.
- ㄴ. 만일 노회가 반복적으로 그들의 노회록이나, 본질적 예외 [사항]들에 대한 노회의 응답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노회록검열위원회는 헌법 40-1, 4 및 5의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총회에 추천 할 수 있다.

16-5. 각 노회의 노회 서기, 또는 그의 대리인은, 문제들에 대하여 대답하며 가능성 있는 어떤 불일치라도 설명 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총회로 올리는 보고서를 완료하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노회 서기(또는 그의 지명자)와 의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16-6. 노회록 검열을 위한 지침

- ㄱ. 노회록은 다음의 사항들의 일치를 위하여 검토된다:
 - 1) 기록된 결정들의 본질에 대하여 성경과 본 교단의 헌법에 일치 (헌법 40-2), 그리고
 - 2) 형태, 구조 및 최소한의 내용에 대하여 노회록 보관을 위한 총회 지침에 일치 (총운세 16-3).
- ㄴ. 노회록 각 권과 총운세 16-4ㄷ 아래 제출된 다른 서류들은 최소한 노회록검열위원회 위원들 두 명 이상이 읽어야 한다.
- ㄷ. 위원회가 각 노회의록들에 관련하여 발견한 것들은 아래 범주들을 따라 적절하게 보고해야 한다:
 - 1) 본질적 예외들: 명백히 성경에 위반되거나 본 교단 헌법에서 [벗어난] 심각한 변칙, 총회 판결에 불일치하는 결정들, 부적절한 사안들과 중요한 과실은, 그리고 총운세 16-3.ㄷ.5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이 범주 아래 보고되어야 한다.
 - 2) 형식상 예외들: 노회록 보관을 위한 총회 지침서 (총운세 16-3), [회의]법의 규칙, 등의 위반은 일반적으로 이 범주 아래 보고되어야 한다. 헌법의 규정이나 필수조건에서 [벗어난] 사소한 변칙이 발견될 때, 형식상의 예외로 처리될 수 있다(헌법 40-3). 만일 다음 노회록에 계속하여 같은 특정항 형식상의 예외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본질적 예외가 될 수 있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3) Notations: The committee may report to the clerk of presbytery any typographical errors, misspellings, improper punctuation and other minor variations in form and clarity. These are to be given as advice for the respective clerks.

16-7. Guidelines for Reporting on Presbytery Records: The report of the committee shall be concise. I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a. A list of the minutes, by presbyteries, received by the committee.
- b. A list of the presbyteries which have not submitted minutes, if any.
- c. A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inutes of each presbytery, which shall include:
 - 1) Minutes approved without exception;
 - 2) Minutes approved with exceptions of form, which shall be reported directly to the presbytery;
 - 3) Minutes approved with exceptions of substance which shall be presented to the General Assembly, which presentation shall include citation of any relevant scriptural and/or constitutional references, and provide the committee's rationale for finding the exception of substance;
 - 4) Responses to exceptions of previous Assemblies, if any;
 - 5) Recommendations concerning all responses to exceptions taken by previous Assemblies that have not been disposed of suitably.
- d. Any other recommendation to the Assembly.
- e. A statement of the division of the vote on each recommendation.
- f. Any recommendation which may affect the budget of the Assembly shall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on Administrative Committee.
- g. A list of members present.

16-8. The report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pared and handled in the same manner as reports of committees of commissioners as set forth in RAO 14-8. Neither the report of the committee nor the General Assembly's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is report establishes doctrinal precedent.

총회운영세칙

- 3) 표기: 위원회는 노회 서기에게 타자 상의 오류, 맞춤법 상의 오류, 구두법 상의 오류와 형태와 명료성에 있어서 다른 사소한 변형들을 보고한다. 이것들은 해당 노회 서기들을 위한 조언으로 알려준다.

16-7. 노회 기록에 관한 보고를 위한 지침: 위원회의 보고는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ㄱ. 위원회가 접수한 노회별 노회록 목록.
- ㄴ. 노회록을 제출하지 않은 노회가 있다면, 그들의 명단.
- ㄷ. 각 노회의 노회록에 대한 추천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예외없이 인준된 노회록들;
 - 2) 노회로 직접 보고될, 형식상 예외들로 인준된 노회록들;
 - 3) 총회에 보고될 본질적 예외들로 인준된 노회록들로, 보고서는 적합한 성경적이고/이거나 헌법적 참고 문헌의 어떤 인용도 포함해야 하고, 본질적 예외들을 찾기 위한 위원회의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
 - 4) 만일 있다면, 전기 총회들의 예외들에 대한 응답서;
 - 5) 이제까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전기 총회들이 채택한 예외들에 대한 모든 응답서들에 관한 추천서들.
- ㄹ. 총회로 올리는 그 밖의 다른 추천사항.
- ㅁ. 각 추천 사항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기록.
- ㅂ. 총회의 예산에 영향을 줄 만한 모든 추천사항들은 행정 총대 위원회로 위탁되어야 한다.
- ㅅ. 참석한 위원들의 명단.

16-8. 위원회의 보고는 총운세 14-8 에 규정된 대로 총대위원회의 보고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나 이 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인준 또는 비인준 그 어느 것도 교리적 선례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16-9. No partial report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en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Assembly.

16-10. Guidelines for Responding to General Assembly

- a. Presbyteries shall be advised of exceptions of form; however, they shall take note in their minutes of exceptions of substance taken by the Assembly, together with their responses adopted by the presbytery to these exceptions. These responses should normally be adopted by Presbytery in the same calendar year as the exceptions were taken by the Assembly. Regardless, responses must be filed no less than one month prior to General Assembly.
- b. Presbyteries shall correspond with the next General Assembly the disposition they have made of the exceptions of substance (including general), with specific reference to presbytery's action as recorded in its minutes. Responses shall be in one of the following forms:
 - 1) Presbytery agrees with the exceptions and corrects its record (if possible), corrects its actions (if possible) and promises to be more careful in the future. Or,
 - 2) Presbytery respectfully disagrees with the exception, states its grounds and refers the exception back to the Assembly.
- c. If, in responding to an exception of substance, a presbytery reports that it disagrees with the conclusion of the Assembly and has not corrected or redressed the identified problem; and, the committee (after reviewing the presbytery's response and rationale, and, if a majority so desires, consulting with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continues to believe that the presbytery has persisted in an error that is significant enough to require an Assembly response; then,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Assembly of the continuing exception, and shall make recommendation as to whether the Assembly should again seek a more acceptable response from the presbytery, or should appoint a representative to present its case and refer the matter to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to cite the presbytery to appear for proceedings according to *BCO* 40-5.

16-9. 총회의 동의 없이는 위원회가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 할 수 없다.

16-10. 총회에 응답을 위한 지침

- ㄱ. 노회들은 양식상의 예외들에 대해 조언을 받는다; 그러나, 노회들은 총회가 취택한 본질적 예외들에 대하여, 노회가 채택한 이 예외들에 대한 그들의 응답들과 함께, 노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예외들은 일반적으로 총회가 예외들로 취한 같은 해에 노회가 채택해야 한다. 상관없이, 응답들은 총회 한 달 이전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한다.
- ㄴ. 노회들이, 해당 노회의 노회록에 기록된 대로 노회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인용과 함께, (일반적인 예외들을 포함하여) 본질적 예외들을 처리한 것은 차기 총회와 일치해야 한다. 응답들은 다음 형태들 중 하나여야 한다:
 - 1) 노회가 예외들에 동의하며 (가능하면) 그 기록을 바로 잡고, (가능하면) 노회의 조치들을 바로잡고 앞으로 더 조심할 것을 약속한다. 또는,
 - 2) 노회가 정중히 그 예외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며, 그 근거들을 진술하여 그 예외를 총회에 다시 위탁한다.
- ㄷ. 만일, 본질적 예외에 대한 응답 중에, 어떤 노회가 총회의 결론과 견해를 달리하여 확인된 문제를 바로 잡지않거나 교정하지 않으면; 또, (위원회가 노회의 응답과 논리를 검토한 후, 또, 만일 다수가 원하여, 헌법연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에) 노회가 총회의 응답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할 만큼 의미심장한 오류를 고집하고 있다고 위원회가 계속 믿으면; 그러면, 위원회는 계속되는 예외에 대하여 총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회가 또 다시 노회로부터 좀 더 수용 가능한 응답을 촉구하도록 추천하거나, 그 사례를 제시할 대표를 임명하여 그 사안을 상임 법사 위원회에 위탁하고 헌법 40-5에 부합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노회를 소환하여 출두하게 한다.

ARTICLE XVII.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17-1. There shall be a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composed of twenty-four members in accordance with *BCO 15-4*. Upon election, each new member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before entering upon the duties of this office, shall sign a printed copy of the following vows; further, if the newly elected member is present, he shall affirm these vows in the presence of the Assembly electing him:

“I do solemnly vow, by the assistance of the grace of God, in my service as a judge in this branch of the church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 1. I will act as before God, my Judge and the Searcher of hearts;**
- 2. I will judge without respect to persons, and if so tempted, will recuse myself from judgment;**
- 3. I will judge not according to appearances, but judge righteous judgment;**
- 4. I will judg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through my best efforts applied to nothing other than the record of the case and other documents properly before me; and**
- 5. If in a given case I find my view on a particular issue to b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 will recuse myself from such case, if I cannot conscientiously apply the Constitution.”**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have oversight of appeals, complaints and judicial references from lower courts.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will report directly to the General Assembly.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not be separately funded but administratively will operate as a subcommittee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The minutes, but not the judicial cases, decisions, or reports,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be reviewed annually by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The minutes shall be examined for conformity to the “Operating Manual for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and RAO 17, violations of which shall be reported as “exceptions” as defined in RAO 14-11.d.(2). With respect to this examination,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shall report directly to the General Assembly. If exceptions are taken with respect to a case, the Assembly may find this a ground to direct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to retry the case.

제 17 항.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17-1.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헌법 15-4 에 의거하여 스물 네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선출이 되면, 각 새 상임 법사 전권위원은, 이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의 서약들이 인쇄된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나아가서, 만일 새로 선출된 전권위원이 총회에 출석하면, 그는 그를 선출한 총회 앞에서 이 서약을 확약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 분야에 재판관으로서의 나의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나의 재판관이시며, 마음의 감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듯 행동하겠습니다;
2. 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 없이 판결 할 것이며, 만일 그런 유혹에 빠졌다면, 재판에서 스스로 물러 나겠습니다;
3. 나는 외모를 따라 판결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재판을 하겠습니다;
4. 나는, 내 앞에 주어진 소송기록과 다른 적절한 문서들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본 교단 헌법을 따라 판결 할 것입니다.
5. 만일 주어진 소송건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가 본 교단의 헌법과 상충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양심적으로 그 헌법을 적용 할 수 없다면, 나는 그런 소송건에서 스스로 물러 나겠습니다.”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하회 치리회에서 올라온 상소, 고소 및 법적 문의를 감독한다.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총회에 직접 보고한다.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별도로 재정 후원을 받지 않고, 행정적으로 총회 행정위원회의 소위원회로서 운영된다.

법적 고소건들, 판결들, 또는 보고서들이 아닌,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회의록은 헌법연구위원회가 매년 검열한다. 그 회의록이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운영 지침서”와 총운세 17 에 일치하는 지를 검사하고, 위반 [사항]들은 총운세 14-11.르.(2)에 정의된 대로 “예외들”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검사에 관해서는, 헌법연구위원회가 직접 총회에 보고한다. 만일 예외들이 어떤 소송건에 관하여 채택된 것이면, 총회는 이것을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가 그 소송건을 재심리하도록 지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17-2. With respect to the Rules of Discipline, any reference (*BCO* 41), appeal (*BCO* 42), complaint (*BCO* 43), *BCO* 40-5 proceeding, or request to assume original jurisdiction (*BCO* 34-1) made to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assigned to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for adjudication.

17-3.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may appoint a judicial panel of not less than three of its members to hear th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f Discipline in the *BCO* and these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Such panels shall be chosen as follows:

- a. A pool with the names of teaching elder members shall be established, and another pool with the names of ruling elder members shall be established. The chairman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draw by lot names of panel members and alternates from each pool and notify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who shall notify, immediately, those so chosen.
- b. If a panel member so selected shall be disqualified under Section 2 of the "Operating Manual for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he shall be replaced by the alternate drawn from the pool.
- c. The names of those panel members selected and qualified shall not be returned to the pool until all names therein have been exhausted. The name of an alternate, who does not serve as a panel member, shall be returned to the pool. The names of those members whose terms expire at the next General Assembly shall be withdrawn from the pool on March 1 of that year. Immediately after each General Assembly the name of each new member selected at such General Assembly shall be added to his respective pool.
- d. If a case is pending and a judicial panel has been appointed as set out above, and another case is filed from the same presbytery, the officers of the commission may elect to assign the second case to the same panel without resort to the pools. The officers of the commission may assign the additional case or cases to the same panel without resort to the pools only if: (1) the facts of the cases are so interconnected that assignment to different panels reasonably appears to require repetitious consideration of the same factual circumstances; or (2) assignment of unrelated cases to the same panel is agreed to by all parties to all of the cases.

총회운영세칙

17-2. 권징 조례에 관하여, 총회로 올려진 모든 문의 (헌법 41), 상소(헌법 42), 소원(헌법 43), 헌법 40-5 의 진행 절차, 또는 최초 법적 관할권의 양도 요청(헌법 34-1)은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에 일임하여 재판한다.

17-3.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위원들 가운데 적어도 세 명 이상의 법사단을 임명하여 헌법의 권징 조례와 총회 운영 세칙의 규정에 따라 소송건을 청문하도록 한다. 이런 법사단은 다음과 같이 선택되어야 한다:

- ㄱ. 강도 장로 회원들의 이름으로 된 후보 명단을 작성하고, 치리 장로 위원들의 이름으로 된 또 다른 후보 명단을 작성한다.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후보 명단에서 심사단 위원들과 교체원들의 이름을 제비뽑아 총회 서기에게 통보하고, 총회 서기는, 즉시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 ㄴ. 만일 선출된 심사단원이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운영 지침서” 6항 하에 자격을 상실하면 명단에서 뽑힌 교체원으로 대체 시키도록 한다.
- ㄷ. 선출되어 자격을 갖춘 심사단 위원들의 이름은 명단에 있는 이름이 다 소진될 때까지, 다시 그 후보 명단에 넣지 않는다. 심사단 위원으로 봉사하지 않은 교체원의 이름은 다시 그 후보 명단에 넣는다. 차기 총회 때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의 이름들은 차기 총회가 있는 해 삼월 1일에 후보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매 총회가 끝나는 즉시 그 총회에서 선택된 새 심사단원의 이름이 해당 후보 명단에 추가되어야 한다.
- ㄹ. 만일 어떤 소송건이 미결 [상태]여서, 위에서 규정한 대로 하나의 심사단이 임명되어 왔고, 같은 노회로부터 또 다른 소송건이 접수되었다면, 전권위원회의 임원들은 후보 명단에서 새로 뽑지 않고 같은 심사단에 두번째 소송건을 일임하도록 선출할 수 있다. 전권위원회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후보 명단에서 새로 뽑지 않고 같은 심사단에 추가 소송건 또는 소송건들을 일임할 수 있다: (1) 만일 소송건들의 사실들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어 다른 심사단에게 일임한다해도 반복적으로 같은 사실적 상황들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면; 또는 (2)만일 소송건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소송건들을 같은 심사단에게 위임 하는 것에 쌍방 당사자들 모두가 동의 한다면.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17-4. Proposed decision(s) of any judicial panel shall be circulated to the entir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It shall act upon the recommended decision(s) without further hearings unless a party to the case, or a commission member, requests a rehearing of the case by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as a whole. The commission may or may not grant such a rehearing; except such rehearing must be granted when requested by a dissenting member of the panel or by at least four qualified members of the commission. If granted, such rehearing shall be only on the record of the case; but the commission may allow oral arguments by the parties.

17-5.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Specific direc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ovisions shall be set forth in an “Operating Manual for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mendments to this Manual may be proposed to the General Assembly by overture from a presbytery (cf. Article XI), or by recommendation from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Proposed amendments from either source shall be reported to the Assembly by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and shall be adopted upon a two-thirds vote of those voting, which must be a majority of the total enrollment of commissioners. This Manual shall be printed as an appendix to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총회운영세칙

17-4. 어느 법사단의 상정한 판결(들)이든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전체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소송의 한 당사자나 전권위원회 어느 위원이,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가 전체로 그 소송건을 재청문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더 이상의 청문 없이 그 추천된 판결(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재청문을 허락 할 수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심사단 가운데 이의가 있는 사람이나, 적어도 전권위원회의 자격 있는 위원들 네 명이 그러한 재청문을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이다. 만일 허락되면, 그러한 재청문은 소송건의 기록에만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쌍방 당사자들의 구두 주장을 허락할 수도 있다.

17-5.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총회 운영 세칙의 규정들의 통제를 받는다. 이 규정들의 이행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지시들은 총회가 채택한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운영 지침서”에 제시되어 진다. 이 지침서에 대한 수정안들은 노회가 총회에 올리는 헌의안이나 (비교. 제 11 항),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가 올리는 추천안으로 상정될 수 있다. 어느 쪽에서 상정된 수정안들이든 법사 전권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총 등록 총대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투표하고 투표한 총대들 삼분의 이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이 지침서는 총회 운영 세칙의 부록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RTICLE XVIII. ASSEMBLY EXPENSES

18-1. Each congregation of the denomination shall be encouraged each year to make a specific subscription donation to assist in defraying the expenses of the General Assembly, whether a commissioner is sent to the Assembly or not. Such subscription donation shall cover the registration for one representative from the congregation. All other commissioners shall be encouraged to make a similar donation. A copy of the *Minutes* and the *Commissioner Handbook* will be sent to the donors and those paying the subscription donation/registration fee without additional charge.

Churches are encouraged to make this annual donation, whether or not they send a commissioner to the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shall set the amount of the subscription donation/registration for the next General Assembly.

18-2. The expenses of the recording clerks of the General Assembly will be borne by the Assembly.

18-3. All other expense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divided among the five major permanent Committees on the percentage basis of distributing undesignated gifts.

제 18 항. 총회 비용

18-1. 교단의 각 회중이, 총대를 총회에 보내든 안 보내든, 매년 총회의 경비 지출을 돕기위한 구체적인 기부금을 작성하도록 장려한다. 그런 작성 기부금은 회중의 대표 한 사람의 등록비를 담당한다. 모든 다른 총대들도 비슷한 기부금을 내도록 장려한다. 기부자들과 작성 기부금/등록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추가 요금 없이 총회록과 총대를 위한 안내서 사본이 하나씩 우송된다.

교회들이, 총대를 총회에 보내든 안 보내든, 매년 이 기부금을 내도록 장려한다. 총회는 차기 총회를 위한 작성 기부금/등록금의 액수를 책정해야 한다.

18-2. 총회 기록 서기의 경비들은 총회가 담당한다.

18-3. 회의 다른 모든 경비들은 비지정 기부금의 분배 비율에 기초하여 다섯 개의 주 상임 위원회가 나누어 분담한다.

ARTICLE XIX. PARLIAMENTARY PROCEDURE

19-1.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ese Rules,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shall be the standard in parliamentary procedure.

19-2. Each chairman shall lead the Assembly in a brief prayer before making his report.

When a minority of a committee wishes to present a minority report, the member reporting for the minority shall have the privilege of presenting the minority report and moving it as a substitute for the portion of the majority report affected.

19-3. Each recommendation in each report must be read, considered, and acted upon separately.

- a. The chairman moves the adoption; no second is necessary for a committee recommendation.
- b. The Moderator asks: "Is there objection or question?"
- c. Hearing no objection or question, the Moderator states: "It is adopted." (The above procedure is known as the "Short Form of Voting.")
- d. When it is necessary to postpone action on the completion of a report for some subsequent action of the Assembly, such as the approval of the budgets, or other special items, the report shall be approved as a whole pending the completion of these other items. At the time that the other items come to the floor, only these matters may be considered by the Assembly, since the report as a whole will have already been adopted.

19-4. Procedure in debating a question:

- a. The chairman or his designate may answer questions concerning the report addressed to him through the Moderator.
- b. With respect to any recommendation, the representative of any Committee or Agency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the final speech in support of the Committee's motion before the question is put on a substitute, or on the Committee or Agency's main motion, as the case may be, even upon the expiration of time on the question, the failure of a motion to extend the time, or the adoption of a motion to order the *Previous Question*.

제 19 항. 회의 진행 절차

19-1. 이 총회 운영 세칙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국통상회의법, 새 개정판이 회의 진행 절차의 표준이 된다.

19-2. 각 위원장은 보고를 하기 전에 총회를 간단한 기도로 인도한다.

어떤 위원회의 소수가 소수 보고서를 제출하기 원할 때, 소수를 대표하여 보고하는 위원은 소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소수 보고서를 영향을 받는 다수 보고서의 부분에 대한 대체안으로 동의 할 수 있다.

19-3. 각 보고의 각 추천안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낭독되고, 검토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 ㄱ. 위원장이 채택하자는 동의안을 낸다; 위원회의 추천안에 대하여서는 재청이 필요 없다.
- ㄴ. 총회장이 질문한다: “반대나 질문이 있습니까?”
- ㄷ. 반대나 질문이 없으면, 총회장이 선언한다: “채택되었습니다.” (위의 진행 절차를 “간이형 투표”라고 부른다.)
- ㄹ. 예산이나, 다른 특별 사안의 인준의 경우와 같이, 총회의 차후 처리를 위해 보고서의 종결 처리를 연기하는 것이 필요한 때, 그 보고서는 이런 다른 사안들의 종결은 미결로 남겨두고 전체로 인준해야 한다. 다른 사안들이 총회 석상에 올라 왔을 때, 그 보고서는 이미 전체로 채택되어 있을 것이므로, 총회는 이 안건들만 검토하면 된다.

19-4. 문제에 대한 토론의 진행 절차:

- ㄱ. 위원장 또는 그의 지명자가 총회장을 통하여 그에게 제기되었던 보고서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한다.
- ㄴ. 모든 추천안에 관하여는, 문제가 대체안에 들어 가게 되거나, 또는 위원회나 기관의 주 동의안에 들어 가게 되기 전, 어떤 경우가 되었든, 심지어 어느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종료되었거나, 시간 연장 동의를 기각했거나, *이전 문제를* 법대로 하자는 동의안의 채택이 있더라도, 어느 위원회나 기관이든 그 대표가 해당 위원회의 동의안을 지지하는 최종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 c. No commissioner may speak on the same question more than once until all desiring to speak have done so.
- d. Unless otherwise provided, debate on the main motion shall be limited to ten (10) minutes unless extended. When a main motion has been debated for ten (10) minutes, the Moderator shall put the question to the Assembly: "Does the Assembly desire to extend the time an additional five (5) minutes?" A simple majority will decide the question. If the majority decides not to extend debate, the Moderator will call the question. If an amendment of a substitution is on the floor, the question of extending time on the main motion shall be repeated after the vote on the amendment or substitute. If time is extended, the question of extension will again be put every succeeding five (5) minutes until the motion is concluded. Unless otherwise provided, each commissioner shall be limited to three (3) minutes on the same question unless the court by a simple majority grants additional time.
- e. Debate shall be free and open, with equal time being given to proponents and opponents insofar as possible.

19-5. Special Provisions

- a. The assistants to the Stated Clerk shall have the privilege of the floor when requested by the Moderator to render some specific service to the court.
- b. All motions shall be presented in writing and read before being voted upon.

총회운영세칙

- ㉔. 아무 총대도 발언하고 싶어 하는 모든 총대들이 발언을 끝내기 전에는 같은 문제에 대하여 한 번 이상 발언 할 수 없다.
- ㉕.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주 동의안에 대한 토론은 연장되지 않는 한 십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동의안에 대한 토론이 십분간 계속되면, 총회장은 총회 앞에 질문해야 한다: “이 총회가 토론 시간을 오(5)분 더 연장하기를 원합니까?” 단순한 다수결로 그 질문을 결정한다. 만일 다수가 토론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총회장은 문제를 석상에 내놓는다. 만일 수정 대체안이 석상에 있으면, 수정안이나 대체안에 대한 투표 후 주 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 연장을 묻는 질문을 반복해야 한다. 만일 시간이 연장되면, 시간 연장에 대한 질문은 그 동의안이 종결될 때까지 매 오(5)분마다 되풀이 되어야 한다.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각 총대는 같은 문제에 대하여 치리회가 단순한 다수표로 추가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한 삼(3)분을 초과 [발언] 할 수 없다.
- ㉖. 토론은 가능한 한 지지자들에게나 반대자들에게 같은 시간을 주며,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19-5. 특별 규정

- ㉑. 총회 서기의 보조자들은, 치리회에 얼마의 한정된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회장의 요청으로 석상에 설 수 있는 특권이 있다.
- ㉒. 모든 동의안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투표 받기 전에 낭독되어야 한다.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RTICLE XX. AMENDMENT OR SUSPENSION OF RULES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may be amended or suspended only by a two-thirds vote of those voting, which must also be a majority of the total enrollment of commissioners. A motion to amend is debatable. A motion to suspend is not debatable.

제 20 항. 규칙의 수정 혹은 효력 정지

총회 운영 세칙은 투표자들의 삼분의 이 이상으로만 수정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는데, 투표도 반드시 총 등록 총대들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해야 한다. 수정 동의안은 토론될 수 있다. 효력 정지 동의안은 토론될 수 없다.

OPERATING MANUAL FOR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With revisions adopted through the 42nd General Assembly (2014)

No revisions to the OMSJC were adopted in 2014.
[Editorial corrections: 18.11; 18.12.b.(4)]

PREFACE

This Manual is subordinate to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to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 If there is any conflict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Manual and the Constitution or Rules of Assembly Operation, the Constitution or Rules of Assembly Operation shall take precedence.

상임법사전권위원회 운영지침서

제 42 차 총회 (2014) 까지 채택된 수정안 포함

2014 년도에는 상법위지침서에 대해 채택된 개정안이 없다.
[편집 수정:: 18.11; 18.12.ㄴ.(4)]

서문

이 지침서는 서열상 미국장로회 헌법과 총회운영세칙에 종속된다. 이 지침서의 규정들과 헌법 혹은 총회운영세칙 사이에 상치됨이 있다면, 교회헌법 혹은 총회운영세칙이 우선한다.

GENERAL RULES

1. MEMBERSHIP

- 1.1 Membership shall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BCO* 15-4.

일반적인 규칙들

1. 회원 자격

1.1 회원 자격은 헌법 15-4 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2. CONDUCT OF COMMISSION MEMBERS.

- 2.1 A member shall, at all times, keep in mind his high calling as an officer of the church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shall in all endeavors conduct himself in accordance with that calling. Further, since “ecclesiastical discipline . . . can derive no force whatever but from its own justice, the approbation of an impartial public, and the countenance and blessing of the great Head of the Church” (*BCO*, Preface, II. Preliminary Principles, 8), the members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must maintain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grity, independence, impartiality, and competence.
- 2.2 All members of the commission, including officers, shall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and to vote on any matter pending before the commission for which they are qualified.
- 2.3 A “qualified” member under these Rules is any member of the commission who:
 - a. in a hearing (SJCM 10.8.a (2)) has read the Record of the Case and all briefs timely filed by the parties;
 - b. in a review or rehearing SJCM 17.8.b has read the Judicial Panel’s proposed decision, all briefs timely filed by the parties, and that portion of the Record of the Case the member feel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ssues of the case;
 - c. heard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if such arguments are presented) and the discussion as to the merits of the matters in controversy; and
 - d. is not disqualified for one or more of the reasons stated in Sections 2.4-2.12 below.
- 2.4 A member shall not render judgment in any matter pending before the commission on the basis of anything other than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and the facts presented by the Record of the Case and the other materials properly before him. If he

2. 전권위원회 위원들의 품행.

- 2.1 위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주님의 고상한 소명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 소명에 부합하는 품행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서, “교회 권징은...교회의 공의, 편견없는 대중의 찬성, 교회의 위대한 머리[이신 그 분]의 용안과 축복이 아니라면 어떤 힘도 도출 할 수 없기”때문에 (헌법, 서문, II. 기본 원리 8), 상임법사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무흠성, 독립성, 공평성, 적격성의 최고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2.2 임원들을 포함한, 전권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자격이 되어 회원이 된 전권위원회 앞에 계류된 어떤 일에 대해서도 토론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2.3 이 규칙 하에 “자격이 되는” 전권위원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 ㄱ. 청문회에서 (상법위지침 10.8.ㄱ (2)) 소송 기록과 쌍방 당사자들에 의해 적시에 접수된 모든 소송 개요들을 읽은 자;
 - ㄴ. 검토 혹은 재청문에서 (상법위지침 17.8.ㄴ) 회원이 소송건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판사회가 상정한 결의안, 쌍방 당사자들에 의해 적시에 접수된 모든 소송 개요와 소송 기록의 해당 부분을 읽은 자;
 - ㄷ. 쌍방의 주장(만일 그런 주장들이 제시되었다면)과 논쟁이 되는 일들에 상응하는 토론을 들은 자;
 - ㄹ. 아래 2.4-2.12 항의 진술된 한 가지 혹은 한가지 이상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자.
- 2.4 회원은 전권위원회 앞에 계류된 어떤 일도 교회 헌법과 소송 기록에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과 적절하게 자신 앞에 주어진 다른 자료들 외에 다른 어떤 근거 위에서도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 만일 위원 자신이 다른 어떤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알게 된다면, 혹은 그 자신이 요구된 것 같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위원은 스스로 그 일을 더 진행하기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finds himself subject to any other influence, or if he finds himself unable to render the judgment so required, he shall recuse himself from further proceedings in that matter.

- 2.5 A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not make any public or private statement that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affect the outcome of a pending matter or impending matter in any court of the church (*BCO* 11-4; 39-3).
 - a. A pending matter is a matter with respect to which process (*BCO* 31-2, ¶ 2) has commenced or which has been filed under the Rules of Discipline with the appropriate court. A matter continues to be pending through any appellate process. (*BCO* 39-1).
 - b. An impending matter is a matter that is reasonably expected to (a) become a case of process or (b) otherwise be brought before an appropriate court for consideration. “Reasonably” refers to the judgment of one in possession of all the relevant facts, which facts are subject to a fair-minded assessment.
- 2.6. So long as he complies with Section 2.5 above, a member may make public or private statements in the course of his duties as a presbyter or Session member with respect to biblical teaching, confessional interpretation, the principles of the form of government and discipline, the requirements of the *BCO*,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 *Robert's Rules*, and may explain Commission procedures.
- 2.7. A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not discuss or comment on a pending or impending case with any party in the case or any person other than a Commission member,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Manual or in the *BCO*.
- 2.8. Notwithstanding Section 2.5 above, a member of the Commission may fully participate in a judicial matter before the Presbytery or Session of which he is a member and advise his Presbytery or Session in judicial matters.
- 2.9. A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not represent himself or any other party before the Commission.

상법위지침

- 2.5 전권위원회 위원은 어떤 교회 치리회이든 계류 중인 혹은 임박한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영향을 끼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공적 혹은 사적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 (헌법 11-4; 39-3).
- ㄱ. 계류 중인 일은 과정(헌법 31-2, ¶ 2)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적합한 치리회에 권징 규칙 하에 접수된 일이다. 일은 어떤 장소 과정에서도 끝날 때까지 계속 계류된다 (헌법 39-1).
 - ㄴ. 임박한 일은 합리적으로 (ㄱ) 진행 될 것으로 될 것 혹은 (ㄴ) 그렇지 않다면 배려를 위하여 적합한 1 치리회 앞으로 상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이다. “합리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관련된 사실들 중 한 가지의 판단에 관한 것인데, 그 사실들은 공정한 정신의 평가에 종속된다.
- 2.6 위원이 상기 2.5 항에 순응하는 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는 과정 중에 장로로서 혹은 당회원으로서 성경적 가르침과, 고백서의 해석과, 정치와 권징의 형태의 원리들과, 헌법의 요구들과, 총회운영 세칙과 만국 통상 회의법에 관하여 공적 혹은 사적 진술을 할 수 있다.
- 2.7 전권위원회 위원은 소송건에 관련된 어느 쪽이나 전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과도 계류 중 혹은 임박한 건에 관한 토론이나 해설을 할 수 없다. 단 지침서에서나 헌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외다.
- 2.8 상기 2.5 항에도 불구하고, 전권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노회나 당회 앞에서 법적인 일에 관하여 전격 참여 할 수 있고 법적인 일에 관하여 그가 속해 있는 노회나 당회에 조언할 수 있다.
- 2.9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전권위원회 앞에서 자신이나 다른 어떤 쪽도 대표 할 수 없다.

- 2.10. A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perform the duties of his office with impartiality and shall be diligent to maintain the impartiality of the Commission.
- a. A member must be objective and open-minded with respect to all issues and parties.
 - b. A member shall not, in connection with cases, controversies, or issues that are likely to come before the court, make pledges, promises, or commitment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impartial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his office.
 - c. A member shall not initiate, permit, or consider *ex parte* communications, or consider other communications made to the member outside the presence of th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concerning a pending or impending matter, except as follows:
 - (1) When circumstances require it, *ex parte* communication for scheduling, administrative, or emergency purposes, which does not address substantive matters, is permitted to a Commission officer, or panel convener, chairman, or secretary.
 - (2) If a member receives an unauthorized *ex parte* communication bearing upon the substance of a matter, the member shall promptly notify the Officers of the substance of the communication in writing. The Officers shall promptly notify the parties of the substance of the communication in writing.
 - (3) A member shall not investigate facts in a matter independently, and shall consider only the evidence presented and any facts that may properly be judicially noticed.
 - d. A member shall disqualify himself in any proceeding in which the member's impartiality might reasonably (see Section 2.5.b) be question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1) The member has a personal bias or prejudice concerning a party or a party's representative, or personal knowledge of facts that are in dispute

상법위지침

2.10 전권위원회 위원은 공평하게 자기 직무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전권위원회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ㄱ. 위원은 모든 문제들과 쌍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 ㄴ. 위원은, 지리회 앞으로 상정 되기 쉬운 소송건들, 논쟁들, 혹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자기 직무의 의무를 공평하게 수행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서약이나, 약속이나, 헌신을 할 수 없다.
- ㄷ. 위원은 계류 중이거나 임박한 일들에 관하여, 일방적 소통물들을 주도 하거나 허락 하거나 고려 할 수 없고, 또 쌍방 당사자들 혹은 그들의 대표들이 출석 없이 위원에게 전해진 다른 소통물들을 고려 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다.
 - (1) 상황이 본질적 일들을 언급하지 않는 일정에 관한, 행정적, 혹은 긴급한 목적들을 위하여 일방적 소통을 요구 할 때, 전권위원회 임원 혹은 토론 소집자, 위원장, 혹은 비서에게는 허락된다.
 - (2) 만일 위원이 일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승인되지 않은 일방적 소통물을 접수하면, 그 위원은 신속히 서면으로 소통물의 본질을 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원들은 신속히 서면으로 소통물의 본질을 쌍방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위원은 일에 관련된 사실들을 독립적으로 조사 할 수 없고, 오직 제출된 증거와 법적으로 적절하게 통보된 사실들이라면 무엇이든지 고려 할 수 있다.
- ㄹ. 위원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2.5.ㄴ 항을 보라) 의문시 되는 어떤 진행 절차에도 위원은 스스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제한된 것은 아니다:
 - (1) 위원이 개인적 편견이나, 한 편, 혹은 한 편의 대표에 관한 편애, 혹은 진행에 있어서 논쟁 중에 있는 사실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은 그의 직분의 의무를 공평하게 수행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in the proceeding,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impartial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his office.

- (2) The member, while a member or after nomination to membership, has made a public statement, other than in a court proceeding, judicial decision, or opinion, that commits or appears to commit the member to reach a particular result or rule in a particular way in the proceeding or controversy.
 - (3) The member, the member's spouse, or a person within the third degree of relationship to either of them, or the spouse of such a person:
 - i served as a representative in the matter in controversy;
 - ii was a witness concerning the matter; or
 - iii is a member of a court which is party to the case or is a member of a congregation in the bounds of a presbytery party to a case.
- e. A member subject to disqualifica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disclose on the record the basis of the member's disqualification.
- 2.11. A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conduct his extra-Commission activities to minimize the risk of conflict with the obligations of office thereby ensuring that he is available to fulfill his duties. A member shall not participate in activities that require the frequent disqualification of the member.
- 2.12. The enforcement of the Commission's standards of conduct shall be as follows:
- a. Concerns with respect to a member's conduct as a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directed to the Officers of the Commission who shall respond to those concerns, after consulting with the member.
 - b. If the eligibility of a member is questioned, the chairman shall rule on the member's eligibility. By majority vote the Commission may reverse the ruling of the chairman on the member's eligibility.
 - c. To maintain order and decorum at meetings the procedures and sanctions of *RONR* (10th ed.), p. 625,

상법위지침

- (2) 위원이, 한 위원으로 있는 동안 혹 위원으로 공천을 받은 후, 치리회의 진행 절차, 법적 결의, 혹 견해를 떠나서 다른 공적 진술을 하여, 진행 절차나 논쟁에 있어서 그 위원이 특정한 결과에 이르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판결 하도록 결단하고 있거나 결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
- (3) 위원, 위원의 배우자, 혹 그 둘 중의 하나에게 제삼의 관계 내에 있거나 그러한 사람의 배우자:
 - (ㄱ) 논쟁 중에 있는 일에 대하여 대표자로 봉사한 적이 있는 자;
 - (ㄴ) 그 일에 대한 증인이었던 자; 또는
 - (ㄷ) 소송건의 한 편 당사자인 치리회의 회원이거나 소송건에 있어서 노회 측에 소속되어 있는 회중의 교인인 자.

ㄴ. 이 장[의 규정] 아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위원은 그 위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 근거를 기록으로 밝혀야 한다.

2.11 전권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전권위원회 밖의 활동들이 [전권위원회] 직분의 의무와 상충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처신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한 시간을 확실하게 낼 수 있어야 한다. 위원은 위원의 자격을 자주 상실하도록 하는 활동들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2.12 전권위원회 품행의 표준이 강화된 것은 다음과 같다:

- ㄱ. 전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의 품행에 관한 우려는, 그 위원과 상의 한 후, 그런 우려에 대하여 응답해야 하는 전권위원회 임원들에게 돌려 진다.
- ㄴ. 만일 위원의 피선 자격에 의문이 있으면, 위원장이 위원의 피선 자격에 대해 판결한다. 다수표로 전권위원회는 동 위원의 피선 자격에 대한 위원장의 판결을 파기 할 수 있다.
- ㄷ. 회의에서 질서와 예절을 유지하게 위하여 새만통법 (제 10 판), 625 쪽 ㄷ. 10 부터 629 쪽 ㄷ. 29 까지의 절차들과 제재들이 전권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다. 단, 전권위원회는 위원의 권리들을 정지 시키거나 전권위원회에서 위원을 축출 할 수 없다.

SJC MANUAL

- l.10, through p. 629, l. 29, shall b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except that the Commission may not suspend the rights of membership or expel a member from the Commission.
- d. By a two-thirds vote the Commission may recommend to the General Assembly that a Commission member be removed from the Commission for cause. The recommendation shall include a brief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the recommendation.
 - e. Should the conduct leading to a recommendation that a member be removed from the Commission be potentially liable to censure under the Rules of Discipline, the Commission may include in its recommendation to the General Assembly a further recommendation that the grounds for removal be forwarded to the appropriate court of original jurisdiction for consideration under *BCO 31-2*.

상법위지침

- ㄴ. 전권위원회 삼분의 이의 투표로 전권위원회 위원을 [정당한] 사유로 전권위원회로부터 제명해 줄 것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상정안은 상정을 위한 근거에 대한 간략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 ㄷ. 전권위원회로부터 위원을 제명해 줄 것을 상정하도록 만들어 간 품행이 권징 조례 하에 징계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전권위원회는 총회에 올리는 그 상정안 안에 제명의 근거가 헌법 31-2 에 준한 고려를 요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원래 치리 관할권에 속하는 적절한 치리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는 추가 상정안을 포함 시켜야 한다.

3. OFFICERS AND THEIR DUTIES

- 3.1 Offic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elected from its membership and shall be a Chairman, Vice-Chairman, Secretary and Assistant Secretary.
- 3.2 These officers shall be elected annually at the March stated meeting and shall take office at the adjournment of the General Assembly.
- 3.3 After a member has served in the same offic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he is not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same office in the fourth year, but later may be elected to serve in the same office.
- 3.4 The Chairman shall preside at meetings and perform other duties assigned by the Commission.
- 3.5 The Vice-Chairman shall assist the Chairman and in his absence or incapacity shall fulfill his duties.
- 3.6 The Secretary shall record the minutes of the meetings and the votes of SJC and maintain the records of the Commission and perform other duties specified in this Manual and/or assigned by the Commission.
- 3.7 The Assistant Secretary shall assist the Secretary and in his absence or incapacity shall fulfill his duties. The Assistant Secretary shall report to the full SJC every other month the status of all cases.
- 3.8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hairman and Secretary,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the Clerk of the Commission. The Clerk of the Commission shall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on behalf of the Commission:
 - a. keep the records of the Commission;
 - b. perform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required under the Manual;
 - c. keep the records of and process all the regular correspondence and notices required by this Manual;
 - d. as requested by the SJC Officers or by the Clerks of the Presbyteries, advise the Stated Clerks of Presbyteries on

3. 임원들과 의무

- 3.1 전권위원회의 임원들은 전권위원회 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부서기가 된다.
- 3.2 이 임원들은 매년 3 월 정기 회의에서 선출되며 총회가 폐회 할 때 직무를 시작한다.
- 3.3 회원은 같은 직무를 3 년 계속해서 섬길 수 있으나, 4 년 째는 같은 직무를 위해서 재선 될 자격이 없다. 물론 그 후에 다시 같은 직무를 담당하도록 선출될 수도 있다.
- 3.4 위원장은 회의를 인도하고 전권위원회에서 부여한 다른 의무를 이행한다.
- 3.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그의 부재시 혹은 직무 능력 상실시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
- 3.6 서기는 상법위 회의록과 회의의 투표를 기록하며 전권위원회 회의록을 관리하고 이 지침서와/혹은 전권위원회에서 부여한 특정한 의무를 수행한다.
- 3.7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그의 부재시 혹은 직무 능력 상실시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서기는 모든 소송건들의 상황을 격월로 전체 상법위에 보고해야 한다.
- 3.8 위원장과 서기의 감독 아래, 기록 서기는 전권위원회의 서기가 된다.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전권위원회를 위해서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 ㄱ. 전권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관한다;
 - ㄴ. 이 지침서에 요구되어 있는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 ㄷ. 이 지침서에 요구되어 있는 모든 통상 서신과 통보서들을 기록 보관하며 처리한다;
 - ㄹ. 상법위 임원들에 의해서 혹은 노회의 서기들에 의해서 요청되었듯이, 소송 기록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양식과 절차에 관하여 노회 서기들을 조언한다.

SJC MANUAL

- matters of proper form and procedures in the preparation of the Record of the Case;
 - e. on behalf of the Officers, initially review the Record of the Case for each case before the Commission and make inquiries of the lower court in relation to any obvious technical errors or corrections; and
 - f.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directed by this Manual or the Officers of the Commission.
- 3.9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Manual to each new member of the Commission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he shall also send copies of any pending cases and papers presently before the Commission.
- 3.10 The Minutes of the Officers' Meetings are to be reported for review to each meeting of the full Commission.

상법위지침

- ㄱ. 임원들을 위하여, 우선 전권위원회에 앞서 각 소송건을 따라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명백한 기술적인 오류 혹은 수정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위 법정에 조회해야 하며,
- ㄴ. 이 지침서 혹은 전권위원회 임원들에 의해서 지시된 대로 그러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한다.

- 3.9 서기는 지침서의 복사본을 총회에 의해서 선출된 전권위원회의 새 회원들 각자에게 보내야 한다; 또 전권위원회 앞에 현재 계류 중인 소송건들과 관련된 문서들은 어떤 것이라도 복사해서 보내야 한다.
- 3.10 임원회 회의록은 전체 전권위원회가 모일 때 마다 검토 될 수 있도록 보고되어야만 한다.

4. MEETINGS

- 4.1 The annual stated meeting of the Commission shall be set to begin on the first Thursday of the month of March in each year. The annual meeting may be held by telephone conference call if, in the unanimous judgment of the officers, there is insufficient business to warrant a face-to-face meeting. A second stated meeting of the Commission shall be set to begin on the third Thursday of October in each year. The duration of these meetings shall be set by the Chairman in consultation with the other officers, as guided by the need to make the most efficient use of time, while not slighting the right of parties appearing to a fair hearing, and not restricting full and free deliberation on the part of the Commission. Ordinarily these stated meetings shall be scheduled to begin at 1 p.m. on Thursday and to conclude no later than noon on Saturday. The second stated meeting may be canceled if a majority of the Officers determine there is insufficient business to justify the meeting. Other business to be considered shall be governed by the procedure set out in Section 4.2.
- 4.2 In addition to the stated meetings specified in Section 4.1 , the Commission may hold special meetings, provided such special meetings shall be called by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to-wit:
- a. The Officers of the Commission may call a special meeting at any time upon at least 30 days' notice.
 - b. The Commission, at any stated meeting, may announce a call of a special meeting, provided the time and place is specified in the call. A notice of the call of the special meeting shall be sent immediately by the Stated Clerk to all absent Commission members.
 - c. If at least six Commission members request, in writing, a special called meeting, the Chairman and Secretary shall issue a call within 10 days from receipt of the request.

The call of a special meeting shall specify the business to be considered at the meeting, and no other business may be considered except by an affirmative vote of three-fourths of those members present and voting, which in no case shall be less than 13 affirmative votes of members of the Commission. Further, no action may be taken on any case not specified in the

4. 회의

4.1 전권위원회의 연중 정기 회의는 매년 삼월 첫 목요일에 시작해야 한다. 연중 정기 회의는 대면하여 회의를 할만한 정당한 안건이 없다고 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전화로 회의를 주재 할 수 있다. 전권위원회의 두 번째 정기 회의는 매년 10 월 셋째 목요일에 시작해야 한다. 이 회의들의 지속 시간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를 따라 위원장이 다른 임원들과 상의하여 정하되, 반면, 공정한 청문에 출석한 쌍방 당사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또 전권위원회 쪽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검토 심의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통상 이 정기 회의들은 목요일 오후 1 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정오까지는 마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만일 임원의 다수가 정당하게 회의를 소집하기에는 업무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하면 두 번째 정기 회의는 취소될 수 있다. 고려되어야 될 다른 업무들은 이 지침서 4.2 항에 정해져 있는 절차의 통제를 받는다.

4.2 4.1 항에 명시된 정기 회의들 외에, 전권위원회는 특별 회의들을 소집할 수 있고, 그러한 특별 회의가 소집되려면 다음 방법들 중의 하나를 통해서 소집되어야 한다. 즉:

- ㄱ. 전권위원회의 임원들은 적어도 30 일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면 어느 때라도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ㄴ. 전권위원회는 어느 정기 회의에서라도 구체적인 소집 장소와 시간을 명시해서 특별회의 소집을 통보할 수 있다. 특별회의 소집 통보는즉시로 서기가 결석한 모든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ㄷ. 만일 전권위원회 회원 중 적어도 여섯 명이 서면으로 특별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위원장과 서기는 요청서를 받은 때부터 10 일 내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

특별 회의의 소집은 회의에서 다루어질 안건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안건 이외의 다른 안건을 다루려고 하면, 투표해서 출석 회원 사분의 삼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전권위원회 회원 중 찬성 13 표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서, 소집시 명시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 임원들이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날자 14 일 전에 회의 소집을 우편이나 전자 수단으로 통보 했다면 추가 안건을 고려하여 소집 통보를 수정 할 수 있다.

SJC MANUAL

call. The Officers may amend the call for the consideration of additional business if notice thereof is sent by mail or electronic means to the Commission members no less than 14 day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No special meeting of the SJC shall be scheduled less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all is issued.

Any special called meeting under this Section 4.2 may be held by telephone conference call.

- 4.3 If under the Rules of this Manual a review or rehearing by the full Commission of a proposed decision by a Judicial Panel is required, the Officers shall place it on the docket at the next stated meeting.

상법위지침

상법위 특별 회의는 소집이 공고된 날 이후부터 30일 이내로 일정을 잡을 수 없다.

이 4.2 항 하에 소집된 어떤 특별 회의도 전화 회의로 주재 될 수 있다.

- 4.3 만일 이 지침서의 규칙 하에서 법사 심사단이 상정한 결정을 전체 전권위원회가 재검토 혹 재청문하기로 요청하면, 임원들은 그것을 차기 정기 회의 자료철에 포함 시켜야 한다.

5. EXPENSES

- 5.1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Commission, its panels, and its members shall be borne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All expenses (including travel expenses) incurred by a party or by the witnesses called by that party shall be borne by that party.

- 5.2 The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notification and expenses of their own witnesses.

5. 지출

- 5.1 전권위원회, 전권위원회 심사단, 또 전권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야기된 지출은 총회 행정 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당사자 혹은 당사자에 의해서 소환을 받은 증인에 의해서 야기된 (여행비 지출을 포함한) 모든 지출은 해당 당사자가 담당해야 한다.
- 5.2 쌍방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증인들의 통보와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QUORUM

- 6.1 A quorum for the transaction of business at any meeting of the Commission shall be 13 qualified members, composed of at least 5 teaching elders and at least 5 ruling elders.

- 6.2 A quorum for the transaction of business at any meeting of a Judicial Panel appointed hereunder shall be the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Judicial Panel appointed as principals.

6. 정족수

- 6.1 전권위원회의 어느 회의든 안건 처리를 위한 정족수는 적어도 5인 이상의 목사 장로와 5인 이상의 처리 장로로 구성된, 자격 있는 13인의 위원들이다.
- 6.2 전권위원회 아래 임명된 법사 심사단의 어느 회의든 안건 처리를 위한 정족수는 주 심사단원들로 임명된 법사 심사단의 단원수가 되어야 한다.

7. THE RECORD OF THE CASE

- 7.1 The Record of the Case shall be prepared by the Clerk of the lower court and shall be submitted to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 7.2 Content
- a. The Record of the Case in an Appeal shall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BCO* 32-18 and 42-5 which shall include:
- (1) a copy of all proceeding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such as the Minutes of the trial before the lower court, the charges, answers, citations and returns;
 - (2) the notice of appeal and reasons therefor;
 - (3) all transcribed testimony actually taken before the lower court (*BCO* 35-7). Audio and/or video recordings shall not be admissible or be made a part of the Record of the Case unless the same have been transcribed and authenticated by the Moderator and Stated Clerk of the lower court (*BCO* 35-8);
 - (4) the response of the lower court in its actions, orders, decisions and judgment;
 - (5) any papers bearing on the case.
- b. The Record of the Case in a Complaint shall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BCO* 32-18 and 43-6 which shall include:
- (1) a copy of all the lower court's proceedings in connection with the complaint, including the notice of complaint and supporting reasons and Minutes of any hearing;
 - (2) the response of the lower court, its acts, orders, decisions and judgment;
 - (3) all transcribed testimony actually taken before the lower court (*BCO* 35-7). Audio and/or video recordings shall not be admissible or be made a part of the Record of the Case unless the same have been transcribed and authenticated by the Moderator and Stated Clerk of the lower court (*BCO* 35-8);
 - (4) any papers bearing on the complaint.

7. 소송 기록

7.1 소송 기록은 하위 법정의 서기가 준비해야 하고 기록 서기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7.2 내용

ㄱ. 상소 소송 기록은 교회 헌법 32-18 과 42-5 에 준하여 준비 되어야 하고 아래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1) 하위 법정 앞에서 시행된 재판 기록, 고소 내용, 답변, 인용과 회신들과 같은 소송건에 연관된 모든 진행 서류들의 사본 일부;
- (2) 상소 공문과 그 이유;
- (3) 하위 법정에서 실제로 취해진 모든 증언의 필사본 (교회 헌법 35-7). 녹음과/또는 비디오 기록은 하위 법정의 의장과 기록 서기에 의해서 동일한 녹음과/또는 비디오 내용이 사본화 되어지고 인준 되어진 것이 아닌 한 소송 기록의 일부로 받아 드러지거나 만들어 질 수 없다(교회 헌법 35-8);
- (4) 하위 법정의 조치, 지시, 결정과 판결에 있어서 하위 법정의 대처 내용;
- (5) 소송건에 관계된 모든 문서.

ㄴ. 원고의 소송 기록은 교회 헌법 32-18 과 43-6 에 준하여 준비되어야 하고 알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1) 고소 통보서와 뒷받침하는 이유와 모든 청문회 기록을 포함하여, 고소에 연관된 모든 하위 법정의 진행 서류들의 사본 일부;
- (2) 하위 법정의 조치, 지시, 결정과 판결에 있어서 하위 법정의 대처 내용;
- (3) 하위 법정에서 실제로 취해진 모든 증언의 필사본 (교회 헌법 35-7). 녹음과/또는 비디오 기록은 하위 법정의 위원장과 기록 서기에 의해서 동일한 녹음과/또는 비디오 내용이 사본화 되어지고 인준 되어진 것이 아닌 한 소송 기록으로 받아 드러지거나 그 일부로 만들어 질 수 없다 (교회 헌법 35-8);
- (4) 고소에 관계된 모든 문서.

- 7.3 The Stated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Record of the Case to
- a.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f the case is to be heard by the Commission, or to the members of the Judicial Panel and to the alternate members of the Judicial Panel if the case is to be heard by a Judicial Panel; and
 - b. the parties to the case. The Stated Clerk shall notify the parties that the *SJC Manual* is printed as an appendix to the *Book of Church Order*.
- 7.4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examine the Record of the Case. Corrections to the Record of the Case may be submitted as follows:
- a. If a party objects to the record as being incorrect or defective, such party shall notify the Stated Clerk by mail or electronic means within 15 days of the date of receiving of such Record of the Case from the Stated Clerk. Any party so objecting shall specify, in writing, the alleged defects and suggestions for the corrections that should be made. Such party shall send a copy of the objections by mail or electronic means and suggested corrections to the other party to the case. Failure to lodge a timely objection to the record of the case will constitute acceptance of the record of the case by the parties.
 - b. If the other party shall agree to the suggested corrections, such corrections shall be reduced to writing, stipulated to by the parties and made a part of the Record of the Case. Such stipulation shall be filed by mail or electronic means with the Stated Clerk not more than 30 days after the date the last party received such Record of the Case from the Stated Clerk.
 - c. If the parties do not agree on the correction, the hearing will be postponed, and the Stated Clerk shall remit the Record of the Case to the Clerk of the lower court, together with the party's objections and suggested corrections. The Clerk or the Representative of the lower court shall reply promptly to these objections within 10 days of receipt of the notice of objections and corrections.

상법위지침

7.3 기록 서기는 소송 기록의 사본 일부를

- ㄱ. 만일 소송건이 전권위원회에서 청문되어야 할 것이면 전권위원회 회원들에게 우송해야 하고, 또 만일 소송건이 법사 심사단에서 청문되어야 할 것이면 법사 심사단 회원들에게와 법사 심사단의 대체 회원들에게 우송해야 한다; 또
- ㄴ. 소송 당사자들에게 우송해야 한다. 기록 서기는 상법위지침서가 교회 헌법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7.4 당사자들은 소송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소송 기록을 교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 ㄱ. 만일 당사자가 기록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해 당사자는 기록 서기로부터 소송 기록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기록 서기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해 당사자는, 서면으로, 주장하고 있는 오류와 바로 잡아져야만 할 정정안에 대한 제안을 명시 할 것이다. 해 당사자는 이의안 사본 일부와 제안된 정정안 사본 일부를 소송건에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에게 우송해야 한다. 소송 기록에 대한 이의를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소송 기록은 쌍방에 의해서 받아 드러진 것으로 성립된다.
- ㄴ. 만일 상대방 당사자가 제안된 정정안에 동의하면, 그 정정안은 반드시 서면 제출 되어야 하고, 당사자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하고 소송 기록의 일부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규정은 마지막 당사자가 기록 서기로부터 그러한 소송 기록을 받은 날 이후부터 30 일 이 전에 기록 서기에게 접수 되어야 한다.
- ㄷ. 만일 당사자들이 정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연기되고, 기록 서기는, 당사자의 이의와 제안된 정정안과 함께, 소송 기록을 하위 법정의 서기에게 돌려 줄 것이다. 하위 법정의 서기 혹은 대표는 이의와 정정안에 대한 통지서를 접수한 때부터 10 일 내에 이런 이의들에 대해서 신속히 회신해 주어야 한다.

SJC MANUAL

- d. If the Clerk of the lower court fails to reply or refuses these objections or certifies to the correctness of the Record of the Case as submitted, the full Commission or the Judicial Panel may consider proof of the error as submitted by the party, hear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make a decision as to whether in fairness and justice the Record of the Case should be corrected.
- e. The full Commission or the Judicial Panel may extend any of the deadline dates in this section if it determines that so doing is in the interest of justice.

상법위지침

- ㄷ. 만일 하위 법정의 서기가 이런 이의에 대해서 회신 해 주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혹은 소송 기록의 정정안을 제출된 대로 인증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전체 전권위원회 혹은 법사 심사단이 당사자에 의해서 제출된대로 오류의 증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서, 쌍방의 논증을 듣고, 소송 기록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정정되어야만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 할 수도 있다.
- ㄹ. 전체 전권위원회 혹은 법사 심사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되든 최종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공의를 세우는 일에 유익하다고 하면 어느 건에 대해서나 최종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8. BRIEFS

8.1 Preliminary Briefs

- a. Once the Record of the Case is established only one preliminary brief may be submitted through the Stated Clerk before the initial hearing by a Panel or the Full Commission, whichever is hearing the case. Any preliminary brief from a Complainant or Appellant shall be filed after the Panel has declared the case judicially in order and no later than 14 days after he receives the established (perfected) ROC. The Stated Clerk immediately shall mail a copy of this brief to the Respondent or Appellee. Any preliminary brief from a Respondent or Appellee must be filed no later than 14 days prior to the date set for the hearing of the case.
- b. Such a preliminary brief should include the party's position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 (1) A summary of the facts.
 - (2) A summary of the proceedings in the lower court(s).
 - (3) A statement of the issues.
 - (4) The proposed judgment and relief.
 - (5) Argument in support of judgment and relief.

8.2 Supplemental Briefs

A supplemental brief may be filed only when the case initially has been heard by a panel. Within 14 days after a party has received a proposed and recommended decision of a Judicial Panel under SJCM 17.5 of this Manual, that party may file with the Stated Clerk a supplemental brief which shall be limited to setting forth errors the party believes were made in the proposed and recommended decision of the Panel or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SJCM 17.9.a.

- 8.3 No brief of a party shall make any reference to any fact not a part of the Record of the Case. The Panel or Commission may, at its discretion, strike all or part of a brief that makes such reference.

8. 소송 개요

8.1 예비 소송 개요

- ㄱ. 일단 특정 소송건의 기록이 성립되면 단 한 번의 예비 소송 개요가 기록 서기를 통해서, 어느 쪽이 청문을 하게 되든, 심사단 혹은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한 일차 청문회 앞으로 제출 될 수도 있다. 고소인 혹은 상고인의 예비 소송 개요는 어떤 경우든지 심사단이 해당 소송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선언한 후 당사자가 확립된 (완성된) 소송 기록을 접수한 때부터 늦어도 14 일 이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기록 서기는 즉시로 이 소송 개요의 사본 일부를 피고소인 혹은 피상소인에게 우송해야만 한다. 피고소인 혹은 피상고인의 예비 소송 개요는 어떤 경우든지 소송 청문회를 위해서 정해진 날로부터 적어도 14 일 이전에 접수시켜야 한다.
- ㄴ. 그러한 예비 소송 개요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포함해야만 한다:
 - (1) 사실 요약 일부.
 - (2) 하위 법정(들)의 진행 내용 요약 일부.
 - (3) 안건 진술서 일부.
 - (4) 제시된 판결과 사면.
 - (5) 판결과 사면을 뒷받침하는 논증.

8.2 보조 소송 개요

보조 소송 개요는 특정 소송건이 일차적으로 심사단에 의해서 청문되었을 때만 접수 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상법위지침서 17.5 항에 준하여 법사 심사단이 제시하고 추천한 결정을 통보 받은 날 이후로부터 14 일 이내에 보조 소송 개요를 기록 서기에게 접수 시킬 수도 있는데 이 보조 소송 개요는 당사자가 법사위지침서 17.9.ㄱ에 준하여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가 제시하고 추천한 결정이 오류를 범했다고 믿는 오류들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 8.3 당사자의 소송 개요는 소송 기록의 일부가 아닌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는, 그 재량에 따라,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 소송 개요 전체 혹은 일부를 삭제할 수도 있다.

SJC MANUAL

- 8.4
- a. Any brief filed hereunder must be typewritten or printed on 8-1/2 x 11 inch paper, with no smaller than 10 point type, with 1 inch margin on all sides, and may be single spaced.
 - b. The preliminary brief filed by a party shall not exceed 10 pages in length. Any supplemental brief filed by a party shall not exceed 5 pages in length.
 - c. Any brief timely filed which does not meet these standards of form shall be returned to the sending party with reasons. In this case a revised brief may be submitted provided that such brief is filed with the Stated Clerk within 5 days of notification that the brief does not meet the standard of form.
- 8.5 Failure to file a brief by a party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abandonment of the case.

상법위지침

- 8.4
- ㄱ. 어떤 소송 개요이든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규격이 8-1/2x11 인 용지에 타이프되거나 인쇄된 것으로서, 글자체가 10 포인트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사방 여백이 1 인치여야만 하나, 줄의 간격이 한 줄일 수는 있다.
 - ㄴ. 당사자에 의해서 접수된 예비 소송 개요는 길이가 10 쪽을 초과 할 수 없다. 당사자에 의해서 접수된 보조 소송 개요는 어떤 경우라도 길이가 5 쪽을 초과 할 수 없다.
 - ㄷ. 시간 내에 접수된 소송 개요라도 양식이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 사유와 함께 개요를 보낸 당사자에게 돌려 보내질 것이다. 이 경우, 교정된 소송 개요가 제출될 수도 있는데 소송 개요가 양식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통지서를 보낸 날부터 5 일 이내에 기록 서기에게 그러한 소송 개요가 접수되었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 8.5 당사자에 의해서 소송 개요가 접수 되지 못한 것은 소송건의 포기라고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9. ADMINISTRATIVE PROCEDURE

- 9.1 When a judicial case is submitted to the Commission, the Officers shall make an initial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case is administratively in order.
- a. A case is administratively in order if the relevant provisions of *BCO* 41, 42, and 43 have been followed. If the Chairman and Secretary cannot agree, it shall be submitted to the Officers. If a majority of the Officers cannot agree, then it shall be submitted to the full Commission at its next meeting.
 - b. A case is judicially in order when a Panel or the Commission determine that the relevant provisions of *BCO* 41, 42, and 43 have been followed and the documents for the Record of the Case are in order in accordance with *SJCM* 7.2.
- 9.2
- a. If a case is initially found not to be administratively in order, the Stated Clerk shall contact the relevant parties or clerks and request that the case be put in order.
 - b. If a case cannot be put in order within the Rules of Discipline of the *BCO* and the requirements of this Manual, or
 - c. If the parties fail to put the case in order within 30 days after notification under this Section of the Manual,
 - d. Then the Officers of the Commission may make a determination that the case not be found in order and take no further action in relation to the case other than to recommend to the next meeting of the Commission that the case be dismissed on the ground that the case was not found in order.
- 9.3 When the case is administratively in order, the Officers shall determine whether the case is of such significance that it should be heard by the full Commission or submitted to a Judicial Panel. Ordinarily, it will be submitted to such a Judicial Panel.
- 9.4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case should be heard by the Full Commission, the parties shall be notified and a full copy of the Record of the Case shall be sent to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When the Record of the Case has been perfected under *SJCM* 7, and when the parties have had opportunity to file

9. 행정 절차

- 9.1 재판 소송건이 전권위원회 앞으로 제출 되었을 때, 임원들은 그 소송건이 행정적으로 법적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일차 결정을 내려야 한다.
- ㄱ. 소송건이 만일 교회 헌법 41, 42 와 43 의 관련된 규정이 지켜져 왔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 만일 위원장과 서기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임원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임원의 다수가 동의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전권위원회의 다음 회의에서 전체 전권위원회 앞에 제출 되어야 한다.
 - ㄴ. 소송건은 심사단 혹 전권위원회가 교회 헌법 41, 42 와 43 의 관련된 규정이 지켜져 왔고 소송 기록을 위한 문서들이 위의 상법위지침서 7.2 항에 준하여 하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 사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 9.2
- ㄱ. 만일 소송건이 일차적으로 행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기록 서기는 관련된 당사자 혹은 서기들에게 연락해서 그 소송건이 하자가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ㄴ. 만일 소송건이 교회 헌법의 권징조례와 이 지침서의 요구 안에서 하자를 없이 할 수 없으면,
 - ㄷ. 만일 당사자들이 지침서의 이 항을 따라 통보 받은 지 30 일 이내에 소송건을 하자 없이 만들지 못하면,
 - ㄹ. 전권위원회 임원들은 소송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결정하고 차기 전권위원회 모임에 그 소송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 근거 위에서 소송건이 기각되었다고 하는 것을 권고 하는 것 이외에 그 이상 소송건과 관계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 9.3 소송건이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임원들은 그 소송건이 전체 전권위원회에서 청문되어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혹은 법사 심사단에게 제출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은, 소송건이 거기에 해당하는 법사 심사단에게 제출된다.
- 9.4 만일 소송건이 전체 전권위원회 앞에서 청문되어야만 한다고 결정되면, 쌍방 당사자들은 그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될 것이고 소송 기록의 전체 사본 일부가 전권위원회 회원 각자에게 보내 질 것이다. 소송 기록이 상법위지침서

SJC MANUAL

briefs under SJCM 8.1, the case shall be docketed for hearing by the Full Commission at its next stated meeting, or at a called meeting set to hear the case.

- 9.5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case should be heard by a Judicial Panel, the Officers shall immediately appoint such a Judicial Panel in accordance with *RAO* 17.3.

상법위지침

7 항에 따라 완료되었을 때, 또 쌍방 당사자들이 상법 위지침서 8.1 항에 따라 소송 개요들을 접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을 때, 소송건은 차기 정기 회의에서, 혹은 그 소송건을 청문하도록 정해진 임시 회의에서,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하여 청문회를 갖도록 회의 자료철에 삽입 될 것이다.

- 9.5 소송건이 법사 심사단에 의해서 청문 되어야만 한다고 결정되면, 임원들은 총운세 17.3 에 준하여 즉시로 그러한 법사 심사단을 임명해야 한다.

10. JUDICIAL PANELS

- 10.1 Ordinarily, a Judicial Panel should consist of three qualified members of the Commission, which should include at least one teaching elder and one ruling elder. In more serious cases, larger panels may be appointed with an approximately equal balance between teaching and ruling elders.
- 10.2 At least one ruling elder and at least one teaching elder shall be named as alternates for each Judicial Panel. An alternate will not be expected to attend the meeting of the Judicial Panel unless he is needed to meet the quorum.
- 10.3 When a Judicial Panel is appointed, one member thereof shall be designated as “Convener.” The Convener may make initial contact with the parties:
- a. to obtain information for the initial meetings of the Panel;
 - b. to answer initial questions by the parties;
 - c. to answer questions of the parties concerning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written briefs.
- 10.4 **CONSTITUTING MEETING.** Within 10 days of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Record of the Case from the Stated Clerk, the Convener shall call a meeting of the Judicial Panel members. This first meeting may be held by telephone conference call. At this first meeting, the Judicial Panel shall organize itself by:
- a. the election of a Chairman;
 - b. the election of a Secretary;
 - c. the selection of a tentative time and place for hearing the case;
 - d. such other organizational matters as would speed the time of hearing without prejudicing the rights of any of the parties.
- 10.5 **INITIAL MEETING.**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Record of the Case under SJCM 7.3, and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SJCM 7.4, the Chairman of the Panel may call a second meeting of the Judicial Panel members, which meeting may also be held by a telephone conference call. This second meeting may form part of the first organizational meeting of the

10. 법사 심사단

- 10.1 통상, 법사 심사단은 전권위원회의 자격 있는 회원 3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속에는 적어도 한 사람의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확대 심사단이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 간에 거의 동등한 수로 임명될 수도 있다.
- 10.2 각 법사 심사단을 위해서 적어도 한 사람의 치리 장로와 한 사람의 목사 장로가 대체인으로 지명되어야 한다. 대체인은 정족수를 충족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 한 법사 심사단 회의에 참석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 10.3 법사 심사단이 임명된 때, 그 중 한 회원은 “소집책”으로 지명될 것이다. 소집책은 쌍방 당사자들과 일차적인 접촉을 하여;
- ㄱ. 심사단의 일차적인 회의를 위한 정보를 입수 하고;
 - ㄴ. 쌍방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일차적인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고;
 - ㄷ. 서면으로 소송 개요를 준비하는 것과 제출하는 것에 관련된 쌍방 당사자들의 질문들을 대답해 준다.
- 10.4 **회의 구성.** 기록 서기에게서 소송 기록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소집책은 법사 심사단 회원들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 첫번째 회의는 전화 회의 소집으로 개최될 수도 있다. 이 처음 회의에서 법사 심사단은 다음과 같은 자체 준비를 한다:
- ㄱ. 위원장 선출;
 - ㄴ. 서기 선출;
 - ㄷ. 소송건을 청문하기 위한 임시 시간과 장소 선정;
 - ㄹ. 당사자 어느 측의 권리에 대해서도 편견이 없이 청문회의 시간을 속히 진행 시킬 수 있는 여타 조직적인 일들.
- 10.5 **일차 회의.** 상법위지침서 7.3 항에 준하여, 또 상법위지침서 7.4 항의 요구에 순복하여, 소송 기록을 받은 이후 늦어도 30 일 이내에, 심사단의 단장은 법사 심사단 회원들의 이차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 회의 역시 전화 회의 소집으로 주재 될 수 있다. 이 이차 회의는 만일 상법위지

Judicial Panel referred to under SJCM 10.4 if the requirements of SJCM 7.4 have been met. The purpose of this second meeting shall be to determine if the case is judicially in order and ready for hearing. This review shall include:

- a. that the case was timely filed as provided in *BCO* 42-3 and 43-2;
- b. in the case of a complaint, that the complaint was first filed with the Court whose act or decision is alleged to be in error (*BCO* 43-2);
- c. that a ground or reason has been specified as required by *BCO* 42-3 and 43-2;
- d. that the parties have complied with the Rules of Discipline of the *BCO* and this Manual;
- e. that the Record of the Case appears to be complete and sufficiently documented.

10.6 If the Judicial Panel determines that a case is not judicially in order, the Panel through the Stated Clerk shall notify the parties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cure the defect, if it can be cured within the Rules of Discipline of the *BCO* and the requirements of this Manual. If the defect is cured within 30 days from receipt of such notice, the Panel shall proceed to hear and adjudicate the case. If significant defects are not cured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notice then the Panel may make a determination that the case not be found in order and take no further action in relation to the case other than to recommend to the next meeting of the Commission that the case be dismissed on the ground that the case was not found in order. If the decision of the Panel is not confirmed by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may return the case to the Panel, or may appoint a new Panel in accordance with *RAO* 17.3 to hear and adjudicate the case, or may decide to hear the case as the Full Commission.

10.7 When the Judicial Panel determines that the case is judicially in order, the Chairman of the Judicial Panel shall take the following actions:

- a. Set a date and time and, if necessary, a place for a hearing of the case, making every reasonable effort to obtain such date and time and or place as may be agreeable to all parties. A panel hearing will normally be held by electronic conference unless a member of the panel determines that the nature of the case warrants a face-to-face hearing.

상법위지침

침서 7.4 항의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하면 상법위지침서 10.4 항에 준하여 언급된 대로 법사 심사단의 첫번째 조직 회의의 일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 이차 회의의 목적은 소송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청문회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있다. 이 검토 회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ㄱ. 소송건이 교회 헌법 42-3 항과 43-2 항에 제시된 대로 적시에 접수 되었는가 여부;
- ㄴ. 고소의 경우, 고소가 법정의 조치나 결정이 오류가 있다고 주장된 법정에 먼저 접수되었는가 여부 (교회 헌법 43-2).
- ㄷ. 교회 헌법 42-3 항과 43-2 항이 요구하는 대로 근거나 이유가 명시되어 왔는가의 여부;
- ㄹ. 쌍방 당사자가 교회 헌법의 권징 조례와 이 지침서에 순응하고 있는가의 여부;
- ㅁ. 소송 기록이 완료되었고 충분히 문서화 되어 있는가의 여부.

10.6 만일 법사 심사단이 소송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결정하면, 심사단은 기록 서기를 통해서 쌍방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만일 교회 헌법의 권징조례와 이 지침서의 요구 안에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미비한 점을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미비한 점이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보완되었다면, 심사단은 소송건의 청문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심각하게 미비한 점이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심사단은 소송건이 하자를 드러낸 것으로 결정하고 그 소송건이 하자를 드러냈다고 하는 근거 위에서 기각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권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권고한다고 하는 것 이외에 소송건과 관련된 조치는 아무 것도 더 취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심사단의 결정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확증되지 않았다면, 전권위원회는 소송건을 심사단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그 소송건을 청문하고 재판하도록 총운세 17.3 에 준하여 새로운 심사단을 임명하거나, 그 소송건을 전체 전권위원회에서 청문하도록 결정 할 수도 있다.

10.7 법사 심사단은 소송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결정 할 때, 법사 심사단 단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ㄱ. 소송건 청문을 위한 날짜와 시간, 필요시, 장소를 정하되, 쌍방 당사자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날짜와 시간과 혹은 장소를 확보하도록 타당성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심사 청문은 심사 위원 중 누가 이 해당 소송건의 성격이 대면하여 청문할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전산 회의로 개최된다.

- b. Notify all parties of such time and place of hearing by letter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 or by electronic means. If by letter, such notice shall be mailed not less than 40 days prior to the date of hearing. If by electronic means, such notice shall be sent not less than 40 days prior to the date of hearing and there must be a receipt of acknowledgement in the file from each party. Such 40 day period may be shortened if the parties to the case agree in writing.
- c. Notify all parties of their right to submit written briefs, in accordance with SJCM 8. A written brief must comply with SJCM 8.3 and following.
- d. Notify all parties of their right to represent themselves or to be represented at the hearing in accordance with *BCO* 32-19, 42-10 or 43-5, as the case may be.

10.8 Initial Procedures for Hearings before a Judicial Panel or Full Commission

- a. At the time and place set for a hearing of the case, the Chairman shall call the Judicial Panel or the Full Commission to order and proceed as follows:
 - (1) Prayer should be offered by a member of the Panel or Commission.
 - (2) All Panel or Commission members shall be polled to certify that they have read the Record of the Case and all briefs timely filed
Any member who cannot so certify shall not participate in any aspect of the proceedings, including deliberations and voting on the case, unless such member can become qualified after a postponement of the hearing.
 - (3) The Chairman shall enjoin the Panel or Commission members to recollect and regard their high character as judges of a court of Jesus Christ and the solemn duty in which they are about to engage (*BCO* 32-12).
- b. Furthermore, the Chairman shall:
 - (1) Remind the Panel or Commission Members that they should disregard all evidence not in the Record of the Case (*BCO* 32-18); even though

상법위지침

- ㄴ.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청문을 위한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회신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서신이나 전자 수단으로 통보해야 한다. 서신이라면, 그러한 통보서는 청문 일자로부터 늦어도 40 일 이전에 우송되어야 한다. 전자 수단이라면, 그러한 통보서는 청문 일자로부터 늦어도 40 일 이전에 보내져야 하고 서류 상 각 당사자가 보내 온 접수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40 일의 기간은 만일 소송건의 쌍방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단축될 수도 있다.
- ㄷ. 쌍방 당사자들에게, 상법위지침서 8 항에 준하여, 서면으로 된 소송 개요를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서면으로 된 소송 개요는 반드시 상법위지침서 8.3 항과 다음 사항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 ㄹ. 쌍방 당사자들에게, 소송건에 따라, 헌법 32-19, 42-10 혹은 43-5 에 준한 청문시,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대표하거나 혹은 대표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10.8 법사 심사단 혹은 전체 전권위원회 앞에서 청문을 위한 일차 절차들

- ㄱ. 소송건의 청문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위원장은 법사 심사단 혹은 전체 전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 (1) 반드시 심사단 단원 혹은 전권위원회 위원이 기도를 한다.
 - (2) 심사단원 또는 전권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소송 기록과 적시에 접수된 모든 소송 개요를 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투표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 읽은 것을 증명 할 수 없는 위원은, 청문이 연기 된 후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소송건에 관한 심의 토론과 투표를 포함하여, 진행 절차의 어떤 측면에도 참가 할 수 없다.
 - (3) 위원장은 심사단 단원 또는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회의 재판장들로서의 자신들의 고결한 성품과 그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엄중한 의무를 상기시키고 주목하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여야 한다 (헌법 32-12).
- ㄴ. 나아가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여야 한다:
 - (1) 심사단 단원 또는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송 기록에 없는 모든 증거에 동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헌법 32-18); 그런 증거가 쌍방 당사자들의 소송 개요 또는 구두 주장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상법위지침서 8.3 을 보라).

such evidence may be found in the briefs of the parties or in oral argument (See SJCM 8.3).

- (2) Read to the Panel or Commission members the principles of Review set forth in *BCO* 39-3.
- (3) Read to the Panel or Commission members the vows each affirmed when elected to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RAO* 17-1).

10.9 DURING THE HEARING:

- a.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shall be heard in the following order:
 - (1) the Appellant makes the opening arguments;
 - (2) the Appellee then replies
 - (3) The Appellant makes the closing argument.
- b. After the hearing shall have been opened and the initial requirements of *BCO* 42-8 met, but before any arguments of the parties have been presented, the members of the Panel or Commission shall have the opportunity to question the parties on any matter before the court.
- c. A party shall have a maximum of 30 minutes to argue his case before the Panel or Commission (and in the case of the Appellant, this 30 minutes is inclusive of both his opening and closing arguments.)
- d. At any time during which a party is presenting an argument to a Panel or the Commission, a member of the Panel or Commission may ask questions of that party; the time taken for such questions shall not form a part of the argument time of the party questioned.

10.10 AFTER THE ORAL ARGUMENTS. A Judicial Panel immediately after hearing the oral arguments of the parties, shall go into closed session and discuss the issues in the case. In that discussion, the Panel may (1) frame the issues, (2) vote on a judgment and (3) announce these to the parties. Or, the Panel may take all these matters under advisement and reconvene within the next 20 days, as often as necessary, to frame the issues and render a judgment. This "reconvening" may be held by telephone conference call. The Chairman of the Panel shall designate a Panel member voting with the majority to prepare a written decision. This decision shall be mailed or sent by electronic means to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within 40 days from the date the Panel heard the oral arguments. Any Panel member may file, within said 40 day period, a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which shall be appended to the decision.

- (2) 심사단 단원들 또는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헌법 39-3 에 규정된 검토 원리들을 읽어 주어야 한다.
- (3) 심사단 단원들 또는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상임 법사위원회로 선출되었을 때 각자가 확증했던 서약들을 읽어주어야 한다 (총운세 17-1).

10.9 **청문 진행 중:**

- ㄱ. 쌍방 당사자들의 주장은 다음 순서를 따라 듣게 된다:
 - (1) 상고인이 시작하는 논증을 한다.
 - (2) 피상고인이 그 다음에 대응한다.
 - (3) 상고인이 마치는 논증을 한다.
- ㄴ. 청문이 시작되고 교회 헌법 42-8 의 일차적인 요구가 충족된 후, 그러나 쌍방 당사자들의 어떤 논증이 제출되기 이전에,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의 회원들은 쌍방 당사자들에게 법정에서 제출된 어떤 관건에 관한 것이라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ㄷ. 당사자는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앞에서 자신의 소송건을 위하여 최고 30 분까지 논증할 수 있다 (그리고 상고인의 경우에는, 이 30 분이 자신의 시작하는 논증과 마치는 논증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 ㄹ. 당사자가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앞에서 논증하는 동안에는 어느 때든지,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회원은 그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질문을 위해서 소요된 시간은 질문을 당한 당사자의 논증을 위한 시간의 일부가 될 수 없다.

10.10

구두 논증 이후, 법사 심사단은 쌍방 당사자들의 구두 논증을 청문한 이후 즉시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송건의 안건들을 토론해야 한다. 그 토론에서 심사단은 (1) 안건의 틀을 잡고, (2) 판결 투표를 하고, (3) 쌍방 당사자들에게 이것들을 선언할 수 있다. 아니면, 심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더 숙고하기로 하고 안건들의 틀을 잡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다음 20 일 이내에, 필요한 것만큼 자주, 재 소집할 수 있다. 이 “재소집”은 전화 회의 소집으로 개최될 수도 있다. 심사단의 단장은 서면으로 결의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심사단의 한 회원을 다수표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심사단이 구두 논증을 청문한 그날부터 40 일 이내에 총회 기록 서기앞으로 우송되어야 한다. 심사단 회원 중 누구라도, 이미 언급된 40 일 기간 이내에, 동의하는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을 접수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결의안에 첨부되어야 한다.

- 10.11 a. When a Judicial Panel has reached a decision in a case, the Chairman or Secretary of the Judicial Panel shall prepare a full report of the case and mail or send by electronic means the same to the Stated Clerk, who shall forward, immediately, a copy of the full report to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Thi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1) The Record of the Case.
 - (2) The proposed and recommended decision in the following format:
 - I. A Summary of the Facts. (A presentation in chronological order of the relevant history and facts that bear on the case.)
 - II. A Statement of the Issues. (A concise framing by the Court of the specific issues being judged in the case.)
 - III. The Judgment. (A definite conclusion rendered on the specific issues being adjudged.)
 - IV. The Reasoning and Opinion of the Court. (The explanation by the court of the resolution of disputed facts and reasons for the judgment rendered.)
 - (3) Any timely filed written briefs of the partie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JCM 8.
 - (4) A copy of the minutes of the meetings of the Judicial Panel.
 - (5) Any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of a Panel member.
 - (6) Any dissenting Panel member's request for rehearing by the full Commission, appending reasons therefor which must be submitted to the Stated Clerk within 20 days after the Panel's decision.
 - (7) Any request for a rehearing by a party.
- b. Any audio tape of the oral arguments of the parties is not a part of this report; but any Commission member may obtain a copy thereof from the Stated Clerk, if available. Any such tapes are for the sole use of SJC.

상법위지침

- 10.11 ㄱ. 법사 심사단이 소송건에 대한 결의안에 합의했을 때, 법사 심사단 단장 혹은 서기는 소송건에 대한 전체 보고서 준비하고 그것을 기록 서기에게 우송하든가 또는 전자 수단으로 동 내용을 기록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기록 서기는 즉시로 전체 보고서의 사본 일부를 전권위원회 각 회원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소송 기록
 - (2) 상정되고 추천된 결의안은 다음 양식으로:
 - I. 사실의 요약. (소송건에 영향이 있는 관련된 역사와 사실의 연대기적 순서로 제출된 것.)
 - II. 안건들의 진술. (소송에서 판결된 구체적인 안건들을 간단한 법정 양식으로 만든 것.)
 - III. 판결. (재판되어진 구체적인 안건들에 내려진 최종 결론.)
 - IV. 법정의 논리와 의견. (쟁점이 되었던 사실들에 대한 해소와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들에 대한 법정의 설명.)
 - (3) 상법위지침서 8 항의 요구들을 충족 시키면서 적시에 접수된 쌍방 당사자들의 서면 소송 개요 일체.
 - (4) 법사 심사단의 회의 기록 사본 일부.
 - (5) 심사단 회원의 동의하는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 일체.
 - (6) 견해를 달리하는 심사단원의 전체 전권위원의 재청문 요청은 그것을 위한 사유들을 첨부하여, 심사단의 결정 이후 20 일 이내에 기록 서기에게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한다.
 - (7) 한 당사자의 재청문을 위한 요청 일체.
- ㄴ. 쌍방 당사자들의 구두 논증의 녹음 테이프는 어느 것도 이 보고서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전권위원회 회원 누구라도, 만일 유여하다면, 그 사본 일부를 기록 서기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그러한 테이프는 상법위의 독자적인 사용 용도만을 위한 것이다.

11. HEARING BY THE FULL COMMISSION

- 11.1 Where it is determined under SJCM 9.3 that a judicial case should be heard by the full Commission, the officers of the Commission shall first determine whether the case is judicially in order and ready for hearing. This review may be done by a telephone conference call and shall include:
- a. that the case was timely filed as provided in *BCO* 42-3 and 43-2;
 - b. in the case of a complaint, that the complaint was first filed with the Court whose act or decision is alleged to be in error (*BCO* 43-2);
 - c. that a ground or reason has been specified as required by *BCO* 42-3 and 43-2;
 - d. that the parties have complied with the Rules of Discipline of the *BCO* and this Manual;
 - e. that the Record of the Case appears to be complete and sufficiently documented.
- 11.2
- a. If the Officers of the Commission determine that a case is not judicially in order, they through the Stated Clerk shall notify the parties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cure the defect, if it can be cured within the Rules of Discipline of the *BCO* and the requirements of this Manual.
 - b. If the defect is cured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such notice the Commission shall proceed to adjudicate the case.
 - c. If significant defects cannot be cured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such notice, then the Officers may make a determination that the case not be found in order and take no further action in relation to the case other than to recommend to the next meeting of the Commission that the case be dismissed on the ground that the case was not found in order.
 - d. If the decision of the Officers in finding the case not in order is not confirmed by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proceed to adjudicate the case.
- 11.3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appeal or complaint is judicially in order,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take the following actions:

11.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한 청문

- 11.1 상법위지침서의 9.3 항에 준하여 법적 소송건을 전체 전권위원회가 청문하여야 할 곳에서는, 전권위원회 임원들이 소송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청문을 대비해야 한다. 이 검토는 전화 회의 소집으로 될 수도 있고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ㄱ. 소송건이 교회 헌법 42-3 항과 43-2 항에 제시된 대로 적시에 접수되었는가 여부;
 - ㄴ. 고소의 경우, 고소가 법정의 조치나 결정이 오류가 있다고 주장된 법정에 먼저 접수되었는가 여부 (교회 헌법 43-2).
 - ㄷ. 교회 헌법 42-3 항과 43-2 항이 요구하는 대로 근거나 이유가 명시되어 왔는가의 여부;
 - ㄹ. 쌍방 당사자가 교회 헌법의 권징 조례와 이 지침서에 순응하고 있는가의 여부;
 - ㅁ. 소송 기록이 완료되었고 충분히 문서화 되어 있는가의 여부.

- 11.2
 - ㄱ. 만일 전권위원회 임원들이 소송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결정하면, 전권위원회는 기록 서기를 통해서 쌍방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만일 교회 헌법의 권징조례와 이 지침서의 요구 안에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미비한 점을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ㄴ. 만일 미비한 점이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보완되었다면, 전권위원회는 소송건의 청문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 ㄷ. 만일 심각하게 미비한 점이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임원들은 소송건이 하자를 드러낸 것으로 결정하고 그 소송건이 하자를 드러냈다고 하는 근거 위에서 소송건이 기각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권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권고 한다고 하는 것 이외에 소송건과 관련된 조치는 아무 것도 더 취하지 않을 수 있다.
 - ㄹ. 만일 소송건이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 낸 일에 대하여 임원들의 결정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확증 되지 않았다면, 전권위원회는 소송 판결을 진행해야 한다.

- 11.3 만일 상소 혹은 고소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결정되면,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SJC MANUAL

- a. Set a time and place for a hearing of the appeal or complaint, making every reasonable effort to obtain such time and place as may be agreeable to both the parties.
- b. Notify the parties of such time and place of hearing by letter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 or by electronic means. If by letter, such notice shall be mailed not less than 30 days prior to the date of hearing. If by electronic means, such notice shall be sent not less than 30 days prior to the date of hearing and there must be a receipt of acknowledgement in the file from each party.
- c. Notify the parties of their right to submit written briefs, in accordance with SJCM 8. A written brief must comply with SJCM 8.3 and following.
- d. Notify all parties of their right to represent themselves or to be represented at the hearing in accordance with *BCO* 32-19 or 42-10, as the case may be.

11.4 For initial procedures for hearings before the Full Commission see SJCM 10.8.

11.5 After the initial procedures have been followed, the Commission shall proceed with an appeal in accordance with SJCM 13.3 and following, or if it is a complaint, it shall proceed in accordance with SJCM 14.3 and following.

상법위지침

- ㄱ. 소송건 청문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되, 쌍방 당사자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도록 타당성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ㄴ.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청문을 위한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회신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서신이나 전자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 수단에 의한 경우라면, 그런 통보는 적어도 청문일자 이전 30 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보내야 하고 반드시 각 당사자들로부터 접수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한다.
 - ㄷ. 쌍방 당사자들에게, 상법위지침서 8 항에 준하여, 서면으로 된 소송 개요를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서면 소송 개요는 반드시 상법위지침서 8.3 항과 이어서 나오는 항들에 순응하여야 한다.
 - ㄹ. 쌍방 당사자들에게, 소송건에 따라, 교회 헌법 32-19, 혹은 42-10 에 준하여 청문시,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대표 하거나 혹은 대표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 11.4 전체 전권위원회 앞에서의 청문을 위한 일차 절차들에 대해서는 상법위 지침서 10.8 을 보라.
- 11.5 일차 절차들을 따른 후, 전권위원회는 상법위지침서 13.3 항과 이어서 나오는 항목에 준하여 상소를 진행할 것이고, 만일 그것이 고소이면, 상법위지침서 14.3 항과 이어서 나오는 항목에 준하여 진행 할 것이다.

**12. PROCEDURE FOR HEARING
A JUDICIAL REFERENCE CASE (BCO 41)**

- 12.1 The only reference which the Commission may entertain is the reference of an appeal or a complaint received by the lower court and referred by that lower court to the Commission for final disposition, or of a reference of “a judicial case with request for its trial and decision by the higher court” (BCO 41-3).
- a. Where such a reference is received by the Stated Clerk, a determination shall be made under SJCM 10.1 as to whether or not the case is administratively in order.
 - b. If the case is found to be administratively in order, the Officers of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Commission should accede to the request of the lower court (BCO 41-5), remembering the admonition of BCO 41-5 that “in general it is better that every court should discharge the duty assigned to it under the law of the church.”
 - c. Where the Officers decide that the Commission should not accede to the request of the lower court to hear the case, the question shall be placed on the docket of the next stated or called meeting of the Commission for final determination.
- 12.2 Where a judicial case referred to and accepted by the Commission under Section 12.1 above is an appeal under BCO 42, that appeal shall be heard by a Panel or the Full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4, and where such a case is a complaint under BCO 43, that complaint shall be heard by a Panel or by the Full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JCM 14, and where it is an initial trial of an issue or charges, such a case shall be heard *de novo* by a Panel or the Full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JCM 13.2 or 14.2 and following as the case may be.
- 12.3 The Clerk of the lower court making the reference shall submit to this Commission all documents through the Stated Clerk which should become a part of the Record of the Case.
- 12.4 The lower court making the reference shall assist this Commission as provided in BCO 41-6.

12. 법적 위탁 소송건의 청문을 위한 절차 (헌법 41)

12.1 전권위원회가 호의로 받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위탁은 하위 법정에서 받아 드러진 상소 혹은 고소 위탁이고 하위 법정에 의해서 전권위원회에게 마지막 처분을 위하여 위탁된 것, 혹은 “상위 법정에 의한 재판과 판결을 위한 요청과 함께 맡겨진 법적 소송건”의 위탁이다 (헌법 41-3).

- ㄱ. 상위 법정에 그러한 위탁이 기록 서기에 의해서 받아 드러지면, 상법위지침서 10.1 항 하에서 소송건이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ㄴ. 만일 소송건이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드러나면, “일반적으로 각 법정은 교회 법 하에서 그 법정에 할당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헌법 41-5 의 권고를 기억하면서, 전권위원회 임원들은 전권위원회가 하위 법정의 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 41-5).
- ㄷ. 상위 법정에서 임원들이 전권위원회가 소송건을 청문해야 한다는 하위 법정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최종 결정을 위해서 차기 정기 혹은 임시 전권위원회 회의의 회의 자료철에 그 질문을 철해 두어야 한다.

12.2 상위 법정에서 상기 12.1 항 하에 전권위원회에 의해 받아 드러지고 위탁되어진 사법적인 소송건이 헌법 42 항 하에서의 상소이면, 그 상소는 14 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단 혹은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한 청문이 있어야 되고, 상위 법정에서 그러한 소송건이 헌법 43 항 하의 고소이면, 그 고소는 상법위지침서 14 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단 혹은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한 청문이 있어야 되고, 상위 법정에서 안건 혹은 혐의를 일차 재판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소송건은, 소송건 여하에 따라서 상법위지침서 13.2 항 또는 14.2 항 이하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단 혹은 전체 전권위원회의 의한 새로운 청문이 있어야 한다.

12.3 위탁을 하는 하위 법정의 서기는 기록 서기를 통하여 이 전권위원회 앞으로 소송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만 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2.4 위탁을 하는 하위 법정은 교회 헌법 41-6 에 규정된 대로 이 전권위원회를 보조한다.

- 12.5 The Commission shall be organized as in any other case, except the trial of such a case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Applicable To All Cases Of Process” as set out in *BCO* 32, and in accordance with rules of evidence as set out in *BCO* 35.
- 12.6 The testimony of the witnesses in any case so referred and accepted shall be taken and transcribed as part of the Record of the Case. (Note the provisions of *BCO* 41-6)
- 12.7 The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notification and expenses of their own witnesses. When a party requests that a witness be cited to testify,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promptly cite, by personal service or by certified mail, the witness to appear and testify as provided in *BCO* 32-4.
- 12.8 When the trial hearing is convened the following procedures will apply:
- a. The initial proceedings set out in SJCM 10.8, as applicable, shall be followed, and at the close of the proceedings prayer shall be offered in accordance with SJCM 18.1.
 - b. The requirements of *BCO* 32 shall apply.
 - c. The procedures of *BCO* 32-15 shall be followed, namely:
 - (1) The Chairman shall charge the court.
 - (2) The indictment shall be read, and the answer of the accused shall be heard.
 - (3) The witnesses for the prosecutor and then those for the accused shall be examined.
 - (4)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shall be heard:
 - (a) the Prosecutor; then
 - (b) the Accused; and
 - (c) the Prosecutor shall close.
 - (5) The Commission shall go into closed session and the roll shall be called and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may express their opinion in the case. After discussion:
 - (a) the vote shall be taken; and
 - (b) the preliminary verdict shall be determined.
 - (6) The Commission shall rise from closed session and announce the preliminary verdict. Since

상법위지침

- 12.5 전권위원회는 다른 어떤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직 될 것이나, 그러한 소송건의 재판이 헌법 32 항에 정해진 것처럼 “모든 소송 과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들” 하에서, 또 헌법 35 항에 정해진 것처럼 증거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어 질 것은 예외이다.
- 12.6 어떤 경우에도 언급되어지고 받아 드러진 증인의 증언은 소송 기록의 일부로서 취해지고 필사 될 것이다. (교회 헌법 41-6 의 규정들 참조)
- 12.7 쌍방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증인들에 대한 통보와 경비에 책임을 진다. 당사자가 증인이 증언을 위해 소환될 것을 요청할 때,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증인이 교회 헌법 32-4 항에 규정된 대로 출두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사적 용역이나 등기 우편으로, 신속히 소환해야 한다.
- 12.8 재판 청문이 소집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적용된다:
- ㄱ. 적용할 수 있는한, 상법위지침서 10.8 항에 정해져 있는 일차적인 절차들이 따라져야 하고, 재판 절차를 마칠 때는 상법위지침서 18.1 항에 준하여 기도가 드러져야 한다.
 - ㄴ. 헌법 32 항의 요구가 적용되어야 한다.
 - ㄷ. 헌법 32-15 항의 절차들이 따라져야 하는데, 말하자면:
 - (1) 위원장이 법정을 관장한다.
 - (2) 고소장이 낭독되고, 피고의 대답이 청문되어야 한다.
 - (3) 검사를 위한 증인들이 심사를 받고 그리고 피고를 위한 증인들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 (4) 쌍방의 주장을 청문 한다:
 - (ㄱ) 검사, 그 후에
 - (ㄴ) 피고, 그리고
 - (ㄷ) 검사가 마친다.
 - (5) 전권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로 들어 가서 호명을 하고 전권위원회 회원들은 소송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토론 후:
 - (ㄱ) 투표한다; 그리고
 - (ㄴ) 예비 판결을 결정한다.
 - (6) 전권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와 예비 판결을 공포한다. 서면 소송 개요를 제출할 수 있는 더 상위의 상소 법정 없으므로, 각 당사자(또는 헌법 34-1 로부터 시작된 재판 중에 있는 목사)는 상법위지침서 8.2 항에 준하여 보충 서면 소송 개요를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쌍방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 소송 개요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고 법정에 진술하면, 그 판결이 기록에 들어 간다.

there is no higher court of appeal to which written briefs may be submitted, each party (or the minister in a trial arising from *BCO 34-1*) may submit a written supplemental brief in accordance with SJCM 8.2. If the parties state to the court that they all waive their right to submit written briefs, the judgment shall be entered on the record.

- d. The Record of the Case and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shall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Manual.

12.9 Unless the parties waive their rights to submit a written brief, no decision shall be made until the time periods specified in SJCM 8.1 have expired. If briefs are filed, copies shall be sent to all members of the Panel or Commission as the case requires. Then the Chairman shall convene the Panel or Commission where further discussion of the case may take place. This may be done by telephone conference call. After discussion, the vote shall be taken on each issue.

After a decision has been reached, the decision sha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SJCM 17.

12.10 After a decision has been reached by the full Commission, any member may file by mail or electronic means, within 14 days after the date the text of the decision is sent by the Secretary to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a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which if it is couched in temperate language (see SJCM 18.12) shall be appended to the decision.

상법위지침

르. 소송 기록과 전권위원회 보고서는 이 지침서의 관련된 규정에 준하여 준비되어져야 한다.

12.9 쌍방 당사자가 서면 소송 개요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상법위지침서 8.1 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 기한이 차기까지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만일 소송 개요가 접수되면, 그 사본들은 소송건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회원들 모두에게 보내져야 한다. 그러면 위원장이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소송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화 회의 소집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토론 후에, 각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집행될 것이다.

결정이 내려 지면, 그 결정은 상법위지침서 17 항에 준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12.10 전체 전권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진 후, 어떤 회원이라도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을, 서기가 결정문을 위원회 회원들에게 보낸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우편이나 전자 수단으로 접수 시킬 수 있는데, 만일 그것이 온건한 언어로 표현된 것이면 결의안에 첨부 될 수 있다 (상법위지침서 18.12 를 보라).

13. PROCEDURE FOR HEARING AN APPEAL (*BCO 42*)

- 13.1 At the hearing of an appeal the procedures outlined in *BCO 42-8* will apply whether heard by a Judicial Panel or by the full Commission.

- 13.2 At the time and place set for a hearing of the case, the Chairman shall call the Judicial Panel to order and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initial procedures set forth in *SJCM 10.8*, as applicable.

- 13.3 DURING THE HEARING
 - a.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shall be heard in the following order:
 - (1) the Appellant makes the opening argument;
 - (2) the Appellee then replies;
 - (3) the Appellant makes the closing argument.
 - b. After the hearing shall have been opened and the initial requirements of *BCO 42-8* met, but before any arguments of the parties have been presented the members of the Panel or Commission shall have the opportunity to question the parties on any matter before the court.
 - c. A party shall have a maximum of 30 minutes to argue his case before the Panel or Commission (and in the case of the Appellant, this 30 minutes is inclusive of both his opening and closing arguments).
 - d. At any time during which a party is presenting an argument to a Panel or the Commission, a member of the Panel or Commission may ask questions of that party; the time taken for such questions shall not form a part of the argument time of the party questioned.

- 13.4 AFTER THE ORAL ARGUMENTS
 - a. After the oral arguments have been completed and if the appeal is being heard by a Judicial Panel, the Panel shall proceed under *SJCM 10.10*.
 - b. After the oral arguments have been completed and if the appeal is being heard by the full Commission rather than by a Judicial Panel, the Commission shall go into closed session to discuss the case and consider its merits.

13. 청문과 상소를 위한 절차 (헌법 42)

13.1 상소 청문시 법사 심사단에 의해서 청문되었든 혹은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청문되었든 헌법 42-8 에 약술되어 있는 절차들이 적용된다.

13.2 소송건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위원장은 적용할 수 있다면 상법위지침서 10.8 항에 정해져 있는 일차 절차들에 준하여 개최하고 진행하도록 법사 심사단을 소집한다.

13.3 청문 진행 중

ㄱ. 쌍방 당사자들의 논증은 다음 순서를 따라 듣게 된다:

- (1) 상고인이 시작하는 논증을 한다.
- (2) 피상고인이 그 다음에 대응한다.
- (3) 상고인이 마치는 논증을 한다.

ㄴ. 청문이 시작되고 헌법 42-8 의 일차적인 요구가 충족된 후, 그러나 쌍방 당사자들의 어떤 논증이 제출되기 이전에,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의 회원들은 쌍방 당사자들에게 법정에서 제출된 어떤 관건에 관한 것이라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ㄷ. 당사자는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앞에서 자신의 소송건을 위하여 최고 30 분까지 논증할 수 있다 (그리고 상고인의 경우에는, 이 30 분이 자신의 시작하는 논증과 마치는 논증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ㄹ. 당사자가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앞에서 논증하는 동안에는 어느 때든지,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회원은 그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질문을 위해서 소요된 시간은 질문을 당한 당사자의 논증을 위한 시간의 일부가 될 수 없다.

13.4 구두 논증 이후

ㄱ. 구두 논증이 완료된 후 그리고 만일 상소가 법사 심사단에 의해서 청문되었으면, 심사단은 상법위지침서 10.10 항 하에서 진행한다.

ㄴ. 구두 논증이 완료된 후 그리고 만일 상소가 법사 심사단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청문되었으면, 전권위원회는 그 소송건을 토론하고 그 잇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의로 들어야 한다.

- c. When the Judicial Panel acting under SJCM 10.10 is ready to vote or when the full Commission has completed its discussion under Section 13.4.b above, and is ready to vote, the vote shall then be taken without further debate, on each specification, in this form:

"Shall this specification of error be sustained?"

The decision may be to affirm the lower court's decision, in whole or in part. If the lower court's decision is not sustained, the decision will be to:

- (1) reverse the lower court's decision, in whole or in part; or,
- (2) render the decision that should have been rendered; or,
- (3) remand the case to the lower court for a new trial.

- 13.5 As soon as the judgment is thus rendered, when the appeal is heard by a Judicial Panel, the Judicial Panel shall proceed under SJCM 10.11.
- 13.6 As soon as the judgment is thus rendered, when the appeal is heard by the full Commission rather than by a Judicial Panel, the Chairman shall designate a member or committee of members voting with the majority to prepare a proposed written decision.
- 13.7 After a decision has been reached by the full Commission, any member may file by mail or electronic means, within 14 days after the date the text of the decision is sent by the Secretary to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a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which if it is couched in temperate language (see SJCM 18.12) shall be appended to the decision.

상법위지침

ㄷ. 상법위지침서 10.10 항 하에서 조치를 내린 법사 심사단이 투표 준비가 되었을 때, 혹은 전체 전권위원회가 상기, 13.4.ㄴ 항 하에 그 토론을 완료하고, 투표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때는 더 이상의 논쟁 없이 투표하되, 각 사항에 관해서, 이 양식대로 해야 한다:

“이 오류 사항이 실증 되었습니까?”

결의안은 하위 법정의 결의안을, 전체로 혹은 부분적으로, 확증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만일 하위 법정의 결의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 (1) 하위 법정의 결의안을, 전체로 혹은 부분적으로, 번복한다; 그렇지 않으면,
- (2) 마땅히 내려 져어야 했을 결정을 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 (3) 새로운 재판을 위해서 소송건을 하위 법정으로 반송한다.

13.5 상기와 같이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상소가 법사 심사단에 의해서 청문된 때는, 법사 심사단은 상법위지침서 10.11 항 하에서 진행한다.

13.6 상기와 같이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상소가 법사 심사단에서라기 보다는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청문된 때는, 위원장은 다수 투표로 제시된 서면 결의안을 준비하도록 한 회원 혹은 회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지명한다.

13.7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결의안이 확정 된 후에, 회원 중 누구라도, 서기가 결정문을 위원회 회원들에게 보낸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동의하는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을 접수 할 수 있는데 만일 그것이 온건한 언어로 표현되었으면 (상법위지침서 18.12를 보라) 결의안에 첨부될 수 있다.

14. PROCEDURE FOR HEARING A COMPLAINT (*BCO* 43)

- 14.1 At the hearing of a Complaint the following procedures will apply whether the Complaint be heard by a Judicial Panel or by the full Commission.
- 14.2 At the time and place set for a hearing of the case, the Chairman shall call the Judicial Panel to order and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initial procedures set forth in SJCM 10.8, as applicable.
- 14.3 DURING THE HEARING
 - a.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shall be heard in the following order:
 - (1) the Complainant makes the opening argument;
 - (2) the Respondent then replies;
 - (3) the Complainant makes the closing argument.
 - b. After the hearing shall have been opened and the initial requirements of *BCO* 43-9 met, but before any arguments of the parties have been presented, the members of the Panel or Commission shall have the opportunity to question the parties on any matter before the court.
 - c. A party shall have a maximum of 30 minutes to argue his case before the Panel or Commission (and in the case of the Complainant, this 30 minutes is inclusive of both his opening and closing arguments).
 - d. At any time during which a party is presenting an argument to a Panel or the Commission, a member of the Panel or Commission may ask questions of that party; the time taken for such questions shall not form a part of the argument time of the party questioned.
- 14.4 AFTER THE ORAL ARGUMENTS
 - a. After the oral arguments have been completed and if the complaint is being heard by a Judicial Panel, the Panel shall proceed under SJCM 10.10.
 - b. After the oral arguments have been heard and if the complaint is being heard by the full Commission rather than by a Judicial Panel the Commission shall go into closed session to discuss the complaint and consider its merits.

14. 고소 청문을 위한 절차 (교회 헌법 43)

- 14.1 고소를 위한 청문에서는 그 고소가 법사 심사단에 의해서 청문되든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청문되든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 14.2 소송건의 청문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위원장은 적용 할 수 있다면 상법위지침서 10.8 항에 정해져 있는 일차 절차들에 준하여 순서를 정하고 진행하도록 법사 심사단을 소집한다.

14.3 청문 진행 중

- 가. 쌍방 당사자들의 논증은 다음 순서를 따라 들게 된다:
 - (1) 원고가 시작하는 논증을 한다.
 - (2) 피고가 그 다음에 대응한다.
 - (3) 원고가 마치는 논증을 한다.
- 나. 청문이 시작되고 헌법 43-9 의 일차적인 요구가 충족된 후, 그러나 쌍방 당사자들의 어떤 논증이 제출되기 이전에,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의 회원들은 쌍방 당사자들에게 법정에서 제출된 어떤 관건에 관한 것이라도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다. 당사자는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앞에서 자신의 소송건을 위하여 최고 30 분까지 논증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경우에는, 이 30 분이 자신의 시작하는 논증과 마치는 논증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 라. 당사자가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앞에서 논증하는 동안에는 어느 때든지,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회원은 그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질문을 위해서 소요된 시간은 질문을 당한 당사자의 논증을 위한 시간의 일부가 될 수 없다.

14.4 구두 논증 이후

- 가. 구두 논증이 완료된 후 그리고 만일 상소가 법사 심사단에 의해서 청문되었으면, 심사단은 상법위지침서 10.10 항 하에서 진행한다.
- 나. 구두 논증이 완료된 후 그리고 만일 상소가 법사 심사단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청문되었으면, 전권위원회는 그 소송건을 토론하고 그 잇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의로 들어가야 한다.

- c. When the Judicial Panel acting under SJCM 10.10 is ready to vote or when the full Commission has completed its discussion under Section 14.4.b, above, the vote shall be taken, without further debate, as to what disposition should be made of the complaint. The decision may be to affirm the lower court's decision, in whole or in part. If the lower court's decision is not sustained the decision will be to:
- (1) annul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action of the lower court against which the complaint has been made; or,
 - (2) send the matter back to the lower court with instructions for a new hearing.
- 14.5 As soon as the judgment has been rendered when the complaint is heard by a Judicial Panel, the Judicial Panel shall proceed under SJCM 10.10.
- 14.6 As soon as the judgment is rendered, when the complaint is heard by the full Commission rather than by a Judicial Panel, the Chairman shall designate a member or committee of members voting with the majority to prepare a proposed written decision.
- 14.7 After a decision has been reached by the full Commission, any member may file by mail or electronic means, within 14 days after the date the text of the decision is sent by the Secretary to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a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which if it is couched in temperate language (see SJCM 18.12) shall be appended to the decision.

상법위지침

- ㉔. 상법위지침서 10.10 항 하에서 조치를 내린 법사 심사단이 투표 준비가 되었을 때, 혹은 전체 전권위원회가 상기, 14.4.ㄴ 항 하에 그 토론을 완료하고, 투표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때는, 더 이상의 논쟁 없이, 원고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 투표 되어져야 한다. 결의안은 하위 법정의 결의안을, 전체로 혹은 부분적으로 확증하는 것일 수 있다. 만일 하위 법정의 결의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 (1) 하위 법정의 조치에 거스려서 고소가 제기된 조치 전체 혹은 어떤 부분을 무효화한다; 그렇지 않으면,
 - (2) 사건을 새로운 청문에 대한 지시 사항과 함께 하위 법정으로 되돌려 보낸다.
- 14.5 상기와 같이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고소가 법사 심사단에 의해서 청문된 때는, 법사 심사단은 상법위지침서 10.10 항 하에서 진행한다.
- 14.6 상기와 같이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고소가 법사 심사단에서라기 보다는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청문된 때는, 위원장은 다수 투표로 제시된 서면 결의안을 준비하도록 한 회원 혹은 회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지명한다.
- 14.7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결의안이 확정 된 후에, 회원 중 누구라도, 서기가 결정문을 위원회 회원들에게 보낸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동의하는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을 접수 할 수 있는데 만일 그것이 온건한 언어로 표현되었으면(상법위지침서 18.12를 보라) 결의안에 첨부될 수 있다.

15. PROCEDURE FOR HEARING A REPORT ARISING OUT OF GENERAL REVIEW AND CONTROL (*BCO 40*;-*RAO 16-10.c*)

- 15.1 A Report arising out of General Review and Control is one which purports to demonstrate an important delinquency or grossly unconstitutional proceeding of a lower court (*BCO 40-5*). When such a Report is submitted to the Commission, it shall be first handled according to SJCM 9, as applicable.
- 15.2 If the Report is found administratively in order, any representative of the Report (cf. *RAO 16-10.c*) and court alleged to have offended shall be cited to appear, the latter by representative or in writing, providing such documents as bear on the alleged important delinquency or grossly unconstitutional proceedings (*BCO 40-5*). The Stated Clerk shall collate these documents which shall be deemed equivalent to a Record of the Case and dealt with according to Section 8 of this Manual as applicable.
- 15.3 At the time and place set for a hearing of the Report, the Chairman shall call the Judicial Panel or Commission to order and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initial procedures set forth in SJCM 10.8 as applicable.
- 15.4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as follows:
- a. The members of the Panel or Commission shall have the opportunity to question the representatives present on any matter before the court.
 - b. The Panel or Commission shall then proceed to hear oral arguments, if there be any, in the following order:
 - (1) the representative of the Report shall make the opening argument;
 - (2) the representative of the court alleged to have offended shall reply;
 - (3) the representative of the Report shall make the closing argument.
 - c. A representative shall have a maximum of 30 minutes to argue his case before the Panel or Commission. With respect to the representative of the Report, this 30 minutes is inclusive of both the opening and closing arguments.
 - d. At any time during which a representative is presenting an argument to a Panel or the Commission, a member of

15. 전반적인 검토와 통제로부터 야기된 보고서를 청문하기 위한 절차 (헌법 40; -총운세 16-10.ㄷ)

- 15.1 전반적인 검토와 통제로부터 야기된 보고서는 하위 처리회의 중요한 과실이나 터무니없이 비헌법적 진행절차를 드러내는 것을 취지로 하는 것이다 (헌법 40-5). 전권위원회에 앞으로 그런 보고서가 제출 될 때, 그것은 먼저, 적용이 가능한 한, 상법위지침서 9 항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 15.2 만일에 보고서가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 보고서의 대표자(비교. 총운세 16-10.ㄷ)와 범과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처리회는 출두 소환을 받을 것이고, 후자는 대표자나 서면으로 주장된 바 중요한 과실이나 터무니없이 비헌법적 진행절차에 관한 것을 제시하는 그런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헌법 40-5). 기록 서기는 소송 기록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 서류들을 대조하고 적용이 가능한 한 이 지침서 8 항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
- 15.3 보고서의 청문을 위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위원장은 적용이 가능한 한 상법위지침서 10.8 항에 규정된 시작절차들을 따라 법사 심사단 또는 전권위원회가 개최하고 진행 하도록 요청한다.
- 15.4 청문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 ㄱ. 심사단 단원들 또는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처리회 앞에 있는 일에 대하여 무엇이든 출석한 대표들에게 질문 할 기회를 갖는다.
 - ㄴ. 심사단 단원들 또는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만일 구두 논증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두 논증을 듣도록 한다:
 - (1) 보고서의 대표자가 시작하는 논증을 한다;
 - (2) 범죄했다고 주장된 처리회 대표가 대응한다.
 - (3) 보고서의 대표자가 마치는 논증을 한다.
 - ㄷ. 대표자는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앞에서 자신의 소송건을 위하여 최고 30 분까지 논증할 수 있다. 보고서의 대표자의 경우, 이 30 분은 자신의 시작하는 논증과 마치는 논증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 ㄹ. 대표자가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앞에서 논증하는 동안에는 어느 때든지,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회원은 그 대표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질문을 위해서 소요된 시간은 질문을 당한 대표자의 논증을 위한 시간의 일부가 될 수 없다.

the Panel or Commission may ask questions of that representative; the time taken for such questions shall not form a part of the argument time of the representative questioned.

- 15.5 After arguments have been heard, the Panel or Commission shall go into closed session to discuss the Report and consider its merits.
- 15.6 If heard by a Panel, the Panel shall then make a full report to the Commission including such recommendations as
 - a. to reverse or redress the proceedings of the court below in other than judicial cases; or
 - b. to censure the delinquent court; or
 - c. to remit the whole matter to the delinquent court with an injunction to take it up and dispose of it in a constitutional manner; or
 - d. to stay all further proceedings and declare that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port, presently or previously pending before the General Assembly, are ended, concluded and terminated.
- 15.7 When the full Commission has completed its discussion and is ready to vote, the vote shall be taken on each recommendation. The report as a whole shall then be voted on by roll call without change or amendment. All qualified members present shall participate in the vote.
- 15.8 If heard by the full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proceed to deliberate the merits of the matter and make a determination as provided in Sections 15.6.a, b, c, and d. A vote shall be taken on the decision(s). The report as a whole shall then be voted on by roll call. All qualified members present shall participate in the vote.
- 15.9 After a decision has been reached by the Full Commission, any member may file, within 20 days after the day the decision is reached, a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which shall be appended to the decision.
- 15.10 When a report with its recommendations on the Report has been adopted, a copy thereof shall immediately be sent by mail or electronic means to the Representatives and shall be included in the final report of the SJC to the General Assembly.

상법위지침

- 15.5 논증을 청문 한 후,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는 그 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 잇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비공개 회의로 들어 가야 한다.
- 15.6 심사단이 청문을 했다면, 심사단은 전권위원회 앞으로 다음과 같은 추천안들을 포함하는 전체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 ㄱ. 법적 소송건들이 아니면 하위 처리회의 진행절차를 취하하거나 재심할 것; 또는
 - ㄴ. 과실이 있는 처리회를 권장할 것; 또는
 - ㄷ. 전체 소송건을 헌법적 자세로 과제를 삼아 결말을 맺도록 하라는 명령과 함께 범죄한 처리회 앞으로 반송 시킬 것; 또는
 - ㄹ. 모든 차후 진행과정들을 중단 시키고 보고서에 관련된, 현재 또는 이전에 총회 앞에 계류 중인, 모든 사안들은 끝났고, 결말이 났으며, 종결되었다고 선언한다.
- 15.7 전체 전권위원회가 토론을 마치고 투표 준비가 되었을 때, 각 추천안에 대하여 투표한다. 그 후 보고서는 전체로 변경이나 수정 없이 호명하여 투표한다. 자격을 가지고 출석한 모든 위원들은 투표에 참석하여야 한다.
- 15.8 전체 전권위원회가 청문했으면, 전권위원회는 그 사안의 잇점들에 대하여 심의 토론하고 15.6.ㄱ,ㄴ,ㄷ과 ㄹ에 규정된 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의(들)에 대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그 후 보고서는 전체로 호명하여 투표한다. 자격을 가지고 출석한 모든 위원들은 투표에 참석하여야 한다.
- 15.9 전체 전권위원회가 결의 한 후, 결의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중 누구라도 동의 혹은 반대한 의견을 접수 시킬 수 있고, 그것은 결의안에 첨부되어야 한다.
- 15.10 [처음] 보고서에 관한 추천들과 함께 보고서가 채택되었을 때, 그 보고서의 사본은 즉시로 우편이나 전자수단을 통하여 대표들에게 보내져야 하고 총회로 올려지는 상법위의 최종 보고서에 포함 시켜야 한다.

16. PROCEDURES FOR ASSUMING ORIGINAL JURISDICTION OVER A MINISTER (*BCO* 34-1)

- 16.1 Upon proper receipt of a case filed against a minister under *BCO* 34-1, the SJC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et out below:
- a. Appoint a panel in accordance with *RAO* 17.3 to investigate the matter and determine whether or not that the case is in order, i.e., that the provisions of *BCO* 34-1 have been followed.
 - b. If the case is determined to be in order, the panel shall conduct an investigation of allegations against the minister under the provisions of *BCO* 31-2.
 - c. The panel's findings and recommendation shall be mailed to the full SJC, said minister and the stated clerks of the involved presbyteries that instituted this action under *BCO* 34-1. The matter shall be scheduled for review at the SJC's next stated meeting or a meeting called under the provisions of *SJCM* 4.2.
 - d. Within 14 days of receipt of the panel's findings and recommendation said minister and the stated clerks of the involved presbyteries may submit a brief citing reasons as to whether the panel's recommendations should be approved or rejected. Such brief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SJCM* 8.
 - e. Briefs under these paragraphs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briefs in *SJCM* 8.4 but shall not exceed 5 pages.
- 16.2 At its next stated meeting or meeting called to hear the matter under the provision of *SJCM* 4.2, the SJC in closed session shall discuss the panel's findings and recommendation. The SJC shall vote to accept or reject the panel's findings and recommendation.
- 16.3 The SJC decision shall be mailed to said minister and stated clerks of the involved presbyteries. Within 14 days of receipt of the decision a party may request a re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by filing a supplemental brief as set forth in *SJCM* 8.2. This supplemental brief shall state the reasons for requesting

16. 목사에 대하여 원래 치리관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절차들
(헌법 34-1)

- 16.1 헌법 34-1 하에 목사를 상대로 하여 접수된 적법한 소송건의 수취에 근거하여 상법위는 아래에 정해진 규정들을 따라
- ㄱ. 총운세 17.3 을 따라 심사단을 임명하여 그 사안을 조사하고 소송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즉 헌법 34-1 의 규정들이 준수되었는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 ㄴ. 만일 소송건이 하자가 없다고 결정되면, 심사단은 헌법 31-2 의 규정하 에 목사를 상대로 하는 주장들에 대한 조사 실시한다.
 - ㄷ. 심사단의 조사결과들과 추천을 전체 상법위와 언급된 목사들과 헌법 34-1 하에 이 조치를 제정한 해당 노회들의 서기들 앞으로 우송한다. 사안은 상법위의 차기 정기 회의나 상법위지침서 4.2 의 규정하에 소집된 회의에서 검토 하도록 일정을 정해야 한다.
 - ㄹ. 심사단의 조사결과들과 추천을 수취 한 후 14 일 내에 언급된 목사들과 해당 노회들의 서기들은 심사단의 추천들을 인정한다든지 거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입증하는 개요를 제출 할 수 있다. 그런 개요는 상법위지침서 8 의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
 - ㅁ. 이 문단 하의 개요들은 상법위지침서 8.4 의 개요들을 위한 요구들에 순증하여야 하지만 5 페이지를 넘길 수 없다.
- 16.2 상법위는 차기 정기 회의에서나 상법위지침서 4.2 의 규정하에 사안을 청문하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로 심사단의 조사결과들과 추천을 토론하여야 한다. 상법위는 투표하여 심사단의 조사결과들과 추천을 수용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 16.3 상법위의 결의는 언급된 목사들과 해당 노회들의 서기들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결의안을 수취한 후 14 일 내에 한 쪽이 상법위지침서 8.2 에 정해진대로 보충 개요를 접수 시켜 결의안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보충 개요는 결의안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이유들을 진술하여야 한다. 보조 개요와 상법위 결의안의 사본들은 상법위 위원들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판결에 대한 재심은, 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편이 됐든 전화 회의가 됐든, 전체 전권위원회의 다수 투표로만 허락 될 수 있다.

re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Copies of the supplemental brief and the SJC decision shall be mailed to members of the SJC. Reconsideration of the judgment shall be granted only by majority vote of the full Commission either by mail or by conference call, as determined by the officers

If reconsideration is granted, the Officers shall call a special meeting, under SJCM 4.2.a and b, to discuss the case, consider its merits, and render a final judgment. If reconsideration is not granted, the previous judgment shall become final in accordance with *BCO* 15.5 (a).

16.4 If the SJC's final judgment is that the above investigation does not raise "a strong presumption of the guilt of the party involved," (*BCO* 31-2) the SJC shall dismiss the case and advise the parties to the case.

16.5 If, however, the SJC's final judgment is that the above investigation raises "a strong presumption of the guilt of the party involved," (*BCO* 31-2) it shall institute process under *BCO* 31. In such event, the SJC shall conduct a tria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BCO* 32, *BCO* 35 and SJCM 12.5 through 12.10.

상법위지침

만일 재심이 허락되면, 임원들은 특별 회의를 소집하고, 상법위지침서 4.2.ㄱ과 ㄴ 하에, 소송건을 토론하고, 그 잇점을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린다. 만일 재심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전 판결이 헌법 15-5. ㄱ에 따라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 16.4 만일 상법위의 최종 판결이 상기 조사가 “당사자의 범죄 혐의를 강하게”(헌법 31-2)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면, 상법위는 소송건을 기각하고 소송건에 대한 쌍방 당사자들을 충고한다.
- 16.5 그러나 만일 상법위의 최종 판결이 상기 조사가 “당사자의 범죄 혐의를 강하게”(헌법 31-2)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면, 상법위는 헌법 31 하의 과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런 경우, 상법위는 헌법 32, 헌법 35 와 상법위지침서 12.5 에서 12.10 까지의 규정을 따라 재판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DECISIONS, REVIEW AND REHEARING THEREOF

- 17.1 Each decision shall be in the following format:
- a. A summary of the facts. (A presentation in chronological order of the relevant history and facts that bear on the case.)
 - b. A statement of the issues. (A concise framing by the Court of the specific issues being judged in the case.)
 - c. The judgment. (A definite conclusion rendered on the specific issues being adjudged.)
 - d. The reasoning and opinion of the court. (The explanation by the court of the resolution of disputed facts and reasons for the judgment rendered.)
- 17.2 A judgment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be effective from the time of its announcement to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BCO* 15-5(b), except in the case of a minority report in accordance with *BCO* 15-5(c).
- 17.3 Judicial decisions shall be binding and conclusive on the parties. Judicial decisions are to be given due and serious consideration by the Church and its lower courts when deliberating matters related to such action, and may be appealed to in subsequent, similar cases as to any principle which may have been decided (*BCO* 14-7).
- 17.4 Each decision of the Commission and a Judicial Panel shall show the name of the member(s) who wrote the opinion, together with the names of all members as to their concurrence, dissent, abstention or disqualification.
- 17.5 Proposed and recommended judgments of a Judicial Panel are not binding on the parties, but the Stated Clerk shall mail the parties a copy of the panel's proposed decision and inform the parties of their right to request a rehearing before the full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If any party desires a rehearing by the full Commission, such request must be filed with the Stated Clerk within 14 days after receipt of said Panel's proposed and recommended decision. Said party filing such a request for rehearing may attach a brief giving such party's reasons and arguments for this request. Such brief must comply

17. 결의안, 검토와 그에 따른 재 청문

17.1 각 결의안은 다음 양식을 따라야 한다:

- ㄱ. 사실의 요약. (소송건에 영향이 있는 관련된 역사와 사실의 연대기적 순서로 제출된 것.)
- ㄴ. 안건들의 진술. (소송건에서 판결된 구체적인 안건들을 간단한 처리회 양식으로 만든 것.)
- ㄷ. 판결. (재판되어진 구체적인 안건들에 내려진 최종 결론.)
- ㄹ. 처리회의 논리와 의견. (쟁점이 되었던 사실들에 대한 해소와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들에 대한 처리회의 설명.)

17.2 상임법사전권위원회의 판결은 헌법 15.5.ㄴ에 준한 소수 보고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15-5.ㄴ 항에 준하여 쌍방 당사자들에게 판결을 공포한 때부터 유효하다.

17.3 사법적 결의안들은 쌍방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인 것이다. 사법적 결의안들은 그러한 조치와 연관되어 있는 일들을 고려할 때 교회와 교회의 하위 처리회에 의해서 정당하고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이후에, 유사한 소송건들이 있을 때, 이미 결정되어져 온 어떤 원리로서 호소 될 수도 있다 (헌법 14-7)

17.4 전권위원회와 법사 심사단의 각 결의안은 의견을 쓴 회원들의 이름(들)을, 그들에게 동의한, 이의를 제기한, 기권한 혹은 자격을 박탈 당한 모든 회원들의 이름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7.5 제안되고 추천된 법사 심사단의 판결은 쌍방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록 서기가 쌍방 당사자들에게 심사단이 제안한 결의안의 사본 일부를 우송하고 쌍방 당사자들에게 전체 상임법사전권위원회 앞에서 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 어느 당사자이든 전체 전권위원회에 위한 재청문을 원하면, 그러한 요청서가 이미 언급된 심사단이 제안하고 추천한 결의결을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기록 서기에 접수되어야 한다. 그러한 재청문을 위한 요청서를 접수하는 이미 언급된 당사자는 이 요청을 위한 그 당사자의 이유와 논증을 담고 있는 소송 개요를 첨부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 개요는 보조 소송 개요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법위지침서 8.3-8.4 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라야 한다.

with the requirement of SJCM 8.3-8.4 of this Manual as it relates to supplemental briefs.

- 17.6 If no member of the Judicial Panel shall request a rehearing but a party shall have timely requested under Section 17.5 a rehearing by the full Commission, the Stated Clerk shall mail or send by electronic means a ballot to each Commission member which shall have a place for each member to indicate his vote in favor of or against such party's request. Each member shall complete and file such ballot with the Stated Clerk within 15 days of the receipt of the mailing or electronic notice. If any member fails to file such ballot by mail or electronic means within said 15 days, or shall file the ballot without completing it, that member's vote shall be recorded as a vote against the request for such a rehearing.
- 17.7 A rehearing of the case by the full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be had only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a. Where, within 15 days of the receipt of the Secretary's mailing under Section 17.6 at least 4 qualified members of the full Commission shall request by mail or electronic means, by ballot or by separate written notice to the Secretary of the Commission, that the case be reheard by the full Commission; or
 - b. Where a voting member of the Judicial Panel hearing the case shall so request under SJCM 10.11.a; or
 - c. Where any member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file by mail or electronic means written request for such rehearing within 15 days of the receipt of the Stated Clerk's mailing under Section 17.6, and the officers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thereafter, by majority vote, approve such request.
- 17.8
- a. Every Judicial Panel's proposed and recommended decision shall be reviewed by the full Commission. In addition, those cases approved under Section 17.7 shall be reheard. A "review" means that the full Commission shall consider, discuss and debate each decision. A "rehearing" means that in addition to a "review", the full Commission shall hear the oral arguments of the parties.
 - b. After hearing the oral arguments in a case where a rehearing is granted under Section 17.7, or immediately

상법위지침

- 17.6 만일 법사 심사단의 회원은 아무도 재청문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중 하나가 17.5 항 하에서 적시에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한 재청문을 요청했다고 하면, 기록 서기는 전권위원회 각 회원에게 투표 용지를 우편이나 전자 수단으로 우송해야 하는데 그 투표 용지는 각 회원이 그러한 당사자의 요청에 동의 하거나 반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자리 매김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각 회원은 우편 혹은 전자 수단으로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투표를 마치고 기록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만일 어느 회원이든 이미 언급된 15 일 이내에 우편이나 전자 수단으로 그러한 투표 용지를 접수 시키지 못하면, 혹은 투표 용지를 완전히 기입하지 않고 접수 시키면, 그 회원의 투표는 그러한 재청문을 위한 요청에 반대표로서 기록 될 것이다.
- 17.7 전체 상임법사전권위원회에 의한 소송건의 재청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개최될 수 있다:
- ㄱ. 17.6 항 하에서 서기의 우송물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적어도 4 명의 전체 전권위원회의 자격있는 회원이, 우편이나 전자 수단으로, 투표 혹은 전권위원회 서기에게 보낸 별도의 서면 통보에 의하여, 소송건이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재청문 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 ㄴ. 소송건을 청문한 법사 심사단의 투표 회원이 상법위지침서 10.11.ㄱ항 하에 그러한 요청을 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 ㄷ. 상임법사전권위원회의 어느 회원이 17.6 항 하에서 기록 서기의 우송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러한 재청문을 위한 서면 요청을 우편이나 전자 수단으로 접수 시키고, 상임법사전권위원회의 임원들이 그에 따라서, 다수 투표로, 그러한 요청을 승인한 상황에서.
- 17.8 ㄱ. 법사 심사단이 제안하고 추천한 각 결의안은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재검토 된다. 추가로, 17.7 항 하에서 승인된 그 소송건들은 재청문 된다. “재검토”는 전체 전권위원회가 각 결의안을 고찰하고, 토론하고, 논쟁한다는 뜻이다. “재청문”은 “재검토”에 추가해서, 전체 전권위원회가 쌍방 당사자들의 구두 논증을 청문한다는 뜻이다.
- ㄴ. 17.7 항 하에서 재청문이 허용된 소송건에서 구두 논증을 청문한 후, 혹은 만일 재청문이 없어서 즉시로 소송건이 재검토를 위해 소집되었을 때, 전체 전권위원회의 사회를 보는 임원은 출석한 회원들이 다음 사항을 읽었는가의 여부를 투표해야 한다:

when a case is called for review if there is no rehearing,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full Commission shall poll each member present as to whether or not they have read the following:

- (1) the Judicial Panel's proposed and recommended decision;
- (2) all briefs timely filed by the parties;
- (3) those portions of the Record of the Case such member feel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ssues of the case.

Any member who is not able to certify affirmatively to these inquiries shall not be eligible to participate in discussion or vote on this case.

- c. After the completion of (b) above, the Court shall go into closed session but may permit the Stated Clerk and his assistant(s) to remain to assist with the taking of the minutes.
- d. Then the consideration and discussion of the proposed and recommended decision of the Panel shall begin with members of the Panel briefing the full Commission on the facts of the case, the Panel's statement of the issues, the Panel's proposed judgment and the Panel's Reasoning and Opinion. Any dissenting member of the Panel may then present his reasons for dissent. The full Commission will then enter upon a regular parliamentary procedure to perfect, revise, change or approve any part of the Panel's proposed and recommended decision.
- e. In this procedure, each of the 4 parts of the proposed and recommended decision shall be perfected.
 - (1) The Summary of the Facts
 - (2) The Statement of the Issues
 - (3) The Judgment
 - (4) The Reasoning and Opinion of the Court.
- f. After all 4 parts have been approved individually then the decision as a whole shall be voted on by roll call without change or amendment.
- g. All qualified members present should participate in the vote and the vote of each member shall be included in the written decision.
- h. After the vote on the decision on the whole,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will communicate the

상법위지침

- (1) 법사 심사단이 상정하고 추천한 결의안;
- (2) 쌍방 당사자들에 의해서 적시에 접수된 모든 소송 개요들;
- (3) 그러한 회원이 소송건의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소송 기록의 그러한 부분들.

이 조회에 확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회원은 아무도 이 소송건에 대한 토론이나 투표에 참가 할 자격이 없다.

- ㄷ. 상기 (ㄴ)이 완료된 후, 치리회는 비공개 회의로 들어 갈 것이나 기록 서기와 그의 보조자들은 회의 기록 작성을 보조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ㄹ. 그런 후에 심사단이 제안하고 추천한 결의안의 고찰과 토론을 심사단 회원이 전체 전권위원회 앞에서 소송건의 사실들, 심사단의 안건에 대한 진술문, 심사단이 제안한 판결과 심사단의 논리와 견해에 관한 것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심사단의 반대 회원은 누구든지 그 후에 자신이 반대하는 이유를 제출한다. 전체 전권위원회는 그 후에 심사단이 제안하고 추천한 결의안의 어떤 부분이든 개선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승인하는 통상 회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 ㅁ. 이 절차에 있어서 제안되고 추천된 결의안의 4 부분이 각각 개선되어야 한다.
 - (1) 사실 요약 일부
 - (2) 안건들 진술 일부
 - (3) 판결
 - (4) 치리회의 논리와 견해
- ㅂ. 4 부분이 모두 항목별로 승인된 후에 전체의 결의안이 변경 혹은 수정 없이 호명하는 것으로 투표되어 질 수 있다.
- ㅅ. 출석한 자격있는 회원들은 모두 투표에 참가해야만 하고 각 회원의 투표는 서면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ㅇ. 전체로서 결의안에 투표한 후,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쌍방 당사자들에 게 판결을 전달해야 한다; 기록 서기는 쌍방 당사자에게 결의안 사본 일부를 우송해야 한다.

judgment to the parties; and the Stated Clerk shall mail a copy of the decision to the parties.

- i. Upon such review, if parts 1, 2 and 3 of the decision have been perfected but part 4 - the Reasoning and Opinion of the Court -- needs to be rewritten and cannot be done at that meeting of the Commission,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designate a member or a committee of members voting with the majority on the other 3 parts to write the proposed reasoning and opinion based on the decisions on the other 3 parts. The Chairman, upon consulting with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present, shall:
 - (1) set a date and time for a telephone conference call for the perfecting and voting on the "Reasoning and Opinion" part of the decision;
 - (2) this date shall be at least 30 days in advance and not more than 45 days in advance;
 - (3) the members or committee of members appointed to write "The Reasoning and Opinion" shall agree to have a proposal in the hands of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within 15 days;
 - (4) the Stated Clerk shall mail the proposal to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at least 10 days before the date set for such telephone conference call;
 - (5) the Stated Clerk shall in the same mail send to each Commission member a written ballot;
 - (6) if any Commissioner cannot participate in the telephone conference call, his vote on the decision as a whole will be counted so as to be consistent with his vote on the other parts. If he wishes to change his vote, he may fax a copy of his signed written ballot to the Stated Clerk at or before the time of the telephone conference call;
 - (7) when "The Reasoning and Opinion" part of the decision has been perfected, then the Chairman shall call for a roll call vote on the decision as a whole and announce the decision;
 - (8) the other 3 portions of the decision previously approved may not be altered or revised on this telephone conference call.

상법위지침

- ㄷ. 그러한 재검토 후에, 만일 결의안의 부분 1,2, 3 은 완료되었으나 부분 4 - 치리회의 논리와 견해 -가 다시 쓰여질 필요가 있고 그러나 전권위원회 회의에서 수행될 수 없다고 하면,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3 부분에 관하여 다수의 투표를 한 회원 중 일인 혹은 회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지명해서 다른 3 부분에 관한 결의안의 근거한 제안된 논리와 견해를 쓰게 한다. 위원장은, 출석한 전권위원회 회원들과 상의해서:
- (1) 결의안의 “논리와 견해” 부분에 관하여 개선하고 투표하기 위한 전화 회의 소집을 위하여 날짜와 시간을 정한다;
 - (2) 이 날짜는 적어도 30 일 이전이어야 하나 45 일 이전이 될 수는 없다;
 - (3) “논리와 견해”를 쓰도록 임명된 회원들 혹은 회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15 일 이내에 기록 서기의 손에 제의가 들어 가도록 동의해야 한다;
 - (4) 기록 서기는 그 제의를 전권위원회 각 회원에게 그러한 전화 회의 소집을 위해 정해진 날짜보다 적어도 10 일 이전에 우송해야 한다;
 - (5) 기록 서기는 동 우편으로 전권위원회 각 회원에게 서면 투표용지를 보내야 한다;
 - (6) 만일 어떤 위원이 전화 회의 소집에 참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전체로서 결의안에 관한 그의 투표는 그가 다른 부분에 관해서 투표한 것과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그의 투표를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자기의 날인이 있는 서면 투표 용지의 사본 일부를 기록 서기 앞으로 전화 회의 소집 시에 혹은 그 전에 팩스할 수 있다;
 - (7) 결의안의 “논리와 견해”의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그 후에 위원장은 전체로서 결의안에 관하여 호명하여 투표 할 것을 요청하고 그 결의안을 통보한다;
 - (8) 사전에 승인된 결의안의 다른 3 부분은 이 전화 회의 소집에서 대체되거나 교정될 수 없다;

SJC MANUAL

- (9) After all 4 parts have been approved individually, then the decision as a whole shall be voted on by roll call without change or amendment.
 - j. When a decision has been approved under this Manual by the Full Commission, a copy thereof shall be mailed immediately to the parties and shall then be public.
 - k. After a decision has been reached by the Full Commission, any member may file, within 14 days after the date the text of the decision is sent by the Secretary to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a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which if it is couched in temperate language (see SJCM 18.12) shall be appended to the decision.
- 17.9
- a. In the event of a hearing by the Full Commission where the case was not heard by a judicial panel, the Commission shall issue to the parties a preliminary judgment. Within 14 days after receiving the preliminary judgment, a party may request, reconsideration of the judgment by filing a supplemental brief as set forth in SJCM 8.2. This supplemental brief shall state the reasons for requesting reconsideration of the preliminary judgment. The commission at its next meeting shall consider the request for reconsideration. Reconsideration of the preliminary judgment shall be granted only by majority vote of the Full Commission.
 - b. If reconsideration is granted, the Commission shall immediately go into closed session to discuss the case, consider its merits, and render a final judgment. If reconsideration is not granted, the preliminary judgment shall become final in accordance with *BCO* 15-5(a).

상법위지침

- (9) 4 부분 모두가 각각 승인 된 후, 비로소 결의안은 전체로서 변경이나 수정 없이 호명에 의해 투표 되어져야 한다.
- 츠. 결의안이 이 지침서 하에서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하여 승인 된 때는, 결의안의 사본 일부가 즉시로 쌍방 당사자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 크. 결의안이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확정된 후에, 어떤 회원이라도, 서기가 결정문을 위원회 회원들에게 보낸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동의하는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를 접수할 수 시킬 수 있는데, 만일 온건한 언어로 표현되었으면 (상법위지침서 18.12 를 보라) 결의안에 첨부 될 수도 있다.
- 17.9
- ㄱ. 소송건이 법사 심사단에 의해서 청문되지 않고 전체 전권위원회에 의해서 청문된 경우에는, 전권위원회가 쌍방 당사자들에게 임시 판결을 발표해야 한다. 임시 판결을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당사자는, 상법 위지침서 8.2 항에 정해져 있는 대로 추가 소송 개요를 접수 시킴으로, 판결의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추가 소송 개요는 임시 판결의 재심 요청을 위한 이유들을 진술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재심을 위한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임시 판결의 재심은 전체 회의의 다수 투표로 허가 되어야 한다.
 - ㄴ. 만일 재심이 허가되었다면, 전권위원회는 즉시로 비공개 회의로 들어가서 소송건을 토론하고, 그 잇점을 고려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일 재심이 허가 되지 않았다면, 임시 판결은 헌법 15-5.7에 준하여 최종 [판결]이 된다.

18. MISCELLANEOUS

- 18.1 Any meeting of the Commission or a Judicial Panel shall be opened and closed with prayer.
- 18.2 All oral arguments by the parties before the Commission or a Judicial Panel thereof shall be electronically recorded. No other recordings are authorized without the consent of all of the parties and the approval of the Panel/Commission. SJC recordings shall be kept by the Stated Clerk for the use of the SJC until the case has been finally determined, and then such recordings may be destroyed. Upon request, the Officers may authorize the use of SJC recordings.
- 18.3
- a. Multiple complaints against the same act or decision of a lower court may be combined into one case but each complainant shall receive individual notices issued under this Manual. However, such multiple complainants may designate one of their number to be representative of the multiple complainants, and in such a case notices issued under this Manual shall be sent to that complainant.
 - b. A single complaint signed by more than one person against the same act or decision of a lower court shall be treated as a single complaint and all notices issued under this Manual shall be sent to the first named complainant.
 - c. In either of the cases under SJCM 12.8.a or b where a hearing is held under this Manual the multiple complainants shall be treated as one complainant and:
 - (1) be granted the same total amount of time to present oral arguments as would have been given to a single complainant to present oral arguments; and
 - (2) be permitted to present one combined brief and supplemental brief (if the circumstances permit a supplemental brief) and such brief or supplemental brief shall meet the same requirements as would be imposed upon a single complainant presenting a brief or supplemental brief.
- 18.4
- a. If at any time up to 15 days prior to the date set for a Judicial Panel or the Commission to hear a judicial reference, appeal or complaint, a party asserts that new evidence has been obtained, which was not available or was not made available because of justifiable

18. 기타

- 18.1 전권위원회 혹은 법사 심사단의 어떤 회의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쳐야 한다.
- 18.2 전권위원회 혹은 법사 심사단 앞에서의 쌍방 당사자의 모든 구두 논증은 전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쌍방 당사자들 모두의 동의와 심사단/전권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다른 어떤 기록도 허가되지 않는다. 상법위 기록들은 소송건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상법위의 단독적인 사용을 위해 기록 서기에 의해서 보관되어야 하고, 그 후에는 그러한 테이프 녹음은 파괴되어야 한다. 요청에 따라, 임직자들은 상법위 기록들의 사용을 허가 할 수도 있다.
- 18.3
 - ㄱ. 하위 처리회의 동일한 조치 혹은 결의안에 반대하는 다수의 고소들은 한 소송건으로 묶어 질 수 있으나 각 고소인은 이 지침서 하에서 발표된 각각의 통보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다수 소송인들은 그들 수 중 한 사람을 다수 소송인들의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지침서 하에서 발표된 통보서가 그 고소인에게 보내 질 수 있다.
 - ㄴ. 한 사람 이상의 다수에 의해서 날인된 하위 처리회의 동일한 조치 혹은 결의안에 반대하는 단일 고소는 단일 고소로서 취급하고 이 지침서 하에서 발표된 모든 통보서는 처음 명기된 고소인에게로 보내져야 한다.
 - ㄷ. 청문이 이 지침서 하에서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상법위 지침서 12.8.ㄱ 혹은 ㄴ 하에 있는 소송건의 어느 쪽이든 다수 고소인들은 한 고소인으로서 취급된다:
 - (1) 단일 고소인에게 구두 논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어지게 의도된 전체 시간의 양과 동일한 시간의 양이 구두 논증을 제출 하도록 허가 된다; 또
 - (2) 종합된 소송 개요 한 통과 (만일 상황이 보조 소송 개요를 허락하면) 보조 소송 개요를 제출 하는 것이 허락되어지고 그러한 소송 개요 혹은 보조 소송 개요는 단일 고소자가 소송 개요 혹은 보조 소송 개요를 제출하는데 부과되도록 의도된 것과 동일한 요구를 충족 시켜야 한다.
- 18.4
 - ㄱ. 만일 법사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가 재판 위탁, 상소, 혹은 고소를 청문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자로부터 15 일 이전 어느 때든지, 당사자가, 소송 기록이 종합될 때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입수되지 않았거나 입수가 불가능했던, 새로운 증거가 입수되었다고 강력히 주

circumstances at the time the Record of the Case was put together, said new evidence shall be put in writing and sent within 5 days to the Stated Clerk and shall be received as part of the Record of the Case only when all the parties stipulate in writing agreeing to the new evidence. If the parties do not agree to this stipulation, and the party presenting the new evidence insists that it is material to the case, the proceedings shall be suspended and the matter docketed at the next meeting of the Panel or the Commission to make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new evidence to be offered has an important bearing on the case. At that next meeting, the Panel or Commission may decide:

- (1) that the new evidence does not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case and proceed with the case; or
- (2) that the new evidence does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case and refer the case to the lower court for a new trial (*BCO* 35-14).

b. If at any time during the 15 days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set for a Judicial Panel or the Commission to hear the case, a party asserts that new evidence has been obtained, which was not available or was not made available because of justifiable circumstances, at the time the Record of the Case was put together, said new evidence shall be put in writing and be presented to the Panel or Commission before any oral arguments are presented on the substance of the cas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anel or Commission before proceeding to hear oral arguments, shall receive the new evidence into the Record of the Case only if all parties stipulate in writing agreeing to such new evidence. If the parties cannot agree to this stipulation, and the party presenting the new evidence insists that it is material to the case, the Panel or Commission shall make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new evidence to be offered has an important bearing on the case. The Panel or Commission may then decide:

- (1) that the new evidence does not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case and proceed with the case; or

상법위지침

장하면, 언급된 새로운 증거는 필사 되어 5 일 이내에 기록 서기에게로 보내져야 하고 쌍방 당사자들 모두가 새로운 증거에 서면 동의로 명문화 할 때 소송 기록의 부분으로 받아 드러진다. 만일 쌍방 당사자들이 이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가 그것이 소송에 관련된 자료라고 끝까지 주장하면, 재판 진행은 보류되고 그 자료는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의 차기 회의 자료철에 삽입해서 제공된 새로운 증거가 소송건에 중대한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차기 회의에서 심사단, 혹 전권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1) 새로운 증거가 소송건에 중대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 (2) 새로운 증거가 소송건에 중대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새로운 재판을 위해서 소송건을 하위 처리회에 회부하는 것이다 (헌법 35-14)

나. 만일 법사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가 소송건을 청문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날자 바로 이전 15 일 동안 중 어느 때든지, 당사자가, 소송 기록이 종합될 때,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입수되지 않았거나 입수가 불가능했던, 새로운 증거가 입수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면, 이미 언급된 새로운 증거는 필사 되어서 소송건의 본질에 관한 어떤 구두 논쟁이 제출되기 전에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앞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상황 하에서, 심사단 혹 전권위원회는 구두 논증 청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만일 쌍방 당사자들이 그러한 새로운 증거에 서면으로 계약 조건을 명문화 한다면 그 새로운 증거를 소송 기록에 받아 드러린다. 만일 쌍방 당사자들이 이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가 그것이 소송건에 관련된 자료라고 끝까지 주장하면, 심사단 혹 전권위원회는 제공된 새로운 증거가 소송건에 중대한 증거가 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에 심사단 혹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다:

- (1) 새로운 증거가 소송건에 중대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 (2) that the new evidence does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case and refer the case to the lower court for a new trial (*BCO 35-14*).

18.5 All issues before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or a Judicial Panel thereof, shall be decided by a majority vote of those qualified members voting. There shall be no proxy voting.

18.6 The minutes of the meetings of the SJC must be approved by mail or electronic ballot within 20 days after receipt of such minutes. If any member fails to file with the Stated Clerk the ballot within 20 days, that member's vote shall be recorded as approval of the minutes.

18.7 ABANDONMENT

If an appellant, complainant or party initiating a case referred to the Commission fails to appear, in person or by a qualified representative, after receiving proper notice, at any meeting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or a Judicial Panel thereof, such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abandoned the case. The Stated Clerk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party that the case has been dismissed because of the failure to appear, and the party shall have 10 days from the receipt of such notice to present, in writing, a satisfactory explanation of the failure to appear and prosecute the case. If the explanation is deemed sufficient by the Officers of the Commission, or members of the Judicial Panel, the case shall be reinstated and reset for another hearing; otherwise, it shall stand abandoned and dismissed.

18.8 WAIVER OF RIGHTS TO APPEAR

- a. Any party may upon a showing of good cause waive his right to appear before the higher court and present oral argument. This waiver shall be accomplished by a written notice to the higher court, mailed not less than 14 days prior to the scheduled hearing, stating the reasons for the waiver. A party's waiver has no effect upon the other party's right of appearance.
- b. The higher court, if it fails to find good cause for the waiver, may refuse to accept a waiver of appearance. If the requested waiver is rejected by the higher court,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party who requested the

상법위지침

(2) 새로운 증거가 소송건에 중대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새로운 재판을 위해서 소송건을 하위 처리회에 회부하는 것이다 (헌법 35-14)

18.5 상임법사전권위원회 혹은 그에 따른 법사 심사단 앞에 제시된 모든 안건들은 투표 자격이 있는 회원들 다수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대리 투표는 없어야 한다.

18.6 상법위의 회의 기록은 반드시 그러한 기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편 혹은 전자 수단으로 의한 투표로 인준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회원이 20일 이내에 투표 용지를 기록 서기에게 접수 시키지 못한다면, 그 회원의 투표는 그 기록을 인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18.7 유 기

만일 상고인, 고소인, 혹은 전권위원회에 일차적으로 소송건을 위탁한 당사자가, 정당한 통보서를 받은 후에, 본인 혹은 자격있는 대표자에 의해서, 상임법사전권위원회 혹은 그에 따른 법사 심사단의 회의에 출두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당사자는 소송건을 유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록 서기는 즉시로 당사자에게 출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소송건이 기각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야 하고, 그 당사자는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출두하지 못한 것과 소송건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만족 할 만한 해명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해명이 전권위원회 임원들에 의해서, 혹은 법사 심사단의 회원들에 의해서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면, 소송건은 복원되고 또 다른 청문을 위한 일정을 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송건은 유기되고 기각된 것으로 남게 된다.

18.8 출두할 권리의 포기

ㄱ. 어떤 당사자도 유익한 이유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근거 위에서 상위 처리회 앞에 출두해서 구두 논증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 포기는 상위 처리회에 보내는 서면 통보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데, 포기 이유를 진술해서, 늦어도 청문 일정으로부터 14일 이전에 우송되어야 한다. 한쪽 당사자의 포기는 상대 당사자의 출두 권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ㄴ. 상위 처리회는, 만일 포기에 대한 유익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출두의 포기를 받아 줄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만일 요청된 포기가 상위 처리회에 의해서 거절되었다면, 그것은 포기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보되어야 한다. 그 때 당사자가 일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상위 처리회 앞에 출두 하는 것이 요구된다.

- waiver. The party shall then be required to appear before the higher court at the scheduled time and place.
- c. Failure to so appear shall constitute an abandonment of the case by that party, unless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the scheduled hearing that party provides satisfactory explanation of the failure to appear. If this explanation is deemed sufficient by the higher court and if the higher court believes the interests of justice will be served thereby, the case shall be reset for another hearing. If no further hearing is required, the case may be decided forthwith. If the party's explanation for not appearing is not deemed sufficient by the higher court, the case shall stand abandoned and dismissed.
- 18.9 In computing any period of time prescribed by this Manual, the day of the act or event from which the designated period of time begins to run shall not be included. The last day of the period shall be included, unless it is a Saturday, Sunday or postal holiday, in which event the period extends until the end of the next day which is not a Saturday, Sunday or postal holiday.
- 18.10 When a provision of the Manual requires a computation of time under Section 18.9, above, such period of time shall be computed with the following construction of certain terms used herein, to-wit:
- a. A mailing by the Commission or Panel shall be computed from the day after the document is posted or delivered to an overnight carrier.
 - b. Documents required or permitted to be filed by a party shall be filed with the Stated Clerk. Such filing shall not be timely unless the documents are received in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within the time fixed for such filing, except that papers shall be deemed filed on the day of mailing if certified, registered or express mail of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or any private service where verifying receipt is utilized. Neither facsimiles nor E-mail will be allowed for purposes of filing.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aware that responsibility for such filings rests with them and that delays in delivery or non-delivery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filing party.
 - c. "Notice," "notification," "from receipt," "after the receipt" shall be when the papers are actually delivered to the party. For all papers requiring such, the

상법위지침

- ㉔. 그렇게 출두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해 당사자가 정해진 청문 날자로부터 10 일 이내에 출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만족 할 만한 해명을 제공하지 않는 한, 당사자에 의한 소송건의 유기를 성립시킨다. 만일 이 해명이 상위 처리회에 의해서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고 또 만일 상위 처리회에 의해서 공의의 중요성에 이바지 한 것이 있다고 믿으면, 소송건은 또 다른 청문을 위하여 복원된다. 만일 청문이 더 요구되지 않으면, 소송건은 곧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출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이 상위 처리회에 의해서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면, 소송건은 유기되고 기각된 것으로 남는다.

18.9 이 지침서에 규정된 어떤 시간의 기간을 산출하는데는, 조치가 있는 날 혹은 지정된 기간의 시간이 가기 시작하는 사건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의 마지막 날은 포함될 것이나, 토요일, 일요일, 혹은 우체국 공휴일은 아니어야 하고, 그 경우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혹은 우체국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 마지막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8.10 지침서의 규정이 18.9 항 하에서 시간의 산출을 요구하면, 그러한 시간의 기간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한 용어들의 다음에 따라 오는 구조와 함께 산출되어야 한다, 즉:

- ㉑. 전권위원회 혹은 심사단에 의한 우송은 문서에 소인이 찍힌 후의 날부터 혹은 오버나이트 캐리어에게 배달해 준 후의 날부터 산출한다.
- ㉒. 당사자에 의해서 접수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 문서들은 기록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그러한 접수는 문서가 그러한 접수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기록 서기 사무실에서 받아 드러진 것이 아닌 한 적시 접수라고 할 수 없으나, 만일 영수증 조회가 이용될 수 있는 미국 우체국의 보증된, 등기로 된, 속달로 보내진 문서들 혹은 어떤 사설 서비스를 통해서 보내진 서류들은 열외이다. 접수를 목적으로 해서는 팩스나 이메일이 허용될 수 없다. 사건의 이해 당사자들은 그러한 접수를 위한 책임이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과 배달에 있어서 혹은 배달하지 않음에 있어서 지연되는 것은 접수 당사자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유의 해야 한다.
- ㉓. “통보”, “통보함”, “받은 날부터”, “받은 날 이 후에”는 서류들이 당사자들에게 실제로 배달될 때를 말한다.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전권위원회가 배달 일자의 조회를 받아 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거기에 순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간주 될 것이다. 즉:

Commission shall be responsible for obtaining verification of date of delivery. However,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ulfilled in any of the following instances, to wit:

- (1) If a party changes his/her address without notifying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 (2) If a party cannot be located after diligent inquiry.
- (3) If a party refuses to accept delivery of materials or notice.
- (4) If materials or notice are returned by the carrier with a notation that delivery could not be accomplished.

18.11 The Record of the Case, Briefs, Arguments, and all proceedings before a Panel or the Commission shall be presented in the English language.

18.12. CONCURRING AND DISSENTING OPINIONS

- a. The right of a Commission member to file a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see 17.8.k)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work of the Commission, in that it preserves the unity of the Commission by allowing a member in the minority to submit to the Commission's judgment, while declaring, and thus clearing, his conscience in a particular decision. An Objection (*BCO* 45-1, 4) is only permissible in the case of an otherwise qualified member of the Commission (cf. *OMSJC* 2.2-3) who could not vote due to being a member of the presbytery or a member of a congregation in the bounds of the presbytery from which the case arose (cf. *BCO* 39-2).
- b. That right notwithstanding, in order to preserve the primacy of, the authority of, and respect for Commission decisions, any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which does not qualify as a minority decision under the terms of *BCO* 15-5, shall be reviewed to ensure that it meets the following standards:
 - (1)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s shall set forth concisely, as the case may be, the alternate grounds upon which the Commission's decision ought to have been rendered; or, the alleged error of the Commission's decision, a statement of the decision that should have been rendered, and the grounds sustaining.

상법위지침

- (1) 만일 당사자가 기록 서기의 사무실에 통보하지 않고 자신의 주소를 변경한 경우.
- (2) 만일 근면하게 조회했으나 당사자의 거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3) 만일 당사자가 배달된 자료 혹은 통보를 받아 드리기를 거부한 경우.
- (4) 만일 자료 혹은 통보가 배달 될 수 없다고 하는 통지서와 함께 배달자에 의해서 반송된 경우.

18.11 소송 기록, 소송 개요들, 논증들, 그리고 심사단 혹은 전권위원회 앞에서의 모든 진행과정들은 영어로 제출되어야 한다.

18.12 찬동하고 반대하는 의견들

ㄱ.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견해(17.8.ㄱ을 보라)를 접수시킬 수 있는 총대 회원의 권리는 총대위원회 사역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총대위원회는 소수 보고서를 지지하는 회원이 어떤 특정한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양심을 선언하므로 [입장을] 명백히 하는 반면, 총대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소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총대위원회의 연합성을 보존한다. 반대는 (헌법 45-1,4) 다른아닌 소송권이 발생한 노회 경계 안에 있는 노회나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으로 (비교: 헌법 39-2) 인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된 총대위원회 회원의 경우에만 허락될 수 있다 (상법위지침 2.2-3).

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대위원회의 결정들의 최고성, 권위성,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헌법 15-5 의 용어 하에 소수 결정으로서 자격이 없는,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견해라도 다음에 나오는 표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1)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들은, 어떤 경우든, 총대위원회의 결정이 마땅히 내려졌어야만 했을 대안의 근거; 또는 총대위원회의 결정이 [오류라고] 주장하는 오류; 마땅히 내려졌어야만 했을 결정에 대한 진술과 그것을 받쳐주는 근거들을, 간략하게 제시해야 한다.

- (2) Ordinarily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s should set forth positions or employ arguments that were offered in the course of the Commission's proceedings on a case.
 - (3)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s shall be couched in temperate language conducive to maintaining respect for the Commission, vigorous expression of disagreement with the decision notwithstanding.
 - (4)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s shall conform to the specifications for a preliminary brief (*OMSJC* 8.4.a-b).
- c. The Chairman shall call a special meeting of the Commission by telephone or video conference to consider the adoption of an Answer to any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Upon the adoption of an Answer to a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by the Commission, no further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shall be permitted; neither shall any amendment to the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in question be permitted. A Concurring or Dissenting Opinion may be withdrawn.
- 18.13 An Executive Session shall be understood to be a meeting or a portion of a meeting wherein only Commissioners, and others specifically invited by the Commission, are present. On the cessation of the Session, only the conclusion, judgment, or decision shall be made public. The proceeding shall be secret unless the Commission shall vote to remove the injunction of secrecy.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 9, page 92.)
- A Closed Session shall be understood as a meeting or portion of a meeting wherein only Commissioners, and others specifically invited by the Commission, are present.. Unlike an Executive Session, however, the proceedings shall not be secret, but rather discussion of such matters outside of the meeting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each commissioner, and the minutes of such a closed session may be read and approved in open session. However, no person present at a closed session shall later identify in any manner the views, speeches or votes of a member of the commission during the closed session, apart from that member's written permission.

상법위지침

- (2) 일반적으로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들은 어떤 소송건에 대하여 총대위원회의 진행과정 중에 제시된 논쟁들을 [그들의] 입장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거나 채용해야 한다.
- (3)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들은, [총대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격렬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총대위원회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기 쉬운 온건한 언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 (4)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들은 예비 소송 개요에 대한 구체적 규정에 일치해야 한다 (상법위지침 8.4.7-1).

㉔. 위원장은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견해에 대해서든 하나의 대답을 채택 할 것을 고려하도록 전화나 화상 회의를 통한 특별 총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대위원회가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견해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을 채택 한 후에는, 더 이상의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견해가 허락되지 않는다; 동시에 문의 중에 있는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견해에 대한 어떤 수정도 허락되지 않는다.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를 철회 할 수는 있다.

18.13 집행부 회의는 총대위원들만, 그리고 총대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초대된 사람들만 출석한 회의 또는 회의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집행부] 회의가 중지되면, 결론, 판결, 혹은 결정만 공개되어야 한다. 총대위원회가 비밀에 대한 명령을 투표하여 삭제하기로 하지 않는 한 진행 [사항]은 비밀이다 (만국통상회의법, 새 개정판 9 항, 92 쪽).

비공개 회의는 총대위원들만, 그리고 총대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초대된 사람들만 출석한 회의 또는 회의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부 회의와는 달리, 진행 [사항들]은 비밀이 아니며, 오히려 회의 밖에서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토의는 각 총대 회원의 사려에 달려 있고, 그런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 회의에서 낭독되거나 인준될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회의] 후에 누구라도 비공개 회의 동안 총대위원회 어떤 회원이 [피력한] 관점들, 발언들, 투표들에 대하여, 동 회원의 서면 허락이 없이, 어떤 형태로든 밝혀서는 안된다.

19. REPORTS

- 19.1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prepare a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each year.
- 19.2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make a full report of each case directed to the General Assembly, which report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 a. A summary of the facts.
 - b. A statement of the issues.
 - c. The judgment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 d. The reasoning and opinion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 e. The vote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 f. Any concurring and/or dissenting opinions of any members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which have been approved under SJCM 18.12.
- 19.3
 - a. A copy of the report (see Section 19.2, above) of each case decided subsequent to the previous annual General Assembly shall be included in the *Commissioner Handbook* for the next following General Assembly.
 - b. The briefs (see SJCM 8.1, 8.2, 8.3, 8.4) shall be made available by electronic means or by inclusion in the *Commissioner Handbook* for the next following General Assembly.
- 19.4 A minority decision may be filed in accordance with *BCO* 15-5(c) within 20 days of the adjournment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making a decision, provided also that written notice by 1/3 of the voting members of the Commission file such notice within 24 hours of the adjournment.
- 19.5 The minutes, but not the judicial cases, decisions, or reports,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shall be reviewed annually by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The minutes shall be examined for conformity to this Manual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and *RAO* 17, violations of which shall be reported as “exceptions” as defined in *RAO* 14-11.d.(2). With respect to this examination, th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Business shall report directly to the General Assembly.

19. 보고서

- 19.1 상임법사전권위원회는 총회에 올릴 보고서를 매년 준비해야 한다.
- 19.2 상임법사전권위원회는 총회를 향해서 올려진 각 소송건의 전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보고서는 다음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ㄱ. 사실 요약 일부
 - ㄴ. 안건 진술 일부
 - ㄷ. 상임법사전권위원회 판결
 - ㄹ. 상임법사전권위원회의 논리와 견해
 - ㅁ.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투표
 - ㅂ. 상법위지침서 18.12 하에 인준된,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의 어떤 회원의 동의하는 그리고/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 전체.
- 19.3
 - ㄱ. 이전 연중 총회 후에 이어서 결정된 각 소송건의 보고서 (상기 19.2 항을 보라) 사본 일부는 차기 총회를 위한 총대들을 위한 안내서에 포함된다.
 - ㄴ. 소송 개요들(상법위지침서 8.1, 8.2, 8.3, 8.4 를 보라)은 전자 수단으로 혹 차기 총회를 위하여 총대들을 위한 안내서에 삽입 시킴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9.4 소수 결의안은 헌법 15-5,ㄷ에 준하여 상임법사전권위원회가 결의안 만드는 것을 정회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고, 또 전권위원회 회원의 1/3의 투표에 의한 서면 통보는 정회 24 시간 이내에 그러한 통보를 접수해야 한다.
- 19.5 상임법사전권위원회의 회의록들은, 법적 소송건들, 결의안들 혹 보고서들이 아닌 한, 헌법연구위원회에서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회의록들은 상임법사전권위원회의 이 지침서와 총운세 17 에 일치하는 여부가 심사되어야 하고, 위배된 사항들은 총운세 14-11.ㄷ.(2)에 정의된 대로 “예외 사항들”로 보고되어야 한다. 이 심사에 관하여는, 헌법연구위원회가 총회에 직접 보고한다.

20. AMENDMENTS, USE, AND DISTRIBUTION OF OPERATING MANUAL

- 20.1 This Manual may be amended as provided in *RAO 17-5*.
- 20.2 If any member asserts that this Manual has been violated in any case, such member may file a written objection citing the alleged violation. This written objection shall be included by the Secretary in the report of the case to the General Assembly filed under SJCM 19.2.

20. 운영 지침서의 개정안들, 사용과 배포

- 20.1 이 지침서는 총운세 17-5 에 의하여 개정 될 수 있다.
- 20.2 만일 어떤 회원이 이 지침서가 어떤 소송건에서든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 회원은 주장하는 바 위반 사항을 인용하여 서면 반대를 접수시켜야 한다. 이 서면 반대는 서기가 상법위지침서 19.2 하에 총회에 접수 시킨 소송건의 보고서 안에 포함 시켜야 한다.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MEMBER VOWS

RAO 17-1. There shall be a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composed of twenty-four members in accordance with *BCO* 15-4. Upon election, each new member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before entering upon the duties of this office, shall sign a printed copy of the following vows; further, if the newly elected member is present, he shall affirm these vows in the presence of the Assembly electing him:

“I do solemnly vow, by the assistance of the grace of God, in my service as a judge in this branch of the church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1. I will act as before God, my Judge and the Searcher of hearts;
2. I will judge without respect to persons, and if so tempted, will recuse myself from judgment;
3. I will judge not according to appearances, but judge righteous judgment;
4. I will judg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through my best efforts applied to nothing other than the record of the case and other documents properly before me; and
5. If in a given case I find my view on a particular issue to b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 will recuse myself from such case, if I cannot conscientiously apply the Constitution.”

SIGN: _____

Print Name: _____

Date _____

상임법사위원회

위원의 맹세

총운세 17-1. 헌법 15-4 에 따라 스물 네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임법사전권위원회를 둔다. 선출이 되면, 상임법사전권위원회의 새 위원은 이 직분의 의무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나오는 맹세를 인쇄한 사본에 서명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새로 선출된 위원이 출석하면, 그는 그를 선출한 총회 앞에서 이 맹세를 확답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 분과에서 재판관으로서의 나의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맹세합니다.

1. 나는 나의 재판관이시며 마음의 감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2. 나는 사람에 대한 편견없이 재판 할 것이며, 만약 그런 유혹이 생기면, 재판에서 스스로 물러 날 것이다;
3. 나는 보이는 것을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재판을 할 것이다;
4. 나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만 내 앞에 적법하게 주어진 소송 기록과 다른 문서들에 적용된 나의 최선의 노력으로 미국장로회의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다.
5. 만약 주어진 소송건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미국 장로회의 헌법과 나의 견해가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고, 만일 내가 양심적으로 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나는 그런 소송건에서 스스로 물러 날 것이다.”

날인: _____

정서한 이름: _____

날짜 _____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 CORPORATION)**

FIRST. -- The name of this corporation is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 Corporation).

SECOND. -- Its registered office in the State of Delaware is to be located at 229 South State Street, in the City of Dover, County of Kent. The registered agent in charge thereof is The Prentice-Hall Corporation System, Inc., at 229 South State Street, Dover, Delaware.

THIRD. --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 is to engage in any lawful act or activity for which corporations may be organized under the general Corporation Law of Delaware.

All asset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principally and directly dedicated exclusively to religious and educational work. The corporation shall not engage in business activities for profit and no part of any net earnings of the corporation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any member, director or officer of the corporation, or any private individual, save and except that reasonable compensation may be paid for services rendered to or for the corporation affecting one or more of its purposes, and no member, director or officer of the corporation, or private individual, shall be entitled to share in the distribution of any of the corporate assets on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No substantial part of the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the carrying on of secular propaganda, or otherwise attempting to influence legislation.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ese articles, the corporation shall not conduct or carry on any activities not permitted by an organization exempt under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its regulations as they now exist or as they may hereafter be amended, or by any organization contributions to which are deductible under Section 170 (c)(2) of such Code and regulations.

Upon the dissolution or liquidation or other winding up of this corporation, all of its assets, principal and income, subject to the payment of its debts, shall be distributed to an organization which is exempt under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FOURTH. -- The corporation shall not have any capital stock, and the conditions of membership shall be as stated in the By-Laws.

FIFTH. -- The names and places of residence of the incorporators are as follows:

NAMES

RESIDENCES

W. Jackson Williamson

701 Fort Dale Road
Greenville, Alabama 36067

Leon F. Hendrick

1424 Pinehurst
Jackson, Mississippi 39202

미국장로회
법인 등록 인가서
(법인)

첫째. -- 본 법인의 이름은 미국 장로회(법인)이다.

둘째. -- 텔라웨어 주에 소재한 본 법인의 등록 사무실은 켄트 카운티 도버시 내, 229 South State Street 에 위치한다. 그 등록된 담당 대행인은 텔라웨어 주 도버시 229 South State Street 에 소재한 프렌티스-홀 코포레이션 시스템 주식회사이다.

셋째. -- 본 법인의 목적은 텔라웨어 주의 일반적인 법인법 하에 조직된 법인들을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나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다.

본 법인의 모든 자산은 주로 또 직접적으로 종교적이고 교육적인 사업에 한해서만 헌납되어야 한다. 본 법인은 영리 사업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본 법인의 어떤 순수익의 아무 부분도 본 법인의 특정 소속인이나 이사, 임원, 혹은 특정 개인에게 이익이 되어서는 안되나, 단, 본 법인에 제공된 서비스나, 본 법인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로서 본 법인의 한 개 이상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온당한 보수가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또한, 본 법인이 해체될 경우, 본 법인의 어떤 소속원이나 이사, 임원 혹은 사적 개인도 본 법인의 자산의 어떤 부분의 분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본 법인의 활동의 어떤 실질적 부분도 세속적 선전 활동의 수행이나, 혹은 그밖에 법률 제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본 인가서에 어떤 다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 법인은 세무 법률 조항의 501(c)(3)이나 현존하는 세무 규칙 또는 차후 수정될 세무 규칙 하에 면제된 어떤 단체에 의해 허락 되지 않은 활동이나, 동 법률 조항 또는 규칙의 170(c)(2)하에 공제될 수 있는 단체의 기부금에 의해 허가 되지 않은 활동은 어떤 것이라도 수행하거나 진행시킬 수 없다.

본 법인이 해산되거나 부채 청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본 법인의 모든 자산과 원금과 수입은 부채 지불 조건하에 있으며, 세무 법률 조항 501(c)(3) 하에 면제된 한 단체로 분배되어야 한다.

넷째. -- 본 법인은 어떤 자본 주식도 소유해선 안되며, 본 법인의 회원들의 조건은 본 법인의 정관에 설명한 바와 같아야 한다.

다섯째. -- 본 법인 설립자들의 성명과 거주지는 다음과 같다.

성명

거주지

W 잭슨 윌리엄슨
W. Jackson Williamson

701 Fort Dale Road
Greenville, Alabama 36067

리안 F. 헨드릭
Leon F. Hendrick

1424 Pinehurst,
Jackson, Mississippi 39202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Gordon Kenworthy Reed	105 River Street Greenville, South Carolina 29601
Cecil Williamson, Jr.	221 Cone Drive Selma, Alabama 36707
Harry Norval Miller, Jr.	52 Adams Avenue Montgomery, Alabama 36104
Morton Howison Smith	5422 Clinton Boulevard Jackson, Mississippi 39209
Donald Bray Patterson	4611 Trawick Drive Jackson, Mississippi 39211

SIXTH. -- The civil activitie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managed by a board of directors. The number of directors which shall constitute the whole board shall be such as from time to time shall be fixed by, or in the manner provided in, the By-Laws, but in no case shall the number be less than three. The directors need not be members of the corporation unless so required by the By-Laws.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elected by the members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rporation to be held on such date as the By-Laws may provide, and shall hold office until their successors are respectively elected and qualified. The By-Laws shall specify the number of directors necessary to constitute a quorum. The board of directors may, by resolution or resolutions, passed by a majority of the whole board, designate one or more committees, which to the extent provided in said resolution or resolutions or in the By-Laws of the corporation shall have and may exercise all the pow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 and may have power to authorize the seal of the corporation to be affixed to all papers which may require it; and such committee or committees shall have such name or names as may be stated in the By-Laws of the corporation or may be determined from time to time by resolution adop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may, if the By-Laws so provide, be classified as to term of office. The Corporation may elect such officers as the By-Laws may specify, who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 of the Statute, have such titles and exercise such duties as the By-Laws may provide.

This corporation may in its By-Laws confer powers upon its board of directors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and in addition to the powers and authorities expressly conferred upon them by the Statute, provide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not exercise any power of authority conferred herein or by Statute upon the members.

SEVENTH. -- Meetings of members may be held without the State of Delaware, if the By-Laws so provide. The books of the corporation may be kept (subject to any provision contained in the Statutes) outside the State of Delaware at such place or places as may be from time to time design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법인 등록 인가서

고든 케네디 리이드 Gordon Kenworthy Reed	105 River Street, Greenville, South Carolina 29601
세실 위리암슨, 주니어 Cecil Williamson, Jr.	221 Cone Drive, Selma, Alabama 36104
해리 노벌 밀러, 주니어 Harry Norval Miller, Jr.	52 Adams Avenue Montgomery, Alabama 36104
몰튼 하위슨 스미스 Morton Howison Smith	5422 Clinton Boulevard Jackson, Mississippi 39209
다널드 브레이 패터슨 Donald Bray Patterson	4611 Trawick Drive Jackson, Mississippi 39211

여섯째. -- 본 법인의 내부 활동 및 업무는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전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는 정관에 의해 때때로 정해진 방식이나, 정관에 의해 규정된 방식대로 정해진 바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수가 셋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정관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이사는 본 법인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날짜에 개최된 본 법인의 연례 회의에서 본 법인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그들의 후임이 각각 선출되어 권한을 받을 때까지 재직해야 한다. 본 법인의 정관은 정족수 구성 시 필요한 이사의 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전체 이사회와 과반수에 의해 통과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결의안으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는 상기에 언급된 결의안 또는 결의안들 또는 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본 법인의 활동과 업무의 관리에 관한 이사회에 모든 권한을 갖고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법인의 날인을 첨부해야 하는 모든 서류에 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 그와 같은 위원회나 위원회들은 본 법인의 정관에 진술되어 있는 그런 명칭이나 명칭들을 갖거나, 때때로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명칭이 결정될 수 있다. 만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본 법인의 이사들은 임기에 있어서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 법인은 정관에 제시된 대로 그러한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데, 그들은, 내규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런 직함 가지고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

이사회가 이 문서 내에서도 내규에서 부여한 권한을 회원들에게 행사하지 않는 한, 본 법인은 앞서 기술한 권한과 권위, 또는 내규에 의해 명확히 부여된 권한과 권위 외에 본 법인의 정관에서 그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일곱째. -- 정관에서 그와 같이 규정할 경우, 회원 회의는 텔레워 주 밖에서 개최될 수 있다. 본 법인의 장부는 (내규에 포함된 모든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때때로 지정된 텔레워 주 경계 바깥의 장소, 또는 장소들에 보관 될 수 있다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EIGHTH. -- The corporation reserves the right to amend, alter, change or repeal any provision contained in thi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in the manner now or hereafter prescribed by the Statute, and all rights conferred upon members herein are granted subject to this reservation.

We, The Undersigned, being each of the incorporators hereinbefore named, for the purpose of forming a corporation pursuant to Chapter I of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do make this Certificate, hereby declaring and certifying that the facts herein stated are true, and accordingly have hereunto set our hands and seals this 21st day of September, A.D. 1973.

W. Jackson Williamson

Leon F. Hendrick

Gordon K. Reed

Cecil Williamson, Jr.

Harry Norval Miller, Jr.

Morton Howison Smith

Donald B. Patterson

CLERK'S NOTES ON AMENDMENTS

1. In 1974 the original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was amended to change the name.
2. In 1980, the General Assembly amended Article Sixth by adding the word "civil" in the first line, and deleting the last sentence of the first paragraph, namely: "The board of directors is expressly authorized to make, alter or repeal the Bylaws of this corporation."

법인 등록 인가서

여덟째. -- 본 법인은 이 법인 설립 인가서에 포함된 어떤 규정이라도 내규에 현재 규정된, 혹은 차후에 규정될 방법에 따라, 수정, 개조, 변경 또는 폐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이 글에서 회원에게 수여된 모든 권리는 이 유보된 권리에 종속된다.

우리, 서명자들은 아래에 나열된 각 성명의 법인 설립자들이며, 델러웨어 법조문 제 I 장의 8 항에 준하여, 법인을 구성하려는 목적으로 이 설립 인가서를 만들고, 이로써 이 문서 속에 진술된 모든 사실들이 진실임을 선언하여 증명하며, 그에 부합하여 주후 1973 년 9 월 21 일에 이에 관해 서명하고 봉인한다.

W 잭슨 위리암슨
W. Jackson Williamson

리안 F. 헨드릭
Leon F. Hendrick

고든 케네디 리이드
Gordon K. Reed

세실 위리암슨, 주니어
Cecil Williamson, Jr.

해리 노벌 밀러, 주니어
Harry Norval Miller, Jr.

몰튼 하위슨 스미스
Morton Howison Smith

도날드 브레이 패터슨
Donald B. Patterson

수정 항목에 대한 서기의 주석

1. 1974 년에 법인 설립 인가서 원본은 명칭을 바꾸기 위해 수정되었다.
2. 1980 년에 총회는 여섯째 항을 첫째 줄의“민사”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 즉 “이사회는 본 법인의 정관을 제정, 개조 또는 폐지할 권한을 특별히 갖는다”를 삭제하여 수정했다.

PREFATORY STATEMENT: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civil matters,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s a civil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Delaware. As in any civil corpor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has a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bylaws under which it is to operate in regard to these civil matters. These bylaws should never be amended to include procedures for conducting ecclesiastical business but only for the conduct of civil business in our society.

**CORPORATE BYLAWS
OF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 CORPORATION)**

ARTICLE I. NAME AND LOCATION

Section 1. The name of this corporation shall b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 Corporation).

Section 2. The registration of the corpor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will be design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ported annually in the corporate minutes. The official business address of the corporation is the office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ther offices for transaction of business shall be located at such places as the General Assembly or its Permanent Committees shall designate.

ARTICLE II. MEMBERS AND MEETINGS OF THE CORPORATION

Section 1.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those duly ordained Teaching Elders (Ministers) enrolled in a Presbytery affiliated with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those Ruling Elders representing local congregations, which congregations are affiliated with Presbyteries affiliated with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who have been designated or commissioned to attend the next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Such Teaching Elders and Ruling Elders shall be designated or commissioned by Presbyteries or Congregations in accordance with rules and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Book of Church Order (14-2). Such individuals shall be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t which time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those individuals designated or commissioned as hereinabove set forth to attend such General Assembly

서문:

민법 사안들을 관리하기 목적으로, 미국장로교는 델러웨어주의 법 아래 민간 법인으로 조직되어 존재한다. 다른 민간 법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장로교는 법인 인가서와 정관을 갖고 있으며 이런 민법 사안들에 관하여는 그에 준하여 운영한다. 이 정관은 결코 교회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수정될 수 없고 다만 현 사회의 민사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서만 수정될 수 있다.

미국장로교
법인 정관
(법인)

제 1 항. 명칭 및 위치

제 1 조. 법인의 명칭은 미국장로교 (법인)이라 한다.

제 2 조. 미국장로교 법인의 등록은 이사회에 의해 지정되며, 법인 의사록에 매년 보고될 것이다. 법인의 공식 사무처 주소는 법인의 행정위원회실이다.

사무 처리를 위한 다른 사무실은 총회나 총회 상임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 2 항. 법인의 회원과 회의

제 1 조. 법인의 회원은 미국장로교에 가입된 노회에 등록되어 있는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강도장로(목사)들과, 지역 회중들을 대표하며, 미국장로교의 차기 총회에 참석하도록 지명되거나 위임된 치리 장로들이어야 하는데, 그 회중들은 미국장로교에 가입된 노회에 가입된 회중들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강도장로와 치리장로들은 미국장로교 교회헌법(14-2)에 규정된 규칙과 법규를 따르는 노회들이나 회중들에 의해 지명되거나 위임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러한 개인들은, 앞 글에 기술된 바와 같이 총회에 참석하도록 지명되거나 위임된 사람들이 법인의 회원들이 되는 시점인 미국장로교 총회의 차기 모임까지 법인의 회원이 된다.

CORPORATE BYLAWS

Section 2. The annual meeting of the Corporation shall be at such time and such place as desig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Section 3. Special meetings of the membership of Corporation in General Assembly may be called in accordance with the Book of Church Order (14-3).

Section 4. A quorum for the transaction of business at any meeting of the membership in General Assembly shall be that prescribed in the Book of Church Order (14-5).

Section 5. The Moderator shall call all meetings to order and shall preside until his successor has been selected and takes office. If the Moderator is unable to act, the Stated Clerk shall call the Assembly to order and preside over its sessions until a Moderator has been elected.

Section 6. Proxies shall not be allowed at General Assembly meetings of the membership.

ARTICLE III. BOARD OF DIRECTORS

Section 1. The business affairs of the Corporation, as distinguished from the ecclesiastical matters, shall be managed by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shall have such powers and duties as are set forth in the charter of the Corporation and the Bylaws.

Section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consist of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Each director shall hold office as a director as long as he remains a member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Section 3. The Board of Directors may establish such subcommittees as may be deemed necessary or desirable and vest such subcommittees with such authority as may be deemed proper.

Section 4. A Stated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held during each General Assembly. Notice shall not be required for this Stated Meeting. A regular meeting, without notice, may be held at each regular meeting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ection 5. Special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called by the Chairman or by a majority of the Board. Written notice stating the place, date and hour of such special meeting shall be delivered by the Secretary at least 10 days prior to the date of the meeting. Such notice should specify

법인정관

제 2 조. 법인의 연례 회의는 총회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제 3 조. 총회에서 법인의 회원권에 관한 특별 회의는 교회헌법(14-3)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제 4 조. 총회에서 회원권에 관한 모든 회의에서 사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는 교회 헌법(14-5)에 규정된 바와 같아야 한다.

제 5 조. 총회장은 그의 후임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모든 회의의 개최 선언을 하고 사회를 보아야 한다. 총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회 서기가 총회의 개최 선언을 하고 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회 회기 중 사회를 보아야 한다.

제 6 조. 회원권에 관한 총회 회의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다.

제 3 항. 이사회

제 1 조. 교회에 관한 사안들과 구별되는 법인의 사업 업무들은 이사회가 관리해야 하며, 이 이사회는 법인의 현장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임무를 갖게 된다.

제 2 조. 이사회는 총회 행정위원회 회원으로 이루어진다. 각 이사는 그가 총회 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남아 있는 한 이사로서의 직책을 맡는다.

제 3 조. 이사회는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간주될 경우 산하에 분과 위원회들을 설립하고 그 위원회들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4 조.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각 총회 회기 중에 개최되어야 한다. 이 정기회의를 위한 소집서가 반듯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위원회의 각 정기회의 시, 소집서 없이, 정기 [이사회] 모임이 개최될 수도 있다.

제 5 조. 이사회의 특별 회의는 이사장이나 이사회의 과반수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적어도 회의 날짜의 10 일 전에 서기는 그러한 특별 회의의 장소 및 날짜, 시간이 적힌 서면 통보서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통보서는 회의의 목적을 명기해야 한다. 이사는 그런 통보서에 대한 권한을 포기 할 수 있다; 그런 회의에의 출석은 그런 소집서에 대한 권한 포기를 성립시킨다.

CORPORATE BYLAWS

the purpose of the meeting. A director may waive such notice; and attendance at such a meeting shall constitute a waiver of such notice.

Section 6. A maj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constitute a quorum.

Section 7. There shall be no voting by proxy.

ARTICLE IV. OFFICERS

Section 1. The officer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the Chairman of the Board and President, the Secretary, the Treasurer, and such assistant secretaries and treasurers as may be deemed desirable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may elect assistant secretaries and treasurers. In the event that the Secretary or the Treasurer is unable to act,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authorized to appoint a provisional Secretary or a provisional Treasurer to serve until a regular Secretary or Treasurer may be elected by the next General Assembly.

Section 2. The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serve as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s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The Chairman shall preside at all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appoint the members of all subcommittees of the Board. He shall sign such instruments as may be required and shall perform such duties as may be assig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in General Assembly.

Section 3.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serve as the Secretary of the Corporation. The Secretary shall have such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set forth in the *Book of Church Order* and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 for the Stated Clerk. He shall be immediately responsible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The Secretary shall prepare and forward all notices required by law or by these Bylaws, and shall have general charge of the corporate books and records. He shall sign such instruments as may be required, and perform the duties incident to the office of Secretary, and such duties as may be assig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in General Assembly.

Section 4.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serve as the Treasurer of the Corporation. The Treasurer shall be the custodian of the funds and securities belonging to the Corporation, and not otherwise

법인정관

제 6 조. 이사회는 과반수가 정족수를 이룬다.

제 7 조. 대리 투표는 실시될 수 없다.

제 4 항. 임원

제 1 조.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과 사장, 서기, 회계 및 이사회가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부서기들 및 부회계들이다. 이사회가 부서기들과 부회계들을 선출할 수 있다. 서기나 회계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차기 총회에서 정 서기나 회계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할 임시 서기나 임시 회계를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제 2 조.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과 법인의 사장으로서 봉사해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사회를 보아야 하며, 이사회에서 모든 분과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해야 한다. 그는 그의 서명이 요청되는 문서들에 서명해야 하며, 총회에서 법인 위원들의 이사회가 배당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3 조. 총회의 서기는 법인의 총무로서 봉사해야 한다. 총무는 교회헌법과 총회 운영 세칙에 나오는 총회 서기에게 주어진 임무나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는 행정위원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총무는 법이나 이 정관이 요구하는 모든 통보서를 준비하고 발송하여야 하며, 법인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그는 필요한 서류에 서명해야 하며, 총무의 직무에 부수되는 임무와, 총회시 이사회나 법인의 위원들에 의해 배당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총회 서기는 법인의 회계로서 봉사해야 한다. 회계는 네 개의 프로그램 위원회의 중 하나로 달리 지명되지 않은, 법인 소유의 자금과 증권의 관리인이 된다. 그는 교회헌법에 기술된 규정을 포함한 총회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접수, 예치, 지불하여야 한다. 그는 법인의 재정과 그가 관리하는 자금의 정확한 계정 계좌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그는 규정된 바대로 법인의 재정 상황 보고서를 앞으로 준비하거나, 그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도록 하며, 대체적으로 회계의 직책에 부수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는 행정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액수대로 담보를 받게 된다.

CORPORATE BYLAWS

designated to one of the four Program Committees. He shall receive, deposit and disburse such funds as dir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cluding any provisions set forth in the *Book of Church Order*. He shall keep an accurate account of the finances of the Corporation and of the funds in his custody. He shall prepare, or have prepared, such reports of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rporation as may be required, and, in general, perform all of the duties incident to the office of Treasurer. He shall be bonded in an amount to be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RTICLE V. THE PARTICULAR PERMANENT COMMITTEES

A.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The business affairs of the Corporation as distinguished from the ecclesiastical matters, and those not specifically assigned to one of the other permanent committees by these Bylaws or an act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which serves as the Board of Directors provided in the Charter of Incorporation, subject to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General Assembly, including all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Book of Church Order*.

B. The Committee for Christian Education and Publications.

The affairs of the Church in the areas of Christian education and publications are assigned to the Committee for Christian Education and Publications, whose duties and authority shall be desig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C. The Committee on Mission to North America.

The affairs of the Church involved in its exten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e assigned to the Committee on Mission to North America, whose duties and authority shall be desig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D. The Committee on Mission to the World

The affairs of the Church in the area of world mission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e assigned to the Committee on Mission to the World, whose duties and authority shall be desig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E. The Committee on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The affairs of the Church in the area of campus ministries on college and university campuses are assigned to the Committee on Reformed University Ministries, whose duties and authority shall be desig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제 5 항. 각 상임 위원회

- ㄱ. 총회 행정위원회
교회에 관한 사안들과 구별되는 법인의 사업 업무들과 본 정관이나 총회의 조치로 다른 상임 위원회 중 하나에 구체적으로 배당되지 않은 업무들은 행정위원회가 관리해야 하는데, 이 행정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서에 규정된 대로 이사회로서 봉사하며, 교회헌법의 모든 해당 규정을 포함하여, 총회가 규정하는 규칙과 규제들의 지배를 받는다.
- ㄴ. 기독교교육 및 출판위원회
기독교 교육과 출판 분야의 교단 업무는 기독교교육 및 출판위원회에 배당 되었고, 그 임무와 권한은 총회에서 지정한다.
- ㄷ. 국내선교위원회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 범위 내에 관계되는 교단 업무는 국내선교위원회에 배당 되었고, 그 임무와 권한은 총회에서 지정한다.
- ㄹ. 세계선교위원회
미국과 캐나다 밖 세계 선교 지역의 교단 업무는 세계선교위원회에 배당 되었고, 그 임무와 권한은 총회에서 지정한다.
- ㅁ. 학원선교위원회
단과 대학교와 종합대학교의 학원 선교 영역의 교단 업무는 학원선교위원회에 배당되었고, 그 임무와 권한은 총회에서 지정한다.

CORPORATE BYLAWS

F. Other Committees

The Assembly may elect or appoint other committees of either a permanent or temporary character to handle particular matters of business as designated by the Assembly. The business handled by such committees shall be limited to those matters assigned by the Assembly.

G. Boards of Agencies

When it is necessary for the handling of civil matters, the General Assembly may authorize one of its committees or agencies to incorporate and to form a board. The relationship of the board to the Assembly remains as a committee, and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ion charter and bylaws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ARTICLE VI. OTHER BOARDS AND AGENCIES

The Assembly has authority to make exceptions to the above guidelines for some boards, agencies and committees not specifically covered by the *BCO*, by making amendments to these bylaws spelling out the specific exceptions, as well as approving corporation bylaws in conformity with these exceptions.

1. PCA Retirement & Benefits, Inc., hereinafter referred to as "RBI," shall provide such services in furtherance of the religious purposes of this Corporation as may be agreed between RBI and the corporation from time to time. Specifically, but not in limitation thereof, RBI shall administer and serve as the trustee of the assets of the Retirement plans, the group insurance plans and the ministerial relief programs of the Corporation.

No action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rporation, or RBI shall conflict with provisions of the "Trust Agreement for the Tax-Sheltered Annuity Pla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Health and Welfare Benefit Trust" without amendment of said Trust Agreements as provided in the Trust Agreements. RBI shall serve as the trustee under the Trust Agreements until replaced in accordance with their terms.

RBI will make a report to each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Committee of Commissioners on PCA Retirement & Benefits, Inc.

법인정관

바. 기타 위원회

총회는 총회가 지정하는 업무의 특정한 사안들을 다루기 위하여 상임 혹은 임시 성격의 기타 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그러한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업무는 총회가 지정한 사안들로 제한되어야 한다.

사. 기관 이사회

민사를 다루기 위해 필요할 때, 총회는 산하의 한 위원회나 기관에 기관 이사회를 법인 조직화하여 구성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총회에 대하여 기관 이사회는 한 위원회로서 변함이 없으며, [그 기관 이사회] 법인 현장과 정관은 교단의 헌법과 부합해야 한다.

제 6 항. 기타 이사회들과 기관들

총회는, 구체적인 예외들을 명기하여 본 정관을 수정하고, 또 이 예외들에 부합하도록 법인 정관을 인준하여, 헌법이 특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이사회들, 기관들과 위원회들을 위하여 상기의 지침에 예외를 만들 권한을 갖고 있다.

1. 미국장로교의 총회 은퇴 및 혜택 주식회사-- 이후부터 "RBI"라고 지칭될--는 때때로 RBI 와 본 재단 사이에 동의되는 대로, 본 재단의 신앙적 목적을 함양하는데 부합한 봉사를 해야한다. 특별히, RBI 는 은퇴 플랜, 단체 보험 플랜과 본 재단의 목회 사역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의 자산에 대한 재단 이사로서 경영하며 봉사해야 하나, 그 업무가 그것들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 재단, 혹은 RBI 의 조치가 위탁 관리 합의서에 규정된대로 이미 진술되어 있는 위탁 관리 합의서를 개정함이 없이 "미국장로교의 세금 공제 연금 플랜을 위한 관리 합의서"와 "미국장로교 총회 건강과 복지 혜택 위탁 관리"의 규정들과 상치될 수 없다. RBI 는 대치 될 때까지 관리 합의서에 따라 그 조건에 일치하게 재단 이사로서 봉사한다.

RBI 는 총회 은퇴 및 혜택 주식회사 총대 위원회를 통해서 매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CORPORATE BYLAWS

The Board of Directors of RBI shall be twelve (12) in number, divided into four (4) classes of three (3) men each serving for four (4) year terms. Directors wi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to a second four-year term after which there must be a one-year interval before further re-election. The Board may make requests to the Presbyteries to nominate specific men to the Board and may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letters of recommendation concerning particular nominees from the Presbyteries. The General Assembly shall elect at each Assembly a class of Directors to begin service immediately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Assembly. Each member of the Directors must be either a Teaching Elder, Ruling Elder or Deacon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The Directors are no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BCO*, Chapter 14 relating to proportionate representation of all Presbyteries or for equal representation of Teaching and Ruling Elders. A vacancy on the Board of Directors because of death, resignation, removal, disqualification or otherwise, may be filled by the directors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rm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next General Assembly.

2. The Board of Trustees of Covenant College shall consist of twenty-eight members each elected to a four-year term. The Board is divided into four classes of seven men each such that the terms of one-fourth of the Board members expire each year. There is no required formula for dividing the members of a class between teaching and ruling elders. A Trustee shall be eligible at the end of any full four-year term for re-election to a second four-year term, after which there must be a one-year interval before re-election.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CA may choose to elect Trustees to fill unfinished terms of Trustees who vacated their office before their term expired.

The Trustee who is elected to fill the unfinished term is eligible, if reelected, to serve one additional successive term, after which a one-year period must elapse before he is eligible for re-election.

Up to four men of denominations with which the PCA is in ecclesiastical fellowship may be elected, one to each class. In addition, the Board may make requests to the Presbyteries to nominate specific men to the Board and may submit to the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letters of recommendation concerning particular nominees from the presbyteries. Furthermore, the Board may recommend one nominee per class from another NAPARC member denomination for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with a maximum of two such members permitted on the Board at one time.

법인정관

RBI 이사회의 수는 열두(12)명으로 될 것이며, 한 반에 남성 삼(3)인으로 된 네 (4) 반으로 나누어져 각각 사(4)년의 임기 동안 봉사한다. 이사는 두 번째 사년 임기에 재선될 자격이 있으나, 재임 후에는 재선 전에 반드시 일 년의 휴기를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특정인들의 공천을 노회에 요청할 수 있고 노회들로부터 추천된 자들 각각에 관한 추천서를 총회 공천부에 상정할 수 있다. 총회는 총회가 끝나자마자 즉시 임기를 시작할 한 반의 이사들을 각 총회 회기 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각 이사는 미국장로교의 강도장로나 치리장로 혹은 안수집이어야 한다. 이사는 헌법 제 14 장의 모든 노회의 비례 대표제에 관한 규정이나 강도장로와 치리장로의 동수가 대표를 맡는 것에 관한 규정에 지배 받지 않는다. 사망, 사임, 제명, 부자격 혹은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 초래된 이사회에 공석은 차기 총회의 인준하에 따라 이사들에 의해서 남은 잔여 기간 동안 보궐되어야 한다.

2. 커버넌트 대학 이사회는 각각 사년의 임기로 선출된 스물 여덟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매년 사분의 일의 이사회 회원들의 임기가 끝나도록 되어있는 남자 일곱명이 한 반을 이루는 네개의 반으로 나뉘어 진다. 강도장로와 치리장로 사이에 한 반의 구성원을 나누기 위하여 규정된 공식은 없다. 이사는 사년간의 한 임기를 완전히 끝마친 뒤에 두 번째 사년 임기에 재선될 자격이 있으며, 그 후에는 재선 전에 반드시 일년의 휴기를 두어야 한다. 미국장로교 총회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직하여 공석이 된 이사들의 잔여 기간을 채울 이사들을 선출할 것을 채택할 수 있다.

잔여 기간을 채우도록 선출된 이사는, 재선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한 임기를 더 연임할 수 있는데, 그 후에는 재선 자격을 얻기 전에 반드시 일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미국장로교가 교회적 친분을 갖고 있는 교단들로부터는 각 반에 한 명씩 네 명까지 선출 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노회들에게 어떤 특정인들을 이사회로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노회들이 올린 특정 후보들에 관한 추천서를 총회 공천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다른 복미주 장로교 및 개혁주의 교회 협의회 소속 교단으로부터 각 반 당 한 명씩을 총회 공천 위원회가 고려하도록 추천할 수 있고, 한 번에 이사회에 허락되는 그런 위원들은 최고 두 명이다.

CORPORATE BYLAWS

3. The Board of Trustees of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shall consist of not less than twelve and not more than thirty-two members [currently twenty-four]. The members of the Board of Trustees are each elected to a four-year term. The Board is divided equally into four classes, the terms of one-fourth of the Board members expiring each year. A Trustee shall be eligible at the end of any full four-year term for re-election to a second four-year term, after which there must be a one-year interval before re-election.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CA may choose to elect Trustees to fill unfinished terms of Trustees who vacated their office before their term expired. The Trustee who is elected to fill the unfinished term is eligible, if reelected, to serve one additional successive term, after which a one-year period must elapse before he is eligible for re-election.

Each Trustee shall be an ordained teaching or ruling el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and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except that up to two members of each class may be elders of denominations with which the PCA is in ecclesiastical fellowship. There is no required formula for dividing the members of a class between teaching and ruling elders. In addition, the Board may make requests to the Presbyteries to nominate specific men to the Board and may submit to the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letters of recommendation concerning particular nominees from the presbyteries. Furthermore, the Board may recommend one nominee per class from another NAPARC member denomination for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with a maximum of two such members permitted on the Board at one time.

4. The Directors of Ridge Haven, Inc. shall consist of ten (10) members, divided into five (5) classes of two (2) men each serving five (5) year terms. The General Assembly shall elect at each Assembly a Class of Directors to begin service immediately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Assembly. In addition, the Ridge Haven Board may make request to presbyteries to nominate specific men to the Board and may submit to the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letters of recommendation concerning particular nominees from presbyteries.

Each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must be either a Teaching or Ruling Elder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Ridge Haven are not subject to the *BCO* Chapter 14 relating to proportionate representation of all Presbyteries or for equal representation of Teaching and Ruling Elders. Directors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to a second five-year term after which there must be a one year interval before further re-election.

법인정관

3. 커버넌트 신학대학교 이사회는 열 두명 이상 서른 두명 이하로 [현재 스물 넷] 구성된다. 선출된 이사회 각 회원의 임기는 사년이다. 이사회는 동등하게 네 개의 반으로 나뉘어지고, 이사회 회원 사분의 일의 임기는 매년 만료 된다. 이사는 사년간의 한 임기를 완전히 끝마친 뒤에 두 번째 사년 임기에 재선될 자격이 있으며, 그 후에는 재선되기 전에 반드시 일년의 휴기를 두어야 한다. 미국장로교 총회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직하여 공석이 된 이사들의 잔여 기간을 채울 이사들을 선출할 것을 채택할 수 있다. 잔여 기간을 채우도록 선출된 이사는, 재선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한 임기를 더 연임할 수 있는데, 그 후에는 재선 자격을 얻기 전에 반드시 일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각 이사는 미국장로교의 안수 받는 강도장로 혹은 치리장로로서 총회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어야 하나, 각 반에 두 명까지는 미국장로교와 교회적 친분이 있는 교단의 장로도 될 수 있다. 각 반의 회원들을 강도장로와 치리장로로 나누기 위하여 규정된 공식은 없다. 또한, 이사회는 노회들에게 어떤 특정인들을 이사회로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노회들이 올린 특정 후보들에 관한 추천서를 총회 공천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다른 북미주 장로교 및 개혁주의 교회 협의회 소속 교단으로부터 각 반 당 한 명씩을 총회 공천 위원회가 고려하도록 추천할 수 있고, 한 번에 이사회에 허락되는 그런 위원들은 최고 두 명이다.

4. 릿지 헤이븐의 이사들은 열(10) 명으로 구성되고, 남자 두(2) 명의 다섯(5) 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각각 오(5) 년의 임기동안 봉사한다. 총회는 각 총회 회기 중 총회가 끝나자마자 즉시 임기를 시작할 한 반의 이사들을 선출한다. 또한, 이사회는 노회들에게 어떤 특정인들을 이사회로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노회들이 올린 특정 후보들에 관한 추천서를 총회 공천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이사회 의 각 회원은 미국장로교의 강도 혹은 치리장로이어야 한다. 릿지 헤이븐의 이사회 회원들은 헌법 제 14 장의 모든 노회의 비례 대표제에 관한 규정이나 강도장로와 치리장로의 동수가 대표를 맡는 것에 관한 규정에 지배 받지 않는다. 이사들은 두 번째 오년 임기에 재선될 자격이 있으며, 그 후에는 재선 자격을 얻기 전에 반드시 일 년의 휴기를 두어야 한다.

CORPORATE BYLAWS

5. The Board of Directors of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Foundation, Inc., shall consist of ten (10) members in classes elected through the standard nomination and election procedures.

The Directors shall serve for four (4) year terms, and shall be divided into four (4) classes, each class being as nearly equal in number as possible, so that the terms of approximately one-fourth of the Directors shall expire each year. Directors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to a second four-year term after which there must be a one-year interval before further election.

As stated above, the Directors shall be elected through the standard nomination and election procedures, except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ay make requests to the Presbyteries to nominate specific men for election as Directors, and may submit to the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letters of recommendation concerning particular nominees for election as Directors from the Presbyteries.

All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either Teaching Elders, Ruling Elders or Deacons, and at least one-half of such members shall be Ruling Elders and Deacons.

ARTICLE VII. FISCAL MATTERS

Section 1. The fiscal year of the Corporation shall be from January 1 through December 31 of each year, commencing January 1, 1991. The General Assembly shall annually designate the auditors of the Corporation on recommendation from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which auditing firm(s) shall make an audit of the financial affairs of the Corporation and of each permanent committee promptly following the close of each fiscal year. The expenses of such audit shall be prorated among the Corporation and each permanent committee.

법인정관

5. 미국장로교 재단 이사회는 각 반에서 표준 추천 및 선거 과정을 통하여 선출된 열(10) 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들의 임기는 사(4) 년이며, 네(4) 개의 반로 나뉘는데, 각 반은 가능한 한 수자를 거의 같도록 하여, 매년 이사들의 약 4 분의 1 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한다. 이사들은 두 번째 사년 임기에 재선될 자격이 있으며 그 후에는 계속 선거 전에 반드시 일 년의 휴기를 두어야 한다.

상기한 바대로 이사들은 표준 추천 및 선거 과정을 통하여 선출되나, 이사회가 노회들에게 어떤 특정인들을 이사회로 추천하도록 요청하고, 그 노회들이 올린 특정 후보들에 관한 추천서를 총회 공천 위원회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이다. 이 이사회의 모든 회원은 강도장로, 치리장로, 혹은 집사이며 적어도 회원의 이분의 일은 치리장로와 집사이어야 한다.

제 7 항. 재정 사항

제 1 조. 법인의 재정 년도는 1991 년 1 월 1 일부터 시작하여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총회는 매년 행정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법인의 (회계) 감사들을 임명하며, 감사를 맡은 용역사(들)는 매 재정 연도 종결 직후 신속하게 법인과 각 상임 위원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이 감사 비용은 법인과 각 상임 위원회로 분배된다.

CORPORATE BYLAWS

Section 2. All fund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deposited from time to time to the credit of the Corporation in such banks, savings and loan institutions, trust, or other depositories as the permanent committees by resolution may select. Committees, boards and agencies of the General Assembly may maintain their own separate bank accounts.

Section 3. All checks, drafts, or other orders for the payment of money, notes, or other evidences of indebtedness issued in the name of the Corporation shall be signed by such officer or officers of the Corporation as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designate. All checks, drafts, or other orders for the payment of money, notes, or other evidences of indebtedness issued in the name of any of the permanent committees shall be signed by such representative of the committee as the committee by resolution shall designate.

ARTICLE VIII. ECCLESIASTICAL MATTERS

Section 1. The ecclesiastical Constitution of the Church is defined in the Book of Church Order, Preface III.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shall control over any provisions of these Bylaws that may be in conflict therewith.

ARTICLE IX. AMENDMENTS TO THE BYLAWS

These Bylaws may be amended by a majority vote at any annual or specia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제 2 조. 법인의 모든 자금은 상임 위원회들이 결의에 따라 선택한 은행이나 저축 금융 기관, 신탁기관, 혹은 다른 공탁 기관에 법인의 예금으로 때에 따라 예치되어야 한다. 총회의 위원회와 이사회 및 기관들은 각 단체의 독자적인 은행 구좌를 유지할 수 있다.

제 3 조. 모든 수표나 인출 혹은 다른 현금, 어음 또는 법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다른 채무 증서에 대한 지불 요청은 행정위원회가 지명한 법인의 임원 혹은 임원들에 의해 배서되어야 한다. 모든 수표나 인출 혹은 다른 현금, 어음 또는 상임 위원회들 중의 하나의 이름으로 발행된 다른 채무 증서에 대한 지불 요청은 그 상임 위원회가 의결에 의해 지명한 상임 위원회의 대리인에 의해 배서되어야 한다.

제 8 항. 교회에 관한 사안들

제 1 조. 교단의 교회에 관한 헌법은 *교회헌법*, 서문 III 항에 정의되어 있다. 그 헌법의 규정들은 그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본 정관의 모든 규정 조항들을 통제한다.

제 9 항. 정관의 수정

본 정관은 총회의 모든 연례 회의이나 특별 회의 중 과반수의 투표로 수정 될 수 있다.

NAPARC* AGREEMENT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

NOTE: “Amendments to the *BCO* are unnecessary to enable Sessions and Presbyteries to be guided by the NAPARC AGREEMENT, and the Assembly [will] communicate the NAPARC AGREEMENT to Sessions and Presbyteries for guidance” (*MI7GA*, 17-82, III, 10, p.152).

NAPARC Golden Rule Comity Agreement

(For the Information of Sessions and Presbytery MNA Committees)

1. We will be sensitive to the presence of existing churches and missions ministries of other NAPARC churches and will refrain from enlisting members and will take care in receiving members of these existing ministries.
2. We will communicate with the equivalent or appropriate agency (denominational missions committee or board, Presbytery missions or church extension committee, or session) before initiating church planting activities in a community where NAPARC churches or missions exist.
3. We will provide information on at least an annual basis describing progress in our ministries and future plans.
4. We will encourage our regional home missions leadership to develop good working relationships.

MI5GA, 15-80, III, 6, p. 165

NAPARC Agreement on Transfer of Members

Recognizing that the churches of NAPARC have on occasion unintentionally received members or ordained officers who were under various states of discipline in another NAPARC church, thus creating tension between the churches, and at the same time recognizing the need for mutual freedom and openness on the part of the churches, we agree to respect the procedures of discipline and pastoral concern of other denominations as follows:

1. Regular Transfer of Membership
That in the regular transfer of membership between NAPARC churches, the session/consistory or presbytery/classis not receive a member until the appropriate document of transfer is in the hands of the receiving church.
2. Transfer with Irregularities
 - a. That upon request for transfer of membership by a person under

**총회가 채택한
네이팍* 협정서**
(*북미주 장로교 및 개혁주의 교회협의회)

참조: “당회나 노회가 네이팍 협약서를 따르도록 만들기 위한 헌법 수정안은 불필요하고, 총회가 네이팍 협약서를 따르도록 당회와 노회에 소통한다 [할 것이다].” (제 17 차 총회록, 17-82, III, 10, 152 페이지).

네이팍 황금을 예절협정
(국내 선교 선교위원회 당회와 노회의 정보를 위하여)

1. 우리는 다른 네이팍 교회들의 기존 교회들과 선교적 파견 사역들에 민감할 것이며 기존 사역으로부터 교인들을 모집하는 것을 삼가고 교인들을 받아 들이는 것을 조심할 것이다.
2. 우리는 네이팍 교회들 또는 파견 사역이 존재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 사회에 교회 개척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동등한 또는 적절한 기관(교단적 선교 위원회나 이사회, 노회 선교부들이나 교회 확장 위원회, 또는 당회)을 통하여 소통할 것이다.
3. 우리는 적어도 일년을 기초로하여 우리 사역들과 장래 계획들의 진보를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4. 우리는 자기 고장에서 선교하는 우리의 지역 지도자들에게 좋은 사역 관계를 개발 하도록 격려 할 것이다.

제 15 차 총회록, 15-80, III, 6, 165 페이지

교인 이명에 관한 네이팍 협정

네이팍에 속한 교회들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다른 네이팍 교회의 다양한 치리 상태 하에 있는 교인이나 직분자들을 받아 들임으로, 교회 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교회 당사자들 간에 피차에 대하여 상호간의 자유와 개방성의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우리는 타 교단의 권징과 목회적 배려에 대한 절차들을 존중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교인의 정상적 이적
네이팍 교회들 간에 교인의 정상적 이적에 있어서는, 당회/개혁교회 당회 또는 노회/개혁교회 노회가 이적을 받는 교회의 손에 적절한 이적 서류가 들려 질때까지 교인을 받지 않는다.
2. 비정상적인 이적
가. 치리하에 있는 교인이 교인의 이적 신청을 받았을 때,

discipline, the sending session/consistory or presbytery/classis inform the receiving bod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disciplinary procedure before implementing the requested transfer, thus enabling inform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stors and elders of both churches.

- b. That such a person not be received officially until the judicatory/assembly of the receiving church has taken into serious account the discipline of and the information supplied by the sending church.
- c. That such a person not be received officially until the judicatory/assembly of the receiving church is satisfied that proper restitution has been made and/or reconciliation has been seriously attempted.
- d. That a “fugitive from discipline” who no longer is a member of a church or who is no longer on the roll of a presbytery shall not be received until the former judicatory/assembly has been contacted to determine if proper restitution has been made and/or reconciliation has been seriously attempted.

3. Recourse and Appeal

Where communication or action regarding the sending/receiving of a member or ordained officer/office bearer does not satisfy either the dismissing or receiving judicatory/assembly, communication may be submitted to the interchurch relations committees of the denominations involved with a view to mediation of the problem. If this proves unsatisfactory, the session/consistory or presbytery/classis may register its concern to the appropriate judicatory/assembly of the other denomination.

4. Congregational Transfer

That a congregation seeking to leave a NAPARC church to become affiliated with another NAPARC denomination be received only after it ha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orm of government of the church from which it is separating, and the receiving church shall be responsible to see that it is done.

보내는 당회/개혁교회 당회나 노회/개혁교회 노회는 이적 신청이 시행되기 전에 권징 절차의 성격과 정도에 대하여 이적 받는 교회에 알려야 하고, 그러므로 쌍방 교회들에 속한 목사들과 장로들 간에 비공식적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받는 교회의 법적치리회/총회가 보내는 교회의 권징과 동 교회가 제공한 정보를 심각하게 취급하게 될 때까지 그런 사람을 공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
- 다. 받는 교회의 법적치리회/총회가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지거나 화해가 신중하게 시도되어 만족하게 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받아 들일 수 없다.
- 리.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지거나 화해가 신중하게 시도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전 법적치리회/총회를 접촉하게 될 때까지 더 이상 한 교회의 교인이 아닌 또는 노회 명부에 이름이 없는“치리 도피자”는 받아 들일 수 없다.

3. 의뢰 및 상소

교인 또는 안수 받은 직분자/직분을 맡은 자를 보내고/받는 것에 관한 소통이나 조치가 떠나게 하거나 받는 법적 치리회/총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문제의 중재에 대한 견해를 갖고 연루되어 있는 교단들의 대외 교단 관계 위원회에 소통문을 제출 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만족하지 않다고 증명되면, 당회/개혁교회 당회나 노회/개혁교회 노회는 타 교단의 적절한 법적 치리회/총회에 그 우려하는 바를 접수 시킬 수 있다.

4. 회중 이적

다른 네이팍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한 네이팍 교단을 떠날 것을 찾는 회중은 그 회중이 떠나려고 하는 교단의 정치 형태의 규정들에 순응한 후에 받아 들여 질 수 있고, 받아 들이는 교단은 그것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할 책임이 있다.